

1999 ~ 2008

# 國政監査業務報告資料集

2008. 10.

농림수산식품자료실



0016239



농림수산식품부



1999 ~ 2008  
國政監査業務報告資料集

2008. 10.

# 총 목 차

1. 1999年度 農政推進現況報告(1999. 9. 29) ..... 1
2. 2000年度 主要農政推進現況(2000. 10. 25) ..... 69
3. 2001年度 主要農政推進現況(2001. 9. 10) ..... 143
4. 2002年度 主要農政推進現況(2002. 9. 16) ..... 207
5. 2003年度 農政推進現況報告(2003. 9. 22) ..... 261
6. 2004년도 농정 추진현황 보고(2004. 10. 4) ..... 325
7. 2005년도 농정 추진현황 보고(2005. 9. 22) ..... 409
8. 2006년도 농정 추진현황 보고(2006. 10. 13) ... 491
9. 2007년도 농정 추진현황 보고(2007. 10. 19) ... 591
10. 2008년도 주요 업무 보고(2008. 10. 6) ..... 707

1999~2008  
國政監査業務報告資料集

2008. 10.

第208回 定期國會(國政監査)

農 林 海 洋 水 産 委 員 會

# 農 政 推 進 現 況 報 告

1999. 9. 29

農 林 部

“국민을 움직여야 농업이 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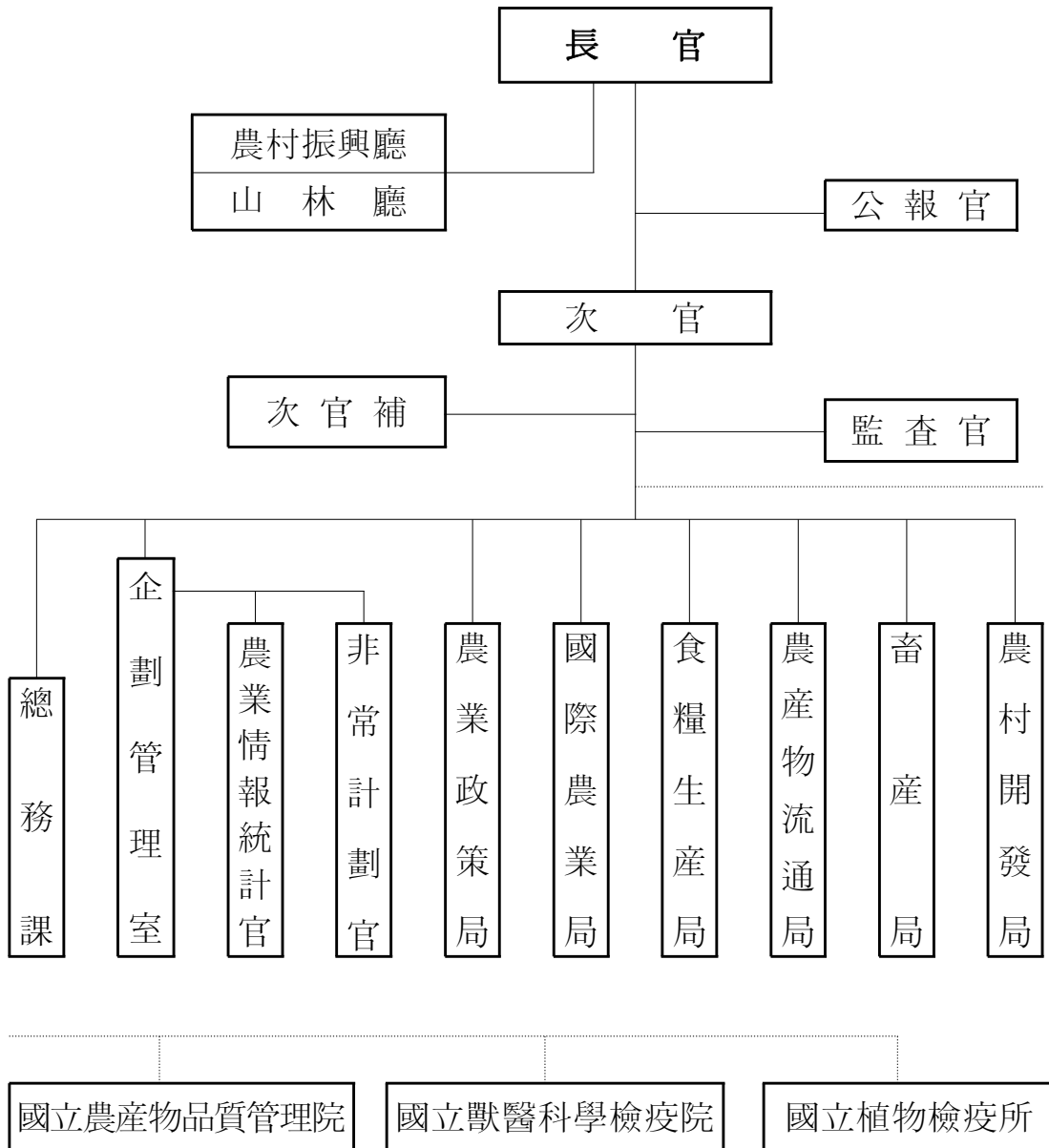
# 목 차

I. 일반현황 .....	5
1. 조직 및 기능 .....	5
2. 2000 농림부문 예산(안) .....	9
II. '99 주요 농정추진현황 .....	13
1. 당면 영농추진상황 .....	13
2. 농가부담경감 및 연대보증 부담완화 대책 .....	16
3. 농업·농촌 투융자계획('99 ~ 2004) .....	23
4. 농축산물 유통개혁 본격 추진 .....	27
5. 농축산물 수출확대 추진 .....	31
6. 농업정보화 기반 확충 .....	33
7. 신지식농업인 발굴·육성 .....	34
III. 당면 주요 농정현안사항 .....	35
1. 집중호우 및 태풍피해 복구대책 .....	35
2. WTO 차기협상 동향과 대책 .....	38
3. 협동조합중앙회 설립 추진상황 .....	42
4. 농업기반공사 출범준비 .....	44
5. 농축산물 안전성 확보대책 .....	46
6. 쇠고기 수입관련 추진상황 .....	50
7. 농업분야 Y2K문제 해결 추진상황 .....	51
8. 김포매립지 처리상황 .....	53
IV. '98 국정감사 주요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	54

# I. 일반 현황

## 1. 조직 및 기능

### 가. 조직



## 나. 기 능

### < 본 부 >

실 국 별	주 요 업 무
기 획 관 리 실	농림정책 및 예산조정, 조직·법무·투자심사·농촌 여성정책 수립
공 보 관	농림시책 홍보
감 사 관	본부 및 소속기관, 농업관련 단체·기관에 대한 감사
농업정보통계관	농업통계, 농업경영 및 유통정보화
비 상 계 획 관	비상대비 계획 수립
농 업 정 책 국	농업구조개선정책, 농지관리, 농촌인력육성, 농업금융
국 제 농 업 국	농림업부문 통상협력 총괄, 수출입정책의 종합 조정
식 량 생 산 국	식량정책 및 수급관리, 식량생산, 농업기계, 환경농업
농 산 물 유통 국	유통구조개선, 농산물가격안정대책, 식품산업육성, 채소·과수·화훼작물 생산수급
축 산 국	축산기반조성, 가축개량, 축산물·사료수급, 축산물위생
농 촌 개 발 국	농업용수개발, 경지정리, 수리시설관리, 생활환경정비

### < 소속기관 >

기 관 별	주 요 업 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산물품질 및 유통관리, 농산물검사, 농업통계조사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축산물 및 동물의 검사·검역 등 위생관리와 질병연구
국립식물검역소	수출입 식물의 검역



## 다. 정 원

(단위 : 명)

	총 계	정 무 직	별 정 직	일 반 직									연 구 직	기 능 직
				계	1급	23급	3급	34급	4급	45급	5급	6~9급		
본 부	505	2	8	426	1	8	1	12	23	47	123	211	-	69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2,364		319	1,743		1		1	10	4	131	1,596		302
국립수의 과학검역원	437			268		1	2		11	2	21	231	85	84
국립식물 검역소	375			320		1		1	7	3	19	289	10	45
소 계	3,176	-	319	2,331	-	3	2	2	28	9	171	2,116	95	431
총 계	3,681	2	327	2,757	1	11	3	14	51	56	294	2,327	95	500

< 참 고 >

농림관련 기관·단체의 기구 및 정원

○ 2개 기관 5개 단체 : 83,402명

구분	기관·단체	기구	정원(명)		
			계	중앙회 (중앙)	회원조합 (지방)
투자 기관	농어촌진흥공사	5이사, 1원, 15처(실), 9지사, 69지부, 4사업단	2,078	711	1,367
	농수산물유통공사	3이사, 11차살원, 2사업소, 5지사, 7해외무역관	510	329	181
	소 계		2,588	1,040	1,548
생 산 자 단 체	농업협동조합	27부(실), 17지역(신용)본부, 156 시·군지부, 658 지점, 1,135 지역조합, 46전문조합, 2,043지소	54,049	14,875	39,174
	축산업협동조합	15부(실), 10지회, 192조합	19,671	3,976	15,695
	임업협동조합	5부5실, 9지회, 4사업소, 3훈련원, 144조합	2,481	450	2,031
	인삼협동조합	3처 10부 1창	322	77	245
	농지개량조합 연합회 및 조합	1실, 4처, 1시험소, 8지회, 104조합	4,291	564	3,727
	소 계		80,814	19,942	60,872
계			83,402	20,982	62,420

## 2. 2000 농림부문 예산(안)

### 가. 2000 예산(안) 규모

- 2000 농림예산은 8조 335억원으로 '99대비 3.5% 증가(2,685억원)
- 투융자 사업비는 4조 4,582억원으로 '99대비 6.1%증가(2,546억원)
- =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출연예산 포함시 '99대비 7.9% 증액 =

### < 농림부문예산 (2청 포함) >

(단위 : 억원)

구 분		'99예산 (A)	2000예산(안) (B)	증 △ 감 (B-A)	%
기 능 별	○투융자사업	42,036	44,582	2,546	6.1
	○부담경감 및 채무상환 등	21,679	24,411	2,732	12.6
	○양곡지원	9,812	7,215	△2,597	△26.5
	- 수매지원	1,828	2,066	238	13.0
	- 양곡증권기금	7,984	5,149	△2,835	△35.5
	○공공근로사업	1,766	1,689	△77	△4.4
	○기본적 경비	2,357	2,438	81	3.4
<b>합 계</b>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포함시)		<b>77,650</b> <b>(78,410)</b>	<b>80,335</b> <b>(84,595)</b>	<b>2,685</b> <b>(6,185)</b>	<b>3.5</b> <b>(7.9)</b>
재 원 별	○일반회계	25,099	23,673	△1,426	△5.7
	○농특회계	48,841	54,642	5,801	11.9
	○재특회계	3,710	2,020	△1,690	△45.5
양 곡 관 리 특 별 회 계		13,226	12,167	△1,059	△8.0
농 특 세 관 리 특 별 회 계		495	517	22	4.4
국 유 재 산 관 리 특 별 회 계		1,289	1,225	△64	△5.0
책 임 운 영 기 관 특 별 회 계		-	98	98	-

□ 2000 농림부소관 예산은 7조 1,258억원으로 '99대비 2.4% 증가(1,675억원)

○ 투융자사업비는 3조 8,485억원으로 '99대비 4.1% 증가

○ 경직성사업비는 3조 1,603억원으로 '99대비 0.4% 증가

=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출연예산 포함시 '99대비 7.4% 증액 =

< 2000 농림부 소관 예산규모 >

(단위 : 억원)

구 분	'99예산 (A)	2000예산(안) (B)	증 감 (B-A)	%
I. 투융자 사업	36,958	38,485	1,527	4.1
○생산기반조성	17,806	17,224	△582	△3.3
- 재해대비 기반구축	8,187	8,632	445	5.4
○농업기계화	2,553	2,390	△163	△6.4
○생산 및 유통개선	11,297	13,188	1,891	16.7
- 농산물유통개혁	5,477	8,942 <sup>1)</sup>	3,465	63.3
○기술개발 및 정보화	467 <sup>2)</sup>	432	△35	△7.5
○인력육성	2,748	3,177	429	15.6
○농가자금 지원 등	803	1,066	263	32.8
○생활환경개선	1,030	887	△143	△13.9
○기타사업	134	121	△13	△9.7
II. 경직성 사업	31,467	31,603	136	0.4
○부담경감 및 채무상환 등	21,655	24,388	2,733	12.6
○양곡지원	9,812	7,215	△2,597	△26.5
사업비계	68,425	70,088	1,663	2.4
III. 기본적인경비	1,158	1,170	12	1.0
소관합계	69,583	71,258	1,675	2.4
※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 기금지원(재경부)	760	4,260	3,500	460.5
계	70,343	75,518	5,175	7.4

주 1) 유통부문예산 : 총 투융자예산의 23.2%

2) 농경연.한식연 등 정부출연기관 소속변경(농림부 → 국무총리실)분 120억원 제외

## 나. 중점 편성내용

□ 농업관련조직 개혁 지원 : ('99) 110억원 → (2000) 3,000(2,890억원 증)

< 협동조합 통폐합 및 일선조합 유통활성화 지원 : 2,600억원 >

○ 농·축협 등 협동조합을 생활권·경제권 중심으로 합병을  
촉진하고 전산비용 등 통합설립준비 예산 지원

- 예 산 : ('99) 40억원 → (2000) 600(560억원 증)

·일선조합 합병지원 : 40억원 180(180개소)

·중앙회 통합지원 : - 420

○ 일선조합의 유통사업활성화를 위한 자금지원(신규) : 2,000억원

< 농업기반공사 설립지원 : 400억원 >

○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량조합, 농지개량조합연합회 3개기관  
통합으로 농업기반공사 설립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 확대

- 출 자 금 : ('99) 70억원 → (2000) 400(330억원 증)

□ 농산물유통부문 예산확대

○ 농업인이 제값을 받고 출하하고, 중간유통마진을 줄임으로써  
실질적인 농가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농산물 유통개혁을  
적극 뒷받침

- 예 산 : ('99) 5,477억원 → (2000) 8,942(63.3% 증)

(사업비중 비중) 14.8% 23.2

\* 2000년 예산은 협동조합 유통활성화자금 2,000억원 포함

□ 농업인 연대보증 및 연체채무 해소대책 강화

- 연대보증으로 대출된 농업용 자금의 연대보증 해소를 위해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출연예산 대폭 증액(재경부 소관)  
- 예 산 : ('99) 760억원 → (2000) 4,260(3,500억원 증)

□ 농업경영종합자금제 시범사업 확대

- 2001년 본격도입을 위한 종합자금제 시범사업 확대  
- 지원규모 : ('99) 150억원 → (2000) 1,940(재정 1,620, 농협자금 320)  
· 예 산 : ('99) 150억원 → (2000) 1,642(종합자금 1,620, 이차보전 22)  
\* 통합대상사업 : 과실·채소·시설원예·특작생산유통지원사업, 기타  
전업농 지원사업

□ 재해대비 생산기반 구축 : ('99) 8,187억원 → (2000) 8,632(5.4% 증)

- 농업용수개발사업 확충 및 효율성 증대  
- 용 수 개 발 : ('99) 3,515억원 → (2000) 3,603(2.5% 증)  
- 수 리 시 설 개 보 수 : 2,647억원 → 2,848(7.6% 증)  
· 수 리 시 설 개 보 수 : 2,373억원 → 2,550(7.5% 증)  
· 국 가 관 리 방 조 제 개 보 수 : 247억원 → 271(9.4% 증)
- 홍수시 침수피해의 사전 예방을 위한 배수개선사업 확대  
- 배 수 개 선 : ('99) 2,025억원 → (2000) 2,181(7.7% 증)



## Ⅱ. '99 주요 농정추진현황

### 1. 당면 영농추진상황

#### 가. 기상여건('99.1.1 ~ 9.28)

○ 강수량 : 전국평균 1,639mm로 평년보다 495mm 많고, 전년보다 65mm 많음.

\* 저수율은 전국평균 85%로 평년보다 10%p 높음.

○ 평균기온 : 전국평균 15.2℃로 평년보다 1.1℃ 높고, 전년보다 0.5℃ 낮음.

○ 일조시간 : 전국평균 1,673시간으로 평년보다 4시간 많고, 전년보다 192시간 많음

#### 나. 영농 추진상황(9월말 현재)

##### < 벼 >

○ 유리한 기상여건과 적기 병해충방제 등으로 벼 생육이 전반적으로 양호

- 벼이삭수는 m<sup>2</sup>당 433개로 평년보다 29개 많고, 출수도 1~3일 빠르며, 병해충 발생면적도 적음

- 다만, 8월 중순이후 잦은 강우로 후기기상이 좋지않아 벼 익음이 다소 나빠질 우려는 있음.

○ 현재 조생종 벼는 한창 수확단계, 중생종 벼는 수확 시작 단계, 중만생종 벼는 10.5부터 수확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

- 총 재배면적(1,066천ha)의 7%인 74천ha는 수확이 완료되었으며, 10월말까지는 벼베기 완료 전망

\* 숙기별 면적비율 : 조생종 11%, 중생종 19, 중만생종 70

- 금년에는 총 재배면적이 전년보다 7천ha가 증가되었고 (1,066천ha), 10a당 수량이 500kg이상되는 양질다수성 품종의 재배면적이 전년보다 18% 증가(827천ha)되었음.
  - 기상재해를 입은 지역은 생육이 다소 부진하나, 침수면적이 79천ha(전체면적의 7%)로 많지 않고, 피해지역의 벼도 생육이 상당히 회복되어 피해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 \* 9.17~24 집중호우 및 태풍 「바트」로 인한 피해 : 벼 쓰러짐 25.1천ha, 침수 6.7
- 현재까지의 작황으로 보면 금년도 쌀 수확량은 평년작 수준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기상여건이 좋을 경우 평년작 이상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
  - \* 예상수확량은 10월 중순경에 발표할 계획이며, 실수확량은 11월중에 최종 집계

### < 채소류 >

- 가을 무·배추는 재배의향 조사결과 적정재배면적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가을 무·배추 파종은 중부지역은 종료단계에 있고, 남부지역은 파종성기로 10월초에 종료될 것으로 예상
  - 가을 무 : ('98) 15.1천ha → ('99의향) 14.4(△4.6%)
  - 가을배추 : ('98) 14.9천ha → ('99의향) 14.6(△2.0%)

- **고추는** 재배면적이 75.5천ha(전년대비 15.7% 증가) 수준이고, 전반적인 작황도 좋아 **예상생산량이 201천톤으로 수요량인 185천톤보다 8.7% 더 생산될 전망**
- 따라서 가격안정을 위해 농협계약물량의 조기수매와 민간수매지원, 「농·소·상·정」 유통협약체결 등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중

### <과일류>

- **사과배는 8월초 집중호우 및 태풍 “올가”의 영향으로 낙과 피해를 크게 입었음.**
  - 배는 주산지를 중심으로 낙과 피해를 많이 입어 성과수 면적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생산량이 크게 줄어듦 전망
  - 생산량 : ('98) 260천톤 → ('99전망) 211 (△19%)
  - 사과는 면적감소와 낙과 피해에도 불구하고 작황이 양호하여 전년수준인 457천톤이 생산될 전망
- **감귤은 낙과피해가 거의 없고, 해거리 영향으로 생산량이 큰 폭으로 늘어날 전망**
  - 생산량 : ('98) 512천톤 → ('99전망) 756 (48%증)
  - 저위품 숙아내기 등 생산조정을 통해 적정생산을 유도하는 등 적극적인 수급조절대책 추진

## 2. 농가부담경감 및 연대보증 부담완화 대책

### 가. 농가부담경감 대책

#### (1) 그동안의 추진실적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 「농가부채대책위원회」의 건의 등을 수용, '98.3부터 현재까지 약 1조 4천억원(농가당 1백만원)의 직접적인 부담경감 효과 거양

#### ① 부채 상환연기

- 정책자금 상환연기 14,752억원
- 상호금융자금 대출금 상환연기 및 연체이자 징수유예 95,819

#### ② 금리인하

- 경영자금·정책자금 금리인상수준 하향조정 및 기금 금리동결 174,461
- 경영자금 금리인하(6.5%→5.0) 44,700
- 정책자금 금리인하(6.5%→5.0) 93,170
- 상호금융자금 금리인하(4%P수준) 208,072

#### ③ 자금지원확대

- 경영자금 확대 44,700
- 부실경영체 정리·인수지원 1,000
- 특별경영자금 지원 21,500

\* '99.10부터 지원되는 특별경영자금 14,500억원 포함

#### ④ 농축임·삼협 예탁금 및 출자금 비과세 시한 연장

#### ⑤ 농신보 무입보 보증한도 조정(5천만원 → 1억원) 및 신용보증 대상범위 확대(대출채무 → 상거래채무)

(2) 1조 4,500억원의 특별경영자금 지원

저리의 「특별경영자금」 1조 4,500억원을 추가로 지원하여  
고리의 상호금융자금을 대체함으로써 농가경영안정 도모

- 지원대상자 : 상호금융자금을 저리자금으로 대체할 경우  
경영정상화가 가능한 자
  - 농축산업 경영을 목적으로 한 상호금융자금 대출잔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영체
  - 연대보증으로 인해 정책자금 또는 상호금융자금이 연체상태에  
있는 경영체(상호금융 대출잔액 1천만원 미만도 지원가능)
  - 7말~8초의 집중호우 및 태풍 영향으로 인한 과수낙과, 인삼  
침수의 경우 상호금융 대출잔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영체
- 지원금액
  - 상호금융 대체 지원 : 5,000만원 이하
    - \* 단, 심사위원회에서 경영회생을 위해 5,000만원이상 지원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도지회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가능
  - 연체해소자금 지원 : 연체해소에 필요한 최소자금
  - 과수낙과·인삼침수 피해 : 피해율에 따라 차등지원
- 지원조건 : 연리 6.5%(이자는 1년 후취), 2년후 일시상환
- 시행시기 : '99.10~12

□ 지원대상자 선정절차

- 농업인들이 농·축·임·삼협 등 회원조합에 신청
- 회원조합은 농축산업 경영목적 상호금융 대출잔액증명과 평가의견서를 농협 시·군지부에 제출
- 농협 시·군지부에 설치된 「심사위원회」(농·축·임·삼협 조합장 대표, 금융관계자, 농업인단체 등으로 구성)에서 엄격한 심사 절차를 거쳐 대상자 선정

□ 자금지원에 대한 보증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 향후 농가부담경감 추진계획

- '98.11 농가부채대책 시행으로 상환연기된 중장기 정책자금의 분할상환 방안 강구
- 협동조합 개혁에 따른 일선 협동조합의 규모화와 경제사업의 효율성제고 등으로 상호금융 이자율 추가인하 유도

※ 과수낙과, 인삼침수 등 호우 및 태풍피해농가에 대한 지원은 특별경영자금 지원외에도 별도 대책을 마련

- 재해대책기준상 대파대, 농약대와 생계비·학자금지원(3,513억원)
- 기 지원된 정책자금의 2년간 상환연기(222억원) 및 이자감면(69억원)
- 중장기 정책자금 용자(1,291억원, 5%)

\* 세부내역은 「집중호우 및 태풍피해 복구대책」에서 별도보고



< 참 고 >

## 부담경감대책별 효과추정

※ 직접부담경감효과 합계 : 14,620억원

① 정책자금 상환연기('98.3 ~ '98.6)	238억원
○ 축산농가(5,707억원)	(236)
○ 시설원예농가(45억원)	(2)
② 정책자금 금리인상 수준 하향조정('98.4.15)	2,710
○ 농특회계 68,142억원, 농축산경영자금 44,700억원(8.5% → 6.5)	(1,790)
○ 기금 금리동결(6조 1,619억원)	(920)
③ 농·축산경영자금 확대('98.4.6)	487
○ 규모 : ('97) 38,200억원 → ('98) 44,700	
④ 농가 상호금융대출금 기한연기 및 연체이자 징수유예('98.6.15)	2,002
○ 기한내 연기대상 : 60,618억원	(993)
○ 연체이자 상환유예대상 : 35,201억원	(1,009)
⑤ '98 농가부채대책('98.11)	5,912
○ 중장기 정책자금 상환연기(9,000억원)	(608)
○ 부실경영체 정리·인수지원(1,000억원)	(50)
○ 정책자금 금리인하(6.5% → 5.5)	(801)
- 농특 64,000억원, 재해복구 900억원, 농기계 6,197억원 등	
○ 상호금융 대출금리 인하(4P%)	(4,164)
- 농협 196,739억원, 축협 9,930, 임협 1,180, 삼협 223	
○ 특별경영자금 지원(7,000억원)	(289)
⑥ 농·축·임·삼협 예탁금 및 출자금 비과세 시한 연장('99.1)	2,231
⑦ 정책자금 93,170억원 금리 추가인하(5.5% → 5, '99.5)	311
⑧ 경영자금 44,700억원 금리 인하(6.5% → 5, '99.7)	258
⑨ 농신보 무입보 보증한도 및 범위확대(5,000만원 → 1억원, '99.7)	
⑩ 특별경영자금 1조 4,500억원 추가지원('99.9)	471

## 나. 농업인 연대보증 및 연체채무 해소대책

연대보증으로 인한 연쇄도산의 악순환 고리를 끊고 지속적인 농업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연대보증으로 대출된 자금 6조 8,400억원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농신보 보증으로 대체

### □ 지원대상

- 연대보증으로 대출된 농축산업용 자금(정책자금+상호금융 자금)중 정상적으로 상환중인 자금(총 6조 4,800억원)
- 연대보증으로 대출된 농축산업용 자금중 연체된 자금은 연체상태를 해소한 후 지원(총 3,600억원)

### □ 지원방법

- 연대보증으로 대출된 자금을 대환하면서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이 무입보 보증하여 해결
  - 주채무자에게 신규대출 형식으로 기존 잔액을 대환하는 자금에 대하여 농신보가 무입보 보증
- 현재는 연체상태에 있으나 연체상태를 해소해 줄 경우 회생 가능한 농가를 대상으로 경영평가를 실시한 후 특별경영자금(1조 4,500억원)중 일부를 연체해소자금으로 지원
  - 우선 연체상태 해소후 동일한 방법으로 연대보증 해소
  - \* 특별경영자금지원을 받지 못한 연체채무자가 스스로 연체를 해소한 경우에도 연대보증을 농신보로 대체

## □ 시행시기 및 지원절차

○ 시행시기 : 2000.1 ~ 6

※ 연체해소자금은 '99.10 ~ 12월중에 지원

○ 지원절차 : 농업인들의 신청을 받아 간이 심사절차를 거쳐  
연대보증을 농신보 보증으로 대체

- 기존의 농신보 보증금액(한도 1억원)과는 별도로 무입보 보증

\* 농협은 자체적으로 농협조합원인 주채무자의 사망·도주 등으로  
상호금융 채무상환이 불가능하여 연대보증인이 대신 원금을  
상환할 경우 연체이자 면제조치를 '99.6 ~ 12기간중에 시행중

## □ 재원조치

○ 정부재정에서 농신보에 출연하여 자금의 운용배수문제 해결  
(2000년 예산 4,260억원 확보)

## □ 연대보증문제 해소를 위한 농신보 제도개선('99.7.1)

○ 보증인없이 「농신보」 기금에서 보증할 수 있는 한도를 종전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조정

○ 금융기관의 대출채무뿐만 아니라 사료외상대금 등 상거래  
채무도 신용보증대상에 포함하여 대상범위를 확대

< 참 고 >

## 농업인 연대보증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 농업용 대출액 18조원중 연대보증 대출액은 6조 8,400억원  
 - 연체상태에 있는 대출액은 3,600억원(5.3%) 수준

('99.4월말 기준, 단위 : 억원)

구 분	대출잔액	연 대 보 증			기타(신용, 담보)	
		소 계	순수입보	농신보입보		
총 계	279,536 (100%)	122,174 (43.7)	99,872	22,302	157,362 (58.3)	
농 업 용	소 계	<b>179,527</b> <b>(100%)</b>	<b>68,368</b> <b>(38.0)</b>	49,289	19,079	111,159 (62.0)
	상호금융	66,680	27,695	22,040	5,655	38,985
	정책자금	112,847	40,673	27,249	13,424	72,174
비농업용	100,009	53,806	50,583	3,223	46,203	

<자료 : 농·축·임·삼협 대출액 집계>

### 문 제 점

- 최근 IMF영향으로 인한 주채무자의 도산이 마을단위 연쇄도산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농촌지역 사회문제로 대두
- '99.4 현재 1년이상 연체상태에 있는 대출액(1,563억원)에 대해서 강제회수 절차에 들어갔거나, 조만간 들어갈 것으로 파악되어 연대보증인의 피해문제가 점차 확대 가시화 될 전망

\* 8개마을 305호에 대한 실태조사('99.3) 결과, 연대보증 채무가 있는 농가 142호(평균 보증액 22백만원)중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농가가 20%인 27호(평균 피해금액 11백만원)로 나타났다.

### 3. 농업·농촌 투융자계획('99 ~ 2004)

#### 가. 투융자 규모

□ 계획기간('99 ~ 2004)중 「농업·농촌투융자계획」의 총 투융자 규모는 45조 526억원 수준

○ 중앙정부 투융자액은 37조 8,384억원(84%)

- 보조 24조 4,220억원(65%), 융자 13조 4,164억원(35%)

○ 지방정부 부담액은 4조 7,169억원(10%)

○ 사업자 부담액은 2조 4,973억원(6%)

□ 이번 계획은 정부전체의 중기재정계획('99 ~ 2002)에 연계하여 WTO협정이행이 종료되는 2004년까지 6개년의 중장기계획으로 수립되어 재원확보에는 전혀 지장이 없음

※ 「농업·농촌 투융자계획」상의 투융자규모(중앙정부)는 농림예산에서 인건비 등 기본적 경비, 채무상환양곡지원 등 경직성사업비 및 농·축산 경영자금 등 단기성 회전자금을 제외한 개념임.

\* 예를들면, '99년 농림예산 규모는 7조 7,650억원이나, 「농업·농촌 투융자계획」상 중앙정부 투융자규모는 5조 5,155억원임.

## 나. 주요 분야별 투융자 규모 및 지원방향

- 농림업의 공익적 기능 유지 발전 : 14조 9,600억원(33%)
    - 배수개선, 용수개발 등 재해에 대비한 영농기반 정비
    - 경지정리,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간척 등 농지정비
    - 친환경농업 육성과 산림자원 확충
  
  - 건실한 농림업경영체육성 : 7조 7,800억원(17%)
    - 개별경영체에 대한 「농업경영종합자금」 지원 및 컨설팅 지원
    - 농업인력육성 및 규모화촉진직접지불, 토양개량, 교육·훈련 등
  
  - 농림업 부가가치제고 지원 : 1조 8,100억원(4%)
    - 첨단기술개발 및 정보화, Agribusiness 육성
  
  - 농림산물유통개혁 및 수출농림업육성 : 8조 7,100억원(20%)
    - 산지 및 소비지 유통기반 조성, 물류체계 개선
    - 소비자보호, 가공산업육성 등
    - 수출시설현대화, 시장개척지원 등 수출기반조성
  
  - 농촌지역개발과 농업인 복지지원 : 8조 1,300억원(18%)
    - 농공단지, 관광휴양단지 등 소득원 개발
    - 주택·도로 등 생활환경개선
    - 농업인자녀학자금, 직접지불 등 복지증진
  
  - 농업경영자금이차보전 등 농업인경영안정 : 3조 6,600억원(8%)
- ※ 축산부문 총투융자규모 : 4조 5,000억원(총 투융자 규모의 10%)



## 다. 농업·농촌투융자 효율성 제고 방안

### □ 투융자 지원방식을 공급자 위주에서 수요자 위주로 전환

- 개별사업별로 분산지원하던 농업인 지원사업을 통폐합하여 사업계획에 따라 필요한 시기에 적정 소요자금을 종합 지원

\* 2004까지 30개 사업을 통폐합, 「농업경영종합자금」으로 지원

### □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지원방향 전환 및 지원방식 개선

- 시설지원위주에서 경영안정·정보화·유통개혁 등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전환

\*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농산물유통정보화, 친환경농업육성 등

- 생산기반정비사업은 적정기간내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추진하고, 배수개선·용수개발 등 재해예방부문에 집중 투자

- 개별경영체에 대한 보조지원을 융자로 전환, 자율성·책임성 제고

- 보조감축 및 융자전환사업 : ('99) 19 → (2000) 8 → (2001) 10개

\* 경지정리, 유통시설 등 SOC 성격의 공공사업은 보조 유지

### □ 투융자사업의 점검·평가 및 환류체계 확립

- 「현장농정점검지원단」을 활용, 투융자사업을 점검·평가

- '99년 2차례에 걸쳐 연인원 332명이 138개 시·군 현장 방문

\* 사업추진상 개선·보완과제 111건을 접수, 이중 75건을 개선조치중(67.6%)

- 주요 투융자사업에 대하여 매년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투융자계획에 반영하여 수정·보완

< 참 고 >

분야별·재원별 투융자 사업비

(단위:억원)

	총투융자	중앙정부	지방정부	기 타
<b>합 계</b>	<b>450,526</b>	<b>378,384</b>	<b>47,169</b>	<b>24,973</b>
<b>1. 농림업의 공익적 기능유지 발전</b>	<b>149,663</b>	<b>130,593</b>	<b>15,290</b>	<b>3,780</b>
○재해에 대비한 영농기반 정비	50,884	50,854	300	-
○농지의 정비 및 관리	62,103	53,336	8,767	-
○친환경 농림업의 육성	14,312	11,795	1,859	658
○산림자원의 확충	22,364	14,878	4364	3,122
<b>2. 건설한 농림업경영체 육성</b>	<b>77,811</b>	<b>71,927</b>	<b>1,986</b>	<b>3,898</b>
○교육 및 훈련	9,080	8,936	144	-
○농업경영종합자금의 지원	45,628	45,468	160	-
○농업경영체의 경쟁력 강화 지원	23,103	17,523	1,682	3,898
<b>3. 농림업 부가가치 제고 지원</b>	<b>18,063</b>	<b>15,842</b>	<b>1,579</b>	<b>642</b>
○첨단 농림업기술 개발	14,449	12,556	1,578	315
○농림업의 정보화 지원	1,057	947	-	110
○농림업 관련 산업의 육성 지원	2,557	2,339	1	217
<b>4. 유통개혁 및 수출확대</b>	<b>87,142</b>	<b>67,959</b>	<b>5,118</b>	<b>14,065</b>
○산지 유통기반 조성 지원	48,826	37,733	351	10,742
○소비지 유통기반 조성 지원	11,211	7,283	3,071	857
○물류체계, 정보·교육 지원	5,311	4,749	161	401
○농산물 가공산업의 지원	1,169	838	-	331
○소비자보호의 강화	2,365	1,981	360	24
○축산물 유통 및 가공지원	6,628	6,346	33	249
○임산물 유통 및 가공지원	4,169	2,850	282	1,037
○농림수산물수출기반 조성 지원	7,463	6,179	860	424
<b>5. 지역개발과 농업인 복지의 증진</b>	<b>81,304</b>	<b>55,520</b>	<b>23,196</b>	<b>2,588</b>
○농촌의 다양한 산업 유치	19,965	13,290	5,009	1,666
○농촌의 생활환경개선 지원	41,404	26,741	14,663	-
○농업인의 복지증진 지원	19,935	15,489	3,524	922
<b>6. 농업인 경영안정 지원</b>	<b>36,543</b>	<b>36,543</b>	-	-
○농업자금의 원활한 공급 지원	26,488	26,488	-	-
○농업인의 부담경감 지원	10,055	10,055	-	-

## 4. 농축산물 유통개혁 본격 추진

### 가. 그동안의 유통개혁 추진성과와 향후과제

- 「농산물유통개혁대책」 확정('98.7.23)후 직거래 확충, 물류센터 개장, 농산물 제값받기를 위한 새로운 가격안정 프로그램 도입, 유통부문 예산 대폭 확대 등 유통개혁 기반을 마련
  - ① 농축산물직거래 유통을 활성화하여 약 1조원의 유통비용 절감
    - 농산물유통량중 직거래비율 : ('97) 5%(2조원) → ('98) 12(4.5)
    - '99.1~6월중 직거래실적은 3조 250억원으로 '98년 동기대비 44% 증가
  - ② 가격등락이 큰 주요 채소류의 유통협약 실시, 하한가격예시 등으로 농산물가격을 지지
  - ③ '98~'99년간 공영도매시장(5), 물류센터(7), 축산물종합처리장(5) 등 개장으로 유통경로를 다양화하여 경쟁촉진
  - ④ 유통개혁을 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정('98) 및 「농안법」 개정 추진(국회계류중) 등 법령정비
  - ⑤ 농축산물 유통예산을 대폭 확대, 유통개혁을 재정적으로 뒷받침
    - 유통예산 : ('98) 3,096억원(농업투융자예산의 6%) → ('99) 5,477(15) → (2000) 8,942(23)

#### 향후 유통개혁과제

- 규모화·전문화된 일선 협동조합 중심으로 산지유통혁신
- 유통단계별 「고비용저효율」 문제점을 해소, 유통구조를 효율화
- 농산물 제값받기 실현으로 안정적인 영농기반 구축

## 나. 향후 중점 추진시책

### (1) 일선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산지유통혁신

- 협동조합에 대한 유통활성화자금을 신설, 우수조합당 30~50억원의 유통자금 조성 지원(2000년 5,000억원 수준)
  - 공동출하, 매취사업 등 일선 협동조합이 유통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전반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종합지원
  - 조합의 사업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경영컨설팅을 실시하고 사업성과를 평가하여 우수조합에 대해서는 금리상 인센티브 부여
- 주산지 채소생산량의 30%수준을 계약재배하여 수급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주산지 협동조합에 계약재배 자금을 확대
  - 계약재배자금 : ('99) 3,000억원 → (2000) 3,500

### (2) 도매시장 거래제도 다양화 및 물류효율화 촉진

- 현재의 경매제도 외에 도매상제도가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개방하여 출하자의 선택기회 확대
- 건설중인 14개 도매시장은 하역시설과 정보화 시스템을 갖춰 건설하고, 기존 18개 시장은 시설·운영개선을 본격 추진
- 2002년까지 경매가 실시되는 모든 도매시장에서 전자경매가 실시되도록 하여 경매비리 근절
  - 전자경매 : ('99) 서울대전 2개법인 → (2000) 40개 → (2002) 전 법인
- 전 도매시장의 정보망 구축, 도매시장 가격정보의 실시간(real time) 제공 및 출하예약제 도입으로 유통비용 축소

### (3) 직거래 확대 및 소매유통개선

- 다양한 직거래 활성화를 통하여 직거래 비중을 확대
  - 물류센터는 '99년중 4개소(천안·군위·전주·성남)를 개장하고 2000년에 3개소(고양·대전·용인) 추가 개장
  - 중소도시에 Farmers' Market이 2002년까지 150개소 운영될 수 있도록 '99년 10개소에 이어 2000년 20개소 지원
  - 생산자단체의 전자쇼핑몰을 개설('99.6)하고 민간의 전자쇼핑몰과 연계한 통합쇼핑몰('99.9)을 만들어 농산물 Cyber Market 개설
  
- 소비지 민간유통개선을 촉진하기 위한 특별재정지원
  - 농안기금에 대한 국고지원 : 2000년 1,000억원

### (4) 새로운 수급안정제도 정착으로 농산물 제값받기 실현

- 「농업관측센터」를 설치('99.1)하여 생산·출하의사결정에 기여할 수 있는 재배면적·출하량 등에 관한 정보를 적기 제공
  - 농업관측 대상품목 확대 : ('99) 14개 → (2000) 17
  
- 「농소상정」 유통협약을 체결하여 자율적인 수급조절을 유도하고 필요시 이를 강제적으로 조절하는 유통명령제 도입
  - \* 9.10 고추 품위저하품(끝물생산품 중 품위가 하품인 것)의 수확 및 출하억제에 대한 유통협약 체결
  
- 가격등락이 심한 채소류에 대해 경영비수준의 하한가격을 보장하는 가격예시제를 확대 실시
  - 봄무(90원/kg), 봄배추(85), 고랭지무(95), 고랭지배추(100), 가을무(65), 가을배추(50), 마늘(1,200), 양파(180)에 대해서 실시중

## (5) 축산물 유통구조혁신

- **축산물종합처리장(LPC)을 중심으로 생산·도축·가공·판매 기능을 연계하여, 위생적이고 브랜드화된 고급육 유통체계 구축**
  - 2000년까지 10개소 건설, 한우고기의 30%를 유통
  - 운영활성화를 위해 원료육 구매자금 확대 및 금리인하(8% → 5)
    - 원료육 구매자금 : ('99) 83억원 → (2000) 120
- **LPC, 브랜드업체, 생산자단체와 연계한 소매단계 식육판매점을 규모화·현대화하고, 한우 전문판매점을 육성하여 수입쇠고기와의 시장차별화**
  - L P C 가 맹 점 : ('99) 272개소 → (2000) 422
  - 생산자단체 직판장 : ('99) 714개소 → (2000) 820
  - 한우 전문 판매 점 : ('99) 700개소 → (2000) 850
- **도축장 가공시설개선 및 도매시장·공판장의 경매방식개선을 통해 위생적인 부분육 유통을 지속적으로 확대**
  - 규모가 크고 시설이 우수한 도축장은 부분육 가공시설 자금을 지원하고, 규모가 영세하고 시설이 불량한 도축장은 도태 유도
    - 부분육 가공 및 냉장보관 시설지원 : ('99) 49억원 → (2000) 100
  - 도매시장·공판장의 지육경매체제를 부분육 가공경매체제로 전환
- **축산물유통구조의 조기 현대화를 위한 재정지원 확대**
  - 촉발기금에 대한 국고지원 : ('99) 1,300억원 → (2000) 2,000



## 5. 농축산물 수출확대 추진

### 가. 최근 수출동향 및 전망

- 금년 8월까지 채소류, 화훼류, 인삼류, 돼지고기 등 신선농축산물 수출은 436백만불로 전년동기(350백만불) 대비 24.7% 증가
  - 채 소 류 : ('98.8까지) 56.9백만불 → ('99.8까지) 96.6(69.7%증)
  - 화 훼 류 : ('98.8까지) 7.2백만불 → ('99.8까지) 9.9(39.0%증)
  - 인 삼 류 : ('98.8까지) 39.8백만불 → ('99.8까지) 47.6(19.7%증)
  - 돼지고기 : ('98.8까지) 180.4백만불 → ('99.8까지) 208.6(15.6%증)
  - 면류, 과자류 등 가공식품은 520백만불로 전년대비 18.5% 감소하여 전체 수출은 956백만불로 전년대비 3.2% 감소
- 채소류, 화훼류, 인삼류 등 신선농축산물 수출은 일본 등을 중심으로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가공식품류도 러시아·동남아 등의 경기가 회복되고 있어 수출이 호전될 전망

### 나. 수출확대 중점추진시책

- 첨단 농업생산시설·기술을 수출에 적극 활용하여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 국내 수급안정에도 기여
  - 유리온실 등 첨단시설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수출확대
    - 품목별 수출협의회 구성 등 조직화를 유도, 경영자금 등 지원추진
    - 화훼, 파프리카, 방울토마토 등 수출경쟁력이 있는 작목재배 유도
  - 축산물종합처리장(LPC) 등을 통해 위생 처리된 냉장육 수출을 집중 추진하여 부가가치 제고
    - 냉장육 대일 수출비중 : ('98) 22% → ('99) 30
  - 인삼, 김치 등의 농축산물의 세계화를 위한 명품개발 연구 추진

- **현장중심의 수출애로 해소 등 내실있는 수출지원체제 구축**
  - 수출 이동컨설팅 팀을 구성, 품목별 전문컨설팅 실시(연간 50회)
  - 수출농산물 구매·유통자금, 수출물류비 지원 등 자금지원 확대
    - 구매·유통자금 등 : ('98) 2,768억원 → ('99) 3,005 (8.5% 증)
    - 물류비 지원 : ('98) 57억원 → ('99) 149(161.4% 증)
  - 채소·화훼 등 시설농가의 물류비 부담경감지원('99 : 137억원)
  
- **10대 전략품목을 중심으로 주요시장별로 대대적 홍보 및 판촉 활동을 전개하여 수출농산물의 평가 및 인식도 제고**
  - 일본의 원산지표시제 시행에 대비하여 한국농산물 이미지 개선을 위한 종합적 홍보(김치, 돼지고기, 신선채소 등 집중광고)
  - 인터넷에 김치, 인삼 전용 홈페이지를 개설운영(4개 국어)
  - 9~11월중 일본, 동남아, 구미 등 권역별로 우수바이어 40명을 초청, 구매상담 알선
  
- **가공식품 수출확대를 위해 원료확보 및 시설현대화 자금을 지원하고 러시아·홍콩의 시장개척활동 지원**
  - 가공식품 수출업체에 저리자금 추가지원(김치, 장류, 민속주, 기타 전통식품 등에 추가로 200억원 저리융자)
  - 수출용 원자재 수입추천품목을 확대하고 추천절차 간소화(땅콩, 마늘, 생강 등)
  - 러시아·홍콩 등에서 가공식품 수출확대를 위한 특별행사 개최(박람회, 판촉전 4회)

## 6. 농업정보화 기반 확충

- 농업정보화를 위해 전산망 구축 등 정보화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제공되는 정보를 내실화하여 이용활성화 유도
  - 우수농업인에 대해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 지원
    - 지원농가(예산) : ('99) 106농가(12천만원) → (2000) 200(28)
  - 소비자의 전자상거래 이용 편리성을 높이고, 개별 농업인·지역 농협의 홈페이지간 연결을 위한 **농산물통합쇼핑몰 구축('99.9)**
  - PC통신 위주로 운영되던 **농림수산정보망(AFFIS)에 인터넷 서비스(ISP) 기능을 확충**, 농촌지역에서 보다 손쉽게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기반조성('99예산 : 20억원)
  - 농업기술·유통 및 가격·기상정보 등을 공동 활용할 수 있는 **농림지식관리체제(KMS) 구축**(2000예산 : 5.4억원)
    - '99년 준비과정을 거쳐 2000년부터 구축 운용
- 농업인의 정보활용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강화
  - 정보화실용교육을 강화하고 여성농업인 정보화교육 확대
    - 농업인 정보화교육 : ('98) 13,000명 → ('99) 16,000(여성 30%이상)
  - 농사일이 바쁜 농업인들을 위하여 **현장정보화 교육 강화**
    - 농업인이 전화만 하면 현장에서 정보관련 애로를 해결해주는 농업정보 119서비스 확대(4개 대학 → 12)
    - 정보화공공근로요원을 활용하여 농업인을 방문·교육하는 농업정보화 공공근로사업 실시('99.9 ~ 2000.2)
      - 공공근로요원 360명이 12,000농가 방문교육(22.3억원)

## 7. 신지식농업인 발굴·육성

- 새천년을 맞아 농업분야에서도 신지식인을 적극 발굴하여 선진농업·지식농업·기술농업기반을 구축
  - 농업관련기관·단체 등을 통해 농업부문 신지식인 후보자를 발굴하여 현장실사와 서류심사를 거쳐 1·2차에 걸쳐 총 70명을 신지식 농업인으로 선정
    - \* 1차 35명('99.2), 2차 35명('99.9)
  - '99년중에 100명 수준의 신지식농업인을 발굴
    - 신지식농업인에게는 인증명예의 의미가 담긴 「신지식농업인장」을 수여하여 자긍심을 고취
  - 신지식농업인 사례를 활용한 홍보책자(400부) 및 홍보용 비디오테이프(1,300개) 제작·배포('99.8)
- 앞으로도 지속적인 신지식농업인 발굴을 통해 농업경쟁력을 강화
  - 신지식농업인의 성공사례를 확산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 신지식농업인의 영농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Tour 프로그램실시
    - 신지식농업인의 우수한 기술·지식을 다른 농업인이 공유할 수 있도록 인터넷 네트워크를 구축(AFFIS망의 동호회 활용)
      - \* 농림지식관리체계(KMS) 구축과 연계하여 추진
  - 신지식농업인이 현장의 기술을 실용화할 경우, 이를 산업화 하는데 필요한 특별자금 지원
    - 신기술개발능력을 갖춘 신지식농업인, 벤처형 농업인 등에게 최고 10억원까지 지원(농림기술개발사업자금)

### Ⅲ. 당면 주요 농정현안사항

#### 1. 집중호우 및 태풍피해 복구대책

##### 가. 9.17~24중 집중호우 및 태풍 「바트」 피해현황 및 복구대책

###### □ 피해현황

- 벼 쓰러짐 : 25.1천ha(완전히 쓰러짐 13.4천ha, 반 쓰러짐 11.7)
  - 경기 4.3천ha, 강원 5.2, 전북 1.6, 전남 4.6, 경남 1.7, 충남 1.5 등
  - \* 전체 재배면적의 2.4%(‘98 태풍 「예니」의 경우 28%)
- 농작물 침수 : 6.7천ha(벼 5.2천ha, 시설작물 0.3, 채소·과수 등 1.2)
  - 경북 3.0천ha, 경남 2.0, 전남 1.3, 대구 0.4 등
- 비닐하우스 파손 29ha, 수리시설 파손 131개소, 농경지 유실매몰 37ha

###### □ 피해복구 추진상황 및 조치계획

- 인력을 최대한 동원하여 수확 가능한 벼는 조기에 수확하고, 쓰러진 벼중 아직 덜익은 벼는 일으켜 세움으로써 피해를 최소화(9.28현재 연인원 60만명)
  - 완전히 쓰러진 면적 13.4천ha중 12.2천ha(91%)를 일으켜 세움
- 조기 수확한 벼는 9.25부터 산물수매실시(9.28현재실적 : 26,862톤)
- 품위저하품에 대해서는 ‘98년도의 경우처럼 잠정등외품으로 수매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
- 중앙재해대책본부 합동조사(10월초) 결과를 토대로 복구 및 지원계획 확정 지원

## 나. 7.23~8.4중 집중호우 및 태풍 「올가」에 의한 재해복구 추진상황

중앙재해대책본부가 확정(8.27)한 재해복구지원외에 항구적인 개량복구추진 및 피해가 큰 과수·인삼분야에 대한 별도 특별대책을 병행 추진중

※ 피해상황 : 농작물 침수 65천ha, 과수낙과 37천ha, 인삼침수 179ha

### □ 중앙재해대책본부 확정 재해복구지원

- 총 복구소요액 : 1조 6,260억원(국고 1조 2,669억원)
- 농림부 소관 : 3,513억원(국고 2,436억원)
  - 직접지원(농작물복구, 농경지·수리시설복구 등) : 2,893억원
  - 간접지원(이재민구호, 학자금지원 등) : 620억원

### □ 상습적 재해방지를 위한 항구대책을 병행 추진

- 상습침수지역의 수리시설개보수, 배수개선 사업을 조기에 완공하기 위해 '99년 제2회 추경예산에서 800억원을 확보, 사업추진중
  - 경기·강원북부 등 수해취약지역에 대한 지원 : 300억원
  - 기타 수해취약지역에 대한 지원 : 500억원
- 앞으로 배수개선, 수리시설·방조제 개보수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확대 지원
  - 배수개선수리시설개보수 관련예산 : ('99) 4,672억원 → (2000) 5,029(7.6%증)

□ 과수낙과·인삼침수 피해농가에 대한 특별지원

- 중장기 저리자금 지원 : 1,291억원(과실 1,261, 인삼 30)
  - 과실은 3년거치 4년 분할상환, 인삼은 3년거치 일시상환(연리 5%)
- 상호금융자금 대체를 위한 특별경영자금 지원 : 4,500억원

< 피해율별 지원기준 >

피해율	중장기 저리자금(1,291억원)	특별경영자금(4,500억원)
· 30~50%	작목별 경영비의 20%	상호금융 대출잔액의 70%
· 50~80%	작목별 경영비의 50%	상호금융 대출잔액의 80%
· 80%이상	작목별 경영비의 80%	상호금융 대출잔액의 90%

○ 정책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 대상자금 : 과실 및 인삼 생산유통지원사업, 과수전업농사업, 작목전환지원사업으로 지원된 자금
- 상환연기 : 피해일('99.8.4)부터 2001.12.31기간중 상환도래자금에 대하여 2년간 상환연기(총 222억원 : 과수 200, 인삼 22)
- 이자감면 : 피해일 현재 대출잔액의 이자를 2년간 감면(총 69억원)

□ 9.9~10기간중 호우피해에 대해서도 피해상황을 조사하여 재해복구지원기준에 따라 별도 지원계획 수립

- 호우피해는 침관수 2.8천ha(충남 2.5), 벼쓰러짐 2.1천ha(충남 2.0), 농경지 유실·매몰 476ha(충남 456), 양곡침수 55톤(대전 농협창고) 등으로 집계
- 중앙재해대책본부의 합동조사(9.15~18) 결과를 토대로 복구 및 지원계획 확정 예정

## 2. WTO 차기협상 동향과 대책

### 가. 차기협상 관련 논의동향

- WTO 차기협상은 올해말 미국에서 개최되는 제3차 WTO 각료회의를 계기로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

협상범위 : 이미 협상이 예정된 농산물, 서비스분야 외에 투자, 경쟁정책 등 새로운 분야를 추가하여 광범위한 협상을 하자는 입장(한국·EU·일본 등 수입국)과 농산물, 서비스를 중심으로 협상을 하자는 입장(미국·호주 등 수출국)이 대립

협상방식 : 모든 분야에 대해 동시에 협상을 시작·종결하자는 입장(수입국)과 개별·분야별로 협상을 시작·종결하자는 입장(수출국)이 대립

협상기간 : 대부분 국가들이 3년정도의 짧은 기간을 선호

- 특히, 농산물협상은 수출국과 수입국간 입장 차이가 첨예하여 차기협상에서도 핵심 이슈가 될 것으로 전망

미국·호주 등 수출국 : 농산물 무역장벽을 공산품 수준으로 대폭 낮추고 관세와 보조금의 대폭 삭감, 수입관리제도의 개선, 유전자변형농산물(GMO) 무역자유화 등을 강조

한국·일본·EU 등 수입국 : 식량안보, 환경보전 등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 등을 고려하여 관세와 보조금의 점진적인 감축, 수입관리제도의 국가별 융통성 인정, 유전자변형농산물 교역에 대한 신중한 접근 등을 주장



## 나. 분야별 쟁점 및 협상여건

### □ WTO 농업위원회 논의결과 제기된 차기협상의 핵심예상이슈

시장접근 : 시장접근물량의 증량 및 관리방법 개선, 고율관세의 대폭 삭감, 특별긴급관세제도의 폐지문제 등

국내보조 : 생산과 연계되지 않은 직접지불 등 허용보조요건에 대한 재검토, 감축대상보조의 감축폭 및 감축방식, 생산제한을 조건으로 하는 직접지불제도의 폐지문제 등

수출보조 : 수출보조의 철폐, 수출신용에 대한 규제, 수출세 및 수출제한에 대한 규제문제 등

기타쟁점 : 농업의 다원적 기능, 개도국 우대문제, GMO의 무역자유화 문제 등

### □ 전반적인 협상여건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

- 자유무역과 시장경제원리 확산이라는 장기목표 아래 보조금을 삭감하고 시장개방을 확대하는 것이 협상의 기본방향이어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수입국들로서는 어려움이 예상
- 미국 등 수출국들은 우리나라의 쌀 수입제한 예외조치 유지에 불만을 갖고 있고 개도국 지위 유지도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협상여건이 과거 UR때보다 더 어려울 것으로 예상

## 다. 차기협상 대응방안

- 대내적으로는 「차기농산물협상대책단」을 운영하여 의견수렴, 동향홍보, 쟁점분석 및 우리입장 정립 작업을 추진

통상정책협의회 : 분기별로 회의를 개최하여 협상동향을 알리고  
각계 의견을 수렴(지금까지 9회 개최)

- 구성 : 농업인단체, 소비자단체, 학계, 언론계, 연구기관 등(23명)

실무지원반 : 시장접근, 보조금, SPS, GMO 등 과제별  
팀으로 나누어 쟁점분석 및 입장 정립 작업

- 구성 : 농림부 및 유관기관의 협상관련 실무자
- 대학교수·연구원으로 구성된 자문단이 작업방향 조언

협상추진반 : 협상전략을 수립하고 실제로 협상에 참여

- 구성 : 농림부 협상담당자, 농경연 관계자, 통상전문변호사 등

- 통상분야 경험이 많은 전문가를 담당자로 장기보임하고, 국내외의 통상전문변호사를 활용하고 있으며, 협상기간동안 협상전담 고위직 설치를 추진하는 등 협상력 제고
- 공청회, 국제세미나, 농업단체간담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 다양한 경로로 NGO 등에 대해 정확한 협상동향을 알리고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

□ 대외적으로는 국제기구의 협상관련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입장이 비슷한 나라와 공조를 강화

○ WTO, OECD, FAO 등 국제기구의 협상관련 논의에 적극 참여

- APEC에서 수출국들이 적극 추진한 식품·유지종자의 조기 자유화 시도를 일본과의 공조를 통해 저지
- OECD 농업각료회의('98.3) 및 각료이사회('99.5) 선언문에 농업의 다원적 기능의 중요성을 고려해야 함을 명시
- 식량순수입국에 있어 농업의 다원적 기능('98.9, WTO농업위), 농산물협상에 대한 한국의 입장('99.4, WTO이사회), 한국농농사의 다원적 기능('99.9, FAO세미나) 제안서 등 제출

○ 우리와 입장이 비슷한 나라와 공조를 강화하고 주요협상국 동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대응논리개발에 활용

< 주요실적 >

- 고위급 통상대표 면담(21회)과 우리나라·일본·EU·스위스·노르웨이 등 「5개국 수입국모임」을 구성하여 우리입장 지지요청 및 공조방안 협의
- 특히 일본과는 한·일 농업장관회담을 개최('99.5)하여 차기협상에 대한 공조방안을 협의하고 앞으로 정기적인 회합을 갖기로 합의

< 향후계획 >

- 한·노르웨이 농업장관회담 개최('99.10), FAO 총회기간중('99.11) 주요국 농업장관 및 WTO사무총장 면담 등을 통해 우리입장을 지속적으로 설득, 이해와 지지를 요청

### 3. 협동조합중앙회 설립 추진상황

#### 가. 「협동조합중앙회 설립위원회」 구성

- 9.7일 「농업협동조합법」이 공포됨에 따라 「협동조합중앙회 설립위원회」를 구성(9.10), 2000.7.1일 새 중앙회의 출범을 차질없이 준비
- 설립위원회는 농·축협대표, 학계, 농업인단체, 언론인 등 중립적 인사와 전문가로 구성(총15인)
  - \* 공동위원장 : 농림부차관, 정세욱교수(명지대)
  - 제1차회의(9.10) : 위원회규정 및 향후운영계획 등을 논의
  - 제2차회의(9.20) : 설립사무국 및 설립기획단 운영계획, 통합 중앙회 설립을 위한 세부추진계획 논의
- 설립위원회는 중앙회 정관작성, 조직 및 인력조정 등 중앙회 설립에 관한 업무를 총괄
- 설립위원회의 업무를 실무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기구로서 「설립사무국」과 「설립기획단」을 설치·운영
  - 설립사무국은 농림부와 협동조합 직원(25명내외)으로 구성
  - 설립기획단은 일선조합장과 중앙회 임직원 등 실무 전문가로 구성
- 중앙회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분리추진을 검토하기 위해 협의회를 구성
- 협의회는 농·축협, 학계, 농업인대표, 정부대표 등으로 구성되고, 연구기관 선정, 용역의뢰 발주 등 신·경분리의 타당성 검토 작업을 실무적으로 지원
  - 신·경분리 연구용역사업 지원을 위해 2000년 5억원 예산 확보

## 나. 설립위원회에 축협 동참 유도

- 축협측은 설립위원회에 불참하고 있으나, 조합장과 임직원을 상대로 대화를 통하여 참여를 유도하고 있음.
- 많은 일선축협조합장들은 국회심의과정에서 축산부문의 전문성과 자율성이 보장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
  - 향후 유통활성화 자금지원 등 일선조합 육성 및 양축농가 지원 대책에 관심이 매우 큰 상태임.
- 축협중앙회 노조의 경우 노조원들의 고용보장을 위해 통합반대 운동을 지속할 것으로 보이나, 통합법에 명시한 대로 구조조정시 농·축협간 동일비율을 적용하는 등 형평성을 유지하여 고용불안 최소화 노력
- 협동조합개혁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중앙회 통합 및 일선조합 합병에 따른 비용은 정부가 최대한 지원
  - 일선조합에 대해서는 부실한 조합 합병으로 인하여 생기는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장기저리자금을 지원하고,
  - 아울러, 협동조합이 산지유통혁신 등 경제사업의 중심체로 발전할 수 있도록 우수조합을 선별하여 조합당 30~50억원을 지원하여 산지유통혁신, 상호금융 금리인하, 비료·농약 등 농자재값 인하 등을 유도
  - 중앙회 통합시 발생하는 취득세 등의 세금감면이 이루어지도록 지방세법 시행령 등을 개정하기 위해 관계부처간 협의 추진중
  - 부실채권 정리문제 등은 협동조합의 건전성 확보차원에서 해결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중

## 4. 농업기반공사 출범준비

### 가. 농업기반공사 설립 추진상황

-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공포이후 정부, 농조 등 3기관대표, 학계, 농업인단체 등으로 설립위원회(15인)를 구성
  - 2000.1.1 공사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준비
- 농조 등 3기관 통합과 관련하여 시급한 현안과제와 농업 기반공사 조직 및 기능설정에 필요한 기본업무는 마무리단계
  - 3기관 현황과약, 인력D/B 구축 및 정보시스템 통합 착수
  - 농진공, 농조연에 이어 농조 구조조정도 '99.9.30까지 완료 예정
  - 공사의 조직·인력통합 및 기능설정, 회계제도 통합 및 자산 실사와 관련, 외부 전문기관과 공동작업 진행
- 통합과정에서 기관간 교육 실시 및 재해 공동대응 등을 통해 직원간 화합 유도
  - 주요과제에 대해 3기관 직원대상 설명회를 개최(2회)하고 농진공·농조연 직원을 대상으로 물관리 체험교육을 실시(총1,477명)
    - \* 7.23 ~ 8.4 발생한 집중호우시 공동대응 조치
  - 인사, 조직, 보수문제 등과 관련, 조직간 갈등이 있으나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 해소노력
- 농업기반공사 출범지원을 위한 예산확보
  - 농업기반공사 출자금 : ('99) 70억원 → (2000) 400

## 나. 향후 추진계획

- 통합의 효과가 농업인에게 환원되도록 하여 농업인의 편익 증진
  - 통합추진과정에서 약속한 수세(조합비)를 폐지하여 연간 300억원 수준의 농업인부담 경감
  - 농조의 오랜 물관리 현장경험과 농진공의 기술력을 결합하여 효율적인 물관리와 시설관리를 통해 농업인 서비스 증진
  - 국지적인 기상재해에 대해서도 개별조합 중심의 대응체제에서 벗어나 통합공사가 예방 및 사후조치를 강구, 농업기반보호능력 강화
- 농업기반공사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설립업무 마무리
  - 농업인의 영농편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지역·현장을 중심으로 한 조직체제와 통합기관간 형평성이 유지되는 인사제도의 기본 틀을 10월말까지 확정
  -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시행령, 시행규칙 제정 및 각 기관별 자산실사를 연말까지 마무리
  - 경영목표설정, 사무실통폐합, 임직원인사배치, 자체예산편성 등 신설공사 업무인수·인계에 만전
-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대한 헌법소원은 기각 되도록 대응
  - \* 농조직원 정년조정에 관한 헌법소원은 정년을 조정한 「농조인사 규정준칙」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99.8.25)

## 5. 농축산물 안전성 확보대책

### 가. 과채류에 대한 잔류농약조사 강화

□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품질좋은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농산물의 안전성 향상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음.

○ 분석인력, 시설·장비보강 등을 통해 조사물량을 지속적으로 확대

	<u>'98</u>		<u>'99</u>		<u>2000</u>
- 분석인력확보	: 74명	→	100	→	114
- 시설·장비확충	: 843대	→	942	→	1,027
- 조사물량 확대	: 10,607건	→	27,000	→	40,000

○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폐기, 용도전환, 출하연기 등 조치

\* '98년 : 10,607건을 조사하여 444건을 조치

\* '99.8까지 : 19,528건을 조사하여 284건을 조치

○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는 1년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하여 조사의 실효성을 제고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반영)

□ 적은 면적에서 재배되는 작물에 대해 새로이 농약안전사용 기준을 마련하고 잔류허용 기준을 확대 설정할 계획

○ 안전사용기준마련 : ('99) 8작물, 14농약품목 → (2000) 14작물, 42농약품목

- 현재 103개 작물, 575개 농약품목에 대해 안전성 조사중

○ 관계부처(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안전사용기준이 마련된 농약에 대하여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협의



## 나. 축산물 안전성 강화

### (1) 축산물위생수준의 향상

- 국내산 축산물에 대해 식육잔류물질 및 미생물 등 위생검사 항목을 확대하여 축산물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신뢰 확보
  - 잔 류 물 질 : ('98) 30종 → ('99) 44 → (2001) 113
    - \* Codex 기준인 87종보다 26종 확대 적용 계획
  - 병원성미생물 : ('98) 5종 → ('99) 9 → (2001) 11
- 축산물 생산에서 소비까지의 전단계에 걸쳐 위생저해 요소를 사전에 파악, 제거하는 「위해요소 중점관리제도」(HACCP)를 도축장, 축산물 가공장 등에 대해 확대 적용
  - 도축장은 규모가 큰 도축장부터 우선 의무적으로 적용하고, 2003까지 단계적으로 전체 도축장에 확대 적용
    - 이를 위해 도축장 현대화를 연차별로 지원: ('99) 10개소 → (2002까지) 50
  - 축산물가공장은 HACCP 적용이 가능한 품목(햄, 소시지, 우유, 치즈 등)의 가공장에 대해 우선 적용해 나가면서 업계가 자율적으로 적용하도록 지도
- 수입축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이옥신 등 새로운 유해물질의 검사기준과 검사방법을 추가로 조기 설정토록 관계부처 협의 추진
  - 다이옥신 관련 예산확보 : ('99) 7억원 → (2000) 14

## (2) 돼지콜레라 근절대책 추진

### □ 2001년 청정화 선언을 목표로 예방접종 100%실시 추진중

○ 예방약 100% 지원 : ('98) 11,000천두분 → ('99) 28,320

- 접종대상두수(사육두수×4회)의 100% 공급

\* 예방접종을 추정 : ('98) 64% → ('99.7) 84.6 (일본 86)

○ 특히, 예방접종율이 낮은 100두 미만 소규모 양돈농가 및 멧돼지 사육농가 등 15천호(40만두)에 대하여는 시·군별 예방접종팀이 농가를 방문, 강제 예방접종을 실시중

### □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농가에 대한 점검 강화

○ 도축시 예방접종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하여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돼지의 도축을 제한('99.6.1)

○ 도축장 등에서 예방접종 여부 확인을 위한 혈청검사를 확대 실시하고, 미실시농가에 대한 과태료 처분 강화

- 혈청검사 : ('98) 50천건 → ('99) 400('99.8까지 265)

\* 혈청검사결과 예방접종 항체양성율이 향상 : ('98) 76%→ ('99.8) 96

- 과태료를 종전의 100만원이하에서 30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99.7.1)

○ 돼지콜레라 발생지점 인근 10km이내 농가 돼지 이동제한('99.7.1)

○ 방역관리 위반농가에 대한 농장폐쇄·사육제한근거 신설(가축 전염병예방법) 및 가축방역관에게 사법경찰관 자격부여(사법경찰관리등에관한법률)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

### □ 민·관·학·업계 공동으로 “돼지콜레라박멸비상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하여 양돈농가의 자율적인 교육·홍보·지도·점검을 하고 있음.

○ 운영활성화를 위해 대책본부를 공익성 기부금 대상단체로 지정 ('99.9)하여 기부금 납부분은 법인세법상 손비처리

## 다. 수입 농축산물 검역대책

- 외래병해충의 유입 예방 및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92~'97간 제1·2단계 「동식물검역기능강화 대책」을 수립추진
  - '98년까지 추진토록 되어 있는 제2단계 동·식물검역기능 강화 대책을 '97년말로 조기종결(총 425억원을 투자)
    - 정밀검사 실험실, 시료자동처리시스템 등 시설·장비부분에 집중투자
  - 검역시설·장비확충, 인력보강 등 하드웨어 부문은 어느정도 보강되었으나 검역인력 전문화·첨단장비 등은 계속 보완이 필요
    - '97말 기준으로 검역능력은 일본의 60~70% 수준인 것으로 평가됨
- '98~2000간 제3단계 검역기능 선진화대책을 수립·추진 중이며 검역제도개선, 검역능력 및 전문성제고, 검역업무 전산화 등 소프트웨어 부문을 집중보강 계획
  - 2000년까지 총 511억원을 투자, 검역 및 위생검사제도의 선진화 추진
    - 시설·장비는 선진국과 동일한 수준, 검역인력의 전문성 및 기술능력은 선진국의 80%이상 수준 달성
  - 검역능력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정밀검사, 현장검역, 국제검역 정보 분석 등 분야별 전문인력 충원(296명) 및 국내외 훈련실시(876명)
  - 검역정보수집 및 분산능력 향상을 위해 국내외 기관간 Network 구축 및 수입축산물에 대한 통관이후 관리시스템 전산화 등 추진
  - 신설 공항만 등에 동식물 검역시설 확보 및 첨단 검사장비 확충

## 6. 쇠고기 수입관련 추진상황

- 축산물유통사업단이 수입한 몬포트사제품 쇠고기에서 2차례 하자를 적발하여 관련자 제재조치 및 검품강화방안 마련
- '98.8 계약하여 '99.2 Viteck/Unicorp사가 공급한 등급조작품 313톤에 대한 조치
  - 몬포트사로부터 등급조작사실을 확인(3.27)하고 관련업체 입찰참여 금지(4.21) 및 등급차액 76천불 구상(6.30)
    - 입찰참여금지 : 공급사 18개월, 몬포트사 및 국내대리점 2개월
  - 현재 미농무부에서 몬포트사 등급조작혐의 등에 대해 조사를 진행중에 있으며, 검역증 조작혐의 등의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입찰참여 금지조치(7.2)
  - 수입품에 대한 검품 강화방안을 마련, 시행(8.7)
- '98.11 계약하여 '99.8 몬포트사가 공급한 하자품 324톤에 대한 조치
  - 등급차액 78천불 손해배상 청구(9.7)
    - \* 하자품 내역 : BOX상 등급표기상이 54톤, 정형불량 54톤 등

### 금후 조치계획

- 몬포트사 측이 납입기한(10.9)내 배상치 않을 경우 계약이행보증금에서 상계추진
- 국내전문기관과 미농무부 관계기관과의 합동조사 추진('99.10)
  - 이미 축산기술연구소와 축산물등급판정소에 하자품 등급확인 및 미농무부 등급판정기관 전문가 방한요청
- 시행중인 검품강화 방안을 철저히 이행하고, 국내외 관련업체 동향에 대한 신속한 정보수집·교환체제 구축
- 검품표본수 확대(0.5% → 5), 검품항목 세분화 등
- 수출국 국내대리점 및 SBS업체와의 정보수집 및 교환체제 구축

## 7. 농업분야 Y2K문제 해결 추진상황

- Y2K문제가 범세계적으로 대두됨에 따라 농업분야에 대해서 문제 발생소지를 사전에 제거하기 위한 시책을 다각적으로 강구
  - 점검대상 : 유리온실 등 민간농업 자동화설비 및 농림부, 산하기관 및 관련단체의 주전산기
- 민간 시설농업장비에 대해 실사·정밀진단 등을 실시하고 해결방법을 전파하기 위한 핸드북 발간·배포
  - '99.2 ~ 3월중 전국 민간농업시설중 Y2K 발생가능 장비들의 분포상황에 대해 농·축협을 통해 현지조사 실시
    - 조사대상 : 시설원예(441개소), 축산시설(1,696개소), 농업기반시설(27개소), 미곡종합처리장(301개소)
  - '99.5 ~ 6월중에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기종별로 대표성 있는 시설에 대해 민간 및 농진공 전문가를 현지에 파견하여 정밀진단 및 해결방안지도
    - \* 진단결과 농업시설들이 완전 자동으로만 운영되는 경우가 드물기는 하지만, 시설의 완전한 가동을 위해서는 프로그램 수정 등 보완 사항들이 나타남
  - 방조제, 양·배수장 배수갑문 등 물관리 시설 및 미곡종합처리장에 대해서도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해결 완료('99.9까지)
  - 농업시설 현장진단 및 지도 내용을 종합한 Y2K 대응 핸드북을 발간(3,300부)하여 시설농가 등에 배포('99.8)

□ **농림관련기관의 경우 '97. 11월부터 대책반을 구성해 추진한 결과 '99. 8월말까지 대부분 해결**

- 농림부 및 소속기관은 정보분야(주전산기·통신장비·PC 등), 비정보분야(실험장비, 자동제어장치 등)로 구분하여 점검 실시
  - 식물검역소와 수의과학검역원은 자체점검후 문제해결선언('99.8)
- 농협중앙회는 정보통신기술사협회로부터 문제없다는 인증을 받았고('99.6.24), 축협중앙회는 10월말까지 조치완료 계획
  - 그럼에도 불구하고 '99말 ~ 2000초 금융시스템에 비상사태가 발생할 것에 대비하여 자체 대책반을 편성·운영
- 정부투자기관(농유공, 농진공)은 '99. 8월말 까지 해결 완료

□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 및 교육·지도 강화**

- 공공분야의 Y2K문제 해결을 재점검하고 비상시 대비 계획을 마련
- 민간분야는 정보화 공공근로요원(360명)을 활용, Y2K 상황 점검
- 자동화시설 농가에 대해 Y2K문제 조치를 촉구하는 서신을 발송하고, 비상조치요령 스티커를 제작·배포

< Y2K문제 해결사례 >

농장명 : 고봉영농조합(경기 고양시)

작 목 : 장미 등 화훼

기 종 : 네덜란드 Brinkman사 양액공급기

증 상 : 연도가 2000년으로 바뀌는 경우 양액공급시스템 작동중지

조 치 : Brinkman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보정 프로그램을 제공 받아 설치·해결

## 8. 김포매립지 처리상황

- 정부는 동아건설 채권금융기관이 2차('98.5, '98.11)에 걸쳐 김포 매립지의 매입을 건의함에 따라 **'99.3.25 매입방침을 결정**
  - 매입방법은 금융·기업 구조조정차원에서 토지공사의 기업 보유토지 매입방식을 적용하였으며, 매입주체로는 법령상 농지소유가 가능한 정부투자기관인 농어촌진흥공사를 선정
    - \* 농림부, 재경부,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간 합의
- 농어촌진흥공사는 정부의 매입방침에 따라 수 차례 현지실사를 거쳐, **'99.5.31 채권금융기관과 6,355억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99.8.20 양도·양수절차를 완료**
  - 가격결정은 '98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매입시점까지의 지가하락을 13.25% 및 토지공사의 '98평균 할인매입율 76.79%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이며, 이는 **'98공시지가의 66%수준임.**
    - \*  $9,545\text{억}\text{원} \times (1-0.1325) \times 0.7679 = 6,355\text{억}\text{원}$   
( '98 공시지가 ) ( 지가하락율 ) ( 할인매입율 ) ( 9,545억원의 66% )
  - 매입재원은 농진공이 발행한 공사채 4,470억원과 금융기관의 장기차입금 1,885억원으로 충당
    - 공사채 등으로 조달한 매입자금은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토지매각 대금 등으로 상환
    - 개발이익 발생시 국고에 환수하고, 손실발생시 재정에서 보전
- 토지이용계획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2000.12월까지 최종 계획을 수립·확정**
  - 우량농지의 활용과 주변 입지여건 등 경제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확정

## IV. 국정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지 적 사 항	조치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input type="checkbox"/> 유전자조작 농산물에 대한 표시를 의무화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할 것</p>	<p><input type="checkbox"/> 조치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적근거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유전자 변형 농산물에 대하여 표시를 의무화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마련(제16조)</li> </ul> </li> </ul> <p><input type="checkbox"/> 향후추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전자변형 농산물 표시제(안) 마련 및 관계부처·단체 등의 의견수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WTO/TBT 협정에 따라 WTO에 표시제(안)을 통보후 시행 예정</li> </ul> </li> </ul>
<p><input type="checkbox"/> 산지가공공장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강화 등 산지가공공장의 가동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p>	<p><input type="checkbox"/> 조치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지원 전체사업체(1,150업체)에 대한 경영 실태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사기간 : '98.3.30 ~ 9.10</li> <li>- 조사기관 : 농수산물유통공사, 농협중앙회</li> </ul> </li> <li>◦ 조사결과분석 및 경영활성화대책 마련 ('98.12.10)</li> <li>◦ 경영실태 조사결과 정리대상 부실업체 110개소 추가퇴출조치('99.3, '99.8)</li> <li>※ '98년까지 200개소 기퇴출</li> </ul> <p><input type="checkbox"/> 향후 추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영부실업체중 회생가능업체에 대한 경영 컨설팅 실시('99. 3 ~ 12)</li> <li>◦ 원료수매자금 지원확대('99.3 ~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12억원 추가지원</li> <li>- 계약재배, 수출실적 등을 감안한 차등지원제 실시</li> </ul> </li> </ul>



지 적 사 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인삼의 품질관리 완화로 해외시장에서의 불신이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 강구</p>	<p>◦관측 및 홍보지원강화('99. 3 ~ 1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TV, 라디오 등을 통하여 전통가공식품 홍보</li> <li>- 우리식품전시회, 명절 관측행사 등 다양한 관측전 추진</li> <li>- 수출유망신제품 개발업체 등을 적극 발굴 지원</li> </ul> <p>□ 조치결과</p> <p>◦우리인삼의 신뢰도 유지를 위한 품질관리대책을 「인삼산업법」 개정시 반영 ('99.1.21 공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삼연근(年根)을 제조단계부터 분리·표시 토록 의무화(신설)</li> <li>- 연근위조 등 유통질서 문란자는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부과</li> <li>- 제조업체에 검사원을 수시로 출입시켜 품질 관리상태를 확인토록 함(신설)</li> <li>- 연근 및 농약잔류검사기준 강화</li> <li>- 자체검사업체 관리감독 강화</li> </ul> <p>◦인삼수출진흥을 위한 홍보강화 및 지원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려인삼 홍보용 캐릭터 확정, 포스터 제작, 인터넷 홍보를 위한 D/B 구축</li> <li>- 수출업체 원료구입자금 지원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98)450억원 → ('99)500</li> </ul> </li> <li>- 유망잠재시장(이태리) 홍보전 개최('99.9.10~9.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려인삼 세미나 및 전시판매행사</li> </ul> </li> </ul>

지 적 사 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새만금방조제의 최종 물막이 전에 상류의 환경기초시설 설치 등 수질 개선 대책 수립</p>	<p>□ 향후 조치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려인삼캐릭터 활용으로 중저가 외국삼과의 차별화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캐릭터상표등록(미국 등 7개국)</li> </ul> </li> <li>◦수출진흥 대책 지속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 홍콩 등에 인터넷 홍보 활성화 및 유망잠재시장 판촉전 개최추진(11월, 베트남)</li> <li>- 수출실적 : ('98.7) 35백만불 → ('99.7) 42(20%증)</li> </ul> </li> </ul> <p>□ 조치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학적인 최신기법에 의한 수질예측 및 대책안 환경부 송부('98.12.11, 농진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환경부에서 농진공의 수질예측 및 대책안 분석·평가중</li> </ul> </li> <li>◦ 민관공동조사단을 구성하여 수질 대책(안)의 객관적·과학적 분석 및 평가중</li> <li>◦ 대호 친환경농업 시범사업 착수('98.11)</li> </ul> <p>□ 향후 추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질대책안 분석·평가 '99.10월까지 완료 (주관 : 환경부)</li> <li>◦ 민관 공동조사단의 조사연구 및 대책안 재평가</li> <li>◦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범정부 차원의 「수질보전종합대책」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만경·동진강유역 환경기초시설</li> <li>- 인공습지조성, 저층수 배제시설, 금강호 희석수 도입 등 내부오염방지 대책</li> </ul> </li> <li>◦ 수질대책 및 민관공동조사결과(2000.4 예정) 등을 기초로 방조제공사 일정 조정·추진</li> </ul>

지 적 사 항	조치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 세계식량수급불안에 대비하여 중·장기적인 식량 확보계획과 쌀 등 주요 곡물의 비축제를 도입하는 방안 강구</p>	<p>□ 조치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불안한 세계곡물수급 상황에 신속·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세계 곡물수급 조기경보체제」 구축('98.9.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림부 및 관련기관(6개) 합동 분석팀을 구성하여 매월1회 세계곡물 수급 및 가격동향을 분석·발표(11회 발표)</li> </ul> </li> <li>◦ 「농업·농촌기본법」에 식량자급 수준유지 노력의무 명시(제6조)</li> </ul> <p>□ 향후추진 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4년까지 110만ha 논면적 확보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지전용 수요를 억제하는 한편, 농지전용 수요를 산지활용으로 유도</li> </ul> </li> <li>◦ 기상이변에 대응, 항구적인 안전 영농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업진흥지역 논(735천ha)은 2004년까지 100% 수리답화 추진</li> <li>·전체논 수리답율 : ('97) 76% → (2004) 88</li> </ul> </li> <li>◦ 기상재해에 강한 품종개발·보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수확품종 : ('98) 38개 → (2004) 50</li> <li>- 재배면적점유율 : ('98) 60% → (2004) 80</li> </ul> </li> <li>◦ FAO권장수준 이상(540~570만석)의 쌀 비축</li> </ul>

지 적 사 항	조치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 농업부문의 로얄티 부담을 줄이고 국내 육종산업의 육성을 위한 획기적인 대책마련</p>	<p>□ 조치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품질 우량채소종자 개발·보급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내용 : 육채종 시설 및 신품종육종 자금 지원</li> <li>- 지원액(농특) : ('99) 30억원</li> <li>·작물확대 : 채소 → 과수, 화훼 등 추가</li> <li>·대상자확대 : 종자업체 → 개인육종가 추가</li> </ul> </li> <li>◦ 채소종자 구매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내용 : 종자업체에 구매자금을 지원</li> <li>- 지원액(농안기금) : ('98) 21억원 → ('99)21</li> </ul> </li> <li>◦ 국내개발이 필요한 품종에 대하여는 기획 연구과제로 선정하여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액('95 ~ '98) : 47개과제 148억원</li> </ul> </li> </ul> <p>□ 향후 추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품종 육성 및 종자구매자금의 확대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품종육성자금 : ('99) 30억원 → (2004) 100</li> <li>- 종자구매자금 : ('99) 21억원 → 연도별로 증액추진</li> <li>- 기획연구과제 : ('99 ~ 2004) 20개과제, 216억원</li> </ul> </li> <li>◦ 유전자원보존시설 설치지원 : (2000) 5억원</li> </ul>

지 적 사 항	조치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 농어촌에 대한 제2단계 투융자 계획을 조속히 마련할 것</p>	<p>□ 조치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산자단체·소비자대표·학계 등 전문가로 「농정개혁위원회」 구성·운영('98.3.26, 26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정개혁위원회로부터 건의('98.7월) 받은 「농업·농촌발전계획」을 기초로 세부실천계획 마련('98.10.13)</li> <li>- 「농업·농촌기본법」 제정(2000년부터 시행)</li> </ul> </li> <li>◦ 농업·농촌 투융자계획 확정('99.2.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 투융자규모 : 45조원</li> <li>- 투융자기간 : '99 ~ 2004년(6년간)</li> </ul> </li> <li>◦ 각계의 의견을 수렴, 「농업·농촌투융자 실천계획」을 확정('99.8.19)</li> </ul>
<p>□ 가공용 수입쌀의 처벌 규정 강화 등 수입쌀의 불법유통방지대책을 수립할 것</p>	<p>□ 조치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단립종과 장립종을 혼합한 혼합미 형태 공급을 추진하여 가공용 쌀 식별을 용이 하도록 개선</li> <li>◦ 가공업체별로 농관원검사원을 관리책임자로 지정하여 관리('98.4)</li> <li>◦ 부정유통업체에 대한 처벌규정 강화('99.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공용쌀 공장이외 장소 유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6개월 공급중지 → 지정취소</li> </ul> </li> <li>- 서류위조 및 변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개월 공급중지 → 지정취소</li> </ul> </li> <li>- 원산지 허위 또는 미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규정 → 6개월 공급중지</li> </ul> </li> </ul> </li> </ul> <p>□ 향후추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급가격을 상향조정하여 가격차이 축소('99.11)</li> <li>◦ 단일곡종 공급을 축소하고 혼합미 공급 대상 확대</li> <li>◦ 가공용 쌀 배정기준을 객관화하여 투명성제고</li> </ul>

지 적 사 항	조치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농가부채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장기적으로 농가부채를 해소할 수 있는 근본대책 마련</p>	<p>□ 조치결과</p> <p>&lt; '98.11 부채대책 &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업인단체·학계가 참여한 「부채대책위원회」에서 부채대책 건의안 마련('98.10.13)</li> <li>◦ '99 예산에 확보된 기초재원과 부채대책위원회 건의안을 토대로 「농가부채 및 경영안정대책」 시행('98.11.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98년과 '99년에 상환이 도래하는 정책자금(9,012억원)을 2년간 상환연기</li> <li>- 상호금융자금은 협동조합 책임하에 2년간 상환을 연기하고 금리도 2%P 인하</li> </ul> </li> <li>◦ 농가부채경감대책 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건의사항을 토대로 보완대책 마련('98.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출금 원금뿐 아니라 이자도 상환연기 대상에 포함</li> <li>- 「농신보 특례규정」을 제정하여 1억원까지 간이신용조사 및 무입보로 농신보에 의해 신용보증</li> <li>- 부채대책자금 금리인하(6.5% → 5.5)</li> </ul> </li> <li>◦ 상호금융 대출금리 인하('98.12.31현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체 상호금융 취급조합중 96%가 금리인하</li> </ul> </li> </ul> <p>&lt; '99.3이후 부채대책 &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실경영체 정리·인수 지원('99.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실경영체 정리지원을 위한 세부계획 마련·회생경영자금지원 또는 3차 인수자금 지원으로 시설유휴화 방지 및 경영안정 도모</li> <li>- 지원규모 : 1,000억원(부채대책자금 1조 5,000억원중 확보)</li> </ul> </li> </ul>

지 적 사 항	조치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호금융 대출금리 인하 지속 추진</li> <li>◦ 상호금융 고금리 대환 자금으로 특별경영자금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금리 상호금융자금을 저리자금으로 대체 지원하여 2년동안 910억원 부담경감</li> <li>- 지원조건 : 연리 6.5%, 2년 일시상환</li> <li>- 지원실적 : 7,000억원(87천호)</li> </ul> </li> <li>◦ 중장기 정책자금 금리 5.5%를 IMF이전인 5%로 추가인하('99.5)</li> </ul> <p>&lt; '99.7이후 부채대책 &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축산경영자금 44,700억원의 금리 6.5%를 IMF 이전인 5%로 인하('99.7)</li> <li>◦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무입보 한도 상향조정등 제도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입보 신용보증 한도 : 5천만원 → 1억원</li> <li>- 보증취급기관을 기존 농·수·축·임협에서 농유공인삼협까지 확대하고 보증대상자도 농수산물 수출업체 등으로 확대</li> </ul> </li> <li>◦ 특별경영자금 1조4,500억원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리의 상호금융자금 대체와 집중호우 및 태풍 피해농가를 지원해 경영회생 도모</li> <li>- 지원조건 : 연리 6.5%, 2년후 일시상환</li> </ul> </li> </ul> <p>□ 향후 추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대보증 부담완화 및 연체채무 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대보증조건으로 대출된 농업용 자금을 2000.1 ~ 6월사이에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에서 대체</li> </ul> </li> </ul>

지 적 사 항	조치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 부루세라 백신접종으로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에 대한 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역 체계 정립</p>	<p>- 현재 연체상태에 있으나 경영정상화가 가능한 농가에 대하여 '99.10월 특별경영자금 1조 4,500억원중 일부를 연체해소자금으로 지원</p> <p>◦ 2년간 상환유예된 정책자금(9,021억원)의 상환조건 완화 추진 : 분할상환 또는 순연상환방안 강구</p> <p>□ 조치결과</p> <p>◦ 특별대책반 중간조사결과('98.10.20)를 토대로 「부루세라백신접종농가대책위원회」를 설치('98.11.18)하여 백신접종으로 인한 유산농가 지원방안 확정('98.12.30)</p> <p>- 유산태아에 대하여는 87천원씩 국비에서 보상(가축전염병예방법 제34조 규정근거)</p> <p>- 유산어미소에 대하여는 축산발전기금에서 마리당 300만원을 연리 3%,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으로 융자지원('99.2.8)</p> <p>- 지원현황 (단위 : 두, 백만원)</p> <table border="1" data-bbox="667 1249 1423 1489"> <thead> <tr> <th>구 분</th> <th>지원대상 (지원두수)</th> <th>지원규모 (지원금액)</th> <th>비 고</th> </tr> </thead> <tbody> <tr> <td>유산태아</td> <td>12,412</td> <td>1,137</td> <td>완 료</td> </tr> <tr> <td>유 산 어 미 소</td> <td>17,477 (11,981)</td> <td>51,169 (34,815)</td> <td>진행중 (8.25기준)</td> </tr> </tbody> </table> <p>◦ 제도개선</p> <p>- 가축전염병예방법령개정('99.7.1)</p> <p>- 동물의균독주관리요령고시 제정('98.12.2)</p> <p>- 결핵병및부루세라병방역실시요령고시 개정('99.1.23)</p> <p>- 가축방역용 예방약 지원체계 전환(쿠폰 제도 도입)</p> <p>- 공수의 제도 개선('99.7.19)</p>	구 분	지원대상 (지원두수)	지원규모 (지원금액)	비 고	유산태아	12,412	1,137	완 료	유 산 어 미 소	17,477 (11,981)	51,169 (34,815)	진행중 (8.25기준)
구 분	지원대상 (지원두수)	지원규모 (지원금액)	비 고										
유산태아	12,412	1,137	완 료										
유 산 어 미 소	17,477 (11,981)	51,169 (34,815)	진행중 (8.25기준)										



지 적 사 항	조치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 현행 상장경매체제를 유지 하면서 다양한 유통채널 확대를 통한 유통 효율화 및 출하선택권 보장방안 마련</p>	<p>□ 향후 추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축전염병예방법 하위규정 정비 보완</li> <li>◦ 가축방역관에게 사법경찰관 자격부여를 위한 관련법령 개정 추진</li> <li>◦ 생물학적 제제에 대한 국가검정제도 보완</li> </ul> <p>□ 조치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매상제를 제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98.12.2)</li> </ul> <p>&lt;개정안 주요내용&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매상제 도입 등 거래방식 다양화</li> <li>- 민간의 도매시장 참여허용</li> <li>- 중앙·지방도매시장 재분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매시장 경로외에 물류센터 4개소, 직거래장터 50개소 운영</li> </ul> <p>□ 향후추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안법개정후 시행령·시행규칙 개정</li> <li>◦거래의 공정성과 투명성확보를 위해 도매상 자격을 일정규모 법인으로 정하고 정산 제도, 표준송품장 제도 도입</li> <li>◦물류센터 및 직거래시설 건설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2년까지 건설목표</li> <li>·물류센터 : 17개소</li> <li>·직거래시설 : 180개소</li> </ul> </li> </ul>

지 적 사 항	조치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 영농법인에 대한 개선대책 및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p>	<p>□ 조치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 시·도에 부실법인 정비 조치('98.7.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근 2년간('96, '97)연속적자법인은 시·군에서 운영활성화 방안 강구, 제3자 인수, 자진해산 유도</li> <li>- 국고보조금 용도외 사용·유용 등이 확인될 경우 검찰고발 및 자금회수하고, 판로·애로·일시적 자금부족 등으로 운영중단 법인은 제3자 이양 등 활성화 방안 모색</li> </ul> </li> <li>◦ 사후관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림사업지원대상자로 선정할 경우 부적격자가 있는지 또는 특정인이 개인사업을 위하여 위장 설립했는지의 여부 확인</li> <li>- 지원된 시설물이 완공된 경우 당해 법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되었는지를 확인 후 정산</li> </ul> </li> </ul> <p>□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설립후 1년이상 운영실적이 없는 경우 해산을 청구할 수 있도록 「농업·농촌기본법」 시행령에 근거규정 마련</li> </ul>

지 적 사 항	조치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 우량종자개발 및 종자산업 보호를 위한 보완대책 마련</p>	<p>□ 조치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자산업법의 차질없는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품종보호제도 정착으로 국내 육성자의 육종의욕 고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99.8말 현재 출원건수 : 277건</li> </ul> </li> <li>- 품종성능관리 및 종자보증제도의 정착으로 우량종자 생산·공급</li> </ul> </li> <li>◦ 종자산업육성방안 확정추진('99.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간업체의 품종육성 경쟁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업체별 품종육성 능력에 따라 1~3개의 전문작물을 지정하여 전문화 추진</li> <li>·종자업체의 신품종육종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품종육종 민관협력 체계 확립</li> <li>·육종가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개인육종가 발굴 : 화훼 21명 등 27명</li> </ul> </li> <li>- 농협의 종자산업 참여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예산육종연구소 개설('99.9) : 2,800평</li> <li>·농협유통망을 활용한 종자판매확대 등</li> </ul> </li> <li>- 유전자원 종합관리체계 확립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업유전자원 관리체계를 농진청 종자은행으로 일원화</li> <li>·국내외 유전자원의 수집확대</li> <li>·유전자원의 보존 및 특성평가 강화</li> </ul> </li> <li>- 종자산업을 수출전략산업으로 하여 수출 확대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출실적(1~8월) : ('98) 5,172천불 → ('99) 9,666(87%증)</li> </ul> </li> </ul> </li> </ul> <p>□ 향후 추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자산업법상 품종보호대상 작물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행 : 벼, 보리, 배추, 사과 등 27개작물</li> <li>- 향후 10년이내에 모든작물을 대상으로 확대</li> </ul> </li> <li>◦ 종자산업육성방안에 의한 육성계획의 지속적인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항목별 추진기관을 지정하여 적극 추진</li> </ul> </li> </ul>

지 적 사 항	조치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 인체에 치명적인 농약에 오염된 농산물유통을 막기 위해서 산지 간이숙성 검사강화, 농약잔류허용 기준치 적용개선, 도매시장 출하제한, 검사방법 개발 등 농약잔류 농산물 근절 대책 마련</p>	<p>□ 조치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약잔류허용기준치 적용개선('98.10.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잔류농약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는 채소류중에서 최저치를 적용하던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엽경채류, 근채류, 과채류별로 최저치를 적용하도록 보건복지부와 협의·개선</li> </ul> </li> <li>◦ 제도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전성조사결과 부적합품에 대하여 처리 방법을 서면으로 고지하고, 이를 불이행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조항 마련 (농수산물품질관리법)</li> </ul> </li> </ul> <p>□ 향후 추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문인력확보 및 시설·장비확충</li> <li>◦ 안전성 조사물량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98) 80품목, 10,607건 → ('99) 103품목, 27천건</li> </ul> </li> </ul>
<p>□ 한우 적정사육두수 유지와 적정가격 유지를 위한 방안 강구</p>	<p>□ 조치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송아지생산안정제 시범사업 확대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6개 시·군 → 32개 시·군</li> </ul> </li> <li>◦ 우수축 출하포상금 지원강화 및 가축공제 사업 확대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하포상금 : ('98)두당 5~10만원 → ('99)8~12</li> <li>- 가축공제사업 : ('98) 9억원 → ('99) 15</li> </ul> </li> </ul>

지 적 사 항	조치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축산물가격 및 수급안정 대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비확대시책의 적극 추진</li> <li>· 농소상정연대로 축산물소비촉진운동 전개</li> <li>· 가격담합 행위업소 및 고가격 업소에 대한 가격 지도·단속 강화</li> <li>· 할인판촉행사 개최 및 직거래 사업의 적극적 전개</li> <li>- 수매육 방출량 탄력적 조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지 소값 회복을 위해 방출중단</li> </ul> </li> <li>* 산지 소값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98.8.3) 1,487천원 → (12.31) 2,147</li> <li>· ('99.7.2)2,424천원→(9.2)2,931→(9.10)2,894</li> </ul> </li> </ul> </li> <li>□ 향후조치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송아지생산안정제의 전국 확대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정기준가격 상향조정(현행 70만원)</li> <li>- 두당보전금 한도액 상향조정 검토 : 10만원 → 20</li> </ul> </li> <li>◦ 정책자금지원으로 한우 사육농가의 경영 안정 유도</li> <li>◦ 한우고기 품질고급화 및 시장차별화 추진</li> <li>◦ 한우고기 소비기반 확충방안 강구</li> </ul> </li> </ul>

第215回 定期國會(國政監査)

農 林 海 洋 水 産 委 員 會

# 主 要 農 政 推 進 現 況

2000. 10. 25

農 林 部

“농업은 생명산업이다”

## 목 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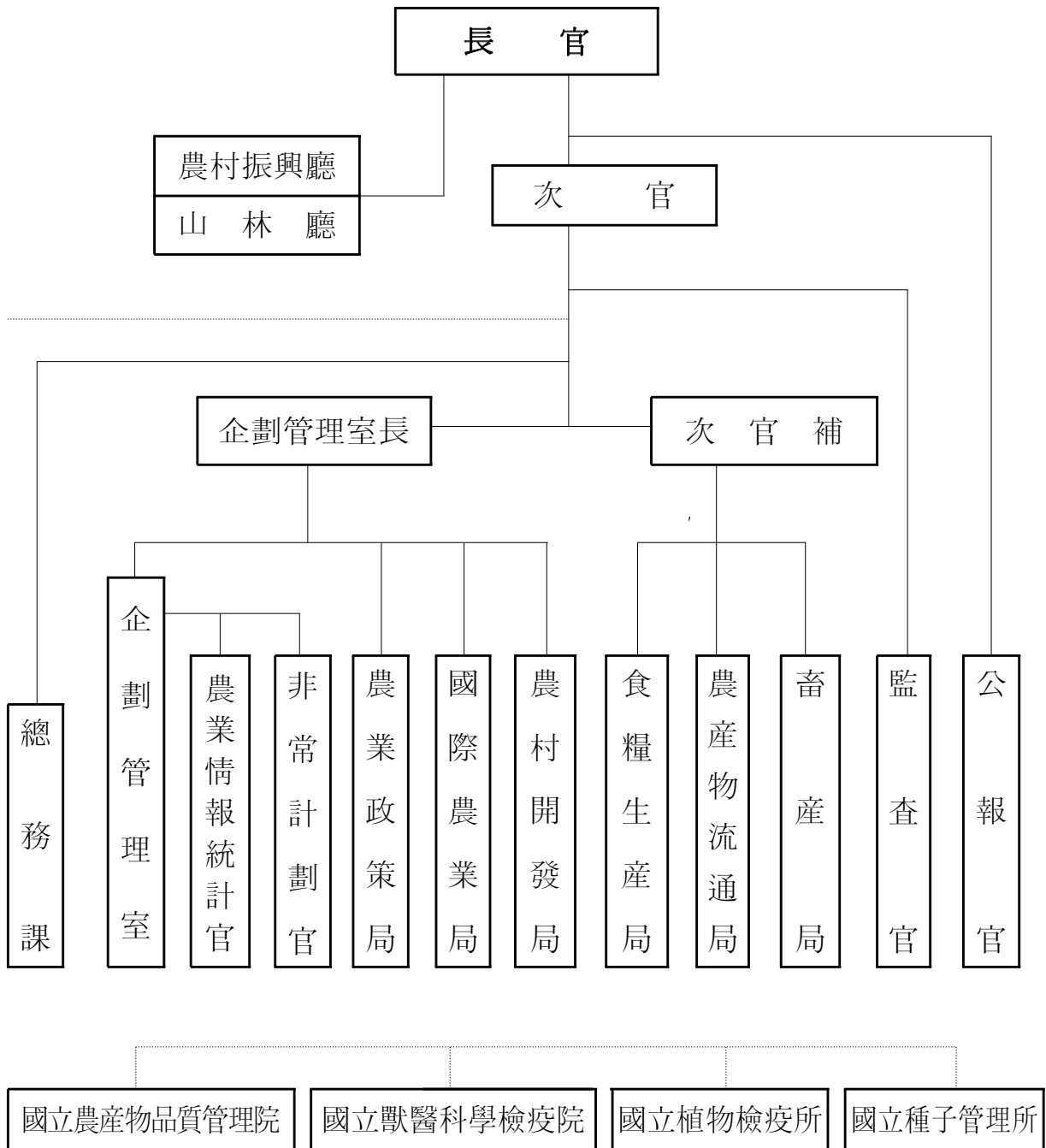
---

I. 일 반 현 황 .....	73
II. 2000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	81
III. 당면현안 추진상황 .....	99
IV. 중장기 농정의 과제 .....	117
V. 2000년 정기국회 입법추진계획 .....	119
VI. '99 국정감사 주요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	122

# I. 일반 현황

## 1. 조직 및 기능

### 가. 조직





## 나. 기 능

### < 본 부 >

실 국 별	주 요 업 무
기 획 관 리 실	농림시책 및 예산조정, 조직·법무·투자심사·농촌 여성정책 수립
공 보 관	농림정책 및 주요현안 홍보
감 사 관	농림부 및 소속기관, 농업관련 단체·기관에 대한 감사
농업정보통계관	농업통계, 농업·농촌정보화
비 상 계 획 관	비상대비 계획 수립
농 업 정 책 국	구조개선, 농지관리, 농촌인력육성, 농업금융 및 협동조합
국 제 농 업 국	농업부문 통상협력, 농산물 수출입정책 수립
식 량 생 산 국	식량정책 및 수급관리, 식량생산, 농업기계, 친환경농업
농 산 물 유 통 국	유통개선, 농산물가격안정대책, 식품산업육성, 채소·과수·화훼작물의 생산 및 수급
축 산 국	축산기반조성, 가축개량, 축산물·사료수급, 축산물위생
농 촌 개 발 국	농업용수개발, 경지정리, 수리시설관리, 생활환경정비

### < 소속기관 >

기 관 별	주 요 업 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산물 품질관리, 농산물검사, 농업통계조사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축산물 및 동물의 검사·검역 등 위생관리와 질병연구
국립식물검역소	수출입 식물의 검역
국립종자관리소	주요 농작물 종자관리

## 다. 정 원

(10.25현재)

	총 계	정 무 직	일 반 직									별 정 직	연 구 직	기 능 직
			계	1급	23급	3급	34급	4급	45급	5급	6~9급			
본 부	명 505	2	426	1	8	1	11	24	44	126	211	8	-	69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2,244		1,669		1		1	13	4	126	1,524	308		267
국립수의 과학검역원	449		275		1	2		13	2	25	232		90	84
국립식물 검역소	375		320		1		1	7	3	19	289		10	45
국립종자 관리소	200		81			1	1	10	1	12	56	7	12	100
소 계	3,268	-	2,345	-	3	3	3	43	10	182	2,101	315	112	496
총 계	3,773	2	2,771	1	11	4	14	67	54	308	2,312	323	112	565

< 참고 >

## 농림관련 기관·단체의 기구 및 정원

○ 2개 기관 2개 단체 : 80,234명

(10.25현재)

구분	기관·단체	기구	정원(명)		
			계	중앙 (중앙회)	지방 (회원조합)
투자기관	농업기반공사	6이사, 2원, 18처(실), 1관리단, 9개지사, 4사업단, 87개지부	6,112	854	5,258
	농수산물유통공사	3이사, 11처·실·원, 5지사, 7해외무역관	500	319	181
	소 계		6,612	1,173	5,439
농업협동조합	중앙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앙본부 : 12본부, 39부, 1처, 5분사</li> <li>- 농업경제 : 4본부, 9부, 1분사</li> <li>- 축산경제 : 2본부, 5부, 4분사</li> <li>- 신용 : 3본부, 13부</li> <li>◦교육지원 : 2본부, 11부(실)</li> <li>◦중앙 및 조합감사 : 1처, 1부</li> <li>◦시·도 지역본부 : 16본부</li> <li>◦시·군지부 : 156지부</li> <li>◦지점·출장소 : 719개</li> </ul>	17,806	17,806	-
	회원조합	농협 1,180, 축협 192, 인삼협 14개소	53,787	-	53,787
	소 계		71,593	17,806	53,787
산림조합	중앙회	5부 6실, 8지회, 1출장소, 4사업소, 3훈련원	450	450	-
	회원조합	144조합	1,579	-	1,579
	소 계		2,029	450	1,579
계			80,234	19,429	60,805

## 2. 2001년 농림부문 예산(안)

### 가. 2001년 예산(안) 규모

□ 농 릫 부 문 : 8조 5,983억원

○ 2000 본예산 대비 3.8%, 추경예산 대비 2.8% 증가

□ 농림부소관 : 7조 6,054억원

○ 2000 본예산 대비 4.7%, 추경예산 대비 4.0% 증가

#### < 2001 농림부 소관 예산규모 >

(단위 : 억원)

구 분	2000예산 (A)	2001예산(안) (B)	증 감 (B-A)	%
I. 사 업 비	71,460 (71,960)	74,633	3,173 (2,673)	4.4 (3.7)
◦생산기반조성	17,124	17,266	142	0.8
◦농업기계화	2,390	2,623	233	9.7
◦생산 및 유통개선	12,541	11,437	△1,104	△8.8
◦기술개발·정보화 및 인력육성	3,363	3,432	69	2.1
◦농가자금지원 및 생활환경개선	1,925	2,179	254	13.2
◦부담경감 및 소득보전	9,337	10,628	1,291	13.8
◦채무상환	15,755	20,475	4,720	30.0
◦비료계정 적자보전	1,810	1,580	△230	△12.7
◦양곡지원	7,215	5,013	△2,202	△30.5
II. 기본적인 경비	1,170	1,421	251	21.4
합 계	72,630 (73,130)	76,054	3,424 (2,924)	4.7 (4.0)

※ ( )는 추경기준임.

## 나. 예산(안)의 중점 편성내용

### ① 논농업직불제 도입(신규) : 2,105억원

- 실제 논농업을 하는 농지를 대상으로 친환경농업 등 부과된 실천의무를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2001년부터 보조금 지급
  - 진흥지역 : ha당 25만원(579천ha)
  - 비진흥지역 : ha당 20만원(311천ha)

### ② 농작물재해보험 시범사업 실시(신규) : 46억원

-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소득 불안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2001년부터 사과배에 대하여 농작물재해보험 시범사업 실시
  - 보험료 지원(30%) : 26억원, 운영비 지원(50%) : 20억원

### ③ 농업경영개선자금 지원 : (2000) 495억원 → (2001) 1,025

- 회생가능 경영체의 경영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한 경영개선자금 5,000억원을 추가 지원할 수 있는 소요예산 등 확보
  - 이차보전 예산 : (2000) 495억원 → (2001) 1,025(107.0% 증)

### ④ 농산물 유통예산의 내실화 : (2000) 9,012억원 → (2001) 8,261

- 하드웨어(시설) 투융자는 신규투자를 지양하고 완공위주로 지원하되, 소프트웨어(유통활성화자금, 물류표준화 등) 중심의 투융자 확충
  - 유통예산중 소프트웨어 예산비중 : (2000) 75.9% → (2001) 79.7

## ⑤ 농업관련조직의 2단계개혁 추진 지원

< 협동조합개혁 지원 : (2000) 2,595억원 → (2001) 2,993 >

○ 협동조합중앙회 통합비용 및 일선조합간 합병지원

- 중앙회 통합비용 : (2000) 415억원 → (2001) 393

- 일선조합합병 : (2000) 180억원 → (2001) 100

○ 일선조합의 유통사업활성화를 위한 지원 확대

- (2000) 2,000억원 → (2001) 2,500(25.0%증)

< 수리시설 유지관리 등 지원 : (2000) 1,043억원 → (2001) 1,424 >

○ 농업용수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수리시설 유지관리 예산 확대

- 수리시설 유지관리지원 : (2000) 643억원 → (2001) 1,024(59.3% 증)

○ 농업기반공사의 조기경영안정을 위한 출자금 지속 지원

- 출자금 : (2000) 400억원 → (2001) 400

## ⑥ 재해대비 생산기반 구축 : (2000) 8,912억원 → (2001) 9,112

○ 농업용수개발사업 확충 및 효율성 증대 지원

- 용수개발 : (2000) 3,603억원 → (2001) 3,642(1.1% 증)

- 수리시설개보수 : 3,128억원 → 3,192(2.0% 증)

○ 홍수시 침수피해의 사전 예방을 위한 배수개선사업 확대

- 배수개선 : (2000) 2,181억원 → (2001) 2,226(2.1% 증)

○ 농업용수관리 자동화(TM/TC) 사업(신규) : 52억원

## Ⅱ. 2000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1. 당면 영농추진 .....	83
2. 농가부채대책 .....	84
3. 협동조합개혁 .....	87
4. 농산물 유통개혁 .....	90
5. 농업·농촌정보화 .....	92
6. 한우산업 발전방안 .....	93
7. 여성농업인 육성 .....	95
8. WTO 농산물협상 동향과 대책 .....	96
9. 농산물 수출확대 .....	97
10. 남북농업교류·협력 .....	98

# 1. 당면 영농추진

< 벼 > : 3,677만석으로 풍년농사 달성 전망('99 : 3,655만석)

○ 벼 재배면적, 양질다수성품종 재배면적 및 쌀 단수 증가

	'98	'99	2000
- 벼 재배면적(A)	1,059천ha	1,066	1,072
- 양질다수성 품종면적(B)	700천ha	827	930
· B/A	66%	78	87
- 쌀 단수	482kg/10a	495	497

\* 이삭이 예년보다 2~3일 빨리 피는 등 작황이 전반적으로 양호하고 예방 위주의 병해충방제 추진으로 병해충 발생이 예년보다 경미

\* 집중호우 및 태풍 등 재해에 신속히 대처하여 피해 최소화

※ 벼베기 실적(10.23현재) : 974천ha(1,072천ha 대비 91%)

## < 채소류 >

○ 가을무배추 : 재배면적이 2~4% 증가되어 적정생산 전망

○ 고 추 : 재배면적 및 작황이 전년수준이므로 적정생산 전망

## < 과실류 >

○ 배 : 成木면적 증가 및 단수증가로 생산증가 전망

○ 사과 : 단수가 늘었으나, 成木면적이 감소(△1.8천ha)하여 생산량은 전년보다 다소 감소 전망



## 2. 농가부채대책

### 가. 농가부채 현황과 문제점

#### < '99 농가경제 주요지표(호당) >

- 농가자산 : 154,226천원(유통자산 : 26,863천원)
- 농가부채 : 18,535천원(생산성부채 76%, 가계성 부채 등 24%)
- 농가소득 : 22,323천원(이중 농업소득 : 10,566천원, 47.3%)

#### □ 농가부채 총액은 25조 6천억원으로 추정(138만 농가기준)

- '99년도 이후 부채증가율은 둔화되고 있으나, 절대액은 증가
  - 호당 농가부채 : ('98) 17,011천원 → ('99) 18,535
  - 부 채 증 가 율 : ('98) 30.7% → ('99) 9.0
- 단기부채 상환능력을 나타내는 부채/유통자산 비율은 하향추세
  - 부채/유통자산 비율 : ('98) 73.6% → ('99) 69.0

#### □ 高額負債농가(특히 3천만원이상)는 부채상환에 어려움

- 부채가 전혀 없거나 200만원이하 농가 : 46만호(농가의 33%)
- 3,000만원 이상 고액부채농가 : 29만호(농가의 21%)
- ※ 농어촌구조개선 투융자과정에서 유리온실·축사 등에 지원된 융자금의 '97년부터 상환 도래되고, IMF경제위기가 겹쳐 부담 가중

#### □ 연령별로는 40~50대, 품목별로는 과채류·화훼농가가 어려움

- 40~50대의 부채규모가 커서 상환능력 취약
- 채소, 화훼, 과수(배·감귤), 양계 등은 가격등락이 컸던 품목

## 나. 부채대책 추진상황

□ 그동안 금리인하, 정책자금 상환연기 등 부채대책 추진

### < '98 ~ '99년 기간중 농가부채대책 >

- 정책자금 금리인하(6.5% → 5.0%)
- 중장기정책자금 2년간 상환연기(3,225억원)
- 특별경영자금 2조 1,500억원 지원(6.5%, 2년후 상환조건) 등

### < 2000년도 농가부채대책 >

- 상호금융자금을 호당 1천만원까지 6.5%의 저리자금으로 대체
- 2000년 상환도래하는 정책자금에 대해 1년간 상환연기
- 농업경영개선자금 지원(1조 8천억원, 6.5%, 2년거치 3년 분할상환)
- 連帶保證으로 대출한 농업용 자금을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으로 대체

### < 2000년 부채대책 추진실적(10.20현재) >

(단위 : 억원, %)

	계획(A)	신청(B)	지원(C)	B/A	C/B
- 상호금융 대체지원	70,000	46,312	38,292	66.2	82.7
- 정책자금 상환연기	8,000	6,870	884	85.9	12.9
- 농업경영개선자금	18,000	29,610	17,082	164.5	57.7
- 연대보증해소	68,400	33,761	31,237	49.4	92.5

## 다. 추진과정상 문제점

저리자금대체 : 지원기간이 짧아(1년) 신청이 저조

정책자금상환연기 : 대상금액이 소액이어서(농가당 평균 360만원)  
연기신청에 소극적

\* 자금지원시기가 11월이후에 집중되고 2001년도에 지원되는 자금도 2,000억원 수준

농업경영개선자금 : 부도위기에 처한 농가에 큰 도움이 되는 자금이나,  
1억원이상 대출시 연대보증인 확보문제로 농신보 보증이 어려움

연대보증해소 : 정상적으로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 주채무자가  
농신보 보증대체를 꺼리는 경우가 있고(보증료 납부 등),  
연체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부채대책평가자문단」 운영으로 신청기한 연장, 연체자에  
대한 농업경영개선자금 지원 등 보완조치가 있었으나,  
문제점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님.

## 라. 향후 부채대책 방향

□ 품목별·경영규모별 상환능력을 면밀히 평가해서 근본적인  
부채상환능력을 키워줄 수 있는 대책 강구

※ 대규모 시설농가, 고액부채농가의 경영회생을 위해  
내년도에 농업경영개선자금 5,000억원 지원

※ 농신보의 연대보증인 입보제도 개선방안 강구(관계부처 협의)

### 3. 협동조합개혁

#### 가. 제2단계 개혁 추진

##### □ 「제2단계 협동조합개혁 추진계획」 확정(10.9)

##### 중 앙 회 : 기능을 輕量化·전문화하고 책임경영체제 확립

- 물류센터, 한우판매장 등 유통시설을 자회사인 (주)농협유통으로 일원화하여 농·축산물 통합물류시스템 구축
- 농산물, 축산물공판장도 分社化하여 경영·인사를 독립
- 유가공공장사료공장 등 일선조합과 경합되는 사업은 조합에 이관
  - \* 유희 도지부 건물 등 불요불급한 고정자산 조기 매각
- 대표이사가 인사·예산집행권한을 전담, 10월중 경영계약 체결

##### 일선조합 : 경영건전화를 유도하면서 산지유통의 핵심주체로 육성

- 부실조합 자산실사를 통해 2002년까지 합병·해산 등 구조조정
- 광역화·규모화된 조합을 유통활성화 추진조합으로 중점 육성
  - (2000) 111개 조합, (2001) 100, (2002) 140
- 일선 지사무소 정비(500개), 직원감축(5,500명) 등 추가 구조조정

##### □ 새 중앙회의 경영안정을 위해 금년 및 내년도 예산에서 통합비용 808억원을 지원(2000 : 415억원, 2001 : 393)

## 나. (구)축협중앙회 경영부실 처리대책

### < 결손규모 >

○ 결손규모(2000년 6월말) : 4,458억원

- 중앙회 신용·경제사업 결손 : 2,224억 원
- 일선축협의 상호금융예치금 결손 : 2,234억 원

※ 일선조합이 출자한 자본잠식 등 조합의 부실 및 파산 우려

□ 결손원인 : 대우채, 주식 등 危險商品에 대한 과도한 투자

### < 주요 결손원인 >

- 주가하락에 따른 주식 등 운용손실 : △1,684억원
- 대우채 관련 유가증권 평가손 : △1,622억원
- 상호금융 예치금이자 과다 지급 : △973억원
- 경제·지도사업 손실 등 : △179억원

□ 농협중앙회의 자구노력을 전제로 특별지원방안 강구

○ 축발기금 등 정부 지원방안 검토

※ 농협중앙회 자체 경영정상화 노력

○ 경영부실은 우선 (구)축협중앙회 자본금 1,354억원으로 충당

\* 자기자본 2,334억원중 일선조합 출자금 980억원은 제외

○ 인력감축(700명), 임직원 우선출자 500억원 등

## 다. 일선 협동조합 부실처리 방안

□ 금융감독원의 강화된 健全性 基準을 적용할 경우 일선 조합의 부실액은 9,000억원 ~ 1조원 수준으로 전망

○ 각종 充當金 100% 적립시 자본 완전잠식조합은 209개 조합 (농협 103개, 축협 106개)

※ 금감원의 건전성 기준 : 퇴직충당금은 2001년, 신용대출충당금은 2002년까지 100% 적립의무화

□ 조합부실을 그대로 둘 경우 결국 농업인의 부담으로 귀착

○ 부실조합은 자금여력이 없어서 대농업인 지원사업 위축

- 조합의 수익성이 계속 악화되어 부실규모는 더욱 확대

- 209개 조합에 대한 중앙회의 대여금 회수가 곤란해져 중앙회의 조합지원여력 감소

○ 부실조합 파산시 협동조합 전체의 신뢰도가 크게 저하

⇒ 11월말까지 농림부, 금감원, 농협중앙회 합동으로 부실 조합 실태조사후 관계부처와 협의, 처리대책을 마련

## 4. 농산물 유통개혁

### 가. 성과 및 보완과제

#### □ 유통경로의 다원화, 유통시설확충 및 거래제도개선 등에 중점을 두고 유통개혁을 추진

- 직거래확대, 물류개선 및 생산자단체의 공동출하 확대를 통하여 유통효율을 높이고 생산자의 시장교섭력 제고
  - 농산물 유통마진 감소 : ('97) 56.5% → ('98) 52.2 → ('99) 51.8
  - 생산자단체 공동출하율 : ('97) 35% → ('98) 41 → ('99) 50
- 유통예산을 대폭 늘려 산지 및 소비지의 유통시설 기초 인프라를 구축하고, 농안법 개정으로 제도적 기반 마련
  - 유통예산 : ('98) 3,340억원 → ('99) 5,701 → (2000) 9,012
  - 농안법 개정으로 시장도매인제, 유통명령제 및 자조금제 등 도입근거 마련

#### □ 성과의 가시화가 아직 미흡하고, 추진과정에서 문제점도 일부 발생

- 농산물 가격안정, 일선조합 중심의 유통체계 구축, 유통주체의 효율성 제고 등의 과제 해소가 다소 미흡
- 유통예산을 확대하였으나 일부 사업에서 移越不用예산 발생

#### □ 유통개혁방향은 양적개혁보다 질적개혁에 중점

-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에, 가격경쟁력과 품질경쟁력 강화에 중점
-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설 등 하드웨어 위주에서 운영·유통조성 등 소프트웨어 위주로 대폭 전환
  - 소프트웨어 예산비중 : ('98)29% → ('99)50 → (2000)76 → (2001)80

## 나. 향후 중점 추진방향

### □ 산지유통 : 일선 협동조합의 수급조절 및 유통역량 강화

- 생산자 등이 자율적으로 출하조절을 도모하는 유통협약과 이를 법적으로 강제하는 유통명령제 및 이를 지원하는 자조금제 도입
- 산지유통센터(APC)를 확충(금년까지 149개소, 금년 142억원)
- 우수조합에 10~60억원의 유통자금을 지원(111개, 2,500억원)

### □ 도매시장 : 거래방식 개선과 시설 확충·보완

- 지방도매시장은 여건에 따라 市場都賣人制 도입 추진
- 공영도매시장(6개소), 농협공판장(2개소) 건설을 마무리
  - 기존 시장의 전자경매시설 확충(44개 법인)등 거래투명성 제고

### □ 소매유통 : 직거래확대와 농산물종합유통센터 확충

- 직거래비중을 제고하여 유통비용 절감 : ('99) 15% → (2000) 18
- 농산물종합유통센터를 금년말까지 총 8개소 개장
  - 도매·수출기능을 강화하여 복합유통체제 구축
  - \* 상반기 매출은 7,215억원(도매비율 52.3%)으로 전년동기대비 12% 증가

### □ 물류안전성 : 물류표준화 및 안전농산물 공급체계 구축

- 소비자 지향적 규격정비, 표준 바코드 도입 등 물류혁신(565억원)
  - 표준규격을 소비자구매패턴 및 디지털유통에 적합하도록 개선
- 농산물 안전성 조사확대 : ('99) 26천건 → (2000) 40
  - 조사인력·장비확충 : ('99) 79명, 991대 → (2000) 114, 1,087



## 5. 농업·농촌정보화

### □ 도시·농촌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시책 추진

\* 농가 PC보급율('99) : 24%(전체 52), 농업인인터넷이용율(2000.4) : 7%(전체 37)

### □ 인적기반 : 금년부터 2002년까지 17만명의 정보화농업인 육성

- 금년말까지 30천명 교육계획(9월말 현재 25천명)
- 농업정보 119사업, 移動情報化教育 등 현장중심의 교육 강화
  - 9월말현재 119사업 7,000명, 이동정보화 교육 700명(43회) 실시

### □ 물적기반 : 초고속 통신망 등 농촌의 정보인프라를 대폭 확충

- 전국 196개 읍지역에 대한 단계적인 서비스 제공 추진
  - 현재 90개 읍지역, 55개 면지역에 ADSL 서비스 제공중
  - \* 정보수요가 적은 면지역에 대해 현재 기술검증 시범사업중(8개면)
- 농림수산정보망(AFFIS)을 통한 무료인터넷 서비스 제공(2000.4부터)

### □ 정보 Contents : 농업인과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 제공

- 농산물 제값받기를 위해 「출하지원시스템」 운영(총 13만명 이용)
  - 출하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를 인터넷으로 제공(무, 배추, 고추, 마늘, 양파)
- 「농산물통합쇼핑몰」의 연계 확대(현재 18개) 및 통합장바구니 기능, 지불결제시스템 도입 등 이용자 편의제공 강화(총 36만명 이용)
- 농업인 홈페이지 구축 지원 확대 : ('99) 106개 → (2000) 200
  - 현재 농업인이 구축한 홈페이지는 1,400여개이며, 이중 22%(306개) 구축지원

## 6. 한우산업 발전대책

### 가. 성과 및 보완과제

#### □ 한우산업 경쟁력강화 및 사육기반유지를 위한 대책 추진

- 송아지생산안정제 실시, 多産獎勵金 및 거세장려금제도 도입 등
- 소 등급판정제의 정착, 가축개량, 우수축출하포상금 지급 등 한우고기 품질고급화 및 시장차별화 노력
  - 한우고기 1등급 출현율 : ('94) 12.7% → ('99) 18.9 → (2000.9) 20.2
- 축산물유통구조를 지속적으로 개선, 가격안정과 소비자신뢰 제고에 기여
  - 축산물종합처리장(LPC) 7개소 건설완료 및 2개소 건설 중
  - 한우고기전문점·브랜드가맹점 : ('99) 959개소 → (2000) 1,296

#### □ 한우산업의 미래에 대한 불안심리가 지속

- 개방불안심리로 암소 도축성행 등 사육기반 계속 위축
  - 암소도축율 : ('98.12) 56.0% → ('99.12) 58.9 → (2000.9) 51.3
  - 사육두수 : ('98.12) 2,383천두 → ('99.12) 1,952 → (2000.9) 1,713
- 쇠고기 자급율 저하 : ('98) 75.4% → ('99) 61.0 → (2000.P) 53.2
- 구제역 재발가능성 등 축산경영에 대한 불안 상존
- 1등급 출현율이 여전히 낮고 거세율도 10% 수준에 불과
- 현대화된 중간유통 거점 시설이 부족하고 기능이 미약

⇒ 2001년 쇠고기 시장개방에 대비한 한우산업발전대책 강화

※ 2004년 목표: 자급율 40%수준, 사육두수 200~230만두, 1등급 출현율 40%

## 나. 향후 중점추진방향

### □ 사육기반 : 적정자급을 유지할 위한 안정생산기반 확충

- 송아지생산안정기준가격 및 보전금지급한도액 상향 조정
  - 안정기준가격 : 90만원→100, 보전금지급한도액 : 20만원→25
- 한우다산장려금 대폭 확대지원
  - 두당 지급액 : 3~4산(10만원 → 20), 5산이상(20만원 → 30)
- 2001년부터 송아지 품질차별화를 위한 「송아지경매제」 시범사업 추진

### □ 품질고급화 : 수입산과 한우고기 차별화

- 체세포복제기술 등 첨단기술을 실용화하여 품질개량 촉진
- 수소 거세장려금 확대지원 : 10만원 → 20
- 우수축 출하포상금은 2001년에 생산포상금으로 변경하고 2002년부터 거세장려금으로 통합지원

### □ 유통체계 : 안전하고 위생적인 선진유통체계 구축

- 축산물종합처리장 조기건설 : (현재) 7개소 → (2001말) 9
- 한우전문판매점, 가맹점 등 소매유통시설의 규모화현대화 추진
- 축산물표준바코드 도입, 쇠고기 거래정보기록 의무화, 육류 소비자권장가격 산정 발표 등 유통투명성 제고
- 한우젓소고기 감별기술개발, 명예감시원 확충 등 부정유통단속 강화

## 7. 여성농업인 육성

### □ 여성농업인의 전문농업인력화를 위한 지원 확대

\* 여성농업인 : ('90) 3,382천명 → ('95) 2,478 → ('99) 2,170  
(농가인구중 비중) 50.8% 51.1 51.6

- 후계농업인 선정시 여성농업인 비중 확대
- 전문교육과정 신설 등 전문농업경영교육·훈련 강화
  - \* 농과대 최고농업경영자과정중 여성반 신설(5개), 농업연수부 여성농업인반 신설(2개), 농진청·농협 교육중 여성프로그램 강화 등

### □ 出産여성농업인을 위한 「농가도우미 시범사업」 시행

- 출산으로 인한 영농중단 방지와 母性保護를 위해 30일간 도우미가 영농 대행시 노임의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1일 12천원, 6억원)
  - 10개시도 68개시군에서 시범사업으로 실시 중
- 낮은 지원단가, 홍보부족 등 문제가 있어 2001년부터 사업 보완
  - 보조액 상향조정 : (2000) 12,000원 → (2001) 21,600
  - 시·군 담당자 교육 및 여성농업인단체 등을 통한 홍보 강화

### □ 여성농업인육성 5개년계획 수립(2000.10)

- 경영능력강화 : 교육훈련, 후계여성농업인 육성, 여성농작업 기계화 등
- 지 위 향 상 : 위원회·조합 등의 여성참여 확대 등
- 삶의 질 제고 : 농가도우미제도 확대, 모자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추진 등
- ※ 금년말까지 세부추진계획을 마련, 2001년부터 시행

## 8. WTO 농산물협상 동향과 대책

### □ WTO 농산물협상은 지난 UR협상결과에 따라 금년부터 시작

- 3월 WTO 농업위원회에서 1년간 작업계획을 확정하고, 각국이 차기 협상에 관한 입장을 담은 제안서를 금년말까지 제출

\* 제안서 제출국 : 미국, 캐나다, 케언즈그룹(18개국), EU, NTC그룹(26개국) 등

### 미국 등 농산물 수출국

- 관세의 대폭 감축 및 市場接近物量 增量
- 감축대상보조를 품목별로 대폭 감축하여 최종적으로 철폐

### NTC 그룹(한·일·EU 등 26개국)

- 식량안보 등 농업의 非交易的 기능에 대한 고려
- 관세·감축대상보조는 국가별 여건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감축

### □ 농산물 수출입국간 균형된 이익을 반영하고, 농업의 공익적·다원적 기능의 개념을 확산하는데 노력

- 국회, NGO, 정부의 공감대 형성노력 강화

\* 「국제농어업의원연맹」, 「WTO 범국민연대」 등 기구와 협력 강화

- 「농산물협상대책단」('98.4 구성)을 중심으로 기본입장과 전략 수립

- 일본·EU 등 공조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영향력이 있는 개도국을 끌어들이는 지지 확산 노력을 강화

\* '99년에 이어 올해 3월과 8월에도 한·일 농업장관회의 개최

\* 7월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에 관한 국제회의를 수입국 공동개최(40개국)

⇒ 광범위한 여론수렴과정을 거쳐 금년중 우리나라 제안서 제출

## 9. 농산물 수출확대 추진

### < 농산물 수출실적(2000.9월까지) >

- 수출실적 : 1,280백만불(전년동기 1,106백만불 대비 2.4% 감소)
  - 품목 : 채소(35%증) 화훼(64%증), 김치(10%증), 가공농산물(16%증) 등
  - 국가 : 미국(97백만불, 19%증), 중국(86, 30%증), 러시아(53, 32%증) 등
  - \* 일본은 돼지고기 수출중단의 영향으로 14.7% 감소(506백만불)

### □ 수출농가·업체의 애로해소를 위한 지원 강화

- 수출 지원자금 확대 : ('99) 3,126억원 → (2000) 3,335
- 수출물류비 확대 지원 : ('99) 154억원 → (2000) 191
- 「수출확대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수출동향점검 및 애로 해소 추진
  - 지자체의 수출시책에 대한 평가 내실화 및 인센티브 부여

### □ 최대 농산물 수출시장인 대일본 수출확대 추진

- 4대 圏域別로 품목별 특성에 맞는 시장개척·홍보활동 강화
  - 현재까지 2회의 박람회 참가(수출계약 110백만불), 5회의 특별관측전 개최
- 금년 7월부터 김치수출확대를 위한 일본내 TV CF 광고실시

### □ 수출물류인프라 구축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 2001년 예산에 물류센터 건설을 위한 부지구입비 등 22억원 확보
  - 2003년까지 2개소(경남, 전남)에 건설·운영계획

## 10. 남북농업교류·협력

### □ 식량과 농자재 등 지원을 통해 북한 식량난 해소에 기여

- 정부지원 : ('95) 쌀 15만톤, ('99) 비료 11.5만톤, (2000) 비료 30만톤
  - \* 식량 60만톤(쌀 30, 옥수수 30) 지원 추진중(옥수수 10만톤은 WFP를 통해 지원)
  - '96~'98간 국제기구를 통해 식량·농자재 지원
- 민간지원 : 옥수수재단,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등이 농자재 및 식량 지원, (주)현대아산이 채소류 계약재배 추진중

### □ 농업분야의 교류를 통해 상호협력체제 구축

- 단 기 적 : 당장의 식량난 완화를 위한 농자재 및 식량지원
- 중장기적 : 기술협력 등 농업개발협력 추진검토 및 계약재배 등 상호주의적 협력 활성화 유도

### □ 상호이익이 되고 교류협력이 가능한 분야부터 단계적 추진

- 국내 농업과학기술 및 경제연구기관과 북한기관간 협력방안 모색
- 비료 등 농자재 지원과 계약재배 추진 등은 교류협력단계를 감안,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적절히 대응
- 관개시설 설치 및 농업기반복구, 이모작 지원, 감자증산, 양잠, 조립 등 북한이 국제기구에 지원 요청한 분야부터 협의·추진

### Ⅲ. 당면현안 추진상황

1. 호우 및 태풍 피해복구 ..... 101
2. 2000년산 추곡수매 ..... 13
3. 논농업 직접지불제 ..... 104
4. 농작물재해보험 시범사업 ..... 106
5.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방역 ... 108
6. 돼지고기 수급 및 가격안정 ..... 110
7. 한·중마늘협상결과 및 대책 ... 112
8. 한·칠레 FTA ..... 114
9. 새만금간척사업 ..... 115



# 1. 호우 및 태풍 피해복구

## < 호우 및 태풍 피해현황 >

- 집중호우(8.23 ~ 28) : 충남, 전북, 경기 등 서해안 지역 중심
- 12호 태풍(8.31 ~ 9.1) : 충남, 전남북 등 서해안 지역 중심
- 14호 태풍(9.12 ~ 16) : 경남북 등 남해동부와 동해안 지역 중심

< 총괄 > 농작물 침수 33,408ha, 벼 쓰러짐 23,020ha, 과실낙과 23,627ha, 농경지 유실·매몰 386ha, 수리시설 파손 1,208개소, 시설물 파손 529ha 등

### □ 쓰러진 벼 일으켜 세우기 및 조기수매실시

- 민·관·군·경 등의 적극적인 협조(112만명)로 벼 일으켜 세우기 추진
- 조·중생종 벼는 조기수확하고, 9.18부터 산물벼 수매 실시
  - 태풍피해로 품질이 떨어진 벼는 잠정등의 미달품이라도 수매 실시

### □ 果實落果에 대한 특별대책

- 상품성 있는 과실은 시장출하를 유도하고, 가공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것은 농협에서 수매·가공(총 5,434톤)
  - \* 수매량 : 사과 4,917톤, 배 517톤
  - \* 수매가격 : 사과 150원/kg, 배 225원/kg
- 농업경영자금, 생산자조직 유통활성화 자금 등 659억원 지원

□ 자연재해지원기준에 의한 피해복구지원

○ 농업분야 복구 지원액 : 총 1,526억원

	계	국 고	지방비	용 자	자 담
계	1,526억원	728	432	258	108
호우 및 제12호 태풍	995	515	310	119	51
제 14 호 태 풍	531	213	122	139	57

< 직접지원(농작물 및 농업시설 복구) : 1,351억원 >

- 농작물 복구(농약대 50천원/ha, 대과대 1,421(일반작물)) : 101억원
- 유실·매몰된 농경지 복구(유실농경지 복구비 5,660원/m<sup>3</sup>) : 23억원
- 수리시설 복구(방조제, 양배수장 등) : 802억원
- 농업시설복구(비닐하우스 7,660원/m<sup>2</sup> 등) : 425억원

< 간접지원(농작물 피해농가 구호) : 175억원 >

- 이재민구호(80% 이상 피해, 5ha미만 농가) : 8억원
  - 가족 1인당 2,161원/1일 기준 1~3개월
- 생계지원(30%이상 피해, 5ha미만 농가) : 110억원
  - 쌀 80kg(145,200원) 기준 2~10가마
- 학자금면제(30%이상 피해, 5ha미만 농가 : 3~6개월분) : 8억원
- 농업경영자금 상환기간 연기 및 이자감면 : 49억원
  - 30~50%미만 피해농가는 1년간, 50%이상 피해농가는 2년간

## 2. 2000년산 추곡수매

### <수매가 및 수매량('99.12 국회동의로 결정)>

- 추곡수매가 : 전년보다 5.5% 인상
  - 수매가(1등급 기준) : 58,120원/40kg 조곡(161,270원/80kg 정곡)
- 수 매 량 : 6,291천석

### □ 2000년산 추곡수매 추진상황

- 수매기간 : 2000.9.18 ~ 12.31(105일간)
  - 산물벼 : 9.18 ~ 11.15(59일간), 건조벼(포대벼) : 11.1 ~ 12.31(61일간)
  - 조생종 벼 재배 증가와 빠른 생육상황, 태풍 등으로 인한 조기수확에 대비하기 위해 벼 산물수매를 작년보다 9일 앞당겨 9.18부터 실시
- 미곡종합처리장을 통한 산물벼 수매물량 확대
  - 산물수매계획 : 2,500천석(전체수매량 6,291천석의 40% 수준)
    - \* '99 산물수매량 2,086천석대비 20% 증가
- ※ 10.23현재 수매실적 : 1,422천석(수매계획량 대비 23%)

### < 태풍 등 재해농가 특별지원 >

- 태풍피해를 입은 벼는 잠정등의 수매가격으로 수매
- 30%이상 피해를 입은 약정농가는 선금반납이자 (7%) 면제
- 80%이상 피해를 입은 약정농가는 선금반납 1년 유예 및 반납이자 면제

### 3. 논농업 직접지불제

#### □ 2001년부터 농가소득안정을 위해 「논농업 직접지불제」 실시

\* WTO 협정에 따라 가격지지정책만으로는 농가소득안정에 한계가 있으므로, WTO에서 허용하는 직접지불제 도입

- 대상농가 : 직접 논농사를 짓는 농가(부재지주 제외)
- 부과 의무 : 논의 기능형상유지, 비료농약 적정사용 등 친환경영농
- 보조금(안) : 2,105억원
  - 진흥지역(58만ha) : ha당 25만원 지급
  - 비진흥지역(31만ha) : ha당 20만원 지급

#### □ 圖上練習과 교육실시 등 차질없는 시행을 위한 준비 철저

- 전국 8개 시군에서 도상연습을 실시중(10.1~10.31)에 있으며, 연습후 도출된 문제점을 보완
- 일선 관련기관 담당자 교육실시로 내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
- ※ WTO 이행특별법의 시행령인 「농산물의생산자를위한직접지불제도시행규정」(대통령령) 개정작업중

※ 경영이양 직접지불제(2001 : 59억원), 친환경농업직불제(2001 : 57억원)도 지속 추진

<참고>

## 외국의 직접지불제

구 분	미국('99)	일본('99)	EU('98)
<b>◦실시중인 직불제</b> - 환경보전 - 조건불리 - 생산중립 - 생산제한 - 기 타	○ × ○(PFC) × 작물보험제도 시장손실구호지불	○(轉作補償) ○(中山間) × × 稻作경영안정 다락논 보전	○ ○ × ○(보상지불) 은퇴농직불
<b>◦대표직불제</b> - 도입시기 - 도입배경 - 대상농가 - 지원품목 - 지급조건 - 지급단가	<b>생산자율계약(PFC)</b> '96년 부족불지불제를 생산 자율계약으로 전환 생산감축참여 (173만호, 106억\$) 쌀, 밀, 옥수수 등 7개 품목 농지, 습지보전 535\$/ha(쌀 기준) (62만원/ha)	<b>전작보상제</b> '69년 쌀생산조정 생산조정참여 (96만ha, 1170억엔) 쌀, 사료작물 생산조정, 전작, 다기능논 200 ~ 400천엔/ha (200 ~ 400만원/ha)	<b>보상지불제</b> '92년 지지가격인하에 따른 손실보상 농산물생산자 (535만ha, 282억ECU) 작물, 쇠고기 등 대농(20ha이상)에 휴경의무 54ECU/톤 (26만원/ha)

#### 4. 농작물재해보험 시범사업

□ 2001년부터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소득불안에 대비하여 「농작물재해보험 시범사업」 실시

○ 대상 작 물 : 사과, 배

○ 대상자연재해 : 태풍, 우박, 서리

○ 가입 방 법 : 농가 자율적으로 가입(任意加入 방식)

○ 실 시 지 역 : 전체재배면적 대비 50%까지 주산지 위주로 선정

○ 보험운영기관 : 농협중앙회 및 회원조합

※ 제도의 조기정착과 생산농가의 가입확대를 위해 보험료의 30%, 운영비의 50%를 재정에서 지원(2001예산안 : 46억원)

< 재해보험지원 예시 >

	<u>농가보험료(추정)</u>	<u>보험금(100%피해시)</u>
* 사과 2,000평 재배농가	35만원	1,012만원
* 배 2,000평 재배농가	71만원	1,874만원

□ 내년 3월부터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추진

○ 「농작물재해보험법」(가칭)을 금년 정기국회에서 제정 추진

○ 보험요율 산정, 손해평가지침, 보험약관 등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2월중 도상연습을 실시하여 보완

<참고>

## 외국의 농작물 재해보험제도

	캐나다	미국	일본	스페인
도입년도	1939	1938	1949	1954
법적근거	농작물보험법	연방농작물보험법	농업재해보상법	복합영농보험법
대상작물	밀·사과·포도 등 (30여종)	밀·콩·보리 등 (100여종)	농작물·가축 등 (40여종)	농작물(28종)
대상재해	자연재해	자연재해	자연재해	자연재해
담보수준	수확량의 50~80%	수확량의 50~80%	수확량의 70~80%	수확량의 65%
보험금	손실량×평균시장 가격의 80%	손실량×평균시장 가격의 65~100%	손실량×생산자 수취가격의 100%	손실량×정부지정 가격의 80~100%
가입방식	임의가입	임의가입	쌀 : 강제가입 기타 : 임의가입	임의가입
재정지원	보험료 : 50% 운영비 : 주정부 50%, 연방정부 50%	보험료 : 평균 50% 운영비 : 총보험료의 24.5%	보험료 : 50% 운영비 : 540억엔	보험료 : 53%
보험운영 기관	주 정부	17개 민간보험사	공제조합	민간손보사연합회 및 61개 보험사플

## 5.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방역

### 가. 구제역 발생현황 및 재발방지대책

#### < 구제역 발생 및 방역추진상황 >

○ 3.24~4.16간 6개 시·군, 15농가, 81두가 구제역에 감염

\* 경기 파주·화성·용인, 충남 홍성·보령, 충북 충주

○ 방역대책 및 재해대책에 준하는 피해농가 지원대책 추진

- 발생지역 가축살처분 및 시가보상 : 62억원(195농가 2,506두)

- 축산물 구매 확대 : 2,428억원(444천두)

- 발생농장 반경 10km이내 우체류 가축예방접종 : 1,523천두

- 발생농장 반경 20km이내 가축 및 차량 등에 대한 이동제한, 가축 시장폐쇄, 도축부산물 폐기 등 범정부차원의 방역실시

※ 4.16이후 구제역 추가발생 없음(7.14 방역규제 해제)

□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역학조사위원회」조사결과  
구제역은 중국 등 북아시아에서 유래된 것으로 추정

○ 가능한 요인은 해외여행객, 수입건초 또는 바람·황사로 추정

□ 구제역 방역관리 강화로 再發防止에 총력

○ 예방접종가축에 대한 표시 등 사후관리 강화

○ 예찰의무요원 지정운영(2,348명) 및 혈청검사 확대 실시

- 연간 발생지역 7,500두, 비발생지역 20천두 혈청검사실시

○ 축사, 도축장, 가축시장 등에 대한 일제소독 실시



□ 정부와 민간방역단체가 역할을 분담하여 방역강화

- 국가차원의 방역이 필요한 구제역 등 악성가축전염병에 대한 중앙정부 권한을 강화하고 중앙과 지방방역조직간 연계강화
- 민간 중심의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운영을 활성화
- 한국형 긴급방역행동지침(SOP)을 마련, 정례적인 연습실시

□ 구제역 등 해외가축전염병 유입방지를 위한 검역강화

- 국제 공·항만, 연안항 등에 대한 검역조직·시설·장비 확충  
\* 금년에 203억원을 투자하여 첨단장비 및 전문인력 확보 추진
- 불법휴대물검색, 밀수단속 및 수입건초류 소독 강화  
\* 인천항 휴대반입 한도량 축소 : (당초) 80kg → (2000.10) 50

나. 소 기립불능증 발생현황 및 대책

□ 금년 8월 중순부터 경기도 등 6개도 307농가의 소 596두에서 발생하였으나 9.19이후 추가발생이 없음.

- 596두중 508두는 도태, 88두는 회복

□ 정밀검사결과 전염성질병 또는 人獸공통전염병은 아닌 것으로 판단

- 고온다습한 기후에 따른 스트레스와 비타민 등 불균형·대사장애·질병 등에 의한 복합적 신경이상 증세로 판단
- 12개 진료반을 구성하여 해당농가에 대해 무료 진료중

⇒ 각분야 민간전문가를 중심으로 연구과제 수행, 예방대책 마련

## 6. 돼지고기 수급 및 가격안정

### 가. 돼지사육 및 가격동향

#### □ 돼지가격은 '90년이후 높은 수준을 유지

○ 과거 5년간 산지 돼지평균가격 : 100kg/두당 175천원 수준

#### < 돼지 사육두수 및 가격 추세 >

	'95	'96	'97	'98	'99
- 사육두수(천두)	6,461	6,516	7,096	7,544	7,864
- 돼지가격(천원/100kg)	155	171	171	179	199
- 경 영 비(천원/100kg)	113	126	138	152	146

#### □ 2000.9월 현재 돼지 사육두수는 8,371천두로 크게 증가하였고, 관측결과 연말까지 증가될 것으로 전망

○ 사육두수 : ('99) 7,864 → (2000.9) 8,371 → (12월P) 8,430

#### □ 돼지사육두수 증가와 수출부위인 안심·등심 등의 積滯로 금년 8월이후 돼지고기 가격하락 추세 지속

○ 산지가격 : (2000.6) 207천원/100kg → (7월) 181 → (10.23) 110

○ 2000.10 ~ 11월까지 약보합세가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며 12월 중순 이후부터는 다소 상승될 것으로 전망

## 나. 돼지고기 가격안정대책 추진상황

- 구제역 발생기간중 돼지수매 및 소비확대 대책으로 산지 가격이 높은 수준으로 유지됨으로써 사육두수가 오히려 증가
- 수출중단으로 생산감축이 불가피한 점을 고려할 때, 보다 적극적인 사육두수 감축을 추진하지 못한 점이 미흡

### □ 민간자율조정기능을 최대한 강화하고, 수급 및 가격 상황에 따라 다양한 정책수단을 추진

- 농가지도·홍보를 통해 모든 10% 감축운동 적극 전개
  - 돼지고기 소비촉진 등 홍보확대
  - 수출육가공업체에 비육돈 비축자금 지원(336억원, 무이자)
  - 홍콩·필리핀 등에 돈육제품 수출추진(한냉, 정육육가공 등)
  - 일본식 안삼등심 돈가스 대량생산비 지원(1일 10톤 처리, 7억원 용자)
  - 정부수매 비축돈육(13천톤) 시중판매 중단
- ⇒ 돼지고기가격 지속하락시 정부수매 실시 등 추가적인 보완대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

## 7. 한·중 마늘협상결과 및 대책

### 가. 협상결과

□ 6.29~7.15간 한중 마늘협상을 개최, 7.31 서명(8.2부터 발효)

○ 최소시장접근물량(MMA)은 WTO에 양허한 기준과 조건에 따라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수입

- MMA물량 : (2000) 11,895톤 → (2001) 12,538 → (2002) 13,181

○ 냉동·초산마늘의 쿼타물량은 저율관세(30%)로 민간 수입을 허용하되, 초과물량에 대해서는 긴급관세(315%) 부과

- 쿼타물량 : (2000) 20,105톤 → (2001) 21,190 → (2002) 22,267

※ 중국의 폴리에틸렌과 휴대폰 수입금지 조치는 8.2부터 철회

### < 협상에서의 양측 기본입장 >

- 중국측 : 마늘에 대한 S/G 조치 자체를 부인하고 합리적 방안으로 수출자율규제 방안 제시

- 우리측 : 마늘 S/G 조치의 정당성과 국내마늘산업 구제를 위한 불가피성을 주장하고 수출자율규제 방안은 WTO 규정에 위배됨을 지적

⇒ 긴급관세조치의 기본틀을 유지하는 선에서 협상 타결

## 나. 지원대책

### □ 국내 마늘가격 지지를 위한 수매확대

- 최저보장가격(2등급기준 1,200원/kg)으로 물량 제한없이 정부수매(14,561톤)
- 한지형 마늘에 대해 농협수매를 뒷받침하는 유통지원사업 실시
  - 농협이 수매(2등급 기준, 1,600원/kg)하고 희망시 정부가 인수(2,131톤)
- ※ 2001년 최저보장가격 예시 : 1,250원/kg
  - 한지형 마늘은 별도 최저보장가격 예시 추진중

### □ MMA 물량에 대해서는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 유통공사를 통해 장기저장이 가능한 건조마늘 등으로 수입
- 냉동마늘의 국산둔갑을 방지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단속 강화

### □ 출하조절 및 마늘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 확대

- 농가출하조절 등을 위해 농안기금에 1,000억원 신규 반영
  - \* 농가출하조절자금 540억원, 민간저장업체 수매자금 확대 250, 산지마늘 생산유통센터 운영자금 90, 산지농협수매자금 120
- 마늘산업 경쟁력제고를 위해 향후 3년간 500억원 지원
  - 유통비용절감 및 품질향상을 위한 산지마늘생산유통센터(GPC)설치
  - 생산비 절감과 품질향상을 위한 마늘종구갱신 및 생산기계화 지원

## 8. 한·칠레 FTA

□ '98.11 「대외경제조정위원회」에서 한·칠레 자유무역 협정(FTA)를 추진키로 결정한 이후 논의 진행

○ '99.12부터 3회에 걸쳐 협상을 진행한 결과, 입장차이가 발생하여 금년 7월 개최예정이던 4차 협상 연기

### < 양자간 입장차이 >

○ 칠레측 : 원칙적으로 10년내 모든 품목의 관세 철폐

○ 우리측 : 농산물에 대해서는 상당수준 예외 인정 필요

- 관세가 높고 영향이 큰 주요품목은 WTO 협상 이후 논의

- 특혜세율 또는 계절관세 검토, 쌀관련 품목은 FTA에서 제외 등

\* 농산물 평균관세율 : 한국 68.5%, 칠레 9%

□ 생산사기의 차이는 있으나 연중생산체제, 저장기술의 향상, 소비대체성 등으로 농업 전반, 특히 포도사과배 등 과실류에 영향 예상

□ 향후 협상추진과정에서도 생산자단체 등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되, 농산물 수출·수입국간 상호 이익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장기적으로 세계농업의 변화와 조화되는 시장개방을 추구한다는 원칙으로 협상에 대응

## 9. 새만금간척사업

### < 새만금사업 추진현황 >

- 방조제 33km를 축조, 40,100ha 개발(간척지 28,300, 담수호 11,800)
  - \* 사업지역 : 전북 군산·김제시, 부안군 일원
  - '91~'99기간중 10,251억원을 지원, 방조제 33km중 19km의 물막이 공사 완료 (방조제 총공정의 59% 추진)
  - 2000년에는 1,134억원을 투입, 물막이 진행구간 보강공사중
    - \* '60~'70년대의 식량부족 및 '80년대초 외미 도입 이후 추진 필요성 인정('86~'91중 타당성 분석,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착수)
- '99.5~2000.6까지 수질오염 등 환경문제와 관련, 민관 공동조사단을 구성·운영하여 타당성 검토

### □ 민관공동조사 결과 요지 : 3개분야

- 경제성분야 : 타당성을 기본적으로 인정
  - 조사위원들의 견해차를 고려해도 B/C Ratio 1.25이상
  - \* 경제성이 없다는 의견은 소수의견으로 정리(B/C Ratio 0.25~0.29)
- 수질분야 : 적절한 대책으로 농업용수에 문제없다는 결론
  - 다만, 만경수역의 총인이 기준치(0.10mg/l)를 약간 초과(0.12mg/l) 할 것으로 예측되나, 총인은 비료성분으로서 농사용으로 무리가 없음
  - \* 총인은 일본등 외국에서도 농업용수기준에 포함치 않고 있음
- 해양환경분야 : 해양수질보전대책 등 대안 제시
  - 갯벌의 신규형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
  - 적조모니터링 및 배수갑문조작위원회 구성·운영 등

## < 환경단체의 입장 >

- 새만금호의 「제2의 시화호화」(수질오염) 우려
  - 만경수역 총인의 4급수기준 초과 및 수질대책 추진 불투명
- 새만금사업으로 인한 철새 및 수산생물 서식지 축소 등 갯벌의 중요성 강조
- 공사중단후 새로운 대안 마련
  - 기축조된 1호방조제 일부 헐기 및 교량건설, 선착장, 생태공원 조성 등

## □ 그간의 추진상황과 대책

- 수질유지 등 공동조사단 건의내용 적극 수용 및 보완대책 수립 추진
  - 환경기초시설(하폐수처리장 등) 조기완비, 생태습지조성, 만경수역에 대한 한시적인 해수 유통방안 등 수질오염방지대책 적극 추진
- 환경단체 등과의 지속적인 대화 및 홍보
  - 수질오염 : 새만금유역은 공단·도시가 인접한 시화호주변과 달라 농업용수로 사용가능
  - 갯벌문제 : 정부의 환경친화적인 간척방침, 간척이후 새로운 갯벌형성 및 수많은 철새도래, 공사중단시 문제점 등 집중홍보
  - \* 공동조사단이 제안한 「수질보전대책위원회(가칭)」에 환경단체를 참여시켜 수질대책의 이행과정 확인·평가

⇒ 물관리정책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부방침 확정,  
그 결과에 따라 본격 추진



## IV. 중장기 농정의 과제

### □ 지난 2년반 동안의 농정성과

- ① IMF로 인한 당장의 농가경영위기 극복
- ② 협동조합개혁, 농업기반공사 출범, 유통개혁 등 농정개혁 추진
- ③ 중장기 농업·농촌의 발전방향 정립
  - 농업농촌기본법 제정, 농업농촌 발전계획 수립, 45조원 투융자계획 수립

### □ 향후 보완·발전시켜 나가야 할 과제

- WTO 농산물협상 등 시장개방 가속화에 적극 대응
  - 농가소득은 IMF이전으로 회복되었으나, 도·농간 소득격차는 상존
    - \* 농가소득 : ('97) 23,488천원 → ('98) 20,494 → ('99) 22,323
  - 농업금융의 효율성이 낮아 대농업인 서비스 미흡
  - 농업분야 첨단 생명공학기술(Biotechnology)의 개발 및 실용화 체제 구축
  - 친환경 순환농업을 조기에 정착,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확충
  - 생산기반정비사업 조기 마무리 및 적정수준의 농지보전
- ⇒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21 농업·농촌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보완과제 및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논의중

## < 향후 발전방향 >

### 농가소득을 중산층 수준으로 증대

- 직접지불제 확대 및 재해보험실시 등 농가소득안전망 확충
- 지역별, 농가별 특성을 고려한 종합적 소득증대시책 개발
  - \* 농외소득비중 : 한국 52.7%, 일본 81.0%, 대만 68.9%

### 농업금융의 효율성 제고

- 금리, 대출조건 및 절차 등 농업금융의 전반적 개혁 검토
- 금융시장의 경쟁심화에 효율적으로 대응
- 농가부채문제에 근본적으로 대응

### 첨단 생명공학기술 개발 및 실용화

- 농업 유전자원의 수집·보존·이용 등 종합관리
- Genome Project, 생명공학기술 실용화 등을 통한 생산성 향상
- 전담조직 설치 검토 등 「Bio산업」 육성에 선도적 역할 담당

### 친환경 순환농업(Recycling) 육성

- 중장기 친환경농업 육성프로그램 마련
- 논농업직접지불제, 비료·농약 감축 등 친환경영농 지원
- 축산분뇨처리, 가축위생관리강화 등 친환경·위생적인 축산업 육성

### 생산기반정비사업의 마무리

- 생산기반정비사업은 조기완공 추진
- 국민 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적정규모의 농지보전

## V. 2000년 정기국회 입법추진계획

□ 입법계획(13건) : 농림부 8건(제정1, 개정7), 산림청 5건(제정2, 개정3)

### < 기제출된 법률안 >

법률명	주요 제·개정 내용
1. 인삼산업법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삼류와 인삼제품(농축액·분말 등) 동시제조업자에 대한 제조신고 간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만, 동시제조업자의 제조기준, 영업폐쇄, 검사기준 등은 식품위생법 준용</li> </ul> </li> </ul>
2. 축산법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송아지생산안정제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약체결 및 생산안정자금 지급기준·방법·절차 등 규정</li> </ul> </li> <li>◦축산발전기금을 농림부장관이 관리하는 공공기금으로 전환</li> <li>◦축산물등급판정소의 독립법인화</li> </ul>
3. 산림법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산불예방진화 지휘·감독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할구역 : 시장·군수, 국유림관리소장</li> <li>- 국·공·사유림에 걸칠 때 : 시장·군수</li> <li>- 일정규모이상으로 확산 : 시·도지사</li> </ul> </li> <li>◦산림청장, 지자체장은 산불조심기간중 「산불방지종합대책」 수립시행</li> <li>◦지자체 등 관계기관은 산불예방및진화등에관한규정(농림부령)에 따라 산불예방 진화 및 복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불방지대책본부 설치, 산불신고 및 진화체계,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 등</li> </ul> </li> </ul>
4. 사방사업법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방지 지정·해제 및 사방지 안에서의 형질변경에 관한 산림청장 권한 지방이양</li> </ul>

< 앞으로 제출예정인 법률안 >

법률명	주요 제·개정 내용
1. 환경농업 육성법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명을 「친환경농업육성법」으로 변경</li> <li>◦농수산물품질관리법의 품질인증제와 환경농업육성법의 표시신고제를 표시인증제로 통합·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지정 및 지정취소</li> <li>- 표시인증후 친환경농산물표시, 허위표시금지, 표시제거, 인증취소, 벌칙 등 규정</li> </ul> </li> </ul>
2. 종자산업법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제식물신품종 보호연맹 가입을 위해 종자의 품종 보호에 관한 규정을 국제식물 신품종 보호협약에 맞추어 정비·보완</li> <li>◦농업유전자원의 체계적인 국가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전자원의 수집·등록, 분양, 등급, 보존관리, 특성조사·평가, 관리기관 지정 등</li> </ul> </li> </ul>
3. 사료관리법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료성분의 등록제를 신고제로 규제 완화</li> <li>◦사료 안전성 확보 제도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전관리가 필요한 사료제조업체에 사료안전관리인 배치</li> <li>- 사료의 공정규격서(공정규격과 표시기준) 보급</li> <li>- 사료의 우수제조 관리 및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설정 등</li> </ul> </li> </ul>
4. 산림기본법 (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산림의 공익기능, 생태계 보전 등 21세기 산림임업에 대한 국민적수요에 부응한 산림정책의 기본이념과 방향을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림기본계획 수립시행, 산림자원의 합리적인 보전·이용, 임업육성 및 산촌개발 등</li> </ul> </li> </ul>
5. 수목원조성 및진흥에 관한법률 (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목유전자원의 보전·관리기능 강화를 위한 수목원 조성·관리·운영</li> <li>◦수목원진흥기본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li> </ul>

법 률 명	주요 제·개정 내용
6. 청원산림 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청원산림보호직원의 임용자격, 신분보장 등에 관한 시행령규정을 법률에 규정</li> </ul>
7. 농작물재해 보험법 (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작물재해보험 제도 도입을 위한 제반사항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험료 및 운영비 지원근거 등</li> </ul> </li> </ul>
8. 농업협동 조합합병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03년말까지 유효기간 연장</li> <li>◦지역축협, 품목별·업종별조합에도 적용</li> <li>◦합병의결일로부터 6월이내 인가신청</li> <li>◦합병진행중 임원의 임기만료시 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근거 신설</li> </ul>
9.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1종 가축전염병중 구제역 등 농림부령이 정하는 가축전염병 발생시 농림부장관이 시·도지사에게 방역 조치를 지시할 수 있도록 함.</li> <li>◦명예가축방역감시원 임명 관련 규정 신설</li> <li>◦역학조사실시 관련 근거규정 신설</li> <li>◦수출입검역관련 수수료 징수근거 규정 신설</li> </ul>

## VI. '99 국정감사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지 적 사 항	조치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 농가부채대책의 일환으로 상환연기된 정책자금과 상호금융자금의 상환도래액에 대해 분할상환 방안 마련</p>	<p>□ 조치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98 ~ '99기간중 상환연기된 중장기 정책자금의 일시상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농가의 신청을 받아 추가로 1년간 상환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 190천건, 6,870억원, 지원 18천건, 884억원 (10.20현재)</li> <li>- 추가로 분할상환을 허용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할 계획</li> </ul> </li> <li>※ 상호금융자금의 경우 기한내 이자만 납부하면 원금 상환연기 가능</li> </ul>
<p>□ 농토와 농촌환경을 지키고 농업자원의 재활용 측면에서 폐비닐 및 농약빈병 등의 수거를 위한 지원대책 강구</p>	<p>□ 조치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폐비닐과 농약빈병 수거는 자원 재생공사가 주관이 되어 추진</li> <li>◦ 영농기 전후를 중점수거기간으로 설정하여 관계기관 합동으로 수거('99.11, 2000.4)</li> <li>◦ 행락철 「깨끗한 농산촌가꾸기」운동 전개(7.24~8.31)</li> <li>◦ 수거비용은 환경부에서 환경개선특별부담금으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0 수거예산 : 폐비닐 560, 농약빈병 2,470백만원</li> <li>* 농약빈병 수거예산은 국가 30%, 지자체 30, 농약공업협회 40 공동부담</li> </ul> </li> <li>◦ 친환경농업 교육 등을 통해 농업인의 농촌·농업환경 보전인식 함양</li> <li>◦ 환경부, 지자체, 농진청, 농협 등에 수거지원 협조 요청</li> </ul> <p>□ 향후 추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토대청결운동, 영농기전후 집중수거운동 등을 통한 대대적인 수거 및 농업인 참여확대</li> <li>◦ 농업인의 농촌환경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해 교육 홍보강화(영농교육, 친환경농업교육, 반사회보 활용)</li> <li>◦ 지자체, 농협, 환경농업단체 등에 수거확대를 위한 역할부여</li> <li>◦ 폐비닐, 농약빈병의 순회수거 활동 강화(자원재생공사)</li> </ul>

지 적 사 항	조치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 임하댐 사례 등을 감안 댐관리를 철저히 하여 낙동강 유역 농경지 침수 방지</p>	<p>□ 조치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댐, 하천관리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자원공사와 농업기반공사 등이 긴밀히 협조하여 다목적댐 방류조절 등 시행, 농업부분의 피해 최소화 노력</li> </ul> </li> <li>◦ 재해복구 공사중 발생한 고령 봉산제 붕괴시 농업기반공사에서 인력 및 양수장비 등을 동원하여 침수지역 조기배제 및 응급복구 등 피해 극복 노력을 집중적으로 경주</li> </ul> <p>□ 향후 추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낙동강유역의 배수개선사업을 당초 2013년에서 2009년까지 앞당겨 상습침수농경지 조기 해소</li> </ul>
<p>□ 협동조합개혁과 관련하여 중앙회 사업의 지역조합 이관과 공동판매 기구 설치 및 자회사 설립 등의 후속 대책 마련</p>	<p>□ 조치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협중앙회설립위원회는 “중앙회경제사업 이관 방안”을 농협중앙회에 권고(2000.6.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앙회 경제사업장 104개소 중 58개소 정비</li> </ul> </li> <li>◦ 통합중앙회 출범이후 「제2단계 협동조합개혁」 추진계획 확정·발표(10.9)</li> </ul> <p>□ 향후 추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물류센터·한우판매장 등 농축산물 판매시설을 자회사인 (주)농협유통으로 일원화</li> <li>◦ 농산물, 축산물 공판장도 각각 경영과 인사가 독립된 분사로 전문화</li> <li>◦ 유가공공장, 사료공장은 회원조합에 이관</li> </ul>

지 적 사 항	조치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 협동조합개혁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절한 정부 지원 방안 강구</p> <p>□ 원산지표시제 철저 이행 및 위반자 처벌 강화 등으로 농산물의 국산둔갑 방지대책 강구</p>	<p>□ 조치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양회 통합에 소요되는 전산망 통합비용 등은 직접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년도 및 내년도 예산에서 통합비용 808억원을 지원(2000 : 415억원, 2001 : 393)</li> </ul> </li> </ul> <p>□ 향후 추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협중앙회의 자구노력을 전제로 (구)축협중앙회 부실에 대한 지원방안 강구</li> <li>◦일선조합의 부실지원방안 검토중</li> </ul> <p>□ 조치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원산지표시 철저이행을 위한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산지표시 대상품목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99.9) 429품목 → (2000.10) 440</li> </ul> </li> <li>- 원산지표시 부정유통농산물 민간감시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고전화 설치·운용(1588-8112)</li> <li>·소비자생산자단체 회원 등을 명예감시원으로 확대 위촉활용 : ('99) 1,819명 → (2000) 2,008</li> </ul> </li> <li>- 과학적 원산지 식별방법 개발(9품목) 및 원산지 식별책자 제작·배포(10천권)</li> <li>- 추석 등 성수기에 돼지고기, 쇠고기 등 취약 품목 집중단속 실시</li> </ul> </li> <li>◦원산지표시 위반자에 대한 처벌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발·송치 실적 : ('99) 190건/월 → (2000) 256</li> <li>- 과태료 부과금액(평균) : ('99) 118천원/건 → (2000) 125</li> </ul> </li> </ul>



지 적 사 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돼지콜레라 근절대책 마련</p>	<p>□ 향후 추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관세청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수입농산물 통관 정보를 입수하여 유통단계별로 철저한 추적조사 실시</li> <li>◦원산지 미표시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강화 검토</li> </ul> <p>□ 조치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돼지콜레라 근절 개선대책 수립 ('99.10.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장 폐쇄 사육제한 등 조치(2000.1)</li> <li>- 가축방역관에 사법경찰 자격부여('99.12)</li> <li>- 소규모 농가 예방접종시설비 현실화(두당 500원→ 1,000)</li> </ul> </li> <li>◦구제역 발생 등 국내여건변화에 대응, 예방접종 중지시기를 5개월 연장(2000.10 → 2001.3)</li> </ul> <p>□ 향후 추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예방접종을 위한 지원 및 검사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방약 100% 공급 및 혈청검사강화</li> </ul> </li> <li>◦방역관리 위반농가 규제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반농가 신고포상금 지급</li> <li>- 농장폐쇄·사육제한 등 조치</li> </ul> </li> <li>◦민간단체 방역기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운영 활성화 지원</li> </ul> </li> </ul>
<p>□ 겨울철 이용 등 농지의 효율적 활용방안을 강구</p>	<p>□ 조치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겨울철 노는땅을 이용한 녹비작물 재배를 통하여 농지이용율을 높이고 화학비료 사용량을 절감함으로써 지력증진 도모</li> <li>◦2000년 가을과중 녹비작물 재배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99) 8,668ha → (2000) 30,000</li> </ul> </li> <li>◦지자체 농림업무시책 및 퇴비생산시책 추진 평가에 반영, 사업참여 적극 유도</li> </ul>

지 적 사 항	조치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 귀농자의 실질적인 영농기술교육의 제도화 등 탈농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 강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푸른들가꾸기 연시대회 개최(5.4)</li> <li>◦지역특화사업비로 소요종자대 지원</li> <li>◦녹비작물 종자 파종 : 9~10월</li> </ul> <p>□ 향후 추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겨울철 녹비작물 재배관리요령 지도 및 홍보</li> <li>◦푸른들가꾸기 우수기관 및 유공자에 대한 시상(20점)</li> </ul> <p>□ 조치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영농경험이 부족한 귀농자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 도모를 위해 「귀농자 현장실습 기술경영교육」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주관 : 시·도지사</li> <li>- 교육실시기관 : 장기실습교육 경험이 있는 민간교육기관</li> <li>- 교육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영농사업계획 수립 및 타당성 분석능력 배양</li> <li>·품목별 전문기술교육, 농기구 작동 및 수리 능력배양</li> <li>·유통경영기법 및 정보화교육</li> </ul> </li> <li>- 교육기간 : 1개월</li> <li>- 2000년 교육 계획 : 300명, 142백만원 지원</li> </ul> </li> <li>◦기존 귀농자는 귀농자 전담지도사를 배치하고 사후 영농기술·경영교육 강화</li> </ul> <p>□ 향후 추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위한 준비된 귀농 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귀농자 현장실습 기술·경영교육 실시</li> </ul> </li> <li>◦기존 귀농자의 관리지도 강화</li> </ul>

지 적 사 항	조치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위한 유통 구조개선 지원조건 개선</p>	<p>□ 조치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협동조합유통활성화 자금을 신설하여 산지 유통관련 운영자금을 종합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0년 지원규모 : 2,500억원</li> <li>- 지원조건 : 연리3%, 3년거치 일시상환</li> </ul> </li> <li>◦“농신보”의 신용보증대상에 소비자생활협동조합도 포함되도록 제도개선('99.12)하여 소비자단체 물류시설 지원사업 촉진</li> <li>◦산지유통센터 운영자금 지원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소당 용자한도액을 상향조정(15억→20억)</li> <li>- 자금용도를 원료매취사업외에 출하선도금까지 확대</li> </ul> </li> <li>◦직거래의 제도화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 체제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거래장터 설치사업 지원조건 완화</li> <li>·고정식외에 이동식 장터도 지원</li> <li>·장소 : 50만이상 도시 또는 도청소재지에 국한한 인구조건 삭제</li> <li>- 직거래 자금지원 확대</li> <li>·('99) 총 350억원 → (2000) 540억원으로 확대</li> </ul> </li> <li>◦도매시장에 전자경매시스템 도입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입계획 : (2000) 15개 도매시장, 44개 법인</li> <li>·10개시장 33개법인 추진중(2000.9월말현재)</li> </ul> </li> <li>◦농안기금의 신속한 지원체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안기금관리의 위임·위탁실시(2000.6.1)</li> <li>- 융자금 대출실행기간 단축(3개월→2)</li> </ul> </li> </ul>

지 적 사 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주곡자급을 위한 우량농지 확보 및 유지방안 강구</p>	<p>□ 조치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업진흥지역 운영·관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업보호구역내 음식점·숙박시설 설치제한 강화 : 500m<sup>2</sup> → 100</li> <li>- 농업진흥지역 대체지정 제도 법적근거 마련</li> </ul> </li> <li>◦그린벨트 해제지역의 농지는 생산·자연녹지 지역으로 편입 관리</li> <li>◦준보전임지 편입비율 완화(70% → 50)로 산지·구릉지 활용 유도</li> <li>◦농지불법전용 단속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98) 3,781건 528ha→('99) 3,249건 413ha</li> </ul> </li> <li>◦환경단체의 “환경과 농지지킴이 국민운동” 지원</li> <li>※ '99년도 농지감소 면적이 11.2천ha(0.6%)로 '89년이후 최저수준</li> </ul> <p>□ 향후 추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업진흥지역 관리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체지정 제도 적극 활용</li> <li>- 경지정리하는 농지는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li> <li>- 도로 등 대규모 사업에 대한 사전협의제 내실화 및 농지외곽, 산지쪽 활용유도</li> </ul> </li> <li>◦농지 불법전용 단속 및 농지이용실태 조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발,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조치</li> </ul> </li> </ul>

지 적 사 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외래병해충 유입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개선과 식물검역장비 보강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의 방안 강구</p>	<p>◦준농림지역 농지관리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음식점·숙박시설 등 농지전용 억제</li> <li>- 행위제한강화 등 국토이용체계 개편시 농지보전방안 강구(건교부협조)</li> </ul> <p>◦선진외국의 농지보전정책 홍보강화 등 농지보전에 대한 국민적 이해 확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지관리위원회, 농협, 농업기반공사, 환경단체 등 농지보전기능 활성화</li> <li>- 시·도 농지담당공무원 교육실시</li> </ul> <p>□ 조치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래병해충 국내유입시 박멸프로그램 제정 발령 : 농림부훈령 제1004호 ('99.11.25)</li> <li>-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찰조사지역 지정 등으로 외래 병해충 조기발견 체계 확립</li> <li>· 외래병해충 발견시 방제사업 추진단 구성 등 대책 수립</li> </ul> </li> <li>◦ 외래병해충 예찰조사요령 개정 시행[식검예규 제72호('99.12.13)]</li> <li>- 예찰트랩 확대설치 조사(380개)</li> <li>- 포장순회조사 : 5개지소 18출장소 (1~12월, 월 1~2회 조사)</li> <li>- 피해과실조사 : 5~10월(월1회 조사)</li> </ul>

지 적 사 항	조치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물검역 전문인력 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물검역관련 학위소지자 특채 임용 : 20명(2000. 2. 1)</li> <li>- 식물방역관 자격시험 시행 : 61명(2000.1.12)</li> <li>- 식물방역관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실시 : 47명(기초반 27, 전문반 20)</li> <li>- 식물방역관 해외연수 : 2명(미국 1, 일본 1)</li> </ul> </li> <li>◦ 식물검역 주요장비 보강('99 ~ 2000.9.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투과전자현미경 등 검역장비 58종 250대 구입</li> </ul> </li> <li>◦ 규제대상 병해충을 지속적(연2회이상)으로 추가 지정하여 병해충 관리체계 강화 : ('99) 1,709종 → (2000) 1,796</li> <li>◦ 외래병해충 대책회의(2000.1.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96 ~ '99년에 발견된 국내 미기록 병해충 42종 (병 28, 해충 14)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 및 조치</li> </ul> </li> <li>◦ 중점관리 작물을 확대지정 병해충 유입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99) 34개 품목 → (2000) 37</li> </ul> </li> <li>◦ 모든 목재류와 병해충에 대해서도 식물검역소로부터 식물검사대상인지의 여부를 확인 받도록 관계규정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세법 제145조 규정에 의한 세관장 확인 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개정(2000.9.21)</li> </ul> </li> <li>◦ 2000.9.1부터 버섯종균에 대한 식물검역 실시</li> </ul>

지 적 사 항	조치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 김포매립지가 농지로 활용될 수 있는 구체적 방안 마련</p>	<p>□ 향후 추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천 신공항 개항에 따른 검역인력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4시간 개항에 따른 소요인력(18명) 확보 추진</li> </ul> </li> <li>◦ 검역능력 향상 및 전문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연수(20명) : 병해충 검색, 분류 동정 등 집중교육</li> <li>- 식물방역관자격시험실시(16명) : 2000.12월중</li> </ul> </li> <li>◦ 식물방역관 사법경찰권 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련법령개정 추진중(법무부에 협조요청)</li> </ul> </li> </ul> <p>□ 조치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김포매립지는 최대한 농지로 보전하고, 국민에게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하면서, 토지이용효율을 높여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처리할 계획</li> <li>◦ 토지소유자인 농업기반공사는 김포매립지의 효율적 토지이용계획을 국토연구원에 의뢰('99.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0. 8. 연구결과 보고서 제출</li> <li>- 건교부, 환경부 및 인천시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중</li> </ul> </li> </ul> <p>□ 향후 추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김포매립지 토지이용계획을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2000년말까지 확정할 계획</li> <li>◦ 최대한 농지로 보전되도록 토지이용 관리</li> </ul>

지 적 사 항	조치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 WTO 차기협상과 관련, 범정부차원의 대책위원회 구성, 협상전문인력 확보, NGO와의 협조강화 등의 대책 수립</p> <p>□ 국내 종자산업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다국적 기업의 국내 유전자원 유출에 대한 대책과 민간종자 회사의 품종개발과 연구·보급 등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p>	<p>□ 조치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범정부적인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정부입장을 조율하는 등 협상력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대외경제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차관급 실무위원회 및 뉴라운드협상대책위원회 구성</li> </ul> </li> <li>◦농림부차원에서는 '98년 4월부터 민·관 합동의 농산물 협상대책단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상정책협의회 : NGO, 학계, 언론계 등으로 구성, 각계 의견수렴</li> <li>- 자문단 : 학계, 변호사 등으로 구성, 협상 전략에 관한 자문</li> <li>- 실무지원반 : 협상관련 실무자로 구성, Task Force체제로 협상의제 분석 및 입장정립</li> </ul> </li> <li>◦통상분야 전문가 고정배치 및 국내·외 통상 전문변호사 고용</li> <li>◦NGO와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WTO 국민연대에 수시로 정보를 제공하고 활동을 지원하는 등 협조체제 강화</li> <li>- WTO, FAO 등 각종 국제회의에 공동참가</li> </ul> </li> </ul> <p>&lt;유전자원 관리 강화&gt;</p> <p>□ 조치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유전자원 수집, 특성검정 및 목록화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전자원 보존현황 : 180,926점</li> <li>- 특성평가 : 94,814점</li> </ul> </li> <li>◦유전자원 관리강화를 위한 보유현황 조사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간부문 : 대학 및 종자업체 등 27기관 100,460점</li> <li>- 토종자원보유 : 작물 24,446점, 가축 134, 산림 751종 등</li> </ul> </li> </ul>



지 적 사 항	조치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유전자원관리 강화를 위한 관계규정 정비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자산업법 개정안 마련(법제처 심사중)</li> <li>- 농업유전자원관리규정 초안 마련(농림부령)</li> </ul> </li> <li>□ 향후 조치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외 유전자원의 수집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간오지, 도서지역의 재래종, 야생근연종 등을 중점 수집</li> <li>- 국제기관 및 외국 전문기관과의 협력사업으로 외국 유전자원 수집</li> </ul> </li> <li>◦ 유전자원 특성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원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집중평가</li> </ul> </li> <li>◦ 유전자원 정보화 및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 민간보유 유전자원의 목록화 및 평가를 거쳐 정보의 D/B화 추진</li> </ul> </li> <li>◦ 유전자원 종합관리체계의 확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행 개정중인 종자산업법과 농업유전자원 관리규정의 조속한 시행 추진</li> </ul> </li> </ul> </li> <li>&lt; 민간종자업체의 품종개발 등 지원 &gt;</li> <li>□ 조치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품종 육종 기반강화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육채종시설 및 신품종 육종자금 지원 : 20개 업체 146품종 54억원</li> </ul> </li> <li>◦개인육종가 발굴 및 신지식농업인 지정('99.11)</li> <li>◦종자산업육성을 위한 의견수렴(3회)</li> <li>◦신품종 육종가의 권리강화를 위한 품종보호 대상작물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99) 27개 작물 → (2000.5) 57</li> </ul> </li> <li>◦종자업체를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대상자로 지정(2000.6)</li> </ul> </li> </ul>

지 적 사 항	조치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 MMA쌀의 부정유통으로 쌀생산 농가의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수입쌀의 부정유통 방지대책을 수립시행</p>	<p>□ 향후 추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종자업체와 국가연구기간과의 협력강화를 통한 신품종 육성추진</li> <li>◦민간 종자업체의 신품종 개발촉진을 위한 지원강화</li> <li>◦민간종자업체 위한 수출품종 개발지원</li> <li>◦신품종 육종가의 권리강화를 위한 품종보호 대상작물의 점진적 확대</li> <li>◦우량품종 경연대회에 우리품종 전시회를 추가 확대 시행하여, 품종개발 및 홍보 촉진</li> <li>◦종자산업의 저변확대를 위해 개인육종가를 포함한 산·학·연 연계 체제방안 수립</li> </ul> <p>□ 조치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급방법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공용쌀 배정량 산정기준을 부가세 매출신고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산정</li> <li>- 시중쌀값의 절반수준인 가공용쌀 공급가격을 인상하여 부정유통소지 축소</li> <li>- 수입쌀 식별이 쉽도록 단일곡종 공급을 최소화 하고, 혼합미 위주로 공급</li> <li>·주류 등 품질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단일곡종 공급</li> </ul> </li> <li>◦사후관리 체계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급업체에 대한 원료곡 입고검사제도 도입</li> <li>- 부정유통소지가 있는 업체 위주로 사후관리 내실화</li> <li>·원료수불대장, 재고량 등을 정밀점검</li> </ul> </li> </ul>

지 적 사 항	조치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 현재 선진국들은 자국 농업의 보호를 위해 직접지불제를 확대하고 있는 추세인 바, 우리 주곡인 쌀의 안정적 공급 및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해 논농사직접지불제의 조기 시행방안을 강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공용쌀 공급 및 관리지침 미비점 보완('99.12.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용용도 조항신설</li> <li>- 부정유통혐의가 있는 업체는 매출 일시중지 조항 신설</li> <li>- 부실업체 특별관리 조항신설</li> </ul> </li> <li>◦ 부정유통방지특별점검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사기간 : 2000.4.15 ~ 5.10(21일간)</li> </ul> </li> </ul> <p>&lt; 특별점검시 지적건수 &gt;</p>				
	계	부정유통 판 매	타 장 소 유 출	원 산 지 허 위 표 시	기 타
	9	2	-	3	4
	<p>□ 조치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범정부적 기획단 구성, 연구용역 추진, 공청회 등을 거쳐 논농업직불제 시행방안을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무총리실에 범정부적 기획단을 구성, 논농업 직불제 시행방안 등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99.12)</li> <li>· 기획예산처, 농림부 및 학계연구기관 전문가 참여</li> <li>-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주관하여 외국의 사례 및 직불제 세부 시행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6.15완료)</li> <li>- 학계·언론계, 소비자·생산자단체 대표, 농업인 등이 참여하는 정책토론회(3.22, 5.12) 및 공청회(6.27)를 개최,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li> </ul> </li> </ul>				

지 적 사 항	조치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 축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축산업의 종합발전대책 및 투융자계획을 수립 추진</p>	<p>&lt;시행방안 주요내용&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행시기 : 2001년부터 시행</li> <li>- 지원대상 : 일정한 요건을 갖춘 모든 논을 대상으로 함(약 89만ha)</li> <li>- 지급조건 : 논외형상과 기능유지 및 비료·농약의 적정사용 등</li> <li>- 신청자격 : 논농사를 짓는 경영인(실제 경작자)</li> <li>- 지급단가 : 진흥지역 25만원/ha, 비진흥지역 20</li> </ul> <p>※ 2001년예산안 : 2,105억원</p> <p>□ 향후 추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앞으로 일선 관련기관 담당자 교육 및 홍보, 도상연습 등에 만전을 기해 2001년 논농업직불제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li> </ul> <p>□ 조치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장기 축산발전 및 투융자계획 수립 추진('99.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99~2004년 동안 총 4조5천억원 투융자계획 수립</li> </ul> </li> <li>◦ 축산 투융자방식을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H/W중심에서 S/W중심의 투융자로 전환하여 경영·마케팅지도를 강화하고, 생산보다 유통 분야에 중점지원</li> </ul> </li> <li>◦ 쇠고기시장개방에 대비하여 한우사육기반을 유지하고, 품질고급화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송아지생산안정제 전국확대실시, 다산장려금제, 거세장려금제 도입</li> <li>- 체세포 복제기술 등 첨단기술을 실용화하여 한우고기 품질고급화</li> </ul> </li> </ul>

지 적 사 항	조치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 농산물가공공장에 대한 기술·경영컨설팅 강화, 농업용 전기료 적용 등 경영활성화 방안 강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축산물유통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 유통비용을 절감하고, 소비자의 신뢰기반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축산물종합처리장 건설 및 운영활성화, 식육 소매점의 규모화·현대화, 육류도체 등급제 및 구분판매제 조기정착</li> </ul> </li> <li>◦ 방역·위생 및 안전수준 향상을 위한 추진체계강화</li> <li>◦ 축산분뇨자원화를 통한 친환경 축산체계구축</li> </ul> <p>□ 향후 추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제역 발생, 국제적인 환경·위생규제강화, 소비자들의 환경 및 축산물 안전성에 대한 관심 증대 등 축산여건변화에 대응 우리축산업을 환경친화적이고 위생적인 선진축산업으로 전환추진</li> </ul> <p>□ 조치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공공장 기술·경영컨설팅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컨설팅 참여범위를 확대하여 추가신청 업체(6개)에 대한 컨설팅지원('99.11)</li> <li>·(당초) 정부지원가공업체 → (변경) 국산농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는 업체</li> <li>- 컨설팅사업에 대한 홍보강화 및 사업추진철저히 지시(4회 : '99.10~)</li> <li>- 컨설턴트 175명(45개팀)에 대한 컨설팅 계획서 작성, 제출지시 및 교육실시('99.11)</li> <li>- '99 컨설팅 사업성과에 대한 수요자 만족도 조사(2000.2~3)</li> </ul> </li> <li>※ 「만족」하거나 「대체로 도움이 되었다」는 업체가 57개소(89%)로 나타남</li> </ul>

지 적 사 항	조치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 유해성이 검증되지 않는 유전자변형 농산물(GMO)에 대하여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p>	<p>◦산업자원부에 농산물 가공업체의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요청</p> <p>◦기타 경영활성화방안 강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99 경영활성화대책 추진성과분석을 위한 가공공장 경영실태조사(2000.4)</li> <li>- 「한국전통식품 세계화를 위한 품평회」를 개최하여 우수전통식품 선발(2000.8)</li> </ul> <p>※ ASEM 회의시 홍보(정상 건배주로 활용 등)</p> <p>□ 향후 추진계획</p> <p>◦가공공장 경영컨설팅의 내실화</p> <p>◦산업자원부와 농산물 가공업체에 대한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방안 지속 협의</p> <p>◦기타 가공공장 경영활성화 방안 강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99 농산물 가공공장 경영실태 조사결과를 분석, 대책방안 강구(2000.11)</li> <li>·부실업체 퇴출 및 회생가능업체 지원방안수립 등</li> <li>- 각종 국제행사시 「품평회」 입상 전통가공식품 적극 홍보</li> <li>- 서울국제식품전시회 개최(2000.11)</li> </ul> <p>□ 조치결과</p> <p>◦농업분야 유전자변형 농산물안전관리대책 협의회를 2회 개최('99.8, 1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전성체계 구축 추진협의</li> </ul> <p>◦농림축산업 분야의 유전자 재조합실험과 이 기술을 적용하여 농림축산물 및 농용 미생물을 연구·개발·이용함에 있어서의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농진청 내부규정으로 운용</p>

지 적 사 항	조치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진청에 안정성 평가를 위한 전문연구실을 별도로 설치·운영하여 신개발유전자변형 종자의 환경과 생태계의 위해성에 대한 안전성 평가 및 위해방지 기술을 연구</li> <li>◦생명공학 안전성의정서 국내이행체계 구축방안 마련 관계부처회의(8회)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대책반 설치 및 법령제정등 협의</li> </ul> </li> <li>◦유전자변형 농산물의 생태계 또는 환경에 대한 위해성을 평가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든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관리를 위한 범 정부차원의 단일 근거법령 제정 추진(2000.9.8)</li> <li>- 국가 책임기관 : 산업자원부</li> <li>- 각품목 소관부처는 생산·수출입승인 담당</li> </ul> </li> <li>※ 유전자변형농산물 표시제 도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행시기 : 2001.3</li> <li>- 대상품목 : 옥수수, 콩, 콩나물(감자는 2002.3부터)</li> <li>- 표시기준 : GM농산물 3% 이상 포함</li> </ul> </li> <li>□ 향후 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관계부처 공동으로 안전성 관리 근거법령을 금년중 제정</li> <li>◦동법이 제정되면 동법에서 농림부에 위임된 사항에 대한 농림부령 및 관련지침(고시) 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경위해성평가자료 심사지침」 제정 추진</li> <li>- 소관 품목에 대한 세부적인 안전성관리계획 수립 추진</li> </ul> </li> <li>◦GMO 위해성 평가기술 확립 및 전문인력 육성</li> </ul> </li> </ul>

지 적 사 항	조치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 한국마사회의 농림부 환원대책 마련</p>	<p>□ 조치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민단체 등이 「한국마사회 농림부 환원 투쟁 위원회」를 구성하여 마사회 농림부 환원을 위한 활동 전개</li> </ul> <p>□ 향후 추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마사회의 역사적 배경이나 선진외국의 예를 보더라도 마사회 농림부 환원필요</li> <li>◦마사회 농림부 환원이 농업인들의 숙원인만큼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관련법률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li> </ul>
<p>□ 농업재해에 대한 작물보험제도의 도입 방안 강구</p>	<p>□ 조치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계, 생산자단체, 농업인단체 등의 전문가 16인으로 구성된 농작물재해보험도입준비위원회구성 (3.17 발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행방안에 대한 기본틀 마련</li> <li>- 공청회를 개최하여 농업인의 의견 수렴 (나주, 군위)</li> </ul> </li> <li>◦품목별 주산지 10개 시·군의 384농가(사과 191, 배 193)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 50%가 가입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li> <li>◦사과·배에 대한 농작물재해보험 시범사업 도입 (2001년 예산 : 46억원)</li> <li>◦보험약관, 손해평가지침 등 세부시행방안 마련을 위해 농작물재해보험 실무작업반 운영</li> </ul>



지 적 사 항	조치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 「농어민부채탕감 특별법」의 제정 등 농가부채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대책 강구</p>	<p>□ 향후 추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작물재해보험법 제정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법제처 심사중에 있으며 11월중에 국회제출</li> </ul> </li> <li>◦농작물재해보험 세부시행방안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험요율, 보험약관, 손해평가지침 등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하여 12월중에 도상연습을 실시하여 보완</li> </ul> </li> <li>◦농업인 및 보험종사자에 대한 교육·홍보실시 (2001년 1~2월)</li> <li>◦2001년 3월부터 농작물재해보험 시범사업실시</li> </ul> <p>□ 조치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00년도 부채대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호금융 대체자금으로 호당 1,000만원까지 연리 6.5%로 1년간 지원</li> <li>- '98.10 ~ '99 기간중 상환연기된 정책자금과 2000년 상환도래하는 정책자금 규모를 1년간 상환연기</li> <li>- 농업경영개선자금(1조8천억원)을 연리 6.5%,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지원</li> <li>- 농업인의 연대보증을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 기금으로 대체</li> </ul> </li> </ul> <p>□ 향후 추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가부채경감 조치와 함께 농가의 소득을 향상 시켜 부채상환 여력을 키우기 위하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논 농업직접지불제 시행, 농작물 재해 보험 도입, 농산물가격 안정 등에 의한 종합적인 농가소득안전망을 구축하는 방안 강구</li> </ul> </li> </ul>

第225回 定期國會(國政監査)

農 林 海 洋 水 産 委 員 會

# 主 要 農 政 推 進 現 況

2001. 9. 10.

農 林 部

“농업은 생명산업이다”

## 목 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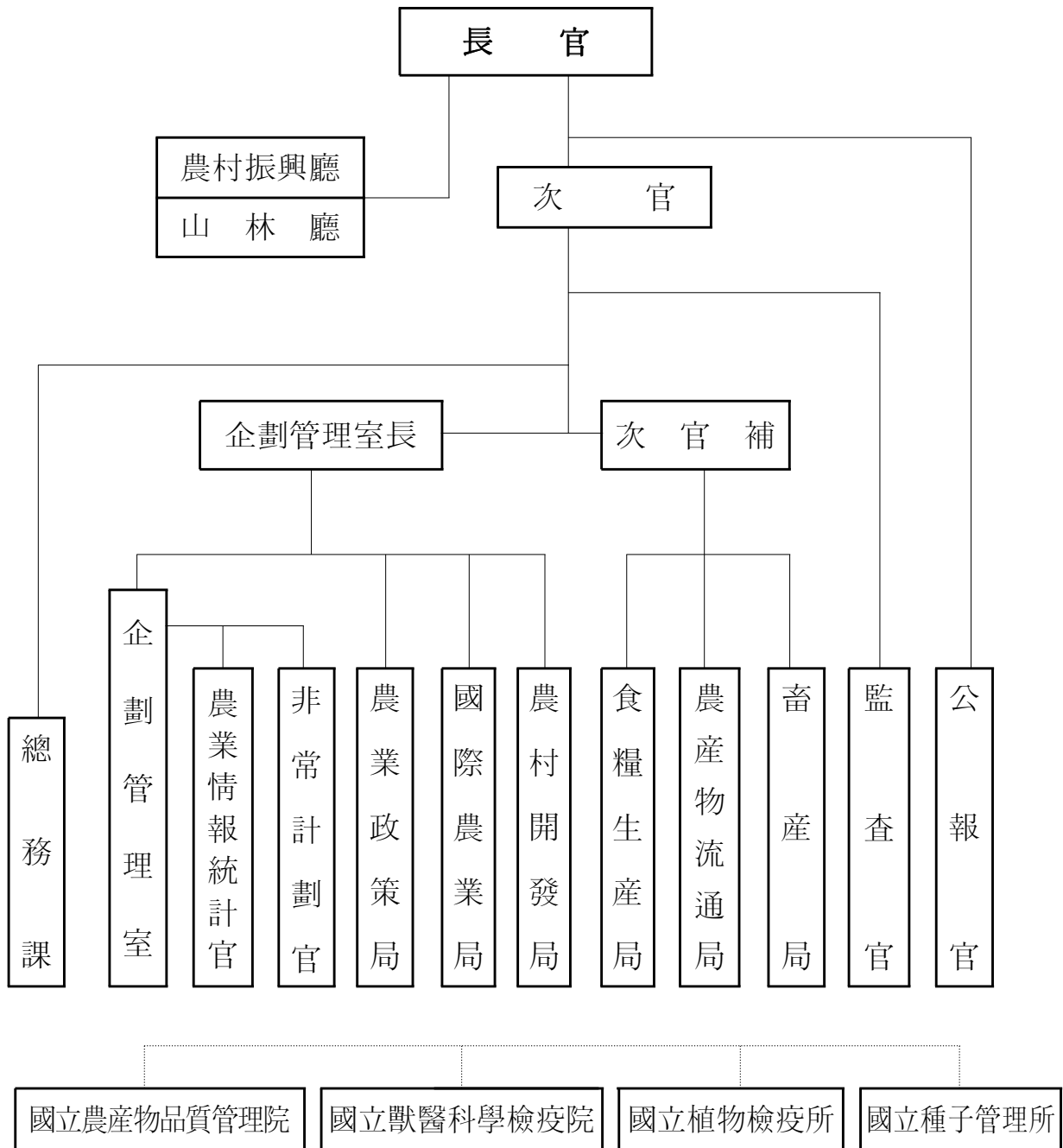
---

I. 일 반 현 황 .....	147
II. 2001 주요업무 추진현황 .....	151
III. 당면 현안 업무 .....	175
IV. 2001년 정기국회 입법추진계획 .....	189
V. 2000년 국정감사 주요지적사항 조치결과 .....	194

# I. 일 반 현 황

## 1. 조직 및 기능

□ 조 직 : 1실, 6국, 4관, 4소속기관



# □ 기 능

## < 본 부 >

실 국 별	주 요 업 무
기 획 관 리 실	농림시책 및 예산조정, 조직·법무·투자심사·농촌 여성정책 수립
공 보 관	농림정책 및 주요현안 홍보
감 사 관	농림부 및 소속기관, 농업관련 단체·기관에 대한 감사
농업정보통계관	농업통계, 농업·농촌정보화
비 상 계 획 관	비상대비계획 수립
농 업 정 책 국	농업구조개선, 농지관리, 농촌인력육성, 농업금융협동조합
국 제 농 업 국	농업부문 통상협력, 농산물 수출·입정책 수립
식 량 생 산 국	식량정책 및 수급관리, 식량생산, 농자재, 친환경농업
농 산 물 유통 국	유통개선, 농산물가격안정대책, 식품산업육성, 채소·과수·화훼작물의 생산 및 수급
축 산 국	축산기반조성, 가축개량, 축산물·사료수급, 축산물위생
농 촌 개 발 국	농업용수개발, 경지정리, 수리시설관리, 생활환경정비

## < 소속기관 >

기 관 별	주 요 업 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산물 품질관리, 농산물검사, 농업통계조사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축산물 및 동물의 검사·검역 등 위생관리와 질병연구
국립식물검역소	수출입 식물의 검역
국립종자관리소	주요 농작물 종자관리 및 식물품종보호

## 2. 정 원

(9. 10현재)

	총 계	정 무 직	일 반 직									계 약 직	별 정 직	연 구 직	기 능 직
			계	1급	23급	3급	34급	4급	45급	5급	6~9급				
본 부	명 505	2	426	1	8	1	10	25	44	126	211		8	-	69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2,144		1,626		1		1	13	4	124	1,483		266		252
국립수의 과학검역원	460		285			2	1	12	2	27	241	1		90	84
국립식물 검역소	393		336				1	7	3	21	304	1		10	46
국립종자 관리소	167		67			1	1	10	1	9	45		4	25	71
소 계	3,164	-	2,314	-	1	3	4	42	10	181	2,073	2	270	125	453
총 계	3,669	2	2,740	1	9	4	14	67	54	307	2,284	2	278	125	522

## 농림관련 기관·단체의 기구 및 정원

○ 3개 기관, 2개 단체 : 77,407명

(2001.8월현재)

구분	기관·단체	기 구	정 원(명)		
			계	중 앙 (중앙회)	지 방 (회원조합)
투자 기관	농업기반 공사	6이사, 2원, 18처(실), 1관리단, 9개지사, 4사업단, 87개지부	6,012	879	5,133
	농수산물 유통공사	3이사, 9처·실·원, 12팀, 34부, 5지사, 5지소, 7해외 무역관	500	317	183
	<b>소 계</b>		<b>6,512</b>	<b>1,196</b>	<b>5,316</b>
산하 기관	한국마사회	4본부, 15처·실 37팀, 4부속기관	722	722	-
	<b>소 계</b>		<b>722</b>	<b>722</b>	<b>-</b>
농업 협동 조합	중앙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 앙 본 부 : 33부, 1처, 1분사</li> <li>- 농 업 경 제 : 7부</li> <li>- 축 산 경 제 : 4부</li> <li>- 신 용 : 11부, 1분사</li> <li>◦교 육 지 원 : 10부</li> <li>◦감 사 감 독 : 1처, 1부</li> <li>◦지 역 본 부 : 16지역본부</li> <li>◦시·군 지 부 : 156 시·군지부</li> <li>◦지점·출장소 : 711개소</li> </ul>	17,432	17,432	-
	회원조합	농협 1,181, 축협 193, 인삼협 14개소	50,768	-	50,768
	<b>소 계</b>		<b>68,200</b>	<b>17,432</b>	<b>50,768</b>
산림 조합	중앙회	5부 6실, 8지회, 1출장소, 4사업소, 3훈련원	394	394	-
	회원조합	144조합	1,579	-	1,579
	<b>소 계</b>		<b>1,973</b>	<b>394</b>	<b>1,579</b>
<b>계</b>			<b>77,407</b>	<b>19,744</b>	<b>57,663</b>

## Ⅱ. 2001 주요업무 추진현황

1. 영농 추진상황 .....	153
2. 농업생산기반정비 .....	155
3. 농가부채경감대책 .....	157
4. 논농업 직접지불제 .....	158
5. 농작물재해보험 시행 .....	159
6. 농산물 수급안정 및 유통개혁 .....	160
7. 한우·양돈·양계 종합대책 .....	164
8. 친환경농업 육성 .....	168
9. 협동조합 제2단계 개혁 추진 .....	169
10. 농업·농촌정보화 .....	171
11. 농산물 수출확대 .....	172
12. WTO 농업협상 추진상황 .....	173



# 1. 영농 추진상황

< 벼 >

○ 8.15일 기준 전국적인 벼 작황조사 결과, 포기수는 전년과 비슷하고 줄기수는 다소 감소

- 봄가뭄으로 모내기가 지연되고, 분얼기에 일조량 부족으로 가지치기가 다소 부진했기 때문으로 분석

\* 1m<sup>2</sup>당 포기수 : 22.8포기(전년대비 △0.4%), 포기당 줄기수 : 19.1개(△5.4%)

○ 그러나, 7월 이후 일조량(7.1~9.6)이 크게 늘어났고, 병해충 예찰 강화와 적기방제로 벼 생육상태는 양호한 수준

\* 일조시간 : ('99) 315.6시간 → ('00) 322.7 → ('01) 409.3

기 온 : 25.0℃ → 25.9 → 26.0

※ 10.10 예상수확량 조사, 11월중 실수확량 조사 예정

○ 금년도 쌀 재배면적은 흑심한 봄가뭄에도 불구하고, 밭벼 재배 증가로 전년대비 1% 증가한 1,083천ha 수준

\* 재배면적 : ('00) 1,072천ha → ('01) 1,083 (1.0%증)

( 논 ) (1,055) (1,056)

( 밭 ) (17) (27)

○ 올해 쌀 수확량은 앞으로의 일조량과 태풍 등 기상여건에 따라 영향을 받을 전망이나, 현재로서는 작황이 비교적 좋은 상태

## < 채소류 >

- **고랭지 무배추** : 생산량은 재배면적 감소 등으로 전년보다 줄 전망이나 수급상 큰 문제는 없으며, 가격은 **하향안정세 유지** 예상
    - \* 생산량 : ('00) 483천톤 → ('01전망) 450(△6.8%)
    - \* 재배면적 : ('00) 14천ha → ('01전망) 13(△4.2%)
  - **고추** : 재배면적 감소, 역병 등으로 **생산량 감소**가 전망되며, 가격은 당분간 **강보합세** 지속, 9월중순이후 약보합세 전망
    - \* 생산량 : ('00) 194천톤 → ('01전망) 180~187(△4~7%)
    - \* 재배면적 : ('00) 74.5천ha → ('01전망) 70.7(△5%)
- ※ 최근 가뭄상황에 대비하여 단계별 생산 및 수급안정대책 추진

## < 과실류 >

- **배** : 成果樹면적 증가, 생육호조로 **생산량 증가**가 예상되나, 빨라진 숙기 등으로 소비도 증가될 전망
  - \* 생산량 : ('00) 324천톤 → ('01전망) 365천톤(13%증)
- **감귤** : 해거리 풍작년으로 생산량 증가가 전망되어 간벌, 휴식년제, 열매숙기 등 **감산대책** 추진
  - \* 생산량 : ('00) 564천톤 → ('01전망) 630천톤 (12%증)
- **사과** : 성과수 면적 감소로 **생산량 감소** 전망
  - \* 생산량 : ('00) 489천톤 → ('01전망) 430천톤 (△12%)
- **단감** : 개화기 저온 등으로 **생산량 감소** 전망
  - \* 생산량 : ('00) 227천톤 → ('01전망) 210천톤 (△8%)

## 2. 농업생산기반정비

- 지속적인 생산기반 확충으로 **안전영농**과 **풍년농사** 지원
  - **일반경지정리** : 진흥지역위주의 우량농지 **10천ha** 개발(2,991억원)
    - \* ('00까지) 699천ha(87%) → ('01누계) 709(89%)
  - **용수개발** : 대중규모, 저수지 보강 등 **12천ha** 개발(13,151억원)
    - \* 수리답 : ('00까지) 880천ha(77%) → ('01누계) 892(78)
  - **배수개선** : 상습침수지 피해지역(235천ha) 위주로 **10천ha** 개발(2,226억원)
    - \* ('00까지) 101천ha(43%) → ('01누계) 111(47)
  
- 특히, 올해 극심한 **봄가뭄 피해 최소화**를 위해 재해대책비, 국민성금 등으로 **용수원 긴급개발** 지원
  - 3차에 걸쳐 가뭄지역에 농업용수개발비 **2,779억원** 지원
    - \* 조기에 용수확보가 가능한 하상굴착 등 간이용수원 위주로 중점 개발하고, 가뭄상습지역에는 대형관정 등 항구시설 설치
  - 국민성금 100억원으로 **관정**(219공, 85억원), **양수기**(5,437대, 15) 지원
  
- 이번 봄 가뭄에서 드러난 지역별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농촌용수 10개년 계획('95~'04)**」을 수정
  - 대중규모 용수개발은 **완공위주로** 집중지원, 공사기간 **2~3년 단축**
  - 준설 및 보강개발사업을 확대 추진하여 수리시설의 **내후능력** 제고
  - 노후시설에 대하여 **개량보수**와 **시설현대화** 적극 추진 등

## < 가뭄극복 국민성금 지원실적 >

- 지난 가뭄시 언론기관 중심으로 「가뭄극복성금모금운동」을 적극 전개, 범국민적 총력지원체제 구축과 국민통합의 계기마련
  - 재해대책협의회 주관으로 2001.6.8 ~ 6.23간 총 164억원 모금
- 재해대책협의회로부터 국민성금 100억원을 미리 받아 양수기 5,437대(15억원), 암반관정 219공(85억원)을 신속히 지원
  - 1차 50억원(6.13), 2차 50억원(6.15)
- 국민들의 정성이 오랫동안 간직되도록 관정, 양수기 등 항구적인 시설·장비위주로 지원하고, 국민성금으로 마련되었다는 표지부착과 함께 사후관리 체계도 강화
  - 양수기 : 시·군 재산으로 관리하고, 농가요청시 사용토록 지원
  - 암반관정 : 시설물관리자(시장·군수 등)가 시설물관리대장 작성·비치
- 국민성금 모금액중 잔액은 재해대책협의회가 관리
  - 추후 가뭄피해농가, 수재민 등에 대한 구호비로 사용할 계획
  - ※ 국민성금의 사용 및 관리상황 등에 대해서는 신문광고 등을 통해 공개하였고, 국민성금 백서도 발간·배포

### 3. 농가부채경감대책

◇ 「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근본적인 부채대책** 추진

- '01~'03년간 상환도래되는 정책자금 3조 9천억을 2년거치 5년 분할상환
- 상호금융자금 10조원을 저리 대체 (6.5%, 5년간)
- 경영개선자금 1조 1천억원 추가지원(6.5%, 2년거치 3년 분할상환)

□ 농어가 부채 17조 5,500억원에 대한 **상환연기와 금리인하 조치** 추진

- 9.1일 현재, 17조원을 신청(계획금액의 97%)받아, 14조 2천억원 (신청금액의 84%)에 대해 상환기간 연기와 이자율 인하 결정

□ 부채대책이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시행지침 계속 보완**

- 상호금융대체 지원시 '99.4/4분기중 상환금액도 '99년말 잔액에 포함
- 농업용 상호금융부채 1,500만원까지는 전액 저리자금으로 대체
- **중앙회 자금 및 경제사업 채무에 대한 자체 분할상환 조치**
  - 중앙회 자금은 5년 분할상환하고, 우대금리 적용
  - 사료·비료 등 경제사업 채무는 5년 분할상환하고, 신규 상호금융 금리적용

□ 농가부채대책 추진과정에서 부적격자 지원 등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농림부·농협 **합동 특별점검** 실시(7.7~14)

- 점검결과에 따라 자금회수(6건), 대상자 지정 취소(1건) 및 재심의뢰(33건) 등 강력한 조치 시행

\* 지적사례 : ① 자금의 실제사용 용도 미확인, ② 본인 또는 배우자가 안정된 직장에 종사, ③ 현금화 가능 자산이 총부채의 80% 초과 등

## 4. 논농업 직접지불제

◇ 농가소득안정, 논역의 공익적 기능 유지 등을 위해 **논농업 직접지불제**를 올해 **처음 도입·실시**

·대상농지 : 최근 3년간('98~'00)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약 890천ha)

·지급단가 : 진흥지역 25만원/ha, 비진흥지역 20(2001예산 : 2,073억원)

□ 전체 논경작 농가의 97%인 1,035천 농가를 대상으로 선정

○ 실제보조금이 지급될 수 있는 면적은 지급상한(2ha) 초과면적을 제외한 833천ha(진흥지역 562, 비진흥지역 271) 수준 전망

\* 직접지불제 신청 논면적은 906천ha로서 당초 계획면적(890천ha) 초과

□ 그동안 3차례 현장점검 실시를 통해 보다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시행지침 보완

○ 임차농 등 실경작자에게 보조금이 지급되도록 지원신청방식 단순화

\* 농지원부 등이 없는 경우라도 마을대표 확인서만으로 신청 가능

○ 친환경농업 유도, 임차료 상승 방지 등을 위해 농업인이 희망할 경우, 농자재 등 현물로 보조금 지급

○ 행정수요 집중에 따른 부실심사 예방과 농업인의 신청기회 보장을 위해 사업신청기간을 두차례 연장(1차: 4월말, 2차: 8월말)

□ 앞으로 비료·농약 적정사용 등 의무이행여부를 점검하고,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직접지불제 내실화 도모

○ 논역의 형상과 공익기능유지 의무이행 여부 확인, 토양검정 및 잔류농약검사를 통해 11~12월경 보조금 지급

○ 보조금 지급단가 및 지급상한 상향조정 등 제도개선 추진

## 5. 농작물재해보험 시행

- 자연재해로부터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올해 사과·배를 대상으로 농작물재해보험 시범사업을 처음 실시
- 보험가입 마감(5.19)결과, 8,204농가가 계약을 체결(대상면적 대비 17.6%)
  - 시행 첫해로 보험에 대한 낮은 인식과 보험료 부담 등으로 가입이 다소 저조
    - \* 일본의 경우, 보험제도 시행 초년도의 대상면적대비 가입율이 13.8%
    - \* 2,000평 기준 80%보장시 보험료 : 사과 347천원, 배 1,364천원
- 앞으로 재해발생 농가에 대해 피해조사, 최종 수확량조사 등 손해평가를 실시하여 적정 보험금 지급
  - \* 8.31일 현재 피해발생신고현황 : 631농가(동상해 533, 우박 85, 폭풍우 13)
- 실효성 있는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시범사업 추진과정에서 드러난 미비사항을 적극 보완
- 농가의 보험료부담 완화로 가입확대를 위해 순보험료, 운영비 확대 지원방안 강구
- 또한, 보험료 분납제도 및 재가입시 보험료 할인제도 도입, 필지별 가입허용 등 제도개선 추진
- 2002년에는 포도·단감·감귤·복숭아까지 대상품목을 확대하여 주산지를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
- 11월말까지 보험요율 산출, 손해평가방법, 보험약관 등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

## 6. 농산물 수급안정 및 유통개혁

### 가. 농산물 수급안정대책의 실효성 제고

- 사전적 수급조절 사업을 적극 추진, 가격안정 도모
  - 재배면적 적정화를 유도하기 위해 농업관측 확대
    - \* 농업관측품목 확대 : ('99) 14개 → ('00) 18 → ('01) 24
  - 무·배추 등의 계약재배물량 확대 등 출하조절기능 강화
    - \* ('00) 3,500억원(498천톤, 생산량의 8%) → ('01) 4,500(800, 생산량의 15%)
  - 시설채소와 과수에 대해 출하조절사업 신규 도입
    - \* 시설채소(105천톤, 600억원), 금년산 사과·배(44천톤, 1,000억원)
- 과잉생산 등 가격하락요인이 발생할 경우, 조기에 적극적인 시장개입으로 가격지지효과를 극대화
  - 마늘·양파는 본격출하기 이전에 수매방침 결정, 산지폐기 등을 통해 가격불안요인 사전 해소
    - \* 마늘도매가격 : (5.하) 1,255원/kg → (6.중) 1,300 → (7.중) 1,400 → (8.중) 1,725
    - \* 양파도매가격 : (5.중) 170원/kg → (6.중) 343 → (7.중) 336 → (8.중) 361
  - 사과(4천톤), 배(3천톤), 감자(5천톤) 대북지원 등 시장격리 조치로 수급안정 도모
- 생산자조직 중심의 자율적 수급조절 추진
  - 대파는 자율적 생산감축을 조기에 지원하여 가격 회복
    - \* 가락도매시장 대파가격 : (2월 상순) 446원/kg → (2월 하순) 673
  - 고랭지 채소, 겨울배추, 감귤 등도 품목별 연합조직을 결성하여 적정수급 유지



## 나. 물류효율화를 위한 유통인프라 구축

### □ 광역단위 생산자조직 중심으로 산지유통 효율화

#### ○ 공동출하·공동계산 조직 등 우수협동조합 지원 강화

- 161개 조합에 유통활성화 자금 4,613억원 지원('00:99개, '01:62개)

- 선별·예냉 등 시설·장비를 우수 생산자조직에 집중 지원

\* 공동출하율 : ('99) 50% → ('00) 55 → ('01) 60

#### ○ 우수 협동조합 중심으로 전국 300여개의 산지유통전문조직을

지정하여 규모화·전문화 유도

- 조합간 사업연합 방식으로 공동마케팅을 강화하여, 소비지 대형

유통업체 및 도매시장에 대한 시장교섭력 제고

### □ 물류체계 개선을 위해 유통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포장화·파레트화 등 일관 수송체계 확립

#### ○ 소비지 및 산지 유통시설 설치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

- 도매시장 : 32개 목표 중 29개 개장('01 : 6), 2003년 완료

- 종합유통센터 : 15개 목표 중 9개 개장('01 : 2), 2004년 완료

- 산지유통센터 : 248개 목표 중 196개 운영('01 : 20), 2004년 완료

#### ○ 포장화, 파렛트화 등 일관 수송체계 구축

- 규격포장비, 물류기기 및 장비 임차료 등 지원 강화('01 : 814억원)

\* 표준규격화율 : ('99)30% → ('00) 35 → ('01) 40

- 소비자기호 반영, 디지털 유통에 맞게 126개 품목의 포장 및 등급

규격도 전면 개편

□ 도매시장, 종합유통센터, 전자상거래 등 유통경로간 경쟁을 촉진시켜 농산물 판로확대

○ 선진형 직거래 확대 등을 통해 농산물 유통경로 다양화

- 「생산자단체-대형유통업체」간 직거래 확대 중점추진('01 전망 : 2조원)
- 장터(162), 파머스마켓(19) 등 전통적 직거래 사업의 운영활성화
- \* 직거래 비중 : ('99) 15% → ('00) 18 → ('01) 24

○ 종합유통센터(15개소)간 통합물류체제 구축으로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물류 기지로서의 역할 강화

\* 대형유통업체 점포수 : ('01) 209개 → ('05) 350-400개

○ 도매시장의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하역기계화, Cold chain system 구축 및 전자경매 등 확대 실시

- 출하자실명제 및 등급표시제 등으로 고품질 농산물 출하촉진

□ 소비자 지향적 품질관리 및 마케팅 강화로 농가수취가격 제고

○ 농산물 상품성을 높일 수 있는 품목별 「수확 후 관리기술」 개발·보급 확대

- 수확시기, 예냉 및 저장, 포장 및 수송 등 최적방안 강구

○ 우수농산물 브랜드전, 정기적 상품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브랜드마케팅 지원 강화

\* 농산물 브랜드 현황('01) : 4,701개

## 다. 농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 농가, 유통인,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전자상거래 활성화 촉진

- **농업인** : 유통단계 축소, 판매기회 확대로 농가수취가격 제고
- **유통인** : 재고·보관·거래 등 물류비용감소, 시간·장소제약 극복
- **소비자** : 구매기회 확대, 탐색비용 절감, 편리한 쇼핑 가능

### < 전자직거래(B2C) 효과 >

기 준 상 품	생산자 이익	소비자 이익
	<b>35.1%</b>	<b>22.9%</b>
매실 10kg 특상품 기준 (택배비 4,000원 소비자 부담)	도 매 가 격 : 37천원 전자직거래가격 : 50	소 매 가 격 : 70천원 전자직거래가격 : 54

\* 경남 하동군 지리산 먹점골 매실농장 사례

□ 전자상거래 규모는 지난해 500억원에서 2003년 **1조원으로 확대** 전망

\* 전자상거래 규모 추정 : ('00) 500억원 → ('01) 2,700 → ('03) 1조원

- 전자직거래(B2C)는 배송반품 등 유통관리능력 향상으로 급성장
- 기업간 거래(B2B)는 RPC, LPC 등과의 제휴를 통해 거래증가 추세

□ 전자상거래의 **조기활성화**를 위해 운영자금 등 지원 강화

- 우수 전자상거래업체에 2003년까지 **운영자금 100억원** 지원
- 농업인 **홈페이지 구축지원** 및 **통합쇼핑몰 운영내실화**로 전자직거래(B2C) 확대 유도

\* 농업인 홈페이지 확대 : ('00) 1,400개 → ('01) 3,000 → ('05) 10,000

- 농산물·농자재 등을 대상으로 **전자상거래 표준화** 지원

- 농산물 표준바코드 도입, 전자카탈로그·전자문서 표준화 등

## 7. 한우·양돈·양계 종합대책

### < 한 우 >

◇ 지난 4월 발표한 한우산업발전종합대책에 따라 2010년까지  
**2조 4천억원**을 집중투자하여 한우산업의 경쟁기반 확충

·번식기반확보 : 사육두수 ('00) 159만두 → ('10) 225

·한우개량촉진 : 거세우 1등급 출현율('00) 52% → ('10) 80

·출하체중(24개월령 거세우) : ('00) 550kg → ('10) 610

□ 쇠고기 및 생우시장 전면개방에 따른 한우농가의 사육불안 심리가 최근 들어 크게 완화

○ 번식의욕 회복으로 **암소도축율이 감소**('01.2 : 60.3% → '01.8 : 48.2) 하고, 암송아지가격도 상승('00.12 : 119만원 → '01.9.7 : 188)

○ '97.6월 2,927천두를 고비로 계속 감소하던 **한우사육두수가** 금년 6월 증가세로 **반전**('01.3 : 1,476천두 → '01.6 : 1,507)

□ 영세한 소규모 생산체계, 품질 고급화 미흡 등 생산기반은 아직도 취약

○ 한우사육농가 대부분이 **10두 미만**(88.1%)으로 소규모 생산구조

○ 거세우 **출하비율**('00 : 9.5% → 01.7 : 26.0)과 1등급출현율 ('00 : 24.8% → '01.7 : 32.7)이 계속 높아지고 있으나 아직 미흡

○ 현대화된 도축장 시설미비, **지육·냉동육 위주유통** 등 유통 구조가 선진국에 비해 취약

- 송아지 생산기반 확충으로 안정적인 한우산업 발전토대 마련
  - 조사료 생산여건이 양호한 제주도 등을 한우개량 생산기지화 하여 값싸고 우수한 송아지 생산·공급
  - 송아지생산안정제 정착, 다산장려금 지급, 번식우시범 목장육성 등을 통해 안정적인 번식기반 확보
    - 번식농가 기술지도를 통해 분만간격 단축 등 생산성향상 도모
  - 지구당 30ha내외의 대규모 사료작물 재배단지를 조성하여 싼값에 조사료 공급
  
- 수입육과의 경쟁축진을 위해 한우고기 품질고급화 적극 추진
  - 한우예비등록제를 도입하여 한우등록두수를 확대하고, 인공수정료(두당 2만원)를 지원하는 등 개량체계 강화
  - 거세장려금(두당 20만원) 지급과 함께 송아지 경매시장 운영 (17개조합 시범실시)으로 농가의 고급육생산의욕 고취
  - 생산자단체 중심으로 소규모농가를 조직화하여 브랜드화 촉진
    - 사료 및 사양관리 통일, 체계적인 개량사업 추진, 공동출하 등 실시
  
- 안전하고 위생적인 선진화된 유통체계 마련
  - LPC 활성화와 부분육 상장경매제의 도입 등을 통해 냉장·부분육 유통기반조성
  - 영세식육판매업소 등 소매유통시설의 규모화·현대화 추진
  - 축산물바코드 도입, 식육거래정보기록 의무화 등으로 축산물 유통투명성 제고

## < 양 돈 >

- 돼지고기 가격은 유럽 등 23개국의 구제역 발생에 따른 잠정적 수입금지와 국내 구제역 재발방지 등으로 안정세
  - 최근 입식증가로 사육두수가 850만두 내외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나, 돈육수입가격 강세로 **적정가격 유지** 예상
    - \* 돼지가격(천원/100kg) : ('00.12) 152 → ('01.6) 208 → ('01.9.7) 184
  
- 생산자단체 중심의 「양돈수급안정위원회」를 통한 **자율적 수급안정대책** 실시
  - 축산관측과 함께 전문가의 수급 및 가격전망 정보를 정기제공하여 사전적·자율적 수급조절능력 강화
    - \* 양돈 수급안정자금 신규 조성 : ('01) 500억원 → ('02) 1,000
  
- OIE 구제역 청정국가 인증, 주요 수출국인 일본과의 협의 등 **본격적인 수출재개 준비**
  - 9월이후 일본과 제주도를 포함한 국내산 돈육의 수입금지조치 **해제요구** 등 협의추진
  - 양돈단지 등을 통한 **수출기반 정비 및 수출규격돈 확보**
    - 수출업체에 대한 원료돈 구매, 가공·유통시설, 포장비 등 지원
      - \* 지원규모 : ('00) 311억원 → ('01) 9 → ('02) 402
  - 돼지고기 **대일수출시장 회복**을 위한 **관측활동** 및 홍보강화
    - 업체 자율 「품질 라벨링제」 시행으로 국산돈육의 이미지 제고

## < 양 계 >

◇ 양계산업발전종합대책의 철저한 시행으로 닭고기산업의 경쟁력강화

· 2010년까지 4천억원을 수출시장 개척, 유통개선, 질병방역 등에 집중 투자

□ 생산자단체 중심으로 「양계수급안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수급 안정자금 조성 등을 통해 민간 자율적인 가격안정체계 구축

○ 양계수급안정자금조성 : ('01) 500억원 → ('02) 1,000

\* 닭고기 가격(원/kg) : ('00.12) 874 → ('01.9.7) 1,134

\* 계란 가격(원/10개) : ('00.12) 793 → ('01.9.7) 945

□ 닭고기·계란에 대한 등급제실시로 규격화 및 품질차별화 도모

○ 10월부터 계란등급판정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경매제 도입을 통해 품질별 공정거래 유도

○ 닭고기 등급제가 2003년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포장 및 규격화 촉진

□ 닭고기를 수출전략상품으로 적극 육성

○ 닭고기 생산비절감을 위한 종계장 및 부화장시설지원(개소당 5~10억원)과 육계수출전문 계열농가육성 등 수출기반 조성

※ 육류수출유통협회에 양계전문가가 참여하는 「닭고기 수출위원회」 구성

○ 닭고기 수출업체에 시장개척비용, 포장 및 물류비 지원

\* 수출업체 물류비 지원확대 : (현행) 포장비 30% → (개선) 포장·수송비 70%

## 8. 친환경농업육성

- 지역실정에 알맞는 자연순환형 농업 확산 기틀 마련
  - 축산과 경종을 연계하는 축산분뇨 액비화사업 확대
    - \* 액비저장조 사업지원 : 저장조 292기, 지원액 46억
  - 겨울철 노는 땅에 자운영호밀 등 사료녹비작물재배 확대
    - \* 재배면적 : ('00) 84,000ha → ('01) 118,000
  
- 토양검정에 의한 적정시비 지도 및 토양자원 유지개량
  - 농협 토양진단센터를 확대 설치하여 농업인의 적량시비지도
    - \* ('00) 116개소 → ('01) 197 → ('02) 366
  - 석회·규산질 비료 등 토양개량제 공급 확대
    - \* ('01)규산 4년석회 5년 1주기(780천톤) → ('02) 4년 1주기(840)
  
- 새로운 친환경농산물표시인증제 도입·시행('01.7)
  - 친환경농산물 품질관리제도를 친환경농산물표시인증제도로 일원화하여 새로운 인증마크 개발홍보
    - \* 포스터(1만매), 홍보전단(50만매), 인터넷 홍보, 지하철 등 광고물 게시
  - 유기축산물인증기준을 설정하여 유기축산 발전 유도
  
-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지원확대 및 친환경농산물 유통활성화
  - 친환경농업지구 10개소(100억), 가족농단지 30개소(75억) 등 신규조성
  - 친환경농산물 구매자금지원(64억원), 전문판매장 확충(90개소) 등을 통해 판로확대



## 9. 협동조합 제2단계 개혁추진

◇ **중앙회 통합 및 제도개혁의 성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제2단계 협동조합개혁방안을 강력히 추진**

- 중앙회 : 사업·기능의 경량화 등을 통해 회원조합 중심 조직으로 개편
- 일선조합 : 광역화·전문화하여 경영건전성 제고 및 경제·유통사업에 역량 집중

□ **농·축·인삼협중앙회 통합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제고하고 일선조합 지원기능 강화를 위해 구조조정 적극 추진**

- 조직 : 4개부서 축소(37부 → 33), 경영협약체결, 63개 금융점포 폐쇄
- 인력 : 761명 감원(16,774 → 16,013), 퇴직금 누진제 폐지
- 경제사업장 : 공관장 분사화('01.1), 사료공장·유가공공장 이관('01.4) 및 유통센터 통합방침 확정('01.6)
- 고정자산매각 : (구)축협중앙회 사·도지부 건물 등 33건, 2,379억원

□ **조합원의 경영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적 장치와 조합의 유통 기능 강화 지원**

- 조합운영평가자문회의(176개), 사외이사제(46개) 도입 등으로 조합원의 경영참여 기회 확충
- 조합간 합병 등 규모화 추진, 지사무소 통폐합 및 인력감축 (△3,159명) 등 자구노력 강화
  - 지난 3.6일 합병권고한 53개 조합중 28개 조합이 합병추진중
- 사업연합 등 경제사업 선도조합에 대한 유통활성화 자금 지원 확대
  - \* 유통선도조합 : ('00) 166개 → ('01) 263(97 중)

- 일선조합 상호금융의 건전성을 높이고 농업인의 부담 경감
  - 상호금융 대출금리를 은행권 수준과 연계하여 인하 유도
    - \* 신규대출금리현황 : ('00말) 10.72% → ('01.7) 9.34
  - 예금자보호기금 적립액을 예수금의 1.25%까지 확대하여 예금자를 보호하고, 조합상호금융의 신뢰도 제고
  - 농신보의 보증여력을 기금잔액의 17배에서 20배로 확대
    - 특히, 1억원 초과 농신보 보증시 연대보증인 입보의무 폐지
- 현행 농협중앙회의 신용경제사업 분리 타당성에 대한 외부용역 추진중
  - 한국금융연구원과 연구용역계약을 체결(연구기간 : 2001.1~12)
    - \* 농협법 관련규정에 따라 최종보고서 내용을 '02.6.30일까지 국회제출, 제출일로부터 2년 이내 연구용역결과 이행
- 농민·소비자단체 등으로 「협동조합개혁추진위원회」를 구성, 개혁추진상황 점검과 새로운 과제 발굴 등 지속적인 개혁체제 구축
  - 대표이사별 독립경영체제 강화, 일선조합 인사·급여제도 개편방향 등 합리적인 대안 검토
  - 중앙회 조직·인력에 대한 외부 정밀진단을 실시('01.3~10) 중이며, 용역결과에 따라 중앙회 조직체제 및 운영방식 혁신
    - \* 내년말까지 2단계 협동조합개혁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지도

## 10. 농업·농촌 정보화

- ◇ 도·농간 정보격차를 조기에 해소하고, 농업의 경쟁력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업·농촌정보화 5개년계획」 수립('01.8)
  - 정보화기반, 디지털유통 등 12대 과제 중점 추진('05까지 2,530억원 투자)

### □ 농촌지역 초고속 정보통신망 조기 확충

- 농촌지역 어디에서나 초고속인터넷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내년말까지 거의 모든 읍면 지역에 ADSL서비스 제공
  - \* ADSL 보급실적('01.7) : 읍 95%(190개읍), 면 51%(619개면)
- ADSL보급이 어려운 오지지역에는 위성인터넷 활용 지원
  - 위성인터넷 이용료를 ADSL수준으로 인하('01.6월, 5만원/월 → 3)

### □ 농촌 PC보급 확대 및 농업인 정보화 교육 적극 추진

- 농가 PC보급율을 현재 30% 수준에서 2005년까지 50%으로 확대
  - 1지자체 1민간업체 자매결연 맺기 등 농촌 PC보내기 운동 본격 추진
- 올해 75천명 등 2005년까지 40만명에 대한 **눈높이 정보화교육** 실시
  - 이중 10만명을 정보화 전문농업인으로 육성하고, 여성농업인 교육도 확대

### □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정보를 신속히 제공

- 도매시장별·가격대별 출하물량, 대형유통업체 판매가격 등을 제공하기 위해 「출하지원시스템」의 기능 확충
  - \* 정보제공 품목확대 : ('00) 5개 → ('01) 11 → ('05) 28
- 2005년까지 1만개의 농가 홈페이지를 구축, 디지털 유통의 핵심으로 육성

## 11. 농산물 수출확대

- ◇ 7월현재, 수출실적은 834백만불(전년동기대비 0.8% 증가)
  - \* 구제역 영향으로 수출이 급감한 돼지고기 제외시 6.1% 증가
- 금년도 수출목표(17억불) 달성을 위해 매월 수출동향을 점검하고, 특히 돼지고기 수출재개에 역량 집중

- 5대 수출 선도품목을 선정하여 세계일류상품으로 집중 육성하고, 시장특성을 감안한 차별화된 마케팅 활동 강화
  - 김 치 : Codex규격제정을 계기로 종주국 이미지마케팅 강화
  - 인 삼 : 고려인삼의 효능홍보강화, 캐릭터 등록국 확대(11→15개국)
  - 화 훼 : 생산·선별·수송 등 일관체계 구축과 수출시장 다변화
  - 돼지고기 : 구제역 청정국 지위획득 및 대일수출재개 추진
  - 닭 고 기 : 새로운 전략품목으로 선정, 양계시설 현대화규격화 추진
- 수출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상품성 향상 등을 위한 인프라 확충
  - 과수·화훼 등 수출단지 확대 조성 : ('00) 121개소 → ('01) 129
  - 농산물 수출전문 물류센터(2개소) 조기 완공 추진('02.12)
- 수출자금지원확대 및 수출애로요인 적극 발굴·해소
  - 농산물 수출촉진을 위해 수출금융 및 물류비 지원 확대
    - \* 수출관련자금 : ('00) 3,157억원 → ('01) 3,558
    - \* 수출물류비 : ('00) 191억원 → ('01) 212
  - 수출보험제도개선 등 수출업체의 어려움 해소 노력 강화
    - 불합리한 약관개정, 보험가입 행정지원 등 적극 추진
  - 일본의 채소류 검역강화조치 해제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

## 12. WTO 농업협상 추진상황

- 작년부터 올 3월까지 1단계 협상이 진행되었고, 지금은 2단계 협상('01.3 ~ '02.3) 진행중
  - 제1단계('00.1 ~ '01.3)에서는 협상의 목표·달성방안에 대한 각국 제안서 논의(총 47개 제안서)
  - 현재, 관세·수출보조·식량안보 등 19개 의제에 대해 심층논의중
    - 우리나라 등 수입국이 주장한 식량안보, 농촌개발, 식품안전 등을 의제에 포함
  - ※ EU·일본 등 5개 수입국과 공동주관으로 NTC에 대한 제2차 국제회의(2001.5)를 개최, 개도국의 지지기반 확산 도모
- 향후 농업협상의 범위와 일정 등에 큰 영향을 미칠 제4차 WTO 각료회의(11.9 ~ 13)에서 우리입장 반영을 위해 최선
  - 농업협상은 농업협정 제20조(개혁과정 지속)의 범위내에서 이루어 지도록 하고, 뉴라운드 형식으로 협상이 진행되도록 하는데 역점
    - \* 수출국은 WTO 농업협정 제20조 이상의 급진적 개혁을 주장
- 내년부터 본격화될 협상에 대비, 고위급 등 전방위 외교활동을 강화하고, 협상대책반도 보강
  - ASEAN+3 농업각료회의, FAO총회 참석 등 추진
    - \* 장관 유럽·일본 방문(1월), 차관 OECD 고위급 회의참석(9월)
  - Task Force팀 재편, 전문인력보강 등 주요쟁점별 대응능력 제고
- 국회, 농업인단체 등 NGO와 정보공유 및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
  - 농업인단체와의 간담회, 시·도 순회 설명회 등 수시 개최

## 주요 협상의제에 대한 각국의 주장내용

	<케언즈>	<미 국>	<E U>	<한 국>
<b>■ 관세감축</b>	·급격한 감축	·급격한 감축 ·국가간 관세수준 평준화	·UR과 같은 감축방식(평균, 최소감축률 병행)	·점진적 감축 ·다양한 형태의 관세허용
<b>■ 시장접근   물량(TRQ)</b>	·TRQ 대폭 증량	·국영무역기관의 배타적 수입권 폐지	-	·다양한 관리방법 인정 ·쿼타공매제 합법성 강조
<b>■ 감축대상보조   (Amber Box)</b>	·대폭감축, 품목별 감축	·농업생산액의 일정비율까지 감축 ·국내 보조유형 단순화	·기본틀 유지, 총액 기준 감축	·총액 기준 점진적 감축
<b>■ 수출보조</b>	·수출보조 철폐 ·수출신용규범 반영	·수출보조철폐 ·수출국영무역 기업의 독점권 철폐	·수출보조와 수출신용 동시 감축	·수출보조 계속 감축 ·수출신용규범 반영 ·자의적 수출제한 및 수출세 금지
<b>■ 식량안보</b>	·무역자유화를 통해 달성 가능	·무역자유화를 통해 달성 가능	·선진국과 무관	·적정수준의 국내생산 유지 ·핵심품목은 생산과 연계된 보조 허용

### Ⅲ. 당 면 현 안 업 무

1. 수확기 쌀 대책 및 향후 정책방향 ..... 177
2. 일선조합 부실처리대책 ..... 181
3. 새만금사업 재개 후속조치 ..... 182
4. 구제역 청정화 대책 ..... 183
5. 한·칠레 FTA 대책 ..... 184
6. 쇠고기 구분판매제 폐지 보완대책 ..... 185
7. GMO 안전관리대책 ..... 186
8. 중장기 농업·농촌발전계획 수립 추진 ..... 188

# 1. 수확기 쌀 대책 및 향후 정책방향

## < 양정여건 >

□ 최근 5년연속 풍작과 MMA 쌀 수입 등으로 쌀 공급은 증가하였으나, 소비는 감소하고 있어 재고가 증가하는 추세

○ 10월말 전체 재고는 990만석(정부재고 : 810) 수준 전망

- 전체재고	(‘99) 502만석	→	(‘00) 679	→	(‘01전망) 989
(정 부)	(482)		(619)		(811)
(민 간)	(20)		(60)		(178)

※ 현재의 재고량은 과거 사례에 비추어 과도한 수준은 아니지만, 정부수매량이 줄고 민간유통기능이 위축됨에 따라 금년 수확기 쌀 수급 및 가격안정에 부담

○ 올해 수확기 농가의 시중출하량은 1,948만석 수준으로 예상

□ 금년에 쌀값계절진폭이 1.3%로 축소되어 RPC의 경영이 어려워짐에 따라 별도의 대책이 없을 경우, 수확기 농가의 쌀 판매에 애로 우려

\* 산지쌀값 계절진폭 : (‘95) 11.2% → (‘99) 7.9 → (‘00) 3.0 → (‘01) 1.3

□ 2004년 WTO 쌀 재협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양정 기조를 전환하는 등 미리 대비할 필요

○ 중국이 WTO에 가입하면 쌀 개방압력이 거세질 가능성

○ 그동안 수매가를 인상해온 결과 농가소득지지는 도움이 되었으나, 국제경쟁력은 약화

※ UR(‘94)이후 일본은 10.3%인하, 대만은 동결, 우리나라는 26.4% 인상



## < 쌀 수급 및 가격안정대책 > : 수확기에 1,325만석 흡수

□ 금년도 추곡약정수매물량 575만석은 시장격리 효과가 큰 포대 위주로 수매하되, 산물수매 물량은 축소

\* 정부수매중 포대수매비율 : ('00) 60.9% → ('01) 73.9

□ RPC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민간부문의 농가 벼 매입촉진 (550만석 수준)

○ 운영자금 금리인하(5 → 3%), 운영자금 확대(13억원 → 18), 벼 매입특별자금 3,000억원 추가지원

\* RPC당 금년 수확기에 22억원, 내년초에 27억원 지원

○ RPC 매입량중 100만석 정도는 수탁판매제 방식으로 매입

\* 수탁판매제 : RPC에 맡긴 벼에 대해 선도금(70%)을 지급하고, 판매후 정산

□ 농협이 200만석 정도를 시가매입하여 시장격리를 통해 가격하락 방지

○ 단정기에 시가로 방출하되, 정부가 보관료와 금리 등을 부담

□ 정부 벼 공매를 최소화하여 재고부담을 가능한 한 정부가 떠 안도록 하여 계절진폭 확대 등 민간유통 활성화를 적극 도모

○ 금년도 250만석 공매계획을 총 100만석 수준으로 최소화하고, 내년에 계절진폭이 없을 경우 공매중단 등 유연성있게 관리

○ 쌀 가공용 수요확대를 위한 원료벼 저가공급 및 가공용 공급 확대

- 정부보유 고미(古米) 등을 주정용으로 최대한 공급 추진

## 2001년산 수확기 쌀 출하물량 흡수방안

수확기 시중유통량
1,948만석

- 수확기 금년산 출하량 전망 : 1,770만석  
(생산량 3,650만석 : 농가 자가소비 등 1,122, 수확기 출하 1,770, 단경기 출하 758)
- 농가보유 '00년산 재고물량 출하전망 : 178만석



정 부 수 매
575만석

- 시장격리가 용이한 포대 수매량 최대한 확보  
(포대벼 425만석, 산물벼 150만석)

RPC 자체매입
550만석

- RPC 경영안정화를 통한 농가벼 매입 확대
  - RPC 수탁판매제 도입(100만석 수준)
  - 운영자금 금리인하(5→3%)
  - 개소당 운영자금 확대('01 : 13억원 → '02 : 18)
  - RPC 벼 매입자금 3,000억원 특별지원

농협 시가매입
200만석

- 농협 시가매입·시가방출 사업으로 200만석 흡수
  - 계절진폭 여하에 따라 일정물량(100만석 수준)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시장 격리하는 방안 검토

※ 금년 수확기 정부농협의 쌀 흡수물량 : 1,325만석(정부 575, 농협 시가매입 200, RPC 550)

- 수확기 흡수물량 : ('98) 1,074만석 → ('99) 1,145 → ('00) 1,164

## < 증장기 대책 >

- 양정기조를 양(量)에서 미질(米質) 위주로 전환
  - 미질 중심의 신품종 개발과 고품질 품종 위주로 보급 추진
    - \* 고품질 벼 재배면적 비중 : ('01) 22% → ('02) 27 → ('05) 50
  - 유통단계에서 양질미가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가격차별화 유도
- 수매가를 안정시키는 대신 직불제를 확충하여 농가소득보전
  - 휴경논 생산화 등 정부직접 개입에 의한 증산정책은 자제
  - 논농업직불제 단가를 소득안정수준으로 내실화
  - 미작경영안정제, 소득안정 프로그램 등 다양한 직불제 도입을 검토
- 증장기적으로 시가로 매입·방출하는 공공비축제를 도입하는 등 수매제도 개편을 추진하는 한편, 영농규모화 등 구조 개선을 촉진하여 경쟁력 제고
  - 가뭄·수해에도 안전영농이 가능토록 지속적인 생산기반 정비
  - 재고가 계속 누적될 경우, 생산조정제 도입방안 검토
- 2004년 쌀 재협상을 앞두고 쌀 수출국 등 이해당사국과 사전 협의 등을 통해 우리 입장이 관철되도록 적극 노력
  - 우리 쌀의 가격 및 품질경쟁력을 강화하고 사전 제도정비를 통해 대응능력을 제고

## 2. 일선조합 부실처리대책

- 조합원 보호와 조합의 **경영정상화**를 조기에 도모하기 위해 자본잠식된 부실조합(169개)의 **구조조정** 적극 추진
  - 부실을 그대로 둘 경우, 조합원 출자금 소각, 예·적금 지급 곤란 등 조합원 피해와 농촌경제의 금융혼란 초래 우려
    - \* 총 부실액은 7,092억원이며, 조합당 평균 42억원 수준
- 조합의 **부실치유**와 **부실예방**을 위한 **농협구조개선법** 제정
  - 부실조합의 인력 및 조직감축, 합병명령, 계약이전, 사업양도 등 적기시정조치 제도 도입
  - 부실채권의 효율적 관리, 자금지원 확대 등을 위해 **자산관리 회사 설립** 추진 및 **예금자 보호기금 확충**
  - \* 농협구조개선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시행령 등 하위법령 조기 제정
- 앞으로, 조합별로 부실규모와 경영전망 등을 고려, **정상화·합병·청산대상**으로 구분하여 내년말까지 구조조정 마무리
  - 농협중앙회에 「부실조합대책반」을 구성, 조합별 경영상황에 따른 구체적인 처리방안 및 시기를 확정
  - 부실조합정리에 필요한 재원은 공적자금 지원에 따른 **여유자금 활용** 등을 통해 중앙회가 마련
    - \* 농협중앙회는 예금보험공사에 공적자금 5,000억원의 우선출자 신청(8.8)
  - 조합별 자체 구조조정 실시, **경영관리역 파견** 등을 통해 부실 최소화 대책 중점 추진

### 3. 새만금사업 재개 후속조치

◇ 정부의 새만금사업 **친환경 개발방침** 결정(5.25일)에 따라 **후속 세부실천계획**을 마련(8.6일)

- 정부관계기관으로 구성된 「새만금사업추진특별대책협의회(위원장 : 농림부장관)」에서 **사전협의(3회)** 등을 거쳐 수립

□ 지난 2년여동안 지연되었던 **방조제공사를 본격 추진**

- 올해에는 **신규물막이공사 재개**와 배수갑문공사 계속 시행 (1,073억원 투입)
- 내년에는 **가력배수갑문 완공** 및 물막이공사 2.2km 시행 (약 1,800억원 소요)

□ 새만금 내부간척지는 당초 계획대로 **농지로 조성**한 후 **친환경 농업**을 실현하되, **다양한 친환경간척방식** 도입

- 경쟁력있는 모델이 되도록 **집단화규모화된 대구획농지** 조성
- 습지, 금강호물 유입수로, 환배수로 등 **수질개선시설** 설치
- 철새도래지 등 **수서생물과 야생동물의 서식공간** 마련

□ **만경강·동진강유역의 수질개선**을 위해 **환경기초시설 확충**

- 하수처리장(23개소), 하수관거(2,820km), 축산분뇨처리시설 (315개소) 등 설치
- 해양환경모니터링 및 적조방지대책 등 **해양환경보전대책**도 추진

□ 앞으로 「새만금환경대책위원회」(국무조정실) 논의사항, 시민환경단체 등의 **조사연구결과**를 반영하여 **세부실천계획 보완**발전

## 4. 구제역 청정화 대책

- 국내방역, 국경검역 강화 등 구제역 재발방지를 위해 총력 경주
  - 특별대책기간('01.2.24 ~ 4.30)을 설정, 공항만 밀수·휴대육류 검색강화 등 국경검역과 매일 4회 전국일제소독 등 국내방역 실시
  - 특별대책 이후에도 국경검역 강화조치는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국내방역은 상시방역체제로 전환하여 추진중
  
- 그동안 구제역 추가발생이 없었고, 지난해 8.30일 예방접종 중단이후 1년이 경과되어 구제역 청정국 요건을 충족
  - 8.27일 구제역 청정화 지위획득에 관한 「인증신청서」를 OIE에 제출
    - \* 구제역 발생이후 방역추진상황, 혈청검사 결과, 예방접종가축의 사후관리 등 포함
  
- OIE 「구제역 및 기타질병위원회」(9.17 ~ 21, 파리)에서 심의를 통과하면, 내년 5월 OIE 총회에서 최종적으로 인증여부 결정
  - 구제역 재발사실이 없고, 혈청검사결과 바이러스 감염 흔적 등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정국 지위획득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
    - \* OIE 총회('01.5), 국제수역사무국 동아시아 구제역 방역회의('01.6, 서울)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바 있음.
  
- 청정국 지위획득을 위한 노력과 병행하여 돼지고기 수출재개 적극 추진
  - 일본과 수출재개를 위해 정부 및 민간차원의 협의추진(9월중)

## 5. 한·칠레 FTA 대책

- '99.12월부터 작년말까지 FTA체결을 위한 협상을 4차례 개최 하였으나, 관세 양허안에 대한 양국의 입장차이로 협상 지연
  - 칠레측은 원칙적으로 모든 품목의 10년내 관세철폐 주장
  - 우리측은 일정 농산물에 대한 관세철폐의 예외인정 주장
    - UR시 관세로 전환된 이중관세 품목 등 관세가 높고, 영향이 큰 주요 품목은 WTO 농업협상 종료 후 논의 필요
    - 쌀관련 품목은 FTA에서 제외, 포도는 계절관세 적용 등
    - \* 칠레 관심품목(263개)을 포함, 우리측 양허안 마련 제시('01.2.23)
- 칠레측은 적절한 여건조성시까지 FTA협상 연기를 제안
  - 우리의 예외조치에 상응하는 칠레의 공산품 양허안 작성이 어렵다는 이유로 협상연기 제의(5.25)
    - \* 자동차·가전 등 제조업계의 경쟁적 예외 요구 및 조정 곤란
  - 통상교섭본부장과 칠레 외무장관회담(6.18)시 양측은 고위급 (차관보급)회의를 통해 상호 입장을 조율해 나가기로 합의
- 앞으로 예외품목 축소·관세철폐 시한 명시 등 칠레측의 요청과 우리농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 고려하여 협상재개에 대비
  - 한·칠레 FTA협상이 재개되더라도 중요품목은 WTO 농업협상종료후 다시 논의토록 하여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

## 6. 쇠고기 구분판매제 폐지 보완대책

- WTO 패널에서 「쇠고기 구분판매제도」가 내국민대우 원칙 위반으로 최종 확정(1.10)됨에 따라 9.10일부터 동 제도를 폐지
  - ※ WTO 쇠고기 구분판매제도가 수입쇠고기에 대한 불리한 경쟁조건을 갖는 것으로 판정
  
- 쇠고기 구분판매제 폐지에 따른 둔갑판매 성행에 대비하여 축산물가공처리법령 개정 등 보완대책을 마련 추진
  - 식육판매업자에 대한 거래내역 기록의무제를 도입하고, 위반시 영업정지 등 처벌기준 마련
    - 식육의 종류·원산지·공급일자 등을 기록하여 1년간 보관토록 하고, 위반시에는 영업정지조치
  - 수입육의 한우고기 둔갑판매 방지를 위해 원산지 단속 강화
    - 원산지 위반자에 대한 D/B화, 공개 등 처벌강화
    - \* (현행) 1천만원이하 벌금, 1년이하 징역 → (개정) 3천만원이하, 3년이하
  - 유전자(DNA)를 이용한 한우·수입육 감별방법을 연내에 개발하여 유통질서 확립
  
- 수입육과의 경쟁을 위해 국산 쇠고기의 소비기반 확보 적극 추진
  - 생산·유통·소비가 체계적으로 연계된 축산물 브랜드 육성 방안을 하반기에 마련하여 추진
  - 3,000여개에 달하는 농협판매장에 축산물판매코너 확대 설치



## 7. GMO 안전관리대책

- GMO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알권리의 보장을 위해 지난 3월 부터 콩, 콩나물, 옥수수의 GMO 표시제를 시행
  - 「GMO 대책실」 설치, 표시제 시행에 따른 시설·장비 확충
    - GMO 검정실 1개소, 시설·장비 30종 147대
  - 표시제의 조기정착을 위해 교육·홍보실시 및 관리실태 조사
    - \* 관리실태 조사결과(3.1~7.31), 약 500개 업소가 GMO 관련 표시제 실시
  
- 지난 9.1일부터는 지도·계도기간이 완료됨에 따라 GMO 표시 위반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을 실시
  - GMO 검정방법과 구분생산·유통관리증명서 확인 등을 통해 위법성 판단
    - \* GMO 검정방법(定性·定量)은 농진청이 일본과 공동으로 국내 최초 개발
  
- 국내 GMO 재배실태를 조사하고, 수입된 콩·옥수수의 불법 유통 등에 대한 단속 강화
  - 전국적으로 국내 재배포장의 GMO여부 실태조사('01.5~8월)
    - 콩 540포장, 옥수수 315포장 검정결과 GMO 미검출
  - 콩·옥수수의 국내 보급종자와 유통종자에 대한 검정결과('01.2~4), 모두 음성 판정
  - 유통종자의 품질표시 기준에 GMO 표시 의무화(종자산업법 시행규칙개정, 8.3)
  
- 앞으로 「유전자변형생물체의국가간이동등에관한법률」의 하위 법령 마련 등 범정부차원의 GMO 안전관리체계 구축

## 각국의 GMO 표시제 비교

<b>&lt; 한 국 &gt;</b>	<b>&lt; E U &gt;</b>	<b>&lt; 일 본 &gt;</b>
<p>▣ 표시대상 · 콩, 콩나물, 옥수수 및 이를 가공한 식품</p>	<p>· 콩, 옥수수 및 이를 가공한 식품</p>	<p>· 콩, 옥수수, 감자, 면실, 유채 및 콩, 옥수수를 가공한 식품</p>
<p>▣ 표시방법 · “유전자변형” · “유전자변형 포함” · “유전자변형 포함 가능성 있음”</p>	<p>· “유전자변형”</p>	<p>· “유전자변형” · “유전자변형 불분별”</p>
<p>▣ 표시의무자 · 국내판매하는 자 (제조업자 포함)</p>	<p>· 최종 판매자</p>	<p>· 제조업자, 판매업자 등</p>
<p>▣ 혼입허용치 · 3%</p>	<p>· 1%</p>	<p>· 5%</p>
<p>▣ 시행시기 · ‘01.3.1(농산물) · ‘01.7.13(가공식품)</p>	<p>· ‘98. 9. 1</p>	<p>· ‘01. 4. 1</p>
<p>▣ 벌 칙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미표시) ·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허위표시)</p>	<p>· 5천파운드 이하 의 벌금(영국)</p>	<p>· 1차(시정지시) · 2차(공표) · 3차(개선명령) · 4차(50만엔 벌금)</p>

\* 대만은 ‘01년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검정법 미확립으로 ’03까지 유보, 중국·태국 등은 표시제 시행 검토중

## 8. 중장기 농업·농촌발전계획 수립 추진

□ 21C 지식·정보화 시대에 부응하여 농업·농촌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중장기 농업·농촌발전계획」 수립

※ 농업·농업인·농촌을 3대 축으로 하여 개방확대 등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새로운 농업의 성장동력 창출

□ 농 업 : 경쟁력 있는 고품질·고부가가치 농업으로 집중 육성

○ IT·BT를 활용한 고기능성 품종개발 등 첨단기술농업 실현

○ 생산자조직 중심의 사전적·자율적 수급조절기능 활성화

○ 직불제, 농작물재해보험 도입·확대 등을 통해 농가소득과 경영안정 도모

□ 농 업 인 : 전문경영체와 정예신규인력의 체계적 육성

○ 기술·경영·정보능력을 갖춘 선도농 확보 및 농업명인제 도입

○ 전문농업교육 과정 지원 강화를 통한 창업예비농 적극 양성

○ 후계농업인의 정착지원을 위해 컨설팅, 재교육 등 강화

□ 농 촌 : 농촌복지 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

○ 공공의료기관의 시설기능보강, 지역여건에 맞는 보육시설 확충

○ 상·하수도 보급과 주택자금 지원 강화

○ 그린투어리즘 등 다양한 농외소득원 적극 개발·보급

① 품목별 경쟁력 제고 종합대책, ② 농업인력 육성대책, ③ 농촌복지대책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조속히 수립·추진

## IV. 2001년 정기국회 입법추진계획

□ 입법계획(9건) : 농림부 8건(개정), 산림청 1건(제정)

### < 기 제출된 법률안 >

법 률 명	주요 제·개정 내용
1. 농지법(개정)	<p><b>◦농지취득신청 절차의 간소화</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행 농지취득절차 이외에 신청인이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고, 시·군·읍·면장이 농지관리위원의 확인을 대신 받아 주는 절차 신설</li> <li>* 현재는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직접 2인 이상의 해당 지역 농지관리위원에게 농업경영계획을 확인받아 시·군·읍·면장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 신청</li> </ul> <p><b>◦농업보호구역내 행위제한 강화</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토의 난개발 방지와 준농림지와의 행위제한 형평성을 고려하여 보호구역내에서도 음식적, 숙박시설의 설치 금지</li> <li>* 현재는 농업보호구역에서는 100m<sup>2</sup> 미만의 범위에서 설치가 가능하나, 준농림지에서는 원칙적으로 설치 금지(시·군 조례로 정할 경우는 가능)</li> </ul> <p><b>◦농업진흥지역내의 신고에 의한 농지전용제한 근거 마련</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업진흥지역 내에서 농업인주택, 마을회관, 축사 등의 신고전용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 시행령의 위임근거를 법률에 규정</li> <li>* 현행은 시행령 별표에서 농업진흥지역내 농업인주택, 축사, 양어장 등의 신고전용을 제한(대법원 위법 판결, '00.10.19)</li> </ul>

< 앞으로 제출예정인 법률안 >

법 률 명	주요 제·개정 내용
<p>1. 식물방역법 (개정)</p>	<p>◦생물학적 방제목적의 천적류 수입 허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입 금지 대상인 동·식물중 생물학적 방제를 위한 천적류는 위험분석결과 안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농림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도록 함</li> </ul> <p>◦육로수출입에 대비한 검역제도 정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의선복원 및 도로개통에 대비 검역장소지정, 경유의 승인 등 검역 근거 마련</li> </ul>
<p>2. 농업기반 공사 및 농지관리 기금법 (개정)</p>	<p>◦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적립금계정 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반공사 보유 부동산의 매각대금 등을 재원으로 유지관리적립금 계정을 신설하여 저수지 등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에 활용</li> </ul> <p>◦농업기반시설의 감가상각 특례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업기반시설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감가상각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근거 마련</li> <li>* 현재는 농업기반시설의 경우, 정부투자기관회계기준에 의거 매년 감가상각 처리</li> </ul> <p>◦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무를 시·도로부터 시·군·구로 이양</p>

법 률 명	주요 제·개정 내용
<p>3. 산지관리법 (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산림법의 분법화 계획에 따라 현행 산림법중 산지관련 부분을 독립법으로 제정</li> <li>◦산지전용 허가제도의 개선·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행 보전임지 전용허가와 산림형질 변경허가의 2단계 산림의 형질변경 절차를 산지전용허가제도로 일원화하고, 전용허가전 산지개발타당성검토제도를 도입</li> </ul> </li> <li>◦산지개발제한지역의 지정·관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행 유적지·명승지 외에 산사태 우려지역, 생태계보전지역 등을 산지개발제한지역으로 지정·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li> </ul> </li> </ul>
<p>4. 농어촌 정비법 (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권한의 지방이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토지소유자의 자력 기반정비사업시행에 대한 인·허가권을 시·도지사에게 이양</li> </ul> </li> <li>◦농업기반시설의 관리·이관제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업기반시설은 사업의 시행자가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지자체나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일 경우 요청에 의해 농업기반공사로 관리를 이관할 수 있도록 명시</li> <li>* 현재는 지자체나 토지소유자가 사업을 시행하여 관리하고 있는 농업기반시설을 농업기반공사로 이관할 수 있는 근거가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시설관리에 혼선 초래</li> </ul> </li> </ul>

법 률 명	주요 제·개정 내용
<p>5. 수의사법 (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권한의 지방이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의사 및 동물병원의 지도·감독 업무는 시·도지사에게, 동물병원의 개설 및 휴·폐업신고 등의 업무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권한 이양</li> </ul> </li> <li>◦수의사시험 응시자격 관련 경과규정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대학 재학자 등에 대해서도 수의사 시험 응시자격 부여</li> </ul> </li> </ul>
<p>6. 축산물가공 처리법(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식용란”을 축산물의 범주에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용란을 축산물의 범주에 새로 포함시켜 위생관리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li> </ul> </li> <li>◦도축장 및 축산물가공장에 SSOP, HACCP적용 의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축장 및 축산물가공장은 위생관리기준 및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을 의무적용하고, 위반시 허가취소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 마련</li> </ul> </li> <li>◦타조 등 가축이외의 동물에 대한 위생관리 특례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타조 등 가축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식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동물에 대한 도살·처리·가공·유통 및 검사에 대한 위임근거규정을 신설</li> </ul> </li> </ul>

법 률 명	주요 제·개정 내용
7. 농산물품질 관리법(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리적표시 등록에 대한 신청자격제한의 법적근거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리적표시 등록을 위한 신청자격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 명시</li> <li>* 현재는 법적 근거없이 시행령에서 지리적표시 등록의 신청자격을 생산자단체 또는 가공업자단체로 규정</li> </ul> </li> <li>◦권한의 지방이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국가사무로서 시행령에 의해 시·도지사 및 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농산물 안전성조사 사무 및 원산지표시조사 사무를 국가와 시·도의 공동 사무로 법에 명시</li> </ul> </li> </ul>
8. 양곡관리법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권한의 지방이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곡가공업의 등록·신고, 영업정지, 등록취소, 과태료의 부과징수업무를 시장·군수에게 이양</li> </ul> </li> <li>◦교환·대여 정부양곡 미회수분 처리제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92년까지 시행되었던 정부양곡의 교환·대여분중 사망,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부분을 결손처리하고 연차적으로 정부회계에서 손실 처리 할 수 있도록 개정</li> </ul> </li> </ul>

※ 사료관리법·수목원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2월 국회), 산림기본법(4월 국회), 사방사업법(6월국회)은 공포 완료

※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은 2001년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의결(9.1일)



## V. 2000년 국정감사 주요지적사항 조치결과

지 적 사 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1. 제2단계 45조원 농업·농촌투융자계획이 실질적인 농업인의 소득향상과 우리농업의 경쟁력 제고에 투자 될 수 있도록 사후 관리 대책에 만전</p>	<p>□ 조치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외부전문가 등을 활용한 농림사업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림업무심사평가위원회」을 구성(18명), 사업 타당성 등 평가 및 개선방안 강구('01.8월 까지 7회 개최)</li> <li>- 지자체 농림업무평가 및 사업비 차등 배정으로 일선 지자체의 책임의식 제고(12개 주요사업 등)</li> </ul> </li> <li>◦운영실태 등 현장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책자금집행 및 운영실태 일제 점검 : 12개 시도, 118개 시군 1,883 개소('00.10~11월, 2회)</li> <li>- 138개 시군 현장 농정현황점검('01.8월까지 7회)</li> </ul> </li> <li>◦경영컨설팅 강화로 기투자한 농가의 경영 안정 도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컨설팅지원농가: ('00) 379개소 → ('01.8까지) 419</li> </ul> </li> </ul> <p>□ 향후 추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59개 주요사업에 대한 『상시평가시스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홈페이지에 평가코너 신설, 전문위원 의견 상시 수렴</li> <li>- 실국별 사업 목표달성도 등을 정기점검·평가</li> </ul> </li> <li>◦농업경영종합자금제 확대로 선별 지원 강화</li> <li>◦기 지원된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컨설팅 강화</li> </ul>

지 적 사 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2. 한·칠레 자유무역 협정은 우리 농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협상에 임하고 대책수립에 철저</p>	<p>□ 조치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촌경제연구원 주관하에 한·칠레 FTA와 농업부문의 대응방안에 대한 정책협의회 개최(2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업인단체 등 참석, 농촌경제연구원의 FTA 연구용역 중간보고 및 결과에 대해 논의</li> </ul> </li> <li>◦농림부 주관하에 한·칠레 FTA 농산물 관세 양허 방향에 대한 협의회 개최(3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업인단체와 WTO협상 범국민연대 등 참석, 농산물 관세양허안 작성방향 및 조정방안 협의</li> </ul> </li> <li>◦칠레 농축산업 실태조사 실시(2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칠레의 주요 과실·축산물에 대한 생산, 유통, 수출실태 등 조사</li> </ul> </li> </ul> <p>□ 향후 추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협상이 재개되더라도 농업인단체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중요품목은 WTO농업협상 종료후 다시 논의토록 하는 등 국내농업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li> </ul>
<p>3. 농가의 부채상환 능력을 향상시키고 정책자금 상환연기와 금리인하 등을 포함한 농가부채대책을 마련</p>	<p>□ 조치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 국회의결('00.12.20) 및 공포·시행('01.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1 ~ '03년 중 상환도래되는 정책자금 3조 9천억원을 2년거치 5년분할상환</li> <li>- 10조원의 상호금융자금 저리대체(6.5%, 5년간)</li> <li>- 경영개선자금 1조1천억원 추가 지원</li> </ul> </li> <li>◦농가부채경감특별대책시행지침 보완(200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호금융 '99.4/4분기 상환액도 대체지원에 포함</li> <li>- 상호금융 1,500만원까지 전액 저리자금 대체</li> <li>- 중앙회 자금·경제사업 채무 분할상환</li> </ul> </li> </ul>

지 적 사 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4. 새만금사업에 대한 정부입장을 확실히 밝히고, 당초 목적대로 농지조성을 위해 계속 추진</p> <p>5. 논농업직불제의 지급 단가는 농가소득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확대하는 방안 강구</p>	<p>□ 향후 추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업인에게 신속히 지원되도록 하되, 부적격자에게 지원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점검 강화</li> </ul> <p>□ 조치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무총리 주재 「물관리정책조정위원회」에서 정부의 친환경적인 순차개발방안을 최종 확정('01.5.25)</li> <li>◦농림부장관 주재 관계부처 차관회의(새만금 사업 추진 특별대책협의회)에서 후속 세부실천계획 확정('01.8.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부간척지는 당초 사업목적대로 농지위주로 조성계획 수립</li> </ul> </li> </ul> <p>□ 향후 추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범정부 차원에서 수립한 세부실천계획을 차질없이 추진</li> </ul> <p>□ 조치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01 예산에 논농업직불제 반영(2,105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진흥지역 25만원/ha, 비진흥지역 20만원/ha</li> </ul> </li> <li>◦확정된 시행방안을 토대로 '01.8월말까지 신청 접수, 1,035천 농가를 대상으로 선정</li> </ul> <p>□ 향후 추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급요건 이행점검(10월말까지)후 보조금 지급(11 ~ 12월)</li> <li>◦'02예산편성시 지급단가와 지급상한 상향조정 추진</li> </ul>

지 적 사 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6. 2001년 쇠고기 수입 자유화에 대비하여 생우 수입시 국내산 표시기준의 강화, 한우·젓소 등에 대한 DNA 판별법의 보급, 한우품질고급화 대책 등을 마련</p>	<p>□ 조치결과</p> <p>&lt; 수입생우 국내산표시기준 강화 &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입생우사후관리요령” 제정('00.12.26), 대외무역 관리규정 개정('00.10.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입생우의 개체관리를 위해 낙인 및 귀표부착</li> <li>- 6개월미만 국내 사육시 「수입육」표시</li> <li>- 거래자, 사육자는 2년간 수입관련서류 보관</li> </ul> </li> <li>◦식육판매업소에서 한우·육우표시 구분판매 ('00.12.27)</li> </ul> <p>&lt; 쇠고기 유전자(DNA) 감별법 개발·보급 &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진청에서 한우젓소고기 감별법 기개발·실용화</li> <li>◦한우·수입쇠고기 유전자 감별법 개발 추진중</li> </ul> <p>&lt; 한우 품질고급화대책 마련 &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우품질고급화대책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별 한우사업 추진체 구성, 고급육생산</li> <li>- 한우거세 장려금 지급(두당 20만원씩)</li> </ul> </li> <li>◦우수축 생산출하 포상금 지급(10 ~ 15만원)</li> </ul> <p>□ 향후 추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검역 및 원산지표시 확인 등 사후관리 철저</li> <li>◦쇠고기 품종감별법 법제화 추진</li> <li>◦거세지원 및 우수축 생산 포상금 제도 지속 실시</li> <li>◦가축개량사업 지원강화(인공수정료 지원 등)</li> </ul>

지 적 사 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7. 농업관련 세제개편과 관련, 농업용 유류 면세범위를 계속 유지하고, 농협 예탁금 이자에 대한 비과세 특례는 준치</p> <p>8. 농산물의 수급조절을 위해 농업관측 정보의 영농활용 방안과 선진국의 관측기법 도입 등 농업관측 기능강화 추진계획 수립</p>	<p>□ 조치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업용 유류에 대해서는 '03.6월까지 면세 기한 연장</li> <li>◦농업인의 조합 예탁금·출자금 이자 및 배당 소득도 '03년말까지 비과세 기한 연장</li> <li>※ 「조세특례제한법」 개정('00.12.29)</li> </ul> <p>□ 조치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업관측기능강화 기본계획 수립('00.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측품목 확대(18→24개), 예산 및 인력 확충</li> </ul> </li> <li>◦농업관측결과에 대한 신속한 홍보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월보·분기보 발행배포 : 235천부</li> <li>- 농림부, 농경연, 지자체 등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li> <li>- KBS라디오 「밝아오는 새아침」 프로에 방영</li> <li>- 주산지에 속보자료를 FAX, E-mail로 제공</li> </ul> </li> <li>◦선진 농업관측기법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촌경제연구원이 ASMO(Agricultural Simulation Model) 및 품목별 단기관측 모형개발</li> </ul> </li> </ul> <p>□ 향후 추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업관측정보 신뢰도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세청의 수출입자료 실시간 이용체계 구축추진</li> <li>- 농업관측기법 및 예측모델 보완 지속추진</li> <li>- 중국, 일본 등의 농업관련 정보 수집</li> </ul> </li> <li>◦관측정보 활용도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전적 수급안정대책 추진시 활용</li> <li>- 주산지 농업관측 설명회 개최(양파·마늘)</li> </ul> </li> </ul>

지 적 사 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9. 농작물재해보험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보험료 지원비율을 상향하는 방안 마련</p>	<p>□ 조치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험대상농작물 확대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포도, 단감, 복숭아, 감귤을 대상품목에 추가</li> <li>- 보험요율산출에 필요한 피해통계자료 축적</li> </ul> </li> <li>◦보험료지원비율 상향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순보험료 50%, 운영비 100% 지원 추진</li> </ul> </li> </ul> <p>□ 향후 추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순보험료 50%, 운영비 100%지원예산은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적극 확보</li> <li>◦보장수준 다양화, 대상재해확대, 분납제도, 필지별 가입, 재가입시 보험료 할인 등 제도개선 추진</li> <li>◦포도, 단감, 감귤, 복숭아에 대한 보험요율산출, 손해평가방법 등 세부시행방안 마련</li> </ul>
<p>10. 남북농업교류협력은 통일후를 대비하여 장단기 계획을 세워 체계적으로 추진 하는 방안 마련</p>	<p>□ 조치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 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료 20만톤(680억원), WFP를 통한 옥수수 10만톤(160억원), 사과·배·감자(176억원)</li> </ul> </li> <li>◦「북한 식량수급 전망 협의회」 개최(2000.12)</li> <li>◦민·관 대북지원 관련자 및 기술전문가들로 「북한농업지원협력단」 구성·운영(2001.4)</li> </ul> <p>□ 향후 추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10년까지 한반도 전체 식량수급전망 및 경지면적, 농업생산성 전망 등의 「신한반도 농정지표」 수립</li> <li>◦「남북한 농업의 상호 보완성 증대연구」 등 남북 농업협력의 중장기 방향 및 협력방안에 관한 연구용역 추진</li> </ul>

지 적 사 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11.중국산 농산물의 무분별한 수입억제를 위해 휴대농산물 면세 범위를 낮추고 관세를 부과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 마련</p>	<p>□ 조치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개 주요품목의 기준가격을 정하고 기준가격 이하로 수입 신고된 물품은 정밀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참깨, 고추 등 저가신고우려 품목에 대해 중국 현지가격을 매월 조사하여 관세심사에 반영</li> </ul> </li> <li>◦농축산물을 대상으로 관계기관합동 특별밀수단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0년 1회 → '01년부터 4회 실시(추석·김장철·연말연시·설날)</li> </ul> </li> <li>◦중전의 1인당 휴대 반입 한도량 80kg을 50kg으로 축소하여 전국 항구에 확대 적용('00.10)</li> </ul> <p>□ 향후 추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저가신고우려 품목의 현지가격 조사 확대</li> <li>◦관세청에 밀수다발품목 선정 및 중점조사를 통한 밀수 단속강화 요청</li> <li>◦휴대품 반입동향을 점검, 필요시 반입 한도량 추가 인하 요청 검토</li> </ul>
<p>12.자연재해로 인하여 고통을 받는 농업인에게 영농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농업 재해지원기준을 현실화하는 방안 강구</p>	<p>□ 조치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01. 2. 3 재해지원범위 확대 및 단가인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조지원 범위확대 및 보조율 상향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림시설보조지원: 1ha미만 → 2ha미만</li> <li>· 보조율상향조정 : 보조20% → 보조35%</li> <li>· 축사보조지원 : 600㎡미만 → 1,800㎡미만</li> <li>· 용자조건 : 3년거치 10년상환 → 5년거치 10년 상환</li> </ul> </li> <li>- 피해복구 지원단가 인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약대(ha당) : 채소 49,940원→139,000원 (증89,060원)</li> <li>· 대과대(ha당) : 일반작물 1,575천원, 인삼 10,751,엽채류 2,120, 과채류 2,800</li> </ul> </li> </ul> </li> </ul>

지 적 사 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13. GMO에 대한 안전성이 우려되고 있으므로 GMO에 대한 안전성 평가 및 기술을 향상 시키기 위한 대책 마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01. 6. 23 재해복구비 단가인상 및 현실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수농약대(ha당) : 313,000원(527% 증)</li> <li>- 산란계사 : 142,000원/m<sup>2</sup>(43% 증)</li> <li>- 창고 등 부대시설 : 저온저장고 800천원/m<sup>2</sup>, 일반저장고 300천원/m<sup>2</sup> 등</li> <li>- 농업용 저수지 용배수, 방조제 등의 복구 지원 단가 : 2~48% 인상</li> </ul> </li> <li>◦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에 따른 농업재해지원 범위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업용창고 등 부대시설 지원 : 농산물 저장 및 건조시설, 축산분뇨처리시설, 농기계보관창고</li> <li>- 철거비 및 선급금 지원 기준마련</li> </ul> </li> <li>□ 향후 조치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미흡한 분야에 대해 현실화를 지속적으로 추진</li> <li>◦실제 피해에 상응하는 보전을 위해 농작물 재해 보험 점차 확대 추진</li> </ul> </li> <li>□ 조치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GMO의 안전성을 관리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LMO)의국가간이동등에관한법률」 제정('01.3.28 산자부주관)</li> <li>◦연구개발단계에서 「농업연구관련유전자재조합체 실험 및 취급지침」에 의한 안전관리 시행</li> <li>◦'01.3부터 6개월간 지도·계도 위주의 GMO표시제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 유통 GM콩, 옥수수에 대한 정성·정량 검정법 개발(농진청)</li> </ul> </li> </ul> </li> <li>□ 향후 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업환경위해성 평가 심사지침 제정</li> <li>◦GMO 표시제의 본격적인 시행(9.1부터)</li> <li>◦GMO 검정·관리인력 보강, 공인검정기관 지정 추진</li> </ul> </li> </ul>



지 적 사 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14. 중국산 쌀의 부정유통 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시행</p>	<p>□ 조치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입쌀 특별단속반 설치, 상시점검 체제 구축</li> <li>◦농관원 검사원을 가공업체 전담직원으로 배치, 수입쌀 입고상황 직접확인</li> <li>◦특별사법권이 부여된 농관원 공무원(372명)을 통해 현장추적조사 강화</li> <li>◦수입쌀 부정유통과 밀수단속 및 방지를 위해 관세청과 수시협조체계 구축</li> </ul> <p>□ 향후 추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정유통과 관련되는 업체 및 단체급식소에 대한 합동점검 지속 강화</li> </ul>
<p>15. 수입농산물에 대한 검역강화대책을 마련</p>	<p>□ 조치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식물검역기반 강화대책」 수립·추진('93~'0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검역인력 163명 증원, 검역장비 확충(134억)</li> </ul> </li> <li>◦중점관리품목 확대 지정(9개 유형, 41품목)</li> <li>◦중국산 휴대반입농산물에 대한 검역 강화</li> </ul> <p>□ 향후 추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규개설 공·항만에 대한 인력 확보</li> <li>◦최신 검역장비의 적기확보 및 노후장비의 지속적 교체</li> <li>◦종합 교육프로그램에 의한 전문인력의 지속 양성</li> <li>◦중점관리 품목의 연차별 확대지정</li> </ul>

지 적 사 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16. 한·중 마늘협상과 관련하여 마늘농가 보호대책 마련</p>	<p>□ 조치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01년 난지형마늘 최저보장가격 인상 및 한지형마늘 신규도입 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난지형 1,250원/kg, 한지형 1,850원/kg</li> </ul> </li> <li>◦농안기금에서 출하조절, 구매자금 등 직·간접 지원 (1,000억원)</li> <li>◦'01년산 마늘 가격지지를 위해 농가희망전량 구매 및 추가 수입물량 시장격리 조치</li> </ul> <p>□ 향후 추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종구개량, 생산·수확·선별 등 기계화로 마늘 산업경쟁력 제고 추진</li> </ul>
<p>17. 원산지표시 위반자에 대한 처벌강화 등 원산지표시제 내실화 방안 마련</p>	<p>□ 조치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공품의 수입원료에 대한 원산지를 국명으로 표시토록 기준 강화('00.11.20)</li> <li>◦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기준 강화('01.5.29)</li> <li>◦원산지표시조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조사실명제 도입 실시</li> <li>◦허위표시 등 범법행위 단속강화를 위해 사법 경찰관리 지명 확대 및 활동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법경찰관 지명 : ('00) 325명 → ('01) 372</li> <li>- 직접수사 송치비율 : ('00) 92.4% → ('01.7) 96.9</li> </ul> </li> <li>◦원산지부정유통에 대한 민간감시기능을 활용하기 위해 농산물명예감시원 확대·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0) 2,008명 → ('01) 2,549</li> </ul> </li> <li>◦첨단·과학적 원산지식별법을 개발, 직접수사 자료로 활용('00 : 56품목 → '01 : 65)</li> </ul>

지 적 사 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18. 국내 농산물의 가격 안정을 위해 생산·출하조절, 품질향상, 관측 강화 등 종합적인 대책 강구</p>	<p>□ 조치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업관측(24개 품목)을 통한 자율적 생산조정</li> <li>◦노지채소는 계약재배물량을 확대하고 수매 등이 필요한 경우, 조기에 시장개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0) 498천톤, 3500억원 → ('01) 800, 4,500</li> </ul> </li> <li>◦최저보장가격제 품목확대('00 : 10개 → '01 : 12) 및 가격산정기준을 직접생산비 수준까지 인상</li> <li>◦오이 등 시설채소수급 및 가격안정사업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산과잉으로 출하약정물량을 산지폐기시 수확비 지원</li> </ul> </li> <li>◦과실류 계약출하사업을 사과(22천톤), 배(25천톤)에 대해 신규 도입</li> <li>◦생산자조직 자조금 조성지원(23억원), 산지 유통 활성화 사업 추진(87개소, 2,500억원)</li> <li>◦계약재배, 산지폐기 등 가격안정을 위한 사업에 농안기금 지원 확대</li> </ul>
<p>19. 인삼의 품질관리 및 고려인삼의 성가 유지를 위한 대책 마련</p>	<p>□ 조치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검사품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분기 1회→분기 2회)</li> <li>◦미삼·잡삼을 희망검사에서 의무검사로 전환</li> <li>◦미검사품의 판매등 법규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li> <li>◦인삼의 유통표준화 및 가공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사업 추진중('98.6 ~ '01.9월)</li> <li>◦고려인삼캐릭터를 활용한 해외 홍보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려인삼 영상홍보물 제작배포와 캐릭터 해외상표등록 추가(4개국)</li> <li>- 홍콩 STAR-TV CF방영</li> </ul> </li> </ul>

지 적 사 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20. 축산물종합처리장의 활성화대책을 마련</p>	<p>□ 조치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규LPC는 건설하지 않고, 추진중인 사업 2개소(원주, 홍성) 마무리 주력</li> <li>◦축산물 포장식육 부위별 상장거래 시범사업 추진 * 부분육 상장 표준규격 제정고시('01.3.15)</li> <li>◦LPC 경영안정자금 지원방안개선 조치('01.5.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수 LPC는 현재 지원기준(대규모 50억원, 중규모30억원) 보다 10~20% 추가지원</li> </ul> </li> <li>◦도축시설 운영실태 조사(용역) 및 정비 추진 ('01.6.1~10.30,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용역결과를 토대로 선별 지원 및 도태유도</li> <li>- 도축시설의 미생물 검사기준 강화 등으로 비위생적인 도축장의 자율적인 정비 유도</li> </ul> </li> <li>◦HACCP 미실시 등에 대한 행정처분강화 추진</li> </ul>
<p>21. 구제역으로 위기를 맞고 있는 양돈산업을 위하여 수출재개방안, 모돈감축 등 근본적인 대책 강구</p>	<p>□ 조치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모돈 10%자율감축 및 민간비축사업, 비선호 부위 소비대책 등 다각적인 대책 추진</li> <li>◦경영비수준이하로 하락하였던 산지 돼지가격이 회복되어 안정세 유지 * ('00.10하순) 105천원/100kg → ('01.8) 189</li> <li>◦국제수역사무국에 구제역 청정화 인증신청('01.8.27)</li> <li>◦일본정부에 한국산 돼지고기의 수입금지조치 해제 요구('01.9.1)</li> </ul> <p>□ 향후 추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산지 돼지가격이 경영비수준 이하로 하락할 경우, 모돈감축 및 민간수매 지원</li> <li>◦돼지고기 비선호부위의 소비확대를 위해 TV 소비·홍보광고, 돈가스프랜차이즈 및 2차육가공장 지원</li> <li>◦농가 및 수출업체에 대한 규격돈 생산교육 및 규격돈 출하장려금 지원</li> <li>◦수출확대를 위한 정부 및 수출업체의 교섭단 파견, 판촉활동 및 홍보</li> </ul>

第234回 定期國會(國政監査)

農 林 海 洋 水 産 委 員 會

# 主 要 農 政 推 進 現 況

2002. 9. 16

農 林 部

“국민을 생각하는 농업, 국민과 함께하는 농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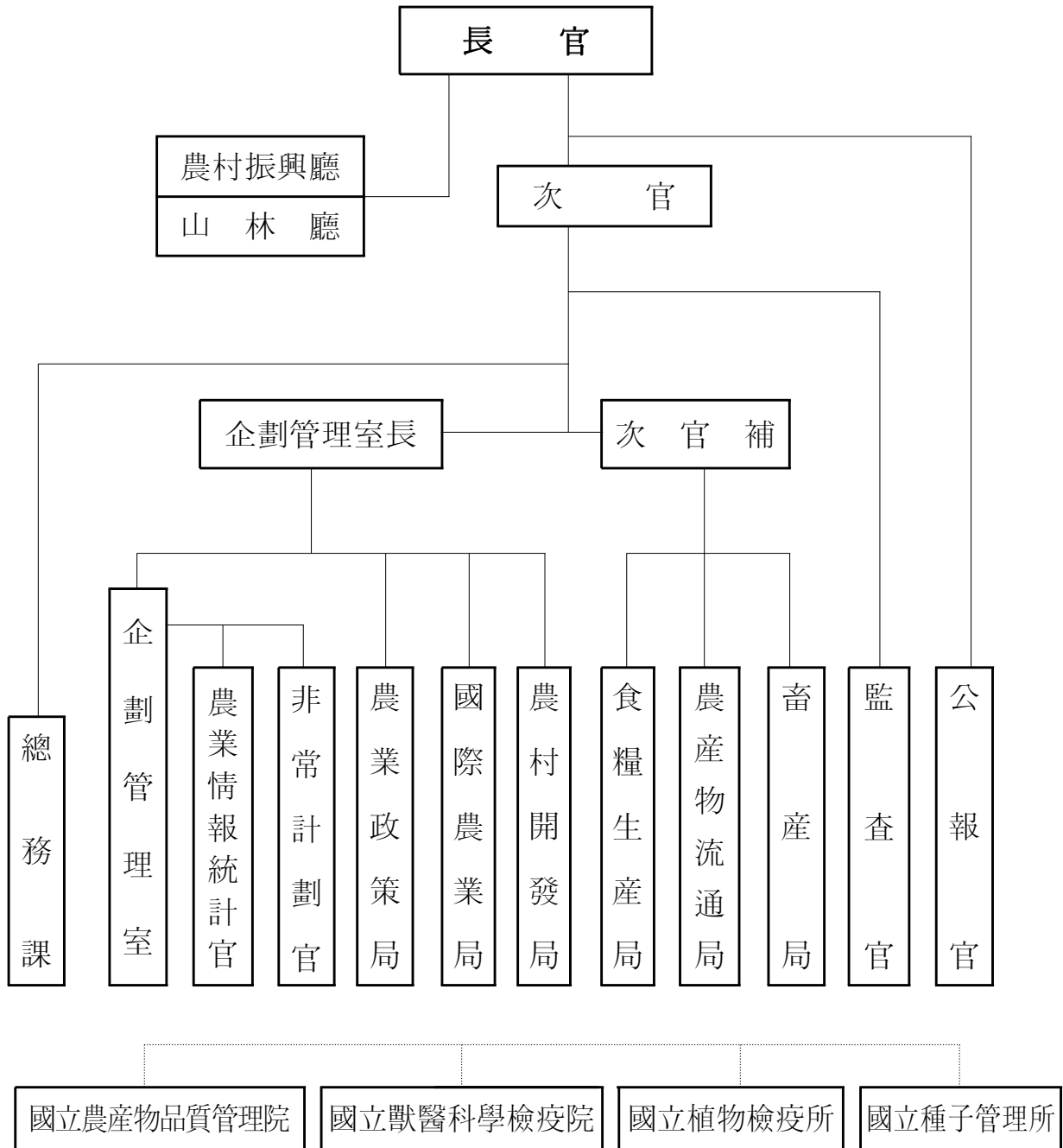
# 목 차

I. 일 반 현 황 .....	211
II. 당면 현안업무 .....	215
III.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	229
IV. 2002년 정기국회 입법 추진계획 .....	242
V. 2001년 국정감사 주요 지적사항 조치결과 .....	245

# I. 일반 현황

## 1. 조직 및 기능

□ 조직 : 1실, 6국, 4관, 4소속기관



# □ 기 능

## < 본 부 >

실 국 별	주 요 업 무
기 획 관 리 실	농림시책 수립 및 예산편성, 국회업무, 조직·인사·법무·투자심사·여성농업인정책 추진
공 보 관	농림정책 및 주요현안 홍보
감 사 관	농림부 및 소속기관, 농업관련 단체·기관에 대한 감사
농업정보통계관	농업통계, 농업·농촌정보화
비 상 계 획 관	비상대비계획 수립 및 비상훈련
농 업 정 책 국	농업구조개선 및 농가소득, 농지관리, 농업인력육성, 농업금융, 협동조합 지도·감독
국 제 농 업 국	WTO 농업협상 및 통상협력, 농산물 수출·입 정책수립
식 량 생 산 국	식량정책 수립 및 수급관리, 식량생산, 농자재, 친환경 농업 및 기술개발
농 산 물 유통 국	농산물유통구조개선, 농산물가격안정대책, 식품산업 육성, 채소·과수·화훼작물의 수급 관리
축 산 국	축산정책수립, 축산물유통개선, 축산물 및 사료수급, 가축방역
농 촌 개 발 국	농업생산기반정비 및 관리, 농촌생활환경개선 및 농촌관광

## < 소속기관 >

기 관 별	주 요 업 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산물 품질관리, 농산물검사, 농업통계조사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축산물 및 동물의 검사·검역 등 위생관리와 가축 방역 및 질병 예방
국립식물검역소	수출입 식물의 검역
국립종자관리소	주요 농작물 종자관리 및 식물품종보호



## 2. 정 원

(2002. 9월현재)

	총 계	정 무 직	일 반 직									계 약 직	별 정 직	연 구 직	기 능 직
			계	1급	23급	3급	34급	4급	45급	5급	6~9급				
본 부	명 505	2	427	1	8	1	10	25	43	127	212		8	-	68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2,144		1,627		1		1	13	5	123	1,484		266	2	249
국립수의 과학검역원	480		295			3		15	2	29	246	1	6	96	82
국립식물 검역소	395		339				2	7	2	23	305	1		10	45
국립종자 관리소	165		68			1	1	10	1	10	45		4	27	66
소 계	3,184	-	2,329	-	1	4	4	45	10	185	2,080	2	276	135	442
총 계	3,689	2	2,756	1	9	5	14	70	53	312	2,292	2	284	135	510

## 농림관련 기관·단체 기구 및 정원

○ 3개 기관, 2개 단체 : 80,490명

(2002. 9월현재)

구분	기관·단체	기구	정원(명)		
			계	중앙 (중앙회)	지방 (회원조합)
투자기관	농업기반공사	6이사, 2원, 18처(실), 1관리단, 9도본부, 4사업단, 90개지사	5,912	916	4,996
	농수산물유통공사	3이사, 9처·실·원, 12팀, 34부, 5지사, 5지소, 1사업소	500	317	183
	<b>소 계</b>		<b>6,412</b>	<b>1,233</b>	<b>5,179</b>
산하기관	한국마사회	4본부, 15처·실, 1단 38팀, 4부속기관	733	733	-
	<b>소 계</b>		<b>733</b>	<b>733</b>	<b>-</b>
농업협동조합	중앙회	◦중앙본부 : 27부, 1처, 3분사 - 농업경제 : 6부 - 축산경제 : 3부 - 신용 : 9부, 2분사 - 교육지원 : 8부, 1분사 - 감사감독 : 1처, 1부 ◦지역본부 : 16지역본부 ◦시·군지부 : 156시·군지부 ◦지점·출장소 : 702개소	16,578	16,578	-
	회원조합 (1,377)	농협 1,176, 축협 187, 인삼협 14개소	54,779	-	54,779
	<b>소 계</b>		<b>71,357</b>	<b>16,578</b>	<b>54,779</b>
산림조합	중앙회	5부 6실, 8지회, 1출장소, 5사업소,	394	394	-
	회원조합	144조합	1,594	-	1,594
	<b>소 계</b>		<b>1,988</b>	<b>394</b>	<b>1,594</b>
<b>계</b>			<b>80,490</b>	<b>18,938</b>	<b>61,552</b>

## Ⅱ. 당면 현안업무

1. 태풍 루사 피해복구 추진상황 ..... 217
2. 농산물 생육상태 및 생산전망 ..... 220
3. 쌀 수급안정대책 ..... 222
4. 마늘산업 종합대책 ..... 223
5. 우유 수급안정대책 ..... 225
6. 구제역 종식 및 후속조치계획 ..... 226
7. 한·칠레 FTA 추진상황 ..... 227
8. DDA 농업협상 동향 및 대책 ..... 228

# 1. 태풍 루사 피해복구 추진상황

- 인력 및 장비 등 가용자원을 총 동원하여 응급복구를 추진하고, 피해농가의 생활안정 및 영농재개를 위한 지원 강화
  - 수리시설(4,981개소) 및 농경지(16천ha) 완전복구에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최소 기능유지 등 응급복구에 역점
  - 낙과과실(36천ha)은 가공용·판매용·유기농비료용으로 선별처리
  - 이재민에 대한 구호용 양곡 공급 및 영농자금 상환연기·이자감면 조치
  
- 태풍 루사로 피해가 발생한 전국일원을 특별재해지역으로 선정하여 특별지원 추진
  - 2ha미만 경작농가에 대해서는 특별위로금 지급
    - 피해율 80%이상 : (현행) 230만원/세대 → (개선) 500
    - 피해율 50~80%미만 : (현행) 170 → (개선) 300
  - 수확을 앞둔 농작물의 대과대, 농약대, 원예시설 복구지원단가 인상
    - 벼 등 일반작물 : (생육초기) 1,575천원/ha → (생육후기) 3,149(2.0배)
    - 엽채류 : (생육초기) 2,120천원/ha → (생육후기) 4,140(2.0배)
    - 농약대 : (화훼) 50천원/ha → 139(2.8배), (인삼) 50 → 189(3.8)
    - 유리·철골온실 : 80,120원/m<sup>2</sup> → 104,156(1.3배)
  - 농업재해복구비중 농가 자부담을 완화
    - 소규모 농립시설 및 3ha미만 농경지복구 : (현행) 10% → (개선) 0
    - 농작물 대과대 : (현행) 30% → (개선) 15

<참고1>

## 특별재해지역 복구비 지원단가 및 지원율

### □ 생육후기 농작물 대파대

	단위	생육초기(현행)	생육후기(신설)	인상율
◦일반작물	천원/ha	1,575	3,150	2.0배
◦시설채소				
- 엽채류	"	2,120	4,140	2.0
- 과채류	"	2,800	5,146	1.8
◦인삼	"	10,751	13,976	1.3
◦버섯	"	30,000	36,000	1.2
◦화훼				
- 카네이션	"	37,860	45,432	1.2
- 백합	"	18,200	23,660	1.3
- 장미	"	10,500	13,650	1.3
- 선인장	"	29,530	35,436	1.2
- 심비디움	"	16,666	21,665	1.3
- 국화	"	7,836	10,186	1.3
- 글라디올러스	"	13,990	18,187	1.3

### □ 화훼류 및 인삼 농약대

○ (현행) 50천원/ha → (조정) 화훼류 139, 인삼 189

### □ 자동화온실 복구비 지원단가(내부 첨단시설 포함)

○ 유리·PET온실 : (현행) 80,120원/m<sup>2</sup> → (조정) 104,156

### □ 복구비 부담기준

	현행				특별지원			
	국고	지방비	융자	자담	국고	지방비	융자	자담
◦농작물 대파대	50	20	-	<b>30</b>	57.5	27.5	-	<b>15</b>
◦소규모농림시설복구	25	10	55	<b>10</b>	30	15	55	-
◦3ha미만 농경지복구	50	10	30	<b>10</b>	55	15	30	-
◦가축누에 입식비	40	10	30	<b>20</b>	45	15	30	<b>10</b>

\* 농림시설 : 비닐하우스, 인삼·버섯재배시설 축사, 잠실 등

<참고2>

## 특별재해지역에 대한 보조지원액

(단위 : 천원/1ha기준)

	일반지역			특별지역			증가액 <B-A> (%)	
	복구비	간접지원	계(A)	복구비	간접지원	위로금		계(B)
<b>◦일반작물(벼)</b>								
- 수확전무 (80%이상)	1,103 (대과대)	2,300	<b>3,403</b>	2,678 (대과대)	2,300	2,700	<b>7,678</b>	<b>4,275</b> (126)
- 50%이상피해 (0.5ha수확전무)	50 (농약대)	1,700	<b>1,750</b>	50 (농약대)	1,700	1,300	<b>3,050</b>	<b>1,300</b> (74)
<b>◦시설채소(엽채류)</b>								
- 수확전무 (80%이상)	1,481 (대과대)	2,300	<b>3,781</b>	3,519 (대과대)	2,300	2,700	<b>8,519</b>	<b>4,738</b> (125)
- 50%이상피해 (0.5ha수확전무)	139 (농약대)	1,700	<b>1,839</b>	139 (농약대)	1,700	1,300	<b>3,139</b>	<b>1,300</b> (65)
<b>◦화훼(장미)</b>								
- 수확전무 (80%이상)	7,350 (대과대)	2,300	<b>9,650</b>	11,603 (대과대)	2,300	2,700	<b>16,603</b>	<b>6,953</b> (72)
- 50%이상피해 (0.5ha수확전무)	50 (농약대)	1,700	<b>1,750</b>	139 (농약대)	1,700	1,300	<b>3,139</b>	<b>1,389</b> (79)
<b>◦팻트온실(전파)</b>	280,420 (시설 복구비)	-	<b>280,420</b>	468,720 (시설 복구비)	-	-	<b>468,720</b>	<b>188,300</b> (67)

<주>

1. 일반작물 : 대과대(1,575천원/ha→3,150), 보조율(70→85%), 특별위로금(1,300~2,700천원/ha)
2. 시설채소 : 대과대(2,120천원/ha→4,140), 보조율(70→85%), 특별위로금(1,300~2,700천원/ha)
3. 화훼(장미) : 대과대(10,500천원/ha→13,650), 보조율(70→85%), 특별위로금(1,300~2,700천원/ha)
4. 팻트온실 : 복구비단가(80,120천원/m<sup>2</sup>→104,156), 보조율(35→45%)

## 2. 농작물 생육상태 및 생산전망

### < 벼 >

- 9월 현재, 벼 작황은 결실기인 8월이후 계속된 호우와 태풍에 따른 저온현상 및 일조 부족으로 **임실율(稔實率)**이 낮고, **벼알수가 다소 감소**한 것으로 조사

\* 농가관찰포 m<sup>2</sup>당 벼알수 : 32,132개(전년대비△6.6%)

### <기상상황 : 8. 1~9. 14>

- 평균기온 : 전국 평균 23.0℃ (전년대비 △1.2℃, 평년대비 △1.0)
- 강우량 : " 597mm ( " + 428, " + 251)
- 일조량 : " 213시간 ( " △121, " △65)

- 올 수확량은 등숙기 기상여건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재배면적 감소·태풍피해 등으로 **평년대비 5~7%** 줄어든 3,400~3,500만석으로 잠정 전망

- **벼 재배면적**은 밭벼 재배감소 등에 따라 전년(1,083천ha)대비 2.8% 감소한 1,053천ha

- 집중호우 및 태풍 등으로 유실·매몰, 장기침수 면적(잠정 : 15천ha) 등을 감안할 경우 수확가능면적은 1,038천ha 수준

- 또한 **백수(白穗)현상, 완전도복, 침관수 피해면적**도 136천ha에 달해 생산량 감소요인으로 작용

- ※ 고품질 쌀생산시책 추진결과, 질소비료 사용량이 줄어 태풍에 의한 **도복(倒伏) 발생면적**은 크게 감소('98 : 163천ha → '02 : 45천)

< 과실류 > : 태풍피해 등에도 불구하고 전체 수급은 차질이 없을 전망이나, 품질은 전반적으로 떨어진 상태

- 사 과 : 초기작황은 전년보다 증산(410천톤)이 예상되었으나, 태풍피해로 전년(404천톤)보다 4% 감소한 390천톤 생산 전망
- 배 : 성과수면적 증가(16%)로 과잉생산(460천톤)이 우려되었으나, 태풍피해로 전년(417천톤)보다 2% 감소한 408천톤 생산전망
- 감 귤 : 해거리 영향으로 전년(645천톤)보다 12% 감소한 570천톤 전망
- 단 감 : 초기작황은 전년보다 증산(217천톤)이 예상되었으나, 태풍피해 등으로 전년(198천톤)대비 3% 감소한 193천톤 생산 전망

< 채소류 >

- 무배추 : 8월이후 계속된 호우 및 태풍영향으로 고랭지 무배추 생산량 감소(△13.6%), 김장용은 수급에 지장이 없을 전망
  - \* 생 산 량 : ('01) 213천톤 → ('02전망) 184 (△13.6%)
  - \* 재배면적 : ('01) 14.3천ha → ('02전망) 13.9 (△2.8%)
- 고 추 : 재배면적 증가, 초기 작황 호조로 생산량 증가가 예상되었으나, 병해확산 및 수확지연으로 전년수준 생산전망
  - \* 생 산 량 : ('01) 180천톤 → ('02전망) 186(2%증)
  - \* 재배면적 : ('01) 70.7천ha → ('02전망) 72.1(2%증)



### 3. 쌀 수급안정대책

□ 양곡연도말('02.10) 재고는 북한식량지원을 감안할 경우, 당초 1,318만석에서 1,040만석으로 줄어듦 전망

\* 전체재고 ('00) 679만석 → ('01)927 → ('02전망) 1,040  
(정 부) (619) (902) (971)  
(민 간) (60) (25) (39)

\* 정부재고에는 농협차액수매 물량 포함('01 : 55만석, '02 : 341)

○ 올해 수확기에는 생산량 감소, 계절진폭 확대 등으로 지난해보다 출하물량은 감소할 전망

\* 쌀값 계절진폭 : ('00) 3.0% → ('01) 1.3 → ('02.9) 4.6

#### < 쌀 대북지원 계획 >

- 금년말까지 278만석(400천톤)을 차관방식으로 지원

\* 9.19일 1차 출항예정(34,722석, 5천톤)

- 연 1.0%, 10년 거치 20년 상환조건으로 지원

□ 정부수매(548만석)는 예년과 비슷한 시기(10.1~12.31)에 산물수매부터 실시하고, 민간유통업체의 벼 매입을 위한 지원 추진

○ 작황 등 수급관리, 농가편의 등을 고려하여 산물수매량 결정

○ RPC에 대해 지난해 수준(개소당 33억원)의 벼 매입자금 지원

□ 쌀 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한 소득보전 직불제와 쌀 수급균형을 실현하기 위한 생산조정제 도입을 추진

\* 소득보전직불제 : 쌀값 하락분의 일정비율 보전

\* 생산조정제 : 전작 등의 방법으로 쌀을 생산하지 않는 농가에게 일정수준 보상금지급

## 4. 마늘산업 종합대책

- 재배농가의 85%가 0.1ha미만이나, 주산지 집중도가 높은 점(상위 10개군 63%)을 감안하여 주산지 중심의 경쟁력 제고대책 추진
  - 재배면적의 70%에 해당되는 17천ha에 대해 생산성과 품질 향상을 위한 주아재배(종구갱신) 확대
    - 국고지원비율 상향조정 : (현행) 국고 50%, 지방비 50 → (개선) 60, 40
  - 노력비 절감을 위해 주산지 기계화 17천ha 추진('07까지)
    - 농기계 구입자금 지원 확대, 개발기술의 현장 보급 활성화
      - \* 생산비 비교 : (관행) 1,189천원/10a → (기계화) 1,051(△12%)
    - 집단화 지역 90개소, 6천ha에 대해 용수공급 등 생산기반정비('06까지)
- 국산마늘의 브랜드화고품질화로 수입산과의 차별화 노력 경주
  - 산지조합에 박피기, 포장시설 등 마늘유통시설(45개소)을 지원, 수집·선별·저장·가공·판매 등 계열화·규모화 유도
    - 국산 깎마늘의 품질고급화를 위해 깎마늘업체 규모화 및 시설보완(50개소)
  - 우리 마늘의 우수성 홍보 및 원산지표시제 등으로 불법유통 방지
    - 「사전세액심사대상품목」 지정으로 수입마늘의 불법·저가유통 방지
- 급격한 수입증대나 가격변동으로 인한 재배농가 경영불안 해소
  - 주산지 규모화된 농가에 경영안정 특별자금 지원(매년 1,000억원)
  - 농가희망전량 최저보장가격 수매 및 계약재배 확대
  - 공급과잉이 우려될 경우 국내가공, 폐기 등 다양한 처리방안 강구

<참고>

## 마늘재배 및 생산현황

□ 재배농가는 540천호이고, 호당 평균면적은 250평임

규 모	농가수 (호)	재배면적		호당평균 (평)	
		(%)	(ha)		(%)
계	539,735	100.0	44,942	100.0	250
300평미만	457,776	84.8	14,413	32.1	90
300 ~ 900평	50,729	9.5	10,838	24.0	640
900 ~ 1,500평	20,062	3.7	8,964	19.9	1,340
1,500평이상	11,168	2.0	10,727	24.0	2,800

\* 2000년 농업센서스 기준

□ 마늘농가 경영실태(1,500평이상 300호 조사결과)

- 상위(10%) 농가는 하위(10%) 농가보다 소득이 5.5배 높음
- 하위농가는 수량이 낮고, 농구비 등 기타 부대비용이 많음

(단위 : 천원/10a)

구 분		상위(10%)	하위(10%)	평균
조수입(a)		2,785	1,363	1,917
수 량(kg)		<b>2,102</b>	<b>1,107</b>	1,255
경 영 비	계(b)	969	1,031	924
	종구비	<b>542</b>	330	449
	비 료 비	137	158	142
	고용노력비	135	168	130
	기 타	155	<b>375</b>	203
소 득(a-b)		<b>1,816</b>	<b>332</b>	<b>993</b>

┌────────── 5.5 : 1 ─────────┐

□ 마늘 브랜드화 현황

- 서산·태안 육쪽마늘, 삼척 왕마늘, 고흥 토종마늘 등
- 남해 섬마늘, 맑은섬 마늘 등 브랜드화 추진

## 5. 우유 수급안정대책

□ 금년 7월까지 원유생산량은 전년동기 대비 12% 증가한 반면, 백색시유소비는 7%가 줄어 우유 수급 불균형 심화

\* 원유생산량(1~7월) : ('01) 1,359천톤 → ('02) 1,522(12% 증)

\* 백색 시유소비량(1~7월) : ('01) 864천톤 → ('02) 802(△7.2%)

□ 원유의 과잉생산을 막기 위해 젖소 자율도태, 소비촉진운동 등을 추진, 지난 6월이후 생산량이 감소하고 분유재고 증가세도 둔화

○ 4월부터 2개월간 24천여두 도태, 마리당 20만원씩 도태장려금 지급

○ 범국민적인 우유 더먹기 등 소비촉진운동과 홍보 강화

- 경제 4단체 및 소비자단체와 연계한 우유더마시기 캠페인 실시

- TV 공익광고, 소비자단체와 연계한 이벤트 행사 실시

- 농어촌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전지분유 무상공급(441톤) 등

\* 분유재고량 : (4말) 17.2천톤 → (5말) 19.0 → (6말) 19.7 → (8.20) 18

□ 앞으로 시장여건을 반영한 낙농 제도개선 및 소비홍보 지속 추진

○ 잉여원유에 대한 차등가격제 시행으로 생산감축 유도

○ 원유가격의 탄력 조정, 체세포 저등급 원유 패널티 강화 등 낙농산업발전대책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02. 6~10월)

○ 소비촉진을 위해 TV 공익광고 등 다양한 프로그램 마련

- 낙농육우협회 등 생산자단체에 총 55억원 지원, 종합입체적 홍보 추진

## 6. 구제역 종식 및 후속 조치계획

□ 5.2일 이후 총 16건 발생, 신속하고 강도 높은 초동방역으로 52일만에 구제역 종식

○ 살처분(162농가, 160,155두), 오염물건 소각·매몰 및 가축·차량·인력 이동통제 등 강력한 방역조치로 확산 최소화

\* 영국('01.2~9) : 2,030건 발생, 우루과이('01.4~'02.2) 2,057건

○ 구제역 피해농가에 대한 살처분 보상금(531억원중 268억원 집행), 생활안정자금, 입식자금 등 총 1,429억원(융자 392, 보조 1,037)을 지원

□ 악성 가축질병의 연중 발생가능성에 대비, 축산농가의 자율방역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평시 방역체계 개선

○ 농장질병관리등급제 및 신고지연 농가 사육장시설 폐쇄 조치 등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

- 가축방역 및 축산물 안전성 제고를 위해 축산농가 등록제 도입 추진

○ 탐지견, X-Ray 확대투입 등 공·항만 검색 및 소독강화

- 해외여행객, 외국인 근로자 등 유입경로와 전파위험도를 감안한 방역 추진

○ 매주 소독실시 및 공동방제단 활성화 등 민간방역 체제 확충

□ 구제역 청정국 지위 회복 및 돼지고기 수출 재개 노력 전개

○ 9.24일 이후 국제수역사무국(OIE)에 청정국 인증신청서 제출

\* OIE 「구제역 및 기타 질병위원회」 (11월)에서 인증 받을 수 있도록 준비

○ 돼지고기 수출은 러시아, 필리핀 등에 우선 추진, 청정국 인증 이후 대일 수출재개 협의(그루지아와는 수출 합의)

## 7. 한·칠레 FTA 추진상황

- 지난 8.20일부터 칠레에서 개최된 제5차 협상에서 민감한 품목 등을 예외로 하고, 주요 품목은 DDA이후 논의하자는 입장 제시
  - 칠레측은 과일·육류 등 일부품목에 대해 관세철폐 기간 단축 또는 쿼타(TRQ) 제공 요청
  - 양측의 관심품목에 대한 일부 의견차이를 해소하지 못해 추가 검토후 재협의를 갖기로 합의
    - \* 9.11~13일간 제네바에서 양측의 관심품목에 대한 협의회 개최
- 앞으로 진행될 제6차 협상(10월중)에서도 일부 핵심품목과 주요품목에 대해서는 종전과 동일한 입장에서 대응
  - 칠레측의 새로운 요구에 품목별로 국내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여 대응
    - 이미 상당부분을 수입하고 있거나, 장기적으로 관세철폐 보다 쿼타가 유리한 품목은 쿼타 제공방안 검토
    - 관세가 낮거나 국내 농업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은 관세철폐기간 단축방안 검토
- FTA 협상이 타결될 경우를 대비,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는 피해성격과 내용을 고려한 종합적인 국내 보완대책 마련

<예시>

- \* 직접적·단기적 피해품목 : 구조조정, 구매지원 등
- \* 간접적·장기적 피해품목 : 경쟁력 제고, 품질고급화 등

## 8. DDA 농업협상 동향과 대책

- 농산물 관세와 보조금 감축 등을 위한 세부원칙(Modality)을 내년 3월까지 마련키로 하고, 매달 회의를 통해 기술적인 쟁점 논의
  - 세부원칙이 확정될 경우에는 '03년 9월까지 관세인하, 쿼타 증량, 보조금 감축 등 구체적인 계획 제출
    - \* 수출국들은 관세와 보조금의 대폭 감축을 주장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은 관세상한을 25%로 설정하자고 제안
- Modality 및 구체적인 이행계획에 대한 협상에서 우리 입장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 전개
  - NTC 국가간의 공조관계를 최대한 활용하여 세부의제별 공동입장을 발굴하는 등 공동 대응
    - \* 2003. 1월에 우리나라 주관으로 NTC 각료회의 개최 검토
  - 품목별 영향분석 등을 통해 우리 입장과 대응논리 개발·보강
    - 관세율, 국내외 가격차, 수출입실적, 수급상황 등을 종합한 D/B 구축
  - 이행계획 협상과정에서 주요쟁점이 될 개도국 지위유지 문제에도 철저 대비
    - 예상쟁점별로 체계적인 대응논리를 마련, 주요 협상국 설득에 활용
- 협상 주도국과의 통상협력을 한층 강화하고, 농업인단체 등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통해 제시된 의견을 협상에 적극 반영

### Ⅲ.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1. 농업경쟁력 제고대책 .....	231
① 우수 농업경영체 집중 육성 .....	231
② 소비자 만족 농산물유통 실현 .....	232
③ 농산물 수출확대 .....	234
④ 농업·농촌 정보화 지원 .....	235
2. 농가소득안정 및 경영위험관리체계 구축 .....	236
① 생산자 중심의 가격안정체제 강화 .....	236
② 농가소득안정을 위한 직불제 확충 .....	237
③ 농업경영 위험관리 강화 .....	238
3. 농촌활력증진대책 .....	239
① 농촌투자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	239
② 다양한 농외소득원 확충 .....	240
③ 교육·의료 등 농촌생활여건 개선대책 .....	241



# 1. 농업경쟁력 제고대책

## ① 우수농업경영체 집중 육성

- ◇ 경쟁력 확보가 가능한 농업경영체를 중심으로 농업자원을 집중 지원하여 농업전반의 체질개선 유도 및 성장잠재력 확충
- 개별경영체의 기술경영능력 향상이 농업경쟁력 확보의 관건

- 기술수준 및 경영능력 등이 우수한 경영체를 발굴, 성공요인을 분석·지표화함으로써 벤치마킹 확산 유도
  - 우수 경영체 실태조사를 통해 지표개발 및 D/B 구축
    - \* 상위농가와 열위농가간 10a당 소득격차 : 벼 2.6배, 마늘 5.5, 사과 10
  - 경영 우수농가에 대해 각종 정책자금, 경영컨설팅, 기술지도 등을 연계하여 체계적으로 지원
- 쌀전업농의 영농규모화를 위해 자금지원 확대와 농지유동화 촉진
  - 2~3ha 규모의 농가에 대한 규모화 자금(3,159억원) 지원 확대
    - \* 2~3ha 규모 농가 지원비율 : ('01) 20% → ('02.P) 40%
  - 자경농지의 양도세 면제기간 단축 등을 추진
    - 기존의 8년 자경시 100% 면제 유지
    - 진흥지역내에서 5~7년간 자경후 농업기반공사에 매도시 완전면제 추가
- 경영능력과 사업타당성을 심사·대출하는 농업종합자금 지원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7,230억원)
  - 시설운영자금 통합지원 및 투자계획 수립시 지문상담 서비스 제공

## ② 소비자 만족 농산물 유통실현

- ◇ 고품질·안전 농산물 유통을 통해 소비자의 신뢰 제고
- ◇ 디지털 유통 시대에 맞는 전자 상거래 기반을 조기에 정착, 소비자 지향적 물류효율화를 적극 추진

### □ 저농약·유기재배 등 친환경농산물의 원활한 유통 적극 지원

-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해 저농약·무농약 유기재배 농산물의 인증제도 활성화 및 판로기회 확충
  - 친환경농산물 인증물량 : '01) 466천톤 → '02) 600
  - 친환경농산물 전문판매장 : '01) 90개소 → '02) 100

### □ 농산물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조사과정에 소비자의 참여를 확대하고, 부적합품의 시장유통을 차단

- 채소류는 시장출하 이전 포장단계에서 안전성 점검을 강화하고, 도축장은 '03.7월까지 위생안전기준(HACCP) 적용
  - \* '02. 7말 기준 조사 안전성 결과 : 47품목, 276건 폐기·출하연기

### □ 소비자 기호에 따른 차별화된 농산물 유통을 촉진하기 위해 품질관리를 강화

- 품질인증 대상품목과 물량을 확대하고, 지리적 표시제 등록 대상을 녹차 등 3개 품목에서 전 농림축산물과 그 가공품으로 확대
- 수확후(선별, 저장, 수송)관리기술 개발·보급으로 품질관리 강화
  - 품질관리사제 도입을 위한 「농산물품질관리법」 개정 추진

- 농산물에 대한 기초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 합리적 소비 유도
  - 주류, 면류 등 가공식품도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하고, 원산지 표시 위반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
  - 콩 콩나물옥수수 이외에 감자에 대해서도 GMO 표시 의무화
  
- 농산물 전자상거래 조기 확산을 위한 지원 강화
  - 우수농산물 전자상거래 기업에 운영자금을 용자 지원하고, 농산물 통합쇼핑몰의 운영활성화 유도
    - 운영활성화 자금(30억원), 농산물 통합쇼핑몰(4억원) 지원 등
    - \* 농산물 전자상거래 규모 : ('00) 500 → ('01) 2,949 → ('02.P) 5,000억원
    - \* 전자상거래 활용 농가 실태조사 결과 : 농가당 평균 판매규모 29% 증가 (850만원→ 1,098), 중간유통단계가 없어 소비자농업인 각각 18% 이익
  
- 소비자 지향적 표준규격 지속 정비와 물류체계 개선
  - 소비자 기호를 반영하여 소포장 위주로 농산물 표준규격을 개편(127개 품목, 644규격)
    - 업체류 등의 포장 및 규격방법 개선으로 물류비 절감 유도
  - 공동선별·공동출하 촉진을 위해 산지유통전문조직에 대한 규격출하 집중 지원('02 : 546억원)
  - 물류단위 규모화를 위해 파렛타이징 조기정착 도모
    - 파렛트 출하율이 저조한 도매시장의 물류기기 공동이용 활성화

### ③ 농산물 수출 확대

◇ 7월말 현재, 수출실적은 **873백만불**로 전년동기대비 **5.9% 증가**  
 \* 과일(46.3%), 화훼(10.9), 김치(5.5) 및 가공식품(18.2)의 수출 증가

#### □ 수출유망품목을 중심으로 차별화된 마케팅 활동 강화

	<u>주요 품목</u>	<u>추진 전략</u>
• 일 본	신선채소	현지 대형유통업체 제휴
• 중 국	인삼	수입의약품 등록 조기 획득
• 대 만	사과, 배	선별, 포장 등 품질관리 강화
• 미 국	과실류	교포시장 외에 틈새시장 개척

#### □ 월드컵이후 높아진 Korea Brand를 활용, 전통식품의 세계화 추진

- 김치·인삼의 **브랜드화**, **품질고급화** 및 **해외마케팅 강화**
  - 한국월드컵과 연계한 CF제작·홍보 및 태극문양 활용
- **고추장, 비빔밥, 햇반** 등을 수출주력 상품으로 개발

#### □ 고품질안전 농산물 생산기반확충 및 감귤 등 공동브랜드화 촉진

- 안정적인 물량확보와 상품성 향상 등을 위한 **전문생산단지 조성 확대**(’01 : 89 → ’02 : 102)
- 공동브랜드활성화로 **과당 경쟁방지** 및 품질관리 강화(단감, 감귤)

#### □ 수출금융, 동·식물 검역 등과 관련된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

- 수출자금을 **확대**(4,040억원)하고 금리 등 지원조건 개선(5% → 4)
- 수입국의 검역강화에 대비, **잔류농약검사 철저** 및 기술지원단 (병해충 검역 등)의 **현장 컨설팅 강화**

#### 4] 농업·농촌 정보화 지원

◇ 도·농간 정보격차를 조기에 해소하고, 농업 경쟁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농업·농촌정보화 5개년 계획('01~'05)」 추진

##### □ 농촌지역 초고속 정보통신망 조기 확충

- 농촌지역 어디에서나 초고속인터넷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올해 말까지 모든 읍면 지역에 ADSL서비스 제공
  - \* '02.7까지 모든 읍(200개)과 1,133개면(전체1,223개면 중 93%)에 보급
- ADSL보급이 어려운 오지지역에는 위성인터넷 활용 지원

##### □ 농촌 PC보급 확대 및 농업인 정보화 교육 적극 추진

- 도시지역의 절반에 못미치는 농가 PC보급율을 제고하기 위해 중고PC를 수리·보급하는 「농촌PC보내기운동」 추진
  - 매년 6천대 수준 보급('01~'05) 및 수리비 지원(대당 8만원)
- 올해 8만명에 대한 정보화교육 실시('05까지 40만명)
  - 하반기부터는 농업정보 및 농업용 S/W활용 위주로 교육과정 전환
  - 이동버스(2대)와 농업정보 119대학을 통한 현장방문교육 실시

##### □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정보를 신속히 제공

- 도매시장별 가격 및 출하물량, 대형유통업체 판매가격 등을 제공하는 「출하지원시스템」 확충
  - \* 정보제공 품목확대 : ('00) 5개 → ('01) 11 → ('02) 23 → ('05) 91
- 농가홈페이지 1,600개를 신규 구축, 디지털 유통의 핵심으로 육성
  - \* 지원계획 : ('01까지) 3,000 → ('02) 4,600 → ('05) 8,000

## 2. 농가소득안정 및 경영위험관리체계 구축

### ① 생산자 중심의 가격안정체제 강화

◇ 생산자 조직에 의한 자율적 수급조절체계를 정착시키고, 산지유통의 규모화·전문화를 위해 전문조직 집중육성

□ 품목별 생산자조직을 법인화하여 자율적 수급조절단체로 육성

- 현재까지 겨울배추, 제주감귤 등 5개 품목의 생산자조직 법인화
  - 향후 주산지화되고 결성여건이 성숙한 품목을 중심으로 법인화 추진
- 유통협약에 의한 자율적 수급조절기능 강화
  - \* 양과 전국협의회 주도로 산지폐기(36천톤) 및 출하억제(25천톤)를 실시, 가격지지효과 거양 (폐기전 : 248원/kg → 폐기후 : 338)

□ 농협을 통한 계약재배사업 확대로 수급균형 및 가격안정 도모

- 채소·과일의 계약재배물량 및 대상품목 확대 추진
  - \* 계약재배 규모 : ('01) 생산량의 8%(6,082억원) → ('02) 11(8,160)

□ 생산자중심의 계열화브랜드화를 촉진하고, 산지유통의 규모화·집중화를 위해 산지유통전문조직 육성 및 사업연합 유도

- 농가단위의 소규모 개별출하를 지양하고, 전문조직(290개소) 중심의 출하지원 확대
  - 포장재비, 물류표준화 및 공동선별비 등을 전문조직에 우선 지원
- 산지농협간 사업연합을 통해 시장 교섭력 강화
  - 안성, 강원, 해남, 고흥, 봉화 등 11개 사업연합(84개 조합참여) 결성

## ② 농가소득안정을 위한 직불제 확충

◇ 농산물 가격 하락에 따른 농가소득 불안문제를 해소하고,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사회적 보상차원의 직불제 도입이 세계적 추세

□ 「논농업직불제」는 보조금 인상, 재배작목 자유화 및 친환경 영농의무 강화 등 내실화 추진

○ 지급단가를 **2배인상**(’01 : 20~25만원/ha → ’02 : 40~50)하고, 논외 담수의무 해제로 **재배작목 자유화**(과수·관상수 등은 제외)

○ 친환경 영농의무 강화를 위한 **토양 및 잔류농약 검사 확대**

○ 논외 형상과 기능유지, 실경작 여부 확인 등을 거쳐 **11~12월경 보조금 지급**(지급대상 선정 : 875천ha, 1,071천호)

□ 「친환경농업직불제」는 대상지역을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전국으로 확대**

○ 환경규제지역과 받은 **저농약이상**, 기타지역은 **무농약이상** 친환경품질인증농가를 대상으로 지원

\* ’02 친환경직불 대상자 선정 : 7,126농가(5,731ha, 30억원)

□ 농촌 지역사회유지와 농가소득보전을 위한 「**조건불리지역 밭 직불제**」는 도상연습에서 제기된 문제점 검토·보완

○ 영농조건이 열악하고 인구유출이 심한 **399개 오지면**에 대한 경사도 조사 및 구역도 제작 추진

### ③ 농업경영 위험관리 강화

◇ 농업분야는 자연재해 등 경영상 위험요인이 많아, 이를 분산·흡수하기 위한 다양한 경영위험관리체계 구축 필요

- 태풍피해 등으로 농가의 보험가입 필요성이 크게 높아진 「농작물재해보험」은 대상품목 확대 및 제도개선 등을 추진
  - 사과·배 이외에 포도·단감·감귤·복숭아도 보험대상 포함
    - 내년부터 사과·배에 대한 재해보험을 전국으로 확대·시행
  - **순보험료·운영비의 지원을 인상**(30% → 50, 50 → 70)하고, 보험료 분납 및 재해대상 확대(호우추가) 등 제도개선
    - \* 가입신청 : 10,995ha(18,620농가), 가입율 18.3%('01대비 사과배 46.9% 중)
    - ※ 소, 돼지, 닭, 말에 대한 **가축공제사업** 추진으로 가입금액의 80~100% 보상(보험료 50% 지원)
- 내년부터 건설한 경영체가 재해·가격폭락, 질병 등에 따른 일시적 경영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경영회생 지원제도**」 도입
  - 일정규모이상 농업경영체의 회생가능 여부를 심사하여 **경영체 구조조정자금 500억원 지원**(4%, 3년거치 5년 분할상환)
    - 회생가능 여부 등을 심사하기 위한 경영평가위원회 설치
  - 경영체 구조조정 이행실적 점검 등 사후관리대책 병행 추진
- 시중금리 인하추세 등을 감안, **중장기정책자금과 기금의 금리인하**
  - 7. 1일부터 농축산경영자금, 농업종합자금, 수출관련자금 등 37개 정책사업의 금리를 5%에서 4%로 **1%p 인하**
    - ※ '01년까지 농가부채 상환도래분 12.5조원 이자율 감면 및 상환기간 연장



### 3. 농촌활력증진대책

#### ① 농촌투자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 ◇ 농촌지역에 사람과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농촌활성화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
  - 제도개선을 통해 도시자본의 농촌투자기회 제공

#### □ 농촌투자를 촉진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

- 도시민의 주말농장용 농지소유 허용 및 농촌주택 보유 활성화
  - 농지소유는 1,000㎡미만으로 하고, 회원제 주말농장 임대사업 허용
  - 수도권·광역시 외 면지역의 농촌주택 추가소유에 대한 세부담 경감
    - \* 재경부는 형평성 문제를 이유로 양도세 감면에 부정적
  - 초지에 농업인 주택 건립시 대체초지 조성비 감면
- 생산성이 낮은 한계농지의 다목적 개발을 촉진
  - 민간사업자도 한계농지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허용
  - 한계농지에 전원주택, 콘도, 복지·관광·위락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대상사업 범위 확대
- 비농업인이 농업법인이나 협동조합에 출자할 수 있는 기회 확충
  -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비농업인의 출자한도 확대( $\frac{1}{2} \rightarrow \frac{3}{4}$ )
  - 비농업인이 협동조합에 출자할 수 있는 우선출자제 도입 검토

#### □ 농촌투자 알선 및 소개, 애로요인 해소를 위한 「농촌투자유치 센터」 설치·운영(7.18)

- 농촌투자에 대한 정보제공, 상담 및 관련법령·제도개선방안 도출

## ② 다양한 농외소득원 확충

◇ 늘어나는 도시민의 여가수요를 농촌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체계적인 지원시스템 구축

\* 관광·휴양지 및 전원생활공간으로서 농촌지역의 중요성 부각

□ 농촌특유의 자연경관·전통문화·특산품 등 관광자원을 농가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개발

○ 전국 18개소에 녹색농촌체험 시범마을을 신규로 조성

- 마을사업계획 발표 및 현지실사를 거쳐 선정

○ 인터넷, 신문, TV 등을 통해 농촌관광 적극 홍보

- 홈페이지 개설, 농촌관광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 및 포털사이트 구축

○ 농촌관광을 추진하고 있는 마을간 경쟁촉진을 위한 “농촌 마을가꾸기” 경진대회 개최

- 우수마을로 선정될 경우 3,000만원~1억원 지원

○ 친환경농업과의 연계 등 농촌관광마을의 체계적인 육성 추진

□ 농촌취업기회 확충을 위한 특산단지 및 농공단지 활성화

○ 농촌지역 특산단지의 운영 내실화 및 특산물에 대한 홍보·판촉 강화

- 신규단지 조성은 최대한 지양하고, 발전가능성이 있는 단지에 중점 지원

○ 농공단지의 부지조성비 지원을 확대(최고 3만원/평 → 10)하고, 사전 타당성 조사를 통해 지역특성에 맞는 전문단지 육성

### ③ 교육·의료 등 농촌생활여건 개선

- ◇ 도·농간 복지 및 생활환경의 격차로 인해 젊은층 이농심화
- 농촌활력 증진을 위해 교육·의료 등 복지부문의 획기적 개선 필요

- 생활안정 및 부담경감 차원의 교육비, 연금보험료 등 지원 확대
  - 영세농가 고교생 학자금 지원을 인문계 학생까지 확대('03 : 177억원)  
\* 수혜농가 : 52천 → 105천, 지원액 : 678천원(실업계) ~ 727천원(인문계)
  -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 무이자 용자지원대상(연간 2만명 → 3) 및 지원액(학기당 150만원 → 200) 확대(600억원)
  - 농업인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액을 최저등급보험료의 1/3에서 1/2까지 상향조정(399억원)  
\* 지원계획 : '02년 4,400원/월 → '03년 상반기 6,600/하반기 7,700
  - 농업인 건강보험료 부과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 협의(휴·폐경지 및 빈축사 등은 보험료부과대상에서 제외)
- 교육인적자원부와 협력하여 금년말까지 농촌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농어촌교육발전종합대책」 마련
  - 우수교사 확보, 농촌형 교육과정 개발 등 농촌교육 활성화 방안
- 농어업·농어촌특위 활동과 연계, 범정부 차원의 「농촌복지 증진종합대책」수립을 적극 추진
  - 「농촌복지증진종합대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방안 강구(특별법 제정, 재원확보대책 등)

## IV. 2002년 정기국회 입법 추진계획

□ 입법계획(9건) : 농림부 8건(개정), 산림청 1건(제정)

### < 기제출된 법률안 >

법 률 명	주요 제·개정내용
1. 산지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지를 이용목적에 따라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구분하고, 보전이 특히 필요한 산지는 산지전용제한지역으로 지정·관리하여 체계화</li> <li>◦ 산지전용허가기준 구체화 및 산지관리위원회의 사전 심의후 산지전용허가로 무분별한 산지전용 예방</li> <li>◦ 산지의 전용채석을 하는 자에게 산림재해방지·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자연친화적인 개발유도</li> </ul>

### < 앞으로 제출예정인 법률안 >

법 률 명	주요 제·개정내용
1. 농지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합명·합자·유한회사 이외에 주식회사 형태의 농업 회사법인도 농지소유를 허용하여 도시자본의 농촌 유치 촉진</li> <li>◦ 비농업인이 취미·여가활동 목적으로 농작물 등을 경작하고자 하는 경우 1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지소유 허용</li> <li>◦ 농업진흥지역밖에서의 농지소유상한(5ha) 폐지</li> <li>◦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시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절차 폐지</li> </ul>

법 른 명	주요 제·개정내용
2. 농약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약의 위탁제조시 수탁업체의 별도의 품목등록을 면제하여 수탁업체의 등록여부 논란에 대한 해석을 명확히 함</li> <li>◦ 이미 등록된 농약 또는 원제가 인축 및 환경에 심각한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제조·수출입 및 사용금지 또는 제한</li> </ul>
3. 농산물품질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산물품질 등급관리 강화를 위해 농산물품질관리사 제도 도입근거 마련</li> <li>◦ 원산지표시 등 위반행위자에 대한 벌칙 강화</li> </ul>
4. 축산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축질병예방 및 축산물 안전성 강화를 위해 축산업의 신고제를 등록제로 전환하고, 계란집하업 및 가축사육업에 대한 등록제 도입</li> <li>◦ 대기업의 축산업 참여제한을 폐지하여 개방화 시대의 양돈·양계산업의 경쟁력 강화</li> <li>◦ 도축장에서 처리되는 축산물로 한정되어 있는 축산물 등급판정 대상을 계란까지 확대</li> <li>◦ 「전통소싸움경기에관한법률」에 의한 수익금을 축산 발전기금으로 출연받을 수 있는 근거 마련</li> </ul>
5. 동물보호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지되는 동물학대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li> <li>◦ 소비자 보호를 위해 애완동물 거래시 예방접종증명 교부 의무화</li> <li>◦ 법 위반자에 대한 벌칙강화 및 과태료 부과</li> </ul>

법 른 명	주요 제·개정내용
6. 농어촌정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계농지 등 정비사업의 종류 및 시행자격을 확대하여 도시자본의 농촌투자 촉진</li> <li>◦ 관광농원, 농어촌휴양단지 등 농어촌휴양지 개발사업의 경영 및 개발주체를 농림어업인 등에서 일반까지 확대</li> </ul>
7. 농업·농촌기본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농조합법인 준조합원의 자격제한을 완화하여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도시자본 투자를 촉진</li> </ul>
8. 양곡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가로 매입하고 시가로 방출하는 공공비축제 도입 법적근거 마련</li> <li>◦ 농가소득안정과 수급균형을 위한 소득보전직불제와 생산조정제 법적근거 마련</li> <li>◦ 가공용쌀 부정유통 신고포상금제 도입근거 마련</li> </ul>

## V. 2001년 국정감사 주요지적사항 조치결과

지 적 사 항	조치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1. 쌀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중장기대책 수립</p>	<p>□ 조치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정생산 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벼 수매중단 및 논에 콩·사료작물재배사업 시범 실시(2,608ha)</li> </ul> </li> <li>◦ 고품질 쌀 생산·유통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품질벼 재배면적을 전체 재배면적의 65%까지</li> <li>- 질소질 비료 사용량 감축</li> </ul> </li> <li>◦ 고품질쌀 생산·유통중심체로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품질 쌀 계열화사업 추진(188천ha)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RPC별로 2~3개품종 지정</li> </ul> </li> <li>- 건조저장시설 확충, 지원확대(84개소)</li> </ul> </li> <li>◦ 쌀 재고처분 대책 강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도적 차원의 북한 식량지원 추진</li> <li>- 학교급식용·군수용 신곡 공급, 주정용·가공용 저가판매</li> <li>- 쌀 가공식품산업 적극 육성</li> </ul> </li> <li>◦ 쌀산업발전종합대책 마련 및 농특위 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급불균형 해소를 위한 특별재고처리대책 추진</li> <li>- 농가소득안정을 위한 소득보전직불제</li> <li>- 수급균형을 위한 생산조정제 도입</li> <li>- 공공비축제 도입 및 양곡거래소 설립 검토 등</li> </ul> </li> </ul> <p>□ 향후 추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쌀산업종합대책 후속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 식량지원 1항차 출항(9.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올해말 완료를 목표로 추진</li> </ul> </li> <li>- 소득보전직불제 시행방안 확정하고, 금년산부터 적용</li> </ul> </li> </ul>

지 적 사 항	조치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2. 한·칠레 FTA 협상 과정에서 최대한 예외를 확보하고 우리농업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p>	<p>□ 조치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품목별 민감도 및 관세수준 등을 감안한 협상안 마련,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용역, 협의회, 칠레 농축산업 실태조사 추진</li> </ul> </li> </ul> <p>□ 향후 추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년 10월중 개최되는 제6차 협상에서도 우리의 핵심품목은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DDA 협상이후에 추가협상을 한다는 원칙하에 대응</li> </ul>
<p>3. 생산농가가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친환경 농산물 품질인증확대 방안 강구</p>	<p>□ 조치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2년부터 친환경농업 직불제 대상자를 전국의 무농약이상 인증농가로 변경(밭의 경우 저농약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2사업대상자 선정 : 5,731ha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기 634ha, 전환유기 43, 무농약 1,904, 저농약 3,150</li> </ul> </li> <li>- 친환경농산물 인증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0) 15천ha → ('01) 25</li> </ul> </li> </ul> </li> <li>◦ 친환경농업육성사업 참여자는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도록 사업지침에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2사업대상자 선정 : 26개소</li> <li>- 추진상황 중간점검 : 3회</li> </ul> </li> </ul> <p>□ 향후 추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친환경직불대상자 관리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급요건 이행여부 지속 확인</li> </ul> </li> <li>◦ 친환경농업육성사업 최종평가지 이행여부 확인</li> </ul>



지 적 사 항	조치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4. 산지유통센터의 경영부실 방지를 위해 우수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부실업체 퇴출 등 근본적인 대책 수립</p>	<p>□ 조치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지유통센터 운영실태평가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2년 사업시행지침 마련('01.12)</li> <li>- 평가결과에 의거 우수사업장은 최고 30억원, 부진사업장은 3억원 이내로 차등지원</li> <li>* 운영자금 차등지원('02.) : 60개소, 360억원</li> </ul> </li> <li>◦ 「농산물산지유통시설관리지침」 제정·시행('02.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설물의 양도·임대, 담보 등 허용</li> <li>- 경영부실업체 퇴출제도 시행</li> <li>- 매년 산지유통시설 실태조사 및 사후관리 강화</li> </ul> </li> <li>◦ 유통사업실적이 우수한 산지유통센터를 산지유통전문조직으로 지정('02.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88개소(농협69, 영농법인19)</li> </ul> </li> </ul> <p>□ 향후 추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지유통센터 평가결과 부진사업장 정밀평가('02. 9)후 부실업체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도 또는 경매사업장수 : 7개소</li> </ul> </li> <li>◦ 산지유통시설 실태조사 실시('03. 1~2)</li> <li>◦ 실태조사결과 유휴시설에 대한 활용도 제고 추진(매매·임대차 알선 등)</li> </ul>

지 적 사 항	조치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5. 영농조합법인이 휴폐업 등으로 부실화되고 있으므로 부실조합법인 퇴출, 우수조합법인 지원강화 등 대책 수립</p>	<p>□ 조치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실법인 정비실적('01.12말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인해산 : 177개소, 정상화 추진 : 113개소</li> </ul> </li> <li>◦ 법인에 대한 「정부지원요건」에 의해 농업종합자금 등 정책자금은 일정요건을 갖춘 우수법인에게만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지원요건 : 출자금 1억원 이상, 운영실적 1년이상, 자기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 확보된 법인</li> </ul> </li> <li>◦ 우수농업법인을 기타 생산자단체로 지위 부여 (농림부고시 2002-36, '02. 7.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농조합 1,778개소, 농업회사 433개소</li> </ul> </li> <li>◦ 법인대표자 등을 대상으로 회계·세무·정보활용 등에 관한 교육(연간 600명) 및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01년 63개소)</li> </ul> <p>□ 향후 추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실법인 지속 정비를 통해 정상화, 자진해산 유도</li> <li>◦ 외국인 농업연수생 제도를 도입하여 농업법인의 인력난 해소 및 경영안정 도모</li> </ul>
<p>6. 받기반정비사업 대폭 확대</p>	<p>□ 조치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중장기계획에 반영('02.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1년까지 110천ha 받기반정비사업 완료</li> <li>* 집단화규모가 큰 30ha이상 우선추진</li> </ul> </li> <li>◦ '03년도 예산반영 : 6,000ha, 92,461백만원</li> </ul> <p>□ 향후 추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받기반정비사업의 확대 추진을 위해 필요한 예산 확보에 적극 노력</li> </ul>

지 적 사 항	조치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7. 논농업직접지불제 예산확보 및 부적격자 심사 철저</p>	<p>□ 조치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논농업직접지불제 예산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2년 지원단가를 '01년대비 100%인상(20~25만원/ha → 40~50)</li> <li>* 지원예산 확대 : ('01) 2,105억원→('02) 3,929</li> </ul> </li> <li>◦ 부적격자 심사철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1년 논농업직접지불 지원신청 906천ha중 0.1ha 미만 및 2ha 초과면적 등을 제외한 833천ha 지원 대상으로 선정</li> <li>- 이중·중복 등 부적격 대상자 심사로 1,023천 농가의 816천ha에 대해 1,910억원의 보조금 지급 완료</li> </ul> </li> <li>◦ 이중·중복 지급 및 실경작자(임차인)가 아닌 지주의 보조금 실태조사 및 부당지급액 회수(116건, 14,175천원)</li> </ul> <p>□ 향후 추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조금 부당지급 방지를 위한 대상자 관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중선정(농가, 필지), 면적산정 적정, 지급요건 이행여부 등 현장확인 실시</li> </ul> </li> <li>◦ 논농업직접지불제 관리 보조인력 확보 및 전산화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읍·면·동별로 2명 이상 확보하여 활용(2,313명)</li> <li>- 전산관리 프로그램 개발보급('02.10월~)</li> </ul> </li> </ul>
<p>8. 농촌복지문제를 총체적으로 점검하는 대책 수립</p>	<p>□ 조치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촌복지실태조사 현지출장('01. 2~4)</li> <li>◦ 농촌복지실태 및 욕구조사용역실시('01. 2~5, 서울대 조홍식교수)</li> <li>◦ 「농촌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방안」 연구용역 추진('01. 8~11)</li> <li>◦ “농어촌교육발전위원회”(교육인적자원부) 활동 참여('02. 3~)</li> </ul>

지 적 사 항	조치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9. 밭농업직불제 도입을 위한 예산확보 등 대책 강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어업특위」에서 농촌복지개선과제를 검토중('02. 3 ~)</li> <li>◦ 농어가 생활안정 및 부담경감 차원의 단기대책 우선 추진('02.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교생 학자금 지원 확대(인문계포함)</li> <li>- 농어촌대학생 학자금 용자지원확대 (2만명 → 3, 150만원 → 200)</li> <li>- 농어민연금지원 확대(최저등급 1/3 → 1/2)</li> </ul> </li> <li>□ 향후 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인적자원부와 협조하여 「농어촌교육발전종합대책」 마련</li> <li>◦ 농특위 활동과 연계, 「농어촌복지증진종합대책(안)」 마련</li> </ul> </li> <li>□ 조치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도입을 위한 대상지 구역도 작성 추진(15억원)</li> <li>◦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시행방안 강구를 위한 연구 용역 실시('01.10 ~ '02.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세부시행 방안 및 GIS 경사도 분석에 의한 대상지 구역도 작성 방안 연구</li> </ul> </li> <li>◦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정책토론회 개최</li> <li>◦ 농경연, 농업기반공사, 지자체 공동으로 3개 시범에 대한 도상연습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횡성 강림, 무주 적상, 봉화 재산</li> </ul> </li> </ul> </li> <li>□ 향후 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99개 오지면내 밭경사도 조사 및 대상지 구역도 제작</li> <li>◦ 직불제 시행 규정(안), 사업시행 지침(안) 마련 및 '03년 예산확보 추진</li> </ul> </li> </ul>

지 적 사 항	조치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10. 축산물종합처리장 운영활성화 대책 수립</p>	<p>□ 조치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LPC 건설목표 9개소 완료</li> <li>◦ 운영부진 LPC 3개소 정상화(포항·군위·익산)</li> <li>◦ '02년 경영안정자금 지원(228억원) 및 금리인하(5% → 4)</li> </ul> <p>□ 향후 추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LPC 운영활성화를 위한 자금 지속 지원</li> <li>◦ 도축장 HACCP적용 강화를 통한 자율적인 구조조정 유도</li> <li>◦ 영세·노후도축장 통폐합시 시설자금지원</li> </ul>
<p>11. 정책자금금리를 시중금리 추세에 맞추어 인하하고, 정책자금 취급 금융기관을 타금융기관으로 확대</p>	<p>□ 조치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개사업의 정책자금 금리인하('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8.0%인 관광농원개발 등 16개 사업(8.0% → 5.5)</li> <li>- RPC운영자금 인하(5% → 0)</li> <li>- 농지매입 및 교환분합(4.5% → 3.0)</li> </ul> </li> <li>◦ 37개 사업자금 금리 인하('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업종합자금 등 37개 사업(5.0% → 4.0)</li> </ul> </li> </ul> <p>□ 향후 추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업정책자금 취급 금융기관 확대는 농협중앙회 신경분리 연구용역결과와 연계, 농협과 농업인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 고려하여 추진</li> </ul>
<p>12. 농기계 임대사업 활성화 방안 강구</p>	<p>□ 조치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기계 임대사업 활성화방안 마련('01.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2년 지역특화사업에 포함</li> <li>- 2003년부터 정부예산사업에 반영</li> </ul> </li> </ul> <p>□ 향후 추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3년 예산확보(시범사업) : 8개소, 10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사업비 20억원(국고 10억원, 자부담 10억원)</li> </ul> </li> <li>◦ 사업시행지침 마련('02.11)</li> </ul>

지 적 사 항	조치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13. 도농간 소득격차를 줄이기 위한 종합적이고 거시적인 중장기 마스터 플랜 수립</p>	<p>□ 조치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가소득안정을 위해 직접지불제, 재해보험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논직불제 단가 인상 : ('01) 20~25만원/ha → ('02) 40~50</li> <li>- 재해보험 지원을 인상 및 대상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순보험료 30%, 운영비 50% → 50, 70</li> <li>· 사과, 배→ 포도, 단감, 감귤, 복숭아 추가</li> </ul> </li> </ul> </li> <li>◦ 다양한 농외소득원 개발·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공단지개선, 그린투어를 통한 농외소득확보 및 지역활성화 도모</li> </ul> </li> </ul> <p>□ 향후 추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영 능력 배양과 농업생산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컨설팅 활성화</li> <li>- 농업·농촌 정보인프라 확충과 IT기술 활용</li> <li>- 농업벤처육성을 통해 고부가가치 농업기반 마련</li> </ul> </li> <li>◦ 농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과 품목별 경쟁력 제고대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산자 조직의 법인화 추진</li> <li>- 자조금 조성지원(23억원)</li> <li>- 유통협약·명령추진을 위한 수급 안정사업 신규 지원(50억원)</li> <li>- 품목별 경쟁력제고대책 추진</li> </ul> </li> <li>◦ 농촌 생활여건 개선 및 복지증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주권, 문화마을 조성 등 생활기초시설 정비</li> <li>- 교육여건 개선, 의료서비스 확대 및 여성농업인의 복지 확충 추진</li> </ul> </li> <li>◦ 직불제의 내실있는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영이양 직불제, 친환경 직불제, 논직불제 내실화</li> <li>- 소득보전직불제,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등 도입추진</li> </ul> </li> </ul>

지 적 사 항	조치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14. GMO표시제 정착을 위한 노력	<p>□ 조치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GMO표시제의 단계적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단계('01. 1 ~ 2) : 예비조사 및 TV 등 언론매체 홍보</li> <li>- 2단계('01. 3 ~ 8) : 지도·계도위주의 단속</li> <li>- 3단계('01. 9 ~ 현재) : 본격 단속</li> </ul> </li> <li>◦ GMO표시제 위반업소에 대한 단속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속실적 : ('01) 87천개소 → ('02. 7) 65 위반(미표시) : ('01) 10개소 → ('02. 7) 5</li> </ul> </li> <li>◦ 감자의 GMO 표시제 확대에 따른 단계적 관리방안 수립('02.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배·수출입·유통상황을 고려, 일정기간 지도·계도위주의 단속 추진</li> <li>- 감자 정성검정법 개발</li> </ul> </li> <li>◦ GMO표시제에 대한 교육·홍보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실적 : ('01) 394천명 → ('02. 7) 510</li> </ul> </li> </ul> <p>□ 향후 추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GMO표시제 조기정착을 위한 단속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학적·사회적 검증방법을 병행하여 GMO표시 여부 및 적정여부 확인</li> </ul> </li> <li>◦ 감자 정량검정법 조기 개발 추진</li> <li>◦ GMO에 대한 올바른 정보제공 및 이해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지속 추진</li> </ul>
15. 인삼가공공장 가동율 제고를 위한 대책 수립	<p>□ 조치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수기반 확충으로 매출신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협 홍삼대리점 21개소 개설 운영</li> <li>- 농협하나로마트(980개소), 농산물종합유통센터(6) 인삼판매코너 운영</li> <li>- 일반백화점 및 대형유통점 등을 대상으로 영업 활동 전개</li> </ul> </li> <li>◦ 중국의 수입의약품 임시비준을 통한 공식 수출(홍삼 3톤)</li> </ul>

지 적 사 항	조치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16. 농외소득 향상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수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향후 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양한 인삼제품개발(홍삼초콜렛·양갱, 홍삼정 캡슐 등) 및 상품화</li> <li>◦ 농협계통판매 공급 제품(과우치, 봉밀홍삼절편 등)에 인삼협의 참여 확대</li> <li>◦ 중국 수입의약품 정식등록 적극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출물류비 인센티브 지원 및 중국 공식 등록업체의 등록비 지원</li> </ul> </li> </ul> </li>   <li>□ 조치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림부, 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 환경부 공동으로 「농공단지 개선방안」 시행</li> <li>◦ 그린투어리즘을 중심으로 한 「농외소득증대중장기 추진계획」 수립('01. 5.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외소득작업반 구성 및 실태조사</li> </ul> </li> <li>◦ 그린투어리즘 세부사업지침 마련('02. 1)</li> <li>◦ 녹색농촌체험시범마을 선정(18개소), 시범마을 리더 및 지자체 담당자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촌관광포털사이트 구축 등 추진</li> </ul> </li> <li>◦ 「농촌투자유치센터」 설치·운영(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종규제 완화추진 및 농촌투자 상담·알선 등 서비스 제공</li> </ul> </li> </ul> </li>   <li>□ 향후 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을가꾸기 경진대회 개최</li> <li>◦ 농촌관광 중장기발전계획 수립</li> <li>◦ 농촌취업기회 확충을 위한 농공단지조성 : ('01) 4 → ('02) 4 → ('03계획) 11</li> </ul> </li> </ul>



지 적 사 항	조치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17. 한·중 마늘협상 타결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마늘산업경쟁력 제고 대책 추진</p>	<p>□ 조치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0년부터 경쟁력 제고를 위한 종구갱신 및 생산 기계화 등 지원 사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0년 실적 : 1,208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구갱신 908, 마늘유통센터 300</li> </ul> </li> <li>- 2001년 실적 : 4,505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구갱신 674, 마늘유통센터 710, 기계화지원 1,856 등</li> </ul> </li> </ul> </li> </ul> <p>□ 향후 추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2 마늘산업 경쟁력 제고 지원사업 추진(10,483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구갱신사업 추진 : 5,150</li> <li>- 마늘생산기계화 지원 : 992</li> <li>- 마늘유통센터 시설 지원 등 : 3,232</li> <li>- 건조가공시설 및 포장재 지원 : 1,109</li> </ul> </li> <li>◦ '03년이후에는 마늘산업종합대책에 따라 추진(~'07)</li> </ul>
<p>18. 표준하역비 제도의 조기정착을 통해 규격 출하 확대</p>	<p>□ 조치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국 29개 공영도매시장에서 표준하역비 제도 도입·시행('02.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완전규격출하품 채택 : 18개시장</li> <li>- 표준규격출하품 채택 : 8개시장</li> <li>- 모든출하품 채택 : 3개시장</li> </ul> </li> <li>◦ '02. 8월말까지 10개 도매시장에서 표준규격출하품을 표준하역비 대상품목으로 추가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가락, 부산반여, 춘천, 강릉, 포항, 대전오정·노은, 울산, 강원원주, 충북청주</li> </ul> </li> <li>◦ 전체 도매시장법인이 하역비 총액대비 11.8% 수준인 4,806백만원 부담</li> </ul>

지 적 사 항	조치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19. 채소류 수급안정 사업과 관련 계약 재배사업이 실효성을 거둘수 있도록 대책 수립</p>	<p>□ 향후 추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장별 단계적 추진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장수수료는 범상한도(7.0%)내에서 탄력 조정</li> </ul> </li> <li>◦ 각 도매시장별 「시장관리운영위원회」 기능 강화, 상장수수료 및 하역비 결정시 의견수렴</li> <li>◦ 표준하역비 추진실적을 도매시장 평가에 반영, 정책목표 수행의 효율성 제고</li> </ul> <p>□ 조치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약재배 규모를 전체 생산량의 11% 수준으로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약물량 : ('00) 498천톤, 생산량의 8% → ('02.계획) 600, 11</li> <li>- 자금조성액 : ('00) 3,500억원 → ('02) 4,500</li> </ul> </li> <li>◦ 계약재배 참여농가에 최저가격 보장</li> <li>◦ 수급불안시 가격하락 사전방지를 위해 시장개입 시기 조기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초('00) : 최저가격이하로 3일이상 하락시 수매 착수</li> <li>- 개선('01이후) : 최저가격이하로 하락 예상시 수매 착수</li> </ul> </li> <li>◦ 계약재배사업 전산화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합단위 → 개별단위까지 전산화</li> </ul> </li> </ul> <p>□ 향후 추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급상황에 따라 다양한 수급조절 프로그램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통협약을 통한 자율감축 등</li> </ul> </li> </ul>

지 적 사 항	조치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20. 농수산물종합유통 센터를 본래의 취지에 맞도록 도매기능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정책 추진</p>	<p>□ 조치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영역의 다각화 도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산물전자상거래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2B하나로개장 : 836개소, 거래 금액 1,841백만원</li> </ul> </li> <li>- 학교, 병원 등 단체급식 거래처확보 및 식자재매장 활성화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체급식거래처 : 167개소, 7,052백만원</li> <li>· 식자재매장 : 6개소, 379백만원</li> </ul> </li> <li>- 대형유통업체(삼성테스코 등)와 전략적 제휴</li> </ul> </li> <li>◦ '02.7월 현재, 매출액은 1조 3,57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22%증가(도매거래비중 51%)</li> </ul> <p>□ 향후 추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통센터 직영점 및 가맹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권역별 유통센터 직영점 4개소 신설</li> </ul> </li> <li>◦ 종합유통센터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추진('02. 7 ~ 12)</li> </ul>
<p>21. 중국의 WTO 가입과 관련, 국내 농업을 보호하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책수립</p>	<p>□ 조치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현지조사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쌀산업·원예산업 현지실태조사('01. 3 ~ 4)</li> <li>- 시설양념채소 생산·유통 및 수출입현황 등 조사('01. 5)</li> <li>- 화훼류 생산·유통 및 수출입현황 등 조사('01. 8)</li> <li>- 과수생산·유통 및 수출입현황 등 조사('01. 9 ~ 10)</li> </ul> </li> <li>◦ WTO가입 이후 중국농업의 전망과 대응방안 연구(농경연)</li> </ul> <p>□ 향후 추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중국 수출확대 및 중국 농산물에 대한 검역과 밀수 방지, 원산지 표시제 실시 철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출유망 품목(화훼류, 특용작물, 가공품) 집중 개발 및 수출지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중국 농산물수출 중장기 전략방안” 관한 연구용역 추진('02. 3 ~ 12)</li> </ul> </li> <li>- 동·식물검역 강화, 안전성 관리철저</li> </ul> </li> </ul>

지 적 사 항	조치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22. 돼지 사육두수 증가에 따른 수급 및 가격 안정대책 수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업경쟁력 강화 제고 시책 적극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술·마케팅 등 경쟁력을 가진 우수경영체 중점 육성</li> <li>- BT·IT 접목으로 새로운 농업잠재력 배양</li> <li>- 고품질, 친환경·안전농산물생산·유통체제 확립</li> </ul> </li> </ul> <p>□ 조치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돼지수급 및 가격안정대책 수립·추진('01.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간육가공업체(61개소) 비축자금 169억원 지원</li> <li>- 소비촉진 TV광고 일일 7~8회 실시</li> <li>- 불우이웃 돼지고기 보내기 운동전개</li> <li>- 양념육 등 2차 육가공장(11개소, 94억원) 및 돈가스 프랜차이즈 개설(30개소, 34억원)지원</li> </ul> </li> <li>◦ 구제역 및 콜레라 확산방지와 수급안정을 위한 이동 제한 지역내 돼지 수매(142천두, 383억원)</li> </ul> <p>□ 향후 추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비자가격인하 및 TV광고 등 소비홍보강화</li> <li>◦ 필리핀, 러시아 등에 수출재개</li> <li>◦ 민간육가공업체를 통한 돼지비축사업 추진</li> </ul>
<p>23. 한우산업발전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추진</p>	<p>□ 조치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우번식기반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송아지생산안정사업 : ('01)384천두 → ('02) 570</li> <li>- 한우다산장려금 : ('01)150천두, 305억원 → ('02.6) 113, 235</li> <li>- 송아지생산기지조성 : 21개소, 56억원</li> <li>- 농협번식우시범목장조성('03. 3월준공)</li> </ul> </li> <li>◦ 품질고급화 및 생산성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우거세사업 : ('01)136천두, 180억원 →('02. 6) 60, 85</li> <li>- 한우인공수정료 지원 : ('01) 525백만원 → ('02. 7) 940</li> <li>- 대규모사료작물재배단지조성 : ('01) 42개소 1,470ha → ('02. 9) 52, 1,385</li> </ul> </li> </ul>

지 적 사 항	조치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24. 농식품 안전성 관리 체계 구축과 제도적 정비 방안 수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통선진화 및 소비기반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축장 HACCP 의무화</li> <li>- 쇠고기 판매기록유지 의무화 및 거래식육의 표준화·규격화 추진</li> <li>- 축산물브랜드전개최('01.11.23 ~ 26)</li> </ul> </li> <li>□ 향후 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우산업발전대책을 착실히 추진</li> <li>◦ 쇠고기 브랜드 경매실시(서울 축산물공판장)</li> <li>◦ 우수 한우농가 선정 및 벤치마킹 유도</li> </ul> </li> <li>□ 조치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전성조사기반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설확충 : 4,893m<sup>2</sup></li> <li>- 분석장비 보강 : ('01) 1,325대 → ('02.P) 1,400</li> <li>- 분석실 정보관리시스템구축 : 10개 지원, 80개 출장소</li> <li>- 다성분 동시분석법 개발 : ('01)140성분 → ('02.P)150</li> </ul> </li> <li>◦ 불시·집중적인 조사로 부적합품 출하 차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전성조사 : 126품목, 28,815건</li> <li>- 부적합품 조치 : 276건(폐기 151, 출하연기 등 125)</li> </ul> </li> <li>◦ 안전성 향상을 위한 농소정협의회 개최 및 안전성 실태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1) 4회, 180건 → ('02. 6) 6, 111</li> </ul> </li> <li>◦ 안전성 조사결과 홈페이지 게시('02. 7)</li> </ul> </li> <li>□ 향후 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속적인 안전성조사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밀분석 비율 및 중점관리 품목 조사 비율 제고</li> <li>- 도매시장·집하장 등에 출하된 부적합 농산물 역추적 조사</li> <li>- 부적합품 생산자에 대한 처벌강화</li> </ul> </li> <li>◦ 안전성조사 신뢰확보를 위한 소비자 참여기회 확대</li> <li>◦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교육·홍보 강화</li> </ul> </li> </ul>

第243回 定期國會(國政監査)

農 林 海 洋 水 産 委 員 會

# 農 政 推 進 現 況 報 告

2003. 9. 22

農 林 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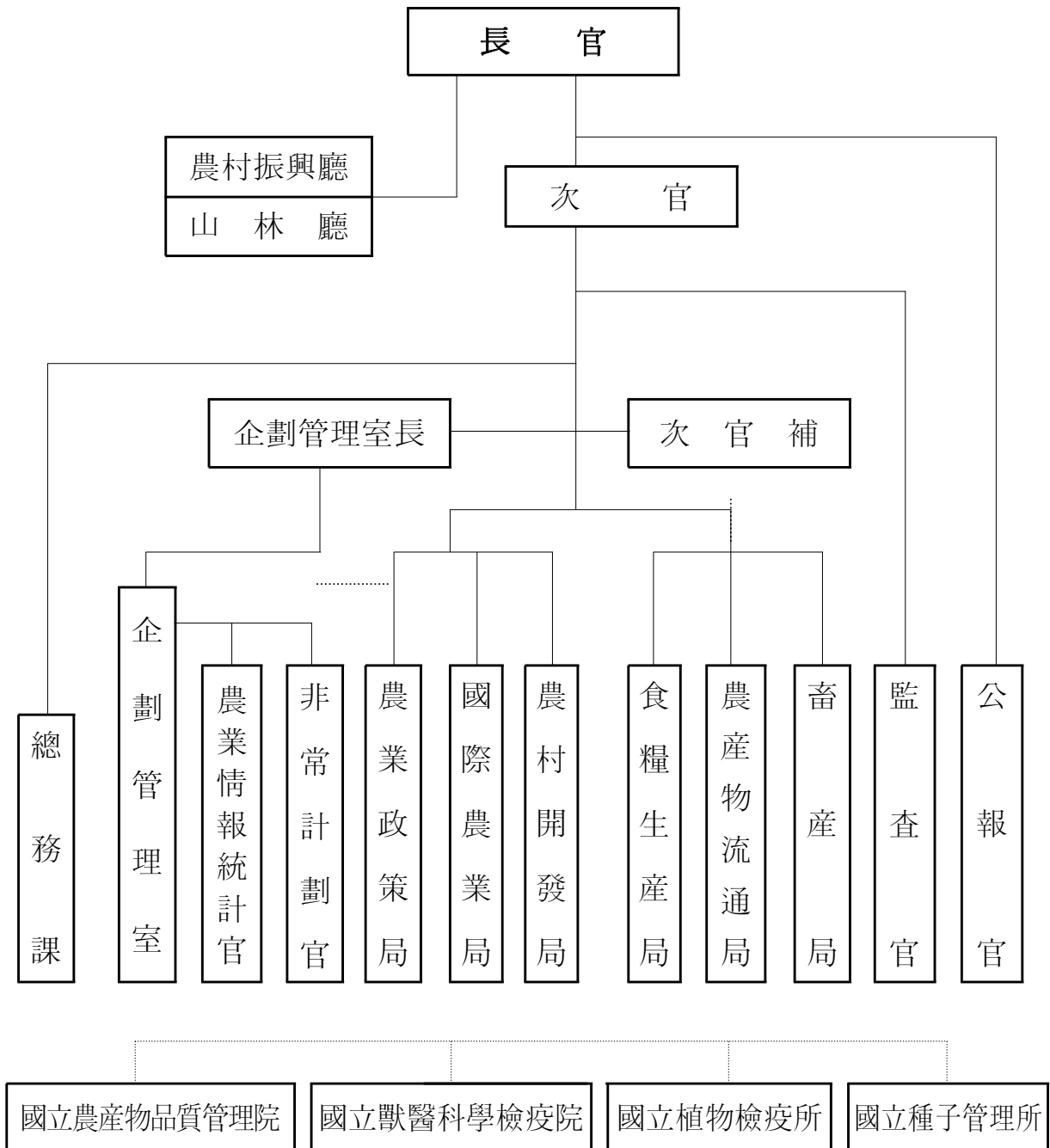
# 목 차

I. 일반현황 .....	265
II. 당면 현안사항 .....	269
III. 주요농정 추진현황 .....	289
IV. '02년 국감 주요 지적사항 조치결과 .....	306
V. 금년도 정기국회 입법 추진계획 .....	310
<별첨> 2002년 국정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	313

# I. 일반 현황

## 1. 조직 및 기능

□ 조직 : 1실, 6국, 4관, 4소속기관





# □ 기 능

## < 본 부 >

실 국 별	주 요 업 무
기 획 관 리 실	농정시책 수립 및 예산편성, 국회업무, 조직·인사· 법무행정·투자심사·여성농업인정책 추진
공 보 관	농림정책 및 주요현안 홍보
감 사 관	농림부 및 소속기관, 농업관련 단체·기관에 대한 감사
농업정보통계관	농업통계, 농업·농촌정보화
비 상 계 획 관	비상대비계획 수립 및 비상훈련
농 업 정 책 국	농업구조개선 및 농가소득, 농지관리, 농업인력육성, 농업금융, 협동조합 지도·감독
국 제 농 업 국	WTO 농업협상 및 통상협력, 농산물 수입정책 총괄
식 량 생 산 국	식량정책 수립 및 수급관리, 식량생산, 농자재, 친환경 농업 및 기술개발
농 산 물 유통 국	농산물유통구조개선, 농산물가격안정대책, 농산물수출, 식품산업육성, 채소·과수·화훼작물의 수급 관리
축 산 국	축산정책수립, 축산물유통개선, 축산물 및 사료수급, 가축방역
농 촌 개 발 국	농업생산기반정비 및 관리, 농촌생활환경개선 및 농촌관광

## < 소속기관 >

기 관 별	주 요 업 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산물 품질관리, 농산물검사, 농업통계조사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축산물 및 동물의 검사·검역 등 위생관리, 가축방역 및 질병 예방
국립식물검역소	수출·입 식물검역
국립종자관리소	주요 농작물 종자관리 및 식물품종보호

## 2. 정 원

(2003. 9월현재)

	총 계	정 무 직	일 반 직									계 약 직	별 정 직	연 구 직	기 능 직
			계	1급	23급	3급	34급	4급	45급	5급	6~9급				
본 부	명 507	2	429	1	9	1	10	26	43	127	212		8	-	68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2,144		1,627		1		1	13	5	123	1,484		266	2	249
국립수의 과학검역원	491		302			3		15	2	29	253	1	6	96	86
국립식물 검역소	401		344				2	7	2	23	310	1		10	46
국립종자 관리소	165		68			1	1	10	1	10	45		4	27	66
소 계	3,201	-	2,341	-	1	4	4	45	10	185	2,092	2	276	135	447
총 계	3,708	2	2,770	1	10	5	14	71	53	312	2,304	2	284	135	515

## Ⅱ. 당면 현안사항

1. 칸쿤 농업협상 결과 및 대책 ..... 271
2. 중장기 농업·농촌대책 수립 ..... 274
3. 한·칠레 FTA 지원대책 ..... 276
4. 당면 영농 추진상황 ..... 278
5. 협동조합개혁 추진 ..... 284
6. 새만금사업 관련 소송 추진 ..... 285
7. 기타 현안사항 ..... 286

# 1. 칸쿤 농업협상 결과 및 대책

## 가. 칸쿤 농업협상 결과

- DDA농업협상은 당초 3월말까지 예정된 세부원칙(Modality) 협상시한을 지키지 못함에 따라 이번 칸쿤 각료회의에서 주요쟁점에 대한 기본골격(framework) 마련을 목표로 진행
  - 우리나라는 관세상한 및 저율관세수입물량(TRQ) 증량 관련 조항 삭제, 특별품목(SP)의 유지 등에 우선순위를 두고 수입 국가들과 G-10 그룹을 형성, 공동 대응
  - 농업분야 Yeo의장은 각료회의 문서초안(까스띠요 안, 8.24)을 기초로 주요 협상국의 의견을 수렴한 후 새로운 초안(데르베즈 안)을 제시(9.13)
    - 관세감축의 경우 UR방식(점진적 감축), 스위스공식(급격한 감축), 무관세 등 각기 다른 방식에 따라 감축하고, 관세상한을 설정
    - 국내보조는 총액 뿐만 아니라 품목별로도 보조상한을 설정하여 보다 엄격하게 규제 (UR 당시에는 보조 총액만을 대상으로 감축)
    - 개도국의 경우 관세와 보조금의 감축수준 및 이행기간을 우대하고 수출 물류비 지원은 계속 허용
- \* 관세상한 설정 신축성 확보, 개도국 특별품목 유지 등 수입국 입장 반영
- 9.14일, 싱가포르 이슈\*에 대한 선진국·개도국간 의견 대립으로 일괄타결 원칙에 의거, 전체 의제가 합의없이 종료
- \* 투자, 경쟁정책, 무역원활화, 정부조달 투명성 등 4개 이슈

## 나. 향후 DDA 농업협상 전망

- 칸쿤 각료회의 실패에 따라 DDA 농업협상은 금년 12월 WTO 일반이사회까지 실질적인 진전없이 소강상태 예상
  - WTO 농업위원회 회의(10.7~9)에서 향후 협상일정 등이 논의될 예정이나 칸쿤회의 책임공방 등에 보다 치중할 가능성
  - 하빈슨안, 카스티요안, 칸쿤 각료회의 문서안 등 입장 절충에 계속 실패함으로써 다소 침체된 협상분위기가 지배적
    - 미국대선('04.11), EU회원국 확대('04.5) 등을 감안할 때 금년 하반기의 협상 향방이 전체 DDA 협상의 진전속도를 가름할 것으로 예상
- '미국-EU간 공조'에 중국, 인도, 브라질 등 개도국그룹(G-22)이 강력한 대항세력으로 등장하고 수입국그룹(G-10) 등이 가세하는 복잡한 협상구도가 유지될 전망
  - 우리나라는 점진적 개방을 주장하는 수입국 그룹의 입장과 특혜폭 확대를 주장하는 개도국 그룹의 입장을 동시에 대변해야 하는 상황
- 내년 쌀협상 전까지 협상 세부원칙이 가시화되지 않을 경우, 이해득실을 판단하는 객관적 기준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협상전략 수립 및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는 어려움 발생

## 다. 협상대책

- 변화된 협상구도, 새로운 일정 등 여건변화를 고려하여 세부원칙 협상 대응전략을 재점검·보완
  - 수입국 그룹(G-10)을 중심으로 미국-EU 공조에 대응하면서 개도국 SP그룹 등과도 선별 공조체제 유지
  - 우리의 핵심 관심사항인 관세상한, 저율관세수입물량(TRQ), 특별품목(SP) 등에 협상력을 집중하기 위해 상대적 중요도가 낮은 사안은 신축성을 발휘하여 공조 유지를 강화
- 개도국 지위에 관한 협상은 모델리티 협상이 종료된 후 논의될 과제이나 모델리티 협상단계에서부터 범 정부차원에서 전략적으로 대응
  - 세부원칙 협상 단계에서는 개도국과 공조를 강화하고, 개도국 세분화 논의 제기시 초기에 강력 대처
  - 개도국 주장을 기정 사실화하여 당당히 대응하되 핵심 주요국들과 양자차원의 사전 설득노력도 병행
- 2004년 쌀 협상문제는 「쌀협상 특별대책팀」을 본격 가동하고 국화전문가농민단체 등과 협의,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추진
  - 쌀 협상은 향후 농업협상일정을 감안하되, 세부원칙 윤곽이 가시화 되는 시점에서 본격화

## 2. 중장기 농업·농촌대책 수립

### 가. 개방화시대 농정의 기초

- DDA 협상은 개방확대 추세 하에서 진행되고 있으므로 협상 대책과 병행, 「선대책 후개방원칙」에 따라 사전 국내보완 대책을 수립
- UR 대책은 농업 경쟁력 제고에 중점을 두었으나, 복지정책 등 사회안전망 구축이 미흡하여 구조조정 지연
  - ⇒ DDA 대책은 농업소득농촌정책을 분리하되 상호 연관성을 제고하여 선순환 구조로 개편
- 중점 투융자 분야는 UR 때에는 품목별 경쟁력 제고, 생산 기반정비, 유통시설 등 농업인프라 구축에 치중
  - ⇒ DDA 대책은 규모화된 전업농 및 고부가가치 기술농업 육성, 직접지불 등 소득안정과 농촌지역개발에 중점
- 농업인 용자 지원도 사전평가 미흡 등으로 부채문제를 심화
  - ⇒ 부채 유발이 최소화되도록 엄격한 평가와 시장원리에 따라 가능성 있는 농가 중심으로 선별 집중 지원(종합자금제)
- 지난 농정에 대한 냉철한 평가와 반성을 바탕으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농정의 기본 틀을 확립

## 나. 향후계획

- 농정기획단을 구성하여 「중장기 농업·농촌종합대책」 수립을 추진중

### <기본골격>

- 개방화 시대에도 지속 가능한 생명산업으로 발전
- 전업농은 도시근로자 수준의 안정된 소득을 확보
  - 영세·고령농은 경영이양직불 및 연금 등을 통해 생계 안정
- 농촌은 교육·의료·복지 환경이 갖춰진 도·농 공존의 정주 공간으로 개발

### <중점 검토과제>

- 전업농 중심으로 규모화하여 농업 체질을 강화
  - 소비자의 신뢰를 받는 고품질·안전농산물 생산
  - 새로운 농업성장 동력을 확충
  - 직불제 등 다양한 농가소득원 확충
  - 도·농 균형발전을 위한 농촌지역 종합개발 및 복지증진
- 농민단체 등의 참여를 통해 농촌 현실에 맞는 로드맵을 연말까지 마련
    - DDA이후 투융자 계획은 모델리티 협상결과를 반영하여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확정
    - 세부 추진계획 등은 여건변화에 맞추어 3년마다 점검·보완
    - 종합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령 등 제도 정비 추진



### 3. 한·칠레 FTA 지원대책

- 주 피해가 예상되는 과수산업을 중심으로 7년간 1조원규모 (국고 8천억원, 지방비 2천억원)의 지원대책을 수립(7.16)
- 약 6천억원에 대해 보조 지원하고, 나머지는 과수산업의 경쟁력제고를 위해 저리로 융자(보조 64%, 융자 36%)
  - \* 피해추정액 : 한양대 5,860억원, 농경연 3,035, 대외경제연구원 1,000억원 미만
- 관세철폐 품목의 수입급증에 대비, 경영안정장치를 도입하고 농가에서 폐업을 희망할 경우 폐업 보상금 등 지원(1,700억원)
- 7년간 8천억원 규모의 특별기금을 설치하고 피해대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FTA이행특별법」 제정 추진
-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FTA 기금출연금 반영(1,000억원)
- 「농·정협의회」 및 실무협의회를 구성(8.2), FTA지원대책 및 4대 특별법을 중심으로 농민단체와 협의 추진
- 피해품목 단체인 한국포도회, 과수조합연합회 등과도 별도 협의
- FTA 이행특별법, 농특세법, 삶의질향상특별법, 부채특별법 등 4대 특별법은 FTA 비준안과 연계하여 제·개정 추진

<참 고>

## 4대 특별법 제·개정 추진 상황

### □ FTA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제정)

- 한·칠레 FTA 체결로 인한 농업분야 피해지원을 위해 국회에 제출(7.23, 의원입법)
  - 특별기금 설치·피해농가 특별지원 근거 마련 및 FTA이행지원위원회 설치 등

### □ 농어촌특별세법(개정)

- 재경부는 농특세법개정안(5년연장)을 마련, 관계부처 협의중
- 여야는 농특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 \* DDA 농업협상 등을 감안할 때 농특세는 10년 연장이 바람직

### □ 농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제정)

- 농어촌 복지, 교육 및 지역개발에 관한 종합적 특별법 추진
-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법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9.9~19)

### □ 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개정)

- 「부채대책위원회」 건의사항(7.2)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협의
  - 협의결과 : 경영회생지원 상설화 및 지원조건 개선, 정책자금 금리인하 및 장기분할상환, 연대보증피해자금 상환기간 연장
- 관계부처 협의 결과를 반영하여 법 개정 추진

## 4. 당면 영농 추진상황

### 가. 농축산물 생산 및 수급전망

◇ 금년 6월이후 평년대비 많은비(강우량 1.5배)와 저온( $\Delta 1.4^{\circ}\text{C}$ ), 일조량 부족(72% 수준) 등 농작물 생육여건이 좋지 않았음

< 벼 > : 익는 시기가 2~7일 지연, 생산량 감소 전망

- 생육기인 6~8월 기간 중 일기불순과 등숙기인 9월의 태풍 「매미」 등의 영향으로 생산량이 줄어들 전망
- 쌀 생산 예상량은 9.15 작황조사 결과가 집계되는 9월말경에 전망이 가능

< 채소류 > : 오랜 강우로 생산감소, 태풍으로 인한 일시 수급애로

- 고추는 재배면적 감소(20%) 및 작황이 부진한데다, 태풍피해가 겹쳐 대폭 감산 전망(평년대비  $\Delta 34\%$ )
  - 농협 계약재배물량, 정부 비축물량, MMA 물량 등 적기 방출
- 고랭지 무배추는 태풍 직후 2~3일간 출하작업 등이 어려워 가격이 급등하였으나, 점차 태풍전 수준으로 회복 추세
  - \* 무 : (9.상) 247만원/5톤차 → (9.15) 465 → (9.19) 245
  - \* 배추 : (9.상) 282만원/5톤차 → (9.15) 327 → (9.19) 275
- 파종 마무리 단계인 김장용 무·배추는 태풍 피해지역에서 대파중에 있으며, 다른 주산지(경기, 충청, 호남)는 피해가 거의 없음

< 과실류 > : 일기불순으로 전반적인 작황 부진, 태풍피해로 감산

- 사과·단감·배의 낙과 피해가 많으며 진주·울산·청송 등 일부지역은 최대 70~80%까지 피해 발생
  - 특히, 단감사과 등 수출단지 피해로 올해 과일 수출에 다소 어려움 예상
- 당초 배·단감 등의 공급 과잉이 우려되었기 때문에 전체적 수급에는 큰 차질이 없을 전망
  - \* 작년대비 감산 추정량 : 사과 20%, 단감 16, 배 6
- 직접 태풍피해를 입지 않은 농가들도 오랜 강우에 따른 품질 저하로 수요가 위축될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

< 축산물 > : 축종별로 차이는 있으나 수급 및 가격 안정세 유지

- **한육우** 사육두수는 '03.6월 현재 1,423천두로 전년동기(1,448천두) 대비 1.7% 감소하였으나 **가격 강세**가 이어져 연말까지 증가세 예상
  - 산지수소(500kg) : ('02.7) 365만원 → (12월) 430 → ('03.6) 366 → (9.19) 412
- **돼지** 사육두수는 **국내소비 부진** 등으로 900만두 수준을 유지할 전망
  - 산지가격(100kg) : ('02.6) 217천원 → (9월) 139 → ('03.6) 204 → (9.19) 142
- **닭** 사육수수는 '03.6월 현재 전년대비 7% 감소한 112백만수 수준
  - 닭고기 가격(kg) : ('01.6) 1,192원 → ('02.6) 993 → ('03.6) 693 → (9.19) 892
- 원유 감산대책 추진 등으로 **잉여원유 및 분유재고는 감소 추세**
  - 분유재고 : ('02.6) 19.7천톤 → ('03.3) 17.2 → (8월말) 12.6

## 나. 태풍 「매미」 피해복구 상황

### < 피해 현황(9.21현재) >

- ◇ 농 경 지 : 유실·매몰 5,068ha, 침수 38천ha, 도복 50천ha
- ◇ 과수축산 : 낙과 35천ha, 가축폐사(돼지 27천두, 닭 등 665천수)
- ◇ 농업시설 : 비닐하우스 등 2,385ha, 축사 1,616동, 수리시설 3,317개소

□ 농림기관 및 유관단체의 가용인력 및 장비를 총동원하여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사실상 응급복구는 마무리 단계

① 침수농작물은 배수장 354개소를 가동하여 대부분 1~2일내 퇴수 완료(미퇴수 : 30ha)

② 민·관·군 협조 하에 일손돕기를 실시하여 완전 도복된 벼(15천ha)를 우선 일으켜 세우고 반도복된 벼 중 수확기가 도래된 벼는 조기 수확 지도

③ 낙과피해에 대해서는 조기에 보험 처리가 가능하도록 신속히 피해조사 완료

\* 1ha 사과재배 농가의 경우 최대 22백만원 수령(농가 납입금 816천원, 정부 1,420)

\* 피해지역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율 : 사과 22.3%, 배 42.7, 단감 12.6

- 손상된 과실은 선별처리하여 「낙과 팔아주기」(9.20 현재 실적 6천톤), 가공용 수매 등을 추진(농안기금 63억원 지원)

④ 폐사가축은 전량 매몰 완료하였고, 기동방역반(4개반)을 가동하여 수해지역 매몰지 및 축사주변 등 긴급방역 실시

- 가축공제 가입농가에 대해서는 현지 심사를 완료(9.19)하고 10.10일까지 공제금 지급 계획

- ⑤ 파손된 수리시설은 농업기반공사 보유 중장비(4,300대)를 긴급 투입하여 **응급복구를 완료**(9.20), 항구복구는 내년 장마철 이전까지를 목표로 추진
  
- 피해농가에서 **조기에 영농을 재개할 수 있도록** 각종 자재 우선 공급 및 농기계 수리지원
  - 농협 보유 농약비료 및 비닐 파이프 등 각종 영농자재 우선 공급
  - **순회수리반을 가동**하여 침수된 농기계 수리지원(7개업체 56개반)
  
-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조기에 피해조사를 완료**하고 복구지원 계획을 확정하여 농가의 어려움을 적기에 해소
  - 농작물 대파대, 농약대 및 생계지원 등에 대해 중앙합동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 추진
    - 중앙합동조사 : 9.18 ~ 27(10일간), 농림부 20명 참여
  - 추곡수매 선급금 반납유예 및 이자감면, 영농규모화자금 상환 유예 등의 추가 지원으로 복구부담을 최대한 경감토록 조치
  
- 빈발하는 자연재해에 대비, **농작물재해보험제도 정비** 추진
  - 농작물 재해보험의 **대상품목과 재해범위를 확대**하고, 국가에서 **재보험을 담당**하는 방향으로 제도정비
    - 내년부터 포도·단감·복숭아·감귤 가입지역을 전국으로 확대
    - 농작물재해보험 재보험 기금 또는 계정 설치 검토
  - \* 민간 재보험사는 참여 기피('02년 268억원 결손)

<참고 1>

시·도별 태풍 피해집계(잠정, 9.21현재)

구분	농작물피해침수(도복)			과실 낙과	비 닐 하우스	인삼 시설	축사	가축	농경지	수리 시설
	계	벼	밭작물등							
계	ha 37,986 (50,381)	25,975 (40,254)	12,011 (10,127)	ha 34,987	ha 2,385	ha 94	동 1,616	천마리 692	ha 5,068	개소 3,317
부산	670 (1,011)	390 (882)	280 (129)	149	144	-	42	103	4	17
대구	903 (114)	665 (114)	238 (-)	67	64	-	7	8	77	57
광주	- (882)	- (882)	- (-)	302	-	-	-	-	-	-
대전	- (8)	- (8)	- (-)	13	-	-	-	-	-	-
울산	- (14)	- (14)	- (-)	1,799	33	-	23	-	-	11
강원	2,796 (589)	2,225 (589)	571 (-)	115	5	1	9	70	1,794	283
충북	122 (805)	115 (791)	7 (14)	570	-	-	8	-	22	26
충남	49 (155)	38 (155)	11 (-)	25	1	4	1	-	-	-
전북	239 (8,822)	213 (8,773)	26 (49)	726	9	57	7	2	12	40
전남	3,732 (10,997)	3,264 (10,997)	468 (-)	6,933	104	5	127	52	87	147
경북	9,281 (5,651)	4,962 (5,563)	4,319 (88)	12,101	619	18	204	188	1,800	1,043
경남	16,129 (11,657)	14,042 (11,486)	2,087 (171)	12,185	1,316	9	1,099	257	1,258	1,681
제주	4,065 (9,676)	61 (-)	4,004 (9,676)	2	90	-	89	12	14	12

※ 1) 가축폐사 : 692천마리(소 244두, 돼지 27천두, 닭 363천수, 꿩 등 302천수)  
 2) 수리시설 : 3,295개소(취입보 777, 저수지물넘이 347, 용·배수로 1,827, 방조제 등 366)

<참고 2>

## 벼 냉해상황 및 지원대책

### □ 벼 냉해 상황

- 전북 남원·순창 등 5개 시·군의 중산간지를 중심으로 조생종 벼 이삭 패는 시기(7.1~18사이)에 저온(14.0~16.9℃)으로 불임 발생
  - 피해면적 : 3,993ha
    - \* 남원 2,723, 순창 510, 진안 300, 무주 250, 장수 210
  - 피해정도 : (30%이하) 620ha, (30~50%) 1,450  
(50~80%) 1,236, (80%이상) 687
- 타 지역에서도 피해 추가 보고가 있을 경우 조사 추진

### □ 대책추진 상황

- 현재 진행중인 피해조사 결과에 따라 농어업재해대책법 등에 의한 직·간접지원 실시하되 지원기준 상향조정 방안 협의 중
  - 8.25일부터 추진중인 피해조사는 9월하순경 완료예정
  - 마을대표, 피해농업인 등이 참여하여 정밀조사토록 조치
- 재해지원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분야에 대한 추가지원 계획 조기 확정 통보(9.9)
  - ① 잠정 등의 미달규격 신설, 추곡수매약정 선도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1년간)
  - ② 영농규모화자금 상환유예(1년간)
  - ③ 특별 농업경영자금 지원 : 100억원 수준
  - ④ 정부양곡 특별지원 : 지자체가 저가구매 무상공급



## 5. 협동조합개혁 추진

□ 「농협개혁위원회」 9차회의(9.4)에서 농협법 개정사항 25개항을 정부에 건의하였으나, 쟁점사항은 대부분 복수안으로 제출

- 중앙회 쟁점 : 회장 비상임, 대표이사 추천권, 교육지원 전담임원 직위, 소이사회제 도입 등
- 일선조합 쟁점 : 전문경영인제 도입, 지역조합 구역확대, 사업연합회 제도 도입 등

\* 대표이사 인사권 강화, 조합원 권리강화, 조합우선출자제 등은 합의

□ 개혁위 건의안, 용역보고서 등을 토대로 정부안을 확정, 금년내 농협법개정 추진

○ 복수안에 대해서는 「신·경분리연구용역보고서」의 내용('02.6월 국회보고) 및 농협발표 개혁방안('03.3)을 참고하여 절충안 마련

- 용역보고내용 : 추천위원회를 통해 대표이사 추천, 소이사회제 도입 등
- 농협발표내용 : 중앙회장 비상근화, 외부 경영평가제 도입 등

○ 2단계 신·경분리에 대한 사항은 개혁위에서 별도작업팀을 구성, 추가검토 후 10월중 건의안 제출 예정

□ 법 개정없이 추진 가능한 과제는 개혁위 논의를 거쳐 조기추진

○ 중앙회 지방조직 개편, 자회사 정비 및 경영개선 등 과제는 개혁위원회에서 금년말까지 세부추진계획 수립

## 6. 새만금사업 관련 소송 추진

-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범위 해석(7.18)에 따라 물막이 전진 공사를 제외한 방조제 보강공사를 시행 중
  - 태풍과 겨울철 북서풍 등에 의한 유실피해 등 재해예방에 만전
    - \* 공사관련, 환경단체의 허위사실 주장에 대해서는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조치(9.5)
- 변호인단 보강, 소송 보조참가 등 소송 대응체계를 강화
  - 정부측 변호인단을 2개 법인 13인으로 보강(당초 1개법인 2인)하고, 부내 소송대책반과 합동회의를 통해 재판에 체계적으로 대응
  - 전북도의 소송 보조참가로 현장 상황에 대해 긴밀히 협조
- 본안소송에 앞서 결정될 집행정지 가처분 항고심에 적극 대응
  - 7.15일 즉시항고 후 보충이유서를 추가 제출(8.2, 9.2)하고, 재판부의 이해도 제고를 위해 현장검증도 신청
  - 전북도는 소송참가인 자격으로 수질대책에 대한 보충이유서 제출(8.22)
- 본안소송은 증인신문, 추가자료 제출 등으로 최종 판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
  - 국내외 수질·갯벌전문가(5인)에 대한 신문과정에서 재판부가 외국의 사례와 적정수질 실현 가능성에 확신을 갖도록 최대한 노력
  - 법리문제에 중점을 두면서 수질·갯벌·경제성 등과 사업여건 변화 등을 종합한 준비서면을 추가 제출할 예정

## 7. 기타 현안사항

### 가. 축산업등록제 시행추진

- 농가 사육정보를 등록하고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가축질병예방, 친환경 축산, 축산물 위생·안전관리의 효율성을 제고
- 지난해 축산법을 개정(12.26), 일정규모 이상의 축산농가 등은 '05년 말까지 시·군에 등록
  - \* 생산이력제, 친환경축산직불제 등 선진제도 도입·정착을 뒷받침
- 생산자단체 및 전문가 협의, 공청회 등을 거쳐 마련한 세부 시행방안을 반영하여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추진 중
- 등록대상 농가는 축종별 여건, 분뇨발생량, 질병위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설정(총 31천호)
  - 등록대상 사육시설규모 : 소·돼지 300㎡(30두, 3천수), 닭 50㎡(50두) 이상
  - \* 등록대상농가(사육비율) : 한육우 9천호(44%), 젓소8(89), 돼지10(99), 닭3.6(98)
  - 양돈업은 생산자단체의 요구대로 '04년 말까지 등록시한을 단축
- 종축업·부화업 등은 성장단계별 구분사육시설 등 기준을 강화
  - 가축사육업은 친환경 교육이수, 두당 가축사육시설면적 기준 등을 준수
- 농가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사육시설면적 등 등록내용을 전산관리
- 향후 각종 정책지원은 등록농가를 중심으로 집중하되 등록 대상이 아닌 소규모 농가도 희망할 경우 등록대상에 포함

## 나. 캐나다 광우병 관련 대책

- 지난 5.20일 캐나다 알버타주에서 광우병이 발생함에 따라, 사실 확인 즉시 광우병 관련 품목 수입금지 등 신속 조치(5.21)
- 긴급 전문가 회의를 소집(5.22)하여 시중 유통중인 뇌내장 등 특정위험물질(SRM)의 회수 및 반송 또는 폐기 결정(5.23)
  - \* 미국, EU 등은 유통중인 물량에 대해 회수를 하지 않았으며, 일본의 경우 수입업체 자율로 특정위험물질을 회수토록 조치
- 시중 유통중인 특정위험물질 추적조사 실시(5.24 ~ 6.16, 179명)
  - '01.5.1 ~ '03.5.21 기간중 수입·유통 실적이 있는 497개 업체를 대상으로 캐나다산 특정위험물질 96톤을 확인하여 격리·봉인
  - 불법유통을 막기 위해 검역원 직원이 매주 방문, 봉인 및 보관 상태 확인(7개 업체, 13개 냉동창고)
- ※ 최근 언론에 보도된 업체는 검역원 조사이전에 일부 특정위험물질(6.4톤)을 회수 또는 폐기하지 않고 유통시킨 혐의로 경찰 수사중
- 수입축산물은 전국적으로 유통되는데 반해 수입업체 관리는 시·군·구 신고사항으로 되어 있어 수입축산물 추적·관리에 어려움
- 수입판매업 영업신고를 현행 시·군·구에서 검역원으로 전환하는 등 수입축산물 관리체계 개선 추진(축산물가공처리법 개정)

## 다. 2004 농업예산 확보상황

- 농림부소관 '04예산 확보액은 8조 8,824억원(잠정)으로 '03 추경예산(88,186억원) 대비 0.7% 증가(증 638억원)
- 국가전체 내년도 예산안(일반회계)은 금년 예산대비 2.1% 증가한 117.5조원 규모로 편성(예산증액 규모 2.4조원)
  - \* 국방비 및 법정교부금 추가소요만도 2.7조원에 달하는 등 국가 재정여건의 어려움으로 타 부문 예산은 증가에 제약이 있는 상황
- DDA협상 등 농정여건 변화에 맞춰 직불·복지예산 확충, 제도보완·신규사업 개발 등 내실화에 역점을 두어 편성
- 농특세는 농업인 복지 및 지역개발 사업에 집중 투자
  - 농어민건강보험료 경감률 확대(22%→30, 537억원), 영세농어가 영유아 보육비 신규지원(255억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신규 추진(100억원)
- 현재 시행중인 직불제를 보강하고 새로운 직불제를 적극 도입
  - 경영이양직불제를 분할지급방식으로 확대 개편, 친환경축산직불제 신규 도입(58억원)
- 농특회계 차입금 상환 등 채무상환 예산을 별도로 구분 편성하여 예산의 투명성 제고 및 농업인들의 이해 증진
- 앞으로 '04 예산안 국회심의과정에서 농업·농촌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도록 예산확보에 최대한 노력

### Ⅲ. 주요 농정 추진현황

1. 친환경·고품질 농업육성 .....	291
가. 친환경농업 적극 육성 .....	291
나. 농축산물의 안전성 강화 .....	293
다. 효율적인 농산물 유통체계 구축 .....	294
라. 농산물 수출확대 .....	295
마. 농업전문인력 육성 .....	297
2. 농업인소득 및 경영안정 .....	298
가. 농업직접지불제 확충 .....	298
나. 농작물재해지원 제도개선 .....	299
다. 다양한 농외소득원 개발 .....	300
라. 농업인 부채경감대책 .....	302
3. 농촌지역개발 및 복지증진 .....	303
가. 농촌투자유치 활성화 .....	303
나. 농촌형 사회안전망 확충 .....	304
다. 도농간 교육·정보격차 완화 .....	305

# 1. 친환경·고품질 농업육성

## 가. 친환경농업 적극 추진

◇ 환경과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증가로 친환경인증 농산물의 생산·유통량이 매년 10%이상 늘어나는 추세

□ 친환경농업 수준별 인센티브를 차등화하고 소비자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인증농산물의 판로지원을 확대

○ 유기(전환기)·무농약 농산물 생산농가 지원액 상향 조정

- 밭부문 : ('02) 524천원/ha → ('03) 유기 794, 무농약 674

- 논부문 : ('03) 논농업직불제로 통합, 유기 770, 무농약 650

○ 친환경농산물 자율표시제를 폐지하여 소비자 신뢰도 제고('03.7)

○ 친환경인증 농산물에 대한 직거래 자금 지원 확대

- ('02) 84억원 → ('03) 124

○ 농협전문판매장 확충(총 125개), 친환경인증제도 공익광고 실시 등

□ 사료·녹비작물 재배, 축분 자원화 등 자연순환형 농업 확산

○ 겨울철 노는 땅에 자운영·호밀 등 사료·녹비작물재배 확대

- 재배면적 : ('00) 84천ha → ('02) 126 → ('03) 140

○ 축산과 경종을 연계하는 축산분뇨 자원화사업 촉진

- 액비 저장조 680기(31억원), 축분비료유통센터 40개소(32억원)

○ 토양개량사업을 통해 친환경농업 실천기반을 확대 조성

- 토양개량제 공급(779천톤, 417억원), 객토(2천ha, 24억원), 퇴비생산(14백만톤) 등

□ 축산의 **환경부담 요인**을 줄이고 수입사료 의존, 집약적 사육 방식 등을 개선하기 위해 **친환경축산**을 적극 유도

○ 우선 **내년부터** 축산업 등록제와 연계하여 **친환경축산직불제** 시범사업을 실시('04P : 58억원)

- 초지·조사료포 확보 및 경종농업과 유기적 순환관계 유지(소)

- 축산분뇨 억제를 위한 사육두수 감축 및 분뇨자원화 확대(돼지·닭)

○ 금년부터 시행중인 **유기축산 시범사업**(농협 안성목장) 결과를 토대로 우리 실정에 맞는 유기축산 모델을 개발('03년 6억원, '04P 5억원)

□ 친환경농업과 **그린투어리즘**을 연계하여 **농가소득원 다양화** 추진

○ 녹색농촌체험마을 선정시 친환경농업 실천마을에 가점 부여

\* 친환경농업지구 조성('03) : 대규모 9개소, 소규모 24, 친환경농업마을 18

□ 친환경인증농산물 생산을 대다수 농가로 확산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어 비료·농약을 적게 쓰는 **저투입농법**의 확산 유도

○ 질소질 비료 적정사용 지도 및 유기질 비료 이용 확대

○ 편리하고 일손이 덜가는 **친환경농업기술 개발·보급** 촉진

※ GAP(우수농산물관리제도), IPM(병해충종합관리), INM(작물양분종합관리)과 인증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연계한 **정책지원·점검체계** 구축



## 나. 농축산물의 안전성 강화

- ◇ 안전성조사 강화, 위해요소중점관리제 도입 등으로 전반적인 안전성 수준은 향상되었으나, 소비자의 신뢰는 여전히 낮은 상태
- \* 안전성 부적합율 : 농산물 ('98) 4.2% → ('02) 1.07, 축산물 ('99) 1.1% → ('02) 0.3

-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 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HACCP) 등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 정비
  - 품목별로 토양, 농업용수, 비료·농약 등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설정(GAP), 농장단계에서 고품질·안전성을 확보
    - 올해 약용작물, 양돈분야에 시범 실시하고 연차적으로 확대
  - 전국 소돼지·닭 도축장에 위해요소중점관리제 적용 의무화('03.7)
    - 적용 대상 162개소 중 87개소 운영 중, 75개소는 행정처분 등 조치
- 농축산물의 산지 출하전 검사와 유통중 수거 검사 강화
  - 안전성 조사항목을 확대하고 상추, 깻잎 등 취약품목 중점 조사
    - '03.7월까지 28천건 조사, 376건 부적합품 처리(폐기 124, 출하연기 등 252)
  - 조사결과에 대한 제재·홍보를 강화하여 산지의 경각심 고취
    - \* 수출농산물을 중심으로 「생산이력제」 시범 도입 추진
- 원산지·GMO표시 등을 강화하여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
  - 원산지표시 위반자에 대한 처벌 강화('03.6 : 3년이하 징역 → 5년이하)
  - 과학적인 검정방법을 개발·이용하여 GMO표시 단속 실시
    - 단속실적(단속장소/위반건수) : ('02) 105천개소/14건 → ('03.7) 68/7

## 다. 효율적인 농산물 유통체계 구축

◇ 농산물 유통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생산자의 시장대응능력 제고, **물류효율화**, 고품질 농산물 이미지 **홍보 강화**

\* 대형할인점 유통비중 : ('98) 3.6% → ('02) 11.2, 전자상거래 : ('00) 500억원 → ('02) 6,000

- 농협 등 생산자조직의 마케팅 능력을 높여 산지유통 역량을 강화
  - 주산지별 산지유통센터를 광역화하고, 조합간 연합판매 사업을 연차적으로 확대('01 : 2개소 → '03 : 15)
  - 한우 등은 지역축협, 지자체, 대학 등이 연계된 지역 브랜드를 중점육성하고 대형 유통업체와 연중 공급계약 유도
- 파렛트화 등 물류효율화 촉진 및 디지털 유통 확산
  - 농산물 규격출하 및 하역장비·파렛트 출하 지원('03: 663억원)
  - 농산물 통합쇼핑몰, 전자상거래 등에 운영자금 지원('03 : 10억원)
- 고품질 농산물 유통여건 조성 및 우리농산물 소비홍보 강화
  - 민간 품질인증 활성화를 위해 농협을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 검토
  - 품질관리사 제도를 하반기 중 시행, 유통전문인력으로 육성
  - 매스컴·전시회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소비촉진 홍보
    - \* 쌀 LOVE米·우유친환경농산물·돼지고기 등 TV·Radio 광고 실시
- 생산자단체의 자율수급조절 능력을 향상하고 자조금 조성 지원
  - 자조금 단체 결성을 확대('02 : 10개→'03 : 13)하고 소비촉진·기술 교육·자율수급 조절 등 자조금단체의 기능 활성화 유도

## 라. 농산물 수출확대

◇ 국내생산 우수농산물을 세계인의 식탁에 올려 놓을 수 있도록  
생산관리 - 국가브랜드 - 수출컨설팅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

\* 8월말 현재 수출실적은 1,096백만불로 전년 동기대비 10.4% 증가

### □ 고품질·안전농산물의 안정적 수출을 위한 공급기반 마련

#### ○ 수출 전문생산단지(107개) 활성화 방안 추진

- 「전문생산단지 관리지침」을 제정('03.11)하고 단지에 대한 정기평가를 통해 우수단지에는 생산기술, 자금 등 인센티브 제공

#### ○ 내년부터 우수단지 수출품에 대한 국가브랜드화를 추진

- 수출 브랜드 공모·선정(10월), 대상품목 업체를 연차적으로 확대

#### ○ 제주산 돼지고기의 일본 수출재개 추진

- 10.12~18일 중 일본 정부의 관계관이 방한하여 현지조사 예정

### □ 해외시장개척 및 수출장벽 해소를 위해 적극적 통상외교 추진

#### ○ 사스(SARS) 등으로 제고된 김치·인삼의 건강식품 이미지 홍보

- 5개국(중국, 일본 등)에서 시식홍보(6~7월) 및 위성TV 광고 추진

#### ○ 미국 동식물 검역소(APHIS)에서 한국산 단감, 수입허용('03. 6)

- 단감 신규수출을 위해 '대미단감수출단지(5개)' 지정 및 수출검역요령 마련

#### ○ 해외교민과 연계한 마케팅을 활성화하여 틈새시장 개척

- 뉴욕·LA 교민행사 지원(9월) 및 해외교포바이어 초청 수출전략 회의 개최(11월)

□ **전통식품 수출상품화** 및 해외홍보를 통해 수출촉진기반 마련

○ 김치·고려인삼 세계화를 위한 **연구개발** 지속(3년, 17억원)

- 김치('02~'05) : 품질균일, 신제품개발, 유통기간 연장 등
- 인삼('01~'04) : 신제품개발, 승열현상 등 조사, 판매전략 등

○ 전통식품 및 가공식품에 대한 **수출 상품화** 지원('03: 270백만원)

\* 대상품목 : 도라지, 덮밥류, 한방차, 탁주, 양파음료 등 18품목

○ **비빔밥·삼계탕** 등 전통식품의 국제농산물박람회 참가를 지원하고, 가공식품 특판전 등을 통한 **판촉홍보**('03: 29회)

□ 정부의 지원은 현장에서 느끼는 **수출애로 해소**에 중점

○ 수출정보 지원 S/W 및 DB관리 개선으로 **이용자 편의** 제고

- 주문정보서비스(298회), 맞춤형 e-mail 서비스 실시(900개소)

○ 품목별로 운영되는 원료구매자금을 통합 운영하는 등 **수출자금 지원제도** 개선 추진('03 : 3,616억원)

- 수출물류비 지원대상을 연간 10만불 이상 수출품목·업체로 한정('03. 7)

○ **수출컨설팅**은 현장을 직접 찾아가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추진

- 현장밀착형 컨설팅(40회→74) 및 해외전문가 초청컨설팅 확대(4회→6)

\* 사례 : 일본 배 전문가 초청컨설팅(8.5~7)시 인근 재배농가 등 500명 이상 참여

## 마. 농업 전문인력 육성

◇ 전문지식과 경영마인드를 갖춘 농업전문인력을 집중 육성하여 개방화·지식정보화 등 대내외 여건변화에 적극 대응

### □ 농가인구 감소·고령화에 따라 후계농업인육성사업 추진

○ 금년도에 2천명을 선정, 총 960억원 지원(평균 48백만원)

\* 35세미만의 창업농보다는 기존 농업인 위주로 선정, 외부인력 유입효과 미흡

○ 젊은 인력 유입 촉진을 위해 '04년부터는 창업농 위주로 선정하고, 기존 농업인은 농업종합자금으로 통합·지원 추진

### □ 농업인의 경영능력 배양을 위해 교육 및 경영컨설팅 지원

○ 농업인 사이버 교육시스템 시범운영('03.4) 및 지역 선도농장과 연계한 현장 실습 등 참여위주의 교육과정으로 7만명 교육('03 : 29억원)

- '99~'02까지 2,000농가에 전문경영컨설팅을 지원하였으나, 생산기술 위주의 컨설팅으로 경영능력 향상 효과는 미흡

○ 교육·컨설팅 내용도 경영혁신·정보화·마케팅 중심으로 강화

### □ 농업벤처활성화 및 신지식농업 확산을 위한 기반 구축

○ 농업전문투자조합을 통해 9개 벤처업체에 59억원 투자('03 : 38억원)

\* '03. 6월말 현재 농업관련 벤처는 장생도라지, 청매실 농원 등 170여개

○ 신지식농업 포털사이트 구축 등 지식·기술교류 활성화 촉진

- 신지식농업 사이버투어 및 사이버마켓 구축 등 콘텐츠개발(2억원)

\* '99~'03년간 8회에 걸쳐 경영·기술로 앞서가는 신지식농업인 149명 선정

## 2. 농업인 소득 및 경영안정

### 가. 농업 직접지불제 확충

◇ 가격지지·투입재 지원은 축소하는 대신 소득이전율이 높은 직접지불제를 대폭 확충하여 농가소득 안정도모

\* 농업예산중 직불금 비중을 현행 7% 수준에서 '07년 20%까지 확대

#### □ 기 도입된 직불제에 대한 제도개선 및 지급단가 인상

##### ○ 논농업직불제 지급 단가인상 및 상한면적 확대

- ('02) 400 ~ 500천원/ha, 2ha까지 → ('03) 432 ~ 532천원/ha, 3ha까지

##### ○ 경영이양직불제는 최장 8년까지 분할지급방식으로 확대 지급하여 고령농의 경영이양을 촉진

- ('03) 2,890천원/ha, 1회 → ('04이후) 매도 월 241천원(최장 8년), 임대 2,977(1회)

#### □ 올 상반기에 농민단체, 농경연 등으로 「중장기 직불제 실무 기획단」을 구성, 신규 직불제 도입방안을 집중 검토

##### ○ 친환경축산직불제는 축산업등록제와 연계하여 사육밀도 감축, 분뇨자원화 등을 조건으로 '04년부터 시범 도입

##### ○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는 낙후지역 활성화를 위해 도농교류, 농촌관광 등과 연계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 강구

#### □ 금년말까지 중장기 직불제 확충 계획을 수립하고 농업·농촌의 다원적 가치에 대한 홍보를 적극 추진

##### ○ 민간대행사를 선정, 도시 젊은층을 겨냥한 농업·농촌의 가치를 시리즈로 홍보할 계획(10월)

## 나. 농작물재해지원 제도개선

◇ 전업화, 규모화, 기상이변 등으로 경영상 위험 요인이 커지고 있어, 이를 분산·흡수하기 위한 **다양한 경영 위험관리체계 구축** 추진

### □ '01년 도입된 농작물재해보험 제도의 조기정착 추진

- 금년에는 사과·배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운영비 지원율도 70%에서 80%로 인상하는 등 제도개선

\* '03 지원율 : 순보험료 50%, 운영비 80%, 국고 130억원

- 지난해 태풍루사로 재해보험에 대한 농가인식이 제고되어 올해는 16,522농가에서 보험에 가입(대상면적 대비 15.2%)

\* 사과·배 가입농가 : ('01) 8,204농가 → ('02) 9,314 → ('03) 13,204

### □ 대상품목 및 재해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재보험제도 개선

- '04년부터 포도·단감·복숭아·감귤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고 '05년이후에는 수도작, 시설채소까지 대상품목에 포함

- 병해충 등을 제외한 거의 모든 재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재해대상의 범위도 확대해 나갈 계획

\* 농작물재해보험 확충방안에 관한 연구용역 추진 등(농경연, '03.4 ~ '04.1)

- 국가에서 재보험을 담당하는 방향으로 관계부처 협의 추진

### □ 재해농가의 복구부담경감을 위해 지원단가 현실화 추진

- 과수(사과, 배, 복숭아)·화훼(백합, 장미) 대과대 지원단가 상향조정('03.6)

\* 사과 : 1,700천원/ha → 7,187, 백합 18,200천원 → 20,232

- 재해복구 정부보조율 상향조정 및 융자금리 인하 방안 추진

## 다. 다양한 농외소득원 개발

◇ 농촌관광, 농공단지·특산단지 등 1+2+3차 산업이 결합된 복합산업으로 농촌에 새로운 활력 부여, 고용기회 확대

□ 주 5일제 근무 등으로 확대된 도시민의 여가수요를 농가소득과 연계시키기 위해 **농촌관광 기반을 구축**

### ○ 농촌관광마을을 지속적으로 확대 조성

- 녹색농촌체험마을 44개소, 전통테마마을 27개소 선정·지원

\* '04년 지원대상마을을 연내에 선정하여 사업 효율성 제고

- 「농촌마을가꾸기경진대회」를 개최, 마을간 선의의 경쟁 유도(11월중)

### ○ 차별화된 교육·훈련을 통한 농촌관광 전문인력 육성

- 마을지도자 205명(7.1~3), 현장전문가 23명(6.16~28) 교육 실시

- 농업인 및 지자체 공무원에 대한 해외 선진지 훈련 병행

### ○ 농촌관광 수요창출을 위한 마케팅 활동 전개

- 농촌관광 정보제공을 위한 포털사이트 개설·운영('03. 2)

- 여름휴가·방학철을 맞아 지하철 홍보, 초등학교 교사 500인 농촌 초청 등 홍보 강화(7~8월)

### ○ 중장기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지원 강화

- 농촌관광 비전을 제시할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반기 중)

- 시장·군수 초청 워크숍 개최 등 지자체의 관심 제고



□ **농공단지 신규조성 확대 및 운영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 **고속도로 주변 등 입지여건이 좋은 곳에 추가 조성('02말, 303개 지정)**
  - 농축산물 등 현지 부존자원 활용업체 우선 선정(예: 정읍 축산물가공 전문단지)
  - \* 신규 착수 : ('02) 4개소 → ('03) 11 → ('04P) 12
  - \* 고용인원 : ('02.6말) 106천명 → ('03.6말) 110천명/호당 연간 13백만원 소득 추정
- **농공단지 운영활성화를 위해 「농공단지의개발및운영에관한 통합지침」 개정·시행('03.9월)**
  - 공사비 절감, 산사태 등 피해 예방을 위해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편입비율(60% 이하) 폐지**
  - 농촌의 고용안정과 농공단지 사업 내실화를 위해 **대기업도 단지 조성비를 중소기업 수준으로 지원(7만원/평→10)**
  - **폐수처리장 설치비에 대한 국고보조율 상향 조정(30~70%→50~100)**

□ **농산물 가공공장·특산단지는 기존시설의 운영을 내실화하는 방향으로 지원**

- **경영능력이 있는 기존 업체의 시설 현대화·운영비 중점 지원('03 : 시설비 54억원, 가공원료수매자금 1,148억원)**
  - 농산물가공업체 운영실태를 분석('03. 6월), 경영능력과 기술수준 향상 도모
- **전통식품의 우수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TV홍보 등 마케팅 지원 확대(서울국제식품 전시회 : '03. 11월)**
  - 전통가공식품 소비자의식조사 결과를 활용, 구매행태에 따른 판촉방안 강구

## 라. 농업인 부채경감 대책

- 지난 7.2일 농민단체·학계·관계부처 등이 참여한 「부채대책 위원회」는 수차례 회의, 현장방문 등을 거쳐 건의서 제출
- 농가 스스로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기회보장과 상시경영 회생시스템 마련에 중점을 두고, 관계부처 협의 추진
  - 농가의 상환의지를 높일 수 있도록 능력에 맞는 상환제도를 도입
    - 정책자금은 상환기간 장기화 및 금리인하(1.5%, 5년거치 15년상환)
    - 연대보증피해자금 상환기간 연장(3년거치 7년상환→3년거치 17년상환)
  - 「경영회생지원 제도」를 상설화하여 개별농가의 여건에 맞게 부채문제의 수시 해결체제를 구축
    - 재해 등으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빠진 농가에 대해 Work-Out 방식의 경영평가를 실시, 회생지원자금 지원(신규 2천억원, 3%, 3년거치 7년상환)
  - 이자액 환급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여 조기상환 유도
- 관계부처 협의결과 합의된 사항을 중심으로 내년도 예산 반영(1,636억원)
  - 정책자금 금리 1.5% 인하 및 시중금리와 연동, 경영회생제도 상설화 등
  - ※ 농민단체는 경영개선자금, 상호금융대체자금 금리 인하(6.5%→3)를 요구

### 3. 농촌지역 개발 및 복지증진

#### 가. 농촌투자유치 활성화

◇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을 위해 농촌지역에 사람과 자본이 쉽게 들어올 수 있도록 규제완화, 세제개편 등 제도개선 추진

#### □ 농촌투자 관련 세제개편 및 한계농지 개발 활성화 추진

○ 농촌주택 추가 소유시 양도세 면제 및 지방세 중과배제 등을 통해 농촌주택거래의 활성화를 유도

- 읍면 소재 대지 200평·건평 45평 미만, 기준시가 7천만원 이하의 주택
- \* 조세특례제한법 : 법사위 계류 중/ 지방세법 : 의원 입법안 제출

○ 비과세 대상 농가부업의 범위 확대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

- 민박, 음식물·특산물 판매, 전통주 제조·판매 등으로 확대(금년 소득세법령 개정안에 반영 추진)

○ 한계농지개발 활성화 지침을 마련(4.18), 다목적 개발 촉진

- 공공기관에 한정했던 한계농지개발을 민간에도 허용하고 절차도 간소화

□ 「농촌투자유치센터」를 활용, 농촌투자상담, 설명회 개최, 투자수익 모델 제공 등 적극적인 투자유치 전개

○ 지자체·관련기관·투자자 등에 대한 전국 순회설명회(7.16~23)

○ 농업기반공사가 보유한 토지·저수지 등을 활용한 자체 사업을 시행, 모범적 농촌투자모델을 제시

○ 투자유치에 적극적인 시·군을 발굴, 지역투자설명회·홍보 활동 등을 지원하고 타 시·군에 성공사례를 전파

## 나. 농촌형 사회안전망 확충

◇ 농촌의 특성에 맞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농특세 연장, 삶의질향상특별법 제정 등으로 제도적 뒷받침을 강화

### □ 농어민 연금보험료의 지원방식을 개선, 농가부담 경감

#### ○ 농어민 연금보험료 납부 지원 기준을 조정('04P : 502억원)

- ('03) 월 표준소득 22만원 기준 보험료의 50% 지원 → ('04) 월 표준소득 31만원 기준 보험료의 50% 지원

\* 44만명의 연금가입 농어민 1인당 연간지원액 확대(85,800원 → 139,500)

### □ 농어민에 대한 건강보험료 추가 지원 및 농작업상해공제 확대

#### ○ 현재 22% 경감하고 있는 건강보험료를 농어민에 한해 **연차적으로 50%까지 확대**하기 위해 추가지원 예산을 반영('04P : 537억원)

- ('03) 22% → ('04) 30 → ('06) 50

\* 132만 농어가의 부담이 세대당 연간 153천원 경감('04년)

#### ○ **농업인재해공제사업** 가입을 제고(28%→40) 및 보장수준 개선

- ('03)사망 300만원 → ('04)사망 1,000

### □ 여성 농업인의 **출산보육 부담경감** 등으로 안정적 영농활동 지원

#### ○ 국공립 보육시설이 없는 군 지역에 보육시설 우선 설치 협의·추진

#### ○ '04년부터 1ha미만 농가의 **영유아보육비 지원**(월 102천원)

#### ○ 여성농업인센터('03: 18개소) / 농가도우미 지원단가 : ('03)27천원→('04P)30

## 다. 도농간 교육·정보격차 완화

◇ 농촌에 거주하면서도 **인근도시와 같은 수준의 교육·정보통신 서비스를 향유함**으로써 농촌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

- **우수교원의 안정적 확보**와 사기진작을 위한 지원 강화
  - 일정기간 농촌근무를 전제로 한 교육감 추천 교대 입학제 확대
  - 교직원 사택보수, 승진가산점 부여, 순회교사 수당 등 인센티브
  
- **농어촌 소규모 학교의 운영 내실화 및 교육비 부담 경감** 추진
  - 학교군을 구성하여 시설현대화·통학버스 등을 집중 지원
  - 농어촌 **고교생·농어촌 출신 대학생의 교육비 지원**
    - \* 실업계 : ('03년) 678천원 → ('04P) 712, 인문계 : ('03년) 728천원 → ('04P) 764
  
- **농가 PC 보급율(전국평균의 1/2수준), 인터넷 이용 격차(1/5수준)가 심화되고 있어 돈 되는 정보컨텐츠 확충을** 중점 추진
  - 도매시장 경락정보 실시간 제공 확대 ('03 : 16개 시장 → '04 : 23)
  - 농가 홈페이지('03P : 5,800) 운영활성화를 위한 홍보지원('03 : 3억원)
  - 출하지원 정보서비스 대상품목 확대 : ('02) 23개 → ('03) 44
  
- **농업인 정보활용능력 배양을 위해 수요자 중심의 정보화교육 강화**
  - **농업정보 119대학**(22개 농과대학)을 통한 **농가방문교육** 및 농협, 농업기술센터를 중심으로 **집합 교육** 실시
  - 지역정보화를 이끌 읍면단위 「**농업·농촌정보화 선도자**」 육성
    - ('02) 4개도, 46개 읍·면 → ('03) 7개도, 91개 읍·면

## IV. '02년 국감 주요 지적사항 조치결과

### 1 농촌복지증진 종합대책 수립 및 총괄 조정체계 구축

□ 농어촌 복지·교육·지역개발에 관한 특별법안 마련

○ 농특위·국무조정실 주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법령·조문을 수정·보완

- 총괄조정체계를 포함한 종합특별법은 우리부가 제정하고 복지부는 보건의료·복지에 관한 법을 별도 제정
- 국무총리 산하에 관계부처 장관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설치, 농어촌 복지·교육·지역개발 정책 총괄조정 및 중장기계획 수립·평가

□ 연내 법 제정을 추진하고 농촌복지종합대책은 중장기 농업·농촌 대책에 포함하여 수립

### 2 한·칠레 FTA로 피해가 예상되는 부문의 보완대책 추진

□ 한·칠레 FTA 타결 ('02.10)에 따른 피해영향 분석 실시

○ 가공농산물 포함시 10년간 최대 5,860억원 피해 추정(한양대)  
\* 농촌경제연구원 3,035억원, 대외경제연구원 1,000억원 미만

□ 「선대책 후비준」 원칙에 의거, 총 1조원 규모의 지원대책 마련(7.16)

○ 국회, 농민단체 설명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수렴, 대책내용 보완  
\* 국고(FTA특별기금) 8천억원, 지방비 2천억원/보조 64%, 용자 36%

○ FTA 지원대책, 복지·부채대책 등에 대한 농민단체 협의 및 홍보 등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 확산

### 3 | 쌀 재협상에 대비 농가피해 최소화 및 공급과잉 해소 추진

- 대내외 여건변화에 대응한 쌀산업발전 종합대책안 마련
  - 쌀산업대책반 및 민간자문위원단을 구성·운영(3.28)
    - 전업농 육성, RPC 경영활성화, 고품질 쌀 생산·유통체계 구축, 경영이양직불제 개편 등
  - 국회주관 쌀산업종합대책 토론회 개최(4.28, 5.13)
- 쌀 소득보전직불제를 도입하고 논농업직불제 개선
  - '02년산부터 기준가격 대비 쌀값 하락시 하락액의 80%를 보전
    - \* 쌀 소득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정('02.12)
  - 논농업직불제 지급단가 인상 및 지급상한 확대
- 연말까지 세부계획을 보완, 쌀산업발전종합대책 수립 추진
  - 공공비축제의 도입방법, 정부 매입물량 감소에 대비한 민간 유통기능 활성화 방안, 농가소득 안정 장치 등 포함
  - 시장개방 폭 확대에 대비한 경영규모화, 품질고급화 추진
  - 쌀소득보전직불제 조기정착을 위해 납부금 조정 등 개선방안 검토
- 쌀 수급 균형 회복을 위해 재배감축·소비촉진 병행 추진
  - 쌀 생산조정제 등으로 전년대비 재배면적 37천ha 감축('03:1,016천ha)
  - 주정용 등으로 340만석 수준의 재고 특별처리대책 추진
  - 학교·군 급식확대, 쌀 가공제품 개발, 러브米캠페인 등 소비촉진

#### 4 재해지원 단가를 현실화하고 간접지원 확대방안 강구

- 농작물 및 농업시설물 복구지원 단가 상향조정('03.6)
  - 과수(3종)·화훼(2종)의 대과대 및 수리시설 복구비 현실화
    - \* 재해복구 비용 부담기준 개정(대통령령, 행정자치부)
- 특별재해지역의 경우, 생육후기 대과대를 신설하고 2ha미만 농가에는 특별위로금\* 을 지원하는 등 단가 현실화
  - 생육후기 대과대 신설(지원단가: 1.2배~2배 인상), 시설물(유리·철골 펫트온실) 지원단가 상향조정
    - \* 피해율 50~80% : 300만원, 80%이상 : 500만원
- 국고 보조율, 간접지원 확대 등을 관계부처와 지속 협의추진

#### 5 지방분권적 방역체계 개선 및 농가자율방역 의식 제고

- 가축전염병예방법·축산법 개정으로 방역체계 정비('02.12)
  - 지자체장에 대한 수의과학검역원장의 방역조치 요구권 부여
  - 농가방역책임 명문화, 축산업등록제 도입, 소독의무 강화 등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를 특수법인화하여 민간방역 활성화 주도
- 구제역 재발 방지를 위해 평시 방역강화대책 지속 추진
  - 전국 일제 소독의 날을 확대(매주 실시), 축산관련 차량가축시장 소독강화
  - 외국인 근로자 고용 농장 및 방역취약 시·군 집중 관리 등



## 6 우유 수급안정을 포함한 낙농산업 근본개선대책 마련

- 농가 자율감산을 유도하기 위해 **잉여원유 차등가격제** 시행('02.11)
  - 농가별 기준원유량을 설정하여 85%까지 정상유대(620원/kg)를 지급하고, 초과 생산분은 정상유대보다 낮은 가격 차등적용
  - 차등가격에도 불구하고, **높은가격·전량집유** 구조로 많은 농가가 계속 증산
  
- 금년도 낙농진흥회 예상잉여량 연간 30만톤(810톤/일)중 절반 수준인 **15만톤에 대해 감산대책** 수립(5.12)
  - 3.22일부터 50여일 동안 낙농가대표·조합장 등과 10여차례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농가의견을 최대한 수렴
    - \* 폐업지원금 100천원/ℓ, 감산지원금 35천원(1일 96원/ℓ) 지원
  
- 감산 반발농가에 대한 끈질긴 대화·설득을 통해 **감산원칙을** 지키되 농가의 부담을 줄이는 **보완대책에 합의**(7.9), 7.16부터 시행
  - 농가별 감축율을 일반유업체와 동일한 9% 적용(당초 18.4%)
  
- 감산대책 추진이후 원유잉여량분유재고 감소 등 수급안정 추세
  - 진흥회 잉여량 : ('03.1월) 817톤/일→(5월) 636→(8월) 412
  - 전체 분유재고: ('02.6) 19.7천톤 → ('03.3) 17.2 → ('03.8) 12.6
  
- 낙농가대표·유업계·학계 등 관련전문가로 **낙농발전협의회**를 구성, **중장기 낙농산업 발전대책**을 수립 추진
  - 낙농진흥회 진로, 중장기수급안정, 경쟁력 제고, 소비 확대 등 포함

## V. 금년도 정기국회 입법 추진계획

□ 농림부 입법계획(11건) : 제정1, 개정10

### < 기제출된 법률안 >

법 률 명	주요 제·개정내용
1. 인삼산업법(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체검사업체는 수삼을 원료로 하여 자신이 직접 제조한 인삼제품에 한하여 자체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함</li> <li>◦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해 검사기준에 미달된 제품에 대해 수거·폐기 또는 재검사 명령 및 압류할 수 있도록 함</li> <li>◦ 미검사품 및 불합격품 판매자에 대한 처벌을 과태료에서 형벌로 강화</li> </ul>
2. 종자산업법(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품종보호 출원 품종의 임시보호권 발효시점을 출원 공고일에서 출원공개일로 변경</li> <li>◦ 부정한 방법으로 종자에 대한 보증을 받은 경우 보증 효력을 상실토록 하여 농업인의 피해 방지</li> <li>◦ 발아보증시한이 경과된 종자를 판매·보급한 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 근거를 신설</li> </ul>

### < 앞으로 제출예정인 법률안 >

법 률 명	주요 제·개정내용
1. 농어업인삶의질향상및 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특별법(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처별로 분산 추진되고 있는 농어촌복지·교육 및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종합조정체계 구축</li> <li>◦ 농어업인에 대한 건강·국민연금보험료 지원의 특례, 농어업인 질환의 예방·치료 및 업무상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을 규정</li> </ul>

법 른 명	주요 제·개정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어촌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 지원, 농어촌 유아 교육·보호, 농어촌 학교 교직원의 확보·배치와 이들에 대한 우대조치를 규정</li> <li>◦ 주택·도로·상하수도 등 기초생활여건 개선, 농어촌 지역종합개발사업 추진, 투자유치·농촌관광 육성 등 도농교류 확대</li> </ul>
2. 비료관리법(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림부장관이 수립하는 비료수급계획을 폐지, 민간 자율체제로 전환</li> <li>◦ 유통기한 경과 비료 등에 대한 벌칙을 신설</li> </ul>
3. 축산물가공처리법(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돼지·말·양을 제외한 가축을 소비자에게 직접 조리 하여 판매하기 위한 자가도축 허용</li> <li>◦ 식육포장처리업을 식육가공업에서 분리하여 신설</li> <li>◦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축산물은 영업자가 회수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li> </ul>
4. 식물방역법(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물을 수입할 수 있는 장소에 “역(驛) 등”을 추가 하고 경유식물 검사의 법적근거 마련</li> <li>◦ 수입이 허가되는 금지품의 수입방법, 수입후의 관리 방법 등의 규정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강화</li> </ul>
5. 농업기계화촉진법(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형 승용형 농업기계의 제조·수입업자는 일정한 시험·검사시설 등을 갖추고 자기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함</li> <li>◦ 제조업자 및 사후봉사업자 등에게 농기계유통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li> </ul>

법 률 명	주요 제·개정내용
6. 농업협동조합법(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앙회 대표이사 중심의 책임경영체제 확립</li> <li>◦ 이사·감사의 기능 및 역할 강화</li> <li>◦ 조합경영의 전문성제고를 위해 상임이사 도입 확대</li> <li>◦ 조합장 선거제도 개선으로 공정선거 문화 정립</li> </ul>
7. 농어촌특별세관리 특별회계법(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어촌특별세의 세출대상을 농어업인 복지증진사업, 농어촌교육관련사업, 농어촌지역개발사업 등으로 재분류</li> <li>◦ 「농특세사업평가·관리위원회」를 신설, 여러부처로 분산 집행되는 농특세사업의 통합·조정·평가 기능을 강화</li> </ul>
8. 농어업인부채경감에 관한특별조치법(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책자금의 상환기간 연장 및 금리인하(1.5%, 5년거치 15년)</li> <li>◦ 재해, 가축질병, 가격급락 등에 따라 일시적 경영위기 해소를 위한 경영회생자금제 도입</li> <li>◦ 연대보증피해 특별자금의 상환기간 연장(3년거치 17년)</li> <li>◦ 정상조기상환 농업인에 대한 환급액 인상(20~30%→40%)</li> </ul>
9. 농수산물유통공사법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정자본금을 8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증액하고 이익금처리조항을 기업회계기준에 맞도록 보완</li> <li>◦ 농수산물 시장개방에 대응하여 우리 농수산물의 소비 수요 창출과 농어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li> </ul>

<별 첨>

## 2002년 국정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 ① 농작물재해보험 대상지역 확대, 국고 지원 확대, 보상 기준완화 등 제도개선

#### □ 조치결과

- 보험가입 대상 및 국고지원 확대
  - 사과·배의 경우 '03년부터 전국 확대 시행
  - 운영비 국고지원 확대 : ('02)70% → ('03)80
- 보상기준 완화 등 제도개선
  - 태풍 풍속 기준 : 최대풍속 14m/sec → 기상청 발령 태풍주의보 수준
  - 태풍 재해시 단감 낙엽피해 포함
  - 무재해 농가 보험료 할인 제도 도입
  - 보험가입시기 조정(3월말에서 1개월 앞당겨 시행) 및 보험사업전 임의 해지를 허용하는 등 농가편의 도모
- 농작물재해보험 확대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03.4~'04.1, 농경연)

#### □ 향후 추진계획

- 복숭아, 포도, 단감, 감귤의 사업지역을 전국으로 확대('04)
- 연구용역 결과 등을 반영하여 농작물재해보험 제도 추가 개선

### ② 농가소득안정에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직접지불제 개선

#### □ 조치결과

- 직불제예산 규모 확대 : ('02) 4,274억원 → ('03) 5,926
- 논직불제 친환경 인센티브 추가 지원('03)
  - 유기·전환기 270천원/ha, 무농약 150

- 친환경직불제는 밭 중심으로 사업을 특성화하고 인증등급별 차등 지원
  - ('02) 524천원/ha → ('03) 유가전환기 794천원/ha, 무농약 674, 저농약 524
- 경영이양직불제 단가인상 확대('03)
  - 281만원/ha→289, 603ha→1,500
- 쌀소득보전직불제('02) 및 생산조정제('03) 신규 도입
- ‘중장기 직불제 확충 실무 기획단’ 구성·운영('03.3~5)
- ‘중장기 직불제 확충방안’ 연구용역('03.4~12, 농경연)

#### □ 향후 추진계획

- 중장기 직불제 확충계획 수립('03년말)
  - 다양한 직불제 도입(분할지급방식의 경영이양직불제,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친환경축산직불제 등) 및 기존 직불제 내실화

### ③ 쌀 관세화 유예가 어려울 경우의 대책수립

#### □ 조치결과

- 협상 입지 강화를 위해 쌀 수급균형 회복 추진
  - 생산조정제(27.5천ha, 300만원/ha)로 재배면적 감축 추진('03)
  - 농가소득안정을 위해 쌀소득보전직불제 도입
    - '02년산부터 쌀값하락시 하락분의 80% 보전
- 시장개방폭 확대에 대응할 수 있는 쌀산업종합대책 수립 추진

## □ 향후 추진계획

- 쌀산업종합대책 세부계획 수립('03년말)
  - 전업농 중심의 경영규모화('10년까지 6ha수준의 전업농 7만호 육성) 및 품질경쟁력 제고
  - WTO가 허용하는 공공비축제 도입 검토
  - 가격하락과 소득감소에 대비, 소득안정장치 보완·확충

## ④ 안전농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증대와 구매확대에 따른 친환경농산물육성방안 강구

### □ 조치결과

-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구축
  - 친환경농업실천농가 지원
    - 친환경농업육성사업 추진 : ('95~'02) 612개소 → ('03) 33
    - 친환경농업직불제 실시 : ('99~'02) 202억원 → ('03) 30
- 친환경농산물 유통활성화
  - 친환경농산물 직거래자금지원 : ('99~'02) 260억원 → ('03) 124
  - 친환경농산물 전문판매코너 : ('99~'02) 112개소→('03) 13
  - 친환경농산물 소비촉진 지원
    - 친환경농업 현장체험 등 : 6억원/ 소비촉진 홍보장터 : 30백만원

### □ 향후 추진계획

-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구축 및 소비촉진 홍보 등 유통활성화 지속 추진
  - 2005년까지 전체 농산물 생산량 대비 5% 수준으로 확대

## ⑤ 수입농산물에 대한 둔갑판매 근절과 안전농산물유통대책 시행

### □ 조치결과

- 농산물원산지표시 조사지침 시달('03.1.13)
  - 수입산의 국산 둔갑 판매 행위 중점단속
  - 위반행위 적발시 통관정보를 활용, 추적조사 등
  - 원산지(수입국명)표시 훼손·제거한 자는 고발·입건 조치 등
- 성수기 특별 기획단속('03.6월말) : 8회(83일, 2,260건)
  - 허위표시 1,174, 미표시 1,086건 적발·조치
- 중앙특별단속반 운영 및 대도시지역 교차단속 실시('03.6월말) : 21회(229명, 213건)
  - 허위표시 113건, 미표시 100건 적발·조치
-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 활동 강화 : 연 3,522명, 41,332개소 단속('03.6월말)
  - 211개 업소 적발, 입건 84건
- 소비자, 유통종사자 등 홍보·교육실시
  - TV 등 언론홍보('03.6월말) : 1,864회/ 교육('03.6월말) : 380명
  - 인터넷 게시 168품목, 전시실운영 120개소, 비교전시회 개최 178회

### □ 향후 추진계획

- 특별사법경찰관을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 정기 및 수시조사
  - 성수기 특별단속 및 검·경찰, 시·도 등과 합동단속
- 관세청 통관자료를 활용, 축산물 등 수입급증품목 집중관리
- 농산물명예감시원제·고발포상금제 운영 등 민간감시기능 강화
- 소비자 교육·홍보 강화



## ⑥ 마늘산업종합대책 추진을 통해 마늘생산 농가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대책 강구

### □ 조치결과

- 「마늘산업종합대책('02.7.25)」에 대한 의견 수렴을 거쳐 대책 개선·보완('02. 10)
  - ① 경영안정자금 특별지원(3%, 2년거치 일시상환)
    - \* 계획 : '03~'05년중 매년 1,000억원, '03.8월 실적 : 443억원 지원
  - ② 종구갱신 추진체계, 지원조건 개선
    - 추진체계 : (당초) 자가채종형 → (보완) 수매보급형, 민간채종형 추가
    - 지원규모 상향조정 : (당초) 150억원 → (보완) 284
    - 지원단가 및 국고지원비율 상향조정 : (당초) 500~750천원/10a, 국고 40%, 지방비 40, 자담 20 → (보완) 800천원, 국고 60%, 지방비 40
    - \* '03년 계획 : 82억원, '03.8월 농가신청 : 63.4억원
  - ③ 농기계 구입자금 지원 확대
    - 지원규모 : (당초) 65억원 → (보완) 196
    - 지원조건 : (당초) 국고 30%, 지방비 20, 자담 50 → (보완) 지자체의 경우 국고 50%, 지방비 50
    - 지원기종 : 파종기, 수확기 → 쪽분리기, 쪽선별기, 줄기절단기 추가
    - \* '03계획 : 29억원, '03.8월 실적 : 29억원
  - ④ 구조조정(작목전환) 특별지원 : 지원단가 3년간 550만원/ha 수준
    - \* '03계획 : 2,330ha, 농가신청 결과 : 797ha
  - ⑤ 필요시 가공·폐기 등 국내공급 초과물량 처리방안 강구
    - 정부수매 실적 : 755톤

### □ 향후 추진계획

- 지속적인 집행상황 점검으로 원활한 시행 도모 및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개선·보완
- DDA대책과 연계하여 중장기 마늘산업 대책 수립·시행

## 7] 산지유통시설의 운영활성화를 위한 개선책과 농산물 품질 관리사제도 확대·발전방안 강구

### □ 조치결과

- 산지유통시설의 현대화·규모화 및 운영활성화 지원
  - 전처리 상품시설 등 고품질 상품화를 위한 시설보완('03 : 21개소)
  - 주산지별로 기존 시설과의 경합, 마케팅계획 등 타당성 심사를 거쳐 신규시설 지원('03 : 4개소)
  - 산지유통센터를 산지유통전문조직으로 우선 지정(총 106개소)하여 유통 활성화 자금 및 품질관리사 인센티브 지원
  - 산지유통센터 운영실태평가에 따라 운영자금 차등지원('03.5 : 211억원)
- 유휴 산지유통센터 인수도 촉진을 위해 「농산물산지유통시설관리 지침」 마련
  - 유휴시설물의 양도, 임대 등 허용
  - 시·도지사 승인을 거쳐 유휴시설에 대한 용도변경 등 허용
- 농산물품질관리사제도 도입 추진
  - 농산물품질관리법을 개정, 법적근거 마련('02.12.26)
  - 농산물품질관리사제도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03.7)

### □ 향후 추진계획

- 산지유통센터 상품화시설 보완 및 운영활성화 지원
  - 「공공투자·민간운영」 방식의 지자체형 산지유통센터 지원 확대
  - 컨설팅사업 확대, 산지유통센터 운영자 워크숍 개최 등 경영능력 확충 도모
- 농산물산지유통시설 실태조사 및 DB구축
  - 유휴시설 정보제공 등을 위한 「인터넷 게시판」 운용
- 농산물품질관리법시행규칙 개정 및 자격시험 실시 추진
  - 품질관리사 자격시험 실시추진('03말)
  - 품질관리사 등 유통전문인력 육성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⑧ 농외소득증대와 농촌경제활성화를 위해 그린투어리즘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여 시행

□ 조치결과

- 농촌관광의 지속적 발전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추진
  - 농촌관광의 발전방향 및 방안(농경연,'02.7.~'03.2.), 농촌관광프로그램 개발(삼성경제연구소,'02.7.~'03.2.) 등 3건
- 농촌관광 발전을 위한 협의회 등을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수렴
  - 중장기 계획(안)에 대한 전문가협의회(4회) 및 세미나 개최
  - 관광농원협회 등 유관단체 의견 수렴('03.9.4~9.6)

□ 향후 추진계획

- 농촌관광 연구용역결과 및 유관기관 등과의 협의를 거쳐 연말까지 중장기 계획 수립·시행

⑨ '02년 집중호우 및 태풍피해를 입은 농경지·수리시설 등에 대한 복구계획을 조속히 추진

□ 조치결과

- 영농기 이전 농경지 및 수리시설 복구완료
  - 농경지 17천ha 전량 복구 완료(5.10)
  - 수리시설 6,590개소 중 8월말까지 6,576개소 완료(99.8%)
- 복구공사중인 14개소는 집중호우시 2차 피해예방대책 시행
  - 비상근무, 배수로 정비, 배수장 가동, 저수지 사전 방류 등

□ 향후 추진계획

- 피해규모가 큰 수리시설 14개소는 금년말 또는 내년까지 복구완료계획
  - 배수장 신축 등 9개소는 금년말까지 복구완료
  - 피해규모가 큰 저수지 5개소는 내년 말까지 복구완료 계획

## 10 배수장 및 저수지의 홍수조절 기능이 미약한 하류지역 피해 주민들에 대한 피해보상 등 대책방안 강구

### □ 조치결과

- 재해대비 설계기준 강화('03.2)
  - 저수지 : 설계홍수량 증대, 홍수조절량 확보, 홍수기 수위관리 등을 개선하여 하류 지역의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
  - 배수장 : 설계강우량 결정방법, 하천제방 횡단구조물 설치, 배수장 펌프형식 등을 개선하여 침수피해 최소화
- 재해대비 보강계획 수립('03.2)
  - 저수지 : 물넘이 확장 및 홍수조절 비상수문 설치 등 홍수조절 기능강화
    - 물넘이 보강 80개소, 비상수문 설치 577개소
  - 배수장 : 하천제방이 유실되거나 범람으로 침수가 되지 않도록 하천 홍수위 이상으로 전기시설을 이전(208개소)
- 피해보상 완료(경남 합천 가현 배수장)
  - '02년 8월 집중호우시 농작물 침수 피해에 대해 협의보상 완료('03.4)

### □ 향후 추진계획

- 재해대비 설계기준은 신규사업계획, 보강계획은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예산에 반영하여 연차적으로 추진
  - 시설물 하류지역의 인명 및 재산피해에 대비 시설보강, 기능 추가

## 11 외래전염병 유입방지를 위한 수입 생우 및 축산물 검역 강화 방안강구

### □ 조치결과

- 동·축산물 수입검역 제도개선
  - "관세청 여행자휴대품신고서"를 개정('03.5.22)하여 해외 축산농장 방문사실 기재의무화 등 해외여행자 관리강화
  - 휴대물 불법반입자 처벌방법 개선
    - 불법반입자는 현장에서 500만원 이하 범칙금 처분조치('02.12.26)
- 외국 질병발생동향 파악 및 상시검역 강화
  - 국제공항만에 해외여행자 발판 소독조 운영(310개), 위험지역 여행자 휴대품에 대해 탐지견(12두) 집중투입
  - 국제기구 및 인터넷 등을 통해 외국의 발생정보 신속 입수 및 대응

### □ 향후 추진계획

- 수입위험분석제도 도입으로 외래전염병 유입방지 조치 강화
  - 위험분석 모델개발 연구용역실시
  - 위험분석 전문조직 및 인력확보
- 생우 수입검역 반복 불합격국가에 대한 검역강화
  - 우리검역관을 현지에 파견, 수출검역과정 조사
  - 미흡한 사례 발생시 시정 전까지 잠정 수입중단
    - ※ 미국산 생우 수입예정('03.10.19) : 국내 도착시 임상검사정밀검사 실시
- 해외여행객 등 검역·검색 강화
  - 탐지견 확대투입('03.8 : 12두 → '03말 : 19)

## 12 수입우 쇠고기의 둔갑판매 방지를 위한 방안 강구 및 한우산업발전종합대책 추진

### □ 조치결과

#### <쇠고기 둔갑판매 방지>

- 원산지 위반자에 대한 처벌강화('03.6) : 3년이하 → 5년 이하의 징역
- 수입생우고기 사후관리지침 철저운용
  - 검역과 동시에 개체구분관리(이표부착 또는 낙인표시)
  - 사육 및 거래단계에서 검역증사본 첨부
  - 도축검사 신청시 검역증 사본을 첨부, 축산물등급판정소는 시장·군수 및 농관원에 도축의뢰자 또는 낙찰자 명단을 당일 통보
  - 시장·군수 및 농관원은 원산지 단속실시
- ※ 국내에서 6개월이상 사육후 국내산으로 판매할 경우 ⇒ 국내산(호주)
- 민간감시기능 강화
  - 축산물 명예감시원 위촉(한우농가 및 소비자단체 1,000명)
  - 원산지위반 신고검거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 5 ~ 100만원/물량기준
  - 부정유통신고 전용전화 설치·운영(1588-8112, 9060)

#### <한우산업발전종합대책>

- 한우번식기반 확보 및 품질고급화 추진
  - 송아지생산안정사업 정착 : ('02)570천두 → ('03)592 (가임암소대비 98%)
  - 한우다산장려금 지급 : ('02)207천두/431억원 → ('03.8)56/88
  - 송아지생산기지조성 : ('02)21개소/37억원 → ('03)23/47
  - 농협 번식우시범목장 조성 : ('02)1개소, 13억원 → ('03.8)10억원
  - 거세 장려금 지급 : ('02)119천두/157억원 → ('03.8)72/91

- 유통선진화 및 소비기반 확충
  - 도축장 HACCP 의무화 : ('02) 42개소 → ('03.8) 86
  - 축산물브랜드전 개최 등 소비확대
- 선도요원교육, 고급육 생산기술교육, 한우번식농가교육
  - ('02년)46회/2,387명 → ('03.P)113/8,400

## □ 향후 추진계획

### <쇠고기 둔갑판매 방지>

- 한우고기 판별을 위한 유전자 감별법 적용 확대 추진
  - 위반업소는 데이터베이스화하여 특별관리 추진
  - 판별기관을 시·도 축산진흥연구소까지 확대검토
  - 신뢰도 제고를 위한 실효성 보완을 위한 연구지속 추진
- 축산물명예 감시원 활동 강화 및 명절성수기 등 집중단속 실시
- 축산물수입판매업 관련 기록보관 제도개선(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개정)
  - 판매처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여 추적조사가 용이하도록 개정

### <한우산업발전 종합대책>

- 송아지생산안정사업, 다산장려금 지급 등 번식기반 확보 추진
  - 다산장려금은 사육두수 증가세를 고려하여 '04년부터 사업중단
- 거세장려금지원, 개량사업 지원 등 품질고급화 추진
  - 거세장려금은 품질고급화 장려금으로 전환하여 '04.7월부터 1등급이 출현된 거세우에 한해 지급
- 선도요원교육, 고급육기술교육, 번식농가교육 등 농가교육 실시
- 한우고기 우수 브랜드를 육성하여 백화점·대형 할인매장과 연계, 고가판매 전략 추진
- 부분육 유통체계 구축 등 유통개선 및 안정적 소비기반 확보

### 13 농특세 종료이후 안정적인 농업투자 재원확보대책 강구

#### □ 조치결과

- 농촌투자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농특세 연장 추진중
- 농특세연장과 관련하여 “농업투융자 성과분석 및 향후 투융자방향” 연구용역실시('02.11.20)

#### □ 향후 추진계획

- 농어촌특별세법 개정 추진(재경부)
  - 의원입법으로 제출된 농특세법 개정안은 국회 재경위에 계류중
- '03 추경예산기준 국가전체 예산대비 8.2% 수준인 농림예산 비중을 10% 수준으로 연차적으로 확보
- FTA특별기금을 설치, FTA 체결에 따른 지원재원 뒷받침

### 14 정책자금, 농협상호금융자금의 금리인하를 통한 경쟁력 강화 추진

#### □ 조치결과

- 농협중앙회와 협조, 상호금융 금리인하 추진
  - 신규대출 : ('00) 10.72% → ('01) 8.66 → ('02) 7.84 → ('03.6월) 7.09
  - 12% 이상 고금리조합을 일소, 11%이상 고금리조합은 대폭 감소
    - ('01말) 180개 → ('02말) 22 → ('03.6말) 2
- 농신보 담보대출 금리인하 추진 : ('02말) 9.50% → ('03.6말) 8.87
- 농업정책자금연체금리인하('03.5.1) : 현행 15% → 연체기간별 12~14

#### □ 향후 추진계획

- 정책자금 금리인하 등 농가부채대책 수립
- 상호금융 금리인하 지속추진
  - 농신보 보증부 대출금리 인하 추진
  - 자율적 금리인하 추진을 위해 조합금리 공시제 도입 등 제도개선 강구



제250회 정기국회(국정감사)

농림해양수산위원회

# 농정 추진현황 보고

2004. 10. 4.

농 립 부

“농업·농촌사랑! 우리의 미래를 열어가는 힘”

# 목 차

I. 영농 추진상황 .....	329
II. 2005년 예산 및 기금 개요 .....	331
III. 주요 농정현안 .....	337
1. 쌀 관세화 관련협상 .....	337
2. 쌀 산업대책 준비 .....	340
3. 농업협동조합 개혁 .....	345
4. 농지제도 개선 .....	349
5. 축산업등록제 및 낙농현안 .....	352
6. 한·칠레 FTA 후속대책 .....	354
7. DDA·FTA 협상 .....	355
IV. 농업·농촌종합대책 추진 .....	357
1.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 .....	359
2. 친환경·고품질농업육성 .....	364
3. 농촌 지역개발 및 복지증진 .....	371
V. 입법추진 계획 .....	375
<별첨1> 일반현황(농림부 조직, 정원 및 소관법률) .....	379
<별첨2> 2003년 국정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	383

# I. 영농 추진상황

## 1. 영농 여건

- 7월 이후 기온은 평년대비 약간 높고(0.4~0.6℃) 일조시간은 다소 적었으나(△54hr) 농작물 생육여건은 대체로 좋았음
- 태풍(메기)의 간접 영향과 세 차례의 국지적인 집중호우가 있었으나 전체 농산물 생산 및 수급에 큰 영향은 없는 것으로 전망

## 2. 농축산물 생산 및 수급전망

벼 : 작황은 평년 수준, 중생종 중심으로 수확단계

- 재배면적은 논에 콩 등 타 작물재배 증가로 전년보다 다소 감소(15천ha)한 1,001천ha 수준
- 기상여건이 순조롭고 병해충 발생이 적었으나 최근 고품질 품종재배 확산, 시비량 감소 등으로 작황은 평년 수준 전망
- \* 9.15작황은 조사집계중이며, 실생산량은 11월중순 발표 예정

채소류 : 고온으로 상승했던 무배추 가격은 평년 수준으로 안정

- 무배추는 장마와 고온으로 가격이 급등하였으나, 기온이 내려간 9월 중순이후 안정세로 전환
  - \* 무 : (9.상) 695만원/5톤차 → (9.중) 474 → (9.하) 415 (평년 348)
  - \* 배추 : (9.상) 487만원/5톤차 → (9.중) 354 → (9.하) 313 (평년 368)
- 고추는 작황이 크게 부진했던 전년보다 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나 가격은 평년보다 높게 유지될 전망

과실류 : 평년수준 생산량으로 전반적인 수급 안정 전망

- 전체 재배면적은 감소 추세이나 양호한 기상여건과 성과수(成果樹) 면적 유지 등으로 생산량은 평년 수준을 유지할 전망
  - 재배면적 : ('00) 172.8천ha → ('03) 162.9 → ('04.p) 156.0
  - 생산량 : ('00) 2,429천톤 → ('03) 2,275 → ('04.p) 2,451
  - \* '03년도의 경우 태풍(매미) 피해로 평년보다 생산량 감소했음
- 배·감귤은 평년수준 생산량을 다소 상회할 것으로 보이나 품질향상에 따른 소비촉진 또는 출하조절로 수급안정 예상

축산물 : 축종별 차이는 있으나 전반적으로 수급 안정세 유지

- 한육우 사육두수는 '04. 9월 현재 1,667천두로 전년동기(1,464천두) 대비 13.9% 늘어났으며 향후 소폭 증가 예상
  - 산지숫소(500kg) : ('03.6) 367만원 → (12월) 405 → ('04.6) 292 → ('04.9) 364
- 돼지 사육두수는 '04. 9월 현재 전년대비 2.6% 감소한 9,017천두 수준
  - 산지가격(100kg) : ('03.6) 205천원 → ('03.12) 164 → ('04.6) 261 → ('04.9) 249
- 닭 사육수수는 □□04. 9월 현재 전년대비 4.3% 증가한 102백만수 수준
  - 닭고기 가격(kg) : ('02.6) 993원 → ('03.6) 693 → ('04.6) 1,286 → ('04.9) 1,351
- 분유재고는 우유소비 확대 추진 등으로 감소 추세
  - 분유재고 : ('02.6) 19.7천톤 → ('03.12) 7.9 → ('04.9.10) 5.0

## Ⅱ. 2005년 예산 및 기금 개요

### 1. 2005년 농림예산(안) 개요

#### 가. 2005년 농림예산(안) 규모

- '05년 농림부문(농진청·산림청 포함) “일반지출” 총계는 8조 5,787억원으로 '04년 대비 10.9%증가(증 8,398억원)
- 사업비는 8조 1,610억원으로 '04년 대비 11.1%증가(증 8,169억원)
- '05년 농림부 소관 “일반지출” 총계는 7조 2,668억원으로 '04년 대비 11.7%증가(증 7,592억원)
- 사업비는 7조 771억원으로 '04년 대비 11.8%증가(증 7,460억원)

#### < '05년 농림부문 예산(안)규모 >

(억원)

구 분	'04 예산 (A)	'05 예산(안) (B)	증△감 (B-A)	%
◦ 일반지출 계	77,389	85,787	8,398	10.9
- 농 립 부	65,076	72,668	7,592	11.7
- 농촌진흥청	4,154	4,343	189	4.5
- 산 립 청	8,159	8,776	617	7.6
◦ 사업비 계	73,441	81,610	8,169	11.1
- 농 립 부	63,311	70,771	7,460	11.8
- 농촌진흥청	2,996	3,134	138	4.6
- 산 립 청	7,134	7,705	571	8.0

\* 일반지출 = 회계·기금간 내부거래를 제외한 사업비 + 기본경비(인건비·기본사업비)

< 참고 >

2005년 농림부 소관 분야별 예산(안)규모

(억원)

구 분	'04예산 (A)	'05예산(안) (B)	증△감 (B-A)	%
<b>I. 일반지출계(1+ 2)</b>	<b>65,076</b>	<b>72,668</b>	<b>7,592</b>	<b>11.7</b>
<b>1. 사업비</b>	<b>63,311</b>	<b>70,771</b>	<b>7,460</b>	<b>11.8</b>
① 소득지원·부담경감	20,064	25,301	5,237	26.1
② 복지·지역개발	2,445	4,607	2,162	88.4
③ 생산·유통개선	5,313	5,768	455	8.6
④ 기술개발·인력육성	2,787	3,480	693	24.9
⑤ 농업생산기반·기계화	15,714	14,967	△747	△4.8
⑥ 양곡수급안정	14,705	14,412	△292	△2.0
⑦ 채무상환	2,283	2,236	△47	△2.0
<b>2. 기본경비(인건비·기본사업비)</b>	<b>1,765</b>	<b>1,897</b>	<b>132</b>	<b>7.5</b>
<b>II. 내부거래지출계(1+ 2)</b>	<b>81,238</b>	<b>88,755</b>	<b>7,517</b>	<b>9.3</b>
1. 회계·계정간거래	64,697	76,167	11,470	17.7
2. 회계·기금간 거래	16,541	12,588	△3,953	△23.9

< 「일반지출」의 개념 >

◇ 국가 전체 회계의 투명성과 일관성 유지를 위해 재정 개혁 일환으로  
내년부터 새로운 예산 분류방식 도입

○ 일반지출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에서 회계간·기금간  
내부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지출규모

\* 농림예산의 경우 채무상환의 대부분이 회계·기금간 내부거래에 해당

·회계·기금간 채무상환 : ('04) 28,966억원 → ('05) 24,386(△4,580억원)

○ 일반지출은 사업비와 기본경비(인건비·기본사업비)로 구성

※ 종전 방식에 의한 농림예산 순계 : ('04) 88,825억원 → ('05) 92,783(증 4.5%)

## 나. 2005년 농림예산(안)의 주요특징

- 한정된 재원 범위내에서 **농업·농촌종합대책** 실천을 뒷받침하기 위해 예산편성의 우선순위를 조정
  -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 복지 및 지역개발, 개방에 대비한 농업 체질강화** 부분 예산 확대
    - \* 관련예산 : ('04) 30,609억원 → ('05) 39,156 (증 8,547억원, 27.9%)
  - **농업생산기반조성, 양곡수급안정, 채무상환예산은 축소** 편성
    - \* 관련예산 : ('04) 32,702억원 → ('05) 31,615 (△ 1,087억원, △3.3%)
- **용자사업의 내실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 **미곡종합처리장(RPC)의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운영자금 지원금리 차등화(0~3%)**
  - **농기계구입자금(1~2천만원)을 종합자금으로 전환**
- **지자체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일부 보조사업의 지원조건 개선
  - **지역개발 관련 보조사업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이관**
    - \* '05균특회계 이관 : 21개사업, 1조 1,326억원 규모
  -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일부 보조사업의 지원조건 개선**
    - 축산분뇨처리시설 : ('04) 국고 30%, 용자 70 → ('05) 국고 30, 지방비 20, 용자 50
    - 농업경영컨설팅 : ('04) 국고 30%, 지방비 20 → ('05) 국고 50, 지방비 20
    - 농기계임대사업 : ('04) 국고 30%, 자담 70 → ('05) 국고 50, 지방비 50
- 새로운 농정수요에 부응하는 **신규사업 적극 개발** : 15개사업, 345억원
  - **지역농업클러스터(120억원), 경관보전직불(6),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4), 원예작물천적해충방제(12), 바이오장기생산연구(45) 등**

## 다. 2005년 농림예산(안) 중점 편성내용

◇ 「농업·농촌종합대책」에 따라 직접지불제 등 소득안정, 고품질·친환경농업 육성, 농촌 복지증진에 중점

- 농가 소득안정을 위해 복지 및 직불제 예산 확충 (2.1조원→ 2.7)
  - 농업인 건강보험료 경감율을 30%에서 40%까지 확대 (537억원→ 666)
  - 영유아양육비 지원대상 확대(1.5ha→ 2) 및 지원단가 현실화(102천원/월→120)
  - 경관보전직불제 신규도입(6억원) 및 재해보험기금 신규 출연(300억원)
- 친환경농업 육성 및 농식품 안전성 관리 체계화
  -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을 위한 모델개발비 신규 지원(4억원)
  - 생물학적 방제확산을 위한 원예작물 천적방제사업 시범도입(12억원)
  -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 시범사업 지원확대(4억원 → 26)
  - 가축질병 예방을 위해 가축방역 예산 대폭확대(277억원 → 505)
-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식·기술농업 확산 및 수출 촉진
  -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인 바이오장기생산연구 신규 실시(45억원) 등 생명공학을 활용한 R&D 투자 확대(623억원 → 645)
  - 산·학·연을 연계한 지역농업클러스터 시범 도입(120억원)
  - 수출홍보 등 해외시장개척활동 지원 강화(108억원 → 127)
- FTA, 쌀 협상 등 개방확대에 따른 보완대책 추진
  - 부채 부담경감을 위한 이차보전 소요 반영(5,700억원 → 8,608)
  - FTA보완대책 추진을 위한 FTA 이행지원기금 출연(1,600억원)



## 2. 2005년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 농림부소관 6개 기금의 '05년도 총 운용규모는 5조 5,147억원으로, '04년 대비 21.3%(1조 4,893억원) 감소

○ 전체 운용규모가 감소한 것은 채무상환이 1조 5,140억원 감소한 데 기인하며, 사업비는 390억원, 사업관리비 등은 154억원 증가

### □ 기금별 운용규모 증감 내용

○ 증가한 기금 : 농지기금, 쌀소득보전기금, FTA기금

○ 감소한 기금

- 농안기금 : 수산분야는 해수부의 수산발전기금으로 이관(3,577억원)
- 양곡기금 : 양곡증권 상환완료 등 채무상환 감소('04대비 △1조 2,863억원)
- 축발기금 : 마사회 납입금 등 수입감소('04대비 △631억원)

### < '05년 농업부문 기금운용계획(안) 규모 >

(단위 : 억원)

구분		2004계획 (A)	2005계획안 (B)	증△감 (B-A)	%
기 금 별	◦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	22,117	20,200	△1,917	△8.7
	◦ 농 지 관 리 기 금	14,275	15,049	774	5.4
	◦ 쌀 소 득 보 전 기 금	1,226	1,633	407	33.2
	◦ 양곡증권정리기금	20,238	7,374	△12,864	△63.6
	◦ 축 산 발 전 기 금	10,577	9,229	△1,348	△12.7
	◦ FTA 이 행 지 원 기 금	1,607	1,662	55	3.4
합 계(①+②)		70,040	55,147	△14,893	△21.3
분 야 별	① 사 업 비	36,693	37,083	390	1.1
	◦ 수 급 및 가 격 안 정	12,894	11,169	△1,724	△13.4
	◦ 유 통 구 조 개 선	12,211	11,858	△354	△2.9
	◦ 경 쟁 력 제 고	6,622	8,692	2,070	31.3
	◦ 농 업 기 반 조 성	3,638	3,562	△76	△2.1
	◦ 부 담 경 감 및 소 득 보 전	1,328	1,802	474	35.7
	② 채무상환, 여유자금 등	33,347	18,064	△15,282	△45.8

### 3. 119조 투융자재원 확보

□ 119조 투융자계획 중 '05년 투자소요액 9.8조원을 '05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차질없이 반영

○ 연차별 119조 투융자 계획 : ('04~'08) 50.5원, ('09~'13) 68.8조원

- ('04) 8.8조원, ('05) 9.8, ('06) 10.3, ('07) 10.7, ('08) 10.9

#### < 119조 계획 대비 '05년 투융자 확보 상황 >

(조원)

구 분		'04 투융자 (A)	'05 투융자 (B)	증(△)감 (B-A)	%
분 야 별	○ 농업체질강화·경쟁력제고	2.4	3.1	0.7	28.4
	○ 농가소득및경영안정	2.3	2.3	-	-
	○ 농촌복지증진및지역개발	0.8	1.0	0.2	22.6
	○ 농산물 유통혁신	0.7	0.8	0.1	24.3
	○ 산림자원육성	0.6	0.7	0.1	10.5
	○ 농업생산기반정비	2.0	1.9	△0.1	△3.5
합 계		8.8	9.8	1.0	12.1
소 관 별	○ 농 립 부	7.2	8.2	1.0	14.1
	- 예 산	5.4	6.0	0.6	12.0
	- 기 금	1.8	2.2	0.4	20.1
	○ 농촌진흥청(예산)	0.3	0.3	-	-
	○ 산림청(예산)	0.7	0.8	0.1	8.2
	○ 타부처(농특세예산)	0.6	0.5	△0.1	△6.5

### Ⅲ. 주요 농정현안

#### 1. 쌀 관세화 관련협상

##### 가. 추진 경과

###### <협상 기본방향>

- ◇ 관세화 유예 연장을 기본입장으로 최대한 유리한 유예 조건이 도출되도록 협상 추진
- 다만, 상대국이 요구하는 유예조건과 관세화하는 경우를 비교하여 쌀 산업의 실리확보 차원에서 최종 입장 정리

□ 정부는 금년초 WTO에 쌀 관세화 유예를 위한 협상 개시의사를 통보('04.1.20)하였고 9개국\*이 협상 참여의사를 통보

\* 미국, 중국, 태국, 호주, 인도, 파키스탄, 이집트, 캐나다, 아르헨티나

○ 관계부처 합동으로 「쌀협상대책 추진단」 구성·운영(3.16)

□ 협상 참가 9개국과 양자협상을 집중적으로 진행 중

○ 미국·중국은 5차, 태국은 3차, 기타 국가들은 2차 협상 완료

○ 협상대표단은 외교부, 농림부, 재경부 합동으로 구성

\* 농업계 추천 NGO대표가 협상에 동행

□ 3개월의 WTO 검증기간을 감안, 실질적 협상을 9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여건상 10월 이후에도 협상 지속 불가피

○ 연내 검증 미완료에 따른 절차상 문제 소지가 있으나 최선의 합의결과 도출을 위해 협상을 지속할 필요

## 나. 주요 논의 쟁점

- 대부분의 협상상대국들은 우리측 입장보다 높은 수준의 TRQ 증량과 짧은 유예기간 연장을 제시하고 있음
  - TRQ증량 수준과 관련, 우리측은 관세화하는 경우보다 불리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나 상대국들은 예외조치 연장에 따른 대가(代價)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어 상당한 입장차이 존재
  - 우리측이 제시한 유예기간(10년)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협상상대국들은 너무 길다는 입장
    - 일부 협상국들은 일정 유예기간 후 중간점검을 거쳐 추가 연장여부를 결정하는 방안을 제시
  - 주요 협상상대국들은 자국의 수출 가능물량에 대해 관심을 표시하면서 안정적인 수출물량 확보 방안 모색을 희망
- 협상 상대국들은 가공용으로만 공급되고 있는 수입쌀 관리 방식에 불만을 제기하며 소비자 판매를 강력하게 희망
  - 우리측은 소비자 시판에 따른 국내 시장교란 우려를 지적하고 있으나, 소비자 시판여부가 TRQ증량문제와 함께 관세화 유예 연장의 주요 요소가 될 것으로 예상
- 또한 쌀 이외의 농축산물 검사·검역 등을 포함한 양자현안 문제를 제기하는 일부 협상국도 있는 실정
  - 우리측은 쌀 이외의 양자현안은 쌀 협상과 분리하여 별도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

## 다. 향후 대응계획

- 주요 협상국 중심으로 **최종협상안에 대한 입장을 조율**하면서  
기타 국가들과의 입장차를 조속히 해소하는데 주력
- TRQ 증량수준, 유예연장 기간, 소비자 시판 등 주요 쟁점에  
관해 **구체적인 협의를 계속 진행**
- 필요시 협상팀 증원, 고위급 활동 등을 병행하여 **범정부적인  
협상력을 동원**
  - \* 9월부터 집중적 협상을 위해 기존 협상팀외에 추가 협상팀 구성 운영
- 국내적으로도 협상에 지장이 없는 수준에서 **최대한 진행상황을  
공개하여 협상에 관한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
- 주요 농민단체에 수시로 협상진행 상황을 설명하고 TV방송·  
홍보물 배포를 통해 협상 대응에 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 협상 진전상황에 따라 적정한 시점에 그 동안의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입장을 정리할 계획**
- 협상 막바지 단계에 토론회 또는 간담회 등을 통해 농업인·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결정

## 2. 쌀 산업 대책 준비

### 가. 양정제도 개편 필요성

□ 쌀 관세화 관련 협상과 DDA협상 이후에는 쌀 수입증가와 쌀 가격 하락, WTO 보조금(AMS) 한도감축 등이 예상되므로 소득안정방안을 비롯한 양정제도의 전반적 개편 필요

○ 국내 쌀 수급여건은 쌀 관세화 관련협상과 관계없이 평년작만 생산되어도 250만석 수준의 추가재고가 발생하는 상황

\* '04예상수급 (평년생산예상) : 공급 3,593만석 (생산3,450, 수입143), 수요 3,319, 추가재고 274

□ 향후 쌀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할 경우, 현 논농업직불제와 쌀소득보전직불제로는 농가소득안정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

○ 논농업직불제는 환경보전직불제로 분류되어 지급단가 인상이 어려움

\* WTO협정상 환경보전직불제는 친환경프로그램 이행에 따른 추가적 비용 또는 소득손실 한도내에서 지급되어야 함

○ 현행 쌀소득보전직불제는 쌀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할 경우, WTO 보조금(AMS)한도 등으로 운영상 어려움이 예상됨

□ 추곡수매제는 WTO 보조금(AMS) 감축으로 수매물량이 줄어 농가소득지지와 수확기 물량흡수 기능이 축소되는 상황

○ 수매량 : ('95) 955만석 → ('03) 521만석

## 나. 쌀 농가 소득안정방안

- 쌀 농가 소득안정을 위해 **목표가격을 설정**하고, 당년도 가격과의 차이의 **일정 수준**을 직접지불로 보전
  - 소득안정을 위한 직접지불은 **고정형 직불**과 **변동형 직불**로 구성
    - **고정형 직불**(허용보조)은 쌀 가격 및 쌀 생산 여부와 관련 없이 고정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이며 현행 논농업직불제를 **생산중립직불제**로 개편하여 운영
    - **변동형 직불**(감축보조)은 당해년도 쌀 가격에 연동하여 지급하는 방식이며 현행 쌀소득보전직불제를 개편하여 추진
- **쌀 농가소득안정방안**의 기본골격에 대해 토론회('04.5~8)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 대부분 **전문가·농업인이 공감**
  - 논의의 쟁점은 ①**보전 수준** ②**고정형직불금의 비중**임
  - **농업인들은** 보전수준과 고정형직불금의 비중을 높게 할 것과 물가상승률을 목표가격에 반영하여 줄 것을 주장
  - **전문가들은** 고정형직불금을 과도하게 인상할 경우 **구조조정과의 상충** 등을 우려하면서 **적정수준 보전**을 주장
- 여론수렴 결과와 쌀 관세화 관련협상의 추이 등을 감안, 대책을 **확정**하고 **쌀소득보전기금법 개정** 등 **제도 변경**을 추진

## 다. 추곡수매제도 개편 (양곡관리법 개정)

- 현행 추곡수매제는 쌀 산업의 안정적 기반유지와 쌀 농가 소득안정방안마련을 위해 공공비축제로 개편할 필요
  - 쌀 농가소득안정을 위한 직접지불 중 변동형지불은 쌀 가격 하락폭에 따라 지급하게 되어 WTO 보조금(AMS) 활용이 불가피
- 공공비축제 도입과 관련, 의견수렴을 한 결과 대부분 도입 필요성은 공감하나 도입시기에 대해 ① '05년 도입, ② DDA타결시 까지 추곡수매제 유지, ③ 양자 병행 방안을 놓고 다양한 의견 제시
  - 농업인·농민단체는 DDA타결시까지 추곡수매제 유지를 주장하고 대부분 학자들은 '05년부터 공공비축제 도입 주장
  - 그동안 제시된 의견과 쌀 협상 추이등을 종합적으로 감안 하여, 공공비축제 도입방안을 확정할 계획
- 추곡수매 국회동의제는 식량부족 시대의 증산에 기여하였지만, 앞으로 예상되는 시장여건변화에 우리 쌀 산업이 보다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폐지가 불가피한 상황
- 공공비축제 도입근거 마련과 추곡수매 국회동의제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양곡관리법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

### ○ 2004년산 추곡수매가는

- 쌀/DDA협상에 따라 예상되는 농가의 쌀값 하락 충격 완화
- 국내외 가격차의 연차적인 축소를 통한 쌀 산업의 연착륙
- 국내 수급과잉 등을 고려할 때 인하가 불가피

\* 정부안 (6.18 국회제출) : 수매가 161천원(전년대비 4% 인하), 수매량 516만석

\* 9.30.부터 RPC 산물벼 수매를 실시중이며, 포대수매는 11.1.부터 추진



<참고>

## 양곡관리법개정안 주요내용

---

-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공공비축미곡 포함)과 양곡매입 가격은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으로 결정(국회 동의제 폐지)
- WTO규정상 허용보조인 식량안보 목적의 공공비축제 도입근거 마련
  - 공공비축미곡의 비축·운용은 WTO 국내보조 감축약속 면제 기준을 충족하도록 매입·판매가격은 시장가격으로 함
- 정부관리양곡을 매입할 수 있는 자의 자격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
  - 수입쌀 등 정부관리양곡을 매입할 수 있는 자의 자격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함
- 포장양곡 표시기준 강화 및 허위표시 등의 금지조항 신설 등
  - 명예감시원제 및 부정유통 신고 포상금제 신설
- 양곡부정유통 등 위반업체에 대한 벌칙을 강화
  - 정부관리양곡 용도의 사용처분(1천만원이하 → 가액의 5배이하 벌금)
  - 포장양곡 표시제 위반(과태료 2백만원이하 → 1년이하 징역, 1천만원이하 벌금)

## 라. 쌀 산업의 경쟁력 강화

- 쌀 시장 개방 확대에 대비하여 **다양한 형태의 쌀 농가 육성**
  - 2010년까지 **6ha수준의 규모화된 전업농 7만호를 육성**
    - 고령농 경영이양 촉진을 위해 분할지급 도입 등 경영이양직불 개선
    - 영농규모화자금 이자율 인하(현재 년 3%), 재해지원 확대 등을 통해 규모화 유도
  - \* '04.7월 발표한 『쌀전업농육성 종합대책』을 토대로 세부실천 계획 수립중
  - 친환경·기능성 쌀 생산, 농촌체험과의 연계 등 **중소농에 대한 별도의 보완대책**을 연말까지 수립
  
- **미곡종합처리장(RPC)**을 민간 쌀 유통의 핵심 주체로 정예화
  - RPC를 중심으로 **품종재배방법을 통일**하고 공동브랜드 마케팅 유도
  - 건설한 RPC의 건조저장시설을 확충하여 **수확기 처리능력 향상**
    - 건조저장능력 :('03) 640만석 → ('13)1,100만석 수준(생산량의 40%)
  - 통합 RPC에 대한 시설·운영자금 우대 지원 등을 통해 경영 부실 RPC 구조조정을 촉진
  - RPC 경영평가를 **의무화**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
  
- **안전한 고품질 쌀 생산·유통**을 통한 소비자의 신뢰 확보
  - 수입쌀과의 품질 경쟁이 가능하도록 **미질(米質) 고급화** 노력 강화
    - 고품질 품종 보급 확대 및 비료·농약 사용량 감축
  - 시중 유통쌀에 대한 **품질평가를 확대**하고, 포장양곡 표시 제도(품종, 도정일자 등) 이행 상황에 대해 주기적인 점검 실시

### 3. 농업협동조합 개혁

#### 가. 농협개혁의 필요성

- 농협은 농촌금융지원 등을 통해 농업발전에 주요 역할을 해왔으나 급속한 농업 및 유통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데 한계 노출
  - 경제사업은 경영 전문성 부족으로 新유통환경에 효율적 대응 미흡
    - 중앙회 경제사업은 비효율적 경영('03년: 1,837억원 적자), 일선조합은 단순 수집·출하 대행 수준으로 적극적 산지유통혁신 노력 부족
  - 중앙회 신용사업은 정부의존도가 높아 경쟁력이 취약하고 일선조합은 고금리·경영비효율 등으로 농업인의 불만 야기
    - \* 총예수금의 36%, 총대출의 31%를 정부·지자체에 의존
  - 선출직 임원(중앙회장, 조합장)에게 권한이 집중되어 전문성 결여
  - 중앙회는 신용·경제사업별 대표이사 중심으로 전문성을 높이고 효율적 조합지원 체계와 단계적인 신경분리 여건을 마련하며
  - 일선조합은 경영구조 전문화와 시장원리에 따른 조합합병 또는 경제사업 규모화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
    - \* 유럽·미국 등의 협동조합은 이미 '80년대부터 조합간 인수·합병을 통해 시장지향형 마케팅 조직으로 급속히 국제화대형화하는 추세
- ⇒ 이를 위해 농협법 개정과 법 이외의 관행시스템 개선을 동시에 추진

## 나. 추진현황 및 계획

- 지난해부터 농협중앙회를 중심으로 농민단체, 지역조합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대변화에 맞는 **농협법 개정 초안 마련**
- 정부는 농협개혁위원회의 건의를 대부분 반영하고 **농협 중앙회와의 합의절차**를 거쳐 농협법개정안을 국회 제출(7.9)
- 국회에 제출된 농협법개정안은 농민단체 및 농협과 대부분 합의된 것이나 일부에서 몇 가지 사항에 대해 이견
  - i) 농민단체 일각에서 중앙회 **신·경분리 시한(2년) 명시** 요구
    - ⇒ 자본금 확충, 경제사업부문의 독자생존방안 마련, 분리후 지배구조 개선 등을 위한 사전준비 기간 필요, 농협에 1년내 세부추진방안 제출의무 부과
  - ii) 일부 조합장들은 **조합간 구역중복 허용**이 조합간 협동이 아닌 경쟁을 유도하는 것으로 협동조합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
    - ⇒ 구역중복 허용은 조합원의 조합 자율선택권 보장이라는 협동조합 원칙에 충실, 품목조합의 경우 이미 '96년 헌재판결로 구역중복을 허용
  - iii) **상임조합장 연임제한**에 대해 일부에서 자율성 침해를 이유로 반발
    - ⇒ 조합원에 대해 책임을 지는 봉사자로서 조합장직의 관료화직업화를 막고, 선거과열을 예방하자는 취지로서 자율성 침해와는 무관
- 중앙회 시군지부 개편, 임직원 급여체계 개선 등 **법이외의 개혁과제**는 연말까지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할 계획

<참고1>

## 농협법 개정안 주요내용

### □ 중앙회 : 대표이사 중심의 책임경영체제 확립

- ① 중앙회장을 비상임으로 전환하되 총회·이사회 의장으로서 대표이사에 대한 인사권, 집행부에 대한 평가감독권은 유지
- ② 이사회 내에 대표이사 소관별 소이사회를 설치
- ③ 조합장 이사의 비율을 현행 2/3이상에서 1/2이상으로 변경하고 회계·유통전문가 등 사외이사의 참여폭을 확대
- ④ 신용·경제사업의 분리 문제는 법 시행후 1년내 농협에서 세부추진계획을 작성·제출토록 추진

### □ 일선조합 : 규모화·전문화 촉진 및 경제사업 활성화

- ① 조합장 선거관리를 선관위에 위탁하고 불법선거 처벌강화
  - 불법 선거운동 처벌수준을 3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현행 2년/5백만원)으로 상향 조정
- ② 시·군 범위 내에서 1구역 1조합원칙을 폐지하여 조합간 경쟁을 유도하고 조합원의 조합선택권을 보장
- ③ 일정규모 이상 조합에 상임이사(임기4년) 도입을 의무화하고, 조합장 연임을 2회로 제한
- ④ 일정규모 이상 조합은 조합장 임기(4년)중 외부회계감사 의무화

<참고2>

## 법 개정 이외의 개혁과제

---

### 중 앙 회

- ① 농산물 유통·가공 등 경제사업이 활성화된 조합에 대해 우선적으로 중앙회가 각종 자금을 집중지원하고, 평가시도 우대
  - \* 대형유통업체와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일선조합과 직거래 증대 확대
- ② 신용-경제사업간 순환보직을 단계적으로 제한하여 전문성을 제고
- ③ 중앙회 본부 인력을 감축하여 일선조합 경제사업 지원 인력으로 전환하는 등 조직·인력 슬림화 지속 추진
  - \* 일선조합과 중복되는 중앙회 읍·면 소재 신용 점포는 단계적으로 정리

### 일선조합

- ① 품목조합 중심체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품목조합연합회, 조합공동사업법인의 활성화 추진
- ② 농산물 상품화시설(APC·RPC)을 확충·내실화하고, 공동선별·공동계산을 통한 부가가치 제고 역점
  - \* 공동계산 확대 목표 : ('03) 5% → ('13) 30%
- ③ 금년말까지 「지역농협 중장기 합병지원계획」을 수립, 조합이 스스로 합병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마련
- ④ 기타, 상호금융 금리인하 및 임직원 급여체계 개편 등을 추진

## 4. 농지제도 개선

### 가. 추진현황

- 현행 농지제도는 **우량농지 보전**을 통해 **주곡의 안정적 공급**에 기여해 왔으나, 농정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농업구조개선** 및 **농촌 투자유치** 촉진을 위해 보완 필요
- 시장개방 확대와 **농가인구 감소·고령화**에 대응, 전업농의 경영규모화 촉진을 위해 농지의 소유와 이용규제 완화 필요성 증대
  - 60세 이상 고령 경영주('03년 현재 농가의 57.7%)의 은퇴·탈농에 대응
  - \* 2003년말 농지면적은 185만ha이며 국토의 18% (그중 논은 61%)
- 외부자본과 전문인력의 유입을 촉진하여 **농촌의 활력을 증진**하고, 전체적인 국토계획체계와 조화되도록 개편할 필요
- 지난해부터 연구용역 수행, 학계·농민단체 등 **의견수렴** 및 **전문가 토론회** 등을 거쳐 **농지제도 개선방향과 추진방안 구체화**
- 농업인에게 실익을 주는 방향으로 **과도한 소유제한을 완화**하고 농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되 **우량농지는 최대한 보전**
- 각 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한 **농지법 개정안**을 정기국회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
- 규제완화 과정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투기·난개발**은 관계 부처와 협조하여 **보완대책 추진**

## 나. 제도개선에 따른 보완대책

□ 대부분 농지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나 일부 학자·농업인단체는 몇 가지 사항에 우려를 표명

i) 농지임대차 허용이 **헌법상 경자유전원칙**에 반한다는 입장

⇒ 농지 임대차는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농업구조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며 이는 **헌법원칙에도 부합**

\* 헌법 제121조 : ①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②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

ii) 농업경영목적 취득농지의 임대를 허용할 경우 **투기발생 우려**

⇒ 수도권등 우려지역은 **실수요자 위주로 거래를 제한하는 한편 부동산 관련 세제를 엄정하게 운영함으로써 투기 유인 제거**

iii) 농지전용 규제완화에 따른 **난개발 우려**

⇒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수립**, 개발행위허가 등을 엄격하게 운영하고, 농지전용허가시 심사 강화

iv) **식량자급목표**에 기초한 농지제도 개선 필요

⇒ 식량수급·통일대비 농지수요 등을 감안한 **적정농지 면적**을 전망하여 농지제도를 개선하며, **우량농지는 농업진흥지역과 생산관리지역에 편입하여 최대한 보전**



<참고>

## 농지제도 개선 주요 내용

---

- ① 규모화된 농업경영체를 육성하고 농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농지의 소유와 이용규제를 완화
  - 농지관리기구를 통해 전업농 등에게 5년이상 임대하는 경우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의 임대를 허용
  - 상속받은 농지, 8년이상 영농한 후 이농하여 계속 소유하는 농지 등에 대한 소유상한(1ha 미만)은 유지하되,
    - 농지관리기구를 통해 전업농 등에게 장기 임대하는 경우 소유상한의 예외 인정
  - 지역발전특구(농업특구)안에서 특화사업자의 농지소유를 허용하고 농업회사법인의 농지소유 요건을 폐지
    - ※ 비농업인이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농지규모는 현행 300평을 유지
- ② 농업진흥지역을 중심으로 우량농지를 최대한 보전하고, 한계농지 등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에 대한 전용규제를 완화
  - 식량생산과 국토환경보전에 필요한 적정농지는 농업진흥지역과 생산(보전)관리지역으로 지정·관리
- ③ 농촌 투자를 활성화하고 농지의 개발이익이 농촌의 활력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농지조성비 제도를 개선
  - 농지조성비 부과기준을 조성원가에서 공시지가로 변경
- ④ 농지은행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여 농지유통화 정보 제공, 농지의 매입·보유, 농지 수탁기능 담당

## 5. 축산업등록제 및 낙농 현안

### 가. 축산업등록제 추진

- 축산업등록제도는 효율적인 가축 방역과 축산물 안전성 관리, 친환경 축산 유도 등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
  - 개정('02.12.26)된 축산법에 따라 '05.12월말까지 등록 추진
  - 축산업자에게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농가정보 등을 체계적 관리
    - 등록대상 : 가축사육시설 면적이 소 닭 300㎡, 돼지 50㎡초과 농가
- 그동안 지역 순회설명회 개최, 리후렛 배포(22만부) 등 적극적인 교육홍보를 실시해 왔으나, 등록 실적은 아직 미흡(11%, 4.3천호)
  - 한우, 양돈, 양계농가는 대체로 등록제의 취지에 공감하고 있으나 낙농가는 등록으로 인한 불이익을 우려하여 반대
    - 오리는 농가의 요구로 축산법시행령을 개정('04.8), 대상에 추가
  - 지속적인 홍보·설득과 미등록농가에 대한 정책 차별화를 통해 계획대로 '05년말까지 등록 완료 추진
- 농가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책도 병행 추진
  - 시·군 조례개정을 통해 축사건폐율 상향 조정(건교부 협조)
    -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및 농림지역 적용 건폐율이 20%인 지자체 중 시 지역은 40%수준, 군 지역은 40~60%로 상향조정
  - 등록제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규정(미등록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은 추후 법 개정시 보완 검토

## 나. 기준원유량 등 낙농 현안

- 그동안 생산과잉을 보이던 원유수급은 감산대책 추진 및 소비 홍보, 군납 확대, 검은콩 우유 출시 등으로 **최근 안정되는 추세**
  - 연간 시유 소비량 증가 : ('02) 34.9kg/1인 → ('03) 38.2 (9.5%증)
  
- 최근 사료값 인상 등으로 생산비가 상승함에 따라 낙농진흥회 소속 농가의 **원유가격을 13% 인상(9.14)**
  - 유업체는 매출 감소, 경영난 가중을 이유로 반발하여 합의가 지연되었으나 적극적 지도·중재를 통해 합의 도출
  - 낙농가들은 최근 수급상황 호전을 이유로 낙농진흥회의 기준 원유량 증량을 요구
  
- 낙농진흥회는 자체 판매·가공능력이 없으므로 **기준원유량을 늘릴 경우 잉여량이 증가하고 정부 재정부담 증대 우려**
  - ※ 낙농진흥회 금년 상반기 1일 원유 잉여량은 369톤으로 작년 하반기(387톤)와 비슷한 수준
  - 낙농진흥회 기준원유량은 유업체와 직거래 체제로 전환하는 농가에 대해서 증량 추진
    - 직거래 전환은 금년말 희망지역부터 시작하여 '06년말까지 완료 추진
  - 이해관계 조정을 위해 낙농진흥회 이사회에서 기준원유량 증량과 직거래 체제 전환방안을 함께 논의
    - 「집유체계 직결 전환 및 기준원유량 조정협의회」구성(9. 14)

## 6. 한·칠레 FTA 후속대책

- 한·칠레 FTA발효에 대비하여 FTA지원특별법을 제정하고 「FTA기금」을 설치하여 과수산업 경쟁력제고와 경영안정 등을 지원
  - 2010년까지 7년간 1조 2,000억원 기금을 조성하여 지원할 계획
  - 금년에는 과수 생산유통지원사업, 폐업지원 등에 1,607억원 규모의 FTA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
  
- 과수 생산유통지원은 지자체, 생산자단체가 공동 수립한 자율 계획에 따라 추진
  - 지역 및 품목 특성에 맞게 광역단위 중장기 계획 수립·유도
  - 성공가능성과 투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가의 사업성 심사를 강화하여 우수한 사업계획을 선정
    - 3단계 전문가 평가를 거쳐 '04년 지원 대상자로 18개 사업계획을 선정
    - \* 총 지원액 : 408억원(경기 8억원, 충북 23, 충남 11, 전북 55, 전남 85, 경북 52, 경남 116, 제주 58)
  
- 과원폐업 희망농가에 대한 폐업지원사업 추진
  - 지난 8월말까지 폐업 희망농가로부터 신청 접수(1,825억원)
  - '04년 사업계획(234억원)보다 신청이 초과됨에 따라 예산 범위내에서 지자체별로 사업대상자 우선 선정
    - 금년에 지원하지 못한 신청농가는 과수 수급(여건)을 감안, 연차적으로 지원

## 7. DDA·FTA 협상

### 가. DDA 농업 협상

- WTO 일반이사회에서 농업협상의 기본골격(Framework)이 확정되어 협상 진전의 중요한 계기가 마련됨 ('04.8.1)
- 관세수준이 높은 품목을 더 많이 감축하는 방식은 우리에게 부담이 되는 반면, 민감품목과 특별품목에 대한 신축성이 반영된 것은 긍정적임
- 금년 10월부터 주요 쟁점에 관한 기술적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나 세부원칙(Modality)에 대한 본격적 협상은 내년초부터 개시될 전망
- 향후 협상과정에서 관세 및 보조금의 감축을 최소화해 주력
  - 특히, 관세상한 설정 시도 저지, TRQ 증량 최소화
  - 민감품목 및 특별품목(SP)의 범위와 신축성 확대
  - De-minimis의 감축 최소화해 중점을 두고 대응 예정
- 세부원칙(Modality)협상에 대비, 품목·정책별 정밀분석과 의견수렴을 거쳐 구체적인 대응방안 수립
- 이미 수립된 농업·농촌종합대책의 세부적인 내용을 향후 협상동향에 따라 탄력적으로 수정하는 작업 지속

## 나. FTA 협상

- FTA는 WTO와 함께 세계교역질서를 형성하는 중심축으로 정착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일본, 싱가포르와 공식협상 진행 중

한일 FTA : '05년 타결을 목표로 지난해 12월부터 총 5차례의 공식협상을 개최

- 현재까지 협정문을 중심으로 협상이 이루어졌으며 6차 협상부터 본격적으로 양허안 협상이 이루어질 전망
- 농산물 수출확대 계기로 삼아, 품목단체·수출업계 등 이해관계자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전향적으로 대응

한싱 FTA : 연내 협상 타결을 목표로 4차례 공식협상 개최, 협정문, 상품양허안 및 원산지 기준 협상 중

- 우리 농업에게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이나 주변국으로부터 우회수입 가능성을 감안 엄격한 원산지 기준이 되도록 협상
- ASEAN과는 '03년 3월이후 전문가그룹 공동연구회를 5차례 개최하였으며, 금년 안에 국내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협상 여부를 결정할 계획
  - 국가경제 전체에는 실익이 있을 것으로 보이나, 농림부는 농업부문의 피해에 대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입장

## IV. 농업·농촌종합대책 추진

### < 「농업·농촌종합대책」 후속작업 >

- 대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수립한 「농업·농촌종합대책(2.23)」을 기본틀로 하여 세부추진계획을 보완·수립중
- 생산자단체·전문가지자체 합동토론회, 중앙농정심의회 심의를 거쳐 연말까지 세부추진계획의 보완·수립 마무리
  - 품목대표단체, 전문가등으로부터 주요 사업에 대한 정책 대안과 의견을 수렴
- 필요시 119조 투융자계획 중 세부사업별 계획 조정
- 투융자의 효율성과 농정신뢰 제고를 위한 집행·평가체계 개선
- 농림사업 투융자 심사평가 시스템 혁신방안 수립·시행('04.5)
  - \* 신규사업 도입 : 전문가농업인 의견수렴 제도화, 시범사업 의무화
  - \* 사업집행 단계 : 정책고객관리시스템으로 현장의견 수렴, 실태조사
  - \* 집행이후 단계 : 매년 사업성과 평가, 비효율적 사업 폐지
- 특히,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사업타당성 심사의 전문성 강화
- 농림사업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으로 투융자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
  - 사업신청 및 대상자선정, 자금집행, 평가 및 모니터링 정보 D/B화

# 1.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

## 가. 직접지불제 확충

◇ 개방에 따른 농가소득 하락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 활성화와 연계하여 직접지불제를 단계적으로 확충

\* 직불제 투융자 비중 : ('04) 투융자사업비의 10.8 → ('08) 22.6%

\* '13년까지 농가소득의 10%수준을 직접지불을 통해 지지

□ 금년부터 경영이양직불제를 연금방식으로 확대·개편하고 친환경축산직불제·조건불리직불제 시범사업 추진

○ 고령농가(63~72세)가 진흥지역안의 논을 매도할 경우 경영이양직불금을 최장 8년간 매월 분할지급 또는 임대시 임대장려금 일시 지급

○ 경사도 등 영농조건이 불리한 마을의 농지·초지를 대상으로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지급('04년 총 100억원)

- '04년 399개 오지면 중 521개 법정리, 31천농가 혜택

○ 친환경축산직불 시범사업은 조사료포 확보 및 발생분뇨 환원 등 환경프로그램을 이행하는 농가(512가구)가 참여('04년 총 58억원)

□ 직불제를 체계화·내실화하기 위해 중장기 직불제 확충계획을 수립하고 경관보전직불제('05), 소득안정계정('07) 등을 연차적 도입

○ 농가에 대한 무차별적 지원이 아니라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정당한 보상체계로 정착**될 수 있도록 국민적 공감대 확보

○ 농가에서 준수해야 할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고 이행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효율화 방안**을 마련



<참고>

## 직접지불제 현황

### □ 경영이양직불제('97년 도입)

- 63~72세 농업인이 진흥지역 안의 논을 매도 또는 장기임대시 지급
  - 63~69세 농업인 매도시 : 연간 2,896천원/ha(최장 8년까지 매월 241천원 분할지급)
  - 63~69세 농업인 임대시 : 2,977천원/ha(1회 일시 지급)
  - \* 70~72세 농업인의 경우 매도·임대시 2,977천원/ha(1회 일시 지급)

### □ 친환경농업직불제('99년 도입)

-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가(농가당 0.1~5ha)
  - 밭 : 유기·전환유기 794천원/ha, 무농약 674, 저농약 524
  - 논 : 기본 532천원/ha, (추가 인센티브) 유기·전환유기 270, 무농약 150

### □ 논농업직불제('01년 도입)

- 논외의 형상 및 공익적 기능 유지, 비료·농약의 적정사용기준을 준수하는 농업인에게 지급
  - 0.1~4ha미만, 진흥지역 : 532천원/ha, 비진흥지역 : 432

### □ 쌀소득보전직불제('02년 도입)

- 정부와 쌀소득보전약정을 체결하고, 가격하락시 기준가격과 당해 연도 수확기 쌀값 차액의 80%를 약정면적에 따라 지급
  - \* 농업인 납부금 : 기준가격의 0.5%

### □ 친환경축산직불제('04년 도입)

- 축산업등록농가로서 사육밀도 완화 등 친환경축산을 이행하는 농가에 지급
  - 기본 : 1,300만원/호, 축사 등 주변 조경수 식재시 : 200만원/호 한도내 추가

### □ 조건불리지역직불제('04년 도입)

- 경사도 등 영농조건이 불리한 마을내 농지·초지를 대상으로 지급
  - 밭·과수원 : 40만원/ha, 초지 : 20 (호당 200만원 한도)

## 나. 농작물 재해보험 및 재해지원 확대

- ◇ 자연재해 등 경영상 위험요인이 높은 농업분야의 특성을 감안, 이를 제도적으로 흡수·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확충
- 농작물재해보험의 활성화를 위해 **보험료 및 운영비 지원율을 높이고 가입품목과 범위**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
    - '04년 순보험료의 50%, 운영비의 90%를 정부가 지원하여 농가의 보험료 부담률을 감축('03년 36.5%→ '04년 30%)
    - 현행 **과수중심**(사과배 등 6품목)에서 원예작물 등 타 작목으로 **대상품목 확대 추진**('13년까지 30개 품목)
      - \* 금년도 보험가입 농가는 '04년 대비 50% 증가한 25천호(가입률 18.2%)
  - 이상기후 등 거대재해에 대비하여 **제도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재보험제도와 농작물재해보험재보험기금 설치 추진**('05)
    - 보험 위험의 효과적 분산을 위해 미국, 일본 등에서 활용하고 있는 선진 제도 벤치마킹
      - \* **국가재보험제** 도입, 기금설치 및 농가부담 경감을 주내용으로 하는 농작물재해보험법 개정 추진중 (10월중 국회 제출예정)
  - 재해보험 확대와 병행하여,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농가지원이 현실화되도록 재해지원 기준의 상향 조정을** 지속 추진
    - 복구지원단가 및 보조율 인상, 용자조건 개선, 농축산설비 지원 기준 신설, 대상농가 규모 제한 철폐 등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추진

## 다. 농외소득원 개발·확충

◇ 농촌 고유의 자연경관과 향토자원을 활용하여 농촌을 1·2·3차 산업이 공존하는 복합산업 공간으로 발전

- 주 40시간 근무제 등 새로운 생활패턴에 부응한 **도농교류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농촌체험관광 인프라 확충**
  - **녹색농촌체험 마을**을 조성, 농촌관광의 거점으로 활용('04년말 : 76개소)
  - 소득과급효과를 높이기 위해 **친환경농산물 판매** 등을 병행
  - 농촌관광 **전문인력** 양성 및 다양한 홍보·마케팅 계획 수립·시행
- **농공단지** 활성화를 통해 **농촌지역 일자리 창출**
  - 고속도로 주변 등 입지여건이 좋은 곳에 **농공단지 조성 확대**
    - 금년 중 농공단지 30개소 조성 추진(302억원 : 신규 12개소 등)
    - \* 연간 생산액 20조원, 고용인원 113천명(농촌주민 80천명, 농업인 22)
  - 지역특화산업단지 지정기준 **완화** 및 **운영자금** 지원 확대
    - \* 지정기준 : 유사업종이 단지면적의 75%이상 → 50%
    - \* 운영자금 : 업체당 10억원 용자 지원 → 25억원
- 지역의 문화적 특성을 살린 **향토산업을 육성**하여 **농가 소득** 창출 기회 확충
  - 지역전통 및 특산품을 활용, **향토문화 축제** 등 **농촌관광과 연계한 복합상품화** 추진
  - 전통 민속주 소비 붐을 조성하고 규제 완화 등 지원 체계화
    - 「우리 술 페스티벌」(8.25~29), 국제식품박람회(11.4~7) 등을 적극 활용
    - 전통주 제조면허 추천 절차 간소화 및 주세 감면 등 추진

## 라. 농업경영체 육성

◇ 농가인구 감소 및 고령화에 따른 신규 농업인력 육성 및 농업경영체의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 강화

\* 40세미만/60세이상 : ('90) 14.6/31.3 → ('02) 4.1/56.8%

\* 2013년까지 정예인력 200천호를 목표로 후계인력 집중 육성

□ 창업농 양성과 영농정착 지원을 체계화하여 우수한 후계인력 육성

○ 농업인력 양성목표와 지원체계 등 농업인력육성 종합대책 마련

- '05년부터 창업농 후견인제, 농업인턴제, 대학생 연수제 시범사업 추진

- 후계인력 선발·교육, 정착지원 및 사후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

○ 한국농업전문학교를 창업농 양성전문기관으로 재편하고, 영농 희망자를 위한 직업훈련과정 신설 등 교육체계 개편 추진

□ 농업경영의 규모화기업화 촉진을 위한 농업경영체 지원체계 정비

○ 농업(법)인에 대한 조세제도를 개선하여 관련 세부담 완화

- 5년간 농업소득세 과세를 중단하고 농업법인이 창업후 2년내 취득하는 농업용 재산의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

○ 자본과 전문인력이 농업경영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 농업회사법인의 농지소유제한 폐지 및 비농업인의 출자지분 상한 확대

□ 경영컨설팅 지원 개선, 벤처농 육성으로 농업성장 역량 강화

○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국고지원비율 상향 조정(30%→50)

- 지원대상: (현행) 축산원예특작 경영체 등 → (확대) RPC, APC 및 쌀 전업농

○ 창업보육센터(서울 1, 경기 2)를 영·호남 권역별로 확대 개설 추진

## 2. 친환경·고품질농업 육성

### 가. 친환경 농업 확산

◇ 우리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높이고 농업의 국토환경 보전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친환경 농업을 적극 육성

\* '03년말 2% 수준인 친환경인증농산물 비중을 '10년까지 10%로 확대

- 화학비료·농약 사용을 지속적으로 감축하여 2013년까지 현재의 60% 수준으로 절감
  - '05.7월부터 화학비료에 대한 정부보조를 중단하고 유기질 비료 및 녹비작물 지원은 지속 확대
  - 시설원에 작물을 대상으로 천적방제 지원사업 추진
    - 키토산, 목초액 등 친환경농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추진
- 친환경 농업 확산을 위해 직불제를 확대하고 유통기반 구축
  - '05년부터 친환경농업직불제 대상을 저농약 인증농가로 확대
  - 친환경 농산물 전문판매장 확대, 홍보프로 방영 등 유통활성화 지원
    - 친환경농산물 구매자금 금리는 금년 7.1일부터 4%에서 3%로 인하
- 경종과 축산이 연계된 자연순환형 농업시스템을 확산
  - 4대강유역 등에 광역 자연순환형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추진
    - '05년 기초조사 및 모델설계 등 준비작업을 거쳐 '06년부터 본격 추진
  - 친환경 축산직불제 참여 농가에 대해서는 조사료포 확보(한옥우젓소), 분노 감축 및 환원(돼지답) 등을 의무화

## 나. 농식품 안전성 강화

◇ 농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농장에서 식탁까지 일관된 안전성관리 체계 구축에 노력

- 농식품의 안전성 취약요소에 대한 예방적 관리체계를 단계적으로 정착시키고 생산자의 안전성 의식을 제고
  -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 이력추적관리제도(Traceability) 등 선진 안전성 관리 프로그램 시범 실시
    - \* 농산물품질관리법을 개정하여 제도적 근거 마련
  - 농장에서 판매장까지 축산물 위해요소중점관리(HACCP)확대
    - 판매장은 '05년 도입, 농장은 양돈('06년)부터 단계적 실시
  - 품목별·주산지별 안전성 관리 전문교육 확대
- 안전성 조사원산지 단속을 과학화·체계화하고 실질적 제재 강구
  - 도 단위 농관원 분석실(9개)과 별도로 주요 시·군에 정밀 분석실 설치 추진('04 : 양평, 순천, 진주)
  - 도축장단계 축산물 잔류물질 및 미생물 검사 강화
    - 검사물량 확대 : ('04) 194천건 → ('05) 240
  - 품목별 수입물량가격동향을 분석, 원산지 허위표시 가능성이 높은 품목에 대한 조기경보시스템을 운영하고, 허위표시 처벌 강화
- 소비자에 의한 시장 모니터링 등 소비자 참여 확대
  - 명예감시원을 대폭 증원('04 : 3,600명 → '05 : 5,000)하고 명예감시원 활동비 인상 등 추진
    - \* 소비자 등이 참여하는 「농식품안전자문단」 운영 활성화

## 축산물안전성 강화대책

- ◇ 수입 축산물과의 차별화, 소비자 신뢰제고를 위하여 중장기 축산물 위생 및 안전성제고 종합대책 수립 (7.29)

### 사육단계 : 항생제 등 동물약품 및 사료안전관리 강화

- 동물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해 항생제 휴약기간 준수요령, 안전사용규칙, 내성균 출현 등에 대한 **농가교육 확대**(년 2회 전국순회)
- 항생제 등 잔류위반농가의 효과적 추적 및 제재 장치 보강('04.12)
- 사료내 혼합가능한 동물약품을 선진국 수준으로 감축(53→25종 이내, '04.12)
- HACCP 조기 도입 : **사료공장**('05), **축산농장**('06)

### 도축·가공단계 : HACCP 등 선진 위생제도 정착

- 도축장에서 잔류물질 검사 및 유통중인 지육 등 미생물 검사 강화
- 우수 도축장이 시장에서 우대받을 수 있도록 **도축장 HACCP 운영수준 평가제** 실시('05년) 및 운용실태 점검 강화
- SRM(특정위험물질) 제거, 검사물량 확대 등 **광우병발생 대비 대책**
- 도축 검사관 및 검사 보조원 등 검사인력 확충으로 **도축검사 강화**

### 유통·판매단계 : 위생감시를 위한 제도 확충 및 소비자 참여 확대

-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 시범도입('04.10) 후 '08년까지 관련제도 완비
- **닭·오리고기 지육·정육의 포장유통 의무화**('07년)
- 보건복지부와 협조, 식품위생법령 개정으로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도입
- **명예감시원 증원** 및 **감시수당 인상** 등으로 위생감시에 소비자 참여 확대

## 위생·안전성 관련 주요 개념

### 위생관리기준 (Sanitation Standard Operating Procedures)

- 식품을 취급하는 작업장 또는 업소에서 영업자와 종업원이 준수하여야 할 최소한의 위생관리기준
  - 작업도구 세척·소독, 위생복 착용, 작업장 청결유지 등
  - \* HACCP적용 작업장은 반드시 SSOP를 개발·시행하여야 함

### 우수농산물관리제도 (Good Agricultural Practice)

- 토양·수질 등 농업환경 및 농산물 생산·수확후처리단계의 위해요소를 종합적으로 예방·관리하는 제도
  - 주 관리대상 : 농약비료·중금속·유해생물 등 위해요인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

- 원료관리·처리(도축)·가공·포장 등 식품생산부터 판매까지 각 단계별 중점관리점(CCP)을 설정, 위해요소를 예방·통제하는 제도
  - 주 관리대상 : 병원성 미생물, 항생제 등, 생물학적·화학적·병리학적 위해요인
  - \* GAP는 주로 농축산물 생산단계의 포괄적 안전성 관리방법이며, HACCP는 생산부터 판매까지 단계별 위해요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

### 농산물 이력추적관리제도 (Traceability)

- 농축산물의 생산부터 판매단계까지 각종 정보(구입·판매, 재배·사양, 가공·운반방법 등)를 기록·관리하는 제도
-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여 신뢰를 높이는 한편, 상품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역추적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회수를 용이하게 함



## 다. 가축방역 추진체계 강화

◇ 전세계적 인적·물적 교류 증대로 인한 악성 전염병유입  
가능성 증가에 대비하여 **방역체계 강화 추진**

□ '03. 12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을 계기로 그동안 가축방역상  
미흡한 사항을 점검하여 **가축방역종합대책 수립(8.25)**

### < 가축방역대책 주요 내용 >

i) 사료안전관리 강화, 위험축군 집중 검사 등 **광우병 사전예방**  
및 발생시 대비 **사전대책 추진**

ii) **인수공통전염병**의 사람감염 방지를 위해 범정부적 대응체계 구축

iii) 밀집사육지역 특별관리, 단위면적당 적정 사육 두수 유지  
등을 통한 **건강한 가축사육환경 조성**

iv) 악성가축질병 발생국 여행객 휴대품 등 **국경검역**을 강화하고  
농가단계 전염병 상시 **예찰체계 구축**

v) 농가 방역지원 강화를 위해 **방역조직과 인력**을 확충

- 시·도, 시·군 및 가축위생시험소 인력 증원(232명), 수의과  
대학 졸업자를 **공익수의관**으로 군 대체복무 추진

vi) 지방자치단체의 가축방역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강화

- 방역활동을 평가하여 정책자금 차등 지원 등 추진

□ 동 대책 시행을 위한 **전문인력배치와 시스템 구축** 등 조속 추진

○ 지방인력은 구제역 특별방역이 시작되는 내년 3월 이전에 확충  
하고 '06년부터 현장에서 **공익수의관 활용**

- 병역법 개정 및 공익수의관에관한법률 제정 조기추진(국방부와 협의)

## 라. 농산물 유통혁신

◇ 대형유통업체 성장에 대응, **규모화·전문화된 산지유통주체**를 육성하며 **물류의 효율성 제고** 및 소비지 유통경로간 경쟁 유도

\* 산지공동마케팅조직 : ('03) 15개 → ('08) 100, 파렛트출하율 : ('03) 5% → ('07) 50

### □ 산지농협을 중심으로 마케팅을 **규모화·전문화**하고 산지유통센터 **확충**

○ **군 단위**로 규모화되고 **공동브랜드·품질·안전성** 관리가 가능한 **공동마케팅 조직**을 집중 육성('04.10월중 공모·시범선정)

\* 공동사업법인 법제화, 출자제한 해제 등 제도개선(농협법 개정)

○ **고품질 균일 상품** 생산을 위해 **산지유통센터(APC) 설비를 보완·확충**하고 경영전문성 강화('04년 신규 5개소, 보완 44개소)

○ 유통인재 양성을 위해 「**유통전문교육과정**」 신설 및 **품질관리사** 육성

### □ 농산물의 **공동선별**과 **파렛트 출하**를 촉진하여 물류비용 절감

○ 산지유통조직에 **공동선별 및 파렛트풀 이용** 지원 확대

- 공동선별비 ('03) 34억원 → ('04) 70, 파렛트 이용 ('03) 35억원 → ('04) 64

○ 도매시장으로의 **파렛트 출하**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확대

\* 서울 강서·광주서부도매시장을 파렛트 출하시범시장으로 육성

### □ **고품질·공동선별 상품**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도매시장 거래 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가공·유통업체와의 직거래 확대**

○ 강서도매시장('04.6개장)의 **시장도매인제 운영실적**을 평가하고 도매시장 활성화 방안 연구를 거쳐 단계적으로 제도 개선

○ 민간 가공·유통업체의 **직거래 자금 금리 인하**(종전 5%→4%)

## 마. 농식품 수출확대

- ◇ 금년 20억불 수출을 목표로 생산-선적전 물류-해외 마케팅이 체계적으로 연계되도록 농가·업체·정부간 역할 분담
  - \* 8월까지 전년동기대비 16.4% 증가한 1,275백만불 수출 (목표달성을 63.7%)

### □ 농산물 전문 수출업체의 규모화·전문화 유도

- 금년부터 수출농산물 공동대표브랜드제 시행
  - \* 휘모리(Whimori): 파프리카, 배, 국화에 대해 시범운영 후 연차적으로 확대
- 수출업체 평가를 통해 우수 수출업체에 원료구매 자금 등 지원('04 : 3,809억원)
- 수출 물류비 지원을 10만불 이상 규모화된 업체로 한정('04 : 289억원)

### □ 수출용 고품질·안전농산물 생산 및 효율적 물류기반을 뒷받침

- 수출전문생산단지(108개)를 평가하여 우수단지 중심으로 차등 지원함으로써 수출 농산물 공급기지를 육성
- 농산물 수출물류센터 개장(5월 광양·11월 마산)을 계기로 집하·선별·검역·통관의 One-stop 시스템을 구축

### □ 정부의 지원은 수출 애로사항 해소 및 수요 저변확대에 역점

- 수출입조합, 품목별단체, 유통공사 등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FTA 확대 등에 대비한 중장기 수출전략 수립 추진
- 현지관측행사, 식문화 홍보, TV 광고 등 소비자대상 직접 마케팅으로 우리 농산물에 대한 관심과 인지도 향상

### 3. 농촌 지역개발 및 복지 증진

#### 가.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수립

◇ 농림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도·농간 균형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범정부적 농촌지원시스템 마련**

□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제정에 따라 **범정부적인 농촌 복지·교육·지역개발 지원체계 구축**

○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범정부 위원회**를 구성

\* 위원회에는 15개부처 장관과 9명의 민간전문가가 참여

○ 10년간 연장된 **농특세 재원**을 농촌복지 등에 우선 투자하고, 각 부처로 분산된 농특세 사용을 종합 조정할 수 있는 체제 구축

□ **농어업인 복지 및 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을 연말까지 수립

○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T/F 및 전문가 자문단 구성('04.6)

- 기본계획 수립방법, 세부과제 등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지침 마련

○ 기본계획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농산어촌의 복지, 교육여건 및 지역개발 실태조사 중**(10월말 완료 예정)

- 복지·의료·교육·생활환경 분야 총 114개 조사항목 선정

○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기본계획(안)을 마련, **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 최종 확정**

\*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내년초 국회에 보고할 계획

## 나. 농촌형 사회안전망 확대

◇ 급속한 고령화와 낙후된 의료서비스 및 교육여건을 감안하여 농촌의 특성에 맞는 **사회안전망**의 지속적 확대

\* 65세이상 인구비율 ('03) : 도시 6.3%, 농촌 15%

### □ 농업인에 대한 국민연금 지원과 건강보험료 경감을 지속 확대

○ **연금보험료** 지원 기준소득을 상향 조정('04: 502억원)

- ('03) 표준소득 22만원 보험료의 1/2(연간 86천원) → ('04.7) 44만원의 1/2(152천원)  
→ ('05계획) 44만원의 1/2 (224천원)

○ 농업인에 대한 **건강보험료**는 22% 경감혜택을 기본으로 하고 매년 **농특세** 재원으로 추가 경감 ('04년: 8%추가경감, 537억원)

- 경감비율 및 경감액 : ('03) 22%(연간 102천원) → ('04) 30%(200천원)  
→ ('05계획) 40%(300천원)

### □ 농업인 안전공제 및 기초생활보장 수준을 지속적으로 확대

○ 농작업 사망 또는 상해시 지급하는 공제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공제료 지원수준** 확대 추진 \* 사망 공제금 : ('04)10 → ('05) 15백만원

○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선정시 농촌의 특수성을 고려한 소득 인정기준 완화로 농업인에 대한 혜택 확대

\* 농지, 농기계 등은 재산평가액 5백만원까지 소득에서 제외

### □ 농가 경제에서 부담이 큰 **교육비** 및 **양육비** 부담 경감 확대

○ **고교생** 학자금 보조(1.5ha 미만) 및 **대학생** 학자금 무이자 융자(30천명)

○ 금년 2학기부터 농업계열 대학에 재학중인 **농어업인자녀**에 대해 **학자금**(국립대 전액, 사립대 162만원 한도)을 **직접** 보조

○ 1.5ha미만 농가의 **영유아(0~5세) 양육비** 신규지원('04 : 월평균 102천원)

## 다. 농촌 지역개발 본격 추진

◇ 농촌다움을 유지·보전하면서 권역별 특성을 살려 농촌마을을 개발·정비하고 도농교류 활성화로 주민소득 증대

- 동일 생활권에 있는 3~5개 농촌 마을을 권역단위로 묶어 생활환경 정비 및 경관형성 지원
  - 권역별 3년간 70억원 수준을 보조('04 : 160억원, 국고 80%, 지방비 20) 하고 '13년까지 1천개 권역을 목표로 추진
    - \* '04년 36개 권역에 대한 마을종합개발 기본계획 수립 추진
  - 주민참여형 사업예정지 공모 방식으로 상향식 개발을 유도
- 권역별 특성 있는 지역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농촌마을종합개발 사업 추진과정에 다양한 분야의 민간전문가 참여 확대
  - 전문가 컨소시엄 방식 및 민간기관 위탁 방식으로 기본계획 수립
    - \* 금년 계획수립중인 지구 중 8개소(도별 1개소) 민간 위탁 (6월)
  - 문학·생태·환경·언론 등 각계 원로들로 자문위원회 구성·운영
- 농촌다움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을 개선
  - 인프라시설 위주로 지원하던 정주권 개발사업은 불량시설 철거 등 쾌적한 농촌공간 조성사업과 병행
  - 도시민의 거주와 여가활동을 위한 전원마을 조성사업 추진
    - 영농체험 희망자, 은퇴자 등을 농촌으로 유도하기 위한 맞춤형 전원주거단지, 체재형 주말농원, 은퇴농장 등

- 도농교류를 주도할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지원체계 정비
  - 도농교류센터(농업기반공사)를 설치(4월), 도농교류 지원업무 전담
  - **농촌지역의 도농교류 역량강화**를 위해 마을리더, 주민, 공무원 등 대상 교육실시('04 : 1,000명)
  
-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 및 관련세제 개선
  - 농협, 전경련 등 경제 5단체 등이 참여하는 **1社1村운동** 점화(6.8) 및 확산
    - \* 삼성카드·양평군 신론1리 등 1社1村 자매결연 443건 ('04.9월 현재)
  - **도농교류체험기** 공모, **올해의 도농교류상** 제정 등 전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도·농교류 홍보 이벤트 추진
  - 금년부터 농촌주택 추가 구입시 **양도세 면제 및 지방세 증과 배제**
  
- 도시에 못지않게 초고속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농촌지역 **정보인프라**를 확충하고 **정보화 수용능력 강화**
  - **원거리·주거 저밀도지역**(50가구 이상, 전화국간거리 5~10Km)의 초고속 인터넷 이용 환경조성('04 : 정보화촉진기금 700억원)
    - \* 읍·면지역 인터넷 이용 가능 가구 : ('03) 93% → ('04) 95
  - 마을 **공동정보이용시설**인 디지털사랑방 설치(20개소)
  - **농업인의 정보활용 능력 배양**을 위해 수준별 정보화 교육 강화
    - **농업정보 119대학** 중심 농가방문교육 및 집합교육 실시('04 : 74천명)
    - 지역정보화를 이끄는 읍면단위 **농업농촌정보화선도자** 육성('04 : 169명)

## V. 입법 추진계획

□ 입법추진(15건) : 농림부 9건(개정9), 산림청 6건(제정3, 개정3)

### < 기 제출된 법률안 >

법 률 명	주요 제·개정내용
1. 농업협동조합법(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앙회장 비상임 전환, 교육지원사업 전담 전무 이사제 신설</li> <li>◦지역조합장 선거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 의무화</li> <li>◦법 시행 후 1년 내에 중앙회가 신·경분리 세부 계획을 정부에 제출</li> </ul>
2.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 관한법률(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익자부담 원칙에 의거 임산물 품질인증 신청수수료 납부 규정 신설</li> <li>◦임산물 품질향상을 위해 인증제품 생산자에 대한 자금지원</li> </ul>
3. 수목원조성및진흥에 관한법률(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목원조성계획 승인 및 취소, 승인취소시 원상회복명령 등 수목원조성 관련 산림청장의 권한을 시·도지사로 이양</li> <li>◦국립수목원 완충지역 편입토지 보상규정 마련으로 민원해소</li> </ul>



## < 앞으로 제출예정인 법률안 >

법 률 명	주요 제·개정내용
1. 농작물재해보험법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가재보험제도의 도입 및 농작물재해보험의 운영비 지원 등으로 제도의 조기정착 유도</li> <li>◦재해보험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농작물재해보험재보험기금 설치</li> </ul>
2. 농지법(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지관리기구를 통해 전업농 등에게 5년 이상 장기임대하는 경우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의 임대 허용</li> <li>◦지역발전특구(농업특구)안에서 특화사업자의 농지소유를 허용하고, 농업회사법인의 농지소유 요건을 폐지</li> <li>◦농지조성비제도 개편 및 농업진흥지역의 토지이용 행위 제한 조정</li> </ul>
3.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 위원회의설치및운영등 에관한법률(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어업특위의 존속기간을 현행 '04년말에서 '07년말로 3년 연장</li> <li>◦위원회 기능에 농어업·농어촌대책 실천상황 점검 기능 등 추가</li> </ul>
4. 양곡관리법(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민식량의 안정적 확보와 수급안정을 위해 공공비축제 도입</li> <li>◦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 수매량 및 수매가격은 국무회의의 심의와 대통령의 승인을 거쳐 확정</li> <li>◦양곡유통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포장양곡의 표시제도 강화</li> </ul>

법 률 명	주요 제·개정내용
5. 농산물 품질 관리 법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와 이력추적관리제도의 도입으로 농산물 생산·유통과정의 안전성 확보 및 고품질 안전농산물 공급 촉진</li> <li>◦원산지·유전자변형농산물 표시위반시 벌칙강화</li> </ul>
6. 초지법(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체초지조성비 감면대상 확대로 국가경제 발전과 지역균형 발전 도모</li> <li>◦초지관리에 관한 지자체의 자율성 확대</li> </ul>
7. 수의사법(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내 수의과학대학 학제가 6년제로 개편('98)됨에 따라 외국 유학생도 이와 동등한 수준의 외국대학을 졸업한 경우에 한하여 국내 수의사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조정</li> <li>◦수의사 윤리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수의사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수의사회에 윤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 마련</li> </ul>
8. 농어촌정비법(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상홍수로 인한 저수지 등의 붕괴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일정규모 이상 저수지에 대해 비상대처 계획 수립 의무화</li> <li>◦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근거 및 사업정의를 명확히 규정하여 “펜션” 등 신종 숙박업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고,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li> </ul>

법 른 명	주요 제·개정내용
9. 산림조합법(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산림조합장·중앙회장의 출마요건 완화 및 연임 제한, 임원의 자격요건을 완화</li> <li>◦사외이사 확대 등으로 이사회 전문성 및 경영의 투명성 확보</li> </ul>
10.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산림의 공익적·환경적 기능 강화, 재해에 강한 산림육성</li> <li>◦지속가능한 산림경영에 관한 사항, 산림자원의 조성·육성 및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li> </ul>
11.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속가능하며 다양한 공익기능 수요에 부응하는 국유림경영 및 국유림확대·집단화의 법적근거 마련</li> <li>◦국유림경영·관리기본계획수립, 지속 가능한 임산물 수급대책 마련, 국유임산물의 매각방법 및 가격결정 등의 절차 마련</li> </ul>
12. 산림문화·휴양진흥에 관한 법률(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 5일 근무제 실시로 급증할 산림휴양수요에 대비, 산림자원을 활용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li> <li>◦산림문화·휴양진흥 기본계획 수립, 숲 해설가 자격제도 도입</li> </ul>

※ 식품산업육성법, 동물보호법,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은 정기국회 이후 추진계획



## □ 농림부 주요기능

### < 본 부 >

실 국 별	주 요 업 무
기 획 관 리 실	농정시책 조정 및 예산편성, 국회업무, 업무혁신, 조직 및 인사, 법무행정
공 보 관	농림정책 및 주요현안 홍보, 대언론 관련업무
감 사 관	농림부 및 소속기관, 농업관련 단체·기관에 대한 감사
투융자평가통계관	투자심사평가, 농업통계, 농산물 생산관측, 농업농촌정보화 지원
비 상 계 획 관	비상대비계획 수립 및 비상훈련
농업구조정책국	농업구조개선 및 농가소득, 농지관리, 농업인력육성, 농업금융, 협동조합 지도·감독, 여성농업인 정책
국 제 농 업 국	WTO 농업협상 및 통상협력, 농산물 수입정책 총괄
식 량 정 책 국	식량정책 수립 및 수급관리, 식량생산, 농자재, 친환경 농업 및 기술개발
농 산 물 유 통 국	농산물유통구조개선, 농산물가격안정대책, 농산물수출, 식품산업육성, 채소·과수·화훼작물의 수급 관리
축 산 국	축산정책수립, 축산물위생안전성, 축산물 및 사료수급, 가축방역
농 촌 정 책 국	농촌지역 개발 및 복지, 농외소득 증대, 생산기반 정비·관리

### < 소속기관 >

기 관 별	주 요 업 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산물 품질관리, 농산물검사, 농업통계조사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축산물 및 동물의 검사·검역 등 위생관리, 가축방역 및 질병 예방
국립식물검역소	수출입 식물검역
국립종자관리소	주요 농작물 종자관리 및 식물품종보호

# □ 정 원

(2004. 9월 현재)

	계	정무직	일 반 직									계약직	별정직	연구직	기능직
			계	1급	23급	3급	34급	4급	45급	5급	6~9급				
본 부	513	2	434	1	9	1	10	27	45	143	198		8	-	69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2,144		1,627		1		2	12	3	125	1,484		266	2	249
국립수의 과학검역원	518		319			3		15	2	30	269	1	11	101	86
국립식물 검역소	411		354				1	8	2	23	320	1		10	46
국립종자 관리소	165		68			1	1	10	1	10	45		4	27	66
소 계	3,238	-	2,368	-	1	4	4	45	8	188	2,118	2	281	140	447
총 계	3,751	2	2,802	1	10	5	14	72	53	331	2,316	2	289	140	516

## □ 농림부 소관 법률(54건)

### ○ 농정제도 일반(15건)

- 농업·농촌기본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여성농업인육성법
- 농지법, 초지법, 농업협동조합법,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 농작물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대책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수의사법, 식물방역법
-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 농어촌정비법, 농촌진흥법

### ○ 농산물 생산·유통(8건)

- 양곡관리법, 인삼산업법, 친환경농업육성법, 축산법, 낙농진흥법
- 농산물품질관리법,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축산물의 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

### ○ 농업 연관산업(8건)

- 종자산업법, 비료관리법, 농약관리법, 사료관리법, 농업기계화촉진법
-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축산물가공처리법, 전통소싸움경기에관한 법률

### ○ 유관기관 및 회계·기금 등(14건)

- 농수산물유통공사법,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양곡증권정리기금법, 한국마사회법,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법률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법, 쌀소득보전기금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
- 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 농가대여양곡의전용에관한법률
- 동물보호법, 한국진도개보호육성법, 방조제관리법

### ○ 산림분야(9건)

- 산림법, 산림기본법, 사방사업법, 청원산림보호직원배치에관한법률, 산림조합법,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 수목원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 산지관리법,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

## 2003년 국정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1. FTA, DDA, 쌀재협상 등 농산물 시장개방에 대비한 농업·농촌발전 종합대책을 수립할 것</p>	<p><b>&lt;시정·처리 결과&g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3년 5월 농정기획단, 8월 농정개혁자문단을 설치하여 대책 수립 가속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9개 분야, 180여개의 주요과제에 대하여 중점 검토</li> <li>○ 우리부가 작성한 투융자계획안을 중심으로 관계부처간 의견 조정을 거쳐 119조원 투융자 계획 발표(11.11, 농업인의 날)</li> </ul> </li> <li>* 청와대 보고(4회), 국무총리 보고(2회), 고위당정조정회의(2회), 경제장관 간담회(2회), 관계부처 차관회의(2회), 농어업특위 각위원회 논의(7회)</li> <li>□ 농업·농촌 종합대책 및 중장기 투·융자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장·군수 설명회, 농대학장 간담회, 조합장 설명회, 지역토론회 등을 통해 일선 농업인, 공무원, 지역 학계, 전문가 등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li> <li>* 농정개혁자문단회의(5회), 농민단체간담회(34회), 지역토론 설명회(8개도), 장관친서 발송(5,000명), 기자간담회, 교수 등 관련전문가 및 기관 의견수렴 등</li> <li>○ 농업·농촌종합대책 확정('04.2)</li> </ul> </li> </ul> <p><b>&lt;향후 추진계획&g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업·농촌종합대책 세부추진계획 보완·수립(연말)</li> <li>○ 종합대책 추진상황은 매 3년마다 점검평가하고 변화된 상황을 반영하여 지속 조정</li> </ul>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2. 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현행 직접지불제도의          확충 및 다양한 직불제의          도입방안을 강구 할 것</p>	<p><b>&lt;시정·처리 결과&g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nput type="checkbox"/> 직불제의 개선 및 새로운 직불제 도입방안을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장기 직불제 확충계획 실무기획단' 구성·운영('03.3.15 ~ 5월말)</li> </ul> </li> <li><input type="checkbox"/> '중장기 직불제 확충방안' 연구 용역 실시 ('03.4 ~ '04.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직불제를 중간평가하여 제도 보완 및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우리 실정에 맞는 직불제 도입 검토</li> </ul> </li> <li><input type="checkbox"/> 기존 직불제 개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영이양직불제 지급단가 인상 및 분할지급 방식으로 확대 개편</li> <li>○ 논농업직불제 지급기준(상한면적) 확대</li> </ul> </li> <li><input type="checkbox"/> '04년 신규 직불제 도입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친환경축산직불제 및 조건불리지역 직불제</li> </ul> </li> <li><input type="checkbox"/> 119조 투융자 계획에 향후 10년간 직불투융자를 24조원 수준으로 반영('04.2)</li> </ul> <p><b>&lt;향후 추진계획&g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nput type="checkbox"/> 중장기 직불제 세부추진계획 재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별 직불제의 추진내용 및 투융자 계획을 종합 검토 및 수정</li> </ul> </li> <li><input type="checkbox"/> 쌀농가 소득안정 방안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DDA 및 쌀관세화 협상결과 등을 감안, 논농업 직불제와 쌀소득보전직불제의 개편방안 확정</li> </ul> </li> <li><input type="checkbox"/> 연차별 신규 직불제 도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5년에 경관보전직불제를 도입하기 위해 시행 방안을 마련중이며('05년 신규예산 6억원 반영)</li> <li>○ 논농업직불제를 생산중립직불제로 개편하고, 소득안정계정 도입을 검토</li> </ul> </li> </ul>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3. 영농의 규모화를 유도하고, 고령농업인의 은퇴 후 안정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경영이양직불제 보조금 지급 수준을 현실화하는 등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할 것</p>	<p><b>&lt;시정·처리 결과&g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령농의 은퇴촉진과 전업농의 규모화 촉진을 위하여 분할지급형 경영이양직불제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급단가를 대폭 인상하여 분할지급 방식을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 매매·임대시 ha당 2,890천원</li> <li>- 개선('04.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매매의 경우 : 만 70세까지 최장 8년간 ha당 241천원을 매월 분할 지급</li> <li>▪임대의 경우 : ha당 2,977천원 일시불 지급</li> </ul> </li> <li>- 분할지급에 따른 예산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03) 43억원 → ('04) 141억원</li> </ul> </li> </ul> </li> <li>○ 경영이양직불제 추가 보완('04.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칠레 FTA비준안 국회처리과정에서 직불제 보조금 지원대상 상한연령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70~72세 경영이양농업인도 매매·임대시 ha당 2,977천원 일시불 지급('06년까지 한시적 지원)</li> </ul> </li> </ul> </li> </ul> </li> </ul> <p><b>&lt;향후 추진계획&g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속적인 경영이양 직불제 개선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불금 단가추가 상향조정 검토 등으로 은퇴 고령농의 소득안정 향상 및 쌀전업농의 영농규모화 촉진 도모</li> </ul> </li> </ul>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4. 농가부채 경감을 위하여 지원금리 인하, 연대보증문제 해소, 농신보 출연확대 방안 등을 강구할 것</p>	<p><b>&lt;시정·처리 결과&g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nput type="checkbox"/> 농업인의 부채상환 부담을 대폭 경감시켜 소득으로 부채를 갚을 수 있는 기회를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채경감특별법개정('04.2.16국회 의결)</li> </ul> </li> <li><input type="checkbox"/> 정책자금의 상환연기 및 금리인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자금 : '04.1.1일 이후 상환이 도래하는 중장기정책자금</li> <li>○ 상환기간 : 기존의 상환기간에 관계없이 5년 거치 15년으로 연장</li> <li>○ 금리 : 4% 수준 → 1.5%</li> </ul> </li> <li><input type="checkbox"/> '01년 부채경감법에 의해 지원된 자금의 상환기간 연기 및 금리인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대보증피해자금의 상환기간 연장(3년거치 7년 → 3년 거치 17년)</li> <li>○ 상호금융저리대체자금 및 경영개선자금 금리인하 (6.5%→ 3%)</li> </ul> </li> <li><input type="checkbox"/> '00~'03까지 신규 대출된 농업용 상호금융자금중 7조원에 대해 8%수준의 금리를 5%로 인하</li> <li><input type="checkbox"/> 「경영화생지원 제도」 상설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규모 및 조건 : '04년 2,000억원, 3%, 3년거치 7년</li> </ul> </li> <li><input type="checkbox"/> 농신보 기금출연을 대폭 증액('03 : 1,000억원 → '04 : 3,47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책자금의 연대보증 해소를 위한 출연 소요 반영</li> </ul> </li> </ul> <p><b>&lt;향후 추진계획&g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nput type="checkbox"/> 개방확대 등으로 어려운 농업인이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농가부채 경감대책을 차질없이 시행</li> </ul>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5. 영농규모화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농지관리기금에 대한 정부출연금 확대, 계정간 무이자차입을 전출입으로 개선하는 등 안정적인 재원조달 방안을 강구할 것</p>	<p><b>&lt;시정·처리 결과&g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4년 농지관리기금 운용계획에 정부출연금 1,000억원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3) 400억원 → ('04) 1,000</li> </ul> </li> <li>□ 농지조성계정에서 농지관리계정으로 무이자차입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3) 1,000억원 → ('04) 1,350</li> </ul> </li> </ul> <p><b>&lt;향후 추진계획&g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농규모화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적정수준의 정부출연금 확보노력 지속과 단계적으로 농지관리기금 계정간 전출입 및 통합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단계 ⇒ 우선적으로 계정간 전출·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5년도 농지관리기금법시행령을 개정하고 '06년부터 실시</li> </ul> </li> <li>○ 2단계 ⇒ 농지조성사업이 마무리 되는 시기에 맞추어 계정간 통합 추진</li> </ul> </li> </ul>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6. 농작물재해보험 제도와 관련 가입을 확대, 대상 작물 확대, 직불 재보험 제도 도입 등 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p>	<p><b>&lt;시정·처리 결과&g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nput type="checkbox"/> 농작물재해보험 단계별 확대 및 국가재보험제 도입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완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3.4~'04.1. 농경연·보험개발원 공동연구</li> </ul> </li> <li><input type="checkbox"/> 대상품목 및 대상재해 등 제도활성화를 위한 로드맵 수립('04.2)</li> <li><input type="checkbox"/> '04년 예산확보 : 448억원(순보험료 95, 운영비 69, 특별손실지원 284)</li> <li><input type="checkbox"/> 복숭아, 포도 등 4품목 사업지역을 전국으로 확대('0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4년 가입율, '03년 대비 60% 증가</li> </ul> </li> <li><input type="checkbox"/> 국가재보험제 도입 및 운영비 100%지원을 통한 농가부담 보험료 경감을 위해 법률 개정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규제심사 완료, 법제처 심사 준비 중</li> </ul> </li> <li><input type="checkbox"/> 농작물재해보험 제도개선을 위한 T/F팀 구성·운영 및 연구용역('04.7~'04.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보험제도 도입 등 제도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관계기관 전문가 회의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산처, 재경부, 민간보험사, 대학, 보험개발원, 농협, 우리부 등 11개 기관</li> </ul> </li> <li>○ T/F에서 논의된 사항 등 세부 연구를 위해 보험개발원에 연구용역(예산처와 공동 : 60백만원)</li> </ul> </li> <li><input type="checkbox"/> 기금정책심의회 개최('04.9.22 : 기획예산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작물재해보험재보험기금 신설 심의</li> </ul> </li> </ul> <p><b>&lt;향후 추진계획&g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nput type="checkbox"/> 농작물재해보험법·시행령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재보험제 도입 및 운영비 전액 지원근거 마련</li> <li>○ 기타 제도개선 등 운영상 미비점 보완</li> </ul> </li> <li><input type="checkbox"/> 손해평가 방법개선 등 제도개선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T/F의 논의 및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li> </ul> </li> </ul>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7. DDA협상, 쌀 재협상 등 향후 농업협상에서 우리의 목표를 관철할 수 있는 협상대책을 강구할 것</p>	<p><b>&lt;시정·처리 결과&gt;</b></p> <p><b>□ DDA 협상대책</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농업에 영향을 미치는 관세 및 국내보조금 감축 등에 대한 세부원칙(Modality)을 정하는 협상단계에서는 새로운 여건변화에 맞는 국제 공조체제를 다양하게 구축하여 우리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는데 통상외교역량을 범정부 차원에서 집중</li> <li>○ 우리의 협상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통상 경험이 많은 인력을 DDA협상에 최대한 배치 하고, 통상정책관 채용 및 민간통상전문가 등의 자문을 제도화</li> <li>○ UR협상시 국민공감대형성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농민단체 및 국회 등의 협상참여 방안을 여건변화 및 실정에 맞게 강구하고 DDA 협상동향의 신속한 전달체계를 제도화</li> </ul> <p><b>□ 쌀 협상대책</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 쌀산업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쌀 관세화 유예 또는 관세화의 양대안을 동시에 대비하여 WTO규정에 따라 쌀 관세화 유예 여부에 대한 협상 개시 의사를 통보</li> </ul>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 협상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농민, 전문가의 여론수렴과 협상의 성격, 진행사항 등을 적극 홍보하는 등 국민적 공감대 하에서 협상 진행</p> <p>- 관세화 유예와 관세화 수용에 대한 이해득실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협상 할 수 있는 여건조성</p> <p><b>&lt;향후 추진계획&gt;</b></p> <p>□ DDA 추진</p> <p>○ 개도국 지위문제는 DDA 세부원칙타결 이후 이행계획서 작성(Country Schedule)시 우리 입장을 반영</p> <p>○ 양자협상과정에서 탄력적으로 대처하는 방안 강구</p> <p>○ DDA 세부원칙 협상과정에서는 기본적으로 개도국입장에서 대처하면서 사안에 따라서 신축적 입장 유지</p> <p>□ 쌀 협상 추진</p> <p>○ 관세화 유예연장을 전제로 쌀 농가 및 국민들의 요구사항과 이해관계국의 요구수준의 차이를 좁히는데 통상외교역량을 범정부차원에서 집중</p> <p>○ DDA세부원칙협상 동향과 상대국 반응 등 불확실한 요인을 감안, 단계별 협상전략을 구사</p> <p>- 사안의 민감성과 불확실성에 대응함으로써 우리 국익을 최대한 확보</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8. 여성농업인 교육 확대, 농가도우미 지원확대 등 여성농업인 지위향상을 위한 제도정비를 추진할 것</p>	<p><b>&lt;시정·처리 결과&g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 향상 교육훈련 강화 및 복지증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3년도중 정보화 교육 26천명, 영농기술교육 55천명, 전문농업경영교육 300여명 실시</li> <li>○ 여성농업인의 영농활동에서 겪고있는 애로사항 해소 및 교육문화욕구 증대에 부응하기 위한 여성농업인센터 지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3년) 18개소 → ('04년) 27개소로 확대 운영 지원</li> </ul> </li> <li>○ 여성농업인의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04신규 사업으로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산액(국비) 30,221백만원</li> </ul> </li> </ul> </li> <li>□ 여성농업인의 모성보호와 안정 영농 보장을 위한 농가도우미 제도의 개선 및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우미 이용료를 ('03)27천원→('04)30천원으로 상향조정</li> <li>○ '04사업시행지침 개정하여 이용절차를 간소화 (4단계→2단계)</li> </ul> </li> </ul> <p><b>&lt;향후 조치계획&g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 농업인 교육훈련 강화 및 복지지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보화교육 여성참여율을 40%이상으로 유지</li> <li>○ 영농기술교육은 매년 50천명 이상 실시</li> <li>○ 품목별 전문화 교육 강화 및 여성농업인 교관반 운영 등 농촌현실을 고려한 눈높이 교육을 확대</li> <li>○ 여성농업인센터의 연차적 확대 및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li> <li>○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대상의 연차적 확대</li> </ul> </li> <li>□ 농가도우미 지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단가 추가인상, 이용기간 연장, 이용범위 확대 등 연차적 추진 계획</li> </ul> </li> </ul>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9. 농업용 폐비닐의 재처리  가공시설 증설, 재활용품  개발업체에 대한 지원 등  폐비닐 활용방안을 강구  할 것</p>	<p>&lt;시정·처리 결과&gt;</p> <p><input type="checkbox"/> '04년 폐비닐 수거비 신규예산 확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량(금액) : 85천톤(2,550백만원)</li> <li>- 사업단가 : 30원/kg</li> </ul> <p>※ 폐비닐 수거부분은 우리부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되, 폐비닐  재활용부분은 환경부 주관하에 추진</p> <p>&lt;향후 추진계획&gt;</p> <p><input type="checkbox"/> '04 폐비닐 수거비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04이후 지속적인 예산확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5년 계획 : 85천톤(2,550백만원)</li> </ul> <p><input type="checkbox"/> 농업용 폐비닐 재처리 가공시설 증설, 재활  용품 개발업체에 대한 지원 등 폐비닐 재활용  활성화는 주관부처인 환경부와 긴밀하게 업무  협조 추진</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10. 농기계구입이 농가부채의 큰 원인이 되고 있는바, 농기계에 관한 지원정책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p>	<p><b>&lt;시정·처리 결과&g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nput type="checkbox"/> 중·대형 농기계 구입 지원은 농업종합자금제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가의 중·대형농기계 구입지원시 사업계획의 타당성, 경영능력 등을 객관적으로 심사·평가하여 대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3) 3,000만원이상 농기계 → ('04) 2,000만원이상 농기계 → ('05) 1,000만원이상 농기계</li> <li>※ 지원방식의 급격한 변화에 대한 충격완화를 위해 1천만원미만 농기계는 농기계구입지원자금에서 지원</li> </ul> </li> </ul> </li> <li><input type="checkbox"/> 영세농가의 농기계 구입부담경감 및 이용율 제고를 위하여 '03년부터 농기계임대사업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3) 5개소 → ('04) 8개소</li> </ul> </li> </ul> <p><b>&lt;향후 추진계획&g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nput type="checkbox"/> 영농규모에 적합한 농기계 공급 및 이용율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형농기계 용자 지원액 하향조정으로 과잉 투자 억제</li> </ul> </li> <li><input type="checkbox"/> 농기계 임대사업의 연차적 확대 실시 및 지원 조건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3년까지 158개소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5년 설치 : 8개소</li> </ul> </li> <li>○ 지원조건 : ('03~'04)국고 30%, 자부담 70% → ('05) 국고 50%, 자부담 50%</li> </ul> </li> <li><input type="checkbox"/> 중고 농기계 거래 활성화</li> </ul>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11.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RPC에 대한 지원확대, 경영평가를 통한 RPC 구조조정 등 RPC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p>	<p><b>&lt;시정·처리 결과&g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품질쌀 생산을 위한 RPC 지원확대 및 내실화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4년부터 건조저장시설 지원확대로 고품질쌀 생산기반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량 : ('03) 60 → ('04) 80개소(증 20)</li> <li>- 민간사업자 지원조건 : ('03)용자 80% → ('04) 보조 30%로 전환</li> </ul> </li> <li>○ RPC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운영자금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운영자금 지원규모 : 9,184억원</li> <li>- 비 매입특별자금 지원조건 : ('03) 10개월 → ('04) 1년(증 2개월)</li> </ul> </li> </ul> </li> <li>※ 건조저장시설 설치 보조율 10%상향조정 소요예산 36억원, 운영자금 금리 4%에서 무이자 조정 소요 예산 273억원(이차보전) FTA대책 예비비에 반영</li> <li>□ 경영평가를 통한 RPC 구조조정 등 운영개선 방안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RPC 경영혁신 추진계획 수립('03.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적 : 쌀산업 여건에 효과적인 대응과 쌀 유통의 핵심체로 육성</li> <li>- 주요내용 : ① '04년부터 선평가·후지원 체제로 전환 ② 정부지원을 경영우수 RPC와 통합RPC에 집중지원</li> </ul> </li> </ul> </li> </ul>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 RPC경영평가 지표개발('03.10 ~ '04.2)</p> <p>○ RPC경영평가 실시('04.3 ~ 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시설·운영자금 차등 지원('04.4월말)</li> <li>-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04.5)</li> <li>- 평가결과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현지실사 확인('04.6 ~ 8)</li> </ul> <p><b>&lt;향후 추진계획&gt;</b></p> <p>□ RPC 지원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업·농촌 중장기 투융자 종합대책 수립시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조저장시설 : '04 ~ '10년까지 740개소 추가 설치 지원</li> <li>- RPC운영자금 : 지속적으로 지원</li> </ul> </li> </ul> <p>□ RPC 경영평가 및 구조조정 등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RPC 경영평가 방안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RPC의 경영여건을 감안하고, RPC관계자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지속 보완할 계획임</li> </ul> </li> <li>○ RPC 통합 등 구조조정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추진방향 : 시설통합 + 책임경영체제 구축</li> <li>- 추진전략 : 단계별로 확대추진</li> <li>- 촉진방안 : 시설·운영자금 우대, 정부 수매량 증배 등</li> </ul> </li> </ul> <p>* '04년 통합RPC 시범사업계획 : 10월중 사업자선정 예정</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12. 2004년 쌀재협상에 대비하여 종합적인 쌀산업 발전대책을 강구할 것</p>	<p><b>&lt;시정·처리 결과&g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nput type="checkbox"/> WTO 쌀재협상 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DDA Modality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음에 따라 관세화와 관세화유예의 실익을 판단할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협상목표 설정에 어려움이 있음</li> </ul> </li> <li><input type="checkbox"/> 관세화 유예로 타결된다고 하더라도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TRQ증량 등 쌀시장개방 폭의 확대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에서는 시장개방폭 확대시에도 쌀산업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쌀산업 종합 대책을 농업·농촌 종합대책, 119조원 투융자 계획과 연계하여 마련</li> </ul> </li> </ul> <p><b>&lt;향후 추진계획&g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nput type="checkbox"/> 쌀 협상 이후 시장개방폭이 확대되더라도 실질적으로 농가소득을 안정시킬 수 있도록 쌀 농가소득안정방안 마련('04)</li> <li><input type="checkbox"/> 공공비축제 도입을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 추진('0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축물량, 매입·방출 등 구체적인 도입방안은 여론수렴 결과와 쌀 협상 추이 등을 감안하여 확정</li> </ul> </li> <li><input type="checkbox"/> RPC 수확기 흡수능력을 1,100만석 수준으로 확대 추진</li> <li><input type="checkbox"/> 쌀 농가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6ha 수준의 규모화된 전업농 육성</li> <li><input type="checkbox"/> 비료·농약사용량 감축, 유통중인 브랜드쌀 평가, 표시제도 정착 추진</li> <li><input type="checkbox"/> 틈새시장에서 유기농업 등 친환경농업으로 경쟁력 확보</li> </ul>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13. 유기농축산물 육성, 친환경 농산물 인증제도 강화 등 친환경농업 육성방안을 강구할 것</p>	<p><b>&lt;시정·처리 결과&g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축산과 경종을 연계한 친환경농업 확산을 위해 유기축산시범사업 추진('03 ~ '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실정에 적합한 사육모델 개발을 통해 유기 조사료 및 유기배합사료 생산기반 구축 추진</li> </ul> </li> <li>□ 친환경농산물 인증신청시 토양 및 용수에 대한 공인분석기관의 검사기록을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하여 친환경농산물 인증업무 강화</li> <li>□ 친환경농업 기술개발·보급의 체계화를 위한 조직 개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촌진흥청에 「친환경기술과」 신설('04.1.29)</li> </ul> </li> <li>□ 친환경농업육성사업 제도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소규모 구분을 통합하여 지역여건에 맞는 사업 추진 유도</li> <li>○ 사업규모에 따라 2~10억원 차등지원</li> </ul> </li> <li>□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소득보전을 위한 친환경 농업직접지불 보조금 지급대상 면적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3) 5,270ha, 30억원 → ('04) 7,934, 55</li> </ul> </li> <li>□ 유기농 codex기준 적용('05.1~)대비 유기농가 교육(3회)</li> </ul>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b>&lt;향후 추진계획&g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 개선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친환경인증농산물의 소비자 신뢰도 제고를 위해 인증심사 절차 강화</li> <li>○ 친환경농산물 유통업자에 대한 인증제도 철저 도입으로 유통과정에서의 품질관리 철저</li> </ul> </li> <li>□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친환경농업지구 조성 지원 (’04) 34개소, 48억원 → (’05.P) 42, 67</li> <li>○ 친환경농업 직접지불 보조금 지원 (’04) 7,934ha, 55억원 → (’05.P) 11,385, 69</li> <li>○ 원예작물천적해충방제 지원(신규) : 300ha, 12억원</li> <li>○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신규) : 기초환경조사, 단지선정, 모형개발을 위한 용역비 지원(4억원)</li> </ul> </li> <li>□ 친환경농산물 유통 활성화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친환경농산물 직거래자금 지원 (’04) 150억원 → (’05.P) 200</li> <li>○ 농협 등에 친환경농산물 전문판매코너 확대 (’04) 170개소 → (’05.P) 200</li> <li>○ 친환경농산물 소비촉진 홍보 등</li> </ul> </li> </ul>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14.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대책을 다각도로 강구할 것</p>	<p>&lt;시정·처리 결과&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산물 유통구조개선을 위해 유통개선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수산물의 대량수집, 신속한 분산을 위해 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락시장('85)~강서시장('04)까지 32개소 건설완료</li> <li>- 청과물취급량은 '85년 422천톤에서 '03년 5,491천톤(13배)으로 확대</li> </ul> </li> <li>○ 농산물종합유통센터 중심 물류혁신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98~'03까지 13개소 건설, '06까지 3개소 추가 지원</li> </ul> </li> <li>○ 마케팅 역량 있는 산지조직을 선정·지원하고 산지유통시설을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3년말 산지유통전문조직 280개소, 산지유통센터 208개소</li> </ul> </li> <li>○ 농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자상거래 운영활성화 자금 지원('04:5억원)</li> <li>- 농산물통합쇼핑몰 운영 지원(2,500농가 입점)</li> <li>- 전자상거래규모 : ('00) 500억원 → ('03) 6,119</li> </ul> </li> <li>○ 농산물 포장·규격출하 제고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포장화율 : ('97) 75%→ ('03) 86</li> <li>- 규격출하율 : ('93) 17%→('03) 54</li> </ul> </li> </ul> </li> </ul>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b>&lt;향후 추진계획&g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지농협 등을 중심으로 마케팅 능력을 높여 신유통에 적극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규모화·전문화되고 공동브랜드·품질·안전성 관리가 가능한 공동마케팅 조직 집중육성('04년 공모, 시범선정)</li> <li>○ 유통인재 양성을 위한 「농산물유통 전문교육 과정」 운영활성화</li> </ul> </li> <li>□ 대형유통업체와 소비자의 수요에 적극 대처 할 수 있도록 거래제도를 탄력적으로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매시장 유통종사자에 대한 거래규제 등을 완화, 영업활성화를 유도</li> <li>○ 고품질 농산물이 도매시장을 통하여 활발하게 거래되도록 거래체계를 개발</li> </ul> </li> <li>□ 농산물 파렛트 출하촉진 등으로 농산물 물류 비용 절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매시장의 파렛트 출하촉진을 위한 인센 티브제 도입</li> <li>○ 산지유통전문조직등에 대한 표준규격 공동출하 지원비 등을 파렛트 출하실적에 따라 차등지원</li> </ul> </li> <li>□ 농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요구에 부응 하여 농산물의 안전성 관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수농산물관리제(GAP), 이력추적제 등 선진국형 안전관리제도 조기정착</li> </ul> </li> <li>□ 농업과 식품산업의 연계강화 및 농산물 수출 판매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칭)농산물가공및식품산업육성법 제정 추진</li> <li>○ 우수농산물 소비촉진 및 해외마케팅 지원 기능 강화</li> </ul> </li> </ul>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15. 농산물 원산지표시 단속이 실효성있게 이루어질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것</p>	<p><b>&lt;시정·처리 결과&g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nput type="checkbox"/> 농산물 원산지 단속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명절 및 수입급증시기 특별단속('0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속실적 : 13회 (200일, 3,879건)</li> <li>- 허위표시 2,132, 미표시 1,747건 적발-조치</li> </ul> </li> <li>○ 중앙특별단속반 설치 운영('0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속실적 : 27회, 63개업소 적발</li> </ul> </li> <li>○ 사법경찰권의 적극적 행사('0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압수수색영장집행(20개소), 긴급체포(6명), 구속영장집행(7명)</li> </ul> </li> <li>○ 원산지단속 조기경보시스템 활용(78품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3) 허위표시 3,755건, 미표시 2,572건</li> </ul> </li> <li>○ 관세청의 통관자료 품목확대로 유통단계별 단속업무에 활용 : ('03) 1,149품목</li> <li>○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 활동강화('0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활동실적 : 연 8,066명, 90,265개소 단속</li> </ul> </li> <li>○ 부정유통신고처리('0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포상금 지급실적 : 698건, 127백만원</li> </ul> </li> <li>○ 원산지 식별방법 교육(소비자, 생산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실적(11월말) : 2,115천명</li> </ul> </li> </ul> <p><b>&lt;향후 추진계획&g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nput type="checkbox"/> 농관원 사법경찰관 확대 및 명예감시원을 소비자 중심으로 개편</li> <li><input type="checkbox"/> 관세청 통관자료를 활용한 조기경보시스템 운영 강화</li> <li><input type="checkbox"/> 생산자조직을 중심으로 원산지표시의 자발적 관리 유도</li> <li><input type="checkbox"/> 원산지 표시 위반자에 대한 처벌강화, 상습 위반자 공표 등 제도개선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 1년이상 7년이하 징역, 1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 벌금</li> </ul> </li> </ul> </li></ul>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16. 농산물 시장개방에 대하여 김치, 인삼, 전통식품을 전략적으로 육성하여 수출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할 것.</p>	<p><b>&lt;시정·처리 결과&g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nput type="checkbox"/> 김치·인삼 등 전통식품의 수출대책 강구</li> <li><input type="checkbox"/> 김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김치 소비가 늘고 있는 일본, 중국 등에 소비자 대상으로 한국산의 차별화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김치시식판촉전(19회), 한국요리교실(108회)</li> <li>※ '04년 김치수출목표 : 100백만불</li> </ul> </li> </ul> </li> <li><input type="checkbox"/> 인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화권시장을 중심으로 한국산의 차별성·우수성 등 홍보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삼세미나(중국2회, 대만1회), TV광고(홍콩, 유럽, 미주, 대만) 등 추진</li> </ul> </li> <li>○ 인삼 생산단계의 품질관리강화 및 신제품·신제품 개발 추진(농진청, 한식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삼에 대한 생산단계 농약 안전성 조사 실시('04이후)</li> <li>※ '04년 인삼수출목표 : 73백만불</li> </ul> </li> </ul> </li> <li><input type="checkbox"/> 전통식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통주 등 수출가능성이 있는 전통식품 대상으로 개발수출 지원('04 : 15개품목)</li> <li>○ 국제식품박람회 참가 및 해외특판전개최 등을 통해 홍보 지원</li> </ul> </li> </ul> <p><b>&lt;향후추진계획&g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김치요리 개발 및 홍보 지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프랑스 '꼬르동블루'대학과 공동으로 김치메뉴 개발</li> </ul> </li> <li>○ 시장별 특성을 고려한 마케팅으로 인삼의 해외시장 점유율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뿌리삼은 중화권, 제품류는 일본, 미국, 유럽 등을 대상으로 집중홍보</li> </ul> </li> <li>○ 수출가능성이 있는 전통식품에 대한 지속적인 개발 및 홍보 지원</li> </ul>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17. 낙농산업 발전을 위한 중장기대책을 마련할 것</p>	<p><b>&lt;시정·처리결과&g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장기대책 마련을 위해 낙농가대표·유업체·학계 등 관련 전문가들로 □□낙농산업발전대책협의회□□(15명) 구성('03.9.3), 운영 중</li> <li>○ 3차례 대책협의회 및 7차례 실무자회의 개최</li> <li>○ 논의된 내용을 반영하여 「농업·농촌종합대책」마련(04.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유 집유체계의 직거래 체제 전환, 원유가격 결정체제 개편등을 통한 수급안정 도모</li> <li>- 다양한 매체를 통한 소비 홍보, 유제품 개발 등을 통해 우유 소비 확대</li> <li>- 원유의 품질·위생수준 향상으로 소비자 신뢰 확보</li> <li>- 젖소개량,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등 생산성 향상</li> </ul> </li> <li>○ 현재 「농업·농촌종합대책」 세부추진계획 보완 수립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거래체제 전환 및 기준원유량 증량문제를 논의하기 위하여 낙농진흥회이사회에□□집유체제 직결전환 및 기준원유량 조정협의회”(10인) 구성('04.9.14)</li> </ul> </li> </ul> <p><b>&lt;향후 추진계획&g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낙농가·유업체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농업농촌 종합대책 세부추진계획 보완 수립</li> </ul>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18. 도축장의 HACCP(축산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의무적용 등 축산물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p>	<p><b>&lt;시정·처리 결과&g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축산물 안전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축산물가공처리법” 부분 개정('04.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운반업·보관업·판매업 등에 대한 HACCP 도입 근거 마련</li> <li>○ 신고포상금 지급범위의 확대 및 영업자 준수사항 구체화</li> <li>○ 축산물 위생감시원 및 명예감시원제도 신설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축산물가공처리법 하위법령 개정·공포('04.8)</li> </ul> </li> </ul> </li> <li>□ 도축장 HACCP 이행추진 실태점검(3차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차점검('03.상반기) : 영업정지 8개소 등 62개소 행정처분</li> <li>○ 2차점검('03.하반기) : 영업정지 8개소 등 32개소 행정처분</li> <li>○ 3차점검('04. 6~8월) : 영업정지 5개소 등 18개소 행정처분</li> </ul> </li> <li>□ 축산물 위생·안전성제고 종합대책 수립('04.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육단계 : 동물약품·사료관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물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한 농가교육 확대</li> <li>- 사료내 혼합가능한 동물약품을 선진국 수준으로 감축(현재 53→25종 이내)</li> <li>- 잔류물질 위반농가에 대한 지도·감독관리 강화</li> <li>- 사료공장 HACCP 제도 도입 추진</li> </ul> </li> <li>○ 도축가공단계 : HACCP 등 선진 위생제도 정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 강화, 사후관리 철저 등을 통한 도축장 HACCP제도 조기정착 추진</li> </ul> </li> <li>· 시·도간 교차점검 및 도축장 HACCP 운영수준을 평가하여 정책자금 차등지원(상위권 0% 금리, 중위권 3%, 하위권 지원배제)</li> </ul> </li> </ul>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급식등 대형수요처에서 HACCP적용 축산물 물을 우선구매하도록 홍보 강화 및 관계기관 협조요청</li> <li>- 검사인력 확충 등 도축검사 내실화 추진</li> <li>- 가공장 HACCP 적용 확대를 지원 강화</li> <li>○ 유통단계 : 위생감시 강화 및 리콜제도 정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통단계(보관·운반·판매) HACCP지침 마련 및 위생관리기준(SSOP) 의무적용 추진</li> <li>- 유통중인 축산물의 수거검사 강화 및 자발적 회수 제도 정착</li> <li>- 닭, 오리고기 지육정육의 포장유통 의무화(07년)</li> <li>-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 도입</li> <li>- 축산물명예감시원 확충('04년 1,000명→'05년 2,000)</li> <li>- '07년부터 식육처리기능사 자격증 소지자에 한해 식육판매점 신규 개설 허용</li> </ul> </li> <li>○ 광우병 예방 및 유사시 대응방안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물성 사료 급여금지 등 사료안전관리 강화</li> <li>- 도축물량 검사 확대('04년 2,200→'06년 5,000건)</li> <li>- 쇠고기 SRM 제거를 위한 시설 등 구축</li> </ul> </li> <li>□ 축산물 위생·안전성제고 종합대책의 구체화 및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세부추진계획 수립('04.9)</li> </ul> <p><b>&lt;향후 추진계획&g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축산물 위생·안전성제고 종합대책의 세부과제 별로 일정에 따라 추진</li> <li>○ 단기과제, 중기과제(법령개정사항 등), 장기과 제(연구용역, 여론수렴 등 필요)로 구분하여 과 제별 T/F팀 구성, 제도개선 등 추진</li> </ul>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19. 농외소득 증진을 위하여 도농교류, 농촌관광 활성화 등 다양한 정책 방안을 마련할 것</p>	<p><b>&lt;시정·처리 결과&g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nput type="checkbox"/> 도·농교류, 농촌관광 활성화 등 다양한 정책 방안 마련을 위한 작업단(T/F) 구성(15명)·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실정에 밝은 컨설팅 전문기관에 도·농교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용역('03.11~12월)실시</li> <li>○ 현장위주의 대책수립을 위해 국내외의 다양한 현장사례 조사 및 분석('03.10~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의 농촌관광마을, 관광농원, 은퇴농장 등과 일본 큐슈지역 방문조사</li> </ul> </li> <li>○ 성공마을지도자 초청 의견청취 및 전문가 합동 회의('03.12.4) 등을 통해 전문가의 의견 수렴</li> </ul> </li> <li><input type="checkbox"/> 농촌활력 회복의 새로운 정책방안 제시를 위한 「도시민과 함께하는 농촌가꾸기 종합대책」 수립('04.1월)</li> </ul> <p><b>&lt;향후 추진계획&g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nput type="checkbox"/> 도·농교류,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li> </ul>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20. 새만금사업의 향후 추진 방안, 내부간척지 활용 방안 등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p>	<p><b>&lt;시정·처리 결과&g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부간척지 활용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시행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기관 : 국토연구원(총괄), 한국환경 정책평가연구원, 농어촌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전북발전연구원, 공동연구</li> <li>○ 연구기간 : '03.11 ~ '04.12(14개월)</li> </ul> </li> </ul> <p><b>&lt;향후 추진계획&g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조제공사는 공정에 따라 '06년까지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5.11월까지 보강공사 계속 시행</li> <li>- '05.10월 배수갑문 완공</li> <li>- '05.11 ~ '06.3월 기간중 2호 개방구간(2.7km) 최종 물막이</li> </ul> </li> <li>○ 방조제와 그 주변을 친환경적 관광생태·체험 공간으로 조성</li> <li>□ 내부간척지는 지역발전과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토연구원의 토지이용계획수립 결과를 토대로 구체화</li> <li>* 토지수요, 환경, 경제성, 자원 등을 충족할 수 있는 미래 지향적이고 실현가능한 계획을 수립 예정</li> </ul> </li> </ul>



제256회 정기국회(국정감사)

농림해양수산위원회

# 농정 추진현황 보고

2005. 9. 22.

## 농 립 부

“농업·농촌사랑! 우리의 미래를 열어가는 힘”

# 목 차

I. 영농 추진 상황 .....	413
II. 2006년 예산 및 기금 조정안 개요 .....	417
III. 농정혁신 추진상황 .....	423
IV. 쌀산업 대책 추진 .....	426
V. 주요 농정 추진현황 .....	433
VI. 입법 추진계획 .....	454
<별첨1> 일반현황(농림부 조직 및 정원) .....	455
<별첨2> 2004년 국정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	458
<별첨3> 2005년 재해 피해 및 복구지원 현황 .....	487
<별첨4> 남북농업협력위원회 제1차 회의 합의문 .....	489

# I. 영농 추진 상황

## 1. 영농 여건

- 7월 이후 평균기온은 평년과 대비하여 약간 낮고( $\Delta 2.4^{\circ}\text{C}$ ) 일조 시간은 적었으나( $\Delta 96\text{hr}$ ) 농작물 생육여건은 대체로 양호
- 국지성 호우가 잦았으나,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이 없어, 전체 농산물 생산 및 수급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전망

## 2. 농축산물 생산 및 수급전망

벼 : 작황은 평년작 수준, 조생종 중심으로 수확단계

- 재배면적은 논에 콩 등 타 작물재배 증가로 전년보다 다소 감소(21천ha)한 980천ha 수준
- 벼멸구, 흑명나방 등 해충 발생이 일부 있었으나, 기상여건이 양호하여 작황은 평년수준 전망
- \* 9.15 작황 조사는 집계중이며, 실수확량은 11월중순 발표 예정

채소류 : 전반적으로 작황은 양호, 가격은 평년수준으로 안정세

- 마늘·양파는 생산량이 5~8% 증가하였으나 계약재배 물량 확대(전년대비 27% 증가) 등으로 가격은 평년수준 유지
- 고랭지 무·배추는 재배면적 감소(7~10%)와 잦은 비로 인해 작황이 다소 부진하여 가격이 평년에 비해 높게 형성

과실류 : 생산은 전년수준 내지 소폭감소, 전반적으로 수급 안정 전망

- 사과는 전년대비 재배면적(27천ha)이 소폭 증가하였으나 저온·우박 피해 등으로 생산량(348천톤)은 다소 감소할 전망
  - 배·감귤은 전년대비 2~3% 수준의 재배면적 감소에 따라 생산량도 감소할 전망이다, 수급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
- \* 배 : ('04) 452천톤 → ('05P) 422, 노지감귤 : ('04) 527천톤 → ('05P) 497

축산물 : 축종별로 차이는 있으나 전반적으로 수급 안정세 유지

- **한육우** 사육두수는 '05.6월 현재 1,757천두로 전년동기(1,627천두) 대비 8% 증가, 산지숫소 가격은 4,301천원(전년동기대비 19.0%상승)
  - 산지숫소(500kg) : ('04.9) 3,613천원 → ('04.12) 3,740 → ('05.4) 3,634 → (9.15) 4,301
- **돼지** 사육두수는 '05.6월 현재 전년동기 대비 2.6%감소한 8,786천두 수준, 산지가격은 250천원(전년동기대비 0.8%증가)
  - 산지가격(100kg) : ('04.9) 248천원 → ('04.12) 257 → ('05.4) 247 → (9.15) 250
- **닭** 사육두수는 '05. 6월 현재 전년대비 21.7% 증가한 149백만수 수준
  - 육계(원/kg) : ('04.9) 1,224 → ('04.12) 1,318 → ('05.4) 1,901 → (9.15) 832
- **우유**는 '04. 9월 가격인상 등에 따른 소비부진으로 **분유재고** 증가
  - 분유재고 : ('04.9) 4.6천톤 → ('04.12) 5.7 → ('05.4) 11.4 → ('05.8) 10.7

### 3. 농업재해 대책 추진현황

- 현재까지 대설, 우박, 풍수해 등 8차례 자연재해(대설 2건, 우박 2, 호우 2, 서리 1, 강풍 1) 발생
- 농작물 침수(44천ha), 농경지 유실·매몰(1,930ha), 수리시설 파손(482개소), 농업시설 파손(314ha) 및 가축 폐사(877천마리) 피해 발생
- 특히, 전북지역 호우(8.2~3)로 인해 농작물 침수(21천ha), 농경지 유실·매몰(1,677ha), 수리시설(369개소), 농업시설(62ha) 등 피해 발생
- 피해농가에 대해서는 재해지원기준에 따라 국고 869억원, 지방비 372억원을 보조 및 융자지원(총 1,241억원)
- 전북지역은 재해지원기준에 따른 지원(국고 526억원, 지방비 242억원) 이외에, 피해농가 특별지원 대책도 추진
  - 농지구입자금 원리금 상환연기(1년) 및 임차료 감면(45~100%)
  - 농업경영자금 추가지원(300억원),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1~2년) 조치
- 농림부를 포함한 농업관련기관의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중앙지원단을 현지 파견하여 농작물 및 농업시설물 복구 지원
- 제14호 태풍 ‘나비’(9.6~7) 피해에 대해서는 중앙재해대책본부 주관으로 관계부처 합동 현지 조사중(9.20~26)
- ※ 추석기간 중부권(아산, 예산, 천안 등) 호우피해도 정밀조사중

#### 4.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현황 및 대책

-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면적은 '97년 3.5천ha 수준에서 최근 8~9천여ha로 증가(피해액 : '02년 120억원 → '03, 180 → '04, 206)
- 멧돼지와 까치 등에 의한 과수, 벼의 피해가 큰 상황
-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등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미흡한 수준
- FTA기금 과수 생산·유통지원사업 지역을 대상으로 과수 분야 방조망 및 전기 목책기 등 피해방지 시설 지원
  - \* 지원실적 : ('04) 2,025백만원(국비 506) → ('05) : 6,371백만원(국비 1,593)
- 유해 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 및 퇴치방법 개발·보급
- 지자체의 농작물 피해예방 시설 및 피해보상 지원
  - 피해예방시설 : ('04) 1,059건(740백만원) → ('05.7) 1,268(2,251)
  - 15개 시·군에서는 자체 조례·지침 등을 통해 피해를 보상
- 9월말까지 환경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종합대책 수립중
- 유해 야생동물 포획허가 제도 개선
  - (현행) 피해접수 후 허가 → (개선) 상습피해지역 총기사용 사전허가
-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설치, 농작물 피해가 심한 지역 위주로 수렵장 설정, 수렵장 사용료 재원을 활용한 피해보상 지원 확대 등

## Ⅱ. 2006년 예산 및 기금 조정안 개요

### 1. 2006년 농림부소관 예산 조정안 개요

#### 가. 2006년 예산조정안 규모('05. 9. 21현재)

- '06년 농림예산 조정안 순계규모는 8조 8,821억 원으로 '05년(8조 5,257억 원) 대비 4.2% 증가(3,564억 원 증)
- 내부거래 지출을 제외한 일반지출 예산은 7조 3,281억 원으로 '05년(7조 2,030억 원) 대비 1.7% 증가(1,251억 원 증)
- 순사업비는 5조 6,591억 원, '05년(5조 3,624억 원) 대비 5.5% 증가

#### < '06년 농림예산 조정안 규모 >

(단위 : 억 원, %)

구 분	'05예산 (A)	'06 조정안 (B)	증△감 (B-A)	
				%
◇ 농림예산순계(I + II)	85,257	88,821	3,564	4.2
I. 일반지출예산	72,030	73,281	1,251	1.7
가. 순사업비	53,624	56,591	2,967	5.5
◦농가소득·경영안정	25,667	26,093	426	1.7
◦복지증진·지역개발	4,613	5,473	860	18.6
◦농업체질강화	8,271	10,556	2,285	27.6
◦생산기반조성·기계화	15,073	14,469	△604	△4.0
나. 양곡수급·채무상환	16,509	14,688	△1,821	△11.0
다. 기본적 경비	1,897	2,002	105	5.5
II. 기금전출금	13,227	15,540	2,313	17.5

## 나. 2006년 농림예산 조정안의 주요특징

□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농업·농촌대책 추진재원을 차질없이 확보**

○ '06년 **투융자 예산은 5조 1,810억원**으로 '05년대비 **4.9% 증액** 편성

\* 119조 투융자 규모(기금, 타부처 포함) : ('05) 9.8조원 → ('06) 10.3(증 0.5조원)

○ **직불예산은 '05년 대비 18.3% 증가한 1조 222억원**으로 확대

\* 직불예산 : ('05) 8,638억원 → ('06) 10,222(증 1,584억원)

\* 농림예산중 직불예산비중 : ('05) 12.0% → ('06) 14.0

□ **투융자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및 지원체계 개편**

○ **보조사업은 사업 평가결과와 연계하여 제도개선 적극 추진**

- 집행부진, 연례적 이월·전용·불용 발생사업은 예산 지원축소

- 탄력적 예산편성·집행을 위해 유사·중복사업의 **통폐합** 적극 추진

\* 수리시설개보수, 저수지준설, 수리시설 안전진단사업 통폐합 등

- 국고보조의 단계적 축소가 필요한 사업은 **일몰제** 시행

\* 마늘경쟁력제고,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농산물통합쇼핑몰 운영 등

○ **용자사업의 내실화를 위한 지원체계 개편**

- 금융기관 자금 활용이 가능한 재정용자는 **이차보전사업**으로 전환

\* 1천만원미만 농기계 구입자금, 농기계수리·부품장비, 농촌주택정비자금 등

- 농기계보관창고 용자사업은 **농업종합자금**으로 통합



## 다. 2006년 농림예산 조정안의 중점편성 내용

◇ 농업·농촌대책과 119조 투융자 및 삶의질 향상 5개년 계획의 실천을 재정적으로 뒷받침

### □ 농업인 생활안정을 위해 복지 및 소득지원 확충

- 건강보험료 경감율 50%('05 : 40%)까지 확대(666억원→1,359)
- 영유아양육비 지원대상 5ha미만 농가까지 확대(224억원→234)
- 고정직불금 단가를 ha당 6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인상(5,988억원→6,986)
- '04년 시범도입한 조건불리지역직불 전국 확대(123억원→532)
- 농신보 기금 건전화를 위해 정부출연 확대(4,000억원→5,780)

### □ 친환경·고품질 농축산물 생산·유통 및 안전성 강화

- 광역 친환경농업단지 3개소 시범사업 추진(4억원→75)
-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 본격시행 및 안전성 관리 강화(206억원→257)
- 고품질 쌀 생산·유통을 위해 RPC건조저장시설 확대(93억원→133)

### □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지식·기술농업 확산 및 수출 촉진

- 농림기술개발 등 농업분야 R&D투자 확대(645억원→785)
- 산·학·연을 연계한 지역농업클러스터 시범사업 추진(120억원→200)
- 농업전문인력에 대한 교육훈련지원 강화(36억원→122)
- 수출유망품목 발굴·홍보 등 해외시장개척 지원 강화(127억원→151)

## 2. 2006년 기금운용계획 조정안 개요

### 가. 2006년 기금운용계획 조정안 규모('05.9.21 현재)

□ '06년 농림부소관 7개 기금의 총 운용규모는 7조 5,598억원  
으로 '05년보다 34.9% 증가(증 19,555억원)

○ '06년 일반지출 규모는 3조 8,261억원, '05년보다 0.9% 감소

(단위 : 억원)

구 분		'05계획 (A)	'06계획(안) (B)	증 △ 감 (B - A)	%
기 금 별	◦농산물가격안정기금	20,200	19,761	△439	△2.2
	◦농지관리기금	15,049	16,172	1,123	7.5
	◦축산발전기금	9,379	9,941	562	6.0
	◦쌀소득보전변동직불기금	2,043	2,683	640	31.3
	◦FTA이행지원기금	1,662	2,201	539	32.4
	◦농작물재해재보험기금	336	315	△21	△6.4
	◦양곡증권정리기금	7,374	24,525	17,151	232.6
<b>합 계</b>		<b>56,043</b>	<b>75,598</b>	<b>19,555</b>	<b>34.9</b>
기 능 별	<b>I. 일반지출</b>	<b>38,600</b>	<b>38,261</b>	<b>△339</b>	<b>△0.9</b>
	◦ 생산기반조성	4,290	3,907	△383	△8.9
	◦ 유통개선	19,430	19,138	△292	△1.5
	◦ 기술개발·인력육성	360	412	52	14.4
	◦ 소득보전·부담경감	2,278	2,890	612	26.9
	◦ 수급안정 등	12,242	11,914	△328	△2.7
	<b>II. 정부내부지출</b>	<b>13,205</b>	<b>32,627</b>	<b>19,422</b>	<b>147.1</b>
	<b>III. 여유자금운용</b>	<b>4,238</b>	<b>4,710</b>	<b>472</b>	<b>11.1</b>

## 나. 2006년 기금운용계획 조정안의 중점 편성 내용

### □ 쌀농가 소득보전 소요 등 농가 소득 및 경영안정 적극 지원

- 쌀농가의 소득 안정을 위하여 쌀소득보전 변동직불금 지원 소요 반영(1,376억원 → 1,731)
- 농업경영상 위기에 있는 농가의 경영회생 지원을 위해 농지은행 농지매입제도를 신규 도입('06시범사업 : 100억원)

### □ 농축산물 유통의 선진화를 위한 유통개선 지원 확대

- 산지의 규모화·전문화 촉진을 위해 공동마케팅 조직을 중심으로 산지유통활성화 집중 지원(5,350억원 → 5,442)
- 소비자유통개선 및 유통시설현대화 지원 확대(1,601억원 → 1,852)
- 축산물도축·가공업체 지원, 브랜드경영체 종합지원 등 축산물 유통개선 지원을 확대(3,749억원 → 3,825)

### □ 대내외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농업경쟁력 강화 지속 지원

- 규모 확대를 통한 쌀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영농규모화 사업 지속 지원(4,769억원 → 4,663)
- 한·칠레 FTA체결 이후 과수산업의 구조조정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을 확대(1,607억원 → 2,147)

### 3. 119조 투융자재원 확보 현황

□ 119조 투융자계획 중 '06년 투융자소요액 10.3조원을 '06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

○ 연차별 119조 투융자 계획 : ('04~'08) 50.5조원, ('09~'13) 68.8조원  
 - ('04) 8.8조원, ('05) 9.8, ('06) 10.3, ('07) 10.7, ('08) 10.9

(단위 : 조원)

		'05투융자 (A)	'06투융자 (B)	증△감 (B-A)	
					%
분 야 별	◦농업체질강화, 경쟁력제고	3.0	3.4	0.4	13.6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	2.4	2.3	△0.1	△5.3
	◦농촌복지증진및지역개발	1.0	1.2	0.2	25.8
	◦농산물유통혁신	0.8	0.8	-	-
	◦산림자원육성	0.6	0.7	0.1	6.1
	◦농업생산기반정비	2.0	1.9	△0.1	△2.5
합 계		9.8	10.3	0.5	5.6
소 관 별	◦농림부	8.2	8.5	0.3	4.8
	-예산 투융자	5.0	5.2	0.2	4.9
	-기금 투융자	2.2	2.2	-	-
	-금융기관자금	1.0	1.1	0.1	10.0
	◦농촌진흥청(예산)	0.3	0.3	-	-
	◦산림청(예산)	0.8	0.9	0.1	9.1
	◦타부처(농특세예산)	0.5	0.6	0.1	11.5

### Ⅲ. 농정혁신 추진상황

#### 1. 현장농정 구현을 통한 농정신뢰 회복

◇ 현장농정, 참여농정을 통해 농업인과 정부간 벽을 허물고 상호협력의 기반을 마련

- 「우리농업 희망찾기 운동」을 전개하여 농업인의 자긍심 고취
  - 「우리농업 희망찾기 정책공모제」를 통해 농업인 단체 등의 정책 아이디어를 수렴('05.2.1~4.30), 포상 및 신규사업 반영 추진
    - '05 상반기 중 농민단체에서 66건 공모, 18건 포상 및 5건 정책반영
  - 농업인·소비자 등 전국민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제2차 공모 실시(9.9~10.10) 및 우수경영체 성공사례 가이드북 발간 예정(11월)
- 課·개인 단위 농촌현장 방문 및 농림부 공직자와 농업인간 결연을 통해 현장농업인과의 정책 네트워크 구축
  - 전직원 현장체험 참여, 개인별 2~3 농가와 자매결연 체결
    - 자매결연 농가에 장관 서신 발송(6.30), 지속적으로 현장애로사항 청취
  - “課의 날”을 도입, 과 전직원이 3~4개월에 1회씩 농정현장을 방문하여 현지농업인, 유통인 등과 정책 토론회 등 실시
    - 상반기까지 농림부 전체 39개과가 참여, 하반기에는 원거리 현장 방문도 추진하는 등 내실있게 운영

- 정책 결정·집행·평가 과정에 농업인·소비자 등 고객 참여 확대
  - 장관주재 ‘순회농정토론회’(4회), ‘농업인·소비자 단체와의 간담회’(7회) 등 정책현안 설명 및 의견 교환 정례화
  - 쌀대책 등 주요정책 수립 및 농업통상회의 참석시 농업인 단체의 참여를 활성화하여 현장의견 반영
    - \* 쌀협상 추가보완대책 마련을 위한 농민단체 합동간담회 개최(4회), DDA농업협상에 농민단체 대표 동행(3회, 총 17명) 등
  
- 농업정책에 대한 고객평가제도 도입, 내년 사업계획 수립시 평가결과를 반영
  - 양정제도 개편, 농지은행 등 27개 농림부 주요사업에 대해 정책내용의 적절성, 의견수렴정도 및 전반적 만족도 등 조사
    - \* 조사기간 : '05.8.26 ~ 10.25(2개월), 조사기관 : 리서치 앤 리서치
  
- 농림사업 신청·처리·결과공개 등 전과정을 온라인화하는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AGRIX) 구축, 사업 투명성 제고
  - 금년은 물류표준화 사업 시범적용, '09년까지 170여개로 확대
  
- 우리 농업·농촌의 가치, 농식품 소비촉진 등에 관한 체계적인 대국민 홍보를 위해 「농촌정보문화센터」 설립('05. 7.1)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설기관 형태, 소장 이하 16명으로 구성

## 2. 규제완화 및 불편사항 해소

◇ 농정에 대한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해 규제·민원 등 불편사항을 원점(Zero-Base)에서 일제 정비하고 고객서비스 개선

### □ 영농활동에 불편을 주는 규제·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

○ 민원인·기업인 등 22천명에 대해 장관 서한 발송('05.5.4), 200여 농업인·소비자 단체를 대상으로 제도개선 수요 조사 실시

○ 총 569건 제안 접수, 농업인·소비자 단체가 참여하는 **농림제도개선실무협의회**에서 118건의 개선과제 선정('05.8.2)

\* 3차례 농림제도개선실무협의회를 개최(6.16, 7.22, 8.2), 단기 개선과제 59건, 중장기 추진과제 59건 선정

○ 선정된 과제에 대해서는 **민·관 공동의 농림제도개선협의회**에서 추진상황 및 결과를 지속점검할 예정

### □ 민원처리 시스템 개선을 통해 민원만족도 제고

○ **민원고객관리(Happy Call)제도**를 도입('05.3.1), 처리절차 및 담당자 등 사전안내, 완료후 처리결과 설명 및 의견 청취(8월까지 821건)

○ 민원만족도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민원처리에 대한 불만사항을 파악·개선하는 등 민원 발생요인 최소화

## IV. 쌀산업 대책 추진

### 1. 수급 전망 및 대책

□ 작황이 평년작일 경우 생산량은 3,342만석 수준('04년 3,473만석)

○ '06년말 재고는 785만석 수준으로 예상('05년 672만석)

	2002	2004	2005(p)	2006(p)
○ 공 급 량	4,864 <sup>만석</sup>	3,997	4,350	4,184
- 생 산 량	3,830	3,091	3,473	<b>3,342</b>
○ 수 요 량	3,859	3,277	3,678	3,399
- 대 북 지원	278	73	278	-
○ 재 고 량	1,005	720	<b>672</b>	<b>785</b>

\* '02년부터 대북지원을 통해 국내 공급과잉을 많이 해소

□ 8월 이후 쌀값이 내려가는 추세를 감안할 때, 수확기 쌀값은 지난해 보다 상당수준 낮게 형성될 것으로 전망

○ 산지유통업체는 수확기 쌀값의 추가 하락 예상과 '04년산 이월 재고가 많아 수확기 초기 매입에 소극적일 것으로 전망

\* 산지쌀값 : ('04수확기) 161,630원/80kg → ('05.9.15) 153,700(△4.9%)

□ '05년 공매물량 축소('04년 165만석→'05년 40), 산물벼 150만석 매입 발표(9.13)등 수확기 물량흡수 분위기는 일정수준 조성

○ '05년 수확기대책은 9.15 작황을 감안, 별도로 추진할 계획

○ 쌀협상 비준에 대비, 소득보전 등 선대책과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한 보완대책을 차질없이 추진, 추가 보완사항은 검토중



## 2. 쌀농가 소득보전 대책

- 목표가격과 수확기 전국 평균 쌀값과의 차이 85%를 보전하는 쌀소득보전직불제 시행을 차질없이 준비
  - 지급대상 농업인 등록신청을 8.31일 1차 마감(1,053천농가, 1백만ha)
  - 부정지급이 되지 않도록 농업인 등록사항 종합점검, 시·군에 부당신청 신고센터 설치·운영(9~10월)
  - 농업인 준수 의무사항은 10월까지 현지확인을 완료할 계획
    - 농지 형상 및 기능유지(농업기반공사) : 위반시 고정직불금 지급제한
    - 농약잔류허용기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권장시비량 기준(농업기술센터) 준수 여부 확인 : 위반시 변동직불금 지급제한
- 목표가격과 농업진흥비진흥지역에 대한 고정직불금 차등단가 수준을 고시(10월말)하고, 12월에 고정직불금 지급 계획
  - 농업진흥지역은 이용제한에 대한 보상으로 우대지원 필요 (농지법 제35조 및 쌀소득등의보전에관한법률 시행령 제5조)
- 변동직불금은 수확기 쌀값('05.10~'06.1) 확정 후 '06. 4월 지급 예정
  - 수확기 산지쌀값 조사는 농관원이 104개 시·군(476개 업체)에서 당해 연도산 대표적인 정곡 출하가격을 조사하여 적용

### 3. 양정제도 개편 추진상황

#### 가. 공공비축제 세부 시행방안

##### (1) 비축 규모

- FAO권고 수준과 국내 연구결과를 고려, 비축규모(양곡연도말)는 600만석(2개월분 또는 소비량의 17%)으로 운용
- 공공비축 규모는 쌀소비량 등을 고려하여 3년 뒤('08년) 재검토
  -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소비량 15~19%, 서울대는 소비량 16% 수준 제시
- 기준물량 600만석은 국내산으로 충당한다는 원칙하에 수입쌀 재고를 연차적으로 축소하여 운용
  - \* '05년말 재고 : 국내산 2,064천석, 수입산 3,665천석

##### (2) 매입·판매물량 규모

- 공공비축 연간 매입물량은 '300만석' 수준 매입 원칙
- 금년도는 제도 시행 첫 해인 점을 감안하고 수확기 농가의 판로확대를 위해 400만석 매입
- 국내산 재고를 늘리기 위해 '06년에는 관수용(70만석)·공공용(91만석) 등을 포함하여 300만석 판매

### (3) 매입 대상 및 가격

#### □ 건조 벼는 농가로부터 포대로 250만석 매입

- 매입가격은 전국 동일(단일)가격을 적용(농관원 조사가격)
- 「쌀소득보전직불제」 목표가격(170천원)의 80%수준(지난해 산지 쌀값의 85% 수준)을 우선 지급
  - 매입기간(10월 ~ 12월)의 산지쌀값 농관원 조사결과 및 등급에 따라 나머지 잔금을 차등 지급

#### □ 산물벼는 RPC를 통해 150만석 매입

- 매입가격은 RPC가 결정한 매입시점의 산지쌀값으로 매입
- 당해 RPC가 일정기간 보관 후 정부로부터 인수하여 판매하되 인수가격은 쌀값(전국평균)의 변동율을 적용하여 결정

### (4) 매입기간 및 물량배정

#### □ 10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비축용 쌀 매입 실시

- 산물매입은 10월 1일부터, 포대매입은 10월 20일부터 시작

#### □ 매입물량은 전년도 수매실적, 농업진흥지역 논면적 등을 감안하여 시·도별로 배정, 시·도는 자체 배정계획을 수립

- 농가별 물량배정은 마을별 배정물량 범위 내에서 리·통 자체협의회의 자율협의로 결정

## 나. 수입쌀 관리방안

◇ 의무수입물량은 전량 국영무역으로 수입, 수입물량 10%는 소비자 시판용으로 수입·관리, 나머지는 가공·주정용으로 활용

### (1) 소비자 시판용 관리방안(국회비준시 시행)

- 금년도 수입물량(225,575톤)은 기존쿼터(205,228톤)와 증량쿼터(20,347톤)로 구분, 각각 10%씩을 소비자 시판용으로 구입
- 수입형태는 부정유통 최소화, 국제거래 관행 등을 반영하여 백미 포대로 수입하고, 포대에는 원산지를 표시
  - \* 현미로 도입하여 국내도정과정을 거칠 경우, 국내산으로 둔갑·불법 혼합 우려
- 연간매출액이 일정기준 이상인 업체를 대상으로 공매를 실시하여 국내유통 투명성 확보
- 수입이익금(Mark-up : 낙찰가와 수입원가 차액)을 징수, 변동직불금 재원으로 활용, 비슷한 품질의 국내산 가격 수준으로 판매 유도

### (2) 가공용 관리방안

- 가공용 수입쌀은 현행대로 일정자격 이상 가공업체에 공급하되 수입쌀 재고 축소를 위해 가공·주정용 공급을 단계적으로 확대
  - \* 가공용 공급 : ('05) 9만톤 → ('06) 10만톤 → ('07) 10만톤
  - \* 주정용 공급 : ('05) 11만톤 → ('06) 18만톤 → ('07) 19만톤

#### 4. 쌀 품질고급화 보완대책

◇ 수입쌀과의 시장경쟁에 대비, 맛있고 안전한 세계 최고 품질의 우리쌀 공급을 위한 대책 수립('05.7)

**재배 단계** : 지력증진 및 들녘별 고품질 품종 통일 추진

- 지력증진을 위해 겨울철 녹비작물 재배확대('05 : 151천ha→'10 : 330) 및 유기질 비료 공급확대('05 : 70만톤→'07 : 150)
- 금년까지 170개 시·군에 토양정보시스템을 구축, 농경지 특성에 맞는 최적 작물선정, 작물별 시비처방서 등 제공
- '10년까지 9~10개 고품질 품종 개발('05년 운광·고품·삼광 품종개발, 보급준비), 정부 보급종 공급률 60%로 확대('05 : 32%)

**유통 단계** :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유통체계 확립

- 유전자(DNA) 분석('05.1월 쌀품종 DNA 판별기술 개발) 등을 통한 수입쌀 판별체계 구축으로 수입쌀의 부정유통 단속 강화
- 수입찜쌀 원산지 특별단속 실시('05.7~8월, 228개반 투입)
  - 1,300개 판매업소를 단속, 허위표시 등 9건 적발, 형사입건 등 조치
- 소비자단체 주관 시중유통 브랜드 쌀 평가 및 우수브랜드 육성
  - \* '05.9월 시중유통 브랜드쌀 평가 결과 12개 우수브랜드 발표

**수확후 관리단계** : RPC 기능확충 및 경영혁신

- 부족한 RPC 건조·저장시설 조기 확충을 위해 균특회계에서 농특회계로 환원하여 사업량을 안정적으로 확보
- '06년에 RPC 건조·저장시설 110개소 확충('05년 50개소 설치중), 지원단가(4.5억원→6) 및 보조율(민간 35%→40) 상향조정 추진
  - 원료투입구가 1개소인 RPC는 1개소 이상 추가 설치
- 통합RPC 및 경영우수 RPC를 중심으로 저온저장시설 지원 (개소당 400톤), 신규 건조·저장시설에 냉각장치 설치
  - \* 저온저장시설 : ('05) 3개소(개소당 2.5억원 지원) → ('10) 27('06년부터 3억원)
- 금년도 RPC 경영평가 지표를 개선(3~7월),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액과 지원금리(0~2%) 차등지원
- 경영평가 지표 중 수익성 관련 지표 배점은 축소(농협 55점→40, 민간 55점→35), 고품질쌀 생산 노력 등 배점을 강화
- 농협 RPC는 1개 시·군 1~2개로 통합, 책임경영체제 구축
  - \* '05년 통합추진RPC : 경기 용인, 충남 부여, 전북 김제·고창, 전남 함평
- 통폐합 RPC에 대한 경영컨설팅 비용(30백만원 이내) 및 무이자 자금 지원(3년간 통합 개소당 10억원)을 통해 조기 경영정상화 추진

## V. 주요 농정 추진현황

### 1. DDA 농업협상

#### 가. 최근 동향 및 전망

- 수출입국간 입장차이로 '05.7월 세부원칙 초안 제시에 실패
  - 9월 농업특별회의 개최(9.13~16) 이후 소규모 각료회의(10월), WTO일반이사회(10월, 12월), 홍콩각료회의(12월) 예정
    - 9월말까지는 주요국간 회의(9.22~23 주요 4개국 각료급 회의, 9.29~30 주요국 고위급 회의 등) 예정
  - Pascal Lamy 신임 WTO 사무총장은 12월 홍콩각료회의까지 세부원칙을 확정할 예정임을 언급, 성사여부는 불투명
- Falconer 신임 농업협상그룹 의장은 9월 회의(9.13~16)에서 협상 전반에 대한 **총체적인 접근방식**을 강조하면서 **향후 협상을 가속화**하려는 의지를 밝힘
  - 관세감축폭 등 구체적인 수치 논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향후 회의를 수시로 개최할 것임을 언급
- 관세감축공식과 민감품목의 신축성 문제, 관세 및 국내보조의 구체적 감축폭 등이 협상 진전의 관건으로 전망

## 나. 향후 대응방향

- 관세 감축 최소화, 민감품목에 대한 신축성 확보, 관세상한 설정 저지 등에 협상력 집중
  - 수출국들의 관세상한 주장에 대해 형평성, 급진성 등을 부각하여 수용불가 주장
  - 민감품목은 대상 품목 확대 및 수입쿼터 증량 최소화에 노력
  - 개도국에 대한 특별품목은 대상품목 확대보다는 특별대우 확보에 중점을 두고 대응
- 수입국 그룹(G10)·개도국 그룹(G33) 등 유사 입장국과 전략적으로 공조하여 우리의 관심사항을 최대한 반영
  - 세부원칙 확정 이후 이행계획서 작성 및 검증 단계에서는 농업분야 개도국 지위 확보에 협상력을 집중
- 협상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노력 강화
  - DDA 농업협상 주요회의에 농민단체 대표 등의 참여를 통해 투명성 제고 노력 지속
    - 농민단체장(6월), 농민단체 실무대표(7월), 농민단체·국회의원 보좌관(9월) 회의 동행
  - 농업인단체 설명회(6회), 언론인 워크숍(3회), 국회 보고(3회) 등



## 2. FTA 추진동향

### 가. 추진개요

□ 싱가포르, EFTA와의 FTA는 거의 마무리 단계

○ 싱가포르와는 '04.11월 협상을 타결, 9월중 국회에 비준  
동의안 제출 예정('05.8.4일 서명)

- 싱가포르는 비농업국가이나, 주변 아세안 국가의 농산물이 우회  
수입되는 가능성에 대비하여 엄격한 원산지 규정 마련

\* 신선농산물은 완전생산기준에 준한 원산지기준을 적용, 가공농산물은  
충분한 변형 또는 높은 부가가치가 싱가포르에서 발생한 경우만 인정

○ EFTA\*와는 '05.1월부터 협상을 시작하여 7.4~8일간 개최된  
제4차 회의에서 실질적으로 협상 타결

\* EFTA 국가 :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 EFTA는 지리적으로 멀어 농산물 교역규모가 적고 대부분의  
민감품목(쌀, 육류, 낙농제품, 과실류, 양념류 등)은 양허 제외

□ 일본과는 농산물 양허수준에 대한 입장차이 및 김의 수입량  
제한 문제 등으로 당분간 논의재개는 어려울 전망

□ 아세안\*·캐나다와는 현재 협상이 진행중

\* ASEAN : 태국, 인니, 말레이, 필리핀, 베트남, 싱가포르,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브루나이

## 나. 추진 중인 FTA협상

### < 한·아세안 FTA >

- '04.11월 한·아세안 FTA 협상개시 선언 후, 금년 연말까지 상품분야 타결을 목표로 5차례 협상을 진행
  - 현재 관세인하계획(Modality)을 집중 논의 중
- 우리측은 가능한 높은 수준의 관세철폐를 주장하면서도 민감품목은 현행관세 유지 또는 일부만 감축할 것을 주장
  - 과채류와 축산이 민감분야로 협상에 따라 피해가 예상되는 가운데 약 300개 품목을 민감품목으로 검토중
- 아세안측은 높은 수준의 관세철폐에 소극적이나 민감품목의 경우에도 현행관세 유지에는 반대
  - 관심품목인 열대과일·축산물의 관세인하 요구 전망

### < 한·캐나다 FTA >

- 지난 7.15 협상개시를 선언, 1차협상을 실시('05.7.28)하고 협상분과, 회의 시기 등 향후 일정에 합의
  - 2차협상은 9.27~30일 개최기로 하고 2개월에 한번씩 협상을 진행하여 1년 안에 협상을 완료하기로 합의
- 낙농, 쇠고기, 돼지고기 등 축산물 양허수준이 쟁점이 될 전망

## 다. 대응방향

- 협상과정에서 농업부문에 대한 충분한 고려 반영
  - 민감품목은 양허제외 또는 충분한 경과기간을 설정하고, 세이프가드 및 원산지 기준 설정 등 피해 최소화 장치 반영
  - FTA로 인한 농업부문 영향분석과 종합적인 대응전략 마련을 위해 연구용역 추진중(한국농촌경제연구원, '05.4 ~ '06.3)
    - 대상국별 전담 전문가 지정, 체계적인 정보 및 영향분석 실시
- 협상대응력 제고를 위한 조직역량 강화 및 참여 확대
  - 농림부내 FTA협상을 전담할 자유무역협정과 신설('05.4)
  - 품목전문가 등으로 「품목별 농업통상자문위원회」 운영('05.6)
    - 민감품목 선정, 관세인하 수준 및 예상피해 등에 대한 자문
      - \* 경증·가공식품분과, 축산분과 2개분과에 품목별 생산자단체 중견 실무자 및 학계 전문가 등 23명 참여
  - 농경연, 유통공사, 농협 등으로 협상지원 네트워크를 구성, 기관별 FTA관련 D/B를 공유하는 등 정보공유 추진
- FTA 진전에 따라 예상되는 피해품목에 대해서는 국내 보완 대책을 수립하는 등 철저히 사전대비

### 3. 전문 농업경영체 육성

◇ '13년까지 20만호 정예인력육성을 위해 신규인력 유입 및 기존 농업인의 정예화 대책 추진

#### 가. 농업인 경영능력 제고 지원

##### □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전문교육 확대 실시

○ 농업인이 교육기관과 교육과정을 스스로 선택하여 교육 받을 수 있도록 교육쿠폰을 지급하여 교육 실시

- 친환경농업(34개 시·군)과 정보화 교육(공모중) 분야에 시범 실시

○ '06년부터 지역농업교육과 생산자단체 중심의 품목별 전문 교육이 활성화되도록 기반 구축

- 지자체·농협·대학 등 지역농업교육기관이 지역별 특성화 교육 실시

- 품목별 전문교육은 품목관련 생산자단체와 연계하여 추진

##### □ 전문기술 및 경영마인드 제고를 위한 민간컨설팅 지원 강화

○ 농가의 컨설팅비용에 대한 보조지원 및 지원대상분야 확대

\* 보조율 : 50% → 70, 지원대상 : 원예, 축산 → APC·RPC·쌀전업농 추가

○ 규모화·전문화된 컨설팅업체를 농림부가 직접 공모('05.11월)

##### □ 내년부터 우수한 선도농에게는 추가 농업자금 융자지원

○ 1,500명에게 1,200억원(1인당 평균 8천만원, 3%) 지원 계획

## 나. 젊고 유능한 농업인력유입 기반 확충

- 젊은 우수인력이 농업부문에 신규 유입될 수 있는 기반 조성
  - 젊은 우수인력 유입을 위한 3개 시범사업 추진중(각 100명)
    - \* (농업인턴제) 18~32세 미취업청소년, 5억원 / (대학생창업연수) 농과대 3~4학년, 3억원 / (창업농후견인제) 창업농, 5억원
  - 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800억원)의 지원상한 확대(1억원→1.2)
  - 신규 후계농업인은 농업종합자금으로 지원(1,675명, 753억원)
- '06년부터 대학생, 귀농자에 대한 차별화된 프로그램 준비
  - 농과대학생중 영농정착 희망자를 대상으로 차별화된 교육 실시
    - 현장실습비, 성공사례 교육비, 해외연수비, 학자금 등 지원
    - \* 강원대, 공주대, 제주대 시범실시 후 지원대학과 분야 확대 추진
  - 귀농자 등 영농희망자를 대상으로 3~6개월간 기초적인 영농교육을 실시하는 직업훈련과정 운영
- 농고·농대생 등 잠재 농업인에게 성공사례 홍보 등을 통한 농업·농촌 희망찾기 교육을 적극 추진
  - 금년부터 농대생 등에게 선도 농업인의 성공사례 특강실시(농고 10개교, 농대 20개교), 내년부터 대폭 확대 계획
  - '06년부터 매년 1~2천명 우수 선도농업인을 발굴, 벤치마킹 유도

## 4. 농지은행사업 추진

### 가. 사업추진 배경

- 시장개방 확대에 의한 농지가격 하락 등 외부 환경변화에 따른 농지시장의 불안정에 미리 대응할 필요
  - 농지의 유동화지원, 체계적인 농지수탁관리, 농가 경영회생 지원 등을 통해 농지의 효율적 이용 및 영농규모화 촉진
- 농지은행 사업의 법적 근거마련을 위해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개정 추진(10월중 국회제출 예정)
  - 농업기반공사의 사업범위에 농지은행사업을 포함

### 나. 세부 추진상황 : 4가지 세부사업별 단계적 시행

#### □□ 농지유동화정보 제공사업

- 농지 매도·매입·임대, 농지가격 등 농지유동화 정보를 체계적 수집, 농지를 매매·임대차하고자 하는 이해관계자에게 제공
- 농지유동화 정보는 농지은행 포털('http://www.farmlandbank.or.kr' 또는 '농지은행')을 통해 제공
  - '05. 7.1일부터 농지매물·거래동향시세정보를 제공, '06. 1월부터 농촌주택 매물·귀농안내·농촌정주 및 농촌관광 정보 등 추가 제공

## □□ 농지의 임대·매도 수탁관리사업

- 소유자가 농지의 임대 또는 매도를 공사에 위탁하는 경우에 이를 수탁하여 전업농 등에 임대·매도(10.1일부터 시행)
  - 전업농 등의 경영규모 확대 및 고령농업인의 이·탈농을 지원
- 농지의 수탁기준을 엄격하게 운용, 제도의 실효성 확보
  - 일정규모 이하의 농지나 개발예정지역안의 농지 등은 수탁대상에서 제외하고, 중도해지시 위약금 부과 등 임차인 보호강화

## □□ 경영회생지원을 위한 농지매입사업

- 경영위기가 심각한 농가에 대해 농지은행 제도를 통해 회생 지원
  - 소유하고 있는 농지와 그에 부속한 유리온실 등 농업용시설을 농지은행이 매입하여 당해 농업인에게 장기임대
  - 농업인은 농지·시설 등 매각 대금으로 부채를 상환하고, 다시 임대받아 영농에 종사, 임대기간중 환매할 수 있는 권리보장
- '05년말까지 농업인 등 의견을 수렴, 세부시행방안 마련, '06년 상반기 시행을 위해 예산확보(66ha, 100억원)

## □□ 농지시장안정을 위한 농지매입·비축사업

- 농지가격이 급격히 하락할 경우를 대비해서 농지은행이 농지를 매입하여 비축한 후, 농업인 등에게 매도 또는 임대하는 제도적 근거 마련

## 5. 협동조합 개혁

- ◇ 지난해 농협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정비를 마무리하고, 법외 개혁과제(50개 과제)도 병행 추진

### 가. 중앙회

- 대표이사 중심의 책임경영체제로 조직·제도를 정비
  - 개정 농협법에 따라 지난 7월부터 집행간부(상무급)이하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각 대표이사가 행사
  - 대표이사별로 소이사회를 구성('05.9), 의사결정의 전문성 제고
- 마케팅 기능 확충 및 조합의 경제사업 지도·지원 기능 강화
  - 조합의 농산물 거래교섭력 강화를 위해 중앙회 내 도매유통·축산유통 사업본부(203명)를 설치('05.7)
  - '07년까지 무이자자금 1조원을 추가 조성('05:7천억원)하여 경제사업 우수조합을 중심으로 차등 지원
    - 조합평가기준 및 차등지원의 기준도 경제사업 등 농업인실익사업 비중을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할 예정(현재 : 50%→ '10 : 70%)
- '06.6월까지 신·경분리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용역 추진중('05.5 ~ '06.4, 농협중앙회)
  - 농림부내에 「신·경분리추진위원회」를 구성('05.10월)할 계획



## 나. 일선 조합

### □ 경제권·생활권 중심의 조합 합병을 통한 규모화 유도

- 구조개선법 제정('02) 이후 부실조합정리를 추진한 결과 '01년 1,383개에서 '05년 8월 현재 1,319개로 64개 조합이 소멸
  - \* 구조개선법에 의한 소멸 60개('05 : 2개), 자율합병 등 11('05 : 5), 신설 7
- 현재 조합 스스로 또는 중앙회의 합병권고 등에 따라 142개, 구조개선법에 따라 19개 조합에서 합병 추진 중(총 161개)
  - 합병시 소멸 조합당 정부가 2억원('06부터 5억원), 중앙회는 30억원(최고 60억원) 무이자자금 지원

### □ 조합의 책임경영체제 구축 및 경제사업 활성화 도모

- 자산 2천억원 이상 조합(대상조합 176개)에 상임이사를 의무도입
  - 현재 45개 조합에서 도입, 올 하반기에 16개 조합 도입 예정
- 조합공동사업법인 활성화를 위해 일선조합과 동등한 법인세·취득세 감면혜택 부여('05 정기국회에서 세법개정시 반영 예정)

### □ 경영 투명성을 강화하여 조합원 중심의 조합 운영을 촉진

- 자산 총액 500억원이상 조합(909개)은 외부회계감사 의무화
- 금년부터는 최소한 잉여금의 20%이상을 조합원에 배당하고, 총 배당액의 20%이상을 이용고 배당에 우선토록 제도 개선
- 조합에 「운영공개방」을 설치, 임직원 급여기준 등 의무 공개

## 6. 친환경농업 및 농축산물 안전성 관리 강화

### 가. 자연순환형 친환경농업 확산

◇ 농림부내 「자연순환농업팀」을 설치('05.9), 가축분뇨 등을 자원화하여 경종농업에 연계·활용하는 세부계획 수립 추진

- 친환경농업의 저변확대를 위한 부담경감 및 기반마련
  - 농가사용량이 많은 천적, 키토산, 목초액 등 3종의 농자재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05.2), 연간 50억원의 세부담 경감효과
  - 사료용 **총채보리** 재배 확대('04 : 2,681ha → '05 : 6,281)
    - '06년 총채보리 공급확대를 위해 10월부터 8,764ha에 파종예정
  - 금년 사업모형 개발을 거쳐 '06년에 **자연순환형 광역친환경 단지** 3개소 시범사업 실시(수계별 단지당 1,000ha규모)
-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제고를 위해 「친환경농업육성법」 개정 추진(10월중 국회제출 예정)
  - 4단계로 운영되던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를 3단계로 축소하고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유통업자에 대한 인증제 추가
- 환경부와 공동으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가축분뇨 자원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나. 농축산물 안전성 관리 강화

- ◇ 농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농장에서 식탁까지 일관된 안전성관리체계 구축노력 지속

### < 농산물 안전성 관리 >

#### □ 농약 오·남용방지 등 농업인교육 및 안전성 조사 강화

- 시·군 영농설계교육('05 : 56만명), 전국순회교육('05 : 1천명) 실시
- 깻잎, 상추 등 취약농산물에 대한 조사물량을 확대, 집중조사 실시
  - \* 조사물량 : ('04) : 60천건 → ('05계획) 62, ('05.8월 현재 36천건 실시)
  - \* 부적합률 : ('03) 1.5% → ('04) 1.3% → ('05 상반기) 1.1%

#### □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 및 이력추적관리제도(Traceability)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농산물품질관리법 개정('06.1.1 시행)

- '06년부터 GAP제도 본격시행을 위해 시범사업('05 : 965농가) 및 전문가양성('05 : 140명), 소비자 홍보 등 추진

#### □ 찐쌀·김치·고추 등 수입급증 품목과 유통성수기·부정유통 취약 시기에 테마별\*로 원산지 전국 일제 단속 추진

- \* 제수선물용(1·2월, 8·9월), 건강식품(4월), 육류(7·8월), 양념류(김장철) 등
- 단속원을 대도시 집중 투입, 상습·대형 위반자는 구속수사
  - 구속수사 ('04) 23명 → ('05.8) 30, 위반업체 ('04) 6,201개소 → ('05.8) 2,387

○ 명예감시원에 생산자소비자단체를 대폭 보강, 합동 단속 추진

- 명예감시원 확대 : ('04) 2.8천명 → ('05) 15천명 → ('06) 20천명

○ 수입쌀 시판에 대비하여 “수입쌀” 원산지 단속 전담반(32개반 64명) 구성('05.7.1), 시판즉시 전국 일제단속 실시예정

□ GMO 농산물 분석기법 개발 강화('04 : 13개 기법 → '05 : 16개)

< 축산물 안전성 관리 >

□ 선진 위생관리기법인 HACCP 적용 확대

○ '05.1월부터 사료공장 HACCP 도입(92개중 16개소 도입) 및 연말까지 돼지 사육단계 HACCP 지침 개발 추진('06년부터 농장 적용)

○ 도축장 HACCP 운용평가 실시('05.2~5월, 119개소 중 상위 39, 중위 41)

○ 판매업소 HACCP적용('05.1) 및 집유장 HACCP 지침개발('06년 적용)

□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 시범사업을 우수 브랜드 위주(9개 브랜드, 57천두)로 실시, 전국 27개 매장에서 적용('09년 한우 전두수 적용 목표)

○ 음식점 식육 원산지 표시제 도입을 위한 「식품위생법」 개정안(2건)이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계류중

□ 닭·오리고기 포장유통 의무화, 식육처리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로 판매업소 개설제한 등 「축산물가공처리법」 개정 추진(10월 국회제출)

## 다. 수입 농산물 통관·유통 관리 강화

◇ 편법·부정수입 방지 및 유해·불량 농산물 수입 근절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협력체제 강화

### < 수입 농산물 통관·유통의 문제점 >

- ① 국내외 가격차가 크고 고율관세가 부과되는 품목을 중심으로 관세포탈을 위한 저가 수입신고
- ② 고율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편법적으로 품목을 전환**하여 수입
  - 일부 수입업자는 건고추에 물을 뿌려 냉동, 냉동고추 품목으로 수입
  - \* 고추는 관세가 270%인 반면, 냉동고추는 10분의 1인 27%
- ③ 수입 후 국내 유통과정에서 국내산으로 둔갑하여 유통

### < 중점 추진대책 >

- ‘수입 농수산물 통관유통 개선 T/F’를 구성하여 수입 농수산물 통관 및 국내유통 실태파악 및 범정부차원 대책 마련(농림부)
- 농림부 통상정책관을 팀장으로 해수부, 재경부, 관세청, 식약청 등 정부 관계기관, 농업인단체,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
  - \* 9.2일 1차 회의 개최 : 채소특작류 수입실태 및 통관관리 강화대책 논의
- 통관·유통문제가 정상화될 때까지 T/F를 계속 운영할 계획

□ **품목분류 기준 명확화 및 검역·원산지 단속 강화**

- 냉동·건조·조제 등 품목분류기준의 미비점을 악용한 변칙 수입이 있는 경우 관계기관과 협의, **품목별 기준 재검토** 추진
- 수입농산물에 대한 검역조사 샘플을 확대하고 연말까지 원산지 특별단속팀 및 명예감시원의 **특별단속** 실시

□ 「**불법수입농수산물 특별단속본부**」를 설치, 91개팀 500여명을 투입하여 특별단속('05.9.13 ~ '06.1.28) 실시(관세청)

- **사전세액심사** 대상품목을 확대 지정·운영(13개→22)하고 저가 신고 행위시 부족세액 추징과 함께 형사처벌 병행
- 수입형태에 따라 **수입업체를 차등관리**하여 불성실 수입자의 신고가격을 불인정하고 별도의 결정기준 마련
  - 상시수입업체(348개)가 수입하는 품목 중 저가신고 우려품목 집중 심사
- 농협, 농수산물유통공사, 농업인·소비자단체와 「**불법 수입 농수산물 단속 민·관협의체**」 구성, 시장동향 및 정보, 의견 교환

□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입식품 안전관리개선협의회**」를 구성, 6대 분야 21개 과제를 선정·추진(보건복지부)

- 범정부적 위해정보 DB 공동구축 및 활용, 수출국 현지조사 확대, 위해식품 수입업자 처벌 강화, 수입식품 안전성 인증제도 도입 등

## 7. 가축질병 방역대책 추진

◇ 전 세계적 인적·물적 교류 증대로 인한 악성 가축전염병 유입 가능성에 대비, 가축방역 종합대책('04.8 수립) 면밀히 추진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에 대비, 강도높은 방역대책 추진

○ 최근 러시아(7.23), 카자흐스탄(7.29), 몽고(8.8)에서 신규로 발생 하면서 시베리아에서 철새를 따라 유럽으로 서진하는 경향

○ 중국·태국산 열처리 가금육 정밀 검사 및 공항만 검역관 증원, 검역탐지견 확대 투입 등 국경검역 강화

○ 과거 발생 지역 및 인접 지역 등 집중관리 대상지역(21개 시·군)의 닭·오리 임상관찰 강화(매 3일마다 점검)

○ 철새 및 주요 잠복 감염원인 오리에 대한 예찰활동 강화 예정

- 철새 분변 검사는 10월부터 조기 실시(24개소, 2,400건) 및 오리 혈청 검사는 철새로부터 전파 가능성이 있는 11월부터 실시(900농가 2만건)

\* 파주, 철원, 고성 등 민통선 지역 야생조류 분변(500점) 일제 조사(11월초)

□ **소 부루세라병**은 지난해부터 실시된 다발지역 일제 검사('04.11), 도축용 암소 검사 의무화('05.3) 등으로 감염 소 색출 증가

○ 감염소 색출·살처분 강화 결과 금년 3월을 정점으로 감소

\* ('05.1)145건/740두 → (3월)385/2,623 → (5월)217/1,904 → (8월)218/1,458

- **예방접종 문제**는 소비자들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로 검토 보류
    - 한우 농장 감염률도 접종실시 기준(5%)보다 낮은 수준('05.7월 2.29%)
  - 살처분·매몰로 인한 환경부담 완화를 위해 '06년부터 기존 **렌더링 시설**(4개소, 6억원)을 보완, **유지·사료로 재활용**하는 방안 추진
- **광우병 예방 및 발생시에 대비한 사전 대책 추진**
- 사료공장 HACCP 실시('05.1) 등 **사료 안전성 관리**를 강화하고 24개월령 이상 폐사기립 불능 소 등 **위험축군에 대한 검사 강화**
    - \* ('04) 계획 2,200건/검사 2,323건 → ('05) 3,000/2,554(8월말)
  - 도축검사 강화를 위해 **도축검사원 100명**을 선발, 현장 배치하고 **특정위험물질(SRM) 처리 시범시설**(2개소, 20억원) 설치 추진
  - 광우병 발생('03.12)으로 수입금지된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 점검을 위한 전문가 협의 진행 중 **감염소 추가 발생**(6.10)
    - 미국이 보내온(8.31) 추가 발생 건에 대한 역학 조사결과 등 관련 자료를 면밀히 분석, 안전성 여부를 점검할 계획
- **늘어나는 방역업무에 대응하여 지자체 방역인력 확충**(8월말 현재 207명) 및 '06년 **검역원 인력 증원**(2개과 42명) 추진
- '06년 **공익수의사** 현장 배치를 위해 병역법 등 개정 추진



## 8. 농촌마을종합개발 사업 및 도농교류 확대 추진

◇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 5개년계획」('05.4)에 따라 농촌다움과 권역별 특성을 살려 농촌마을을 개발, 도·농 교류 기반조성

□ 지역 특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농촌공간 정비를 위해 **상향식 농촌지역개발 방식인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추진**

○ '04년에 선정된 **36개 권역**은 6월말까지 권역별 기본계획안 작성을 완료, 9월 현재 세부설계 및 시행계획 수립중

- 사업시행계획이 확정되는 권역부터 지역실정에 맞게 **연말까지 착공** (확정된 착공일정 : 9.30 충북 단양, 10.7 경남 하동)

\* 사업 신청 → 예비타당성조사 → 기본계획수립(1년) → 세부설계 및 시행계획수립 → 공사 착수 → 준공(3-5년)

○ '05년 신규사업은 시·도지사가 추천한 50개 권역을 대상으로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40개 권역 선정**('05.8)

- 연말까지 **권역별 기본계획안** 작성 완료 예정

- 40개 권역 중 20개 권역은 '06년 공사착공, 나머지는 '07년 이후 추진

\* 예비타당성조사 항목 : 권역설정의 적정성, 지역자원 현황, 지역 주민·지자체의 사업추진역량, 예비계획의 실현가능성 등

□ 1사 1촌 운동을 지속적이고 내실있는 도농교류 모델로 발전

○ 자매결연 실적('05.8월말 현재) : 6,468건

- 농림부를 비롯, 통일부('05.7), 감사원('05.9) 등 20개 중앙부처 참여

○ 농협, 전경련 등과 T/F팀 구성, 내실화 및 발전전략 마련중

- 중장기 비전제시, 교류지원시스템 구축, 제도개선, 교류프로그램개발 등

□ 도농교류 범국민 참여 확대를 위한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 전개

○ 농림어업기관 합동 '여름휴가, 농산어촌 고향에서 보내기' 캠페인 전개(7~8월, 전년대비 마을 방문객수 20% 증가)

\* 장관서신발송(8,000기관), 발대식 개최(7.11, 명동), 농림직원대상 1+1운동 등 전개

○ 농촌사랑운동 보고대회, 농산어촌 체험박람회, 올해의 도농 교류상 시상, 농촌문화체험기 공모, 도농생활체험캠프 운영 등

\* 농산어촌 체험박람회(4.27~5.1) : 85개 마을(기관) 참가, 68천명 방문

□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을 통해 농촌체험관광 기반 확충

○ 금년까지 123개소 조성목표, 현재 76개소 조성완료('05 : 47개소)

○ 마을 활성화를 위한 1인1촌 전문가 지원시스템 운영(마을·전문가간 40개소 결연)

○ 지역리더, 마을주민, 공무원 등 인적자원 유형별 맞춤형 전문 교육프로그램 시행('05년 1,300명 계획, 9.20일 현재까지 560명 완료)

## 9. 남북 농업협력위원회 개최 결과

◇ 제15차 남북장관급 회담의 합의에 따라 「남북농업협력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성에서 개최('05.8.18~19)

○ 농림부·통일부 등 관계부처 공동위원회 구성(위원장 : 농림부차관)

□ 종전의 긴급구호성 지원에서 벗어나 북한의 농업생산성 증대를 위한 협력사업 추진, 7개항 합의문 발표(합의문 별첨)

○ 북한의 협동농장을 선정하여 남북한이 시범 협력사업 추진

- 우리측은 '06년부터 농기자재 및 기술 등을 지원하고, 북한은 사업추진을 위한 우리측 전문가와 관계자 현지 방문 보장

○ 북한의 식량증산을 위한 종자생산과 가공시설 지원·협력, 남북간 농업과학기술 분야의 협력 추진

- 우량 유전자원의 교환, 육종 및 재배기술 협력, 농작물 생육정보 및 종합적 병해충 관리체계(IPM) 형성 등

○ 북한의 산림녹화를 위한 양묘장 조성(북한 동서부 지역 각각 1개소)과 산림병해충 방제 협력 등 다양한 협력 사업 발굴·추진

□ 협력사업의 구체화를 위한 후속 실무접촉 준비 및 합의사항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필요한 협조 및 추진체제를 마련할 계획

## V. 입법 추진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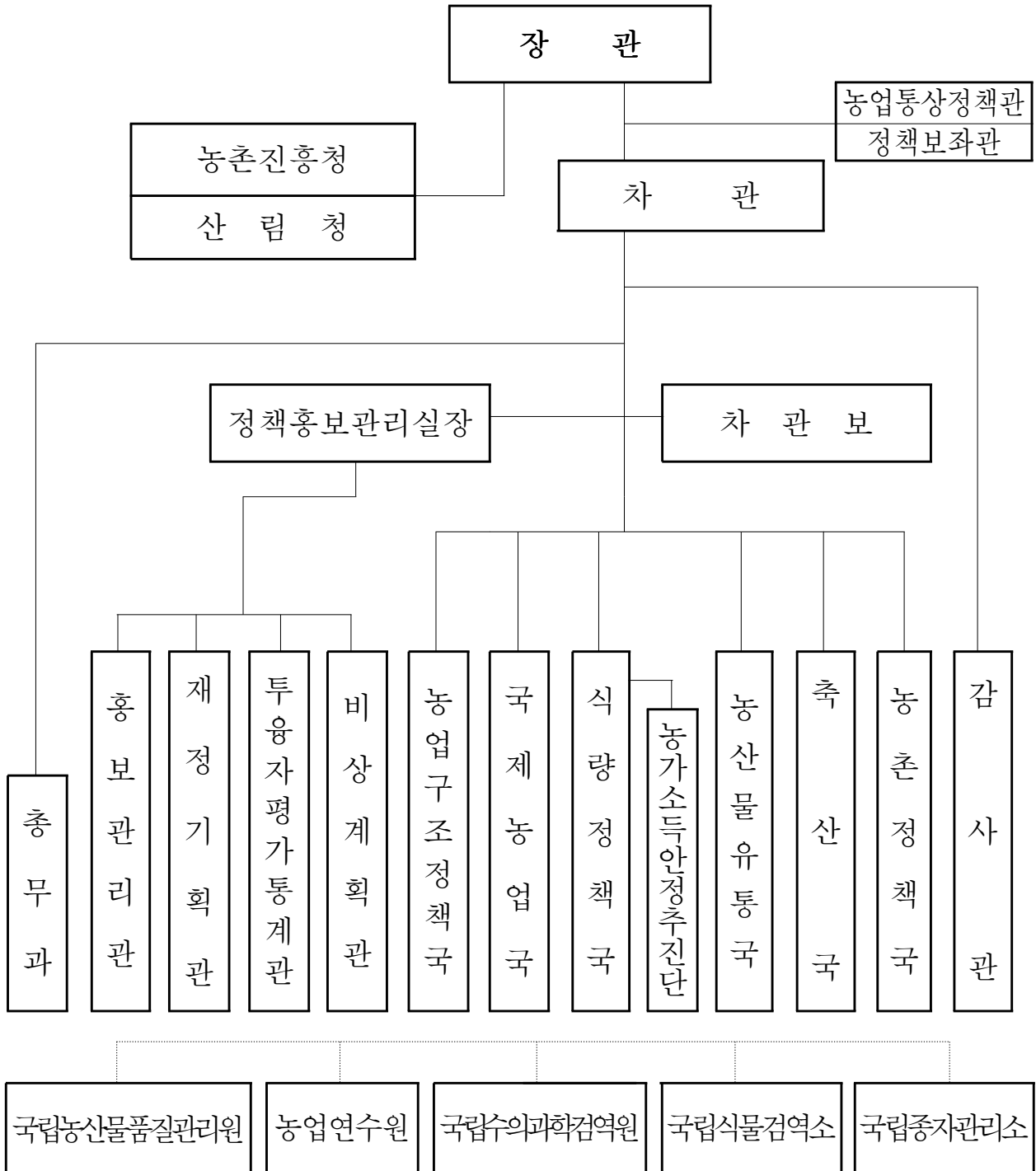
### □ 정기국회 상정추진 법률안 : 개정 5건

법 률 명	주요 제·개정 내용
1. 농업기반공사및농지 관리기금법(개정) * 법제처 심사중	○ 농어촌 지역개발 등 사업범위 확대에 따른 명칭 변경(농업기반공사 → 한국농어촌공사) ○ 농지은행제도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 규정
2. 친환경농업육성법 (개정) * 법제처 심사중	○ 농산물의 유통업자도 인증대상에 포함 ○ 인증 유효기간 연장 및 사후관리 강화 ○ 친환경 인증종류 간소화 등
3. 축산물 가공처리법 (개정) * 법제처 심사중	○ 축산물의 위생·안전성 제고를 위하여 가축사육 단계에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도입 ○ 도축장의 HACCP 운용수준 평가 및 HACCP 인증업무를 전담할 민간조직 신설
4.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회계법(개정) * 부처 협의중	○ 현재 2개의 특별회계(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로 운용 중인 농특세 사업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로 통합
5. 초지법(개정) * 기 국회제출('04.12)	○ 경제자유구역과 지역특화발전특구지역에서 초지를 전용하는 경우 대체초지조성비 감면 ○ 전용허가 받은 초지에 대한 목적사업 미 착수시 전용허가 취소 및 원상회복 근거 신설

<별첨1>

## 일 반 현 황

가. 조직 : 1차관보, 1실, 6국 6관 39과(팀, 담당관)



## 나. 농림부 주요기능

### < 본 부 >

실 국 별	주 요 업 무
정책홍보관리실	업무혁신, 조직 및 인사, 법무행정
재 정 기 획 관	농정시책 조정, 예산 및 기금업무총괄, 국회업무
홍 보 관 리 관	농림정책 및 주요현안 홍보, 대언론 관련업무
감 사 관	농림부 및 소속기관, 농업관련 단체·기관에 대한 감사
투융자평가통계관	투융자심사 평가, 농업통계, 농산물 생산관측, 농업·농촌정보화 지원
비 상 계 획 관	비상대비계획 수립 및 비상훈련
농업구조정책국	농업구조개선 및 농가소득, 농지관리, 농업인력육성, 농업금융, 협동조합 지도·감독, 여성농업인정책
국 제 농 업 국	WTO 농업협상 및 통상협력, 농산물 수입정책 총괄
식 량 정 책 국	식량정책 수립 및 수급관리, 식량생산, 농자재, 친환경 농업 및 기술개발
농 산 물 유 통 국	농산물유통구조개선, 농산물가격안정대책, 농산물수출, 식품산업육성, 채소·과수·화훼작물의 수급 관리
축 산 국	축산정책수립, 축산물위생안전성, 축산물 및 사료수급, 가축방역
농 촌 정 책 국	농촌지역 개발 및 복지, 농외소득 증대, 생산기반 정비·관리

### < 소속기관 >

기 관 별	주 요 업 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산물품질관리, 농산물검사안전성조사, 농업통계조사
농 업 연 수 원	농업분야 직무 종사 공무원 및 농업관련 민간종사자 교육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축산물 및 동물의 검사·검역 등 위생관리, 가축방역 및 질병 예방
국 립 식 물 검 역 소	수출입 식물검역
국 립 종 자 관 리 소	주요 농작물 종자관리 및 식물품종보호

# 다. 정 원

(2005. 9월 현재)

	계	정무직	일 반 직									별정직	계약직	연구직	기능직
			계	1급	23급	3급	34급	4급	45급	5급	6~9급				
본 부	명 528	2	448	1	10	2	10	30	46	162	187	8		1	69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2,144		1,627		1		2	12	3	135	1,474	266		2	249
농업연수원	42		30		1			3	1	10	15				12
국립수의 과학검역원	519		320			3		15	2	31	269	11	1	101	86
국립식물 검역소	412		355				1	8	2	24	320		1	10	46
국립종자 관리소	165		68			1	1	10	1	10	45	4		27	66
소속기관 소 계	3,282		2,400		2	4	4	48	9	210	2,123	281	2	140	459
농 진 청	2,087	1	262	-	4	1	3	19	8	52	175	2	18	1,271	533
산 립 청	1,518	1	885	-	4	7	5	21	15	108	725	1	18	234	379

## 2004년 국정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1. 후계농업인의 영농 정착을 위한 체계적인 자금지원 방안, 후계농업인 선정 및 사후관리 강화 방안</p>	<p>&lt;시정·처리결과&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nput type="checkbox"/> 후계농업인 평가 및 사후관리 등 지속지원체계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가를 실시, 우수 선도농에게 추가자금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년부터 1,500명에게 1,200억원 지원(3%) 계획</li> </ul> </li> <li>◦ 민간컨설팅 보조율 상향(50% → 70%), 지원 대상 확대(RPC, APC, 쌀전업농 추가)</li> </ul> </li> <li><input type="checkbox"/> 신규후계농업인 지원사업의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T/F 구성 및 현장점검(05.7.19~21)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출부적격자 선정, 심사평점 미달, 사업계획 부적정, 대출기관의 소극적 대출심사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li> </ul> </li> <li><input type="checkbox"/> 후계농업인 영농정착자금 지원상한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4년) 1억원 → ('05년) 1억 2천만원</li> </ul> </li> </ul> <p>&lt;향후 추진계획&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nput type="checkbox"/> 신규후계농지원사업의 활성화 방안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격대상자를 선정하여 신용위주 대출과 사후관리 강화 등의 방향으로 제도 개선</li> </ul> </li> <li><input type="checkbox"/> 맞춤형 전문교육 및 민간컨설팅 지원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산자 단체 중심의 품목별 전문교육 활성화</li> <li>◦ 규모화·전문화된 컨설팅업체를 농림부 직접 공모</li> </ul> </li> </ul>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2. 각종 직불제 사업의 다양화보다는 체계 단순화, 지급단가 인상 및 대상 폭 확대로 농민의 실질적 소득을 보전하는 방안</p>	<p>&lt;시정·처리결과&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불제의 지속적인 확충 및 제도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산 : ('04)7,720억원 → ('05)8,638억원(11.9%증가)</li> <li>◦ 쌀농가소득지원을 위해 논농업직불제와 쌀소득보전직불제를 개편하여 쌀소득등보전직불제로 통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표가격(170,083원/80kg)을 설정, 목표가격과 차액의 85%를 고정직불과 변동직불로 보전</li> <li>- 고정직불(종래 논농업직불제)의 지원단가를 532천원/ha에서 600천원으로 인상</li> </ul> </li> <li>◦ 경관보전직불제 시범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6억원, 470ha, 170만원/ha 지원</li> </ul> </li> </ul> </li> </ul> <p>&lt;향후 추진계획&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장기 직불제 확충방안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말까지 각종 직불제를 체계적으로 유형화하여 단순화하고, 상충점을 조정</li> </ul> </li> <li>□ 지속적인 직불제 확대 및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6예산(조정안) : 1조222억원(18.3%증)</li> <li>◦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전국 확대('06, 532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사도 14%이상인 187천ha 대상 (40만원/ha)</li> </ul> </li> <li>◦ 쌀소득등보전 고정직불금 단가 인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5) 60만원/ha → ('06조정안) 70만원</li> </ul> </li> <li>◦ 친환경 직불제는 논·밭을 통합하여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산 : ('05) 69억원 → ('06조정안) 114억원</li> </ul> </li> </ul> </li> </ul>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3. 농협중앙회의 신·경 분리는 경제사업 위축, 지도사업 약화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를 하여 줄 것</p>	<p>&lt;시정·처리결과&gt;</p> <p>□ 농협중앙회의 신·경분리를 위해서는 자본금 확충, 지도 및 경제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p> <p>◦ 「농업협동조합법」을 개정('04)하면서 법 부칙 제12조에 시행('05.7.1)후 1년이내 농협중앙회 자율적으로 신·경분리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농림부에 제출토록 규정</p> <p>* 농협중앙회는 세부추진계획 수립을 위해 연구용역추진중 ( '05.5 ~ '06.4)</p> <p>&lt;향후 추진계획&gt;</p> <p>□ 신·경분리는 농협 및 조합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충분한 협의와 검토 후 세부추진계획 수립</p> <p>◦ 농림부내 「신·경분리추진위원회」을 구성(10월) 농협의 추진상황 점검 및 농민단체, 학계,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검토</p> <p>◦ 분리전제조건 및 분리시한 등을 검토하여 '06년말 까지 신·경분리 추진방안에 대한 로드맵 제시 계획</p>

시정·처리 요구사항	시정·처리 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4.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과 농특세사업이 실패한 원인과 119조 투융자 계획의 차이점 및 성공 가능성 확보방안</p>	<p>&lt;시정·처리결과&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92 ~ '98년 기간중 농어촌 구조 개선을 위해 36조 3천억원을 1단계 재정투융자사업에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OC 확충 : 17.7억원(49%)</li> <li>◦ 농업인 직접지원 사업 : 15.9억원(44%)</li> <li>◦ 물류 센터, RPC 등 : 27억원(7%)</li> </ul> </li> <li>□ 1단계 농업투융자를 통해 생산기반이 확충되고 영농의 규모화·전문화 등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그러나, 짧은 기간 집중적 투융자 지원으로 일부 부실·비효율 사례 발생</li> </ul> </li> <li>□ 119조 투융자계획과의 차이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거의 대책은 농업 인프라 구축에 치중</li> <li>◦ 119조 투융자계획은 규모화된 전업농 및 고부가가치 기술농업 육성, 직접지불 등 소득안정과 농촌지역개발에 중점</li> <li>◦ 이번 대책은 3년 단위로 평가해서 농정환경의 변화를 적극 반영</li> <li>◦ 추진방식도 중앙정부와 지자체, 지방농과대학 등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개편</li> </ul> </li> </ul> <p>&lt;향후 추진계획&gt; : 성공가능성 확보방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엄격한 사전심사와 사후평가를 적용하는 투융자 심사평가시스템을 혁신('04.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규사업은 시범사업 추진 후 본사업 추진</li> </ul> </li> <li>□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점검, 체계적 평가와 환류</li> </ul>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5. DDA 협상의 최대관건은 우리나라의 개도국 지위 계속확보에 있는데 협상과정에서 개도국 지위 확보방안</p>	<p>&lt;시정·처리결과&gt;</p> <p>□ 개도국의 입장에서 DDA 세부원칙 협상에 대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4.8.1 기본골격 합의 이후 세부원칙 협상 단계에서 G33(개도국 특별품목그룹)과 긴밀한 공조 유지</li> <li>◦ 향후 개도국 입장에서 특별품목에 대한 의견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도국 지위문제는 세부원칙 협상 완료후 양자간 논의과정에서 협의할 사항</li> </ul> </li> </ul> <p>&lt;향후 추진계획&gt;</p> <p>□ 그간의 노력으로 우리 입장은 널리 알려져 있으므로 다자차원에서는 이를 기정사실화 하면서 당당한 자세로 대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도국 세분화 논의가 진전되지 않도록 유사한 상황에 있는 국가들과 공조하여 대응</li> <li>◦ 세부원칙 협상 종료 이후에는 개도국 조항을 기준으로 이행계획서를 작성,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행계획서 검증과정에서 이의제기 국가와의 협상을 통해 개도국 지위 유지에 최선의 노력 경주</li> </ul> </li> </ul>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6. 북한산 농산물의 반입 관련 관계부처 협의·승인·인수·사후관리 등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 및 대책</p>	<p>&lt;시정·처리결과&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산물 위장반입 문제와 관련된 관계부처 실무회의를 개최(2004.10.26, 통일부)하여 개선 방안 논의</li> <li>□ 국영무역 품목에 대한 북한산 농산물 반입 대책 수립 시행(2005.1.18, 통일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영무역 품목은 수입자 직접 인도를 금하고 유통공사를 통해 인도하도록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세구역내에서 반입자가 유통공사에 양도토록하고, 유통공사가 세관에 반입신고</li> </ul> </li> <li>◦ 집중감시 품목에 대하여는 북한내 생산량 등을 고려하여 한도물량을 설정해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집중감시품목 : 녹두, 팥, 대두, 참깨, 고추 등</li> </ul> </li> </ul> </li> </ul> <p>&lt;향후 추진계획&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산물 반입승인 여부 결정 검토 철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입승인 대상품목의 승인 협의시 국내농업 영향검토 후 승인여부 결정</li> </ul> </li> <li>□ 국영 무역품목 사후관리 지속적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영무역 품목의 농수산물유통공사 인수실적을 수시 파악하는 등 사후관리 강화</li> </ul> </li> </ul>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7. 쌀 소득보전직불제와 관련 목표가격기준의 설정을 현실화하여 농민에게 실질적 소득이 보장되도록 할 것</p>	<p>&lt;시정·처리결과&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쌀협상이후 TRQ증량에 따라 예상되는 쌀가격 하락등에 대비하고 농업인들의 소득안정을 위해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도입('05.7.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표가격은 '01 ~ '03년 수확기 산지쌀값, 추곡 수매제 직접소득효과, '03년 논농업직불제 소득 효과를 반영하여 170천원/80kg으로 설정</li> <li>- 목표가격은 3년 단위로 변경되며, '08년부터 적용하는 목표가격은 '07년에 국회동의를 얻어 변경할 계획</li> <li>* 소득보전방안의 제도적 실현을 위해 쌀소득보전기금의 설치및운용에관한법률 개정('05.7.1 시행)</li> </ul> </li> <li>□ 다만, DDA협상이후 쌀 시장개방 폭 확대에 대비 하기 위해서는 일정수준의 농업인 자구노력도 필요</li> </ul> <p>&lt;향후 추진계획&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5 ~ '07년산에 적용되는 목표가격 10월중 고시 계획</li> <li>* 차기 목표가격('08 ~ '10년산 적용)은 '07년도 변경할 계획</li> </ul>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8. 고품질 쌀 생산에 필수적인 RPC의 건조저장 시설과 벼 매입자금의 지원 확대방안</p>	<p>&lt;시정·처리결과&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합 RPC의 시설·운영자금 우대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5년부터 통합RPC에 대한 시설비 단가 및 지원조건 우대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비 단가 700백만원, 국고보조 10% 상향조정 (국고보조 50%, 지방비 10%)</li> </ul> </li> <li>◦ 통합 RPC 수에 따라 개소당 10억원씩 운영자금 3년간 무이자 지원</li> </ul> </li> </ul> <p>&lt;향후 추진계획&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조·저장시설 669개소('05 ~ '10)추가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통량 대비 RPC처리량을 70%까지 확대</li> </ul> </li> <li>□ 건조저장시설 지원단가 및 지원조건을 상향조정하여 '06년도 예산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6 사업량 : ('05) 50개소 → ('06조정안) 66(균특)</li> <li>◦ 균특회계에서 농특회계로 환원하고 사업량 확대 추진(균특 66 → 농특 110개소)</li> <li>◦ 증설시설 사업비 단가 : 450백만원 → 600</li> <li>◦ 일반사업자 국고보조비율 10%p 상향조정추진 (30%→40%)</li> </ul> </li> <li>□ RPC경영평가 결과 우수 RPC에 대하여 운영자금 집중지원</li> </ul>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9. 수입찐쌀의 불법유통 및 부정수입과 관련한 정부 대책</p>	<p>&lt;시정·처리결과&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찐쌀 불법유통, 부정수입 및 허위·과장 광고 근절을 위해 점검·단속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5.7~8월 수입 찐쌀 원산지 특별단속 실시(농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28개반 456명을 투입, 1,300여개 판매업소를 단속한 결과 허위표시, 미표시, 허위광고 등 9건을 적발, 형사입건 등 조치</li> </ul> </li> <li>◦ 식약청에 수입찐쌀 안전성 검사 강화, 위반업체 적발 제재조치 및 공정거래위원회에 허위·과장·기만 광고 조사의뢰 협조 요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찐쌀은 '77부터 수입자유화된 식약청 소관품목</li> <li>- '04년2회, 시중유통찐쌀 105건을 검사, 기준치 초과제품 8개 적발(121톤 압류)</li> <li>- '05.1월 특별관리대상식품으로 지정·관리(식약청)</li> </ul> </li> </ul> </li> </ul> <p>&lt;향후 추진계획&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계부처와 함께 점검·단속 지속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관원을 통해 원산지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li> <li>◦ 식약청의 찐쌀 안전성 조사단속 강화 협조</li> </ul> </li> <li>□ 명예감시원제 및 신고포상금제를 도입·운용('05.7)하여 민간에 의한 감시기능 강화</li> </ul>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10. 수입개방에 대비한 친환경농산물 공급 확대 방안, 친환경 농자재에 대한 정부 지원 용의, 화학비료 합성농약 감축을 위한 연차별 목표 및 실천 계획</p>	<p>&lt;시정·처리결과&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nput type="checkbox"/> 친환경농산물 기반조성 지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접지불('05) : 69억원(11천ha)</li> <li>◦ 친환경농업지구조성('05) : 67억원(63개소)</li> </ul> </li> <li><input type="checkbox"/> 친환경농자재 부가세영세율 적용 및 유기질 비료·토양개량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세율 적용 조세특례법 개정 완료('05. 2)</li> <li>◦ 유기질비료 지원('05) : 70만톤(245억원)</li> <li>◦ 토양개량제 지원('05) : 637천톤(496억원)</li> </ul> </li> <li><input type="checkbox"/> 화학비료·합성농약 연차별 감축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3년까지 '04년 대비 60% 수준으로 감축</li> <li>◦ '05년 7월 1일 화학비료 차손보조 폐지 및 유기질비료·천적방제 지원확대 추진</li> </ul> </li> </ul> <p>&lt;향후 추진계획&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nput type="checkbox"/> 친환경농업 기반조성지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접지불 : ('05)69억원 → ('06조정안) 114</li> <li>◦ 지구조성 : ('05)67억원 → ('06조정안) 120</li> <li>◦ 유기질비료 : ('05)245억원 → ('06조정안) ) 420</li> <li>◦ 토양개량제 지원 : ('05)496억원 → ('06조정안) )527</li> <li>◦ 광역친환경농업단지(75억원), 천적방제사업(38억원) 등 확대 계획</li> </ul> </li> </ul>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11. 학교급식에 우리농산물 사용을 의무화 하고 이를 지원하는 방안</p>	<p>&lt;시정·처리결과&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WTO 규정 등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우리농산물이 사용되도록 하는 방안 강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련법에 우리농산물 사용의무화는 WTO 규정상 (내국민대우원칙위배) 법제화 곤란</li> <li>◦ 지자체 자율적 학교급식 지원사업을 유도</li> </ul> </li> <li>□ 쌀 반값 공급 및 우유 무상급식지원 확대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 쌀 공급지원('05) : 68천톤, 646억원</li> <li>◦ 우유 무상급식지원('05) : 279천명, 154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4 : 초등학생(210천명) 대상, 14,805백만원</li> <li>- '05 : 초중등생(279천명) 대상, 15,380백만원</li> </ul> </li> <li>◦ 친환경농산물 등 우수농산물 생산 유통 등 종합 정보 제공체계 구축(농림부 홈페이지, '04.12) 및 활용협조 요청(시도 및 교육감, '05.8)</li> </ul> </li> </ul> <p>&lt;향후 추진계획&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유 무상급식 확대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6년 고등학생으로 확대(352천명), 16,632백만원</li> </ul> </li> <li>□ 국산 농산물 사용기반 조성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수 농식품 생산·유통 정보제공</li> <li>◦ 농협을 통한 학교급식 지원사업 추진</li> </ul> </li> <li>□ 우리농산물 공급확대 관련 관계부처 등과 지속 협의</li> </ul>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12. GAP 정착을 위한 철저한 재배관리·전처리시설 기준강화, 부적합 농산물의 시장유입 차단대책</p>	<p>&lt;시정·처리결과&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nput type="checkbox"/> GAP 및 이력추적관리 기준 강화를 위해 농산물 품질관리법 개정('05.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일 등 82개 품목 GAP 지침 마련</li> <li>◦ 우수농산물 관리기준 마련(170항목)</li> </ul> </li> <li><input type="checkbox"/> 전처리 시설 등 APC 위생시설보완 지원('05 : 3개소)</li> <li><input type="checkbox"/> 이력추적관리기준 마련('04.10)</li> <li><input type="checkbox"/> 부적합농산물의 시장유입 차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적합 농산물 시장유입 차단을 위한 생산·저장단계 안전성 조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전성조사 : 22천건('05.6)</li> <li>- 거점출장소 정밀분석실 설치('04 ~ '05 : 6개소)</li> <li>- 부적합품 생산자 D/B화 및 사후관리</li> </ul> </li> </ul> </li> </ul> <p>&lt;향후 추진계획&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nput type="checkbox"/> GAP 관리지침을 96개 품목으로 확대</li> <li><input type="checkbox"/> 전처리시설 등 APC 위생시설 보완 지원 확대 ('06 : 신규6개소, 보완 45개소, 국고 180억원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전성조사 확대 및 정밀분석실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전성조사 : ('05) 62천건 → ('13) 90천건</li> <li>- 정밀분석실 : ('05) 15개소 → ('09) 47개소</li> </ul> </li> </ul> </li> </ul>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13. 지적측량 비용부담 문제 등 폐원사업 수행과정에서 빚어진 문제점과 애로사항에 대한 대책</p>	<p>&lt;시정·처리결과&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차별 지원계획 수립(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4예산(234억원)의 약 8배수준인 1,825억원이 폐원 신청되어 일시 과다 폐원시 수급 등 우려</li> <li>◦ 현장·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폐원예상량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년간 총 6,400ha(2,600억원)로 추정</li> </ul> </li> <li>◦ 수급 및 시장동향에 따라 폐원여부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도지사가 연도별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소요예산을 요구하도록 지원체계 개선</li> <li>- 신청농가에게 폐원 연도 통지</li> </ul> </li> </ul> </li> <li>□ '04년 사업추진 완료 : 247억원 집행</li> <li>□ 지적측량 비용은 농가가 부담하도록 설득완료, 현재는 대부분의 농가가 납득하고 있는 상황</li> </ul> <p>&lt;향후 추진계획&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후관리 D/B구축 : 약 40천농가</li> <li>□ '05년 사업추진: 1,300ha 541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반기 700ha 284억원, 하반기 600ha 257억원</li> </ul> </li> </ul>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14. 축산물종합처리장(LPC) 부실경영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개선대책</p>	<p>&lt;시정·처리결과&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LPC 운영개선 도모를 위해 경영평가 및 컨설팅 실시('04.10 ~ '05.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산업개발연구원을 통해 LPC에 대해 경영평가 및 컨설팅 병행 실시</li> </ul> </li> <li>□ 도축장 HACCP 운용수준 평가('05.6)를 통해 도축장 위생수준 제고 및 구조조정 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가결과 상위등급에는 0%, 중위등급에는 3% 금리 차등지원(53개소, 578억원)</li> <li>※ LPC 도축점유율 및 가동율 상승추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점유율(돼지) : ('03)16%→('04)17→('05상)19</li> <li>· 가동율(돼지) : ('03)63%→('04)66→('05상)66</li> </ul> </li> </ul> </li> </ul> <p>&lt;향후 추진계획&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축장에 대한 HACCP 운용수준과 경영평가를 실시하여 운영자금 차등지원</li> <li>□ LPC에 부분육 도매기능 부여로 도축물량 확대 도모</li> <li>□ 도축장 신설 억제 등 지속적인 구조조정 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축장 신규지원 중지 및 2개소 이상 통폐합시 자금 지원</li> </ul> </li> </ul>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15. 마사회 특별적립금 사용과 관련 위법·부당하게 사용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강구</p>	<p>&lt;시정·처리결과&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사회특별적립금 지원분야 구체화를 위한 마사회법 개정('05.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업·농촌의 이해증진사업, 농축산물소비촉진사업, 농어민의 지원사업 등</li> </ul> </li> <li>□ 마사회특별적립금 운영제도 개선(안) 마련('05.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립금 신청, 심의, 사후관리 등을 정형화하고 감사를 의무화</li> </ul> </li> </ul> <p>&lt;향후 추진계획&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사회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으로 마사회 특별적립금 사용근거 명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9월 현재, 관계부처 의견조회 중(연말까지 완료계획)</li> </ul> </li> <li>□ 마사회에 설립된 “KRA와 함께하는 농촌희망재단”과 “농촌정보문화센터”에서 사업 계획 수립과 집행을 담당토록 추진('05.7)</li> <li>□ 마사회특별적립금 운영실태에 대한 정기적인 감사 실시</li> </ul>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16. 도·농교류 및 농촌 관광휴양사업 실적 증대 대책과 농촌관광 휴양자원을 활용하는 방안</p>	<p>&lt;시정·처리결과&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녹색농촌체험마을을 조성하여 농촌체험기반 시설 지원('04까지 76개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추진('04계속 36권역 사업착수, '05신규 40권역 기본계획 수립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원마을 조성사업 확대 추진('05 : 51개소)</li> </ul> </li> <li>◦ 농촌경관보전직불제 시범사업 추진('05년 : 6억원)</li> <li>◦ 농촌관광보험상품 개발·보급(20개마을 가입)</li> </ul> </li> <li>□ 도농교류페스티벌 개최(68천명 관람), 농촌문화 체험기 공모, 도농생활체험캠프 운영 등 홍보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올해의 도농교류상 시상, 교사 농촌체험행사, 농림기관 합동 ‘여름휴가, 농산어촌고향에서 보내기’ 캠페인 전개 등</li> </ul> </li> <li>□ 1사1촌운동 내실화를 통해 사회적 관심 지속 유지('05.8현재 : 6,468건 결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리시스템 운영, 가이드북 배포 등 우수사례 홍보강화 적극 추진</li> </ul> </li> <li>□ 농촌지역개발 ‘인력육성대책’ 시행('05.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리더·주민·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실시 ('04실적 : 1,085명, '05계획 : 1,300명)</li> </ul> </li> </ul>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 농산어촌체험마을 활성화를 위한 사후 관리 강화 및 네트워크 형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인1촌 전문가 지원시스템 운영(마을·전문가간 40개소 결연)</li> <li>◦ 관계부처간 통합지침('04.11) 및 실무 협의회 운영(3회)을 통한 협조체제 유지</li> </ul> <p>□ 도농교류 지원체계 정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농교류센터’ 설립('04.5) 및 ‘농촌사랑범국민 운동본부’ 발족('04.10) 등 지원시스템 정비</li> </ul> <p>&lt;향후 추진계획&gt;</p> <p>□ 도시민 수요에 맞는 체험·휴양기반 지속 확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녹색농촌체험마을·마을종합개발사업 확대추진 및 지속적인 마을사후관리</li> <li>◦ 다양한 도농교류 프로그램 추진을 통해 지속적인 수요창출 유도</li> </ul> <p>□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정비 방안 검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협·전경련 등과 T/F팀을 구성하여 도농교류 중장기 비전 제시, 교류지원시스템 구축, 제도개선, 교류 프로그램 개발 등 추진</li> </ul>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17.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RPC 벼 투입구 개선대책</p>	<p>&lt;시정·조치결과&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5년도 미곡종합처리장 증설 사업시행지침에 원료투입구 설치 지원기준 마련</li> <li>◦ RPC 증설사업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RPC중 원료투입구가 1개인 RPC는 1개소 이상 추가 설치 의무화</li> <li>* '05년 RPC 건조·저장시설 증설 : 50개소</li> </ul> <p>&lt;향후 추진계획&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RPC의 부족한 건조·저장시설 조기 확충을 위해 농특회계 환원 추진</li> <li>◦ '06 사업량 : ('05) 50개소→ ('06조정안) 균특 66</li> <li>* 농특회계로 이관하여 110개소까지 확대 추진</li> <li>◦ 지원단가 상향조정(4.5억원→6) 및 보조율 상향 (민간 10%P) 추진</li> <li>□ RPC의 벼 수매품종을 2개품종 내외로 자율 지정시행</li> <li>◦ 농가와의 계약재배 등을 통하여 재배품종을 사전예시</li> </ul>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18. 토양개량제의 적정량 살포 및 홍보강화 방안</p>	<p>&lt;시정·처리결과&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군 농업기술센터의 토양검정결과에 의거 산정된 토양개량제의 시비물량 살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급실적 : ('04) 618천톤, 360억원 → ('05.8월) 637천톤, 397억원</li> <li>- 종류 : 규산질비료 및 석회질비료</li> <li>* 전체농경지 80% 대상(1,385천 ha) 4년 주기로 토양개량제 공급 및 살포</li> </ul> </li> </ul> <p>&lt;향후 추진계획&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토양검정 결과에 의거 산정된 적정량의 토양개량제 살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6년 계획 : 697천톤 422억원 지원</li> </ul> </li> <li>□ 토양개량제 살포 및 그 효과 등을 지속적으로 지도·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촌진흥청의 새해영농교육 등을 통해 토양개량제 적정살포 교육</li> <li>◦ 적정량의 토양개량제 공급 살포로 지력 유지·보전 추진</li> </ul> </li> </ul>

시정·처리 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19. 비 농민의 투기적 농지 소유와 무분별한 농지 전용으로 인한 난개발 방지 방안</p>	<p>&lt;시정·처리결과&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투기예방 위해 실경작자에게만 농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토지거래허가기준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토지거래 허가면적 기준강화(1월) : 도시지역 200㎡→100㎡, 도시지역 밖 1천㎡→500㎡</li> <li>◦ 토지거래허가 요건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허가지역내 농지매입시 주민등록이전 및 6개월 사전거주요건 신설('05.2)</li> <li>- 농지취득후 2년이내 매도금지 및 취득자금 조달계획 제출 의무화('05.8)</li> </ul> </li> </ul> </li> <li>□ 집단화된 우량농지는 최대한 보전하되, 소규모 난개발 방지를 위해 계획적 개발 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토계획법상 도시관리계획, 개발행위허가 제도 등을 엄격하게 운용</li> <li>◦ 농업보호구역의 행위제한 강화(열거 방식)</li> <li>◦ 농지조성비 부과기준을 공시지가 기준으로 개편하여 전용이익의 일부를 환수</li> </ul> </li> </ul> <p>&lt;향후 추진계획&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지법 하위법령·지침을 개정하여 '06.1월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투기적 농지소유 방지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지속적 제도 보완</li> </ul> </li> </ul>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20. 농어촌무상급식 등 학교급식과 관련한 농림부의 계획수립 및 학교급식을 활용한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 도입계획의 마련</p>	<p>&lt;시정·처리결과&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nput type="checkbox"/> WTO 규정 등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우리농산물이 사용되도록 하는 방안 강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련법에 우리농산물 사용의무화는 WTO 규정상 (내국민대우원칙위배) 법제화 곤란</li> <li>◦ 지자체 자율적 학교급식 지원사업을 유도</li> </ul> </li> <li><input type="checkbox"/> 쌀 반값 공급 및 우유 무상급식지원 확대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 쌀 공급지원('05) : 68천톤, 646억원</li> <li>◦ 우유 무상급식지원('05) : 279천명, 154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4 : 초등학생(210천명) 대상, 14,805백만원</li> <li>- '05 : 초중등생(279천명) 대상, 15,380백만원</li> </ul> </li> <li>◦ 친환경농산물 등 우수농산물 생산 유통 등 종합 정보 제공체계 구축(농림부 홈페이지, '04.12) 및 활용협조 요청(시도 및 교육감, '05.8)</li> </ul> </li> </ul> <p>&lt;향후 추진계획&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nput type="checkbox"/> 우유 무상급식 확대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6년 고등학생으로 확대(352천명), 16,632백만원</li> </ul> </li> <li><input type="checkbox"/> 국산 농산물 사용기반 조성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수 농식품 생산·유통 정보제공</li> <li>◦ 농협을 통한 학교급식 지원사업 추진</li> </ul> </li> <li><input type="checkbox"/> 우리농산물 공급확대 관련 관계부처 등과 지속 논의</li> </ul>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21. 현재 2% 수준에 불과한 친환경인증농산물을 2010년까지 10% 수준까지 육성하겠다는 정부 계획에 따른 2010년까지의 예산확보 방안</p>	<p>&lt;시정·처리결과&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친환경농업 기반 확대를 위해 중기재정계획에 '09년까지 연간 4,125억원 지원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액 : ('04) 1,502억원 → ('05) 1,692 → ('06계획) 2,218 → ('09계획) 4,125</li> <li>◦ 친환경농자재를 부가세 영세율 적용 대상에 포함(조세특례법 개정)</li> <li>◦ '13년까지 친환경농업지구 1,500개소 2,743억원 지원('05년까지 708개소, 1,159억원 지원)</li> </ul> </li> </ul> <p>&lt;향후 추진계획&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기질비료지원 확대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계획 : ('05) 70만톤, 245억원 → ('10) 150, 750</li> </ul> </li> <li>□ 시·군 단위에 1,000ha규모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6) 3개소(시범사업), 75억원 → ('13까지) 50, 2,500</li> </ul> </li> <li>□ 친환경농업직불제 지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6년부터 논·밭을 통합하여 실질적인 친환경 농업직불제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6년 논단가 : 저농약 217, 무농약 307, 유기 392</li> </ul> </li> <li>◦ 논 단가를 단계별로 밭과 같은 단가 적용 추진</li> </ul> </li> <li>□ 친환경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 지속 실시</li> </ul>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22. 여성농민들을 농업의 보조자가 아닌 농업 경영주체로 인정하기 위한 방안</p>	<p>&lt;시정·처리결과&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농업인의 입장이 반영된 성인지적 관점에서 농림사업 추진 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업인력육성정책에 대한 성별 영향분석 평가 시범 실시('04.12)</li> <li>◦ 후계농업인 선정시 20%범위내에서 여성을 우선선정, 창업신청시 가산점 (20점) 부여</li> </ul> </li> <li>□ 여성농업인의 자질과 리더쉽 향상을 위한 전문교육 과정 신설('05.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농업인 농촌체험가이드반, 여성농정위원반 등</li> </ul> </li> </ul> <p>&lt;향후 추진계획&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농업인육성정책 추진기반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2차 여성농업인육성 5개년계획 수립</li> </ul> </li> <li>□ 여성은 농업경영주체로 정책에서부터 인정할 수 있도록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 본격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5년말까지 농업종합자금, '06년중 2~5개 사업으로 단계적 확대</li> </ul> </li> <li>□ 농업내 역할 증대에 따른 여성농업인 역량강화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영마인드를 가진 핵심 여성농업인력으로 육성</li> <li>◦ 여성농업인 리더쉽 육성과 경영혁신을 선도하기 위한 체계적인 전문교육 강화</li> <li>◦ 농업관련위원회 및 농협 등 여성농업인의 사회참여 확대</li> </ul> </li> </ul>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23. 농업통상전담대사제도 도입 등 농업통상의 근본적 혁신 방안의 마련 및 협상내용의 국회보고 등 국회와의 협력방안의 마련</p>	<p>&lt;시정·처리결과&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업통상 역량강화 방안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업통상 전담대사 대신 '04년말로 임기 종료된 농림부 농업통상정책관(1급상당)을 새로 선발하여 3년('07말까지) 임기로 신규 임용</li> <li>◦ 국제농업국 직제를 변경하여 FTA농업협상을 담당하는 자유무역협정과 신설('05.4.15)</li> <li>◦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통상정책협의회('04. 3회, '05.9월 1회) 및 통상자문단 구성·운영</li> </ul> </li> <li>□ 농업협상의 주요단계마다 상임위 보고 등 국회와의 협력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DDA협상 주요단계마다 농해수위 보고 (3회)</li> <li>◦ 9.13~18 제네바 DDA 농업특별위원회에 농해수위 소속의원 보좌관 2인 동행</li> <li>◦ 의원, 국회보좌관 등 대상 DDA/FTA 농업협상 관련 설명회 3회 개최</li> </ul> </li> </ul> <p>&lt;향후 추진계획&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WTO/DDA 및 FTA 협상에 대비, 농업협상조직 추가 보강 및 민간부문과의 협력 지속 강화</li> <li>□ 각종 농업협상 추진상황에 대한 대 국회협조 및 보고체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상단계마다 의원보좌관 대표단 동행 및 협상결과를 국회 관계자에게 수시 설명</li> </ul> </li> </ul>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24. 원유공급 문제 해소를 위한 소비촉진방안 등 근본적인 수급안정 대책</p>	<p>&lt;시정·처리결과&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낙농가대표·유업체·학계 등 관련 전문가 15명으로 “낙농산업발전대책협의회” 구성('03.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집유체계 개편, 수급제도 개선, 경쟁력 제고방안 등을 포함한 중장기 수급안정대책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책협의회(4차례) 및 실무협의회(7차례) 개최</li> </ul> </li> </ul> </li> <li>□ 우유소비 확대를 위한 대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TV·라디오 공익광고, 우유사랑대축제 등 다양한 소비촉진 홍보실시</li> <li>◦ 우유 무상급식지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4 : 초등학생(210천명) 대상, 14,805백만원</li> <li>- '05 : 초중등생(279천명) 대상, 15,380백만원</li> </ul> </li> </ul> </li> </ul> <p>&lt;향후 추진계획&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낙농진흥회 집유체계를 낙농가와 유업체의 직결체제로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희망하는 지역·유업체별로 단계적 이관을 추진하여 '06년말까지 완료</li> </ul> </li> <li>□ 생산자단체를 중심으로 우유소비 촉진 홍보 강화</li> </ul>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25. 낙농진흥회 소속농가의 기준원유량 상향조정 방안</p>	<p>&lt;시정·처리결과&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집유체계 직결전환 및 기준원유량 조정 협의회 구성('04.9.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산자, 유업체 및 학계 등 10명(위원장 : 조석진 교수)</li> <li>◦ 4차례('04.10월, 11월, '05.3) 협의회 개최, 이해 주체간의 입장차이로 합의 곤란</li> <li>- 정부입장 : 기준원유량 조정과 함께 직결 체제로 전환</li> <li>- 생산자입장 : 기준년도 생산량까지 상향조정 후 직결전환 논의 요구</li> </ul> </li> </ul> <p>&lt;향후 추진계획&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낙농가·유업체 직결체제 전환시 낙농진흥회 소속농가의 기준원유량 조정 검토 후 이관 추진</li> <li>□ 여건을 갖춘 유업체나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직결체제로 전환('06년까지)</li> </ul>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26. 마사회특별적립금이 법규정대로 농어촌복지사업과 장학사업에 집중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p>	<p>&lt; 시정·처리결과 &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까지 법규정에 따라 복지·장학사업 중심으로 사용해 왔으나, 법 근거가 불명확한 홍보 및 소비 촉진 사업에도 일부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필요성은 있으나 법률에 명시되지 않았던 홍보사업 관련 문제점 개선을 위해 '05.5월 마사회법을 개정</li> <li>- 법정 지원범위에 마사진흥, 농업농촌이해증진사업, 농축산물 소비촉진 사업을 추가</li> </ul> </li> <li>□ '05년 장학사업 비중은 높아졌으나 복지분야는 적립금 규모 축소와 지원범위 확대로 비중 축소 (홍보사업 비중도 축소 : '04 : 89억원 → '05 : 4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학·복지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장학복지사업의 운영제도를 개선</li> <li>- “KRA와 함께하는 농촌희망재단”을 설립, 농어촌복지사업과 장학사업을 전담</li> </ul> </li> </ul> <table border="1" data-bbox="598 1489 1428 1758"> <thead> <tr> <th rowspan="2">연도별</th> <th rowspan="2">총액 (백만원)</th> <th colspan="2">복지사업</th> <th colspan="2">장학사업</th> <th colspan="2">기타</th> </tr> <tr> <th>금액</th> <th>비율</th> <th>금액</th> <th>비율</th> <th>금액</th> <th>비율</th> </tr> </thead> <tbody> <tr> <td>'03</td> <td>35,570</td> <td>13,910</td> <td>39.1</td> <td>6,000</td> <td>16.9</td> <td>15,660</td> <td>44.0</td> </tr> <tr> <td>'04</td> <td>35,207</td> <td>10,082</td> <td>28.6</td> <td>18,263</td> <td>51.9</td> <td>6,862</td> <td>19.5</td> </tr> <tr> <td>'05</td> <td>25,313</td> <td>3,846</td> <td>15.2</td> <td>15,927</td> <td>62.9</td> <td>5,540</td> <td>21.9</td> </tr> </tbody> </table> <p>&lt; 향후 추진 계획 &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사회특별적립금 운영실태에 대한 정기적인 감사 실시 및 복지·장학사업 지속확대 추진</li> </ul>	연도별	총액 (백만원)	복지사업		장학사업		기타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03	35,570	13,910	39.1	6,000	16.9	15,660	44.0	'04	35,207	10,082	28.6	18,263	51.9	6,862	19.5	'05	25,313	3,846	15.2	15,927	62.9	5,540	21.9
연도별	총액 (백만원)			복지사업		장학사업		기타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03	35,570	13,910	39.1	6,000	16.9	15,660	44.0																																
'04	35,207	10,082	28.6	18,263	51.9	6,862	19.5																																
'05	25,313	3,846	15.2	15,927	62.9	5,540	21.9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27. 농수산물 공영도매 시장 시장도매인제 즉각 도입 등 거래 방법 개선</p>	<p>&lt;시정·처리결과&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0년 농안법 개정시 지방도매시장에는 시장도매인제 도입 가능하도록 반영</li> <li>◦ '04.6.14 서울강서도매시장에 시장도매인제 도입 운영중</li> <li>◦ 중앙도매시장의 경우에도 금년 7.1일부터 개설자의 판단에 따라 시장도매인제 도입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li> <li>* 농안법시행령 개정('05. 6)</li> <li>※ 시장여건에 따라 시장도매인제를 개설자가 자율선택하도록 「농안법개정 추진위원회」에서 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장관계자, 전문가 참여, '05년중 5차례 위원회 개최</li> </ul> </li> </ul> <p>&lt;향후 추진계획&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장도매인제를 처음 도입한 강서시장의 시장도매인제 연착륙 유도</li> <li>◦ 정부차원에서 시장도매인제 도입을 위한 종합적인 가이드라인 제시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6년초 연구조사 실시 예정</li> </ul> </li> </ul>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28. 도매시장 위탁관리 방안 등 검토</p>	<p>&lt;시정·처리결과&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행 공영도매시장 관리는 관리사무소(28개소), 관리공사(3), 공공출자법인(1) 형태로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리사무소 형태로 운영되는 시장의 경우 순환보직 등의 사유로 전문성 결여 문제 발생</li> </ul> </li> <li>□ 현재 진행중인 농안법 개정시 도매시장 위탁관리 근거를 포함할 계획</li> </ul> <p>&lt;향후 추진계획&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농안법 개정안을 정부에서 검토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속한 시일 내에 관계부처 협의 등 입법 절차를 추진할 계획</li> </ul> </li> </ul>

<별첨3>

2005년 재해 및 복구지원 현황(9. 15 현재)

재해유형	일자 및 지역	기상상황	피해상황	복구소요액 (백만원)
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 : 8회</li> <li>- 대설 : 2</li> <li>- 서리 : 1</li> <li>- 강풍 : 1</li> <li>- 우박 : 2</li> <li>- 호우 : 2</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경지복구 : 1,930.39ha</li> <li>◦ 농작물 : 44,223ha</li> <li>◦ 수리시설 : 482개소</li> <li>◦ 농림시설 : 313.51ha 170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닐하우스 : 166.22ha</li> <li>- 인삼재배시설 : 147.29ha</li> <li>- 축사과손 : 170동</li> </ul> </li> <li>◦ 가축폐사 : 877,282마리</li> <li>◦ 기타시설 : 160개소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합계 : 137,612</li> <li>- 국고 : 66,272</li> <li>- 용자 : 20,590</li> <li>- 지방 : 37,218</li> <li>- 자담 : 13,532</li> </ul>
대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15 ~ 16</li> <li>- 강원 강릉, 평창, 정선</li> <li>- 경북 청송, 영양, 영덕, 봉화, 울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설량(cm)</li> <li>- 강릉 : 20</li> <li>- 영덕 : 12</li> <li>- 봉화 : 17</li> <li>- 울진 : 20</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작물 : 4.9ha</li> <li>◦ 농림시설 : 33.17ha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닐하우스 : 25.78ha</li> <li>- 인삼재배시설 : 7.12ha</li> <li>- 축사 등 : 0.21ha</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합계 : 3,471</li> <li>- 국고 : 871</li> <li>- 용자 : 348</li> <li>- 지방 : 1,897</li> <li>- 자담 : 355</li> </ul>
대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4 ~ 6</li> <li>- 강원 동해, 속초, 강릉, 태백</li> <li>- 경북 영덕, 울진</li> <li>- 경남 울산, 부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설량(cm)</li> <li>- 동해 : 90</li> <li>- 속초 : 55</li> <li>- 강릉 : 54</li> <li>- 태백 : 38</li> <li>- 영덕 : 68</li> <li>- 울진 : 58</li> <li>- 부산 : 37</li> <li>- 울산 : 18</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작물 : 92.61ha</li> <li>◦ 농림시설 : 117.96ha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닐하우스 : 116.89ha</li> <li>- 축사 등 : 108동</li> </ul> </li> <li>◦ 가축폐사 : 15,325마리</li> <li>◦ 기타시설 : 111개소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합계 : 16,274</li> <li>- 국고 : 4,223</li> <li>- 용자 : 8,592</li> <li>- 지방 : 1,622</li> <li>- 자담 : 1,837</li> </ul>
서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14 ~ 16</li> <li>- 대전 동구 등</li> <li>- 충청 영동, 보은, 논산 등</li> <li>- 전라 고창, 남원, 나주 등</li> <li>- 경상 청송, 안동, 합천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화기 서리</li> <li>- 꽃눈 피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작물 : 11,188ha</li> <li>◦ 임산물 : 89.9ha</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합계 : 9,834</li> <li>- 국고 : 7,541</li> <li>- 지방 : 1,731</li> <li>- 자담 : 562</li> </ul>

재해 유형	일자 및 지역	기상 상황	피해 상황	복구 소요액 (백만원)
강풍	◦ 4.20 - 전북 정읍, 고창	◦ 개화기 강풍 (15 ~ 30.2m/sec) - 꽃눈 피해 - 결실량 감소 - 시설물 파손	◦ 농작물 : 9.05ha ◦ 농림시설 : 18.44ha/132동 - 비닐하우스 : 5.31ha/132동 - 인삼재배시설 : 13.13ha ◦ 가축입식 : 50마리 등	◦ 합계 : 682 - 국고 : 147 - 용자 : 387 - 지방 : 59 - 자담 : 89
우박	◦ 6. 2 - 경기 가평 - 충북 제천, 단양 - 경북 봉화, 영주 등	◦ 생육기 우박 (0.5 ~ 10mm) - 과실 피해 - 상품성 저하 - 수확량 감소	◦ 농작물 : 495.4ha ◦ 농림시설 : 0.62ha/17동 - 비닐하우스 : 0.61ha/15동 - 버섯재배사 : 0.01ha/2동	◦ 합계 : 3,471 - 국고 : 871 - 용자 : 348 - 지방 : 1,897 - 자담 : 355
우박	◦ 6.14 - 강원 인제	◦ 생육기 우박 (20 ~ 30mm) - 상품성 저하 - 수확량 감소	◦ 농작물 : 222.2ha	◦ 합계 : 274 - 국고 : 256 - 지방 : 13 - 자담 : 5
호우	◦ 6.30 ~ 7.2 - 서울, 부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북, 경남	◦ 강수량(mm) - 군산 : 281 장수 : 234 전주 : 232 거창 : 226 금산 : 206 태백 : 165 원주 : 145 홍천 : 138 양평 : 140	◦ 농경지복구 : 144.81ha ◦ 농작물 : 7,045.84ha ◦ 수리시설 : 72개소 ◦ 농림시설 : 75ha - 비닐하우스 : 10.28ha - 인삼재배시설 : 64.72ha - 축사 : 23동 ◦ 가축폐사 : 75,615마리 ◦ 기타시설 : 43개소 등	◦ 합계 : 9,374 - 국고 : 4,398 - 용자 : 1,526 - 지방 : 2,573 - 자담 : 877
호우	◦ 7.30 ~ 8.3 ◦ 8.8 ~ 8.11 - 서울, 부산, 인천,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 강수량(mm) - 광주 : 382 양평 : 304 장수 : 289 전주 : 280 임실 : 248 성남 : 232 진안 : 219 거창 : 137	◦ 농경지복구 : 1,785.85ha ◦ 농작물 : 24,715.02ha ◦ 수리시설 : 482개소 ◦ 농림시설 : 68.6ha - 비닐하우스 : 7.35ha - 인삼재배시설 : 61.25ha - 축사 : 29동 ◦ 가축폐사 : 786,292마리 ◦ 기타시설 : 4개소 등	◦ 합계 : 94,232 - 국고 : 47,965 - 용자 : 9,389 - 지방 : 27,426 - 자담 : 9,452

※ 제14호 태풍(나비)피해 및 중부권 호우피해(9.17 ~ 18)는 시도에서 정밀조사 중

<별첨4>

## 남북농업협력위원회 제1차 회의 합의문

---

남과 북은 남북농업협력위원회 제1차 회의를 2005년 8월18일부터 19일까지 개성에서 진행하였다.

쌍방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농업협력을 실현해 나가기로 협의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농업협력사업을 보다 높은 단계에서 확대하여 나가기 위해 일정한 지역의 협동농장을 선정하여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협력사업을 진행하고 그 성과에 기초하여 확대해 나가기로 한다.

남측은 협력하는 농장들의 육묘시설, 비료·농약·농기계 등 농기자재, 배합사료 및 영농기술 등을 2006년부터 지원한다.

이를 위하여 북측은 남측 전문가들과 기술자들이 필요한 시기에 해당 지역의 방문을 보장하도록 한다.

2. 남과 북은 현대적인 종자생산과 가공·보관·처리시설을 2006년부터 지원하는데 적극 협력하기로 한다.

3. 남과 북은 우량한 유전자원의 교환과 육종 및 재배기술, 생물농약의 개발과 생산기술, 농작물 생육예보 및 종합적 병해충 관리체계(IPM) 형성, 남측 농업전문가들의 방문 등 농업과학기술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한다.

4. 남과 북은 축산, 과수, 채소, 잠업, 특용작물 등의 분야에서 협력 사업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한다.
5. 남과 북은 토지 및 생태환경보호를 위한 양묘장 조성 및 산림병해충 방제 등 산림자원을 늘려 나가는데 서로 협력하기로 한다.  
  
이를 위하여 쌍방은 북측의 동·서부지역에 각각 1개씩의 양묘장을 조성하며 구체적인 장소는 앞으로 정하기로 한다.
6. 남과 북은 위에 명시된 사업들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실무적인 문제들을 협의해 나가기 위하여 필요한 시기마다 각각의 실무접촉을 가진다.
7. 남북농업협력위원회 제2차 회의 날짜와 장소는 문서교환 방식으로 협의·확정하기로 한다.

2005년 8월 19일

남북농업협력위원회  
남 측 위 원 장  
대 한 민 국  
농림부 차관 이명수

북남농업협력위원회  
북 측 위 원 장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농업성 부상 문응조



제262회 정기국회(국정감사)

농림해양수산위원회

# 농정 추진현황 보고

2006. 10. 13.

## 농 립 부

“농업·농촌사랑! 우리의 미래를 열어가는 힘”

# 목 차

I . 영농추진상황 .....	495
1. 영농여건 .....	497
2. 농축산물 생산 및 수급전망 .....	497
3.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현황 및 대책 .....	500
II . 주요 업무 추진상황 .....	501
1. 농업·농촌 종합대책 점검 및 조정 .....	503
2. 전문농업경영체 육성 및 소득경영안정 .....	509
3. 쌀 산업의 체질 강화 .....	515
4. 농축산물 유통효율화 및 소비촉진 .....	519
5. 소비자 지향적 농식품안전관리 .....	526
6. 도시민과 상생하는 복지농촌 조성 .....	531

Ⅲ. 당면 현안사항 .....	537
1. FTA 추진동향 및 대책 .....	539
2. DDA 농업협상 동향 및 대책 .....	543
3. 수확기 쌀 수급대책 .....	545
4.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동향 및 대책 .....	547
5. 축산물 안전성 제고 대책 .....	548
6. 농협중앙회 신용·경제사업 분리 .....	552
7. 새만금사업 추진상황 및 대책 .....	554
Ⅳ. 2007년 예산 및 기금안 개요 .....	555
Ⅴ. 입법 추진계획 .....	561
< 별첨 1 > 2005년 국정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	564
< 별첨 2 > 일반현황 .....	588

## I. 영농 추진 상황

## 1

### 영농 여건

- 농작물 주요 생육기인 5월 이후 흐리고 비오는 날이 많았고, 장마기간이 예년보다 10일 가량 길어 초기 생육은 저조
  - 8월 이후 기상여건이 호전되어 작물 결실은 대체로 순조로운 상황
    - \* 5~7월 : 평년대비 강수량 158%, 일조시간 65%, 평균기온 -2.9℃
    - \* 8월 이후 : 평년대비 강수량 34%, 일조시간 107%, 평균기온 +0.4℃
- 9월 중순 발생한 제13호 태풍 '산산'으로 인해 벼 도복 633ha, 과실낙과 1,024ha, 비닐하우스 파손 0.37ha 등 피해 집계
  - 10월 중순경 복구비 지원 등 조치(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 2

### 농축산물 생산 및 수급전망

쌀 : 작황은 평년작 수준, 벼베기 24% 수준 진행

- 금년도 쌀 생산량은 전년(3,311만석) 보다 2.6% 감소한 3,225만석 수준으로 전망
  - 벼 재배면적은 논에 타 작물재배 증가 등으로 전년보다 25천ha 감소한 955천ha 수준(△2.5%)
  - 단위면적당 예상 수량은 9.15일 기준 작황조사(농관원) 결과 489kg/10a(평년 488, 전년 490) 수준
    - \* 충남, 전북, 제주 지역은 전년보다 증가, 기타 지역은 감소
- 등숙기 기상여건이 순조로워 병해충 발생이 적고, 고품질

품종 재배확산으로 쌀 품위는 예년에 비해 좋을 것으로 전망  
채소류 : 재배면적 감소 및 작황부진, 가격은 평년보다 높은 수준

- 마늘·양파 생산량은 12~13% 감소, 가격은 평년보다 높게 형성  
\* 마늘/양파(원/kg) : ('03.9) 2,194/925 → ('04.9) 2,153/612 → ('05.9) 1,889/493 → ('06.9) 2,180/865
- 고추는 재배면적 감소(전년대비 △13%)와 작황불량으로 인한  
단수 감소(전년대비 △16.7%)가 예상되어 가격은 높게 형성될 전망  
\* 고추(원/600g) : ('03.9) 6,145 → ('04.9) 5,287 → ('05.9) 4,500 → ('06.9) 6,420
- 고랭지 무·배추는 집중호우와 폭염으로 가격이 높게 형성  
되었으나 9월 하순부터는 평년가격 유지  
\* 무/배추(원/kg) : ('03.9) 440/450 → ('04.9) 750/550 → ('05.9) 670/860 → ('06.9) 770/880

과실류 : 생산량은 소폭 감소할 전망이나 수급은 전반적으로 안정

- 주요 과수 재배면적 감소(121천ha, △2.4%)로 인해 생산량 소폭 감소  
- 생산량 : ('05) 2,290천톤 → ('06P) 2,149(평년 2,237천톤)(△ 6.2%)
- 사과는 최근 높은 가격형성으로 재배면적이 증가(28천ha, 5.2%)  
\* 사과(천원/15kg) : ('03.9) 35.0 → ('04.9) 42.3 → ('05.9) 39.8 → ('06.9) 39.5
- 배는 과잉생산으로 인해 재배면적 감소 추세(20.7천ha, △ 5.3%)  
\* 배(천원/15kg) : ('03.9) 28.5 → ('04.9) 30.5 → ('05.9) 28.3 → ('06.9) 28.6
- 감귤은 부적지 과원 폐원, 간벌 등의 구조조정 추진으로  
재배면적 감소 예상(21.3천ha, △1.0%)

\* 감귤(천원/10kg) : ('03.9) 31.3 → ('04.9) 43.8 → ('05.9) 43 → ('06.9) 49

축산물 : 한육우 등 사육증가로 가격 소폭하락, 전반적인 수급 안정세 유지

- 한육우 사육두수는 9월 현재 2,021천두로 전년 동기(1,825천두) 대비 10.7% 증가
  - 사육두수 : ('05.9)1,825천두→('06.3)1,836→('06.6)1,959→('06.9)2,021
  - 산지수소(천원/600kg) : ('05.9)5,129→('06.3)4,175→('06.6)3,998→('06.9)4,302
  - 수송아지(천원/두) : ('05.9)2,524→('06.3)2,322→('06.6)2,267→('06.9)2,205
  
- 돼지 사육두수는 소모성질환 등에 따른 출하량 감소로 산지가격이 상승하여 9월 현재 전년 동기 대비 3.7%증가한 9,369천두 수준
  - 사육두수 : ('05.9)8,993천두→('06.3)9,010→('06.6)9,032→('06.9)9,369
  - 산지가격(천원/100kg) : ('05.9)247→('06.3)238→('06.6)316→('06.9)233
  
- 닭 사육수수는 가격하락을 우려한 농가의 입식자제로 9월 현재 전년 동기 대비 6.3% 감소한 119백만수 수준
  - 사육수수 : ('05.9)127백만수→('06.3)123→('06.6)145→('06.9)119
  - 육계(원/kg) : ('05.9)857→('06.3)1,580→('06.6)1,151→('06.9)1,084
  
- 우유(분유)재고는 금년 흑서기에 젖소 생리장애로 인한 생산 감소와 유업체 판촉행사 강화로 전년대비 43.2% 감소한 6,090톤
  - 젖소 사육두수 : ('05.9)485천두→('06.3)482→('06.6)471→('06.9)468
  - 분유재고 : ('05.9) 9.9천톤 → ('06.3) 12.2 → ('06.6) 9.4 → ('06.9) 5.1



### 3

##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현황 및 대책

-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액은 '05년 211억원으로 증가 추세
  - \* 농작물 피해액 : ('02) 120억원 → ('03) 180 → ('04) 206 → ('05) 211
- 작물별로는 **과수(31%), 벼(20%), 채소(18%)** 등의 피해가 크고, 가해 야생동물은 **멧돼지(36%), 까치(27%), 고라니(14%)** 등임
- 야생동물 관리 주무부처인 **환경부와 협력, 피해 방지 대책 추진중**
  - 방조망, 전기목책기 등 야생동물로 인한 과수 피해방지 시설 설치 지원(농림부)
    - 유해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 및 퇴치방법 개발·보급(농진청)
      - \* 지원규모(FTA기금) : ('04) 20억원 → ('05) 83 → ('06) 56
  -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및 농작물 피해보상 기준 등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관련 **지자체 조례 제정** 유도(현재 15개 시·군 제정)
    -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 예산지원** 확대(환경부)
      - \* 예산 : ('05) 지방비 18.1억원 → ('06) 국비 4.5억원(신규), 지방비 33.1억원
  - 유해야생동물 출몰 및 피해신고시 즉시 포획토록 하는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확대('05 : 9개 시·군 → '06 : 25)
    - \* 피해접수 후 포획을 허가하는 기존 포획허가제와 달리 사전포획허가로 신속대응 가능
    - 야생동물 서식밀도, 농작물 피해실태 등을 고려하여 **순환수렵장** 설정·승인(30개 시·군의 순환수렵장 승인 예정, 환경부)
- 농가 피해발생시 **야간 총기류 사용과 관련, 경찰청과 협의**(환경부)

## Ⅱ. 주요 업무 추진상황

# 1

## 농업·농촌 종합대책 점검 및 조정

### 가 추진 경과

- ◇ DDA 협상, 한미 FTA 협상 등 대내외 여건변화에 대응한 농업·농촌의 중장기 비전과 발전전략 수립 추진
- ◇ 기 계획된 3년단위 점검 일정에 맞추어 종합대책을 보완하고 119조원 투융자계획 조정 및 제도개선도 추진

□ '05.12월 농림부 차관을 단장으로 「농업·농촌 종합대책 점검단」을 구성하고,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정책 과제 발굴 추진중

○ 정책공모제(41건 제안중 9건 선정), 설문조사(농업인 350명, PCRМ 고객 3,300명) 등을 통해 **현장의 정책제안 수렴**

- 농업인들은 농산물 가격안정, 재해 등에 대비한 경영위험관리, 직불제 확대, 연금지원 확대 등의 정책을 선호

○ 주산지별로 **분야별 토론회**(채소, 한우, 도농교류 등)를 개최하여 **품목별 경쟁력 제고방안에 대한 지역 의견을 수렴**

- 농업 생산시설에 대한 보조 지원, 브랜드 경영체에 대한 지원 확대 등

○ 실무협의회(17회), 투융자평가 협의회(5회), 道 농정과장회의, 관계부처협의회 등을 개최하여 **대책 및 투융자 조정방향 협의**

○ 종합대책 실적 평가 및 조정방안에 대한 **전문가 연구 추진**(농경연)

## 나 중점 검토방향 및 주요 보완과제

### 〈중점 검토방향〉

- ◆ 고객 중심의 농식품정책을 강화하고, 전업적 농업경영체 중심의 경쟁력 제고 및 농촌정책의 체계적 추진에 중점
- ◆ 시장개방 가속화에 대응하여 기술농업·수출농업 적극 육성

□□ 농식품정책 : 국민에게 안전한 고품질 농식품을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정책 기능 강화

- 주식용 곡물자급률, 공급열량자급률 등에 관한 중장기 식량자급  
목표를 설정·점검하여 농업정책의 가이드라인으로 활용
  - \* 농림부 장관이 위원장인 중앙농정심의회에서 심의 및 점검
- 농식품의 위생·안전성에 대한 관리를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강화하여 소비자의 신뢰 제고
  - 비료, 농약, 항생제의 안전기준 준수 및 중금속 등 관리기준 설정
    - \* GAP, HACCP, 이력추적제, 원산지표시제 등 제도 내실화
- 농업과 식품산업의 연계와 발전을 위한 농식품정책 적극 모색
  - 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통계 조사, 기술개발 등 지원 본격화
  - 단체급식 등 대량수요처 중심의 식재료 공급체계 구축
    - \* 「농업·농촌기본법」을 「식품·농업·농촌기본법」으로 개정하고, 「(가칭)식품  
산업육성에관한법률」을 제정하여 식품산업육성의 제도적 기반 제공

○ 바람직한 식생활지침 개발, 농식품 소비에 대한 소비자 교육 등  
국민의 균형된 영양과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정책지원 강화

□□ 농업정책 : 농업인이 비농업분야 종사자와 소득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경쟁력 제고 및 경영안정 지원 강화

○ 농업인력, 농지, 농업금융, 경영기술 등 **농업구조 혁신 가속화**

- 전업적 농업경영체에 농업자원이 집중될 수 있도록 여건 조성
- 경영이양 촉진과 고령농에 대한 복지대책 차원에서 **농촌형 특별 소득보조 도입 추진**

○ **농산물 품질고급화**를 위해 품목별 우수 품종개발 및 신기술  
개발, 유통 차별화 및 브랜드화 등에 대한 지원 확대

- 소비자가 브랜드만 보고서 믿고 선택할 수 있도록 우수 농산물  
**파워 브랜드 육성 추진**
- 지역농협의 유통혁신 및 전국단위 품목별 생산자조직 육성
- 새로운 소득 작목 및 수출시장 적극 발굴, 종자산업 육성  
등으로 신성장동력 확충

○ 농작물 재해보험제, 농지은행제 등 **위험관리시스템**을 발전  
시키고, 농가단위 소득안정제도도 마련

-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 품목을 대폭 확대하고, 농업용 시설 보험까지 포함

□□ 농촌정책 : 농촌지역개발사업의 체계화를 통한 농촌의 생활  
여건 개선 및 소득원 확충, 복지 프로그램 강화

- 농촌 지역개발 및 복지사업 체계화·효율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
  - 부처별로 분산된 농촌지역개발사업 등의 농림부 이관
- 농촌 공간을 산업·휴양 공간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소프트웨어 산업을 집중 개발
  - 향토산업, 지역농업클러스터, 농촌관광 등 활성화
- 농촌형 임대주택 건설 추진, 상수도 보급 확대 등을 지원하여 농촌 주거환경 개선·정비
  - \* 농촌의 수질·토양 오염 감소 및 쓰레기 처리 대책 추진
- 농업인 연금·건강보험료 부담 경감 등 농촌사회안전망 확충
  - \*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및 농업인 재해보험 도입 검토
- 국제결혼 이주 여성농업인 등 새롭게 발생하는 복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 강화

◆ 대내외 농업·농촌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투융자계획 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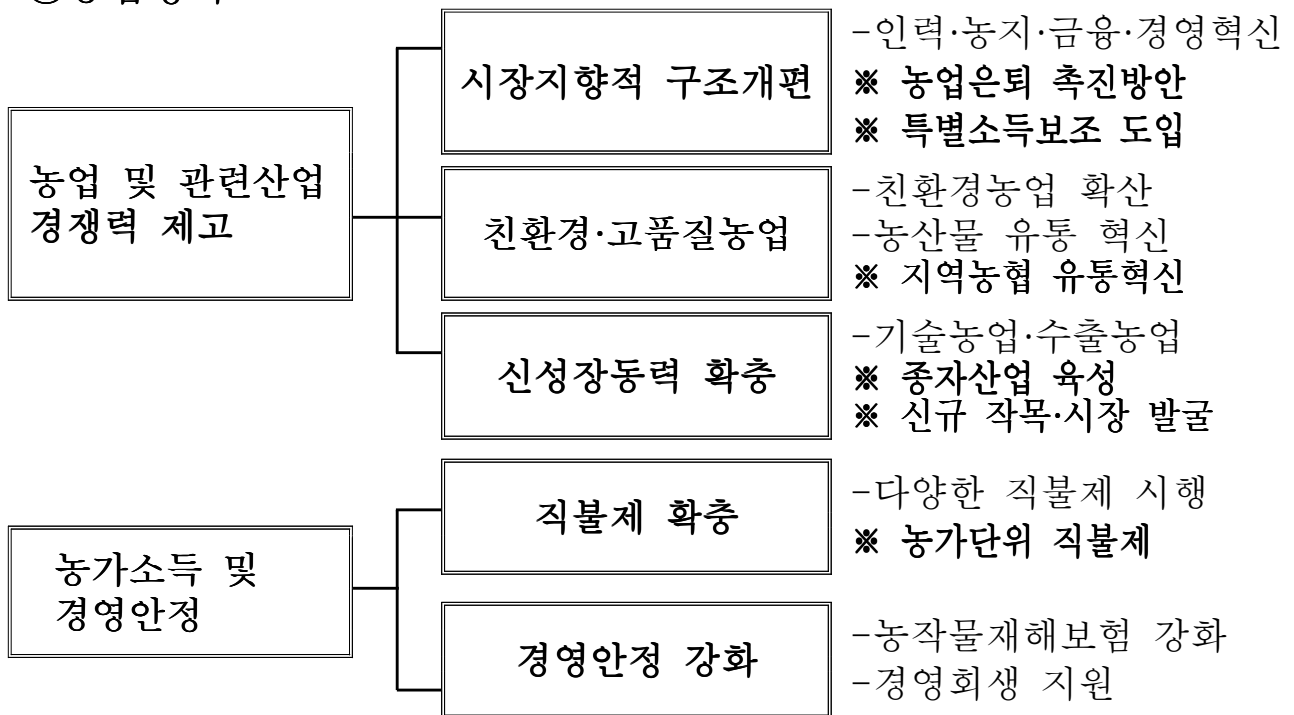
- 지난 3년간의 투융자 추진실적 평가결과를 반영하고, 새로운 농식품·농업·농촌정책을 재정적으로 뒷받침
- 유사사업 통폐합(현재 226개 사업), 추진방식 개선 및 평가 강화 등 투융자사업의 효율성 제고

## < 주요 정책과제 >

### ①농식품정책



### ②농업정책



### ③농촌정책



< 참 고 > : 맞춤형 농정 추진 구상(안)

◆ 평균 농가를 대상으로 한 기존의 정책에서 탈피하여 농가 유형별로 「선택과 집중」원칙에 입각하여 차별화된 정책 적용

◆ 직업으로서의 농업 종사여부 등에 따라 농가유형을 구분하고, 각 유형에 알맞은 정책 프로그램을 마련

① 직업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그룹

- 시설현대화, 영농규모화, 컨설팅 지원, 직불제 확충 등을 통해 개방에 적극 대응, 소득을 안정적으로 유지토록 지원
- 창업농에서 전문농업경영인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성장단계에 따른 맞춤형 전문농업교육 서비스 지원

② 농업에서의 은퇴를 희망하는 그룹

- 생계비 걱정 없이 은퇴할 수 있도록 농촌형 특별소득보조, 농촌형 역모기지론 도입 등 복지 프로그램 강화

③ 취미로 농업에 종사하는 그룹

- 농업정책의 대상에서는 제외, 농촌주민으로의 복지 혜택은 부여 (다른 직업에서 고소득을 얻는 농촌주민의 경우 혜택 제한)

◆ 맞춤형 농정 추진을 위한 농가 실태 파악 등 제도적 기반 조성을 위해 농가등록제 도입 추진



## 2

## 전문 농업경영체 육성 및 소득·경영 안정

### 가 전문 농업경영체 육성

- 후계 농업인력 영농정착 지원 및 잠재농업인력 양성 체계 강화
  - 35세미만 창업농 1,044명을 선정(3월)·지원하고 45세 미만 신규후계농 282명 지원(9월말 현재)
    - 창업농 자금 지원상한 인상(1.2억원→2) 및 농지구입 지원단가 인상(논 3만원/평 → 4만원, 밭 3.5 → 5)
    - 신규후계농 농업종합자금 신용평가 가점 확대(1.5점→ 5)
  - 농과계대학생에 대한 영농정착 교육과정(3개 대학, 160명) 및 비농업계 귀농자 대상 직업훈련과정(3개 기관, 52명)시범 추진
  - 한국농업전문학교의 명칭 변경과 심화교육과정 설치 근거 등을 담은 「한국농업대학설치법」 제정(9.27일 공포)
- 기존 농업경영인 추가지원 제도 도입 및 우수 경영체 발굴 홍보
  - 선정 후 5년 경과한 후계농의 사업성과 등을 평가하여 추가 자금 지원 추진 중(6월말 1,829명 선정, 1,200억원 규모)
  - 우수 농업경영체를 발굴하여 벤치마킹 사례로 홍보 실시
    - 「농자천하지대박」 등 경영혁신시리즈 4편 발간(8월, 7,700부)
    - 우수경영체 2,100호 조사선정 마무리(9월), 지방언론과 연계 홍보

□ **농업인교육체계 개편방안(2월)에 따라 맞춤형 교육컨설팅 지원**

- 품목단체 중심으로 기술 및 마케팅 등 전문교육 실시(8월, 20천명)
  - 해외 첨단기술 및 경영기법 습득을 위한 **농업인 해외연수** 추진(450명)
  - 우수 **브랜드경영체(35개)**의 생산농가에 대한 **품질향상 교육** 실시
- 지자체, 농협, 대학, 지역농업클러스터 등이 연계하여 **지역농업 교육협력체(광역 6, 기초 2)**를 구축, **지역별 특성화 교육** 실시
- **36개 우수 컨설팅업체를 인증(2월)**하고 **농촌관광·클러스터** 등으로 컨설팅 영역 다각화('07년 투자유치 기법, 특허출원 등 추가)
  - '07년부터 **바우처 사업**으로 개편, 농가가 원하는 업체에서 컨설팅

□ 「제2차 농업경영체 활성화 방안」(5월)에 따른 제도개선 추진

- 중기청의 **Inno-biz(혁신형 중소기업) 인증체계**에 **농업분야 신설**
- 영농조합 법인의 배당소득 **소득세 감면** 및 농업법인 **법인세 감면**시한 **3년간 연장('06.12→'09.12)** 추진중(조세특례제한법 개정)

□ **여성농업인 지위향상 및 여성결혼 이민자 가족 지원** 추진

- 부부가 농업경영계획, 역할분담 등에 대한 협약을 맺고 공동으로 경영에 참여하는 '**농가 경영협약**' 체결 추진
  - '06년 농업인단체 주관으로 100쌍 교육, '07년부터 시범시행 예정
- 최근 급증('05.12말 14천명 추정)하고 있는 **국제결혼 이주 여성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 지원**
  - 이주 농촌여성의 정착지원 방안에 대한 실태 조사중(10월, 서울대)
  - '07년부터 30개 시·군에서 교육도우미를 통한 방문 또는 소그룹 형식의 우리말 교육과 상담 지원사업 시범실시

## 나 농업정책금융 지원제도 개선

- 금리 인하 등 수익자 위주로 정책자금 지원제도 개편
  - 농업인 대상 자금은 4%에서 3%로, 비농업인 자금은 4~5.5%에서 4%로 정책자금 금리 인하(1.1 시행)
    - \* 재해대책융자금(4%→1.5), 농지매입자금(3%→2) 등 추가 인하
  - 농업인의 대출기관 선택권 보장을 위해 RPC 운영자금, 농기계 구입자금, 축발기금 등의 정책자금 취급은행을 확대(1월)
    - 시중은행도 농신보 보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7월)
    - \* '06.9월 현재 8개 시중은행(외환·신한·기업·부산·전북·대구·산업·제일은행)의 농업 정책자금 대출잔액은 총 49건 1,016억원
- 법정보증한도(20배)를 초과('04년말 67배)하고 있는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의 안정화 대책 마련·추진('05~'09)
  - 정부출연확대('05 : 4,000억원 → '06 : 5,780), 금융기관 출연요율 인상(0.2% → 0.3) 및 위탁보증수수료 인하(보증료의 15% → 10)
    - 10월부터 농·수협 및 산림조합의 회원조합 신규출연(연간200억원 수준)
  - 금융기관의 책임성 제고를 위해 부분보증을 강화
    - '05.1월 10~20%이던 금융기관 책임비율을 '06.7월부터 15~30%로 확대
  - 향후 적정소요의 정부출연 등 기금건전화 대책 적극 추진
    - \* '07년 정부출연 6,869억원 예정, '08년까지 기금정상화(운용배수 20배) 목표

## 다 직접지불제 확충

□ 쌀소득보전직불제 도입 등에 따라 직접지불 예산이 크게 증가, '06년 농업예산 대비 직불예산 비중은 23.6%

\* 직불제 예산비중 : ('01) 4.1% → ('03) 9.8 → ('05) 13.6 → ('06) 23.6

□ 금년에는 농업인의 실익 증대를 위해 직접지불금 지급단가 인상 및 대상지역 확대 등 기존 직불제의 내실화 추진

○ 쌀소득보전 고정직불금 지급단가 인상('05 : 60만원/ha → '06 : 70) 및 지급시기 조정

○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는 399개 오지면을 대상으로 한 시범 사업을 금년부터 전국으로 확대, 본사업 추진

- '06년부터 전국의 경사도 14%이상 밭(119천ha, 140천 농가)을 대상으로 선정(8.22)하고 이행상황 점검(9~10월) 중

○ 친환경 농업 직불제는 대상지역을 확대(16천ha → 27)하고, 논 저농약 신규지원 및 지원단가(논) 평균 70% 인상(114억원)

\* 지급단가 : 저농약 217천원/ha, 무농약 150 → 307, 유기 270 → 392

□ 직불제 사업의 효율적 관리와 농가 편의를 위해 농림사업 통합정보시스템(AgriX)으로 온라인화(5.1)

○ 조건불리 직불, 친환경 직불, 경관보전 직불 등 3개 직불제 사업에 대해 온라인 시스템 구축('07.1월 친환경축산 직불사업 추가)

- 업무처리 시간 80% 감축, 신청 첨부서류 자동조회 등 효율성·편의 제고 효과

## 라 농가경영 안정지원 강화

- '01년에 지원된 5.6조원의 상호금융대체자금에 대해 상환기간을 연장하되, 상환기간 및 금리를 원금 상환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
  - 원금 10%이상 상환시 5년 분할상환(금리 3%), 그 외는 3년 분할 상환(5%)
  - '06년 상환도래분에 대해서는 농가별 신청(1~6월)을 완료하고 금년도 12월말까지 대출진행중
    - \* '06년 상환도래분(5조 2,948억원) 신청실적(8.31) : 순지원대상액 3조7,808억원, 연기신청액 3조 7,031억원(신청액 93%가 원금10% 상환)
  - '07년 상환 도래 예정인 3,389억원의 상호금융대체자금에 대해서는 내년 1~6월까지 신청접수예정
- 농지은행(한국농촌공사)이 농지를 매입하고 그 대금으로 부채를 상환하도록 하는 경영희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시범운용 실시 \* 연체농가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 후 재임대, 영농지속 및 환매권 보장
  - 378농가(942억원 부채상환, 554ha 매도)의 신청을 받아 종합평가를 거쳐 179농가(311ha)를 사업대상으로 선정(8월)
    - 10월말까지 매매·임대차 계약 체결, 자금지원('06예산 : 422억원)
      - \* 경영위기 유형(연체 164농가, 자연재해 15), 대상농지(논 194ha, 밭 82, 과수원 35)
  - 평가결과, 후순위에 해당된 지원적격자(41농가)는 '07 예산 조기집행 방안 강구(경매신청 유보, 연체이자 감면 등 농협과 협의)

## □ 농작물재해보험과 가축공제 대상 품목·축종 확대

○ 재해보험 대상품목을 기존 6개 품목(사과, 배, 포도, 복숭아, 감귤, 단감)에서 **엷은감을 추가, 7개로 확대**

- 가입현황 : 농가(27천호), 보험료(617억원), 가입면적(21천ha)

\* 품목별 가입율 : 사과(51.9%), 배(55.3), 포도(2.3), 복숭아(8.6), 감귤(0.4), 단감(24.8)

\* 지원내용 : 순보험료 58.8% 및 운영비 100% 지원('06 : 567억원)

- 수도작(논벼) 도상연습 실시('06 ~ '08) 및 품목개발 추진단 구성('06.5)을 통한 작물별·재해별 보험화 가능품목 발굴

○ 가축공제는 금년부터 사슴, 칠면조를 추가하여 **9개 축종 대상**

\* 9개 축종 : 소, 돼지, 말, 닭, 오리, 꿩, 메추리, 사슴, 칠면조

- 가입현황 : 농가(7천호), 보험료(119억원), 가입두수(40,871천두), 가입율(34.7%)

\* 대상/지원내용 : 자연재해, 화재, 질병 및 사고/공제료 50% 지원('06 : 246억원)

- 공제료 분납제 도입('06.8), 공제사업자에 민영 보험사 포함('07.1), 가금류에 설해피해보장('07.1) 등 가축공제사업 개선을 추진중

□ 9월까지 태풍·우박 등 총 7차례 자연재해에 대해 1,946억원(보조 1,230, 용자 716) 지원

○ 보조금 지급대상 확대 및 재해복구자금 금리인하(4%→1.5)

- '06년부터 1,800m<sup>2</sup> 이상 우사돈사 등 대규모 시설도 보조금(35%) 지원

○ 농업재해 복구비 산정기준 단가 인상(44개종목) 및 신설(인삼)

## 가 공공비축제 및 쌀소득보전직불제 보완 추진

- 농업인·산지유통업체가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06년산 공공비축미곡 매입방안을 조기 확정·발표(8.1)
- '06년도 매입량은 350만석으로 하되, 농업인의 편의를 위하여 산물벼 100만석 매입 추진
  - 농가 판단에 따라 산물벼(100만석)의 포대벼(250만석) 전환을 허용하되, 수급관리를 위해 포대벼의 산물벼 전환은 불허
- 조생종벼의 출하시기가 앞당겨짐에 따라 산물벼 매입을 지난해(10.1) 보다 10일 앞당겨 9.20일부터 추진
  - \* 10.10일 현재 조생종 거래가격이 우선지급금 보다 높아 매입실적 저조(24천석 매입)
- 지난해 포대벼와 산물벼의 매입가격 이원화로 인한 시장 혼선 예방을 위해 산물벼에 대해서도 우선지급금 지급 추진
  - 산물벼의 경우 포대벼에서 포장 제비용(670원/40kg)만 차감
    - \* 우선지급금 : 포대벼 48,450원/40kg, 산물벼 47,780원/40kg
  - WTO 허용보조 요건인 시장가격 매입을 적용하기 위해 '07.1월에 매입기간중 산지 쌀값(10월~12월)으로 사후 정산

□ 농업인 편의 제공 및 실경작 농업인 권익보호를 위해 쌀소득  
보전직불제 제도 개선

- 등록방법을 농업인이 직접 신청서를 작성하는 방식에서 행정  
기관이 제시한 등록내용을 농업인이 확인하는 방식으로 개선
- 변동직불금 지급근거가 되는 벼 재배여부 및 농지변동 등의  
확인기한을 8.31일로 설정하여 직접지불금 수급권을 명확화
  - 지자체, 농업인단체 등에 직접지불금 부당신청 신고센터를 설치  
(05.11)·연중 운영 등 감시기능 강화
  - \* '06.9월말 현재 12건의 부당신청 신고(비경작지주 수령 10건, 비대상농지 1,  
허위신청 1)가 접수되어 직불금 회수 및 미지급, 실경작자 지급 등 조치

□ 농업인 연말·영농철 자금수요 충족을 위해 고정직불금 단가 인  
상 및 직불금 지급 시기 조정

- 고정직불금 지급 단가를 평균 70만원/ha('05 : 60만원)로 상향
  - \* 고정직불금 단가 고시(9.20) : 농업진흥지역 746천원/ha 비진흥지역 597
- 직불금 지급시기도 고정직불금은 당초 11월에서 10월로, 변동  
직불금은 4월에서 3월로 조정

□ 목표가격과 고정직불금 단가인상 등 농업인단체 제기사항은  
DDA협상과 연계, 현재 전문기관에서 연구용역중(KREI, 5~12월)



## 나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 추진

□ 「고품질브랜드 쌀 육성대책」('06.6)을 추진, '10년까지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시·군 단위 대표브랜드 100개를 육성

\* 대표 브랜드 육성 목표(누계) : ('07) 8개 → ('08) 40 → ('10) 100

\* 브랜드쌀 취급비율 : ('07) 10% → ('08) 20 → ('10) 30 → ('12) 50

□ 시장·군수가 주도하여 브랜드 경영체 통합 등 규모화 추진

○ 계약재배의 내실화를 위해 마을단위 10~50ha수준으로 농가를 조직화하고 쌀 품질별로 구분 관리하여 대표브랜드 육성

- 지자체는 시·군 단위 공동브랜드 관리 육성을 위한 조례 제정

○ 쌀 브랜드 경영지침서를 제작하여 RPC·지자체·지역농협 등에 배부 및 교육(6월말, 2천부)

- 수확후 관리 표준매뉴얼 제작·보급(5월, 1천부) 및 교육(6월, 600명)

□ 브랜드 평가를 통해 우수 경영체 중심으로 집중 지원

○ 시·군이 제출한 브랜드 경영체 사업계획에 대해 전문가 평가·심의를 거쳐 사업대상자를 확정하고 집중 지원

○ 노후가공 시설 교체 및 품질분석 장비 구입 지원 등 시설 현대화 지원(8개소, 개소당 20억원, 국고 40%)

- 브랜드 경영체의 계약재배 내실화를 위한 농가조직화 교육·홍보 및 브랜드 컨설팅 지원(개소당 2억원, 국고 50%)

○ RPC 건조·저장시설 110개소에 대해 상반기에 대상자 선정을 완료(4월)하고 건조·저장시설 설치중(12월까지)

\* '06 사업계획 : 지원규모 110개소, 단가 4.5억원 → 5.5, 국고보조를 10%인상(민간)

## 다 시판용 수입쌀 도입현황 및 향후 계획

□ '05년분 수입쌀 시판물량 22천톤 판매 완료(9.28)

- 중국산(7월), 미국산(8월), 태국산(9월) 순으로 완료(호주산은 납품기일 문제로 가공용으로 전환)

□ '06년분 시판물량(34,429톤)은 국내시장 영향 최소화를 위해 금년중 계약완료하고 '07.1월부터 5월까지 도입 추진

\* 국별배정 물량 : 중국(21,500톤), 미국(10,414), 호주(1,515), 태국(1,000)

- 중국산의 경우 3등급, 미국산의 경우 1등급을 선호하는 시장 반응을 반영, 국가별 도입등급 결정

\* 중국산 1등급 : 3등급(40 : 60) , 미국산 1등급 : 3등급(60 : 40)

- 호주산은 시장반응 점검차원에서 50 : 50, 태국산의 경우 소량인 점을 감안하여 전량 1등급 도입

※ 가공용(211천톤)은 금년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전량 3등급(현미)로 도입

□ 유전자 변형쌀에 대한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입찰유의서에 유전자 변형쌀 입찰불가를 명시하고 선적전 수출국 확인서 징구

- 선적시 수출국의 확인서 내용과 현물 일치성 점검을 위해 국제 검정기관(OMIC) 검사를 의무화하고 도착시 식약청 검사의뢰

□ 농산물품질관리원 특별사법경찰관 및 명예감시원(21천명)을 활용한 수입쌀 부정유통 단속 및 제도개선 추진

- 음식점 쌀 원산지 표시제 도입을 위한 식품위생법 개정을 위해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국회 법사위 계류중)

## 가 농축산물 우수 브랜드 육성 추진

## 《 농산물 》

- 시장개방 확대, 대형유통업체 성장 등 급변하는 유통환경에 대응, 농산물 파워브랜드 중점 육성(우수브랜드 육성대책 수립·발표, 6월)
- 규모화·전문화된 생산자단체 중심으로 시설·운영자금 집중 지원
  - 공동브랜드, 안정적인 관로확보, 균일한 품질관리가 가능한 공동 마케팅조직을 선정·지원('06년까지 15개 조직/2,094억원)
- 과수 주산지에 선별·저장 및 상품화의 핵심역할을 수행할 거점산지유통센터(APC)를 단계적으로 확충
  - ('05까지) 7개소, 289억원 → ('06) 4개소 추가, 211억원
  - \* '06.9월 전북동부산악권(장수, 무주, 진안, 남원) 거점산지유통센터 최초 개장
- 지역별로 특화된 「유통전문교육과정」을 운영(10개 기관, 440명 교육)함으로써 브랜드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
- 경영표준화 및 품질관리를 위한 브랜드 경영지침서 제작·보급(12월)
  - \* (채소류) : 고추, 마늘, 양파, 수박, 딸기, (과실류) : 사과, 감귤, 배, 포도, 단감
- 품목별 수확후 관리기술 표준매뉴얼을 연차적으로 보급
  - \* '06년 현재 사과, 배 등 15개 품목에 대해 개발, '08년까지 25개 품목으로 확대

## 《 축산물 》

- 그간 축산물 브랜드 육성계획의 성과와 보완사항을 바탕으로 「축산물브랜드 장기발전계획」 수립('06.2)
- 우수 축산물브랜드 육성을 위해 성공 가능성이 높은 브랜드 경영체 선정 및 집중 지원(5~10월)
  - 34개 우수 축산물 브랜드 경영체에 1,043억원 지원
  - \* '04~'06년(누계) : 73개 경영체(한우 44, 돼지 29), 2,555억원
  - 브랜드 경영체의 사업성과를 평가해서 우수 경영체를 중심으로 무이자 인센티브자금 지원('06년 300억원)
- 우수 브랜드 경영체에 대해 경영 및 마케팅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컨설팅 지원(11개소, 5천만원/개소)
  - \* 브랜드경영체 컨설팅(누계) : ('05) 11개 경영체 → ('06) 22개(신규 11개)
- 소비자단체 주관의 우수 축산물브랜드 인증을 위해 각계 전문가로 심사단을 구성, 현장실사 추진중(12월 발표, 44개소)
  - \* '05년 25개 경영체(한우 13, 돼지 12) 브랜드 인증, '06년부터 육우육계까지 확대
- 우수 브랜드 판로 개척과 다각적인 홍보지원 강화
  - 브랜드 경영체와 「유통업체 바이어초청 간담회」 개최(5, 9월)
  - 「우수 축산물브랜드 전시회」를 개최, 소비자 신뢰확보(9.7~9.9)
    - 코엑스(COEX) 태평양홀, 111개 브랜드 참여(55천명 참관)

## 나 | **농식품산업 육성 및 소비촉진**

### □ **농식품산업 육성 지원을 통한 생산자가공업체 연계 강화 유도**

- 유기가공식품인증제 도입 및 전통주 업체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전통주·유기가공 식품산업 육성대책 수립**(7월)
- **원료 농산물 구매자금 및 가공시설현대화 지원**(1,116억원 용자)

### □ **고부가가치 식품산업 육성기반 조성을 적극 추진**

- 식품업체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위생, 경영개선 등 지원**
  - 사이버식품산업 상담(180회) 및 HACCP 인증지원(100억원 용자)
- **규격화·국제화 등을 통한 우리음식 세계화 기반 구축**
  - 전통가공식품 KS규격 심사기준 제개정 추진(제정 22건, 개정 35건)
  - 우리음식 조리법 표준화(300종, 문화부 공동), 해외요리교실 개최(55회) 등
- **지역농업클러스터('05~'07간 20개소 지원)와 향토산업('07~'09간 19개사업 지원)을 연계, 지역별 특색있는 식품산업을 개발·육성**

### □ **농식품 소비촉진을 위한 캠페인 및 각종 미디어를 통한 홍보 추진**

- **명절맞이 우리 농식품 선물하기 캠페인, 우리 농산물사랑 작품 공모전(2.28) 및 브랜드 아이디어 공모전(9.5) 등 홍보**
  - \* 설·추석에 장관서한, 우수상품 카탈로그를 경제 5단체·100대 기업에 우송
  - \* TV 다큐멘터리(2편) 제작·방영(10.5~6), CF 제작·방영(10.1~11.30), 건강 프로그램(11.24~27) 기획, TV 방영용 애니메이션(26편) 제작 중
- **생산자 단체에 자조금을 지원하여 품목별 맞춤 홍보 추진**
  - \* '06년 자조금 지원(축산/원예) : 6축종 136억원, 21품목 55억원

## 다 농산물 물류효율화

- 규격포장화율이 낮은 배추·무의 포장유통을 '07년부터 전면 실시하기 위해 시범사업 시행방안 마련('06.7)
  - '06.9 ~ 10월 기간, 수도권 공영도매시장(8개소)에서 시범사업
    - 시범사업 대상 도매시장에 100% 포장배추 반입중, 조기 정착 전망
    - \* 포장화율('05) : 배추 10.6%, 무 39.9%, 원예농산물 전체 87.8%
  
- 유통과정 안전성을 확보하고 물류비용 감소를 위한 대책 추진
  - '07 ~ '08년까지 생산자단체 소유의 일반차량 250대를 광폭(탑)차, 냉장·냉동차 등으로 개조 지원
  - 농산물 RFID 표준안을 제정(12월), '07년부터 인삼 등에 적용
    - 거점산지유통센터(전북동부), 경북 농특산물, 평택쌀 등에 시범 운용중
    - \* RFID : 포장단위로 물류흐름, 생산이력 등을 무선주파수로 관리(기존 바코드 대체)
  
- 도매시장 거래제도 개선을 위한 「농안법」 개정 추진(9.26 국회제출)
  - 도매시장법인 등의 자율적 인수·합병을 통한 규모화 유도
  - 거래제도 및 시장운영 방식의 다양화를 통한 효율화 추진
    - 전자거래 등을 통한 유통 물류 효율화 도모
    - 파렛트 출하 촉진을 위한 정가수의매매 확대(시행규칙 개정완료, 6.9)
  
- 노후·포화상태인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추진을 위해 기본설계 착수 예정(11월)
  - \* '07년 예산안에 설계비, 공사비 등 1단계 사업비 반영(396억원)

## 라 농식품 수출 확대

- '06년 수출목표 24억불 달성을 위해 유망상품 개발 및 지원대책 추진
  - 8월말 현재 농식품 수출액은 **가금육**(45% 증), **가공식품**(17% 증) 등 호조에 힘입어 전년동기 대비 2.6%증가(1,410백만불)
  - 신규시장 개척 및 **우리 농식품의 현지화, 세계화** 지속 추진
    - 싱가포르, 두바이 등 신시장 개척과 수출유망품목(25품목) 집중육성
      - \* 해외 홈쇼핑 등을 통해 유자차 수출 26% 증가(중국, 미국 등 신규시장 개척)
    - 삼계탕의 미국시장 진출을 위해 전문가 현지설명(9월) 등 추진, 조만간 수출개시 기대
  
- **고유가, 환율하락** 등에 대응한 **농가수출업체 지원대책** 추진
  - 「**환변동 보험**」 가입비의 업체당 최고 지원한도액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조정**
  - 시설원에 수출농가에 대한 **유류대 용자예산 증액**(90억원 → 130)
  - 김치수출시장 회복을 위해 홍보지원 등 **예산 13억원 긴급투입**
  
- **일본 잔류농약관리제도 강화**에 따라 농진청·유통공사 등 유관기관 합동 T/F팀을 구성(3월)·운영, **안전성 강화대책 강구**
  - 수출농가·수출업체에 대한 안전성 관리 컨설팅 강화 및 수출농산물 농약안전사용지침 배부 및 순회교육실시 등
    - \* 일본의 한국산 파프리카 전수검사 조치(1월)에 대해 일본측과 협의, 안전성 관리체계가 완비된 2개업체 전수검사 해제(6.24), 5개 업체 추가 해제(10.2)

## 마 종자산업 발전 중장기 대책 추진

- 종자산업을 고부가가치의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종자산업발전 중장기 대책**」을 수립(9월)
  - '06년 현재 978억원 수준인 종자산업 투융자 규모를 '15년 1,622억원 수준으로 확대, '15년까지 총 1조 3,300억원 투입
    - 민간육종 연구개발 지원(1,211억원), 분자육종 투자 강화(482억원), 고품질 품종 육성(2,739억원), 종자 보급 및 유통지원(8,899억원)
  - '15년까지 연간 종자수출 1억불 달성('05년 1,700만불) 및 세계 5위권 품종보호 출원등록국으로 도약('05년 세계 12위) 목표 설정
    - 벼는 '15년까지 **최고품질 품종 12개** 및 특수미 품종 10개 개발·보급
    - 채소는 아시아 시장을 중심으로 '15년 8천만불 수출을 목표
    - 화훼류는 대외 로열티에 대응한 신품종 육성, '15년까지 현재 1% 수준인 **장미·국화 국내품종 재배 비율을 30, 20%**로 확대
    - **과수 분야**는 '10년까지 무독묘(Virus-free) 생산·공급체계 구축
      - \* 우리 품종 보급률 : 채소 90%, 식량 95%, 과수 20%, 특용 80%, 화훼 5%
- 민간의 품종개발 연구를 집중지원하고 정부는 민간 육종이 어려운 분야에 투자를 강화하는 등 R&D 투자효율성 제고
  - 역량있는 산업체를 대상으로 연구 지원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지원규모도 지속적 확대
    - 성장가능성이 높은 고추화훼 등 전략품목은 산·학·연 기획과제 추진
      - \* 품종개발 연구지원 : ('06) 45억원 → ('10) 80 → ('15) 100



- 정부 연구기관은 민간 참여가 어려운 벼원에 등 품종개발 투자 강화
- 우수 품종 보급·판매 지원 및 건전한 종자 유통질서 확립
  - 우수 종자 생산업체에 증식·채종비 등 신규 지원('07년 60억원 용자)
  - 과수 무독묘 생산·공급체계 구축을 위해 '05~'10년간 “과수 우량 묘목생산 지원사업” 지속 추진(총 197억원)
    - 과수 모수(원종) 계통보존증식을 위한 중앙과수묘목센터 설치('07년)
  - 벼 보급종 갱신율('06년 36%)을 '08년까지 50%로 확대하고 민간 참여가 늘어나고 있는 씨감자는 중장기적으로 민간에 공급기능 이양
  - 과수 및 채소종자에 대한 ‘품질표시사항’ 이행여부 및 불법 무보증 씨감자 유통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
- 종자산업 육성기반 구축을 위한 제도 및 조직 정비
  - 품종 보호권자 권리보호 강화를 위해 분쟁 조정제도 도입 등 제도적 정비를 위한 종자산업법 개정 추진(법제처 심사중)
    - 농업유전자원 수집·보전, 접근이용 등 농업유전자원 종합 관리를 위한 법안도 마련, '07년 입법 추진
  - 국가품종목록 등재를 의무화하고 있는 벼·보리·콩 등 품목은 정부가 보급하는 경우에만 등재의무를 부여, 민간 진입을 유도
  - 농림부에 종자산업을 총괄하는 ‘농생명산업정책과’ 신설(8월) 및 농진청에 ‘원예육종기술지원센터’ 설치 예정(12월)

## 가 농식품 안전성 관리 강화

## 《농산물 안전성 관리》

- 농산물품질관리법 하위법령 개정('06.1)으로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Traceability) 본격 시행
  - 농협, 롯데마트, 이마트 등 GAP 민간인증기관 지정(20개소), 신청농가(5,000호)에 대한 교육을 거쳐 7월부터 인증 시작
    -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 교육·홍보를 위해 한국농업전문학교에 GAP교관·인증심사원 교육과정 개설(316명 교육)
    - 생산자(6,499명), 유통업체(211개소), 판매업체(466개소) 등 이력추적 등록 완료
- 출하전 안전성조사를 강화, 기준초과 농산물의 시중유통 사전차단
  - 농산물·농약 외에 중금속·병원성 미생물 등으로 조사범위 확대
    - \* 중금속조사 : ('05) 244건 → ('06) 1,000 → ('07) 10,000
  - 도단위의 정밀분석실을 거점지역 시·군까지 확대 설치
    - \* 정밀분석실 : ('03) 9개소 → ('04) 12 → ('05) 15 → ('06) 19
- 44개 폐광지역('05.7 ~ '06.8, 중금속 실태조사결과)에서 재배되고 있는 농산물에 대해 출하전 납·카드뮴 등 안전성조사 실시
  - 산자부가 폐광지역 오염농경지 휴경, 객토 등 대책을 총괄, 농림부는 안전성 조사 결과, 기준초과 농산물 전량 수매·폐기

## 《축산물 안전성 관리》

### □ 생산에서 소비까지 선진 위생관리기법인 HACCP 적용 확대

- 축산물 유통 및 사육농가에 적용하는 HACCP 지침 및 적용모델 개발
  - 축산물판매업 완료(5월), 축산물 보관·운반, 집유업 개발중(4~12월)
  - 돼지 사육단계 HACCP 지침 및 적용 모델 개발(6월)
    - \* 사육단계 HACCP 제도 조기정착을 위한 컨설팅 사업 추진('06년, 225백만원)
- 도축장(139개소), 사료공장(47개소), 축산물 가공장(344개소), 판매업소(2개소) 등에 대한 HACCP 지정(8월)
  - HACCP 지정 및 사후관리 등을 담당할 HACCP 기준원 설립(10월)
- HACCP 운용수준 평가('05년 2회, '06년 1회)로 정책자금 차등지원
  - \* 상위권 금리 0%, 중위권 3%, 하위권 자금지원 배제

### □ 쇠고기 이력추적관리제도와 음식점 식육 원산지 표시제 준비 철저

- '08년 전면 실시에 대비하여 '07년까지 쇠고기 이력추적제 관련 법령 및 추진체계 정비
  - \* 현재 23개 브랜드·지역 시범사업 참여, 98개 도축·가공·판매장 지정·운영
  - \* ('05) 59천두 → ('06) 110천두 → ('07) 400천두 → ('08) 2,000천두(전면시행)
- 음식점 식육 원산지표시제 관련 관계부처(보건복지부)와 협조,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 추진중('07.1월 시행예정)
  - \* 영업장 면적이 300㎡ 이상인 일반 음식점의 생육과 양념육을 주 재료로 사용하여 조리·판매하는 구이용 쇠고기를 대상

### □ '07년 닭오리고기 포장유통 의무화(1일 8만수 이상 도축장 우선 적용)를 위한 축산물가공처리법 하위법령 개정 및 세부지침 마련(10월)

## 나 자연순환형 친환경 농업 확산

- '10년까지 화학비료·농약 사용 30%절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제2차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계획('06~'10)」 수립('06.2)
- 1,000ha 이상의 광역친환경농업단지 3개소 조성(완주, 순천, 울진)
  - 10ha이상 친환경농업지구 조성('05년까지 742개소, '06년 78)
- 친환경 농자재 지원 확대로 합성농약·화학비료 대체 유도
  - 유기질비료 : ('05) 70만톤, 245억원 → ('06) 120만톤, 420억원
  - 천적해충방제 : ('05) 321ha, 12억원 → ('06) 1,093ha, 38억원
  - 토양개량제 : ('05) 637천톤, 397억원 → ('06) 696천톤, 422억원
- 친환경농산물 소비촉진 및 유통활성화 대책 추진
  - 유통활성화자금 및 직거래매취자금 지원확대('05 : 229억원→ '06 : 250)
  - 자조금제를 도입(8억원), 영상홍보물제작 및 판촉행사 실시(7~9월), 잔류농약검사 등 품질관리 및 상품개발 지원 등 추진
-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자 신뢰제고 및 인증농가 편의를 위하여 친환경농업육성법 개정(9.27 공포) 및 하위법령 개정추진
- 현재 4단계 인증종류를 3단계로 축소(전환기 유기 삭제), 기반이 취약한 축산물에 대해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종류 신설
- “친환경농자재 공시제도” 도입으로 친환경농업에 사용가능한 자재목록을 공개하여 농업인의 선택편의 제공

□ 가축분뇨를 퇴·액비로 사용하여 경종농업에 환원시키는 “자연 순환 농업대책” 수립('06.6) 및 추진

- 비료 공정체계상 부산물비료로 취급되는 **가축분뇨 퇴비를 유기질 비료**(현재는 식물성 유박류만 유기질 비료로 분류)로 **재분류**(12월)
  - 우리 실정에 맞는 가축분뇨 퇴·액비 부숙도 판정기준 확립(12월)
- 가축 밀집 사육지역, 중규모 양돈농가가 많은 지역에 대해 **분뇨자원화 공동 시설**을 중점설치('07년 2개소 시범사업)
  - 공동퇴비장 규모화 및 액비저장조 설치 확대(매년 600개 설치)
- 지역 농·축협 및 영농조합법인을 **자연순환농업 선도 조직**으로 집중 육성
  - **살포비**(‘06 : 20억원) 및 자연순환농업활성화 자금 신규지원(‘07 : 160억원)
  - 퇴·액비 수요확대를 위해 **작물재배 퇴액비 시범포 운영**(‘06년 50개소)
- “자연순환 농업 활성화”를 위한 **심포지엄**(7.5) 및 **전국순회**(4개 지역) **세미나** 개최(9.18~22)로 공감대 형성

□ 가축분뇨에 의한 환경부담 경감을 위해 **제도정비** 등 추진

-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8.29 국회통과)을 근거로 **지역별 가축분뇨 퇴·액비 이용계획 수립 의무화**
  - 가축분뇨 부적정 처리 농가에 대해 시정명령 및 허가취소 등 조치
- **친환경 축산 직불제** 시범사업 결과를 분석하여 농가참여 확대를 위한 개선 추진('05 : 574호 → '06 : 635)

## 다 수입농산물 원산지 관리 강화

- 시장개방 확대에 대응하여 농산물 원산지 표시 제도를 가공·판매 단계에서 음식점 단계로 점차 확대
  - 가공·판매 단계의 원산지 표시제도는 지속적인 단속·처벌 강화로 높은 이행수준 유지
    - \* 원산지 표시 이행율 : ('94) 62.2% → ('00) 94.9 → ('05) 96.9
    - \* 단속실적/구속수사 : ('02) 6,427건/3건 → ('05) 3,231/45 → ('06.8) 2,582/25
    - \* 특별사법경찰관/명예감시원 : ('05) 400명/17천명 → ('06) 400명/25천명
  - 음식점에서의 농산물 원산지표시는 초기 도입단계로 우선 '07.1월부터 쇠고기에 대해 적용(영업장 면적 300㎡[90평]이상 음식점)
- 원산지 관리 강화를 위해 수입급증 농산물 중심으로 유통성수기, 품목별 부정유통 취약시기에 전국 일제단속 위주로 전환
  - 명절(제수선물용), 봄가을(건강식품), 여름 휴가(축산물), 김장철(양념류)
  - 부정유통이 잦은 업종품목(김치, 쌀, 냉동고추 등)에 중점 단속 실시
- 국내 시장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세청 및 검찰청이 몰수한 농산물을 농림부가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추진
  - 농림부 훈령 제정(6.26), 농안법 개정 추진으로 가액 2천만원 이상 몰수 농산물 관리권한을 검찰에서 농림부로 이관

## 6

## 도시민과 상생하는 복지농촌 조성

## 가 농촌 지역개발·복지사업 체계화

□ 부처별로 분산된 농어촌 지역개발 사업을 효율화하고 사업간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추진체계를 일원화

○ 관계부처장관 회의(8.29)에서 부처간 업무조정 범위를 결정, 신활력지원사업 등 4개 사업 예산을 '07년부터 농림부로 이관

(단위 : 억원)

사 업	사업 내용	'06 예산	'07예산(안)
■신활력지원사업(행자부)	낙후지역(70개 시군)의 내생적, 자립적 발전기반 조성 지원	1,900	1,882
■오지종합개발(행자부)	오지면의 생활환경 개선 지원	1,083	1,134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행자부)	노후주택 개량 등 농어촌의 주거환경 개선	180	180
■농어민 연금보험료 지원(복지부)	농업인의 연금보험료 지원	673	761
□□ 4개 사업		3,836	3,957

□ 이관받은 사업과 농림부의 기존 농업·농촌사업을 연계, 농촌 지역 개발사업의 종합적인 체계화 방안 마련(12월)

○ '07년도 농림부 예산안(3,957억원)에 반영, 직제 개정 추진

○ 농림부 내에 인수준비단(단장 : 정책홍보관리실장)을 설치(9.1), 행자부 등과의 이관업무 인수·인계를 차질없이 추진

## 나 농촌 복합생활 공간 조성

- 농촌 주거공간을 쾌적하게 조성·정비하여 농촌주민의 정주환경 개선과 도시민의 농촌유입을 촉진
- '04년도에 시작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06년 현재 96개 권역을 선정하여 추진 중
  - '04년 선정 36개 권역 : 경관, 생활개선 등 사업을 추진중
  - '05년 선정 40개 권역 : 기본계획 수립 완료 후 20권역 실시설계 추진중
  - '06년 : 35권역 타당성 조사 후 20권역 선정(6월), 기본계획 수립중
- 농촌의 교육·의료·주거여건 등을 종합 개선하기 위해 **농촌 복합생활공간 4개 모델마을** 조성중('07 하반기 입주 목표)
  - 담양 수북, 의령 양천마을은 금년 하반기 주택건축을 시작하고 제천 송학, 상주 녹동마을은 '07하반기 주택건축 예정
  - \* 수북, 양천, 송학은 전원마을 사업, 녹동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 도시민 유입촉진을 위해 전국 55개 지구를 대상으로 **전원 마을조성사업**(20~50호) 추진중
  - '04~'05년 착수한 30개 지구의 입주예정자(745가구) 중 71% (529가구)가 도시민으로 조사



- 읍 및 주요 면 소재지에 복지 서비스 및 생활편의시설 등 마을단위에서 지원이 어려운 서비스를 집중
  - '06년 사업 대상면 선정기준 정립 후 '07~'09년 10개면 시범 실시, '17년까지 200개면(군당 2~3개소) 추진
    - \* 읍지역은 행정자치부의 소도읍 육성 사업으로 추진
  
- 지역리더, 주민, 지자체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농촌지역개발 추진에 필요한 교육 실시(8월까지 1,742명)
  - 외부전문가와 농촌마을간 연계 활성화를 위해 인터넷을 통한 전문가 검색·자문 지원시스템 프로그램 개발중('06.5~12)
  
- 도시민의 농촌정주에 필요한 온라인상의 정보제공을 위해 농어촌종합정보포털(<http://www.nongchon.or.kr>)운영(5월 개시)
  - 전원생활, 농지은행, 주택정보 등 7개 분야 39개 컨텐츠 운영
  - 전화상담 등 오프라인 서비스도 제공(8월까지 전화상담 1,167건)
  
- 도시민 유치를 위한 「'06 전원마을 페스티벌」 개최(코엑스, 10.12~15)
  - 예비평가(7월)를 통과한 총 20개 시·군(22개 전원마을) 참가
    - 총 입주세대 2,958, 21세대~800세대로 입주규모 다양
  - 전시장은 (i) 지자체관, (ii) 정책홍보관, (iii) 전원생활체험관, (iv) 부대행사 및 이벤트관 으로 구성
    - \* 시·군은 주거단지 조성·공동이용시설·활동프로그램 등 전원마을조성계획 수립 홍보, 중앙부처는 농촌정주지원시책 홍보

## 다 도·농 교류 활성화

- **녹색농촌체험마을**(’05년까지 123개, ’06년 67개)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 시책 추진
  - 농촌체험활동 중 사고발생에 대비해서 **보험 가입마을 확대** (’05 : 20개 → ’06.9월 : 65개 마을)
    - \* 마을당 1회에 한하여 연간 보험가입료 최대 100만원 지원
  - **마을 사무장제도를 도입하여** 마을, 사무장, 시장·군수 3자간의 협약체결(3월) 후 사업 수행중
    - \* 100개 마을, 월 100만원 지원(국고 50%, 지방비 40%, 마을 부담 10%)
  - 농촌체험마을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1인1촌 전문가 컨설팅 제도 확대**(’05 : 40개 마을 → ’06 : 50마을)
- **1사1촌 운동**은 9월말 현재 **12,666건의** 자매결연, 901억원 수준(’06년 목표 545억원)의 교류활동 성과 실현
  - \* 농산물직거래 492억원, 일손돕기 158억원, 농촌체험 및 기증 142억원 등
- **농촌사랑범국민운동본부**(3월), **농촌사랑지도자연수원**(2월)을 개원, 마을대표·관련 기업 및 도시민 등 교육(’06계획 : 1만명)
- 「여름휴가 농산어촌고향에서 보내기」 캠페인 추진(6~8월)
- 도농교류의 체계적 지원을 위해 농민단체, 전문가 등과 협의를 거쳐 **도농교류촉진법** 제정 추진중

## 라 농업생산기반 정비 및 농촌환경 개선

- 저수지 개발 등 생산기반정비사업의 잦은 설계변경, 사업비 증가 등을 방지하기 위해 「생산기반정비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정(1월)
- 분야별 외부 전문가를 중심으로 ‘총사업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대한 사전 심의 추진(2차례 46개 지구 심의)
  - 대상사업 : 사업기간 2년 이상,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인 사업(188개)
- 재해대비 수리시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주요시설 개보수 추진
  - 정밀 안전진단 후 우선순위에 따라 수리시설 개보수 추진('05 : 신규 112지구 → '06 : 84)
  - 집중호우 등 이상기후에 대비, 물넘이시설 등 저수지 비상시설 보강('05 : 20지구 → '06 : 29)
  - 아산호 배수갑문 확장(120m → 290) 등 하구둑 구조개선 추진
- 낙후된 농촌지역에 생활용수 공급 등 농촌 생활환경개선
  - 일반 상수도 공급대상에서 제외된 소규모 농촌마을에 양질의 암반지하수를 개발공급('05 : 346개소 → '06 : 267, 누계 5,364)
  - 폐영농자재 수거비 지원 확대 및 홍보 등을 통한 수거율 향상
    - 폐비닐 수거 : ('05) 26억원, 85천톤 → ('06) 30억원, 100천톤
    - 전국 농기계 순회수리봉사기간(연 2회) 등을 이용 수거처리 강화

## 마 농업인 복지 증진사업

□ 농업인의 건강보험료, 자녀 양육비 등 각종 기초생활 부담을 줄이고 복지혜택을 늘리는 시책을 지속 추진

○ 농업인 건강보험료 경감율('05 : 40% → '06 : 50%) 확대

- 농업외 소득이 많은 사람에 대한 차등지원 등 제도개선 추진(12월)

\*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 개정·시행('06.7.29)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었으나 주변이 농경지인 지역을 준농어촌 지역으로 포함하여 지원

○ 농업인의 보육시설이용 영유아(5세이하) 양육비 지원 대상('05 : 2ha미만 농가 → '06 : 5ha 미만 농가) 확대

- 보육시설 미이용시에도 보육료 일부(25%~50) 지원

○ 농촌 주민의 대학생 자녀 교육비 전액 무이자 융자 지원 확대

- 대학생 학자금 융자 : ('05) 25천명, 637억원→('06) 26천명, 700억원

○ 농작업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생활 불안정 해소를 위해 농업인 안전공제 보상 수준 확대

- 사망시 지급액 : ('05) 15백만원 → ('06) 25백만원

□ 취약농가 영농인력 지원 등 중소농 지원대책 신규 추진

○ 농작업·교통·재해 등 사고를 당한 농가에 대해 영농도우미 지원

- 82개 시·군, 65세 미만, 농지 3ha 미만 농가에 대해 시범실시(4천명, 13억원)

○ 65세 이상, 고령단독·편조손 농가 등의 안정적인 농촌 생활 영위를 위해 가사도우미 지원(82개 시·군 시범실시, 12천명, 7억원)

### Ⅲ. 당면 현안 사항

# 1

## FTA 추진동향 및 대책

### 가 한미 FTA 추진 경과

- 협상 출범 공식 선언('06.2.3) 이후 3차에 걸친 협상 진행
  - 5월 중순 협정문 초안을 교환하고 6, 7월 제1, 2차 협상을 통해 양측의 주요 제도 및 기본 입장에 대한 의견 교환
  - 8.15일 상품/농업/섬유 양허안을 일괄 교환하고 9.6~9일 개최된 제3차 협상(시애틀)에서 일부 품목의 양허안 논의
- 협상 진행상황의 정확한 전달과 양허안에 대한 의견수렴 노력을 통해 투명한 협상 추진 노력
  - 토론회·공청회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품목단체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협상 전략 협의

### 나 한미 FTA 주요 쟁점 및 대응방향

#### (1) 농업 분과

- 양허안에 대해서는 양허범위와 이행기간이 쟁점
  - 우리는 민감 품목에 대한 예외적 취급 및 장기 이행기간을 주장하나, 미국은 완전한 양허제외는 없어야 한다는 입장

- 제3차 협상에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액이 크면서도 우리의 생산 규모는 작은 일부 품목에 주로 관심을 표명

\* 사료용 옥수수, 채유용 대두, 사료용 근채류, 가공농산물, 관세율이 낮은 품목 등

- 협정문 분야에서는 농산물 세이프가드 도입 및 수입쿼타 (TRQ)에 대한 엄격한 관리규범 마련 여부가 최대 쟁점

- 우리는 농산물 세이프가드 도입 필요성을 강조, 미국은 우리가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면 논의하겠다는 입장

- 미국은 복잡한 수입쿼타 관리에 불만을 표시하고 국영무역, 수입부과금 금지를 주장, 우리는 다양한 관리방식 인정을 주장

## (2) 검역 및 위생(SPS) 및 기타 분과

- SPS 분야는 SPS 위원회 설치 및 현안 논의여부가 쟁점

- 미국은 SPS 위원회 신설을 주장하나, 우리는 양국간 접촉 창구(contact point) 개설 수준으로 충분하다는 입장

- 미국은 FTA 협상과 SPS 현안 진전을 동시에 추구, 우리측은 현안논의가 FTA협상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된다는 입장

\* 미측 관심분야 : 동축산물, 생명공학분야, 가공식품, 식물분야

- 원산지 분과에서 우리측은 신선 농산물에 제3국산 농산물이 섞인 경우 미국산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기본 입장을 견지

- 쇠고기에 대해 미국은 도축국을 원산지 주장, 우리는 도축전 미국에서 출생·사육되어야 미국산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
- 서비스 분과와 금융서비스 분과에서 농업관련 유보안이나 농협의 정책금융과 관련한 미국의 관심표명은 없었음

## 다 | 향후 대응방향

- 품목별 민감도 등을 감안하여 차별화된 협상전략으로 대응
  - 쌀은 식량안보상 중요성을 감안하여 양허 제외하고, 축산물·과일 중 민감한 품목은 다양한 양허전략으로 피해 최소화
    - 실행관세가 높은 민감품목은 장기간의 이행기간 확보 주력
  - 미국 관심품목이나 우리에게 덜 민감한 품목은 전략적으로 활용
- 국내 영향이 작은 품목을 중심으로 수정 양허안 준비
  - 우리측 양허안에 대한 미측 관심사항을 검토하여 품목단체 및 전문가와 양허안 수정방안 및 협상 전략협의
- 향후 협상 속도가 빨라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대비
  - 주요 민감품목에 대해 양허 제외, 장기 철폐, 농산물 세이프가드 적용, 수입쿼타(TRQ) 등 다양한 양허방식을 구체화
  - 미국에 제시할 양허수정 요청안(리퀘스트 리스트)도 마련



- SPS 통합협정문 구체화와 함께 농업분야 **통합협정문 작성 준비**
  - 대상 품목의 검토와 병행하여 농산물 **세이프가드 및 수입 쿼타(TRQ) 관리방안** 협의를 위한 구체적인 안을 마련

## 라 기타 FTA 추진현황 및 대응방향

- 아세안과는 '05.2월 협상을 개시한 이후, '06.4월 제11차 협상에서 **상품분야 협상 타결**(하반기 국회비준 요청 전망)
  - 현행관세유지(71개 품목), 향후 10년간 현행관세유지(226개 품목) 등 297개 초민감 품목을 설정, 농업부문 피해 최소화
- 인도는 '07년말 타결을 목표로 '06.3월 이후 3차례 협상 개최
  - 10.10~13일에 걸쳐 제4차 협상이 진행중이며, 협상 문안과 상품의 관세인하 방식 및 범위 등에 대한 의견 교환 예정
  - 양국 모두 농업을 민감분야로 인식하고 있으나 인도가 쌀 수출국인 점을 감안하여 농업분야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응
- 캐나다와는 금년말 타결을 목표로 '05.7월 이후 7차례 협상 진행, 농산물 관세철폐 수준에 대한 양측 기대가 달라 난항 예상
  - 일본, 멕시코와는 양허안에 대한 입장차이로 교착상태

- ◇ 유사 입장국과의 공조대응을 통해 협상 실익을 최대화하고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

### 가 최근 협상 동향

- 홍콩각료회의('05.12) 합의 시한을 지나서도 협상의 돌파구를 모색하였으나, 농업 시장접근, 농업 국내보조 및 비농산물 시장접근의 3대축에서 주요국간 대립국면 지속
- G8 정상회의(7.15~17, 러시아)에서 협상 돌파구 마련 촉구에 따라 주요 6개국 각료회의(7.23~24)가 개최되었으나 입장차 지속
- Lamy WTO 사무총장은 농업협상 교착을 지적하며, “협상 환경이 좋아질 때까지 DDA 전반에 대한 협상 일시중단” 선언(7.24)
- 향후 협상일정을 제시하지 않고, 협상재개 전까지 각국이 국내적으로 검토해 볼 것을 제안
- 수출개도국 그룹(G20) 각료회의(9.9~10)에서 DDA 협상재개를 촉구하는 각료선언문을 채택하는 등 협상재개 노력이 진행
- 그러나, 미국EU 등 주요국간 접촉에서는 여전히 기존 입장 고수

## 나 향후 전망 및 대응 방향

- 협상이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 재개될 지는 불투명한 상황
  - 대부분의 국가들은 미국의 중간선거(11.7), 미국내 2007년 농업법 개정 동향 등을 주시
  - WTO 체제 위기감을 회원국들이 공유하고 있음을 감안, 주요국들이 일부 양보할 경우 타결될 가능성도 존재
  
- 협상단계에서 우리 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쟁점별 유사입장국과 공조로 탄력적이고 능동적 대응
  - 관세감축의 경우 민감품목 및 국내보조 분야 논의와 연계하여 우리의 전체 실익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대응
    - 관세상한, 민감품목, 특별품목, 개도국 특별긴급관세 등의 경우 수입국 그룹(G10), 특별품목 그룹(G33)과의 공조를 통해 최대한 신축성 확보
    - \* G10 고위급회의(10.26, 제네바)를 개최, 협상동향 및 공동대응방안 논의 예정
  - 무역왜곡적 국내보조의 경우 50%이상 감축이 대세인 바, 감축폭 최소화에 주력하되 국내정책 전환노력도 병행
  
- 세부원칙 타결시 농업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 이행계획서 작성
  - 이행계획서 검증단계에서는 개도국지위 확보를 위해 최대한 노력
    - 우리의 경제적 위상을 감안할 때 대부분 국가들은 부정적 시각
  
- 국회·언론·농민단체 등에 대한 설명 등을 통해 협상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적 공감대 형성 노력 강화

**3****수확기 쌀 수급대책****가 쌀 수급 동향 및 수확기 사전대책****□ 쌀 수급은 민간재고 축소 및 생산량 감소로 양호한 상황**

- 8월말 기준 민간재고는 지난해(169만석)보다 약 110만석 적은 59만석으로 9월 중·하순부터 쌀시장은 신곡 중심으로 거래
- 10.10일 현재 산지쌀값은 153,448원/80kg으로 전년동기 대비 6.3%, 지난해 수확기 대비 9.6% 높은 수준

(단위 : 만석)

	2004	2005	2006(P)	2007(P)
공급량 (A)	3,867	4,196	4,206	4,111
(생산량)	(3,091)	(3,473)	<b>(3,311)</b>	<b>(3,225)</b>
수요량 (B)	3,277	3,628	3,504	3,341
재고량 (A-B)	590	568	<b>702</b>	<b>770</b>

\* '06년말 재고량은 국내산 대북 지원(9월) 약 70만석(10만톤)을 감안한 수치

**□ 안정적인 수확기 시장 여건 조성을 위해 사전대책 추진**

- '06년산 공공비축미 매입방안을 조기에 확정·발표(8.1)
  - 산물벼 우선지급금 지급 및 산물벼의 포대벼 전환 허용
- 북한 수해복구용 국내산 10만톤 지원(9월) 등으로 재고 축소
- 쌀 관측 체계를 구축, 농업인과 RPC 등에 쌀수급에 관한 정보제공(3회) 및 합동 수급점검회의 운용(5회)

## 나 수확기 쌀시장안정 대책

□ 농업인의 연말 자금수요를 감안, 고정직불금(약 7천억원)을 포대벼 매입(10.25) 시점 보다 앞당겨 지급

○ 지급 시기 : ('05) 11.10일경 → ('06) 10.20일경

□ '06년도분 MMA 수입물량 246천톤은 수확기 부담 최소화를 위해 연내계약은 완료하되, 도입시기를 탄력적으로 운영

○ 가공용(212천톤)은 금년 12월부터 도입하고, 시판용(34천톤)은 내년 1월부터 5월까지 도입 추진

□ 합동수급점검회의의 지속 운영 및 RPC의 벼 매입실적 점검 강화

○ RPC에 대한 벼매입 지원자금의 1.5배이상 수확기 의무매입 이행 여부를 일일점검하고 미이행업체는 지원규모 축소

□ 재고 축소를 위해 가공·주정용 특별 처분 확대

○ 가공·주정용 공급 : ('05)132만석 → ('06)195 → ('07P)205

◇ 벼재배면적 감소, 평년작 수준인 생산량을 감안하면, 금년도 수확기 시장혼선 우려는 적으나

○ 불안심리 등으로 비정상적으로 시장 형성시, 수확기 쌀시장 안정을 위한 별도대책을 검토

- “도축월령 30개월 미만의 뼈를 제거한 쇠고기” 만을 수입하는 것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확정(3.6)
  - 미국측이 신청한 수출작업장에 대한 현지점검(2차례)과 전문가 협의(9.7) 등을 거쳐 미국 수출작업장(36개소) 승인(9.11)
- 미국 수출작업장 승인 이후 아직까지 미국산 쇠고기 수입 실적이 없음
  - \* 미국업계는 뼈조각이 광우병 위험과 무관하므로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뼈조각 문제 해결 전까지 본격적인 선적을 보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 정부는 한·미간에 합의된 수입위생조건에 따라 뼈, 부산물 등 수입금지 물품이 섞여있는지에 대한 철저한 검역 실시
  - 생산자단체 대표들과 현장검역 실태 합동점검(9.30)
  - 한미간 합의사항 이행여부 확인을 위한 미국 작업장 현지 점검 등 사후관리도 실시할 계획
    - \* 등뼈 등 특정위험물질(SRM) 확인시 : 미국산 쇠고기 전체 수입중단
    - \* 뼈조각 등 수입금지물품(SRM이외) 확인시 : 해당 수출작업장 수출선적 중단
    - \* 미국의 광우병 관련 방역상황 악화시 미국산 쇠고기 수입중단 가능
- 농관원, 수과원, 사군을 중심으로 수입쇠고기 부정유통 철저히 단속

**5****축산물 안전성 제고대책****가 소 부루세라병 근절 대책**

- '03년부터 부루세라병 확산방지를 위해 매년 검사대상을 확대하고 감염소 색출·제거 및 발생농장 이동 제한 등 추진
  - 발생지역과 30두 이상 농장에 대한 검사 실시('03.5)
  - 가축시장 거래 한육우 암소와 자연 교배수소 검사 의무화('04.6), 다발 시·군 21개소 일제검사('04.11)
  - 도축장에 출하되는 한육우 암소 및 수집상·중개상이 사육하는 소에 대한 검사 의무화('05.6)
- '13년 근절 목표로 「소부루세라병 방역 대책」('06.6 수립) 추진
  - 의무검사 대상을 거래되는 모든 한육우 암소·10두이상 농장(연2회)까지 확대하고, 다발 시·군(분기 1회) 일제검사(7.15)
  - 발생농장은 60일 간격으로 3회이상 검사후 이동제한 해제(최소 6개월 소요), 종식 후에도 6개월간 분기 1회이상 검사 실시
  - 살처분 보상금을 100% 지급함에 따라 농가의 방역활동이 소홀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보상금 상한액을 80%('06.11), 60%('07.4)수준으로 조정

□ 발생건수는 8월말 기준 2,624건으로 검사대상 확대와 살처분 보상금 감액에 대비한 농가의 검사 신청이 늘어나 증가

○ 농장 감염율은 8월말 기준 2.02%로 지난해(2.03%)와 비슷한 수준, 지역별로 편차(충북 4.43%, 경북 2.99, 경남 2.44)가 크게 나타남

\* 발생동향 : ('05) 2,590건, 17,690두 → ('06.8) 2,624건, 16,709두

\* 검사동향 : ('05) 121천호, 558천두 → ('06.8) 126천호, 647천두

※ 부루세라병은 임상증상이 없고 잠복기간(2주~6개월)이 길며, 채혈검사를 실시해야만 확인이 되는 질병으로 다른 질병에 비해 근절에 많은 기간 소요 (호주, 뉴질랜드 등 축산 선진국도 근절에 10~20년 이상 소요)

□ 수소 및 취약농장·지역 등에 대한 특별방역 강화대책 마련(10월)

○ 검사대상에 수소와 10두미만 농장을 추가하고, 농가가 소를 신규 입식하는 경우 일정기간 격리후 검사 의무화

○ 다발 시·도(충북·경북·경남) 특별관리방안, 가축시장 방역 관리, 검사증명서 휴대제 보완, 사람 감염 실태조사 확대 등

□ 살처분보상금 소요액 1,273억원을 확보하여 추석전 지급완료

○ 기존 예산 300억원 외에 3~9월까지 미지급액 973억원은 예비비에서 추가 확보하여 지급 완료(10.2)

○ 향후 소요될 추가 보상금은 다른 사업비 집행잔액에서 우선하여 재원 확보

\* '07예산안에 보상금 예산 대폭 증액 반영 : ('06) 300억원 → ('07) 800억원



## 나 | 조제분유 위생관리 대책

- 미국산 조제분유에서 **금속성 이물질**(’06.2), 국내 조제분유에서 대장균의 일종인 **사카자키균**(Ent. sakazakii)이 검출(’06.9)
  - \* 사카자키균 : 분유 원료, 살균공정 등에서 오염되며 6개월미만 신생아 중 면역결핍 및 생후 28일 미만 영아, 2.5kg 미만의 저체중아에게 위험
- 해당 제품 판매금지 및 영업자로 하여금 **전량 회수 조치**
  - \* 이물질 검출 조제분유 : 총 71,514개 중 61,848개 회수(기소진 9,666)
  - \* 사카자키균 검출 조제분유(9.25일 현재) : 총 6,012개 중 3,132개 회수
- 조제분유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현재 미설정된 **이물 관련 기준 및 검사체계를 '08년까지 구축**
  - 소비자단체, 학계 등과의 협력하에 조제분유 이물의 정의, 기준 규격 및 관리방안 마련을 위해 **연구사업 추진**(10월)
    - \* EU를 제외한 미국 등 선진국도 사카자키균에 대한 별도 관리기준 없음
- 조제분유 생산과정 실태조사 및 이물 등에 대한 검사 강화를 통해 **사전 안전 관리체계 구축**
  - 조제분유 제조공정에 대해 한식연, 보건산업진흥원, 학계, 전문가 등과 **합동 실태조사**를 실시, HACCP 평가기준 마련(’07)
  - 이물 등에 대한 검사 강화 및 항목 설정을 위한 **규정 개정**
    - 수입검사(수입신고건수의 14 → 28%) 및 국내 수거검사(15 → 30건, 최소 180개 시료 이상), 사카자키균 모니터링 검사(36 → 50회) 확대

## 다 항생제 안전관리 대책

- 가축 밀집사육으로 인한 가축전염병 빈발 및 농가 인식 부족 등으로 축산물 항생제 과다 사용 경향
  - 식육 잔류물질 위반율은 0.25%로 휴약기간 미준수, 불법 약제 사용, 사료오염, 사양관리불량 등이 원인으로 분석
    - \* 항생제사용량('03) : 한국 0.1kg/ton, 미국 0.02, 일본 0.036, 덴마크 0.004
  - 소비자들은 축산물 내 잔류 및 내성균 증대가 사람에게 전이 되어 질병치료를 어렵게 하는 것으로 인식
    - \* 인체 유래 항생제 내성균과 동물 유래 내성균간 유전적 연관성은 확인된 바 없음
- 친환경 축산, 사육단계 HACCP 등 사육환경개선 노력과 함께 배합사료 내 첨가 항생제 축소를 통해 항생제 사용 절감 추진
  - 배합사료 내 첨가 항생제(25종) 중 내성율이 높은 품목 우선 축소
  - 항생제 그룹별 일정기간 배합사료내 첨가를 금지하는 순환휴약제와 중장기적으로 항생제 구입시 수의사 처방제도 도입 방안 검토
    - 도축장 출하시 후기사료 급이 증명서를 확인하는 방안 강구
- 항생제 잔류검사 강화 등 위반 농가에 대한 규제 강화
  - 항생제 잔류기준 위반 식육의 유통제한 및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제검사 확대(규제검사 비율 : 현재 10.2% → '10년 82.3%)
  - 잔류물질 위반시 현행 최고 100만원 수준인 과태료 인상 검토
    - \* 현재 잔류물질 위반시 출하제한(6개월), 위반농가 명단공개, 과태료 부과 등 실시

- 농협중앙회는 자체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신·경 분리 및 경제사업 활성화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하여 농림부에 제출(6.30)
- 신·경 분리방안으로 농협중앙회(교육지원), 경제사업 연합회, 신용사업 연합회 등 3개 별도 특수법인으로 분리하는 방안 제시
  - 중앙회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분리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7.8조원의 자본금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
    - \* 신용사업의 BIS비율(10%) 충족을 위해 3.4조원, 경제사업의 적자해소(연간 1,530억원)를 위한 필요자본금 4.4조원 필요
  - 교육지원 사업비(연간 4천억원 수준)는 신용사업에서 부담하되, 이를 위해 법인세 감면 조치 요청
- 중앙회 자력(이익잉여금 연평균 5,438억원, 회원조합 출자금 2,812)으로 필요자본금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15년이 소요
  - 자본금 외부 조달은 협동조합의 자율성 침해 등을 우려하여 반대, 농협 자체 노력과 함께 정부의 재정지원 요청
- 경제사업 활성화 방안으로 산지(일선조합) 및 소비지 유통망 구축에 향후 10년간 13조원을 투입, 독자생존 기반을 구축한다는 계획
  - 산지·소비지 농산물 유통 점유율('05년 산지45%, 소비지7%)을 '15년까지 각각 55%, 15%로 확대 목표
    - \* 회원농협의 산지유통지원 7조원, 소비지유통망 확충 6조원

□ 정부는 효율적인 신용·경제사업 분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신·경분리위원회를 확대 개편('06.7)하고 연구용역 진행

○ 농협(지역농협 포함), 관계부처, 언론 등의 관계자를 추가하여 위원회를 확대 개편(15명 → 23)

- 중앙회가 제출한 세부추진계획(7.7), 경제사업 활성화 방향(8.25) 논의

○ 7월부터 실무기획팀을 가동하여 20여 차례 핵심쟁점사항 토의

- 경제사업 독자생존을 위한 수익원 창출(가공, 소비지 유통망 구축 등) 및 비용 절감 방안(자본확충, 관리비절감, 지도서비스 실비부담 등) 검토

- 필요자본금 추정을 위해 다양한 시나리오 및 장단점 검토

○ 농협중앙회안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및 신·경분리 세부추진 방안(정부안) 마련을 위해 연구용역 병행(4~12월)

- 신·경분리 방안(금융연구원), 농협 경제사업 활성화 방안(농경연)

□ 연말까지 정부안을 마련하여 국회 보고 추진

○ 농협법 틀내에서 3개의 특수법인으로 분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 시행시기 및 방법은 경제사업 독자생존 가능성, 자본금 조달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방안 검토

○ 토론회 등 전문가, 농민단체 등의 폭 넓은 의견수렴 추진

○ 정부지원 및 법인세 감면 조치 등을 관계부처와 협의

- 4.21일 방조제 33km에 대한 최종연결공사(2.7km)를 완료한 후 흙쌓기·돌붙임 등 보강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 중
  - 관광효과 극대화를 위해 방조제 도로를 독마루까지 높일 계획
    - \* 도로부분이 독마루보다 5~6m 낮아 바다섬 등 주변조망에 제약
  - 방조제는 보강 마무리, 도로·조경공사 등을 거쳐 '08년 완공예정
- 국토연구원 주관으로 진행중인 토지이용계획 연구용역은 공청회(전북·서울), 전문가 토론회·자문 등을 거쳐 12월 완료예정
  - 정부는 연구용역결과가 제출되면 이를 토대로 농지개발 기초를 유지하면서, 일부 타용도 수요를 반영한 토지이용계획 마련 예정
- 수질보전대책은 범정부 차원에서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
  - '01.5월 계획된 만경·동진강유역 하수처리장 23개소 및 새만금 호소내 침전지·습지 등 수질대책 시행
    - \* 하수처리장 2개소 완공 및 21개소 시행중, 수질대책 보완 연구 및 점검·평가 등
  - 전문가 평가 및 여건변화 등을 고려, 필요시 추가대책도 강구
- 피해어민에게는 공사·수질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근로지원 및 한정어업 허용 등 생계 어려움에 따른 대책 추진
  - \* 새만금지역내 맨손어업에 종사했던 어민 : 1,122가구 1,650명
  - \* 근로제공 유형 : 공유수면관리 감시원, 환경관리 감시원, 방조제 유지관리원, 염생식물 파종·채종, 폐사생물 처리, 유입쓰레기 제거, 시험포, 환경조사인력등

## **IV. 2007년 예산 및 기금안 개요**

## 1

## 2007년 농림부 소관 예산(기금)안 규모

## 가 총지출(예산일반지출+기금일반지출) 규모

□ '07년 총지출 규모는 12조 1,322억원으로 '06년 대비 2.2% 증가

○ 예산일반지출은 7조 3,663억원으로 '06년 대비 0.6% 증가

○ 기금일반지출은 4조 7,659억원으로 '06년 대비 4.7% 증가

⇒ '07년 농축산경영자금 예산이 재특회계 폐지로 재경부 소관 공자기금으로 전환되는 것을 감안한 실질 총지출 규모는 '06년보다 4.7% 증가

\* 농축산경영자금(용자) : ('06) 재특회계(2,828억원) → ('07) 공자기금(2,244)

□ '07년 투융자사업비는 8조 6,598억원으로 '06대비 6.3% 증가

(단위 : 억원)

구 분	'06예산 (A)	'07예산안 (B)	증△감 (B-A)	%
I. 농림부 소관 총지출(A+B) (실질 총지출 규모)	118,740 (115,912)	121,322 (121,322)	2,582 (5,410)	2.2 (4.7)
○ 농가소득·경영안정	32,776	36,247	3,471	10.6
○ 농촌개발·복지증진	5,760	9,941	4,181	72.6
○ 농업체질강화	23,217	22,168	△1,049	△4.5
○ 양곡관리·농산물수급	34,362	33,569	△793	△2.3
○ 농업생산기반조성	19,797	19,397	△400	△2.0
○ 농축산경영자금	2,828	-	△2,828	순감
◇ 예산일반지출(A) (실질 예산일반지출 규모)	73,203 (70,375)	73,663 (73,663)	460 (3,288)	0.6 (4.7)
◇ 기금일반지출(B)	45,537	47,659	2,122	4.7
※ 투융자사업비	81,436	86,598	5,162	6.3

## 나 농림예산순계(예산일반지출+기금전출금) 규모

- '07년 순계규모는 10조 4,040억원으로 '06년 대비 14.8% 증가
  - 재특회계 원리금상환 예산이 기금전출금(공자기금원리금상환) 예산으로 전환('07 : 9,726억원)됨에 따라 예산순계 규모가 크게 증가
    - ⇒ '07년 공자기금 원리금상환 전환예산(9,726억원)을 제외할 경우 실질적인 예산안 순계규모는 9조 4,314억원으로 '06년보다 7.4% 증가
- '07년 실질적인 사업비 규모는 7조 1,534억원으로 '06년보다 4.6% 증가

(단위 : 억원)



구 분	'06예산 (A)	'07예산안 (B)	증△감 (B-A)	%
◇ 농림예산 순계(A+B) (실질 예산순계 규모)	90,653 <b>(87,825)</b>	104,040 <b>(94,314)</b>	13,387 <b>(6,489)</b>	14.8 <b>(7.4)</b>
◇ 예산일반지출(A=a+b) (실질 예산일반지출 규모)	73,203 <b>(70,375)</b>	73,663 <b>(73,663)</b>	460 <b>(3,288)</b>	0.6 <b>(4.7)</b>
I. 사업비(a) (실질 사업비 규모)	71,232 <b>(68,404)</b>	71,534 <b>(71,534)</b>	302 <b>(3,130)</b>	0.4 <b>(4.6)</b>
◦ 농가소득·경영안정	23,405	22,897	△508	△2.2
◦ 농촌개발·복지증진	5,760	9,941	4,181	72.6
◦ 농업체질강화	6,700	7,034	334	5.0
◦ 양곡관리·농산물수급	16,205	15,692	△513	△3.2
◦ 농업생산기반조성	16,334	15,970	△364	△2.2
◦ 농축산경영자금	2,828	-	△2,828	순감
II. 기본적 경비(b)	<b>1,971</b>	<b>2,129</b>	<b>158</b>	<b>8.0</b>
◇ 기금전출금(B) ('07 공자기금 원리금상환 전환분 제외)	17,450 <b>(17,450)</b>	30,377 <b>(20,651)</b>	12,927 <b>(3,201)</b>	74.1 <b>(18.3)</b>

## (1) 농업·농촌종합대책과 직불관련 소요를 예산(기금)안에 반영

□ 농업·농촌종합대책 추진을 위한 '07년 투융자 사업비(예산+기금)는 '06년 대비 6.3% 증가

○ 투융자사업비 : ('06) 81,436억원 → ('07안) 86,598(증5,162억원)

\* '07년 농림분야 투융자 확보액(농림부·농진청·산림청, 타부처 농특세사업)은 11.7조원으로 '07년 연부액 10.7조원 보다 1조원 초과확보

□ '07년 직불예산안 규모는 2조 4,239억원으로 '06년 1조 9,441억원 대비 4,798억원 증가(증 24.7%)

○ 농림예산대비 직불예산비중 : ('06) 23.6% → ('07안) 27.9

## (2) 타부처 지역개발·복지예산 이관 및 회계통합

□ 농어촌 지역개발 및 복지사업 추진체계 정비와 관련, 타부처 사업을 농림부 소관으로 이관(증 3,957억원)

○ 신활력지원(1,882억원, 행자부), 오지종합개발(1,134억원, 행자부), 농어촌주거환경개선(180억원, 행자부), 연금보험료(761억원, 복지부)

- 국민연금공단운영비(203억원)는 농특사회계에서 복지부 일반회계로 이관

□ 특별회계·기금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농특세관리특별회계를 폐지하고, 농특회계내 전입금계정을 농특세사업계정으로 전환

□ 재정용자특별회계가 폐지되고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통합됨에 따라 농축산경영자금 용자금이 예산사업에서 기금사업으로 전환

○ 농축산경영자금은 회계(기금) 정비와 관계없이 일정규모 지속 지원

\* 운용규모 : ('06) 33,000억원 → ('07안) 32,000 (△1,000)

---

◆ 회계정비에 따라 회계구조 단순화 : 6개 회계 → 4개 회계

\* '07 회계구조(4개 회계) : 일반·농특·균특·양특회계 (농특세·재특은 폐지)

---

□ 제주특별자치도 출범('06.7)에 따라 재정자주권 강화를 위해 균특 회계내에 「제주특별자치도사업계정」 신설(548억원)

○ 농특회계(42억원)→균특(제주계정), 기존 균특사업의 계정변경(506억원)

### (3) 새로운 농정여건에 부응하는 신규사업 적극발굴

【예산사업 : 9개사업, 214억원】

○ 고품질쌀브랜드육성(72억원), 바이오디젤유채생산(18), 농촌여성 결혼이민자 가족지원(19), 도시민농촌유치종합지원(45), 농식품 안전정보관리(12), 농촌테마마을조성(16) 등

【기금사업 : 7개사업, 879억원】

○ 원예브랜드육성(82억원, 농안), 과실브랜드육성(38, FTA), 가락동 도매시장 현대화(396, 농안), 원예작물 수급안정사업(127, 농안), 종자산업육성지원(60, 농안), 자연순환농업활성화(160, 축발) 등

## V. 입법 추진 계획

□ 정기국회 상정추진 법률안 : 개정 5건

법 률 명	주 요 개 정 내 용
1.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개정) * 국회 법사위 계류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와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로 이원화되어 있는 농어촌특별세사업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로 통합 ○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입·세출 항목을 일부 조정
2. 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개정) * 국회 법사위 계류	○ 제명을 「축산자조금의조성및운용에관한법률」로 변경 ○ 거출금을 임의거출금과 의무거출금으로 구분 ○ 대의원 결원시의 보궐선거 근거 마련
3. 동물보호법(개정) * 국회 제출('06.9.4)	○ 동물의 보호와 유기방지를 위해 동물의 등록제 도입 ○ 반려동물 소유자의 관리의무 강화 ○ 동물의 운송에 따른 보호규정 마련
4.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개정) * 국회 제출('06.9.26)	○ 도매시장법인간·시장도매인간 인수·합병 근거 마련 ○ 임의규정인 출하자의 신고를 의무화 ○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의 경영공시 의무화
5. 인삼산업법(개정) * 국회제출예정('06.10)	○ 원산지 허위표시 또는 미검사품 제조업체에 대한 제재 강화 ○ 검사기록서 보존 의무화 등 인삼류 자체검사업체의 관리강화

< 별첨 1 >

2005년 국정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1. 상호금융저리대체 자금 상환기간 연기 및 정책자금 금리인하</p>	<p>□ 상호금융대체자금 상환기간 연기('05.12.29시행)</p> <p>○ '01년 지원된 상호금융저리대체자금 5.6조원에 대해 상환기간 연장</p> <p>- '06년 도래분(5조 2,948억원)은 '06.6월까지 신청, 12월까지 대출, '07년 도래분(3,389억원)은 '07년 신청 및 대출</p> <p>- 순지원대상 3조 7,808억원 중 3조 7,031억원 신청</p> <p>□ 정책자금 금리인하('06.1.1 시행)</p> <p>○ 농업인은 3~4% → 3%, 비농업인 4~5.5% → 4%로 금리 일괄인하</p> <p>○ 재해대책융자금은 4% → 1.5%, 농지매매자금은 3% → 2%, 육림사업자금 중 일부는 3% → 1.5%로 추가인하</p> <p><b>&lt;향후 추진계획&gt;</b></p> <p>□ '06년 상환연기 신청액에 대해서는 적격심사를 거쳐 '06.12월까지 대출 실행</p> <p>□ '07년 상환도래분(3,389억원)에 대해서는 '07. 1~6월까지 신청을 받아서 12월까지 대출 실행</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2.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시설 미이용 아동 지원 대책</p>	<p>□ 시설 미이용 아동 지원대책 수립 및 예산 확보('05.12)</p> <p>○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와 협의결과 '06년 신규 사업으로 도입한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으로 시설 미이용 아동을 지원하고, 관련예산 확보</p> <p>- 지원단가(월) : 0세 87.5천원, 1세 77, 2세 63.5, 3~4세 39.5, 5세 79</p> <p>* 법정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정부보육료 단가의 25%(5세아는 50%)수준</p> <p>- 지원인원 : 월평균 48천명</p> <p>- 관련예산 : 412억원(국비 206, 지방비 206)</p> <p>&lt;향후 추진계획&gt;</p> <p>□ 지원 단가를 연차적으로 상향 조정</p> <p>○ 지원단가 : ('06) 정부보육료 단가의 25% → ('07) 35%</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3. 농업농촌의 고령화 등에 대응하기 위한 신규인력 유입강화 대책</p>	<p>□ 후계농업인 사업 내실화 및 신규 인력유입대책 확대 시행</p> <p>○ 후계농업인 육성사업 지원 조건 개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상한 상향조정 : ('05) 1.2억원 → ('06) 2</li> <li>- 농지구입지원단가 증액('05.11) : (종전)논 3만원/평, 밭 3만5천원 → (조정) 논 4만원, 밭 5만원</li> <li>- 금리인하 : ('05) 4% → ('06) 3%</li> </ul> <p>○ 신규 후계농의 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출시 신용평점 가점부여(1.5 → 5점)</p> <p>○ '05년 도입한 3개 신규인력유입대책 확대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명 : 농업인턴제, 대학생창업연수제, 창업농 후견인제</li> <li>- 사업량 : ('05) 300명 → ('06) 400</li> </ul> <p>○ 농과계 및 비농과계 인력을 유입하기 위한 신규사업 도입('0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대생 대상으로 영농정착을 지원하는 영농창업 교육과정 도입(공주대, 강원대, 제주대 등 3개 대학, 총 160명 참여)</li> <li>- 44세 미만의 비농과계 대상자를 대상으로 영농정착을 지원하는 직업훈련과정 도입</li> </ul> <p>&lt;향후 추진계획&gt;</p> <p>□ 후계농업인사업 지속 점검 및 신규사업 강화 등을 통한 신규인력 유입대책 확대 지속 추진</p> <p>○ 후계농업인의 안정적 영농정착을 위한 대출현황 모니터링 및 문제점 발굴·개선</p> <p>○ 농대생 대상 영농창업교육과정 확대('06 : 3개 대학 → '07 : 6)</p>



시장·처리요구사항	시장·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4. 밭농업직불제 도입 방안 및 밭농업 소득보전대책 수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밭 지역에 대해 조건불리지역직불, 경관보전직불 및 친환경농업직불제 등 지원</li> <li>○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전국확대('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지경사도 14%이상인 영농조건이 불리한 지역의 밭 지원(40만원/ha)</li> <li>* 예산 : ('05) 123억원 → ('06) 523</li> </ul> </li> <li>○ 경관보전직불제 시범도입('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자체-마을간 협약을 체결하고 경관작물을 식재 관리(170만원/ha)</li> </ul> </li> <li>○ 친환경농업직불제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친환경인증농산물 재배농가에 3년간 지원(794 ~ 524천원/ha)</li> </ul> </li> <li>□ 한·칠레 FTA 관련 일부 과수품목 소득보전 지원</li> <li>○ '04년이후 과수소득보전직불제(시설포도, 키위) 및 과수폐원지원사업(시설포도, 키위, 복숭아) 추진</li> </ul> <p>&lt;향후 추진계획&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건불리지역직불제의 대상면적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경지경사도를 14%에서 7%로 완화 추진</li> </ul> </li> <li>□ 경관보전직불, 친환경농업직불, 과수소득보전직불 등의 확대 및 지속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관보전직불제의 본사업('08) 추진, 친환경농업 직불제의 대상면적 확대, 과수소득보전직불제 지속 시행 등</li> </ul> </li> <li>□ 농가단위 소득안정제도 기본계획 수립('06)</li> </ul>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5. 우리나라와 타국가간 FTA 체결은 타국가의 FTA 추진현황과 체결이후 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후 추진하여야 하며, 피해산업 구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p>	<p>□ FTA 추진현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효중인 FTA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칠레('04.4), 한·싱가폴('06.3), 한·EFTA('06.9)</li> </ul> </li> <li>○ 정부간 협상중인 FTA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미 FTA는 '06.6월부터 협상진행 중, 농산물 양허수준 및 관세철폐이행기간 등을 쟁점으로 논의</li> <li>- 한·아세안 FTA는 '06.4월에 상품분야 협상 타결, 297개 초민감품목 설정(서비스·투자분야 협상중)</li> <li>- 한·인도 FTA는 '06.3월에 협상시작, 상품양허 대상 및 범위에 대해 의견교환 예정(10.10)</li> <li>- 한·캐나다 FTA는 농산물 관세철폐수준이 쟁점</li> <li>- 한·멕시코 및 한·일본 FTA는 관세인하계획 등에 대한 입장차이로 교착상태</li> </ul> </li> </ul> <p>□ FTA 영향분석 및 대응방안 등 연구용역 추진현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5 : 한·미, 한·Mercosur, 한·ASEAN, 한·캐, 한·멕, 한·인도, 한·EU, 한·중 등 영향분석·대응방안</li> <li>○ '06 : 한·미, 한·인도 등(추진중)</li> </ul> <p><b>&lt;향후 추진계획&g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규 FTA 추진시 농업에 미치는 영향분석 및 대응방안 강구를 위한 연구용역을 적기 실시할 계획</li> <li>○ 피해분석에 따른 소득보전 및 경쟁력 제고대책 마련, 농업·농촌종합대책 점검·보완 계획에 반영</li> <li>□ FTA 지원특별법 개정 등을 통한 제도적 및 재정적 지원체제 구축 계획</li> </ul>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6. DDA농업협상 등에 필요한 농무관 부족에 대한 증원계획과 농업전문가나 농민단체 대표의 제네바 상주 방안</p>	<p>□ '05년 6월부터 외교통상부에 농무관 증원 보장 요청('05.7.8)</p> <p>○ 증원요청 : (현재) 7명 → (요청) 15명</p> <p>* 제네바, 아르헨티나, 태국 지역에 최우선 증원요청</p> <p>○ 외교통상부, 혁신추진위원, 행정자치부 등 대상으로 수시 방문 설명 및 협의하였으나 미반영</p> <p>□ DDA농업협상의 투명도와 이해도 제고, 국민공감대 형성 등을 위해 농업전문가 및 농민단체 관계자를 협상시 동행</p> <p>○ 동행 실적 : 4회 17명</p> <p>* 6.1 ~ 6.5(12명), 7.26 ~ 7.31(2명), 9.13 ~ 9.18(1명), 10.18 ~ 10.23(2명)</p> <p>&lt;향후 추진계획&gt;</p> <p>□ 향후 외교통상부 증원계획에 적극 반영 추진</p> <p>□ 농민단체 대표의 참여 활성화를 위해 사전대책 회의 참여 및 현지 동행방안 등을 검토</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7. 보따리상 농산물반입 증가와 저가신고 문제개선대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불법수입 및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농림부에 「수입 농수산물 통관 유통개선 T/F」를 구성·운영('05.9.2)</li> <li>□ 관세청 「불법수입농수산물특별단속본부」 설치('05.9.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세청 차장을 단속본부장으로 전국 91개팀, 504명 투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간 : '05.9.13~'06.1.28(140여일간)</li> <li>※ 단속실적 : 415건, 1,495억원 검거 (전년동기 대비 건수 3배, 금액 6.5배)</li> </ul> </li> </ul> </li> <li>□ 주요 추진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입농수산물 가격 및 사전세액심사 강화('05.9.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전세액심사 대상품목을 13개 품목에서 22개 품목으로 확대, 수입신고 품명·규격 표준화</li> </ul> </li> <li>○ 냉동고추에 대한 품목분류기준 및 통관지침 신설</li> </ul> </li> <li>□ '06년도 3차례 관계기관단체간 회의를 통해 대책 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입농수산물 통관·유통개선 T/F회의 개최(1.18)</li> <li>○ 농수산물 투명과세 추진위원회 개최(관세청, 5.17, 9.25)</li> <li>○ 불법수입 농수산물 단속전략회의 개최(관세청, 9.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입농수산물 통관·유통 개선대책 추진현황 국무회의 보고('06.1.24)</li> </ul> </li> </ul> </li> </ul> <p><b>&lt;향후 추진계획&g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세청에 불법수입농수산물을 상시적으로 단속하기 위한 전담조직 및 인력 확보방안 강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불법농수산물 단속전담부서 설치('07년 3개과 24명 증원)</li> </ul> </li> <li>□ 여행자 면세기준 초과물량에 대한 반송·폐기 등 보따리상에 대한 단속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세청·경찰·해경 등 유관기관과 협력, 불법유통 차단</li> </ul> </li> </ul>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8. 공공비축 매입물량을 400만석보다 많은 물량 수매 확대</p>	<p>□ '05년도에 공공비축미와는 별도로 100만석을 추가로 매입하는 등 총 500만석 수매</p> <p>○ 농협중앙회는 이와 별도로 '04년도산 63만석 매입·격리, 벼매입자금 5,000억원 추가지원 등 추진</p> <p>□ '06년 수확기 쌀값 안정 등을 위해 공공비축 제도보완·조기발표('06.8.1)</p> <p>○ 산물벼도 포대벼와 같이 우선지급금을 지급, 농가 판단에 따라 산물벼의 포대벼로 전환 허용</p> <p>※ 우선지급금 : 포대벼 48,450원/40kg, 산물벼 47,780원/40kg</p> <p>○ 직불금 지급시기 조정</p> <p>- 고정직불금(11월 → 10), 변동직불금(4월 → 3)</p> <p><b>&lt;향후 추진계획&gt;</b></p> <p>□ 2006년도 공공비축미 매입 및 홍보 지속추진</p> <p>○ '06년산 공공비축미곡 매입실시 : 산물벼(9.20 ~ 11.15), 포대벼(10.25 ~ 12.31)</p> <p>□ 공공비축 매입미곡 정산 추진('07.1)</p> <p>○ 산지 쌀값 조사결과(10~12월)와 우선지급금과 정산</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9. RPC 건조저장시설 및 저온저장 시설 확충</p>	<p>□ '06년 예산편성시 RPC 건조·저장시설 및 저온저장 시설 지원사업을 균특회계에서 농특회계로 환원하고 사업량 확대 및 지원조건 상향조정</p> <p>○ 예 산 : ('05) 93억원 → ('06) 249</p> <p>○ 사 업 량 : ('05) 50개소 → ('06) 110 (저온저장시설) 3개소 → 10</p> <p>○ 지원단가 : ('05) 4.5억원 → ('06) 5.5</p> <p>* 국고보조율도 상향조정(민간 10%P)하여 시설투자 부담을 완화</p> <p>□ RPC의 벼매입 촉진을 위해 금년부터 수확기에 지원자금의 1.5배이상 벼매입을 의무화</p> <p>○ RPC 경영 및 수확기 벼 매입상황을 평가하여 우수 RPC에 집중지원, 부진 RPC는 지원 중단</p> <p>&lt;향후 추진계획&gt;</p> <p>□ '10년까지 RPC저장능력을 쌀 유통량의 50% (1,100만석)수준까지 확대</p> <p>○ 건조·저장시설 지원 : (당초) 619개소 → (확대) 833</p> <p>○ 저온저장시설 : 297개소 추가지원</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10.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설정하여 농업·농촌 기본법에 반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량자급률 목표치 설정방안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림부 장관 소속 식량자급률 자문위원회 ('05.4월 설치)에서 논의(6회)</li> <li>○ 자급률 목표설정을 위한 연구용역 완료('05.5~'06.4)</li> <li>○ 의견수렴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한 토론회 개최 (중앙, 지방으로 나누어 4회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앙토론회('05.12.29), 영남('06.1.24), 호남(2.1), 중부(2.2)</li> </ul> </li> </ul> </li> <li>□ 식량자급률 자문위원회의 식량자급률 목표치 설정 관련 대정부건의('06.4.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업·농촌기본법에 따른 농업·농촌발전기본 계획에 2015년도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식용 곡물자급률 54%, 사료용 포함 곡물자급률 29%, 칼로리자급률 48%로 설정 건의 등</li> </ul> </li> </ul> </li> <li>□ 농특위 주관 자급률 목표치 설정 공청회 개최(6.13)</li> </ul> <p>&lt;향후 추진계획&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용역 결과와 식량자급률 자문위원회 회의 결과를 토대로 정부안 마련·확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농업·농촌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li> </ul> </li> </ul>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11. 수확기 쌀값하락의 원인과 대책</p>	<p>□ '05년 수확기에 쌀값이 큰 폭으로 하락한 원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4년 풍년(3,473만석)으로 민간분야 재고가 많은 상황에서 수확기를 맞이하였고</li> <li>○ 양정제도 개편 내용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농업인과 산지유통업체의 적응에 어려움이 있었고</li> <li>○ 수입쌀의 소비자시판 등에 따른 심리적 불안감이 시장에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li> </ul> <p>* '05년 수확기 쌀값은 약 140,028원/80kg으로 '04년 수확기보다 약 13.4% 하락</p> <p>□ 수확기 시장안정대책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전대책 : 쌀소득보전직불제 도입, 공공비축 물량 400만석까지 확대, '04년산 63만석 농협 중앙회 매입·격리 등</li> <li>○ 추가대책 : 공공비축물량외 100만석 추가 매입, 벼매입자금 5,000억원 추가 지원(농협), 고정직불금 6,038억원 조기집행</li> </ul> <p>* '06.3월, 변동직불금으로 ha당 약 96만원(15,710/80kg) 지급, 농업인은 목표가격(170,083원/80kg)의 97.3% 수취</p> <p><b>&lt;향후 추진계획&g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확기 공급과잉 해소대책 지속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확기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수입쌀 소비자시판 시기를 탄력적으로 운영</li> </ul> </li> <li>□ 수확기 물량 처리를 위한 여건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 지속추진</li> <li>○ 가공주정용 공급 확대 : ('05) 132만석 → ('06)195</li> </ul> </li> </ul>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12. 학교급식에 우리 농산물 사용 권장 및 지원방안</p>	<p>□ WTO규정 등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우리 농산물이 사용되도록 하는 방안 강구</p> <p>○ 학교급식에 정부 쌀 반값 공급,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에게 우유 무상급식지원사업을 지속 실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쌀 반값공급('06) : 71천톤, 679억원</li> <li>- 우유무상 급식지원('06) : 352천명, 166억원</li> </ul> <p>○ 친환경농산물 등 우수농산물 생산·유통 등 종합 정보 제공체계 구축 (농림부 홈페이지에서 정보제공)</p> <p>□ 지역별 특성에 맞는 공동물류방식의 우수 농산물 학교급식 공급지원 모델 개발을 위한 시범사업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시행 : 농협중앙회</li> <li>○ 사업대상 : 대도시(부산), 도·농복합(나주), 농촌(거창) 초등학생 13,780여명</li> <li>○ 지원규모 : 550백만원(농림부·농협 공동부담)</li> <li>○ 사업시기 : 2006년도 1학기</li> <li>○ 지원내용 : 쌀을 제외한 모든 식재료에 지역 우수농산물 등을 사용시 소요되는 추가비용 지원(나주-한끼당 420원, 부산·거창-한끼당 320원)</li> </ul> <p><b>&lt;향후 추진계획&g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수농산물의 학교급식 공급을 위한 예산 확보 노력 계속('07년 신규예산 62억원 요구, 미반영)</li> <li>□ 농협 등을 통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체계 구축</li> </ul>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13. 김치수입 등 수입 농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대책</p>	<p>□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수입농식품의 안전성대책 등을 포함한 “수입식품안전개선 대책” 마련('05.12.7)</p> <p>○ 위해우려 품목의 현지 위생관리 기능 강화 - 중국과 “식품위생에 대한 협력약정” 추진중(식약청) ※ 수입농식품 안전성은 식약청 업무 소관임</p> <p>□ 농림부는 수입농산물의 원산지 단속 지속추진</p> <p>○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 원산지 허위 표시자에 대한 벌칙 강화, 상습위반자 공표 명령제 도입 등('06.1 시행) * 허위표시자 벌칙 강화 : 7년이하 징역, 1억원이하 벌금</p> <p>○ 수입급증 농산물을 집중단속하기 위한 테마별 기획 단속 추진 * 제수·선물용(1-2월, 8-9월), 건강식품(4월), 육류(7-8월), 양념류(김장철) 등</p> <p>○ 수입쌀 부정유통 방지 특별대책 추진 - 농관원 원산지 특별사법 경찰관(456명)을 통한 수입쌀의 국산둔갑 판매행위 등을 집중단속 - 생산자단체 등 명예감시원 대폭 확대 · ('04)2,800명 → ('05)17,482 → ('06계획) 25,000</p> <p>&lt;향후 추진계획&gt;</p> <p>□ 수입농산물 원산지 단속 지속 추진</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14. 주한미군 부대로 반입되는 축산물에 대한 검역대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0년 12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개정으로 동식물검역조항 신설</li> <li>□ '01. 9월 동·식물검역분과위원회에서 식물검역 사안을 먼저 논의기로 함</li> <li>○ '01 ~ '05. 4월까지 20여 차례 협의를 거쳐 세부 식물검역절차를 마련</li> <li>□ '05.9.14 「동물검역」 분야 논의시작</li> <li>○ 동물 및 축산물 검역방법에 대한 우리측 입장 설명('06.2)</li> <li>○ 미군 시설 현지 실사('06.3)</li> <li>○ 한·미간 동물검역 관련 회의 개최('06.7)</li> <li>□ 주한 미군용 축산물 검역에 대한 합의문 작성('06.9)</li> <li>○ 미군이 지정한 시설에서 검역 실시, 검역원은 수시 점검 및 자료접근권 확보</li> <li>○ 수입국에서 국제수역사무국(OIE) 지정 악성질병 발생시 우선 선적중단 및 협의</li> </ul> <p>&lt;향후 추진계획&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6.10월중 SOFA 공동위 상정 예정</li> </ul>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15. 소 부루세라병 등 법정 전염병 방역체계 구축시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루세라병 방역대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3년 근절목표로 검사대상 확대 및 예방체계 확립 등 보완대책 수립(6.14)·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축시장, 도축장, 농장 문전 거래하는 모든 한육우 암소 및 10두 이상 한육우 사육농장 검사 의무화 ('06.7.15)</li> <li>- 살처분 보상금의 상한가격 감액 : 당해 가축 시세의 80%('06.11.1), 60%('07.4.1)</li> </ul> </li> </ul> </li> <li>□ 구제역 방역대책 추진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 유입 위험성이 높은 3~5월을 특별대책기간으로 설정하여 국내방역 및 국경검역을 강화, 그 이후의 기간은 평시방역 체계로 전환</li> <li>⇒ '02.6월 이후 청정국 지위 지속 유지</li> </ul> </li> <li>□ 돼지콜레라 및 광우병 등 방역대책 추진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예방접종 100%(43백만두) 실시, 근절기반 조성단계에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돼지콜레라 발생건수 : ('04) 9건 → ('05) 5건 → ('06.9) 2건</li> </ul> </li> <li>○ 돼지 소모성질환 방역대책 수립(6.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별 컨설팅자문단 운영, 종돈장 및 사료 위생 관리 강화, 양돈농가 순회교육 및 워크숍 등 실시</li> </ul> </li> <li>○ BSE 예방을 위해 발생가능성이 높은 위험축군의 집중검사(5천두) 및 도축장에 SRM 제거시설 설치(2개소) 등 추진</li> </ul> </li> </ul>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 가축방역 조직 및 인력 확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자체 234명, 수과원 88명 및 방역위생지원본부 30명의 인원 충원</li> <li>○ 「공익수의사에 관한 법률」을 제정('06.3)하여 '07년부터 방역·위생 현장에 공익수의사 배치 (연간 150명 수준)·운영</li> </ul> <p>□ 인수공통전염병 방역대책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질병관리본부와 공동으로 “인수공통전염병 대책 위원회”를 구성·운영(분기별 1회)</li> <li>○ 조류인플루엔자 및 부루세라병 방역 대책 추진 공조</li> </ul> <p><b>&lt;향후 추진계획&g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구축된 방역체계를 통해 지속적으로 가축방역 대책 강화</li> <li>□ 공익수의사의 현장 배치를 위한 사전준비 철저</li> <li>□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을 통해 농가·지자체에 대한 방역책임 강화 방안 검토</li> <li>○ 전염병 발생시 농가의 신고의무 강화, 살처분 보상금의 지자체 일부 부담 등</li> </ul>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16.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방역대책 철저</p>	<p>□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 수립 추진</p> <p>○ '05.11 ~ '06.2월(4개월)까지를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기간」으로 설정, 전국 방역기관별 상황실 운영 등 특별방역 추진</p> <p>- 유입경로별 조사 결과 현재까지 국내유입 징후 없음</p> <p>□□ 오리(904농가 21,496건), 철새(철새도래지 24개소 4,415점), 민통선 지역 텃새(92마리, 분변 1,210점) 등 검사 결과 이상 없음</p> <p>□□ 이와 별도로 검역원에 검사 의뢰된 야생조류 폐사체(145마리)·분변(11점)·혈액(10점) 검사 결과에도 이상 없음</p> <p>- 가금육 수입국중 독일·헝가리('06.2.16) 및 프랑스('06.2.19) 등 AI 발생이 확인된 국가에 대해서는 수입검역 중단 조치</p> <p>* 중국·러시아 등 주변국으로부터 애완조류 밀수단속 등 부처간 공조체제 유지(해양경찰청·관세청·수의과학검역원)</p> <p><b>&lt;향후 추진계획&gt;</b></p> <p>□ 국경검역 체계는 구제역 특별기간과 연계하여 지속 유지</p> <p>○ 사육 가금(닭·오리)에 대한 예찰 지속</p> <p>- 평시(3 ~ 10월) 오리 혈청검사 10,000건 실시</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17. 농업용수 수질오염 등에 대한 방지대책</p>	<p>□ 농업용수 수질개선을 위해 환경부와 협의, “농업용수 수질개선대책 공동작업반” 구성·운영('06.8~12)</p> <p>○ 농림부, 환경부, 농촌공사, 환경관리공단 합동으로 수질오염 발생원인 분석 및 수질개선방안 마련</p> <p>○ 농업용수 수질기준 상회저수지 260개소 중 최근 5개년 평균 농업용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72개소를 대상으로 연차적으로 수질개선사업 추진</p> <p>※ 1단계 ('06~'15) 40지구, 2단계('16이후) 32지구</p> <p>&lt;향후 추진계획&gt;</p> <p>□ 우심지구별 세부 수질개선 대책수립 시행</p> <p>○ 호소관리(농림부·농촌공사)와 상류 오염원관리(환경부·지자체) 병행 추진</p> <p>□ 수질조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 강화</p> <p>○ (현행) 500지점 2~4회→ (개선) 800지점 4회</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18. 수리시설 노후화에 따른 보완대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 수리시설 재해대비 강화를 위해 개보수 사업 시행체계 개선방안 마련('06.5)</li> <li>○ 체계적인 개보수사업 관리를 위한 시설물 이력 관리시스템 구축 추진('06.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설별 안전정보 및 개보수 이력을 관리</li> </ul> </li> <li>○ 사전 정밀안전진단을 통해 저수지, 양·배수장 등 주요시설의 재해위험 정도에 따라 개보수 추진</li> <li>○ 그 동안의 평야부 용·배수로 구조물화 등 영농편의 위주에서 저수지, 양·배수장 등 수원공 시설의 재해대비 보강 위주로 사업방식 전환</li> </ul> <p><b>&lt;향후 추진계획&g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보수사업 시행체계 개선방안에 따라 재해에 대비해서 저수지, 양·배수장 등 주요시설 개보수 집중투자</li> <li>○ '07예산부터 수원공시설이 대상인 「재해대비」와 평야부시설이 대상인 「영농편의」 사업으로 내역 구분, 재해대비에 개보수사업 연간예산의 60%수준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7예산안 : 3,500억원(재해대비 2,100, 영농편의 1,400)</li> <li>※ '00~'05년 평균 : 수원공 41%, 평야부 59%</li> </ul> </li> <li>□ 재해대비 및 안전영농을 위해 개보수 연간 지원 규모 확대 추진(예산당국과 협의)</li> </ul>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19. 급속한 농가인구 감소로 농촌사회 유지가 어려운데 이에 대한 대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어촌지역의 활력증진을 위해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5개년 계획” 수립·추진('05.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를 통해 농산어촌을 국민의 20%이상이 거주하는 삶과 휴양, 산업이 조화된 복합정주공간으로 조성</li> <li>○ 계획추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점검·평가단 구성('05.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5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 점검·평가 실시('06.5) 및 국회보고('06.6)</li> </ul> </li> </ul> </li> <li>□ 도시민의 농촌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농어촌 복합생활공간 조성방안”을 마련·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민이 유입촉진을 위한 전원마을 55개 지구 조성을 추진중</li> <li>○ 농촌복합생활공간 시범마을 4개소(제천 도학마을 등) 선정('05.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연계하여 종합적인 교육·의료·복지서비스 제공</li> </ul> </li> <li>○ 은퇴자를 위한□□전원마을 페스티벌□□개최('06.10.12 ~ 15, COEX)</li> </ul> </li> </ul> <p>&lt;향후 추진계획&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삶의질 향상 기본계획 및 농어촌복합생활공간 조성방안 지속 추진</li> <li>○ 새로운 정책수요에 맞춘 신규과제 적극 발굴</li> </ul>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20. 농어민 국민연금 가입률 확대방안 강구 및 고령농민 복지대책 촉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어민 국민연금 가입률 확대를 위해 보험료의 지원등급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표준소득월액의 기준등급까지는 보험료의 50% 정률 지원, 기준등급이상은 기준등급의 보험료 50% 정액 지원</li> <li>- 기준등급 : ('05) 12등급 → ('06) 13</li> <li>* 소득에 따라 1등급 ~ 45등급으로 구분</li> </ul> </li> <li>□ 매년 연초에 “연금보험료 지원 상향조정” 안내문을 시·군·구 및 마을에 홍보자료로 배포('06.2)</li> </ul> <p><b>&lt;향후 추진계획&g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어민 연금가입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농어민 가입대상 범위를 확대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겸업농의 가입대상 범위를 일정소득까지 확대</li> <li>- 다만, 일정직업이나 겸업소득과 근로소득이 일정 수준이상인 취미농은 제외</li> </ul> </li> <li>□ 고령노인에 대한 복지지원 대책 강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금 수급 혜택에서 배제된 저소득층 노인에게 대한 기초연금제도 도입을 검토</li> <li>○ 고령노인의 간병과 수발을 지원하는 노인수발 보험제도 도입 등 저출산고령사회 대책 수립 및 추진</li> <li>○ 취업이 어려운 고령농에 대해서는 고령농 특별소득보조 도입방안 검토</li> </ul> </li> </ul>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21. '05년도 삶의 질 기본계획 추진실적을 점검·평가하여 '06년도 시행계획에 반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괄, 복지, 교육, 지역개발, 복합산업의 5개 분과팀으로 점검·평가단 구성·운영('05.12)</li> <li>○ 관련분야 전문가, 농어업인단체 대표 등 총 21명으로 구성</li> <li>○ 점검·평가단의 심의를 거쳐 '05시행계획 점검·평가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관계부처에 통보('05.12.23)</li> <li>□ 점검·평가단에서 '05년도 시행계획에 대한 점검·평가보고서 마련('06.5)</li> <li>○ 평가보고서를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실무위원회 및 위원회에 보고한 후 국회 보고('06.6)</li> </ul> <p>&lt;향후 추진계획&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점검·평가 결과의 반영을 통해 기본계획 추진의 실효성과 투융자의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확보</li> <li>○ '05년 실적·점검 평가 결과보고서를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에 통보하여 '07년 예산에 반영토록 조치</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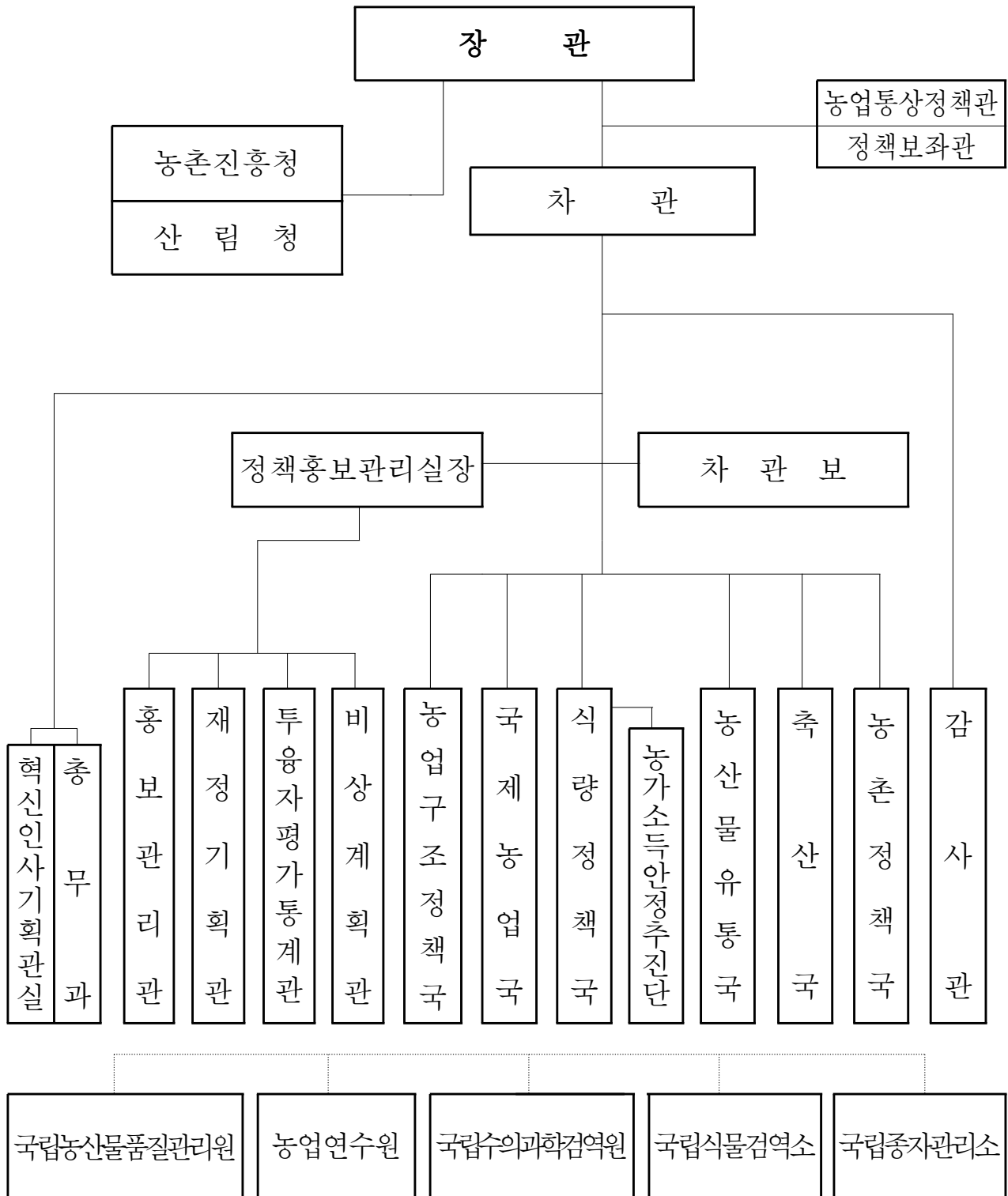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22. 쌀협상 결과 비준에 따른 후속대책으로 농업인 요구 수용 촉구</p>	<p>□ 쌀협상결과 국회 비준동의 과정에서 농업계와 협의한 18개 과제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협의('06.2)를 거쳐 보완대책을 수립, 국회(농해수위) 보고('06.2.28)</p> <p>○ '01 상호금융저리 지원자금 상환 연기, 공공비축 매입 물량 확대, RPC 건조저장시설 확충 지원, 영유아 양육비 지원 확대, 친환경농업 인프라 구축 등</p> <p>* '06년 18개 과제 관련 사업예산에 3조 6,080억원 반영</p> <p>&lt;향후 추진계획&gt;</p> <p>□ 18개 과제를 계속해서 차질없이 추진</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23. 전국의 공영도매 시장 관리·운영 실태 조사 실시하여 합리적이고 합법 적인 운영체계 수립</p>	<p>□ 품목별 거래실태 조사 등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중('06.6)</p> <p>○ 용역기관 : 한국농촌경제연구원</p> <p>○ 용역기간 : '06.6. ~ 12월(6개월)</p> <p>○ 주요 연구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자·소비자 유통환경 변화에 따른 거래제도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장경매제·시장도매인 분석</li> <li>· 주요품목별거래형태별 실태조사</li> </ul> </li> <li>- 시장도매인제 시행방안 연구 및 도매시장 정비 기본방향 등</li> </ul> <p>&lt;향후추진계획&gt;</p> <p>□ 도매시장 주요품목별 실태 조사등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 하여 제도개선 추진('06년말)</p> <p>○ 또한 개정중인 농안법 등과 연계하여 도매시장 관리·운영지침(업무규정 표준안)을 개정하여 지자체 조례에 반영토록 추진</p>

< 별첨 2 >

## 일 반 현 황

가. 조직 : 1차관보, 1실, 6국 5관 1단 42과(팀, 담당관)



## 나. 주요기능

실 국 별	주 요 업 무
감 사 관	농림부 및 소속기관, 농업관련 단체·기관에 대한 감사
홍 보 관 리 관	농림정책 및 주요현안 홍보, 대언론 관련업무
재 정 기 획 관	농정시책 조정, 예결산 및 기금업무총괄, 국회업무, 법무행정
투 용 자 평 가 통 계 관	투용자심사 평가, 농업통계, 생산관측 및 정보화 지원
비 상 계 획 관	비상대비계획 수립 및 비상훈련
농업구조정책국	농업구조개선, 농지관리, 농업인력육성, 협동조합 감독, 여성정책 등
국 제 농 업 국	DDA/FTA 농업협상 및 통상협력, 농산물 수입정책 총괄
식 량 정 책 국	식량정책 수립 및 수급관리, 식량생산, 농생명산업, 친환경농업 등
농 산 물 유 통 국	유통구조개선 가격안정대책, 식품산업육성, 채소과수회화 수급 관리
축 산 국	축산정책수립, 축산물위생안전성, 축산물 및 사료수급, 가축방역
농 촌 정 책 국	농촌지역 개발 및 복지, 농외소득 증대, 생산기반 정비·관리

### < 소속기관 >

기 관 별	주 요 업 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산물품질관리, 농산물검사안전성, 통계조사
농 업 연 수 원	농업공무원 및 농업관련 민간종사자, 농업인 교육 등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축산물 및 동물의 검사검역, 가축방역 및 질병 예방
국 립 식 물 검 역 소	수출입 식물검역
국 립 종 자 관 리 소	주요 농작물 종자관리 및 식물품종보호

## 다. 정 원

(단위 : 명)

	계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일 반 직						별정직	연구직	기능직
			소계	일반직			별정직	연구직	계약직	소계	3급	4급	45급	5급	6~9급			
				일반	일반 별정	일반 연구 자도												
농림부	3,963	2	23	12	2	6	2		1	2,955	14	82	55	407	2,397	290	165	528
본 부	543	2	15	9	2	2	2			450	8	33	43	173	193	6	1	69
관 서 소 계	3,420		8	3		4			1	2,505	6	49	12	234	2,204	284	164	459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2,168		1	1						1,650	2	12	4	144	1,488	266	2	249
농업연수원	43		1	1						30	1	2	1	10	16			12
국립수의 과학검역원	605		4			4				379	1	17	3	41	317	14	122	86
국립식물 검역소	433		1	1						376	1	8	3	29	335		10	46
국립종자 관리소	171		1						1	70	1	10	1	10	48	4	30	66
농진청	2,123	1	21	-	-	5	1	11	4	260	3	19	8	53	177	17	1,290	534
산림청	1,570	1	16	8	-	2	1	3	2	911	5	24	20	116	746	18	243	381
<b>총 계</b>	<b>7,656</b>	<b>4</b>	<b>60</b>	<b>20</b>	<b>2</b>	<b>13</b>	<b>4</b>	<b>14</b>	<b>7</b>	<b>4,126</b>	<b>22</b>	<b>125</b>	<b>83</b>	<b>576</b>	<b>3,320</b>	<b>325</b>	<b>1,698</b>	<b>1,443</b>



제269회 정기국회(국정감사)

농림해양수산위원회

# 농정 추진현황 보고

2007. 10. 19.

농 립 부

“농업·농촌사랑! 우리의 미래를 열어가는 힘”

# 목 차

I. 영농 추진상황 .....	595
1. 영농 여건 .....	597
2. 농축산물 생산 및 수급 전망 .....	597
II. 주요 업무 추진상황 .....	601
1. 농업개방 확대에 대응한 농정시스템 체계화 .....	604
2. 소비자에게 안전한 고품질 농식품 공급 .....	609
3. 농업의 체질 강화 및 경쟁력 제고 .....	620
4. 농업인 소득 향상 및 경영안정 강화 .....	626
5. 도시민과 상생하는 활력있는 농촌 구현 .....	632
III. 당면 현안사항 .....	639
IV. 2008년 예산 및 기금안 개요 .....	657
V. 입법 추진계획 .....	667
< 별첨 1 > 2006년 국정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	670
< 별첨 2 > 일반현황 .....	703

## I. 영농 추진상황

## 1

### 영농 여건

---

- 양호했던 봄철 기상으로 농작물 초기생육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으나, 8월 이후 잦은 강우와 일조량 부족으로 결실은 다소 저조

\* 8월 이후(결실기) 기상 : 평년대비 강수량 147%, 일조시간 57%, 평균기온 -1.2℃

- 금년에는 우박(6월), 태풍(9월) 등 10건의 재해가 발생하여 농작물 피해 50,051ha, 비닐하우스 파손 160ha, 농경지 유실·매몰 636ha, 가축폐사 135천수 등 피해 발생

## 2

### 농축산물 생산 및 수급 전망

---

쌀 : 생산량은 전평년에 비해 감소 전망, 벼베기 32% 수준 진행

- 금년 쌀 생산량은 전년(468만톤) 보다 3.8% 감소한 450만톤 수준으로 전망
  - 벼 재배면적은 950천ha로 전년(955천ha)에 비해 0.5% 감소
  - 단위면적당 예상 수량은 9.15일 기준 작황조사(농관원) 결과 476kg/10a 수준(평년 485, 전년 493) 전망
- 국가 전체 쌀 재고량은 '07양곡년도말 73만톤, '08양곡년도말 70만톤 수준으로 예상

\* 양곡연도말(10월말) 재고 현황 : ('05) 83만톤 → ('06) 84 → ('07P) 73 → ('08P) 70

## 채소류 : 엽근채류는 작황부진으로 가격상승 전망

○ 가을 무는 재배면적 감소(8,770ha, 전년대비 △10%)와 생육부진으로 생산량은 전년대비 15% 감소(567천톤) 예상

\* 무(원/kg) : ('05.9) 620 → ('06.9) 774 → ('07.9) 689 → (10.상) 772

○ 가을 배추는 재배면적 감소(12,800ha, 전년대비 △11%)와 생육부진으로 생산량은 전년대비 16% 감소(1,194천톤) 예상

\* 배추(원/kg) : ('05.9) 745 → ('06.9) 880 → ('07.9) 890 → (10.상) 712

○ 고추는 재배면적 증가(54,876ha, 전년대비 3%)와 작황 호조로 생산량은 전년대비 38.5% 증가(162천톤)할 전망

\* 고추(원/kg) : ('05.9) 7,500 → ('06.9) 10,700 → ('07.9) 7,118 → (10.상) 7,167

## 과실류 : 생산량 증가와 품질저하 등으로 가격은 낮아질 전망

○ 사과는 재배면적 증가(29,358ha, 전년대비 3.7%)에 따른 생산량 증가 및 잦은 강우로 인한 당도 저하 등으로 가격하락

\* 사과(천원/15kg) : ('05.9) 39.8 → ('06.9) 39.5 → ('07.9) 42.9 → (10.상) 20.1

○ 배는 재배면적이 감소(19,888ha, 전년대비 △3.7%)하였으나 착과수 증가로 생산량 증가가 전망되며, 당도 등 품질저하로 가격하락

\* 배(천원/15kg) : ('05.9) 28.3 → ('06.9) 28.6 → ('07.9) 28.8 → (10.상) 18.3

○ 감귤 재배면적은 소폭 감소(18,570ha, 전년대비 △0.5%), 자연낙과 감소 등으로 노지감귤 생산량이 증가(16.2%)하여 가격 하락 예상

\* 감귤(천원/5kg, 하우스) : ('05.9) 21.5 → ('06.9) 24.2 → ('07.9) 25.9 → (10.상) 23.2

## 축산물 : 사육 마리수 증가 등으로 가격 약세 전망

- **한육우**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중단('03.12) 이후 사육두수가 계속 증가하여 9월 현재 2,220천두 수준(전년대비 9.8% 증가)
  -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이후, 번식용 암소가격은 불안심리로 하락한 반면, 산지 수소 가격은 수요 증가로 높게 형성
  - \* 사육 마리수 : ('06.6)1,959천두→('06.12)2,020→('07.3)2,043→('07.9)2,220
  - \* 산지암소(천원/600kg) : ('06.6)5,149→('06.12)5,241→('07.3)5,369→('07.9)4,691
  - \* 산지수소(천원/600kg) : ('06.6)3,998→('06.12)4,552→('07.3)4,735→('07.9)4,873
  
- **돼지**는 산지가격이 높게 형성됨에 따라 모든 수가 증가하여 9월 현재 전년 동기 대비 3.1%증가한 9,659천두 수준
  - \* 사육 마리수 : ('06.9) 9,369천두 → ('06.12) 9,382 → ('07.3) 9,345 → ('07.9) 9,659
  - \* 산지가격(천원/100kg) : ('06.9) 233 → ('06.12) 233 → ('07.3) 213 → ('07.9) 229
  
- **닭**은 육계 병아리 생산 및 육용종계 수입 증가 등으로 9월 현재 전년 동기 대비 1.7% 증가한 121백만수 수준
  - \* 사육 마리수 : ('06.9) 119백만수 → ('06.12) 119 → ('07.3) 126 → ('07.9) 121
  - \* 육계(원/kg) : ('06.9) 1,084 → ('06.12) 769 → ('07.3) 1,097 → ('07.9) 1,055
  
- **젖소**는 저능력우 도태 등으로 사육마리수가 감소하였으나 두당 산유량 증가로 8월 현재 우유 재고는 8,500톤 수준
  - \* 사육 마리수 : ('06.9) 468천두 → ('06.12) 464 → ('07.3) 461 → ('07.9) 455
  - \* 분유재고 : ('06.8) 6.1천톤 → ('06.12) 4.4 → ('07.3) 8.8 → ('07.8) 8.5

## Ⅱ. 주요 업무 추진상황



- ◆ 2007년도는 한미 FTA 협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등 개방 확대와 농식품 안전, 농촌 휴양자원에 대한 국민적 요구 증대 등 대내외적 여건 변화 속에서 농정을 추진
- ◆ 농림부는 「농식품 세계일류, 농촌 Global Top 10」이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5대 전략목표와 그에 따른 세부과제를 차질없이 추진
  - (농정시스템 체계화) 한미 FTA 농업분야 국내보완대책을 수립하고, 119조원 투융자계획 조정과 함께 농가등록제 및 정책 리모델링 등으로 맞춤형농정 추진 토대를 마련
  - (고품질 안전 농식품 공급) 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우수 브랜드경영체 육성 및 농축산물 이력추적제 등을 통해 농축산물 안전 관리에도 역점
  - (농업 체질강화 및 경쟁력 제고) 신규 농업인력 확보 및 물류 효율화를 추진하고 협동조합의 경제사업 활성화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종자산업 육성 등 신성장동력 확충에 노력
  - (농업인 소득 향상 및 경영안정) 직접지불제 및 농작물 재해보험 확충 등으로 소득경영안정 장치를 내실화 하면서, 자조금제도 등 생산자 자율적 수급조절장치도 강화
  - (도농 상생의 활력있는 농촌 구현) 체계적인 농촌지역개발, 농촌의 복지·교육여건 개선과 함께 제2기 신활력사업 추진 등을 통한 농촌자원의 산업화 지원

# 1

## 농업개방 확대에 대응한 농정시스템 체계화

### 가 맞춤형 농정 추진

□ 농가유형에 따른 정책 차별화를 골자로 하는 맞춤형 농정 기본 계획 마련

○ 정책 대상을 농업의 주업여부 및 경쟁력 정도를 기준으로 주업농, 고령농, 취미농으로 유형화

- 주업농에 대해서는 규모화 촉진, 직불제 확충 등 농업정책을 집중하여 실질적 소득안정 도모

- 고령농에게는 생계비 걱정 없이 은퇴할 수 있도록 경영이양 직불제 확충 등 별도의 지원을 통해 구조개선 촉진

\* 공무원 등 농업 외 안정적 직업 소득이 있는 취미농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맞춤형 농정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농가등록제 도입

○ 농가의 경영정보를 등록관리할 수 있는 전산 프로그램 개발(6월)

-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Agrix), 행자부 통합전자민원시스템 등 기 구축된 자료를 활용하여 신청내용의 검증 및 정보 공유

○ 등록방법, 등록내용 등 농가등록제 도입방안 마련(7월)

- 농가등록은 제도시행 초기의 부담과 농가의 여건을 감안하여 농가 신청에 의한 임의등록 방식으로 추진

-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업인을 등록대상으로 하고, 농림사업에서 공통적인 기본정보를 중심으로 등록

\* 기본정보 : 주민정보, 농지이용정보, 축산현황 등

- 전국 9개 읍·면(7,700여 농가) 대상으로 시범사업 실시(8~12월)
  - 다양한 농가형태에 적용이 가능하도록 평야지(3), 중산간지(3), 도시근교(3) 선정
    - \* 평택시 오성면, 인제군 서화면, 충주시 살미면, 부여군 남면, 부안군 행안면, 나주시 반남면, 칠곡군 북삼읍, 창녕군 대지면, 제주시 조천읍
-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등록제도 도입 취지 및 필요성, 기대효과 등을 중점 홍보
  - 마을단위 설명회(342회), 현수막 설치(386개소), 신문기고(44회), 지역언론 홍보(287회), 홍보 리후렛 배포(10만부) 등
-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 보완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 '08년도 전국단위 사업에 대비

□ 맞춤형 농정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농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 농업경영체의 범위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업인과 농업 법인으로 정하고 성장단계별 정책추진의 법적 근거 마련
  - 농가등록제, 후계농 육성, 농가단위 소득안정 직불제, 농업법인제도 등

□ 농가단위 소득안정 직불제 추진방안도 마련(6월)하여 한미 FTA 국내보완대책에 반영

- \* 「농가단위 소득안정지원제도 추진기획단」을 설치하여 구체적 시행방안을 마련('08)하고, 지역별·품목별 시범사업('10~'11) 후 단계적으로 확대

## 나 시장지향적 양정제도 정착

□ 농업인·산지유통업체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07년산 공공 비축 미곡 매입방안을 조기에 확정·발표(7.18)

○ '07년도 총 매입량은 432천톤으로 하되 그 중 115천톤은 산물벼로 매입

○ 농촌 노령화 등에 따른 노동력 부족 현상을 감안하여 건조벼 중 일부를 톤백(0.8톤/bag)으로 매입

- 금년도 시범 실시(전국 8개소, 약 5,000톤)를 거쳐 연차별 확대 추진

○ 농업인 자금수요 등을 감안하여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우선 지급금을 지급하고, 산지쌀값(10월~12월) 확정 후 정산예정

\* 우선지급금 : 포대벼 48,450원/40kg, 산물벼 47,780(포장 제비용 670원 차감)

□ 개방 확대에 대비한 민간 시장기능 활성화 기반을 마련

○ 수급가격동향 등 관측정보를 농업인·유통업체에 분기별로 제공(3회)

○ RPC 경영평가 결과를 감안, 벼 매입자금을 차등 지원(9,184억원)

- A등급 : 15개(27.5억원, 금리 0%), B~C : 131개(25~17.5억원, 1%),

D~E : 131개(15~10억원, 2%), F : 11개(지원제외)

○ 경영부진 RPC의 자율적 통합 유도를 위해 통합 RPC 우대 지원

\* 건조저장시설 우선지원(10개소, 45억원), 운영자금 추가 지원(14개소, 986억원)

- 수확기 농업인의 판매 선택 폭 확대 및 RPC 벼 매입자금 부담완화를 위해 벼 수탁판매 시범사업을 실시

\* 시범사업 물량 : 조곡 80천톤(54개 RPC 대상), 선도금 예정액 : 875억원(무이자)

□ 투명한 양곡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양곡표시제 표시요건 강화

- 쌀·현미 판매시 품종순도가 80% 이상인 경우에만 품종명 표시가 가능하도록 표시요건을 강화(1월)

- 타 품종의 혼입율이 20%를 초과할 경우에는 일반계·혼합 등으로 표시토록 하여 차별화 유도

- 소비자가 쌀 품질에 대한 보다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품질표시방법 개선을 추진 중('08.7월 시행 계획)

- 싸라기·분상질립 등 외관 중심의 등급 표시 외에, 단백질 함량, 품종 순도, 완전립 비율 등 밥맛에 영향을 미치는 품질표시항목 추가
- 금년 중 기준 설정을 완료한 후 농업인·소비자에 대한 사전 교육·홍보를 실시

□ 쌀 소득보전 목표가격 변경 동의(안)과 쌀소득등의보전에 관한법률 개정(안)을 금년 내에 국회 제출

- 쌀소득등의보전에관한법률 개정(안)은 비농업인의 직불금 수령 방지 등 제도개선 내용 포함

## 다 농림정책 리모델링 추진

- 현장 적용에 애로가 있는 사업, 투융자 효율성을 저해하는 사업 등을 발굴하여 개선
  - 농림부·농민단체·학계가 참여하는 농림정책 리모델링 위원회를 구성(2월)·운영
  
- 그동안 8차례 회의를 통해 33건의 사업을 심의하여 개선
  -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기준을 하향 조정(1,500㎡→1,000)하고, 농업경영회생자금의 지원 조건을 완화
  - 개별 농림사업의 지원조건을 농촌 현실에 맞게 개선
    - 영농규모화 사업 대상을 논에서 밭까지 확대하고, 창업농에 대해서도 매매지원 허용
    - 지역 가공·유통업체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역특화사업의 관련 규정 개정
  
- 「농업인 신문고」 제도를 도입, 현장애로 해소 기능을 강화
  - 농관원 출장소 등 농촌 현장에 119개의 농업인 신문고를 설치하여 현장 애로사항을 접수
  -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해소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과제는 리모델링 위원회에 상정하여 개선안 마련

## 가 식품산업 육성

## □ 식품산업 중장기 발전을 위한 육성정책 추진기반 마련

- 식품제조·외식업 경쟁력 강화 및 농산물 부가가치 확대를 위한 식품산업 중장기 종합대책(안)을 연내 확정(11월)
- 식품산업 진흥기반 조성, 농업과 연계강화 등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식품산업진흥법 제정을 추진
  - 공청회(7.25), 입법예고(9.4 ~ 27) 등 법제정 절차 진행 중
-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8.29, 총리주재)에서 식품산업 육성업무는 농림부, 안전업무는 복지부가 각각 담당키로 결정
  - 식품산업 육성정책 담당조직 확대 개편 추진(11월)
    - \* 국 명칭(농산물유통국 → 농산물유통식품산업국), 식품산업 담당과(1개과→2)

## □ 식품업계의 경쟁력 제고 및 국산 농산물 사용 확대 유도

- 식품관련 업체 운영·시설자금 지원을 통해 경쟁력 제고
  - \* 국산원료 구매(1,019억원), 가공업체 위생시설(150), 외식업체 경영(50) 지원
- 전통주·누룩 기술개발 지원 및 전통주 소비촉진 행사 개최
  - \* '전통주와 전통음식의 만남'(07.5) 및 '전통주 품평회'(10.24) 등
- 생산자 및 유통·식품업계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교류 협의회 개최(11월)
- '08년 광역 식품산업 클러스터 시범사업 추진을 준비
  - \* 사업 추진단 구성, 해외클러스터 교류 협력, 투자 유치 등

## □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한 품질관리제도의 확대·내실화

- 식품규격 인증 및 지리적 표시제 등록을 지속 확대
  - 가공식품 KS 인증('07년 10건, 총 115건), 전통식품 인증('07년 21건, 총 269건), 지리적 표시제('07년 17건, 총 33건)
- 식품산업진흥법(안)에 유기가공식품 인증제 근거 마련, 인증 프로그램 개발(한식연, 12월) 등 품질관리제도 시행기반 조성

## □ 우리 음식·식문화의 해외진출 토대 마련

- ‘韓 스타일, 한식 세계화 지원사업’ 추진계획 확정(2월)
  - 전통음식 표준 조리법 개발('07년 100종) 및 국내외 홍보
  - 해외 한식당 인증제 모델 개발, 홍보행사 확대 등을 '08년 본격 추진
- 재외 공관과 공동으로 한국 식문화 행사 개최(6회)
  - \* 북경(8.24), 싱가포르(9.3), 대만(10.3), 동경(10.5), 코펜하겐(11.2), 워싱턴(11.22)
- 세계화를 위한 우리 음식 표준화 및 지역 향토음식 발굴 추진
  - 지역별 우수 향토음식 경연대회 및 ‘2007 한국음식대전’ 개최(10.10)

## □ 우리 농식품의 안정적 소비기반 확보를 위한 소비촉진 홍보

- TV 등 홍보효과가 큰 매체를 통한 CF 등 홍보
  - 우리 농식품 우수성 홍보 CF(10~12월, MBC·SBS), 어린이 애니메이션(2~5월, KBS2), 어린이 식문화 체험(3~12월, EBS)
- 국제 전시회, 소비자 대상 캠페인 등 전개
  - 서울국제식품전시회 및 농식품 파워브랜드 대전(10.31~11.3), 명절 우리 농식품 선물하기 캠페인 등



## 나 고품질 브랜드 농산물 공급

- 쌀 : 우수 브랜드 경영체 8개소 선정, 신규지원('13년까지 100개 육성)
  - 시장·군수 주도하에 **브랜드경영체 통합** 등 규모화된 시·군 단위 **공동브랜드 활성화**
    - 쌀 품질관리를 위해 마을 단위로 **농가 조직화 및 품종 통일 추진**
    - 브랜드쌀 육성매뉴얼(1천부, 2월) 및 브랜드쌀 성공 홍보자료를 제작(1천부, 9월)하여 RPC·지자체·지역농협 등에 배부
  - 우수 브랜드경영체에 시설현대화 및 교육·홍보 등 지원
    - 시설현대화 : 개소당 20억원 기준(국고 40%, 지방비 20, 자담 40)
    - 교육·홍보 및 컨설팅 : 개소당 2억원 기준(국고 50%, 지방비 50)
  - 소비자단체 주관 하에 「**시중유통 브랜드쌀 평가**」를 실시, **12개 우수 쌀 브랜드**를 선정(10.2)하여 홍보 실시
  - **원예** : 규모화·전문화된 브랜드경영체 중심으로 집중 지원
    - 공동브랜드, 안정적인 판로 확보, 균일한 품질관리가 가능한 공동마케팅조직을 선정·지원('06까지 : 15개 → '07 : 4개 추가)
    - 산지유통센터 중심의 브랜드화 및 계열화 운영상황을 점검·평가하고, 경영안정을 위한 컨설팅 추진
- \* 거점APC : ('06까지) 11개소, 500억원 → ('07) 4추가, 284

\* 일반APC : ('06까지) 242개소, 1,810억원 → ('07) 41(신규12·보완29), 137

○ **채소** 주산지 중심으로 브랜드경영체 2개소 선정·지원

- 개소당 200억원(국고 38, 지방비 43, 용자 105 등)을 3년간 분할지원

\* '08년에는 우수 브랜드경영체 6개소를 신규 지원 계획

- 경영표준화 및 품질관리를 위해 브랜드경영 지침서 제작·보급(600부, 10월)

○ **과실** 브랜드경영체 8개소(전국1, 지역공동 7) 신규 지원

- 생산에서 유통단계까지 브랜드 품질관리, 마케팅 운영, 홍보비 등 지원(22억원)

□ **축산물** : 성공가능성 높은 우수 브랜드경영체의 규모화, 내실화 추진

○ 기 선정된 73개 우수 경영체 집중지원('07 : 947억원)

- 사업성과 평가를 바탕으로 추진실적이 우수한 경영체에 무이자 인센티브자금 추가 지원('07 : 200억원)

○ 전문화된 브랜드컨설팅 지원으로 내실화 및 경영마인드 개선

- '07년 8개소, 개소당 5천만원씩 총 4억원 지원

\* 컨설팅 지원 개소수(누계) : ('06) 22개소 → ('07) 30

○ 1단계 대책 보완, 2단계 축산물브랜드 발전대책 수립 계획(10월)

- 브랜드 선정기준 개선으로 통합·광역화 유도, 브랜드별 가축 개량 등 맞춤형 지원 및 차별화된 컨설팅·교육·홍보 추진

- 산지와 연계한 브랜드육 타운 조성('08 : 2개소) 및 직영 판매 시설 확충('08 : 10개소) 등 '08년 신규사업으로 추진

## 다 농식품 안전관리시스템 공급

### 《농산물 안전성 관리》

#### □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 및 농산물 이력추적관리제도 확대 시행

○ 농협, 이마트 등 GAP 민간인증기관 확대('06 : 21개소 → '07 : 29)

\* GAP 인증 농가수 : ('06) 3,659 농가 → ('07.9) 7,743 농가

○ 생산자, 유통업체, 판매업체 등 이력추적등록 확대

\* 생산자('06 : 8,808명 → '07.9 : 19,338), 유통업체(231개소 → 496), 판매업체(550개소 → 623)

#### □ 농산물 안전성 제고를 위한 농업인 교육 강화('07 : 44만명)

○ 새기술 실용화 교육(1~3월, 43만명) 및 주산지 안전성 교육 실시(3~10월, 1만명)

○ 안전성조사 결과 부적합농가는 특별교육 실시(6월, 12월)

#### □ 생산단계 농산물 안전성조사 강화 및 검사시설 설치 확대

○ 잔류농약 조사 외에 중금속미생물 등을 안전성조사 범위에 추가

- 깻잎, 상추 등 30개 품목 중점관리, 조사건수 확대('06 : 66천건 → '07 : 68)

- 농산물 출하전 납·카드뮴 등 중금속 안전성조사를 강화

\* 조사 지역 : ('06) 44개 폐광지역 → ('07) 125개 폐광 및 31개공단인근 평야 지역

\* 조사건수 : ('06) 898건 → ('07) 10,000건

○ 농약 정밀분석을 위한 거점분석실 확충('06 : 10개소 → '07 : 15)

## 《 축산물 안전성 관리 》

### □ 잔류물질 규제검사 확대 등 축산물 안전성검사 강화

- 식육 중 잔류물질 규제검사를 확대('06 : 10.8% → '07 : 13.5)하고, 잔류물질 검사부위도 식육 외에 잔류량이 많은 신장을 추가(4월)
  - \* 잔류물질검사 중 규제검사 물량 : ('06) 16,741건/140,666건 → ('07.6) 8,789/64,914
  - \* 규제검사 대상 : 위반농가 출하기축, 긴급도살주시자국 등 위반가능성이 높은 축산물
- 축산물에 대한 수거검사 물량 확대('06 : 6,720건 → '07 : 7,500)
- 도축장에서만 적용하던 식육에 대한 미생물 기준을 유통 과정 (식육포장처리장, 식육판매장)에 확대하여 권장기준 추가 설정(9월)

### □ HACCP 확대 적용 및 도축장 HACCP 수준 제고 유도

- 금년부터 돼지농가 HACCP 지정(30호), 소 사육 및 축산물 보관·운반·집유 단계의 지침·모델개발, 평가기준 등 마련
  - 지침과 모델을 관련기관 및 농가 등에 배포(6월),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현장 적용가능 하도록 조치(11월 예정)
- 도축장 HACCP 운용수준 향상을 위한 평가를 실시하여 우수 도축장에 운영자금 차등 지원('07 : 553억원)

### □ 쇠고기 이력추적제는 등록대상에 한우 외에 육우를 포함하고, 브랜드 및 사·군단위에서 도단위(경기도)까지 확대 등 사업방식 다양화

- \* 참여대상 : ('06) 23개 브랜드·지역 → ('07) 78개 브랜드·지역(2개 육우브랜드 포함)
- \* 전산등록 소 두수 : ('06) 21만두 → ('07.9) 69만두
- ※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안)」 정기국회 입법 추진

## 라 가축질병 예방 및 방역체계 구축

- AI('06.11월 발생) 청정국 지위를 조기에 회복(6.18)하고 상시 방역체계를 구축
    - 방역규정(방역실시요령) 및 현장메뉴얼 보완(9월)
      - 조기 검색·경보발령, 현장조치 및 부처 협조체계를 더욱 강화
    - 양계농가 중심의 자율적 차단방역 추진을 위한 방역수칙 제정
      - AI의 특성 및 전파경로, 농장시설·출입차량 등 대상별 차단방역 및 소독 실시요령 등 포함
    - 국내 유입 위험성이 높은 11월~2월에는 특별방역대책을 추진
      - 양계농가 중심의 자율적 차단방역, 주요 유입경로별 예찰활동 강화, 농가 교육·홍보 등 더욱 강화된 예방·경보체계 가동 등
  - 구제역 발생가능성이 높은 3~5월을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해 국경검역 및 국내방역 추진
    - 수입건초의 소독·정밀검사, 입국자의 신발소독(발판 소독조 232개소), 여행객의 휴대육류 검색 등 실시
    - 공동방제단(3,880개반)을 운영하여 매주 수요일에 일제 소독 실시, 시·군별 가상훈련, 예찰활동 및 교육·홍보 실시
    - 특별방역기간 이후에는 평시 방역체계(6월~2월)로 전환하여 지속적으로 예방활동 추진
- \* '02.6월 이후 구제역 비발생 상황 유지

## □ '13년 근절을 목표로 소부루세라병 방역대책 강화

- 거래되는 한·육우 암소, 10두이상 한·육우 농장 소(연2회 모니터링), 모든 젖소농장 소(연6회) 등으로 검사를 확대하여 감염율은 하락 추세

\* 한육우 검사실적 : ('06) 197천호, 1,258천두 → ('07.8) 167천호, 829천두

\* 감염율 : 한육우 ('06) 2.20% → ('07.8) 1.00, 젖소 ('06) 1.86% → ('07.8) 0.67

- 거래되는 수소 및 농장에서 사육중인 1세이상 모든 소까지 검사대상을 확대('08.1)

## □ 돼지콜레라 발생 차단을 위해 예방접종 등 노력 지속

- 예방약 100% 공급(34백만두, 29억원) 및 혈청검사 179천두 실시(9월)

- 예방접종 미실시 농가에 과태료 부과 등 농가 참여유도

\* 발생건수 : ('03) 72건 → ('04) 10건 → ('05) 5건 → ('06) 2건 → ('07.8) 4건

## □ 금년부터 123명의 공익수의사를 현장에 배치, 가축방역 및 축산물 안전성 관련 인력 보강

- 군사·직무교육(3~4월)을 거쳐 5월에 현장 배치

\* 매년 150명씩 배치, '09년부터 연간 450명의 공익수의사 운영 계획

- 배치와 복무관리 등에 관한 공익수의사 운영지침 마련(9월)

## 마 수입 농산물 관리체계 강화

### □ 원산지 표시제도 조기 정착을 위한 민관 합동단속 강화

- 원산지단속의 실효성 확보와 민간감시기능 강화를 위해 400명의 특별사법경찰관과 25,000여명의 명예감시원 운영
  - 명예감시원을 정예감시원(3천명)과 신고감시원(22천명)으로 구분 운용하고 감시능력 향상을 위한 전문교육과정(8월, 11월)을 신설
  - \* 원산지 단속실적(9월 현재) : 3,746건(허위표시 1,472 , 미표시 2,274)
- '07년 구이용 쇠고기에 이어 '08년부터는 쌀에 대해서도 음식점에서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의무화
  - 음식점 원산지표시 단속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양해각서(MOU)를 체결(6월), 분기별로 1회 이상 합동단속 실시 중
  - \* 쇠고기 원산지 표시대상 업소 확대(300㎡이상→100㎡이상) 및 쌀의 원형을 유지하여 조리한 식사류에 대하여 표시토록 식품위생법 및 시행령 개정 추진중

### □ 쌀 의무수입물량 도입에 따른 수입쌀 부정유통 방지대책 추진

- 수입쌀 단속 상황실을 운영, 수입쌀 입찰정보를 활용하여 유통과정을 집중 추적 감시
  - \* 단속실적(9월말 현재) : 19건(국산 둔갑 11, 수입쌀 가공품의 원산지 허위기재 8)
- 수입쌀 판별능력 제고를 위해 중국산 벼 DNA 마커 75점 개발(9월)

### □ 유전자합성시스템 등 첨단 검역장비(61종 525대) 구입 및 전문 검역인력 확충(18명) 등 수입농산물 검역 강화



## 바 자원순환형 친환경 농업 육성

-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조성 및 친환경농자재 지원 확대
  - 경종농업과 축산을 연계한 1,000ha 규모의 자연순환형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06 : 3개소 → '07 : 6개소 추가)
    - 읍·면 단위의 10ha 규모 친환경농업지구 조성('06까지 820개소, '07신규 : 59개소)
  - 유기질비료 지원 확대('06 : 120만톤/420억원 → '07 : 135/473)
- 소비자 신뢰도 제고를 위해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 개선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령 개정, 3.28일 시행)
  -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제 신설 및 유통업자의 재포장에 대한 인증제 도입(9월말 현재,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130건, 재포장인증 15개 업체)
  - 농가의 농자재 선택이 용이하도록 친환경농자재 목록공시제도 도입(9월말 현재, 620건 신청, 70건 목록공시)
  -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 위반행위 행정처분기준 강화 등
    - 허위광고 시 처벌규정 신설(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 친환경농산물 소비 촉진 및 유통 활성화
  - 자조금 확대조성('06 : 8억원 → '07 : 16) 및 직거래 매취자금 지원(250억원)
  - 친환경농산물 종합물류센터 건립('12년 수도권 1개소)을 위해 기획예산처에 예비타당성 조사 의뢰(8월)
  - 초등학생용 친환경농업 학습 부교재 제작·보급(570개교, 14만부)

□ '12년 금지에 대비, 가축분뇨 해양배출 물량 감축 추진

- '07년부터 연간 50만톤 이상 감축하는 가축분뇨 해양배출 감축대책 마련(6월)

\* 해양배출 물량 : ('06.1~7) 155만톤 → ('07.1~7) 111(△28%)

- 해양배출이 많은 지역의 중규모 양돈농가를 중심으로 공동자원화 시설 설치('07년 5개소 시범 설치, '08년 이후 연간 15개소 이상 확대)

□ 가축분뇨의 퇴·액비 이용 활성화 추진

- 경종과 축산을 연계한 자연순환농업협약을 체결한 우수 조직에 활성화자금 지원(15개소, 160억원)

\* 자연순환농업협약 : ('06) 20개소 → ('07.7) 39개소

- 민간업체도 액비유통센터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살포실적 우수센터에 장비 추가 지원('07 : 6개소, 개소당 1억원)

□ 「가축분뇨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 준비 및 제도 개선 추진

-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기준 및 절차 마련(10월)

- 액비살포를 위탁하는 농가에 대한 농경지 확보의무 면제 등 가축분뇨 퇴·액비 이용이 용이하도록 시행규칙 제정(10월)

- 지역단위 양분총량제 도입 계획 수립(11월)

- 시·군별 양분정보 기초자료 조사 실시 및 결과 제공, 시·군의 감축노력 평가 후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 부여방안 마련

□ 깨끗한 사육환경 구축을 위해 친환경축산 표준 모델 개발 및 보급(12월)

### 3

## 농업의 체질 강화 및 경쟁력 제고

### 가 농업인력 확보 및 역량 확충

- 젊고 유능한 농업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농업계 학교 교육 및 도시민 대상 농업교육 강화
  - 각 지역별로 우수농고의 특성화 지원(10개교, 13억원)
    - 현장실습, 동아리활동, 경영우수사례 특강 및 해외연수 지원 등
  - 농고 지원을 위한 농림부-교육부-교육청 MOU체결 예정(10.30)
    - 자율학교를 지정하여 필요시 교장공모 및 전국단위로 학생모집
  - 한국농업전문학교를 한국농업대학으로 개편(3월)하고 농과대 학생 영농정착교육과정 확대(3개대학, 160명 → 7개대학, 530명)
  - 도시민을 위한 농업창업교육과정 운영(3개 과정, 60명)
- 신규인력의 안정적 정착 및 성장을 위한 자금지원 개선
  - 선도농가 연수방식의 농업인턴제 지원단가 인상(111명, 50만원/월→ 60)
  - 후계농업인 선정(1,507명) 및 정착자금 지원(830억원)
    - 후계농 자금활용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종전 1년내 지원방식에서 3년간 분산지원방식으로 개편(2월)
  - 우수 농업경영인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추가자금 지원(1,772명, 1,200억원)

□ 전업농 중심의 지역별·품목별 **맞춤형교육·컨설팅** 확대

- **농업인·품목단체** 중심의 기술·경영교육 확대('06 : 29단체→'07 : 40)
  - 생산기술부터 유통·마케팅까지의 현장실습·문제해결, 경영·리더쉽 교육 등 추진
- 지역브랜드조직, 산지유통 전문조직 등을 대상으로 「**지역 특성화 교육**」 확대('06 : 58개 기관/47개 과정 → '07 : 82/87)

□ 농업교육인프라 확충과 여성농업인 경영능력 제고

- **통합농업교육정보시스템(AgriEdu.net)** 구축·시범 운영(3월)
  - 교육과정 통합검색·신청 및 커뮤니티 운영 등 수요자 편의 기능 구현
- 교육기관에 대한 **현장중심 모니터링·평가 강화**(88기관, 469과정)
  - 연말까지 평가를 완료, '08년 교육계획 수립에 반영
- 여성농업인의 경영참여 및 성취감 고취를 위해 **농가경영 협약** 교육을 지원(139농가)

□ 농업법인 등에 대한 창업 및 투자유치·경영 혁신 인프라 확충

- **농업특화 창업보육센터** 추가 설립 및 권역별 확충 마무리
  - \* ('02)수도권 3개소 → ('05~'06)영남 1, 호남 1 → ('07)강원2, 충청1, 제주1
- **농업전문투자펀드** 추가 결성('06 : 100억원 → '07 : 200)
  - 제4호 농업전문펀드 업무집행조합원 선정(7월)
- 농업법인 등에 대한 **전문인력 활용지원 시범도입**(20개소)
  - 상품기획, 마케팅, 회계등 전문인력 영입시 보조금 지원(월120만원)

## 나 | 농산물 물류 효율화

### □ 농산물 표준 규격 출하 확대로 상품성 제고 추진

#### ○ 금년 1월부터 공영도매시장 배추·무 포장유통 전면 시행

- 포장재 가격의 60~90%를 지원(170억원)하여 정착단계

\* 포장화율(배추/무) : ('05) 10.6%/39.9% → ('06) 55.6/70.4 → ('07P) 100/100

#### ○ 미생물에 의한 재오염 방지를 위해 닭오리 포장유통 의무화(1월)

\* 1일 평균 도축 8만수 이상인 도축업자에 대해 시행, 향후 의무화 대상 확대

### □ 유통과정 안전성 확보 및 물류비용 감소를 위한 대책 추진

#### ○ 생산자단체 소유 일반차량을 냉장·냉동차 등으로 개조 지원 (47대)하고 저온유통체계 구축방안을 마련중(12월 확정)

\* '08년 저온유통체계 시범사업 추진 계획('08 : 30억원)

#### ○ 농산물 RFID 표준안 마련중(3월 연구용역 완료, 11월 마련 계획)

\* RFID : 포장단위로 물류흐름, 생산이력 등을 무선주파수로 관리(기존 바코드 대체)

#### ○ 공동선별·출하조직에 대해 공동선별비(110억원) 지원

### □ 도매시장 거래제도 개선을 위한 농안법 하위법령 개정 완료(7월)

#### ○ 규모화 유도를 위하여 도매시장법인 등의 인수·합병 허용

#### ○ 도매시장법인이 전자거래방식으로 거래시 상장절차를 생략하고 구매자에 직송 가능

## 다 협동조합 경제사업 활성화

- 농협중앙회 신용·경제 사업분리 방안을 확정(3월)하여 농협이 본연의 역할인 경제사업에 매진하도록 10년의 준비기간 부여
- 농림부, 농민단체, 학계, 농협 등의 관계자로 「경제사업활성화위원회」를 구성(7월), 38개 세부 추진과제를 선정하여 추진 중

### < 경제사업 활성화 주요내용 >

- ◆ '15년까지 산지 농산물의 60%('05, 45%)와 소비지 농산물의 15%('05, 7%)를 농협이 책임지고 판매하기 위해 총 13조원 투입
- 조합공동사업법인, 연합마케팅조직, 품목조합, 합병조합 등 핵심 산지유통주체의 규모화·전문화를 위해 7조원 지원
- 대형 판매장(37개 신설), 『NH식품』 신설 등에 6조원을 투자

- 경제사업활성화 방안에 따라 농협은 산지유통의 조직화·규모화·전문화 및 소비지 유통기능 강화를 추진
- 조합공동사업법인 육성('06 : 12개 → '07.9 : 23) 및 공동계산율 확대 추진('06 : 10.9% → '07P : 12.3)
- 대형 판매장('06 : 13개 → '07.8 : 16) 및 중소형 판매장 확충('06 : 150개 → '07.8 : 157), NH식품 설립 추진('08.1)
- 경제사업 활성화 점검·평가 방안을 마련(11월)하고 반기별로 「경제사업활성화위원회」를 개최하여 추진실적을 점검·독려

## 라 농식품 수출 적극 확대

- '07년 수출목표 24억 5천만불 달성을 위해 수출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기반 구축 등 추진
  - 수출전문 원예생산단지 지정을 확대('06 : 149개 → '07 : 155) 하고, 우수단지에 물류비 인센티브(5~12%) 지원
  - **딸기, 포도** 등 수출확대 가능성이 높은 품목(27개)을 집중 육성
    - \* 유망 상품 마켓 테스트, 홍보에 필요한 비용 특별 지원
  - 8월말까지 수출실적은 1,571백만불(전년동기 대비 11.6% 증가)
  
- 해외시장 개척 지원 및 환경 변화에 따른 수출 지원제도 개선
  - **외교통상부와 농식품 수출 업무협력 약정을 체결(4월)하고 재외공관을 수출확대 전진기지로 활용**
    - 수출 잠재력이 큰 지역에 대한 유통공사 해외지사 인력 보강
    - \* 싱가포르, 상하야, 모스크바 각 1명 증원, 두바이, 베트남, 인도네시아 시장조사요원 파견
  - **신시장 개척시 초기 비용 소요가 큰 점을 감안, 수출물류비 인센티브 지원을 상향 조정(10%P → 30)**
  - **우리 농식품 세계화를 위한 홍보 활동 강화**
    - 해외 TV, 일간지 등 홍보(6회), 판촉행사(35회), 홍보관(8회), 한국 음식 요리교실(10개국 43회) 등 개최
  
- **농식품 수출 중장기 종합대책 마련(10월 확정)**
  - 농식품 수출 100억불 달성을 위해 상품 개발, 전문 수출경영체 육성, 고품질 생산기반 구축, 해외마케팅 강화 등 세부 대책 마련

## 마 종자산업 육성 등 신성장 동력 확충

- 종자산업을 농업분야의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종자산업발전 중장기 대책」(’06.9)을 추진 중
  - '07년 연구개발 과제로 고추·배추 분자육종 등 총 65개 품종 개발 과제에 80억원 지원(전년 대비 43% 증가)
    - \* 분자육종 :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하여 육종기간을 단축시키는 방법
  - 농업인에게 우량종자를 원활히 공급할 수 있는 체계 구축
    - 우수 종자업체에 증식·채종비 저리 용자(60억원, 3%)
    - '05 ~ '11년간 “과수 우량묘목 생산지원사업” 추진(총 225억원)
      - \* 과수 모수(母樹, 원종) 계통보존·증식을 위한 중앙과수묘목센터 설치('07)
  - 품종보호권 강화를 위해 종자산업법 개정·공포('07.8.3)
- 고부가가치 기술농업 지원 및 농업인의 신소득원 창출을 위해 첨단기술 분야 연구개발 및 산업화 추진
  - 기능성 바이오식품, 돼지 콜레라 경구용 백신, 가축사료용 항생제 대체 물질 등 농림 히트상품 개발을 위한 산업화연구 지원
    - \* '07 생명공학분야 53과제 66억원 지원(농림기술개발사업)
  - 기술시장 개설 등을 통한 산업화 가능기술 발굴 및 거래촉진
    - \* 우수기술 설명회 개최(3회), 기술이전 설명회 개최(1회)
- 바이오디젤용 유채의 보급체계 구축을 위해 시범사업 추진
  - '07~'10년간 1,500ha(전남·전북·제주 각 500ha), 연간 26억원 지원
  - 바이오디젤용 유채의 국내 생산 확대를 위해 원료용 품종(고올레인산, 다수조숙성), 농기계 및 생력화 기술 연구개발 추진



## 4

# 농업인 소득 향상 및 경영안정 강화

## 가 직접지불제 확충

- 쌀소득보전직불금은 '06년산에 대해 80kg가마당 19,012원을 지급하여 수확기 평균 쌀값(147,715원)을 포함, 목표가격(170,083원)의 98% 수준(166,727원)을 보전
  - 수확기 쌀값 안정에 따라 공자기금 차입축소(5,000억원 → 400)
    - \* 총 직불금 지원실적 : ('05년산) 15,044억원 → ('06년산) 11,539
- 규모화 촉진 및 고령은퇴농의 생활안정을 위해 경영이양 직불제 개편안 마련(6월)
  - 대상농지 확대(진흥지역내 논 → 진흥지역내 모든 농지), 대상 연령 조정(63~69세 → 65~70세)
  - 지급단가 및 지급기간 조정(70세까지 최장8년 → 75세/10년)
    - 매도시(월 241천원/ha → 월 250), 임대시(2,977천원/ha, 1회 → 월 250)
-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및 경관보전 직불제 대상지역 확대
  - 조건불리지역직불 도서지역 지급대상을 도서개발촉진법상 도서에서 전 도서(제주도 포함)로 확대
    - 육지는 현행 지원조건(경지율 22%, 경사도 14%이상) 유지
    - \* 대상지역/예산규모 : ('06) 119천ha / 331억원 → ('07) 188 / 523
  - 경관보전직불은 대상면적과 대상품목을 확대
    - \* 대상품목 : ('06) 유채, 메밀, 코스모스, 해바라기, 목화, 아생화 → ('07) 연, 자운영 추가
    - \* 대상 면적 : ('06) 470ha(6억원) → ('07) 800ha(10억원)
  - 친환경농업 직불제 대상면적 지속 확대(27천ha → 43)

## 나 재해 등에 대비한 경영안정장치 확충

### □ 농지은행을 통한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지원대상 확대

- 지원요건 완화 : 연체금액 5천만원 이상→부채금액 5천만원 이상
- 경영위기 농가의 농지매입 확대 : ('06) 311ha/422억원 → ('07) 614/953
  - 농업인 호응도가 높아 당초 예산 566억원 외에 387억원을 추가 확보 지원
  - \* 9월말 현재, 376농가(542ha)에 대해 847억원 지원

### □ '07년 상환도래 예정인 상호금융저리대체자금(3,389억원)에 대해 상환기간 추가연장(1~6월 신청 접수 완료, 12월말까지 대출 실시)

- 원금 10%상환시 5년 분할상환(3%), 그 외는 3년 분할상환(5%)
  - \* 9월말 기준, 신청 접수된 1,505억원 중 1,351억원(89.8%) 지원

### □ 농작물재해보험 및 가축공제의 대상 품목·축종 확대

#### ○ 농작물재해보험 대상품목(7개→10개 품목) 및 대상재해 확대

- 대상 품목 : ('06) 사과·배·포도·복숭아·감·곶감·단감·뽕은감  
→ ('07) 밤·참다래·자두 추가
- 한해냉해설해 등 대다수 자연재해를 보상하는 종합위험방식(All-risks) 상품을 도입, 밤·참다래·자두 시범사업에 적용·판매중(9월)

#### ○ 가축공제 대상축종(9개→11개 축종) 및 공제범위 확대

- 대상 축종 : ('06) 소·돼지·말·닭·오리·꿩·메추리·사슴·칠면조  
→ ('07) 타조·거위 추가
- 가금류 설해피해(1월), 소 부루세라병 공제도입(4월) 등 공제범위 확대
- 축사공제로 30% 지원, 민영보험사의 공제사업 참여 허용(1월)

### □ 농작물·가축·농업시설 3개 재해보험을 「농업재해보험」으로 통합하기 위한 제도개선 T/F를 운영, 통합 추진방안 마련(12월)

## 다 안전영농기반 구축

### □ 재해대비 위주로 저수지, 양배수장 등 주요 수리시설 보수보강 및 상습침수지역 배수개선 추진

○ 저수지, 양배수장에 개보수사업 예산의 60%(2,280억원)를 집중

○ 아산만 배수갑문 확장 등 하구둑 구조개선 세부설계 착수(8월)

\* 아산만 배수갑문 120→296m, 서산A 농로수로 및 방수제 보강(6,456ha)

○ 홍수위보다 낮은 배수장 66개소 차수벽 설치(6월) 및 상습침수 농경지의 배수개선사업 추진(배수개선율 '06 : 71% → '07 : 73)

### □ 집중호우 등 이상기후 현상을 고려한 재해대책 수립

○ 정밀안전진단 대상을 확대(저수지, 양배수장 → 대형수로교, 터널) 하고 339개소의 취약시설 정밀안전진단 실시

○ 저수량 300만톤 이상 저수지 120개소 중 70개소의 비상대처 계획을 수립하고 비상대비 가상훈련(5~6월)을 실시

\* 저수지 303개소, 배수장 116개소 등 총 419개소 훈련

### □ 안전 농산물 생산을 위한 농업용수 수질관리계획 수립 추진

○ 최근 5년간 농업용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69개 저수지의 상류 오염원, 수질현황 등을 환경부와 공동조사(10월 완료예정)

○ 농림부, 환경부, 지자체 공동으로 농업용수 수질대책 마련(12월)

□ 축산, 원예 전문단지 등 새로운 생산기반조성 추진

○ 농업변화 전망에 따른 미래농업생산기반 조성방안 마련(4월)

- 조사료 생산단지, 원예산업 생산기반, 친환경적 시설정비, 유휴 시설 부지 활용방안 등

○ 간척지에 밭, 초지, 원예단지, 축산단지 등의 조성을 위한 연구 및 시험포 조성 착수(5월)

□ 「새만금 내부토지개발 기본구상」 확정 및 방조제 보강 공사 시행

○ 국토연구원의 연구결과, 관계부처 협의 및 국무회의를 거쳐 「새만금 내부토지개발 기본구상」 확정(4월)

- 농지로 우선 활용하되 장래수요에 따라 타용도 이용방안 모색
- 농지용(72%), 산업·관광·도시용(12%), 환경용(11%), 기반시설용(5%)
- \* '08년말까지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할 계획

○ 방조제 내측사면 녹지대조성 등을 위해 총사업비 조정(8월)

- 방조제 총사업비 : (당초) 24,435억원 → (조정) 26,571
- 방조제의 관광 상품화를 위해 내측 사면과 배수갑문 주변부지에 녹지대(344ha)와 휴게공간 조성

○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 추진

## 라 선진 농업금융지원 시스템 구축

- 농업정책자금 취급기관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관리기능 강화
  - 자금규모, 용자조건, 대출취급의 전문성, 수혜자의 범위 등을 고려하여 정책자금의 시중은행 개방 확대계획 확정(6월)
    - \* ('04) 촉발기금 → ('06) RPC운영자금, 농기계구입자금 → ('08) 창업농지원자금 등 5개 사업 추가 → ('10) 전면개방
    - \* 9월말 현재, 10개 시중은행에서 1,476억원의 농업정책자금 대출
  - 정책자금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정책자금관리단의 업무범위에 기존 농특회계 용자금 외에 정부의 이차보전자금 추가(11월)
  - 전문가, 농민단체 의견수렴, 연구용역 및 T/F운영 등을 통해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 정책자금 지원체계 개선방안 마련(11월)
    - \* 예시 : 사업타당성 위주의 정책자금 지원, 금융컨설팅 기능 강화 등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건전화 등 농업금융기반 확충
  - 농신보 건전성 제고를 위해 위탁보증비율 축소 등 제도를 개선하고 '07년 정부출연을 7,357억원('06 : 5,780억원)으로 확대
    - '08년까지 법정 보증배수(20배) 이내 유지 등 기금 정상화를 위해 적정소요의 정부출연예산 확보 추진
  - 대손보전기금 건전화를 위해 정부지원 225억원(해수부 65억원 포함) 및 농·수협 특별출연을 추진하고, 담보대출은 대손보전 대상에서 제외
    - 향후 5년간 정부 지원 후 금융기관에서 자율 운영토록 추진

## 마 생산자 자율적 수급조절 강화

- 생산자 자율적 수급체계 구축 지원을 위해 28개 농축산물(채소 16, 과실 6, 축산 5, 쌀) 관측정보 제공(1월부터 쌀 관측 실시)
- 소비자패널 전용 홈페이지 개설 및 관련자료 DB구축(5월)을 통해 소비자 구매정보를 농업인들에게 연중 제공
- 계약재배사업의 주체 및 계약방법을 다양화(1월)
  - 사업주체를 주산지 농협에서 가공·유통업체, 지자체로 확대하고 계약방식도 매취·수탁 중 농가가 자율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
    - \* 계약재배 물량(채소, 과실) : ('06) 908천톤(11.3%) → ('07) 939(11.9%)
- 원예자조금 조성품목 확대 및 제도 활성화
  - 인삼·우엉·육묘 3개 품목에 대한 신규 자조금단체 결성(4월)
    - \* 원예자조금 지원실적 : ('00) 2품목/0.6억원 → ('06) 21/55 → ('07) 24/65
  - 영세한 원예자조금의 규모화를 위해 기존 「당해년도 거출, 당해년도 소진」 원칙을 「적립 가능한 목적 기금」으로 개선(7월)
- 축산자조금제도 개선 및 조성품목 확대(5→7개 축종)
  - 의무자조금 대의원 총수 하향 조정 및 농가거출금 수납기관(도축장 등)에 대한 수수료율 상향 조정(6월)
    - \* 대의원 총수(명) : 젓소 150→130, 돼지 200→150, 육계·산란계 150→80

○ 오리(7월), 양륙(8월)에 대해 임의자조금 조성 지원

## 가 체계적인 농촌 지역개발

- 면소재지 및 배후중심마을을 대상으로 농촌마을종합개발 신규사업 대상지 40개 권역 기본계획 수립(누계 136개 권역)
  - '05년도 착수한 36개 권역에 대하여 중간평가를 실시하여 인센티브 및 페널티를 부여(11월)
- 불량주택 신·개축 지원 등 농촌주거환경 개선 추진
  - 신축·개량(5,660동) 지원 및 빈집(7,057동) 정비
  - 농촌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민간단체 활동 지원
    - 대학생의 농촌불량주택 고쳐주기 봉사활동 지원(전국 18개 마을)
- 유사한 농촌지역개발사업 통합 등 추진체계 정비
  - 통합지침을 마련,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과 농촌주택정비사업의 지원한도 및 추진체계를 통일
    - 지원한도 : ('06) 30, 40백만원/호 → ('07) 40
  - 유사사업을 통합하여 '08년부터 단일사업으로 예산에 반영
    - ('07)오지종합개발, 농촌정주기반확충사업 → ('08)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 ('07)신활력지원, 지역특화사업 → ('08)농촌활력증진사업
  - 이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법령정비 계획을 마련
    - 오지개발촉진법 폐지법안 및 농어촌정비법 개정안 등 국회제출(12월)



## 나 농촌 복지여건 개선 및 도농교류 촉진

### □ 건강·연금보험료, 학자금 지원 등을 통해 농업인 부담 완화

- 농업인 건강보험료를 소득 및 재산 수준에 따라 차등지원하는 방안을 마련, 관련법령 개정 요구(3월)

\* 보건복지부의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 개정안 차관회의 상정 예정(10.25)

- 연금보험료 지원 기준등급 상향 조정 : ('06) 13등급 → ('07) 14

\* 연금보험료 연간 1인당 최대 지원액 : ('06) 259천원 → ('07) 280

- 농업인 안전공제 보상수준 확대 : ('06) 2,500만원 → ('07) 3,500

- 농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무이자 융자지원 확대 : ('06) 25천명 → ('07) 26

### □ 농촌지역의 보육여건 개선과 취약농가 지원 확대

- 농업인 영유아양육비 및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액 인상

- 영유아양육비 : ('06) 정부보육료의 50%(133천원/월) → ('07) 70%(176)

- 일손돕기 : ('06) 정부보육료의 25%(84천원/월) → ('07) 35%(104)

- 만 6세 취학유예아동 및 준농어촌지역 거주 농업인 자녀 신규 지원

- 농작업·교통·재해사고시 농사일을 대행해 주는 '영농도우미' 및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가사도우미' 지원대상 확대

- 영농도우미 : ('06) 65세미만, 3ha미만 → ('07) 69세이하, 5ha 미만

- 가사도우미 : ('06) 65세이상 단독 농가 → ('07) 65세이상 농촌 고령 가구

## □ 농촌 이주여성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

- 방문교육도우미를 통한 한국어 교육, 생활상담 및 소그룹을 통한 영농교육, 문화예절 등 교육 지원(30개 시군, 예산 19억원)
  - 이주여성 1,766명에게 방문 교육도우미 299명 지원(9월 현재)
- 정착사례집 발간(5월) 및 부부교실·가족캠프·모범가정 모국 방문 지원(11월) 등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의 통합 지원

## □ 1사1촌 운동의 내실화 및 국민적 참여 분위기 조성

- 자매결연 사례를 조사(1~3월)하여 실적이 우수한 마을에 한하여 홍보 등 지원
- 성공모델 창출을 위해 15개 1사1촌 시범마을을 선정(5월) 하고 마을대표·관련 기업 및 도시민 11천명 교육 실시중

## □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10월 국회제출)

- 체험·휴양마을의 음식 제공, 공동숙박 등 특례 마련
- 초·중등학생들의 농촌체험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근거 마련 등

## □ 전원생활정보 제공 등으로 도시민 농촌유입 촉진

- 농어촌종합정보포털을 개선, 이용자 유형별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현장안내·상담도 실시
  - 전원생활 메뉴얼 제작(3월), 전원생활 엑스포(10.18~21) 등
- 지자체의 도시민 유치활동 활성화 지원(시·군당 3년간 10억원)

## 다 농촌자원의 산업화

### □ 농촌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한 유사사업 체계화방안 마련(6월)

- 신활력사업, 향토산업, 특화품목육성사업을 종합, 3개년('08~'10) 「농촌활력증진계획」 수립(12월)
  - 시군은 계량화된 연차별 사업목표 등을 제시하고, 중앙정부는 목표대비 성과 등을 평가하여 인센티브 부여
    - \* 시군 농촌활력증진계획 수립 지도·자문(10월), 계획서 심사(11~12월)
- 신활력사업 등 지역개발사업의 성과평가 및 홍보, 지자체의 계획수립 및 사업지원 등을 위한 추진계획 마련(6월)

### □ 균형위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제2기 신활력지역 선정(7월)

- 낙후도, 추진실적('05~'06) 및 사업계획('07) 등의 평가를 통해 70개 시군(시:12, 군:58)을 제2기 사업대상지역으로 선정
  - \* 제2기('08~'10) 신활력지역 지원사업 출범식 개최(9월, 충남 청양)

### □ 향토자원의 발굴, 산업화 및 '08년도 농공단지 계획 수립

- 향토산업육성 연구용역(5~11월)과 연계하여 향토자원 발굴 등 사업추진 효율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12월)
- 기 발굴된 49개('07년 19, '08년 30) 자원 외에 '09년도에 지원할 30개의 향토자원을 하반기에 발굴
  - 시군 향토자원조사(7~9월), 전문가 심의·평가, 확정(12월)
- 산자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08년도 농공단지 조성계획 확정(5월)
  - ('07) 신규 10개소, 준공 6 → ('08 계획) 신규 26, 준공 10

□ 지역농업클러스터사업의 성과를 평가하여 향후 추진방안 마련

- 20개 시범사업단 추진성과를 종합평가하여 우수 사업단에 인센티브 부여(21억원) 및 성공사례 공유
- 시범사업단 추진성과 및 문제점 분석을 통하여 「지역농업 클러스터 본사업 추진방안」 마련(7월)
  - H/W분야 지원조건 강화, 마케팅과 산업화 집중, 타 농림사업과 연계 등
  - \* '15년까지 지역클러스터 100개소를 육성, 지역 농업의 성장동력 창출

□ 도시민의 농촌체험마을 방문 촉진을 위한 체험기반 조성 및 다양한 홍보 추진

- 녹색농촌체험마을 신규조성(84개소) 및 농업·농촌 테마공원 세부설계 실시(4개소)
  - 도시민 방문 목표 : ('06) 1,344천명 → ('07) 1,544(15% 증가)
- 농촌체험마을 사업의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관리를 위해 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150마을, 100만원/월)
- 농촌체험활동 중 사고발생에 대비한 보험가입(65개, 100만원/년), 전문컨설팅이 필요한 마을에 전문가자문 지원(50개, 30만원/월)
- 도시민 방문객 유치를 위한 다양한 홍보 추진
  - '도농교류페스티벌'(5.3~5.6, 82천명 관람), 휴가캠페인(7~8월, 홍보책자 8만부 제작·배포), '내고향 잠재자원개발 콘테스트'(12월), '마을가꾸기 경진대회' 개최(12월) 등

## 라 | 쾌적한 농촌환경 조성

### □ 농촌경관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경관보전직불제 확대 시행

- 자연환경 등 지역특성을 고려한 지역개발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경관계획 시범 대상지 선정(4월)

\* 농촌마을종합개발 3·전원마을 1

- 농촌경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논, 밭, 숲, 주택 등 25개의 농촌 경관 구성요소별 관리 가이드라인 제정 추진('07~'08)

- 경관보전직불제 확대시행 및 '08년 지원조건 개선

- ('06) 유채, 메밀 등 6개 작물(470ha) → ('07) 연, 자운영 추가(800ha)
- 지원조건 : ('07) 최소 1ha, 8개 작목 → ('08) 0.5ha, 작목제한 폐지

- 농촌경관과 생태환경 유지·보전을 고려한 농업생산기반시설 설계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07~'08, 농어촌연구원)

### □ 폐농자재 수거 확대 및 토양개량 공급 등으로 농촌환경 보전

- 영농 시작기(3월)와 종료기(11월)를 「폐비닐 수거의 달」로 지정하여 폐비닐 66천톤 수거(상반기)

- 하반기에 34천톤 수거 계획

- 농기계 순회수리 봉사기간(3.19~4.18)을 이용한 폐농기계 2,074대 수거

- 산성화된 농경지에 살포가 편리하게 입상(알갱이)화 된 토양 개량제 공급확대

- 입상 토양개량제 지원 : ('06) 300천톤 → ('07) 337

### Ⅲ. 당면 현안사항

1. 한미 FTA 국내보완대책 추진 ..... 641
2. FTA 추진동향 및 대책 ..... 643
3. 미국산 쇠고기 검역 및 수입위생조건  
개정 추진상황 ..... 646
4. 수확기 쌀 수급대책 ..... 648
5. 농업용 면세유류 부정유통 방지대책 ..... 650
6. 쌀 소득보전 직불제 개선 추진상황 ..... 652
7. 태풍 “나리” 피해복구 추진상황 ..... 654

- 피해보전직불, 폐업지원 등 단기적 피해보전장치는 급격한 수입증가 가능성에 대비, 제도를 보완하여 지속 운용
  - 수입피해보전직불은 해당품목의 조수입이 수입증가로 인해 기준조수입(평년의 80%) 이하로 떨어졌을 때 발동
    - 보전비율은 기준조수입과 당년조수입 차액의 85% 적용(기존 80%)
      - \* 소득보전 취지 등을 고려, 가격이 아닌 조수입(생산액) 기준을 적용
  - 폐업자금은 고정투자가 이루어져 장기간 생산을 기대할 수 있는 품목 중 수입증가로 계속 재배·사육이 어려운 품목에 지원
    - 지원단가는 과도한 신청을 막기 위해 순수익의 3년분으로 조정
- 농업구조 개선을 통한 농업체질 강화
  - 주업농의 경영규모 확대 및 소득안정을 적극 지원(취미농 지원 배제)
    - 농가 등록제를 바탕으로, 농가단위 소득안정직불 도입 추진('10년 시범사업)
    - 농지은행을 통해 8년 이상 임대시 농지소재지 시·군 또는 연접 시·군 거주자에 한해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추진(세율 60%→9~36%)
  - 경영이양직불제를 실효성 있게 개편, 고령농 경영이양을 지원
    - 대상지역을 진흥지역 논·밭으로 확대하고 매도·임대를 동일단가(월25만원/ha)로 지원, 지급기한을 65~75세(최장 10년)로 확대
  - 식품산업 육성, 기술개발 등을 통해 고부가가치 산업화 도모

□ 품목별 특성에 따라 생산·가공·유통 단계별 취약부분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경쟁력 제고 추진

- 축산물은 수입산과 차별화해서 둔갑판매를 막고,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을 통해 생산성향상 및 품질고급화
  - '08년부터 쇠고기 이력추적제를 전지역으로 확대 실시
  - 송아지생산안정 기준가격 조정(130만원→155)에 이어 도축세 폐지 추진('08)
- 원예분야는 우수 브랜드경영체를 적극 육성하여 산지생산·유통 조직을 규모화·조직화하고 품질경쟁력을 제고
  - 감귤 대표브랜드 3~5개 육성, 생산시설 개·보수 지원 등
- 식량분야는 콩 브랜드경영체 20개소 육성 등 지원

□ 농촌을 농업의 다양한 산업공간과 국민 생활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농촌 지역개발 및 복지기반 확충

- 2단계('08~'10) 신활력사업 추진 및 '13까지 200개 향토자원 육성
  - \* 2단계 신활력사업 투융자 5,682억원, 낙후지역 70개 시·군 선정 지원
- 농촌관광활성화 등을 위해 도농교류촉진법 제정
  - 체험·휴양마을 사업자 지정, 음식 제공·숙박 특례, 전문인력 양성 등
- 관광레저형 산업 등에 농업인이 농지를 출자하는 방식으로 개발에 참여할 경우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추진
- 국토의 용도구분상 개발용 토지의 공급원인 「계획관리지역」의 경우 시·도지사의 농지전용허가 권한 확대(20ha→50ha)

□ 한미 FTA 국내보완대책을 실효성 있게 뒷받침하기 위해 향후, 10년('08~'17)간의 투융자지원계획 마련중

- 정부안을 조기에 확정하여 국회에 보고할 계획



## 가 한-EU FTA 협상

## □ 협상 추진경과

- 협상 출범선언('07.5.6) 이후 3차례 협상을 개최하였고, 제1차 및 제2차 협상은 양측 입장을 탐색하는 수준에서 진행
  - 양허안은 제2차 협상 이전에 교환
- 제3차 협상(9.17~21, 브뤼셀) 이후 핵심쟁점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있으며, 제4차 협상을 진행중(10.15~19, 서울)

## □ 분야별 논의 상황

## [농업]

- 우리는 상품협정문에 양자 세이프가드와는 별도로 농산물 세이프가드 설치를 주장하고 있으나 EU는 반대하는 입장
- 양허협상에서 우리는 민감 농산물은 예외적으로 취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EU측의 신축성 발휘가 필요하다고 강조
  - EU는 우리의 양허수준이 낮고, 돼지고기·낙농·닭고기·주류 등 주요 품목의 양허안이 한미 FTA에 비해 불리하다고 불만
  - 우리는 삼겹살, 닭다리 등에 EU가 상당한 경쟁력이 있어 민감하며, 한미 FTA 결과를 기준으로 협상할 수는 없다고 대응

## [원산지]

- 양측은 신선농산물의 경우 모든 생산과정이 당사국 내에서 이루어진 경우만 원산지를 인정하자는 입장
  - 다만, 가공농산물은 수출가능성 및 품목특성을 감안, 제3국산 재료를 사용한 경우도 원산지를 인정하는 방안을 협의

## [위생 및 검역(SPS)]

- EU는 WTO 협정문을 반복하는 수준이 아니라 동물복지 협력, 지역화인정 절차 마련 등과 같은 내용이 추가되기를 희망
- 검역현안 논의를 협상과 분리하자는 우리측 주장에 대해서는 합의

## □ 제4차 협상 대응방향

- 농산물 양허협상에서는 품목별로 상세한 입장을 교환하고 우리의 민감품목에 대한 신축성을 우선 반영하는데 주력
    - 주요 품목의 민감성 및 향후 양허 개선 가능성에 대해 기술적 차원의 의견을 교환
    - 설득력 있는 근거를 제시해 EU의 기대수준을 낮추는데 주력
  - 원산지 분야에서는 가공농산물의 수출가능성 확보에 노력
  - 지리적표시(GI) 분야는 각자의 보호대상인 지리적표시 대상 품목을 상호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중점 협의
- \* 위생·검역 협상은 개최되지 않고, 서비스 분야도 협정문 협의만 진행

## 나 한-캐나다 FTA 협상

- '05.7월 협상을 시작하여 현재까지 13차례(2차례 상품분야 실무 협상 포함)협상을 진행
  - 8차 협상부터 농업소분과를 설치하여 양허안을 집중 논의
    - \* 차기 협상은 11월 마지막주 서울에서 개최 예정
- 현재까지 농산물 1,451개 세번 중 1,419개 세번에 대하여 합의
  - 쌀(16개 세번)을 포함하여 유장·치즈 등 낙농품, 닭고기·오리고기 등 가금육, 인삼·고추·마늘·양파(신선) 등 민감한 192개 세번은 양허 제외키로 합의
  - 미합의 품목은 쇠고기, 돼지고기 등 축산물과 보리, 감자, 대두 등 우리측 주요 민감품목이 다수를 차지
    - 캐나다측은 한미 FTA와 유사한 수준의 양허 개선을 요구
- 쇠고기, 돼지고기, 보리, 대두 등 주요 민감품목의 양허 폭이 협상 타결의 주요 쟁점이 될 전망
  - 농산물 양허협상은 캐나다의 생산실적, 교역현황, 한국이 체결한 FTA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응할 계획
  - 우리 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요 품목에 대해서는 농산물 특별세이프가드 도입을 추진

### 3

## 미국산 쇠고기 검역 및 수입위생조건 개정 추진상황

### 가 검역 현황

-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검역재개 조치(8.27) 이후 검역대기 중이던 6,800톤에 대한 검역이 완료(9.18)
  - 검역결과 3건 51.4톤에서 갈비통뼈가 추가로 발견되어 해당 물량을 전량 불합격 조치하고 해당 작업장(2개소)의 수출 승인을 취소(9.4, 9.6, 9.12)
    - \* 당초 36개 미국 수출작업장 중 수출 선적중단 3개소, 승인취소 4개소
- 검역재개 이후 선적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검역결과 618상자(18.5톤) 중 1상자에서 등뼈가 발견되어 10.5일자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검역 및 수출선적을 중단
  - 등뼈가 검출된 수입물량 전체 반송·폐기 및 해당 수출 작업장 승인 취소
  - 검역대기 중인 물량은 새로운 위생조건 발효 이후 검역 실시
    - \* 미국산 쇠고기 14,645톤 합격, 292톤 불합격, 4,735톤 대기중(10.14일 현재)

### 나 수입위생조건 개정 추진 상황

- 미국은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광우병위험통제국가’ 판정 이후 이를 근거로 현행 수입위생조건 개정을 공식요청(5.25)

- 미국측의 수입위생조건 개정요청에 따라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독자적인 수입위험분석 절차를 추진
  - 1단계는 미국에 대한 OIE의 “광우병위험통제국” 평가를 인정
  - 2단계(가축위생설문서 송부, 5.31), 3단계(미국 답변서 제출, 6.13)
  - 4단계인 미국 가축위생실태 현지조사 실시(6.30~7.8일)
  - 5단계인 수입위생조건 개정여부 결정을 위해 그간 3차례의 가축방역협의회(7.25, 8.31, 10.5)와 전문가회의(7.19, 9.11, 9.21)를 개최
    - 생산자소비자 단체,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우리측 대응방안 마련
- 미국산 쇠고기 관련 1차 한미 전문가 협의회 개최(10.11~10.12)
  - 미측에게 우리측 위험평가 결과를 설명하고 등뼈 검출 등 현행 수입위생조건 위반사항에 대한 상황과 문제점을 지적
  - 나이 제한여부, SRM 범위 등 위생조건 개정방안에 대해 상호 의견을 개진하였으며, 구체적인 위생조건은 추후 논의기로 함
    - 미측은 OIE 기준에 부합되는 모든 연령, 모든 부위 수입허용 주장
    - 우리측은 위험평가 결과 등을 고려, OIE 기준보다 강한 조건 제시

## 다 | 향후 추진계획

- 미측과 새로운 위생조건 개정방안에 대한 논의를 추진하고, 개정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후속절차 진행
  - 입안예고 및 수입위생조건 개정·고시(7단계) 및 수출작업장

승인, 검역증명서 서식 협의(8단계)

## 4 수확기 쌀 수급대책

### 가 수급 및 가격 동향

□ 쌀 수급은 소비량 감소, 수입쌀 증가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생산량 감소와 가공용·주정용 공급 확대 등으로 양호한 상황

- '07양곡년도 말 국가전체 재고는 73만톤 수준이며,
  - '07년도 예상생산량 조사결과(9.15)를 감안할 경우 '08년도 재고는 70만톤 수준으로 전망

(단위 : 천톤)

	2005	2006	2007(P)	2008(P)
공급량(A)	6,042	5,838	5,763	5,498
(생산량)	(5,000)	(4,768)	(4,680)	(4,502)
수요량(B)	5,210	5,001	5,033	4,802
재고량(A-B)	832	837	730	696

\* '07 재고량은 대북지원물량 16만톤(수해복구 1, 식량차관 15)을 감안한 수치

□ 10.15일 현재 산지쌀값은 149,980원/80kg으로 전년대비 0.6% 낮으나, 수확기('06.10~12) 평균 보다는 1.3% 높은 수준

\* 산지 쌀값 : ('06.10.15) 150,836원/80kg → ('06.수확기) 148,075 → ('07.10.15) 149,980

□ 안정적인 수확기 시장여건 조성을 위해 사전대책 추진

- '07년산 공공비축미 매입방안을 조기에 확정·발표(7.18)
- 국내산 쌀 15만톤 대북지원 완료(9.24)
- 쌀 관측체계를 구축하여 농업인·RPC 등에 수급정보를 제공(5회) 하는 한편, 합동수급점검회의(4회)를 통해 사전대책을 강구

## 나 수확기 쌀 시장안정 대책

□ '07년산 공공비축미곡 43만톤 매입을 차질없이 추진중

○ 10.15일 현재 공공비축 매입실적 : 13천톤(전년대비 113% 수준)

\* 포대벼(32만톤) : 10.25. ~ 12.31, 산물벼(11만톤) : 9.20. ~ 11.10

□ 합동수급점검회의의 지속 운영 및 RPC의 벼 매입실적 점검 강화

○ RPC 벼 매입상황을 매일 점검하여 시장상황에 탄력적 대응

\* 벼 매입실적을 RPC경영평가 항목에 포함하여 수확기 매입 유도

○ 10.15일 현재 민간부문 매입실적 : 39만톤(전년대비 118% 수준)

\* 민간부문 매입계획은 186만톤 수준으로 전년보다 약 8만톤 증가한 수준

□ '07년도분 수입쌀 도입물량 266천톤(가공용 218, 시판용 48)은 수확기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도입·판매시기를 결정

\* '07년도분 시판용 도입('08.1 ~ 6월), 판매('08년 수확기 전까지)

□ 농업인의 연말 자금수요를 감안, 10월중 고정직불금 지급 추진

◇ 금년도 벼 작황, 산지쌀값, 민간수급상황 등을 점검한 결과 수확기 시장혼선 우려는 적으나,

○ 심리적 불안감 등으로 수확기 쌀시장이 비정상적으로 형성될 경우 쌀시장 안정을 위한 별도 대책을 추진



## 5

# 농업용 면세유류 부정유통 방지대책

## 가 현황 및 문제점

- 조세제한특례법에 따라 '86.3월부터 공급된 농업용 면세유류는 당초 '07.4월에서 '12년말까지 공급기한 연장(4.30)
  - 대상기종은 트랙터, 콤바인, 난방기 등 40개 기종이며, 공급유종은 휘발유, 경유, 실내등유, 중유, 윤활유, LPG 등 7종
  - 공급 대상농가는 1,258천호로 전체농가 1,273천호의 98.8%
  
- 면세유류 공급으로 연간 1조3천억원의 영농비 부담 경감(농가당 105만원)
  - 연간공급량 : ('05) 2,596천kl → ('06) 2,474 → ('07.9P) 1,653
  - 감면세액 : ('05) 12,437억원 → ('06) 13,119 → ('07.9P) 9,173
    - \* 면세유류 가격 : 일반 과세가격의 40%(휘발유) ~ 90%(중유)
  
- 농업용 면세유류 부정사용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상황
  - 농업인은 동일농기계 이중등록, 면세유류 구입권의 주유소 및 비농업인 매매 등 부정사용 사례가 빈발
    - \* 면세유류 구입권을 유류판매업소 등에 매매 또는 신고한 유종을 타유종으로 변경(경유 → 중유)하여 사용하는 사례 등
  - 일부 면세유류 취급 주유소는 공급확인서를 위·변조 및 복사하여 세금을 부당하게 환급받는 사례 발생

## 나 | 향후 추진계획

- 현지조사(3~6월) 및 관련기관·농업인 등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면세유류 부정유통 방지대책을 수립(9.6), 추진 중
  - 농업인에 대해서는 면세유류 공급대상 농기계 보유내역을 일제 신고토록 하고 농기계별 공급기한 일몰제(2~6년)를 도입하는 한편, 생산실적 미제출 또는 허위제출시 처벌을 강화
  - 유류판매업소에 대해서는 면세유류 취급점 지정제를 도입하고 관할지역내 구입을 의무화
  - 면세유류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배정관리위원회 운영 활성화 및 신고포상제도를 강화
    - 면세유류 사용실태 점검 및 부정사용자에 대한 처벌 강화
- \* 주요 개선 내용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반영(국회 재경위 계류중)
- 금년 중 면세유류 공급대상 농기계 파악 및 제도개선 홍보추진
  - 면세유류 공급대상 농기계 보유내역 일제신고 실시(10.1~10.31)
    - \* 대상기종 농기계 : 트랙터, 콤바인 및 난방기 등 40개 기종
  - 제도개선 내용에 대해 농업인·주유소 및 관련기관 등에 교육·홍보(9~12월)

## 가 현황 및 문제점

- '05년부터 쌀소득보전직불제를 도입·시행하고 있으나, 운용상 문제점을 노출
  - 지급상한 미설정으로 대규모 농가에 과도한 직불금이 지급되는 등 농가간의 형평성 문제 야기
    - 6ha 이상 경작자는 1.0%에 불과하나 직불금 수령액은 9.9% 수준
  - 신규진입 농업인을 제한하지 않아 쌀산업의 구조조정이 지연
    - 매년 직불금 지급대상 면적과 지급신청자가 증가하는 상황
      - \* 신청면적(신청자) : ('05)1,007천ha(1,033천명) → ('06)1,024(1,050) → ('07P)1,019(1,078)
  - 실경작자 확인시스템 미흡 등으로 일부 경작하지 않는 사실상 비농업인의 직불금 수령문제 발생
    - 마을대표의 확인서를 통해 실경작 여부를 확인 하는 경우 신뢰성이 떨어지고, 읍·면 담당자의 업무과다로 현장 확인 곤란
      - \* '05.11월부터 「부당신청신고센터」를 설치·운영중
  - 직불제 업무의 기관간 분산·운영에 따른 업무효율성 저하 등
- 직불제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쌀소득보전직불제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방안 마련 필요

## 나 추진경과 및 향후 계획

- 쌀 직불제 ‘제도개선 T/F 및 점검단’을 구성(‘07.6.26~)하여 전반적인 제도개선(안) 마련(8.8)
- 제도개선(안)에 대하여 내부토론, 전문가 협의를 거쳐 공청회 개최(9.10)
- 공청회 결과 및 여론동향을 토대로 주요 쟁점 사안에 대한 검토를 거쳐 최종(안) 확정(10.1)

### 〈 제도개선 최종(안) 주요내용 〉

- ◆ 쌀직불금을 지급받은 적이 있는 농업인 등과 농지로 직불금 지급대상자를 한정(후계농업인 등 예외 인정)
- ◆ 부부합산 농외소득이 연간 3,500만원 이상인 자는 지급 제외
- ◆ 면적기준으로 지급상한 설정(농업인 10ha, 법인 50ha까지 지급)
- ◆ 주소지 기준으로 연접 읍면 이내인 경우에만 실제 경작 인정
  - \* 관외경작의 경우 본인이 실경작 사실 소명
- ◆ AgriX(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내에 쌀직불제시스템을 통합 구축하고, 직불제 집행기관을 농관원으로 일원화 추진
- ◆ 부당신청시 등록제한 기간 강화(3년→5년) 및 신고포상제 도입

- 동 개선내용을 중심으로 쌀소득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 금년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
  - \* '05~'07년간 부당신청자에 대한 실태점검이 진행 중에 있으며, 점검결과 부당신청으로 최종 확인된 자에 대해서는 해당 시장·군수로 하여금 관련법령에 따라 회수 등 시정 조치 계획

## 가 피해 현황

□ 9.14~9.17일 기간 중 제11호 태풍 “나리”로 인해 농작물, 농업용 시설, 농경지, 가축 등 피해 발생

○ 농작물 : 39,575ha

- 시군별 : 전남 16,716ha, 제주 13,510, 경남 4,730, 전북 3,686 등
- 작물별 : 벼 24,859ha, 콩 3,207, 감자 2,478, 마늘 2,256, 당근 1,338 등

○ 농업용 시설

- 비닐하우스 파손 : 692동(제주 600, 전남 85, 경북 7)
- 수리시설 : 45개소(전남, 소류지 붕괴 및 배수로 유실 등)

○ 농경지 유실·매몰 : 579ha(제주 420, 전남 141, 경남 12, 경북 6)

○ 가축피해 : 83천수(제주 53천수, 전남 30천수, 경남 155)

- 오리 39천수, 닭 38천수, 양봉 3천군, 꿩 기타 3천수 등

○ 축산시설 : 35동(전남 18, 제주 17)

## 나 그동안 추진사항 및 향후 계획

□ 지원팀 현장파견, 응급복구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한 긴급조치 실시

○ 피해가 큰 지역(전남, 제주, 경남)의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해 초동대응팀 및 기술지원단 파견(9.17~21, 3개반 12명)

- 피해정밀조사를 위한 **중앙합동조사** 실시(9.27~10.5. 3개반. 5명)
  - **농작물 재해보험 산정**을 위한 과수낙과 **피해조사** 실시(10월말까지)
  - 수리시설피해 및 농경지 유실·매몰 지역에 **긴급복구반**(637명) 및 **복구업체**(243업체)를 투입하여 **응급복구** 실시
  - 쌀, 라면 등 **생필품**(20백만원) 및 응급복구용 **양수기**(220대) 등을 제주, 전남 등 피해가 큰 지역에 지원(농협)
  - 농협확보자재 우선 외상공급(농약 3.7천톤, 파이프 1.1천톤, 비닐 619톤)
    - 전남(농약 3,057톤, 비닐 470톤, 파이프 349톤), 제주(농약 354톤, 비닐 34톤, 파이프 481톤), 경남(농약 321톤, 비닐 115톤, 파이프 286톤)
  - 피해 지역에 대한 **농기계순회 수리봉사**(7개팀 14명, 9.19~10.30) 및 **가축방역을 위한 소독 추진**(6개팀 18명, 9.20~10.30)
- 피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특별경영자금 및 생계지원 등 **신속한 피해복구지원** 추진
- 피해농가에 대한 **특별경영자금**(300억원) 긴급지원(10월중)
    - 피해지역 농가로부터 신청을 받아 농가당 500~1,000만원 지원
    - \* 재원 : 농축산경영자금 재해대책비(금리 3%)
  - 피해농가에 대한 **직접복구비**와 **생계지원**, **고등학교 학자금 면제**, **영농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1~2년) 등 지원
- 제주, 고흥 등 피해가 큰 지역을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 지원중
-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해서는 지방비 부담액의 최고 80%까지 국고 추가 지원 등 다양한 지원 조치 추진
  - \* 특별재난지역 : 제주(9.20일), 고흥·화순·보성·완도(10.8)

## **IV. 2008년 예산 및 기금안 개요**

## &lt; 기본 방향 &gt;

- ◆ 농업·농촌종합대책과 삶의질 향상 5개년계획의 기본틀을 유지하면서 한미 FTA 보완대책에 따른 투자소요 반영
- 선택과 집중을 통해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



## &lt; 예산중점 편성방향 &gt;

- 농업·농촌종합대책 보완 및 맞춤형 농정체계 구축 뒷받침
  - 새로운 농정방향에 부응하는 농식품농업·농촌분야 투자확대
  - 전업농은 경영안정, 저소득 고령농은 복지지원 등 사회안전망 확충
- 한미 FTA 등 개방확대에 대응, 농업경쟁력 및 소득보전 지원
  - 직접피해보전, 품목별 경쟁력 강화, 농업체질강화 등 한미 FTA 보완대책 중점지원
  - 다양한 직불제의 추진 및 경영안정장치 마련
- 농업인 복지증진 및 농촌지역개발 지원
  - 농촌의 삶의질 향상을 위한 농촌복지기반 조성 지원
  - 농촌지역의 활력 증진 및 농촌지역개발 활성화

농업·농촌대책과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실천



## 2

## 2008년 농림 예산(기금)안 전체 모습

□ '08년 농림부 소관 총지출(예산 + 기금) 규모는 12조 5,267억원으로 '07년 대비 3.3% 증가(증4,059억원)

○ 예산 일반지출 : 7조 8,287억원('07년 대비 증1.4%, 1,046억원)

○ 기금 일반지출 : 4조 6,980억원('07년 대비 증6.9%, 3,013억원)

⇒ '07년 대비 자연감소 및 종료사업(4,485억원) 규모를 감안하면 7.0% 증가

□ 농업체질강화(25.1%), 농촌개발·복지증진(11.6%) 분야는 증가한 반면,

○ 소득보전·경영안정(△3.8%), 농업생산 기반조성(△7.0%)은 감소

□ 투융자 사업비는 90,729억원으로 '07년보다 3,711억원 증가(증4.3%)

(단위 : 억원)

구 분	'07 예산 (A)	'08 예산안 (B)	증△감 (B-A)	%
총지출(A+B)	121,208	125,267	4,059	3.3
□ 예산 일반지출(A)	77,241	78,287	1,046	1.4
□ 기금 일반지출(B)	43,967	46,980	3,013	6.9
○ 소득보전·경영안정	34,638	33,333	△1,305	△3.8
○ 농촌개발·복지증진	11,921	13,308	1,387	11.6
- 농촌지역개발	8,656	9,728	1,072	12.4
- 농업인복지증진	3,265	3,580	315	9.6
○ 농업체질강화	16,224	20,299	4,075	25.1
○ 양곡관리·농산물유통	34,860	36,035	1,175	3.4
- 양곡수급관리	13,430	13,581	151	1.1
- 농산물유통개선	21,430	22,454	1,024	4.8
○ 농업생산기반조성	20,320	18,898	△1,422	△7.0
- 재해예방사업	6,872	6,909	37	0.5
- 농업생산기반조성	13,448	11,989	△1,459	△10.8
○ 기본적 경비	3,245	3,394	149	4.6
◆ 투융자사업비	87,018	90,729	3,711	4.3
◆ 한미 FTA 관련사업	6,307	12,682	6,375	101.1

## 가 한미 FTA 보완대책 중점지원

## ① 한미 FTA 보완대책 관련 예산안

## ○ 한미 FTA 체결에 따른 보완대책 관련사업에 중점 지원

- 한미 FTA 보완대책 소요는 '07년 대비 6,375억원을 기존사업에서 증액 하거나 신규사업으로 반영

\* 기존사업 증액 : 4,108억원, 신규사업 반영 : 2,267억원

\* 예산사업 : 1,315억원, 기금사업 : 5,060억원

## ○ 분야별로는 직접피해보전(258.9%), 품목별 경쟁력 강화(90.3%), 농업체질강화(76.0%) 분야를 확대 반영

(단위 : 억원)

구 분	'07 예산 (A)	'08 예산안 (B)	증감	
			(B-A)	%
합 계	6,307	12,682	6,375	101.1
□ 예 산	2,522	3,837	1,315	52.1
□ 기 금	3,785	8,845	5,060	133.7
□ 분 야 별				
① 직접피해보전	613	2,200	1,587	258.9
② 품목별 경쟁력 강화	3,209	6,108	2,899	90.3
- 축산분야	1,444	3,541	2,097	145.2
- 원예분야	1,765	2,509	744	42.1
- 식량분야	-	58	58	순증
③ 농업체질강화	2,485	4,374	1,889	76.0
- 맞춤형농정추진	1,372	1,936	564	41.1
- 신성장 동력확충	1,113	2,438	1,325	119.0

※ FTA 확대에 따라 경쟁력 제고 대상의 보완, 생산자단체 및 지자체의 지원요건 보완 등 FTA 이행지원특별법 개정 추진중

## ② 분야별 주요내용

**① 직접피해 보전** : 【613억원 → 2,200 (↑258.9%)】

○ FTA로 인한 급격한 가격하락 등에 대비하여 소득보전 직불 및 폐업지원 확대

- 피해보전 대상품목을 확대(사전지정→사후지정)하고, 피해보전 비율을 상향조정(80%→85)

- FTA 이행으로 재배·사육을 계속하기 어려울 경우 폐업지원

\* 소득보전직불(10억원→1,200), 폐업지원(603억원→1,000)

**② 품목별 경쟁력 강화** : 【3,209억원 → 6,108 (↑90.3%)】

<축산분야> : 1,444억원 → 3,541 (↑145.2%)

○ 우수브랜드 육성 및 개량·사육기술 개선 등 고품질의 축산물 생산을 위한 경쟁력 강화 지원

\* 축사시설현대화(1,029억원), 브랜드육타운(32억원), 우량송아지생산 및 비육 시설지원(30), 송아지경매시장 현대화 지원(20), 가축개량사업 지원(252억원 →345), 유제품개발생산시설지원(12억원→147) 등

○ 시중 유통되는 수입산 축산물의 국내산 둔갑판매 방지, 안전성 강화 등을 통해 수입산과 차별화 지원

\* 쇠고기 이력추적 시스템(42억원→116), 축산물 HACCP 인증지원(20→31), 축산물 위생전문인력양성(4→27) 등

○ 한우 송아지 가격하락에 대비, 송아지생산 안정기준가격을 현재 130만원에서 155만원으로 상향 조정

\* 송아지생산안정사업(53억원→149)

○ 가축분뇨 처리시설 확충 및 자연순환농업 활성화 유도로 친환경 축산업 기반조성 지원

\* 축산분뇨처리시설지원(424억원→651), 조사료생산기반확충(324억원→414), 자연순환농업활성화(163억원→323)

<원예 및 식량분야> : 1,765억원 → 2,567 (↑45.4%)

○ 생산 우수단지를 중심으로 고품질 브랜드경영체 육성 및 생산 시설 현대화 지원 강화

\* 원예브랜드 육성(82억원→343), 고품질생산 시설현대화(367억원→624), 과실 브랜드육성(22억원→25), 밭브랜드 육성(38억원), 인삼생산·유통시설 현대화 (17억원), 고당도과실생산지원 (23억원) 등

○ 농산물 산자·운송·소비자 물류 인프라 구축 및 가공시설 설치 지원

\* 신선편이가공시설운영지원(100억원), 저온유통체계구축(30억원), 감귤부산물 건조처리시설지원(25억원), 고랭지감자광역유통지원(20억원) 등

**③ 농업체질 강화** : 【2,485억원 → 4,374 (↑76.0%)】

<맞춤형 농정추진> : 1,372억원 → 1,936 (↑41.1%)

○ 농가유형별 차별화된 맞춤형 농업정책 추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농업전문인력 육성 지원

\* 농업경영체등록(95억원), 농업경영컨설팅지원(44억원→51), 농업인교육훈련 (129억원→200), 후계농업인육성(268억원→280) 등

○ 규모화, 전업화 농가의 경영위험에 대비한 **경영안정장치 확충**

- \* 농작물재해보험(558억원→596), 농작물재해재보험(210억원→230), 경영이양 직접지불(113억원→365) 등

**<신성장 동력확충> : 1,113억원 → 2,438 (↑119.0%)**

○ 생명공학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기술농업 지원 및 농가의 신  
소득원 창출을 위한 **바이오기술 산업화 지원 강화**

- \* 농림기술개발(426억원→735), 농림바이오기술 산업화지원(80억원), 인수공통 전염병 대응기술개발(30억원) 등

○ 품종개발 강국 도약을 위한 **신품종 육성 및 우수품종 보급**  
등 **종자산업 육성 지원 확대**

- \* 종자산업 육성 지원(60억원→92), 우수품종 증식보급(24억원), 품종심사 및 재배시험(36억원→37), 원원종 및 원종생산(29억원→30) 등

○ **농식품산업 성장기반 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농산물**  
**수출 지원 강화**

- \* 시설원예 품질개선(522억원), 한식세계화지원(30억원), 광역식품산업클러스터 (15억원), 해외시장개척지원(137억원→186) 등

○ **친환경농업 활성화**를 위한 생산기반 조성 및 유통활성화 지원

- \* 친환경농산물 소비지유통 활성화(24억원), 친환경농산물 인증활성화(5억원),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245억원→330), 친환경 농업직불(175억원→263) 등

## 나 농업·농촌종합대책과 직불관련 소요 반영

- 농업·농촌종합대책 추진을 위한 농림부 소관 '08년 투융자 사업비(예산+기금)는 9조 729억원으로 '07년보다 4.3% 증가
  - 투융자 사업비 : ('07) 87,018억원 → ('08안) 90,729(증3,711억원)
- ※ '08년 119조원 투융자 확보액(농림부·농진청·산림청, 타부처 농특세)은 12.4조원으로 '08년 투융자 연부액 10.9조원 보다 1.5조원 초과확보
- '08년 직불예산안 규모는 2조 1,253억원으로 '07년 보다 213억원 감소(△1.0%)
  - 농림예산대비 직불예산비중 : ('07) 24.6% → ('08안) 24.2
  - \* 쌀값안정 추세로 쌀변동직불금이 전년보다 2,213억원 감소(9,501억원→7,288)

## 다 새로운 농정여건에 부응하는 신규사업 적극개발

◆ 예산(10개사업, 229억원)	◆ 기금(23개사업, 2,214억원)
○ 농업경영체등록(95)	○ 축사시설현대화(1,029)
○ 농촌대학생 기숙사설립(24)	○ 시설원예 품질개선(522)
○ 광역식품산업클러스터(15)	○ 신선편이가공시설현대화(100)
○ 긴급 병해충방제(30)	○ 농림바이오 기술산업화지원(80)
○ 친환경농산물인증활성화(5)	○ 밭브랜드육성(38)
○ 인수공통전염병 대응기술개발(30)	○ 한식세계화지원(30)
○ 화훼공판장 경매시설 확장(12)	○ 저온유통체계구축(30)
○ 동물보호 및 복지대책 등(18)	○ 브랜드육타운설립 등(385)

## V. 입법 추진계획

□ 정기국회 상정추진 법률안 : 제·개정 7건

법 률 명	주 요 제·개 정 내 용
1.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개정) * 농해수위 소위 계류	○ 위원회의 설치기한을 2008.1.1부터 2010.12.31까지 3년간 연장
2. 사료관리법(개정) * 국회제출('07.6.7)	○ 동물용 의약품 등의 제조업자 등에 대한 사료 제조업 등록과 관련한 규제 완화 ○ 사료제조업의 휴·폐업 등의 신고제도 마련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 * 국회제출('07.9.5)	○ 산림식물의 신제품보호제도 마련 ○ 공동연구를 통한 산림과학기술의 활성화 제도 마련
4. 식물방역법(개정) * 국회제출('07.10.2)	○ 전반적인 법 체계 정비 ○ 수출입 포장재 열처리업의 등록제도 마련
5. 도시와 농촌의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제정) * 국회제출('07.10.12)	○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지정제도 도입 ○ 농어촌 투자 촉진 및 농어촌 정주 희망 도시민들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6.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 * 국회제출예정('07.10)	○ FTA 기금조성 관련규정의 보완 ○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사업의 범위 확대 등 운영상 미비점 보완
7. 농업·농촌기본법 (개정) * 국회제출예정('07.10)	○ 적용범위를 식품산업과 농자재산업을 포함한 농업 관련산업으로 확대하기 위해 「농업·농촌 및 식품 산업기본법」으로 개정 추진 ○ 농업경영체 육성, 농가등록제 도입 등 농업정책과 시책의 주요 추진방향 제시



## 2006년 국정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1. 한미 FTA 체결시 농어업 피해가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농어업인 피해 보전 등 보완대책을 시급히 마련하여 추진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계부처 합동, 한미FTA 국내보완대책 방향 마련('07.4.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업인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소득기반을 확충하여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도모</li> </ul> </li> <li>□ 국회, 관계부처 협의와 다양한 경로를 통해 농업인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07.4~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임위(농해위, 4.4) 보고 및 청문회(농해위, 5.2), 공청회(FTA특위, 5.22) 실시</li> <li>◦ 현장 방문(3회), 품목별 토론회 등 농업인 단체 의견 수렴을 통한 대책 보완</li> <li>◦ 관계부처 협의회(2회)를 통해 대책 범위 등 협의</li> </ul> </li> <li>□ 경제정책조정회의 등을 거쳐 보완대책 발표(6.28) 및 FTA특위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입증가로 인한 피해 발생시 피해보전 지원, 피해 품목에 대한 경쟁력 강화 지원 등</li> </ul> </li> <li>□ 보완대책 재원계획 협의 및 관련법령 개정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획예산처와 대책재원 협의 중(8~9월) 및 FTA특별법 개정 등 추진</li> </ul> </li> </ul> <p>&lt;향후 추진계획&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완대책 세부추진과제 관리 등 후속조치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FTA 대책 재정지원계획 정부안 마련 및 FTA특별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10월)</li> </ul> </li> </ul>

<p>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p>	<p>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p>
<p>2. 한·미 FTA와 관련한 미국 측의 요구에 대응하여 관세 철폐 예외 품목 최대한 확보, 관세철폐기간 장기화, 특별세이프가드 도입, TRQ 관리방식유지 등 국내 농업 보호 장치 강구</p>	<p>□ 농산물 중 쌀을 포함한 약 10%에 대해 예외적 취급을 확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허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쌀 및 쌀 관련 16개 품목</li> </ul> </li> <li>○ 농산물세이프가드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쇠고기, 돼지고기, 고추, 마늘, 양파, 인삼, 참깨 등 30개 품목</li> </ul> </li> <li>○ 현행관세유지 및 수입쿼타(TRQ)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탈지분유/전지분유/우유, 천연꿀, 식용감자(신선), 식용대두(가공용), 오렌지(3~8월)</li> </ul> </li> <li>○ 계절관세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포도(5월~10월 15일), 오렌지(9월~2월), 칩용감자(5월~11월)</li> </ul> </li> <li>○ 세번 분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과(후지/기타품종), 배(동양배/기타품종), 감자(식용/가공용), 대두(식용/가공용)</li> </ul> </li> <li>○ 15년 이상 장기 관세철폐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쇠고기, 녹차, 감귤, 호두(미탈각) 등</li> </ul> </li> </ul>

<p>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p>	<p>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p>
<p>3. 농촌 여성결혼 이민자가 안정적으로 농촌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교육도우미 사업의 대상인원 및 각종 교육 확대, 모국 방문 비용지원방안 등의 지원계획을 종합적으로 마련할 것</p>	<p>□ 농촌 여성결혼 이민자 사업 계획 수립('06.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규모 : 30개 시군, 예산액 26억원 (국비 19, 지방비7)</li> </ul> <p>□ '07 주요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문교육도우미를 통한 한국어교육 생활 상담, 소그룹 교육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우미 300명, 대상 인원 1,800명</li> </ul> </li> <li>◦ 방문교육용 한국어 교재 발간(5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베트남어·영어·중국어·타갈로그어</li> </ul> </li> <li>◦ 부부교실, 가족캠프 및 우수가정 모국 방문·선진지 견학(11월)</li> <li>◦ 정착사례집(한국어·영어·베트남어판, 7월)</li> <li>◦ 농업관련 기관단체 추진협의회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국방문 지원(농협문화복지재단 200가구, 793명), 건강검진(농협), 부부교육(농업연수원), 결연(여성농업인단체)</li> </ul> </li> </ul> <p>&lt;향후 추진계획&gt;</p> <p>□ 농촌 여성결혼이민자가족 지원사업은 '08년부터 여성가족부로 통합 예정</p> <p>□ 농림부는 이주여성농업인을 여성농업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시책추진 협의 중</p>

<p>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p>	<p>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p>
<p>4. 농지전용 면적 증가와 휴경 농지 유희지의 발생원인, 농지보전부담금의 체납 해소 방안 등 농지보전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p>	<p>□ 우량농지를 최대한 보전하고 가급적 유희 농지 등이 전용되도록 유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지전용은 주로 도로·철도 등 공공시설과 농업용시설 등의 전용수요 확대가 주요 증가 원인</li> <li>* 농지전용 용도별 면적('06년) : 공공시설 5,593ha (34.5%), 농어업시설 2,442ha(15.1%), 주거시설 3,517ha(21.7%) 등</li> <li>◦ 휴경농지·유희지 등의 증가원인은 노동력 부족, 영농조건 불량 등으로 파악</li> </ul> <p>□ 「농지보전부담금 체납해소 대책」을 수립·추진('07.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자체의 농지보전부담금 체납해소 노력 촉구 (지자체 농정업무 평가 반영), 실적 부진 지자체 집중 점검, 관련예산 확보 촉구 등</li> </ul> <p>&lt;향후 추진계획&gt;</p> <p>□ 집단화된 농업진흥지역은 최대한 보전하고 신규 조성농지는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 관리 하는 등 농지보전시책을 차질없이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진행중인 새만금·서남해안간척사업 등 총11개 지구, 약 33천ha 수준의 신규 농지 확보 전망</li> </ul> <p>□ 관련 지자체 및 한국농촌공사와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농지보전부담금의 체납 해소대책 지속 추진</p>

<p>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p>	<p>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p>
<p>5. 경영희생지원농지매입사업의 예산 증액 및 자격요건 완화, 환매기간 연장, 환매 금액이 매각금액의 일정 한도 이상을 넘지 않도록 하는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p>	<p>□ '07예산은 전년 대비 126% 증액하였으며, 지원자격도 완화해서 적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산 : ('06) 422 → ('07) 953억원</li> <li>◦ 지원자격 완화 : ('06) 연체 50백만원 이상 농업인 → ('07) 부채 50백만원</li> </ul> <p>□ 환매기간(5년, 3년 연장가능)은 연구용역 결과와 농업인단체, 관계부처 의견 등을 종합 검토하여 결정</p> <p>□ 환매가격은 상승 또는 하락 소지가 있어 환매시점을 기준으로 한 감정평가 금액을 적용하도록 하였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업인, 관련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li> </ul> <p>&lt; 향후 추진계획 &gt;</p> <p>□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대하여 경영 위기 농가의 회생을 적극 지원</p>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6. 밀수농산물이 공매를 통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개선대책을 강구할 것</p>	<p>□ 처분기관이 물품 원가에 따라 이원화 되어 밀수농산물의 효율적인 관리에 지장 초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밀수 가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세관장이 통고처분으로 농림부장관에게 이관하여 공매 또는 폐기처분</li> <li>◦ 가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 처분권한이 세관에서 검찰로 이관되어 검사의 지시에 따라 공매 또는 폐기처분</li> </ul> <p>□ 밀수농산물 관리제도 개선('06.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밀수가액 2천만원 이상 농산물도 농림부로 이관,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밀수농산물 이관에 따른 업무처리규정 (농림부훈령)제정 및 압수물품 보관관리에 관한 시행세칙(관세청훈령) 개정</li> </ul> </li> <li>◦ 제도개선이후 밀수농산물 이관·처리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관받은 물량 : 748톤</li> <li>- 처리실적 : 폐기556톤, 공매142톤, 보관50톤</li> </ul> </li> </ul> <p>&lt;향후 추진계획&gt;</p> <p>□ 이관받은 밀수농산물은 국내수급상황과 생산농가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폐기 또는 공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산농가에 피해가 우려되는 밀수농산물에 대해서는 폐기처분을 확대하는 등 사후 관리 철저</li> </ul>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7. 중금속 오염 농경지 및 농산물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p>	<p>□ 44개 폐광산 중금속(납, 카드뮴) 기준 초과 농산물은 전량 수매·폐기하여 유통 차단('0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4개 폐광산 등 부적합 농경지에서 재배중인 10개 농산물의 안전성 조사 결과, 총 898건중 부적합 농산물은 107건으로 나타남</li> <li>- 부적합 농산물은 해당 지자체(시·군)에서 전량 수매·폐기하였음</li> </ul> <p>□ '07년 조사대상인 125개 폐광산 및 31개 공단 등 평야지역의 조사범위를 확정하고 지자체에 통보('07.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사대상 : 폐광산 8천건, 평야 2천건</li> <li>- 폐광지역은 농림·산자·환경부 합동으로 설정</li> <li>◦ 현재 농관원에서 조사대상지역의 10개 농산물에 대한 중금속 조사를 추진 중</li> </ul> <p>&lt;향후 추진계획&gt;</p> <p>□ '07년말까지 125개 폐광산 지역과 31개 공단 주변 등 평야지역을 대상으로 수확기에 농산물 중금속 조사 완료 예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적합 판정 농산물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에서 수매·폐기하여 유통 차단</li> <li>- 폐광산 지역의 부적합 필지는 산자부 광해 방지사업단에서 휴경보상·객토 등 광해 방지사업 추진</li> </ul>

<p>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p>	<p>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p>
<p>8. 소득보전직불금 부당지급 등의 방지와 임차인 보호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할 것</p>	<p>□ 기 수립된 부당지급 방지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 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을대표로부터 실경작 확인(농지이용 및 경작확인서)을 받아 직불금을 신청토록 조치</li> <li>◦ 등록증 교부 후 이의신청 기간을 부여(14일 이내)하여 실경작자의 권리구제</li> <li>◦ 행정기관 등에 『쌀소득보전직불제 부당 신청신고센터』를 설치 운영(05.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발현황 : 총 21건('07.4.30 현재)</li> <li>- 거짓·부당한 방법으로 신청한 직불금은 회수하고, 3년간 등록제한 조치</li> </ul> </li> <li>◦ 현지 실태점검 및 교육·홍보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히, '07년 부당신청이 의심되는 자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최종결과 집계 중</li> </ul> </li> </ul> <p>□ 부당지급 방지와 임차인보호 등을 위해 전반적인 제도개선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도개선 TF의 구성('07.6.27)·운영을 통해 제도개선안 마련</li> <li>◦ 제도개선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공청회 개최('07.9.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부합산 농외소득 연간 3,500만원 이상인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li> <li>- 부당신청시 등록제한 기간을 강화(3년→5년)하고, 신고포상제 도입 등</li> </ul> </li> </ul> <p>&lt;향후 추진계획&gt;</p> <p>□ 공청회 결과 및 수렴된 여론을 토대로 개선(안)을 확정(연내 추진)</p>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9. 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소비 확대, 유통·판매 및 홍보 마케팅 지원 등 종합적인 친환경농산물 대책을 마련할 것</p>	<p>□ ‘13년까지 친환경농산물 생산비중 10% 달성을 위해 제2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06~’10년)을 수립 추진 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친환경농산물 비중 : (’07) 7% → (’13) 10% (저농약제외)</li> </ul> <p>□ 소비·유통을 포함한 친환경농업 육성 개선대책 마련(’07.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확대</li> <li>◦ 생산비용 절감 및 토양지력 증진</li> <li>◦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년 저농약인증 폐지(유기, 무농약)</li> </ul> </li> <li>◦ 유통활성화 및 소비촉진 도모</li> </ul> <p>&lt;향후 추진계획&gt;</p> <p>□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조성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친환경농업지구조성 : (’07)40개소→(’08)60개소</li> <li>◦ 친환경농업직불금 지급기간 3년→5년 확대 추진</li> </ul> <p>□ 생산비용 절감 및 토양지력 증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기질비료 지원 : (’07)135만톤→(’08)140만톤</li> <li>◦ 천적해충방제 확대 : (’07)1천ha→(’08)2천ha</li> <li>◦ 민간인증기관 활성화지원(신규) : ’08년 5억원</li> </ul> <p>□ 친환경농산물 소비촉진 및 유통활성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친환경농산물 소비지매장 설치(신규) : ’08년 10개소, 24억원</li> <li>◦ 직거래 매취 및 유통활성화자금 지원 : (’07)250억원→(’08)460억원</li> <li>◦ ’12년까지 수도권지역에 친환경농산물 전용물류센터 1개소 건립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산처 예비타당성조사의회(’07, 8월)</li> </ul> </li> </ul>

<p>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p>	<p>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p>
<p>10. 미국산 쌀 유전자 변형 물질 검출과 관련하여 '06년도분 수입쌀에 대한 안전성 모니터링 등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할 것</p>	<p>□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유전자 변형 쌀 도입을 방지하기 위해 3단계 검사절차를 마련('06.12.26) 시행 중</p> <p>① 입찰유의서 명시 및 선적 전 수출국의 NON-GMO 확인서를 징구</p> <p>② 선적시 수출국의 확인서 내용과 현물 일치성점검을 위해 국제검정기관(OMIC) 검사 의무화</p> <p>③ 국내 도착 시 유전자 변형 농산물 여부 재확인을 위해 식약청 검사 의뢰</p> <p>□ 지금까지 도입한 쌀에 대한 식약청의 정밀검사 결과, 모두 NON-GMO로 확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5.8~'06.9 수입 쌀 및 그가공품 195점 검사</li> <li>- '06.9~'06.10 미국산 쌀 65점 검사</li> </ul> <p>&lt;향후 추진계획&gt;</p> <p>□ 향후 도입되는 수입쌀에 대해서도 현행 3단계 검사체제를 적용, 유전자변형 쌀이 도입되지 않도록 조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입량 : ('07) 266천톤 → ('08) 287 → ('14) 409</li> </ul>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11. 경영이양직불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책을 마련할 것</p>	<p>□ 한미 FTA에 따른 국내보완대책의 일환으로 경영이양직불제 보완방안 발표 ('07.6.2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농지는 진흥지역내 논에서 진흥지역내 모든 농지(논+밭)로 확대</li> <li>◦ 지급금액은 매도와 임대를 동일하게 ha당 월 250천원을 지급해 임대이양의 지급단가를 현행에 비해 인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대이양단가 : (현행) 2,977천원/ha/1회 →(개선) 월 250천원(연3,000천원)/ha/5 ~ 10년</li> </ul> </li> <li>◦ 대상연령은 63 ~ 69세에서 65 ~ 70세로 조정</li> <li>◦ 지급기간은 현행 70세까지 최장 8년에서 75세까지 최장 10년으로 연장</li> </ul> <p>□ 제도개편에 대비해 '08년 경영이양직불제 예산을 확대 반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7) 113억원 → ('08p) 365억원</li> </ul> <p>&lt;향후 추진계획&gt;</p> <p>□ 한미 FTA 협정 발효 후부터 개편된 제도 시행</p>

<p>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p>	<p>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p>
<p>12. 농기계 임대사업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p>	<p>□ 지속적인 임대사업 확대 및 사업단가 인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량 : ('06) 12 → ('07) 20개소</li> <li>◦ 단 가 : ('06) 300 → ('07) 500백만원</li> </ul> <p>□ 운영활성화를 위해 “임대사업 운영가이드” 제작·배포('06.10, 800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요조사 후 지역실정에 적합한 임대 농기계 구입(밭농사용 중심)</li> <li>◦ 유지관리, 대체농기계 구입 등을 위한 적정임대료 징수기준 등 제시</li> </ul> <p>□ 사업설명회·평가회 개최, 교육 등을 통해 '07년 사업지도 및 홍보강화</p> <p>&lt;향후 추진계획&gt;</p> <p>□ 농업·농촌투융자 계획 보완을 통해 사업 확대 및 단가인상 등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설치 목표 : 1,273개소('17년 까지)</li> <li>◦ 국고보조율 상향 추진 : 50% → 70%</li> <li>◦ 사업량 : ('08년) 30개소</li> <li>◦ 사업단가 : ('08년) 800백만원</li> </ul> <p>□ 평가회 개최 및 현지 확인 등을 통해 사업홍보 강화 및 제도개선</p>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13.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방지 및 피해농가에 대한 지원대책을 수립·추진할 것</p>	<p>□ 농림부, 환경부, 경찰청 합동으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 종합대책」 수립 추진('05.9.29~)</p> <p><b>[유해 야생조수 구제대책]</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7년 수확기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 3개월(8~10월), 49개 시·군</li> <li>◦ 포획허가제도 운영(연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해발생시 시·군의 허가를 통해 자력 또는 대리포획</li> </ul> </li> <li>◦ 순환 수렵장 확대 설정 운영('06.11~'07.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5) 15개 시·군→('06) 29</li> </ul> </li> </ul> <p><b>[피해 예방시설 설치 및 피해보상]</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해예방 시설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FTA기금 : ('06) 65 → ('07) 59</li> </ul> </li> <li>◦ 피해보상 지원(지자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해보상 지원 조례 제정</li> <li>·('05) 15개 시·군→('06) 49</li> <li>※ ('06)피해보상 : 15억원</li> </ul> </li> </ul> <p><b>&lt;향후 추진계획&g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 종합대책」 적극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군별 종합대책 추진실태 점검</li> </ul> </li> <li>◦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li> <li>◦ 지자체 예산확보 추진·권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렵장 사용료 재원을 피해예방시설 지원 확대 권고</li> </ul> </li> </ul>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14. 브랜드쌀의 품종 혼입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p>	<p>□ RPC의 계약재배, 품종통일 등으로 품종 혼입 방지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RPC와 농가간 계약재배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5) 32% → ('06) 37.6% → ('07P) 40</li> </ul> </li> </ul> <p>□ RPC별 대표브랜드 1개 품종에 대하여 농관원 및 농진청에서 무료 품종검정 실시(301개소)</p> <p>□ 브랜드쌀의 품종 및 품질 균일성 확보를 위해 「쌀 브랜드 육성메뉴얼」 보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자체 및 RPC 등에 배부(1월, 500부)</li> </ul> <p>□ 금년도 “시중유통 브랜드쌀 평가”시 품종 순도가 80% 미만인 경우 평가 제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7.1.1부터 품종순도 80%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품종명 표시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품종 순도 80% 미만인 경우 “일반계”로 표시</li> </ul> </li> </ul> <p>&lt;향후 추진계획&gt;</p> <p>□ 재배·저장과정의 품종혼입 방지대책 지속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 보급종 공급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6) 35%→ ('07) 42%→ ('08) 50%</li> <li>* 쌀 우수브랜드경영체에 보급종 우선 보급</li> </ul> </li> <li>◦ 건조·저장시설 지속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7) 110개소→ ('08) 110→ ('10) 180</li> </ul> </li> </ul> <p>□ 품종표시제 점검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자체·농관원 등 분기별 합동 점검</li> </ul>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16. 우리나라 인삼의 획기적인 수출대책, 검사제도 개선 및 수입삼의 부정유통 방지 등 종합적인 인삼 산업 보완대책을 수립하여 시행 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삼산업 발전종합대책 보완 시행('06.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삼 식별능력 제고, 검사품 홍보 강화 등 26개 과제</li> </ul> </li> <li>□ 고려인삼 수출확대를 위한 홍보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 상하이 동방 TV 협찬광고 : 900회</li> <li>◦ 베트남 VTV CF 광고 : 3개월(48회)</li> <li>◦ 고려인삼 효능 특집물 방영 : 중국, 홍콩, 대만</li> <li>◦ 일본항공(JAL) 기내지 광고 : 13개월</li> </ul> </li> <li>□ 검사제도 개선을 위해 『인삼산업법』 개정 ('07.7.13, 법률 제8505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체 검사업체 지정요건 강화, 검사원 교육 의무화, 검사기록서 보관의무화 등</li> </ul> </li> <li>□ 관계부처(검찰청, 국세청)와 협의하여 밀수 인삼 전량을 이관 받아 폐기처분('07.9 현재 37톤)</li> <li>□ 인삼의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수입추천시 지정된 사용 용도 준수여부 조사(2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반사례 없음</li> </ul> </li> </ul> <p>&lt;향후 추진계획&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삼 수출확대를 위하여 중국, 베트남 TV 광고 등 해외홍보를 지속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일본·베트남 관측행사(10~12월)</li> </ul> </li> <li>□ 인삼산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추진 (2008년 초 완료)</li> <li>□ 밀수인삼은 지속적으로 전량이관 받아 폐기처분</li> </ul>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17.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이 심각히 우려되고 있으므로 전수검사 실시, 이력추적제의 조속한 도입,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확대 등 불법유통 방지대책을 강구 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X선 장비 이용 미국산 쇠고기 전수검사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산 쇠고기 전수검사를 위한 이물검출기 설치 (12대, '07.02, 용인(22명)과 부산(6명) 인력 확대)</li> <li>◦ 수출작업장별로 최초 수입되는 쇠고기에 잔류 물질(55종)·병원성 미생물(3종) 검사 별도 실시</li> <li>◦ 뼈조각다이옥산갈비뼈등뼈 등 검출로 해당 쇠고기 전량 불합격조치(16건, 245.8톤)</li> <li>◦ 등뼈 발견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검역 및 수출선적 중단(10.5)</li> </ul> </li> <li>□ 수입육의 원산지단속 특별사법경찰 활동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속실적 : ('05) 848건 → ('06) 1,143</li> </ul> </li> <li>□ 쇠고기 이력추적관리 시범사업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4) 9개 브랜드 경영체 4만두 등록 → ('07.9) 78개 지역·브랜드 경영체, 69만두 등록</li> </ul> </li> <li>□ '07년부터 음식점의 식육 원산지표시제 의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00㎡이상 구이용 쇠고기를 조리·판매 하는 음식점 대상</li> <li>◦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농관원·식약청간 합동단속 MOU 체결</li> </ul> </li> </ul> <p>&lt;향후 추진계획&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음식점 식육 원산지 표시제 확대를 위한 관계 법령 개정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업소 : 면적 300㎡ → 100㎡이상</li> <li>◦ 대상품목 : 쇠고기, 쌀 → 돼지담고기, 김치 추가</li> </ul> </li> <li>□ '08년 쇠고기 이력추적제 본사업 실시 및 원산지 단속강화</li> </ul>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18. 소 부루세라병에 대한 종합적인 방역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p>	<p>□ '06.6월에 마련한 소부루세라병 방역보완 대책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무검사 대상 확대, 감염농장 색출 강화('06.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거래·도축되는 한·육우 암소(암송아지의 어미소 포함) 검사 및 증명서 휴대 의무화</li> <li>- 10두이상 사육농장(연2회), 다발지역(66개소) 일체검사 실시 등</li> </ul> </li> <li>※ 검사실적 : ('06) 197천호, 1,258천두 → ('07.8) 167천호, 829천두</li> <li>◦ 농가 예방체계 확립을 위해 살처분보상금 상한액 하향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세의 100% → ('06.11) 80% → ('07.4) 60%</li> </ul> </li> <li>◦ 살처분보상금 하향조정으로 인한 농가 소득하락을 보전하기 위해 가축공제로 '소부루세라병 공제상품' 도입('07.4)</li> <li>◦ 고위험직업군(축산농가 등)에 대한 인체 감염 실태조사 : '06.1 ~ '07.3, 6천명</li> </ul> <p>□ 감염농장 색출검사와 농가 예방체계 확립으로 한육우 농장 감염율은 큰폭 감소</p> <p>※ 감염율 : ('06) 2.20% → ('07.8) 1.00%</p> <p>&lt;향후 추진계획&gt;</p> <p>□ 단기간내 근절될 수 있도록 더욱 강도 높은 방역대책 추진('08.1월부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육소에 대한 검사 확대 : 모든 농가 1세 이상 한육우 암소 검사실시</li> <li>◦ 검사증명서 휴대 대상에 한·육우 수소 추가 등</li> </ul> <p>□ '08년도 살처분보상금 상한액 재조정 검토</p>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19. 축산용 항생제 과다 사용 등 동물용의약품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방안을 강구 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항생제 안전관리대책 심의위원회 구성('06.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의사처방제 도입, 사료의 위해요소분석 실시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항생제 사용 절감대책 심의</li> </ul> </li> <li>□ 동물약품 유통체계 확립을 위한 동물용 의약품도매상 관리실태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앙·지자체 합동 점검반 편성('06.10.18 ~ 25, 11.16 ~ 22), 관리약사의 면허 대여 여부 및 동물약품 관리실태 등 집중 단속</li> <li>◦ 주의를 요하는 동물용의약품 판매시, 기록·보존 의무화를 위해 「동물용의약품등취급 규칙」 개정('06.8.16)</li> </ul> </li> <li>□ “유해사료 범위와 기준 개정안” 입안예고 ('07.7.27 ~ 1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료혼합 가능 동물용약품 중 항생제 감소 추진(25종→18)</li> </ul> </li> <li>□ 식육중 잔류물질 및 항생제 내성균 검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잔류물질 검사 강화(고시개정, '07.4.11) : 근육위주의 검사에서 신장 등 내장검사를 포함</li> <li>◦ 항생제 내성균 검사계획 수립('07.7), '08년 실시</li> </ul> </li> </ul> <p>&lt;향후 추진계획&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물용 의약품 정기·수시 약사감시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약사감시 실효성 확보를 위해 동물약품 품질관리 실태 등을 수시 점검</li> </ul> </li> <li>□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의사처방, 농가의 자가치료 등으로 동물약품 용도를 구분하는 방안 검토</li> </ul> </li> <li>□ “유해사료 범위와 기준” 개정고시 완료</li> </ul>

<p>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p>	<p>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p>
<p>20. 정부가 승인하였으나 지역 반대가 심한 원주, 순천 마사회 장외발매소에 대해 승인을 철회하는 등의 경마산업 건전화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p>	<p>□ 원주, 순천 등 마사회 8개 장외발매소 신규 설치 승인 철회('06.11.30)</p> <p>* 마사회에서 8개 장외발매소 신규 설치 철회를 포함한 장외발매소 개설사업 변경 승인을 요청('06.11.25)</p> <p>□ 경실련 등 시민단체 대표가 포함된 경마 혁신위원회(위원장 차관보)를 구성, 경마혁신 대책 수립('07.3)</p> <p>◦ 장외발매소 설치·운영 개선, 구매상한선 준수 등 경마의 건전성 강화</p> <p>◦ 상금체제 개편, 국산마 자질 향상 등 경마 선진화 및 국제화 추진</p> <p>※ 농림부, 마사회 직원으로 구성된 경마혁신전담반 설치('06. 11. 8)</p>
<p>21. 축사 등 농업관련시설이 기반시설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조속히 보완대책을 강구하여 시행할 것</p>	<p>□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07.2.13) 의결 및 공포·시행('07.2.28부터 시행)</p> <p>◦ 축사 등 12개 분야 농업관련시설을 기반 시설부담금 부과제외 대상에 포함</p> <p>※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요구 ('06.8.11, 농림부→건교부)</p>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22.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등에 대응하여 수입 축산물 안전성 제고를 위하여 검사·검역 담당자의 객관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검역·검사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산 쇠고기에 대하여 전수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X-ray 이물검출기 확대 설치 (1대→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검역인력 추가 투입(용인 : 22명, 부산 : 6, '07.2)</li> </ul> </li> <li>□ 국무조정실에서 ‘식품·위생규제 합리화 방안’의 일환으로 관리수의사 제도 개선을 추진('07.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관리수의사 제도 개선은 정부조직관리와 관계가 있으므로 장기 검토과제로 결정('07.6)</li> </ul> </li> <li>□ 검역검사의 객관성·독립성 확보를 위해 검역시행장(관리인) 지도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59개 검역시행장 대상 지도점검</li> <li>◦ 위반행위 적발 5개 검역시행장 행정처분</li> </ul> </li> </ul> <p>&lt;향후 추진계획&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리수의사 제도 개선 지속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인력 추가확보 노력 및 대안 검토</li> </ul> </li> <li>□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따라 철저한 검역을 실시</li> </ul>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23. 가축분뇨 해양배출 규제와 관련하여 축산농가의 부담을 최소화 하는 방안 강구할 것</p>	<p>□ '12년 가축분뇨 해양배출 전면금지에 대비, 축산농가 부담 완화를 위해 '07년 관련 지원 예산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예산 확대('06년 341억원→'07년 424)</li> <li>- '07년 공동자원화시설 신규 5개소(횡성, 진천, 영광, 부안, 제주) 지원</li> <li>◦ 자연순환농업 활성화 사업자금 지원('07년 신규 : 160억원)</li> <li>- 퇴·액비를 생산, 경종과 연계하는 생산자 단체 등에 운영비 지원</li> </ul> <p>□ 가축분뇨 해양 배출 농가에 대한 컨설팅 실시('07. 4 ~ 12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양배출 농가 중 500농가를 선정하여 분뇨처리 방향을 지도</li> </ul> <p>&lt;향후 추진계획&gt;</p> <p>□ '11년까지 가축분뇨처리지원 사업비를 집중 지원하여 축산농가 부담 최소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8년부터 공동자원화시설 연 15개씩 설치 및 가축분뇨 퇴·액비 등 자원화 지원</li> <li>◦ ('07) 424억원 → ('08년 이후) 600억원 이상 집중 투자</li> </ul> <p>* '08년 예산안 : 664억원</p>

<p>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p>	<p>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p>
<p>24. 배수개선사업이 완료된 지구에 다시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배수 개선사업의 설계 기준 강화 등 근본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배수장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배수장 보강계획방안 마련('06.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배수장 817개소 중 기상변화 등으로 배수 능력이 부족한 224개소에 대해 배수장 증설 등 단계적으로 보강(3,203억원 추정)</li> </ul> </li> <li>□ 신규 배수개선지구는 최근 이상기후 등 기상변화 등을 반영, 설계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6)19지구→('07)16지구→('08안)20지구</li> </ul> </li> <li>□ 논에서의 발작물 재배 배수개선 설계기준 정립을 위한 시범사업을 시행중(4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0년 빈도에도 침수되지 않도록 논에서의 발작물 재배 배수개선 설계기준안 마련('05.11)</li> <li>* 현행 벼 기준 : 20년빈도 0.3m침수</li> <li>◦ 시범사업 2지구 설계완료('07년 착공), 2지구 설계중</li> </ul> </li> </ul> <p>&lt;향후 추진계획&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배수능력이 부족한 배수장은 배수개선사업으로 보강하고, 노후된 기계설비 등은 수리 시설 개보수사업으로 보강</li> <li>□ 발작물 재배 배수개선 시범사업 평가후 설계기준 확정 및 확대시행방안 강구</li> </ul>

<p>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p>	<p>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p>
<p>25. 생산기반정비사업 장기화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조기 완공 및 향후 예산 확보 등 근본대책을 마련할 것</p>	<p>□ 설계변경을 억제하고 효율적인 사업비 집행을 위하여 총사업비관리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총사업비관리규정 개정('06.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도지사는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인 지구의 설계변경 인가 전에 농림부장관과 사전 협의하도록 의무화</li> </ul> </li> <li>◦ 총사업비심의위원회에서 사업비 변경내용 심의('06년 4회, '07년 3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49개 지구 사업비 변경 심의를 거쳐 증액요구 중 30.1% 삭감(△1,678억원)</li> </ul> </li> <li>◦ 중규모용수개발사업 신규착수 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근 5년('02~'06) 평균 7.4지구 착공 → '07년 3지구 착공</li> </ul> </li> </ul> <p>&lt;향후 추진계획&gt;</p> <p>□ 신규착공을 억제하여 시행 중인 사업의 준공 위주로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8년에는 간척·대단위·중규모용수개발 사업 등의 신규 착공을 하지 않을 예정</li> <li>◦ '08년까지 서남해안 간척사업 7개 지구 중 4개 지구 준공, 중규모 용수개발사업 89개 지구 중 21개 지구 준공 예정</li> </ul> <p>□ 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계획 변경 기준 마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설계변경을 최소화하고, 계획 변경시 업무 혼선을 방지</li> </ul>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26. 소득이 많은 농어민에 대해 건강보험료 지원배제 또는 차등지원 등 개선책을 강구하여 추진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에 의뢰하여 정책연구용역 실시('06.6 ~ 9, 3개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어업인 국민건강보험료 경감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li> </ul> </li> <li>□ 연구용역결과를 바탕으로 농업인 단체, 보건복지부, 예산처 등과 협의하여 제도 개선방안 마련('07.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업인단체, 농촌경제연구원, 보건사회연구원 전문가 등 협의 3회('06.7·8·12)</li> <li>◦ 복지부, 예산처 협의 2회('06.11 ~ 12)</li> </ul> </li> <li>□ 복지부에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및 시행령 개정 요청('07.3.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득수준에 따라 경감지원율을 차등 또는 배제하는 근거 마련</li> </ul> </li> <li>□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 추진(보건복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차관회의 상정 예정('07.10.25)</li> </ul> </li> </ul> <p>&lt;향후 추진계획&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정법령 시행에 대비한 사전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림사업시행지침 개정(안)마련</li> <li>◦ 제도개선사항 홍보 등</li> </ul> </li> </ul>

<p>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p>	<p>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p>
<p>27. 공매참가자격 완화로 인해 수입쌀 부정유통 우려가 심각해지고 있으므로, 공매참가자격 강화를 비롯한 수입쌀 부정유통 방지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p>	<p>□ 공매참가자격은 부정유통방지와 수입쌀 시판에 따른 국내 쌀값 영향 최소화 등 두가지 측면을 고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판초기 공매참가자격의 엄격한 제한으로 공매부진을 초래</li> <li>◦ 이로 인한 낙찰가격 하락에 따른 국내 쌀값하락 등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매참가자격 보완</li> </ul> <p>□ 수입쌀의 부정유통 방지대책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관원에 원산지표시 특별 단속반(228개반, 456명)을 편성 운용('05년부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낙찰즉시 낙찰자 명단을 농관원에 통보 하고, 판매완료시까지 집중단속 실시</li> <li>* 적발 : ('06) 24건 → ('07.9) 19</li> </ul> </li> <li>◦ 육안식별이 어려운 중국산 쌀 품종 DNA 판별마커 개발('07, 75점)</li> <li>◦ 정부지원 RPC의 수입쌀 부정유통시 정책 자금지원 중단 등 조치('06.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회(1년), 2회(영구 배제)</li> <li>* 조치 : ('07) 1개소</li> </ul> </li> </ul> <p>&lt;향후 추진계획&gt;</p> <p>□ 수입쌀 부정유통 단속 지속 추진</p> <p>□ 음식점 쌀 원산지표시제도 시행준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건복지부와 협의, 음식점 쌀 표시대상 및 기준 등 마련('08.1.1 시행)</li> </ul>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28. 한우산업의 장기적·안정적 발전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p>	<p>□ 2022년까지의 한우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을 수립('07.4)하고 추진 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우고기 품질고급화를 위해 우수 브랜드 경영체를 육성하고 개량 및 사육기술 개선 - 1등급 출현율 증대, 비육기간 연장(24개월 → 30), 모든 수소 거세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브랜드점유율 : ('05)29.5%→('06)32.2→('22)70</li> <li>* 1등급출현율 : ('06)44.5% → ('07.8)49.2 → ('22)65</li> </ul> </li> <li>◦ 조사료 활용 확대('15년 240천ha 조성) 및 송아지 자가 생산비육 확대(30%→80) 추진</li> <li>◦ 음식점 식육 원산지 표시제 및 이력추적제 확대·강화, 한우 사육단계 HACCP 적용 및 도축장 HACCP 운용 수준 제고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력추적시스템 등록 : ('04) 4만두→('07.8) 67</li> </ul> </li> </ul> <p>□ 한우농가 경영 및 소득안정대책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조금활동강화 지원 : CF 등 소비촉진 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7년 한우자조금조성규모(정부지원) : 152억(50억)</li> </ul> </li> <li>◦ 송아지생산안정기준가격 상향조정('07.5.21) : ('06)130만원/두 → ('07)155</li> <li>◦ 가축공제 확대 : 소 부루세라병 공제 도입('07.4)</li> <li>◦ 한미 FTA 수입피해 직불보전, 폐업지원, 농가단위소득안정직불제에 한우 포함</li> </ul> <p>&lt;향후 추진계획&gt;</p> <p>□ 한우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과 경영 및 소득안정대책을 차질없이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브랜드 점유율 및 원산지 표시제 확대, 이력 추적제등을 통한 품질고급화·차별화 추진</li> <li>◦ 한우자조금 사업 및 송아지생산안정사업 등으로 한우농가 경영안정망 강화</li> </ul>

<p>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p>	<p>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p>
<p>29. 한미 FTA협상에 따른 농업피해가 심각하여, 국익 차원에서도 논란이 큰 만큼 협상 추진 과정에서 이해당사자인 농업계와의 협의를 더욱 강화해야 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회에 보고 및 협의과정에 내실을 기하고, 협상체결에 대해 신중을 기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상 단계별로 국회에 협상 계획 및 결과 보고 및 의견수렴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차('06.11)부터 8차까지 7회에 걸쳐 협상 계획 및 결과를 보고</li> </ul> </li> <li>□ 협상타결 이후 국회에 협상결과 및 보완 대책을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상결과를 국회 상임위 보고(4.4), 상임위 청문회 참여(5.2)</li> <li>◦ 한미 FTA 특위에 한·미 FTA 대책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업분야 대책 관련 공청회(5.22)</li> <li>- 한·미 FTA 국내대책 보고(6.28)</li> </ul> </li> <li>* 협상관련 자료 상임위 비공개 열람 : 6회</li> </ul> </li> <li>□ 농업인단체 등 이해 관계자 설명회 및 의견수렴 등을 통하여 공감대 형성에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설명회·간담회 개최, 대농업인 교육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6년 : 375회</li> <li>- 2007년 상반기: 309회</li> </ul> </li> </ul> </li> </ul>

<p>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p>	<p>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p>
<p>30. GMO표시제 등 한미간 위생검역 현안 논의와 관련하여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협상해 나갈 것</p>	<p>□ FTA협상과 위생검역 논의를 분리함으로써, 우리 위생검역 제도가 FTA 협상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조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생검역 현안에 대해서는 전문 기관간 기술적 협의를 통해 과학적 근거와 국제 기준을 토대로 논의</li> <li>◦ FTA협상의제가 아닌 별도의 전문가간 기술협의를 3차례 개최('06.11, '07.1, '07.3)</li> <li>◦ 기술협의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측은 국내 LMO법 발효를 앞둔 상황에서 미국측에게 국내 제도를 설명하고 이해를 제고</li> <li>- 미국측은 LMO표시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요구하였으며, 우리측은 LMO표시에 대하여 국내법에 이미 규정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음을 확인시켰음</li> </ul> </li> </ul>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31. GMO 표시대상 품목을 전품목으로 확대하고, 비의도적 혼입비율을 낮추는 방안 강구 및 유전자변형농산물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준비를 철저히 할 것</p>	<p><input type="checkbox"/> GMO표시대상 품목 확대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을 개정('07.6) 하여 GMO표시대상품목을 현행 4품목(콩, 콩나물, 옥수수, 감자)에서 식약청장이 고시한 품목으로 확대</li> <li>* 식약청 고시 품목('07.7) : 콩, 옥수수, 면화, 캐놀라, 사탕무(이를 싹틔워 재배한 콩나물, 새싹채소 포함)</li> </ul> <p><input type="checkbox"/> GMO 혼입 및 유통실태 유통실태조사 ('06 ~ '07, 2회)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575점(콩 1,978, 콩나물 588) 조사(미국산 콩 1건에 대한 과태료 부과, 0.1%포함)</li> </ul> <p>&lt;향후 추진계획&gt;</p> <p><input type="checkbox"/> 현행 비의도적 혼입비율 3%를 낮추는 방안 검토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검정기술의 정밀도,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의 구분관리능력 및 국제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li> <li>* 농림부 정책연구용역과제로 추진할 계획 ('08.3 ~ 9)</li> </ul> <p><input type="checkbox"/> '08년 1월 LMO법의 국내 시행에 대비, 통합고시안 제정 추진(산자부 주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합고시 제정(10월중)</li> </ul>

<p>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p>	<p>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p>
<p>32. 연구용역발주시 과도한 수의 계약 지양, 사전예고제 도입 등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p>	<p>□ '06년에 이미 정책연구사업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06.1)하여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를 추진 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책연구용역관리지침 및 정책연구용역심의 위원회 규정 제정·운용</li> <li>- 연구용역 과제 및 연구자 선정을 민간 전문가가 포함된 심의위원회에서 수행</li> <li>- 용역결과 사후 평가를 통해 불량 연구자의 연구용역 참여제한 등을 규정</li> </ul> <p>□ '07년 연구용역자 선정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추진 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만, i) 공개 입찰이 2회에 걸쳐 유찰될 경우, ii) FTA 협상 등 긴급한 당면 현안 과제 등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으로 추진</li> </ul> <p>□ 정책연구개발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도 개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7년 연구과제목록을 홈페이지에 공개 하여 공개경쟁을 촉진('07.1.31, 07.2.27)</li> <li>-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정보공개방에 연구 과제 게시 완료</li> </ul> <p>&lt;향후 조치계획&gt;</p> <p>□ 정책연구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사항을 차질없이 추진</p>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33. 국내 축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축산물 중금속 오염 실태를 조사하여 기준을 마련하고, 조제분유 등의 안전성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p>	<p>□ 폐광지역 축산물에 대한 유해 중금속 잔류조사 추진 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까지의 조사결과(8월말 현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폐광지역과 일반지역의 검출농도는 유사</li> <li>- 가축에 배합사료를 급여함에 따라 폐광으로 인한 중금속 오염이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li> </ul> </li> </ul> <p>□ 조제분유 위생관리 대책 추진('06.9.1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산현장조사('06.9.28 ~ 29) 및 개선권고('06.11.6)</li> <li>◦ 조제분유 이물 공개검사('06.10.11 ~ 12.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검사결과 탄화물과 극미량의 미세입자 검출</li> </ul> </li> <li>◦ 조제분유 사카자키균 규격기준 고시('07.1.9) : 불검출</li> <li>◦ 조제분유 HACCP 도입(기준고시, '07.5.30)</li> <li>◦ 조제분유 이물 및 탄화물 기준 고시('07.6.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물에 대한 정의 세분화(금속비금속) 및 인체 위해를 끼치는 이물에 대한 내용 추가</li> <li>- 조제분유 중 탄화물에 대한 규정 신설 : 7.5mg/100g</li> </ul> </li> <li>◦ 조제분유의 바실러스 세레우스균 규격기준 고시('07.10.5) : 100개 이하/g</li> </ul> <p>&lt;향후 추진계획&gt;</p> <p>□ 축산물 중 중금속 잔류기준 설정여부 검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폐광지역 중금속 검사 완료('07년말) 후 결과를 종합 분석, 필요시 잔류허용기준 설정 추진</li> </ul> <p>□ 조제분유 이물 등 관련 연구과제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제분유 및 축산물의 이물 표준검사법 확립 방안 연구 : 검역원 자체수행('06.11 ~ '08.11)</li> <li>◦ 조제분유중의 중금속 성분분석 및 이물의 특성에 관한 연구 : 조선대학교 연구수행('06.12 ~ '07.11)</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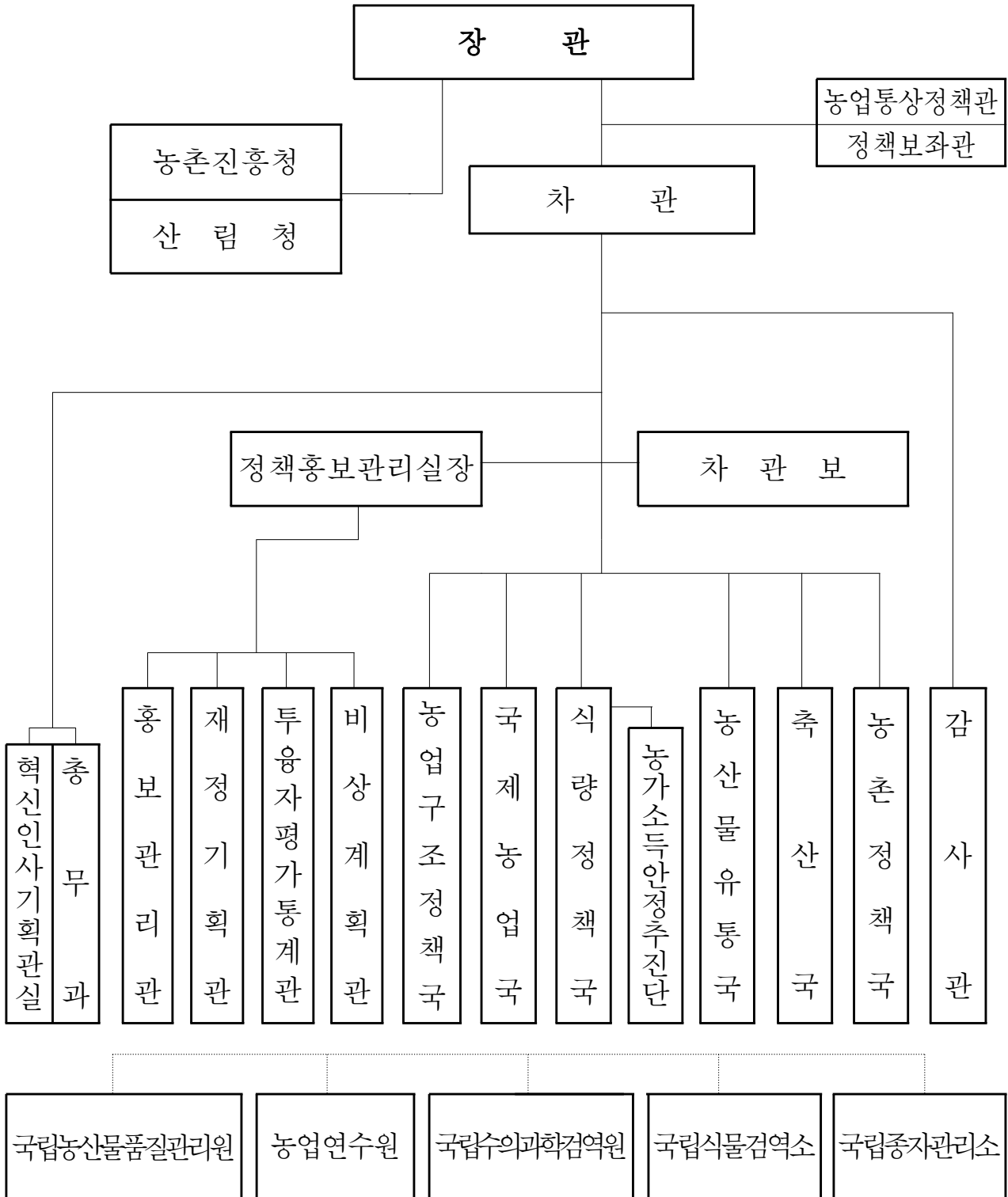


<p>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p>	<p>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p>
<p>34. 수입농산물의 저가신고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농수산물유통공사가 관세청과 업무협정을 체결하는 등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p>	<p>□ 수입 농산물의 저가신고 등 불법 수입 방지를 위한 업무협정(MOU) 체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MOU 체결 : 농림부관세청('07.7), 농수산물유통공사·관세청('06.12)</li> </ul> <p>&lt; 업무협정(MOU)체결 주요내용 &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입민감 품목에 대한 도입가능 가격을 조사·분석하여 관세청에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사대상 : 고추·마늘·양파 등 22개 품목, 68개 규격</li> <li>- 품목위장, 단량 허위기재 등 편법·불법수입 유형 및 사례 등을 조사 제공</li> </ul> </li> <li>◦ 수입 농수산물의 품목별·규격별 통관심사 기준가격 제공 등</li> </ul> <p>&lt;향후 추진계획&gt;</p> <p>□ 관세청 투명과세 시스템과 연계하여 수입 정보 공유 및 교류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입농수산물에 대한 수입정보 교류확대를 통해 부정수입 억제기능 강화</li> </ul>

< 별첨 2 >

## 일 반 현 황

가. 조직 : 1차관보, 1실, 6국, 5관, 1단, 44과 및 5소속기관



## 나. 주요기능

### < 본 부 >

실 국 별	주 요 기 능	
감 사 관	본부·소속기관 및 관련 단체 감사, 재산등록	
혁신인사기획관	정부혁신, 개인성과관리, 조직관리, 공무원 임용 및 교육	
총 무 과	서무·문서·경리·용도 및 국유재산 관리, 민원 총괄	
정책홍보관리실	홍보관리관	농림정책 및 주요현안 홍보, 대언론 관련업무
	재정기획관	농정시책 조정, 예결산 및 기금총괄, 국회업무, 법무행정
	투융자평가통계관	투융자심사 평가, 성과관리계획, 농업통계, 정보화
	비상계획관	비상대비 계획 수립 및 비상훈련
농업구조정책국	중장기 투융자계획 및 농업구조정책, 농지관리, 농업인력 육성, 협동조합 감독, 농업자금, 농촌여성정책	
국제농업국	국제 통상협력 및 농업협상, 농산물 수입 및 관세제도	
식량정책국	중장기 식량정책 및 식량 수급, 식량생산, 농생명산업 및 친환경농업 육성, 농업기자재 관리, 재해대책 총괄	
농산물유통국	농식품 유통 및 가격안정정책, 식품산업육성, 농식품 수출지원, 채소·과수·화훼 수급 관리	
축 산 국	중장기 축산정책 수립, 축산물 및 사료수급, 축산물 위생·안전성 관리, 가축방역 및 축산물 검역	
농촌정책국	중장기 농촌정책 수립, 농촌개발 및 농업인·농촌복지, 농업생산기반 정비·관리, 한해 및 수해대책	

### < 소속기관 >

기 관 별	주 요 업 무
농산물품질관리원	농산물 품질·원산지관리, 관련시험연구, 통계조사
농업연수원	농업공무원, 농업인 및 농업관련 종사자 교육
수의과학검역원	축산물 및 동물 검사검역, 가축방역 및 수의과학 연구
식물검역소	수출입 식물 검역·검사, 관련 시험·조사 및 연구
종자관리소	주요 농작물 종자관리 및 품종보호, 우량종자 보급

# 다. 정원(2007. 10월 현재)

(단위 : 명)

	계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일반직						별정직	연구직	기능직	
			소계	일반직			계약직 (정채보좌관)	연구직	계약직	소계	3급	4급	45급	5급	6~9급				
				일반	일반 별정	일반 연구직													
농림부	3,999	2	24	12	1	6	2	2	1	2,996	14	86	56	414	2,426	293	157	527	
본부	553	2	16	9	1	2	2	2		459	11	30	49	173	196	6	1	69	
관서계	3,446		8	3		4			1	2,537	3	56	7	241	2,230	287	156	458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2,167		1	1						1,649	1	13	1	147	1,487	266	2	249	
농업연수원	43		1	1						30		3	1	10	16			12	
국립수의 과학검역원	609		4			4				385	1	21	2	43	318	16	118	86	
국립식물 검역소	449		1	1						396	1	8	2	31	354		6	46	
국립종자 관리소	178		1						1	77		11	1	10	55	5	30	65	
농진청	2,147	1	22	-	-	5	1	12	4	258	3	21	9	50	175	18	1,314	534	
산림청	1,592	1	16	8	-	2	1	3	2	930	5	27	16	121	761	18	246	381	
총계	7,738	4	62	20	1	13	4	2	15	7	4,184	22	134	81	585	3,362	329	1,717	1,442

제278회 국회(국정감사)

농림수산식품위원회

# 주요 업무 보고

2008. 10. 6.



# 목 차

I. 주요 농수산물 수급안정대책 .....	711
II. 주요 업무 추진 상황 .....	719
1. 안전한 식품 공급 .....	721
2. 강한 농림수산업 육성 .....	726
3.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	730
4. 식품산업 육성 .....	733
5. 농어가 소득 및 경영 안정 .....	738
6. 농어촌 삶의 질 개선 .....	743
7. 지속가능한 자원관리 .....	748
III. 당면 현안 업무 .....	751
IV. 2009년 예산 및 기금 운용계획(안) .....	769
V. 입법추진계획 .....	775
<별첨1> '07 국정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	79
<별첨2> 일반현황 .....	836
<별첨3> 「Korea Food Expo 2008」 계획(요약) .....	9

## **I. 주요 농수산물 수급안정대책**

## 1

### 생산 여건

□ 봄철 잦은 저온현상으로 농작물 생육이 다소 부진하였으나, 6월 이후 기상상태가 좋아 **작물생육 및 결실이 양호**

\* 8월 이후(결실기) 기상 : 평년대비 강수량 82%, 일조시간 92%, 평균기온 +0.3℃

○ 서리·우박('08.4~5), 집중호우('08.7~8) 등 일부 재해가 발생하였으나, **피해규모는 미미**

\* 국고지원액 : ('05) 13건 / 8,066억원 → ('06) 10 / 1,966 → ('07) 11 / 609 → ('08.9) 16 / 132

□ 근해어업은 고유가로 인하여 **조업일수가 감소한** 반면, 연안어업과 유류소비가 적은 업종은 예년 수준 출어

○ 적정 수온이 유지되고 적조 피해가 없어 **양식 해조류와 양식어류는 생산량 증대 예상**

## 2

### 품목별 수급 전망

쌀 : 생산량은 전년에 비해 증가 전망, 벼수확 10% 수준 진행

○ 생산량은 전년(441만톤)보다 약 **20만톤** 정도 증가될 것으로 전망

- 벼 재배면적은 936천ha로 전년(950천ha)에 비해 1.5% 감소

- 단위면적당 수량은 평년작(483kg/10a) 수준을 웃돌 것으로 전망

\* 10a 당 생산량 : ('06) 493kg → ('07) 466 → ('08p) 490~500

○ 전체 쌀 재고량은 '08양곡연도말 기준 **66만톤** 수준 예상

\* '08년도 식량소비량(371만톤) 대비 18% 수준



## 채소류 : 무·배추는 생산량 증가, 고추는 생산량 감소 전망

○ 가을 무·배추는 재배면적 증가 및 생육 호조로 생산량(무 482천톤, 배추 1,253천톤)이 전년대비 10% 증가, 가격 약세 전망

\* 도매가격('08.9) : 무 378원/kg(평년대비  $\Delta$ 41%, 전년대비  $\Delta$ 45)  
배추 387원/kg(평년대비  $\Delta$ 38%, 전년대비  $\Delta$ 57)

○ 고추는 재배면적 감소(49천ha,  $\Delta$ 11%)와 생육 부진으로 생산량(135천톤)이 전년대비 20% 감소, 가격 강세 전망

\* 도매가격('08.9) : 5,785원/600g(평년대비 9%, 전년대비 31 상승)

## 과실류 : 배 생산량은 증가, 사과·감귤 생산량은 감소 예상

○ 사과는 재배면적 증가(3.3%)에도 일부 주산지의 서리 및 냉해 피해로 생산량은 전년대비 3% 감소 전망

- 추석 전후 가격은 전년보다 낮게 형성되었으나, 10월 이후 본격 출하되는 만생종(후지) 출하물량 감소로 가격 회복 전망

\* 도매가격(15kg) : ('05.9) 39.8천원  $\rightarrow$  ('06.9) 39.5  $\rightarrow$  ('07.9) 42.9  $\rightarrow$  ('08.9) 30.6

○ 배는 재배면적 감소(18천ha,  $\Delta$ 8%)에도 기상호조에 따른 단수 증가로 생산량은 전년대비 2.8% 증가 전망

- 생산 증가와 추석 소비부진으로 공급 대기물량이 많아 가격 약세 전망

\* 도매가격(15kg) : ('05.9) 28.3천원  $\rightarrow$  ('06.9) 28.6  $\rightarrow$  ('07.9) 28.8  $\rightarrow$  ('08.9) 24.5

○ 감귤은 재배면적 감소(18천ha,  $\Delta$ 3.2%), 착과율 저조( $\Delta$ 34.4%)로 생산량이 전년대비 28% 감소, 가격 강세 전망

## 축산물 : 소 사육 증가세 둔화, 돼지·닭은 사육 감소 전망

### ○ 한육우 사육두수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에 따른 출하량 증가 등으로 '08.6월 이후 증가세 둔화

- 산지가격은 추석을 기점으로 전환된 상승세가 당분간 유지 전망

\* 사육두수 : ('06) 2,020천두 → ('07) 2,201 → ('08.6) 2,448 → ('08.9) 2,470

\* 산지암소(600kg) : ('06) 5,291천원 → ('07) 4,965 → ('08.8) 4,055 → ('08.9) 4,170

\* 산지수소(600kg) : ('06) 4,552천원 → ('07) 4,751 → ('08.8) 3,442 → ('08.9) 3,562

### ○ 돼지 사육두수는 배합사료 가격 인상, 모돈수 감소 추세를 고려할 경우 감소 추세 전망

- 산지가격은 추석 이후 하락이 보편적이거나, 금년도는 출하물량 감소 등으로 큰 폭의 하락 없이 안정될 전망

\* 사육두수 : ('06) 9,382천두 → ('07) 9,606 → ('08.6) 9,153 → ('08.9) 9,284

\* 돼지(100kg) : ('06) 248천원 → ('07) 197 → ('08.8) 309 → ('08.9) 308

### ○ 닭 사육수수는 AI 영향으로 전년대비 감소 추세, 육계가격은 여름 성수기 이후 수요 감소 등으로 약세 전망

\* 육계 사육수수 : ('06) 5,538만수 → ('07.9) 5,995 → ('07.12) 5,623 → ('08.9) 5,555

\* 육계(1kg) : ('06) 1,195원 → ('07) 1,118 → ('08.8) 1,924 → ('08.9) 1,375

### ○ 우유 생산은 생산 조절제 영향으로 전년보다 감소, 소비는 우유가격 인상 등으로 소폭 감소 전망

\* 원유 생산/소비량 : ('07) 2,188/1,875천톤 → ('08p) 2,168/1,860 (△0.9%/△0.8)

\* 분유 재고량 : ('05) 9.5천톤 → ('06) 4.4 → ('07) 8.8 → ('08p) 9.5

## 해조류 : 미역은 생산 증가, 김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

- 미역 시설량은 44만줄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2.1% 증)이며, 최근 전복 먹이용 수요가 많아 가격은 상승 예상
  - \* 도매가격(kg) : ('06.9) 6,780원 → ('07.9) 7,100 → ('08.9) 7,200
- 김 시설량과 생산량 모두 전년과 비슷한 수준 전망
  - \* 도매가격(속) : ('06.9) 3,229원 → ('07.9) 3,560 → ('08.9) 3,546

## 어 류 : 어선 어획은 소폭 감소, 양식 생산은 증가 전망

- 멸치·전갱이·꽁치는 호황(20~40% 증), 갈치·고등어는 저조(△20~40%)
  - 고등어는 성어기인 9월 이후 서해 중심으로 어획량 회복 추세
- 넙치는 하반기 수출 및 소비 증가가 예상되나, 양식량이 증가하여 산지가격은 하락 전망
  - \* 500g 이상 양성물량 : ('06.9) 1,930만 마리 → ('07.9) 2,589 → ('08.9) 2,941
  - \* 산지가격(kg) : ('06.9) 12,620원 → ('07.9) 10,119 → ('08.9) 8,186
- 조피볼락은 성어물량 감소로 가격 상승 예상
  - \* 400g 이상 양성물량 : ('06.9) 4,800만 마리 → ('07.9) 2,960 → ('08.9) 1,730
  - \* 500g기준 산지가격(kg) : ('06.9) 8,050원 → ('07.9) 7,000 → ('08.9) 8,275

## 패 류 : 전복은 생산 증가, 굴은 예년 수준

- 전복은 전년보다 생산량이 31% 증가(5,700톤)하여 가격 하락 전망
  - \* 출하량 : ('06.9) 469톤 → ('07.9) 572 → ('08.9) 910
  - \* 산지가격(kg, 10마리) : ('06.9) 46천원 → ('07.9) 42 → ('08.9) 36
- 굴은 신규 시설량이 전년과 비슷하나, 월하연\*(越夏延) 감소로 총 시설량은 전년대비 5% 감소 예상
  - \* 산란, 비만 등의 목적으로 4월 이후에도 채취하지 않고 굴을 더 키우는 시설

## 2

## 추진현황 및 대책

◇ **쌀, 배, 무·배추, 납치** 등 생산량 증가 품목의 수급안정을 위해 정부매입, 산지폐기 및 소비 촉진 등 추진

**쌀** : 농협·민간 등의 수확기 벼 매입량을 늘리고, 정부의 공공 비축 매입도 조기 추진(당면현안분야에서 별도 보고)

**배** : 산지폐기로 과잉물량 중 일부를 시장에서 격리하고, 소비 촉진을 위한 홍보·관측 활동 실시

- 농협 등을 중심으로 유통협약을 체결하고 1만톤(초과 생산 예상량 3.8만톤의 26.3%)을 10월부터 폐기
- 공중파의 과학·예능 프로그램, 광고 등을 활용한 기능성 홍보 및 농협 판매장 특판 행사 등 실시

**고랭지 무·배추** : 9.29~10.20까지 33천톤 산지 폐기 추진

- 오이는 1차(5.26~6.7, 644톤)에 이어 2차(9.18~30, 150) 산지 폐기 중 가격이 대폭 올라 폐기 중단(9.17, 4,200원/10kg → 9.30, 17,570)

\* 최저보장가격 : 무 500천원/10a , 배추 535천원/10a

**납치** : “10월의 수산물”로 선정, 공중파(체험 삶의 현장 등), 지하철 액자광고 등을 통한 소비 촉진 홍보 실시

\* 완도군 생산자단체를 중심으로 현지에 직거래장터 설치·운영 지원(5억원)

※ 과잉생산 및 소비위축 품목을 매입하여 사회복지시설 등에 보급하는 방안 검토

## Ⅱ. 주요 업무 추진 상황

## 가 농식품 안전관리 강화

◇ 「농장에서 식탁까지」, 「국경에서 가정까지」 선진국 수준의 농식품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안전한 먹을거리를 공급

□ 선진 안전관리 제도 확대 및 안전성 조사 강화 등을 통한 생산 단계부터 사전 예방적 관리체계 구축

## ○ (농산물)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 확대 및 안전성 조사 강화

★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생산단계부터 수확 후 포장단계까지 토양 수질 등 농업환경과 위해요소(농약, 중금속, 미생물 등)를 관리하는 제도

- GAP 대상품목을 100개에서 105개로 확대('08.9)

- 농산물 안전성 조사를 통해 부적합품은 폐기 등 유통 차단

\* '08년 상반기 부적합 발생/정밀조사건수 : 612건/15,655건(3.9%)

## ○ (축산물) 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HACCP)\* 적용 확대, 항생제 사용감축 및 적정 사육기준 강화

★ 축산물의 위생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해요소를 사전에 과학적·체계적으로 예방·관리하는 위생관리 제도

- 동물성단백질(어분 제외)의 반추동물 사료원료 금지('08.9) 및 사료 사용 제한물질에 멜라민을 추가('08.10)

- 축산물 HACCP 적용업체('08.8 : 1,204개) 확대

\* 축산물 HACCP 적용 생산비중 : ('08 전망) 60% → ('12) 80

○ (수산물) 생산해역 위생등급 설정·관리, 생산단계 안전성 조사 강화

- 전국 주요 양식 가능해역을 60개로 구분, 해역별 위생등급 설정
- 항생물질 등 35개 물질에 대한 안전성 조사 확대('08 : 6,500건 → '12 : 8,500)

□ 이력추적제 확대 등을 통한 유통단계의 안전관리 강화

○ 도매시장내 안전성 검사를 의무화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09.1.1부터 시행

○ 수입산 쇠고기 유통경로 추적에 필요한 거래 기록을 의무화

('08.12)하고, 유통경로 추적 시스템을 도입('10.12까지)

- 국내산 쇠고기 이력추적제도 전면 시행('09.6), 귀표 미부착 소 도축 금지('09.7)

○ 넙치, 김, 미역 등 14개 어종 이력추적제도 실시('08.8)

□ 민간 참여·감시 기능 강화 등을 통한 소비자 신뢰 제고

- 소비자의 식품안전 관련 위원회(농식품안전자문단·축산물위생심의회), 도축장 평가 및 원산지 표시 단속활동 등에 참여 확대

□ 농식품부내 농축수산 안전관련 기능 및 조직을 개편하여 식품안전관리의 효율성 제고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국립식물검역원,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의 단일기관 통합

\* 농식품부내 '농축수산물안전T/F' 구성·운영('08.9.24 ~ )

## 나 식품안전 관련 정보 제공 확대

◇ 원산지·GMO 표시제 등 식품안전과 관련된 정보 제공을 강화하여 소비자의 불안감을 해소

□ 육류의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를 모든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및 집단급식소까지 확대('08.7.8)

○ 농관원·식약청·지자체 및 명예감시원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785개반 5,753명), 음식점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실시

\* '08.9말 현재 : 396,788개소(61%) 지도·점검, 406개소 적발(허위표시 293, 미표시 113)

○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조기정착을 위한 제도 및 홍보 강화

- 모든 음식점을 대상으로 원산지 단속을 강화하되, 33㎡(10평) 미만 영세 음식점의 미표시에 대해서는 12.21까지 지속적인 제도

- 원산지 표시제 정착 토론회 개최(10.8) 및 소비자 단체 중심의 전국 홍보 캠페인(9~12월) 실시

□ 유전자변형농산물(GMO)\*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 등을 통해 소비자 불안감 해소

\* 생물의 유전자 중 유용한 유전자만을 취하여 다른 생물체의 유전자와 결합시키는 등 현대 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하여 재배·육성된 농·축·수산물

○ 인터넷 홍보, 세미나 개최('08.10) 등을 통한 과학적·객관적 정보 전달

- 포털사이트에 GMO 블로그 운영 및 농식품부 GMO 정보와 연계

○ 비의도적 혼입을 조정 등 GMO 표시제 개선방안 연구 추진('08.9~12)

\* 표시면제 혼입허용 비율 : (한국) 3%, (EU) 0.9, (일본·대만) 5



## 다 가축질병 발생 최소화 및 방역강화

- ◇ 철저한 방역을 통해 가축질병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최소화
  - 신속·맞춤형 방역체계 구축 및 국경 검역 강화

### □ AI, 브루셀라 등 가축질병 발생에 대응, 신속한 방역 실시

- 지난 4.1~5.12간 총 33건의 AI 발생에 대응하여 매몰처분, 이동제한, 재래시장 가금류 판매제한 등 조치
  - \* 유엔(UN)은 언론브리핑에서 우리나라를 AI 대처 모범국가로 예시('08.6.17)
- 7월까지 1,008건 소 브루셀라병 발병으로 4,954두 매몰조치
  - \* 브루셀라병 보상금 상향 조정('08.7) : (당초) 시가의 60% → (조정) 80
- 돼지열병(7건) 발병, 발생농장 전수검사 후 양성축 매몰처분

### □ 가축전염병에 따라 차별화된 맞춤형 방역체제 구축·시행

- AI는 특별방역(11~2월)체제에서 상시방역체제로 전환
  - 닭, 오리, 야생조류(철새 및 텃새) 등에 대한 국내유입 가능 경로별 예찰 등 AI 조기경보시스템 운영
- 소 브루셀라병 전수 검사, 구제역은 연중 국경 검역 지속 유지
- 돼지열병 예방을 위해 농가에 100% 백신 공급('08 : 20억원)

### □ 국경 검역 시설·장비 확충 등 수입축산물 안전관리 강화

- 탐지견 투입을 연차적으로 확대하고, 위생시설 점검 전문가를 양성(50여명)하여 해외 수출작업장 승인·사후 관리에 활용
  - \* 탐지견 투입두수 : ('06) 20 → ('08) 22 → ('09) 25 → ('10) 30

## 라 친환경농어업 활성화

### ◇ 2013년까지 친환경농산물 생산비중을 10%로 확대

- 친환경농산물 생산확대, 유통활성화 및 소비촉진 강화

※ 제2차 친환경농업 육성계획('06~'10) 수립·추진 중

### □ 친환경농수산물 생산·유통 인프라를 지속 확대

- 시·군 단위로 1,000ha규모의 경종과 축산을 연계한 광역 친환경농업단지 조성('08까지 9개소 조성 지원)
  - 마을 단위 친환경농업지구(10ha) 조성 병행('08신규 69개, 누계 948)
- 소비자가 친환경농산물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 확대
  - 소비지 매장 설치('08:10개소), 친환경농업 현장체험('08:480명) 지원 등
- 물류비 절감과 수집·분산 기반 조성을 위해 '11년까지 수도권(광주)에 전국규모의 친환경농산물 물류센터 건립 추진

### □ 가축분뇨 해양배출 중단('12)에 대비, 가축분뇨 처리기반 확대

- 가축분뇨공동자원화 시설 설치 확대('08 : 20개소 → '12 : 70)
  - 돼지사육 밀집 지역, 해양배출 많은 지역 등에 우선 설치
- 액비유통센터 확대('08 : 78개소 → '12 : 140), 전문화된 퇴·액비 유통조직에 운영자금 지원 등을 통해 퇴·액비 이용 촉진

### □ 친환경수산물 인증제('08.8), 유기·무항생제 축산직불제\*('09)를 도입하여 친환경 축·수산물의 생산 및 소비 촉진 도모

- ★ 한육우, 젓소, 돼지, 닭 등 4개 축종을 대상으로 i)유기·무항생제 인증, ii)HACCP 지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직불금 지급

## 2

## 강한 농림수산업 육성

### 가 농어가의 조직화·규모화

- ◇ 농어가를 품목별로 조직화하여 이용·경영의 규모화 유도
  - 품목조직 육성 및 대규모 농어업회사 설립 지원

#### □ 전국단위의 품목별 대표조직 육성 방안 마련('08.6)

- 조직화 정도가 높은 품목을 대상으로 시장개척, 마케팅, 수급 조절을 자율적으로 담당하는 조직 육성
  - \* (초기) R&D과제 설정, 자조금 사업 → (발전) 시장개척, 통합브랜드 개발, 수급조절
- 금년 말까지 3개 품목 대표조직 설립 후 내년부터 본격 육성
  - 돼지 : 21개 조합 11개 브랜드를 단일 공동브랜드로 통합
  - 감귤 : 제주도내 전체 조합(20개)이 공동으로 대표조직 설립
  - 넙치 : 제주·완도 등 주산지 4개 수협 중심으로 법인 설립방안 마련

#### □ 생산·가공·유통이 결합된 「대규모 농어업회사 설립 및 지원 기본계획」 수립('08.8)

- 대규모 간척지(예:500ha) 장기 임대, 투자펀드 조성을 통한 자금지원 등을 통해 대규모 농어업회사 설립·운영 지원
- 임대대상 간척지 선정('08.10) 후 공모를 거쳐 대상회사 선정
  - 사업계획, 수출기여도, 농업인 조직화, 자금조달 가능성 등을 심사하여 최종 대상자 선정

## 나 핵심 농어업 인력 양성

- ◇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한 농어업 핵심인력 양성
  - 창업준비, 창업농, 전업농 등에 따라 자금·교육 지원 차별화

### □ 창업 경로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여 신규인력 확보

- 매년 약 1,700명의 창업후계농어업인을 선발, 영농정착 자금 (최고 2억원, 연리 3%) 지원
  - 농업인턴제 확대('08 : 230명 → '09 : 300) 및 해외 농업인턴 추가('09)

### □ 농업교육과 경영컨설팅 지원을 통한 농업인 역량강화

- 품목전문·경영·지역특성화 교육 등 390개 과정, 71천명 교육
  - \* 농업교육예산 : ('07) 130억원 → ('08) 215 → ('09) 364
- 경영혁신·현장애로 등의 해결을 위한 경영컨설팅 지원
  - \* 경영컨설팅지원 : ('08) 1,200개 경영체/51억원 → ('09) 1,400/61

### □ 30~40대 젊은 인재 유치를 위해 주거·자녀교육·농어업 기술 교육 등을 종합 지원하는 농어촌뉴타운 조성 추진

- 세부추진계획을 수립('08.10)하고 시·군 공모('08.11)를 거쳐 시범 사업 대상지역 선정('09 : 5개소)

### □ 농업법인 육성을 위하여 농업벤처창업경연대회·농업특화창업보육센터(9개소) 운영을 지원하고, 농업분야투자를 유도

- 민간자본유치를 통해 농업전문투자펀드 조성 및 외부자본의 농업분야 투자 유도('09 : 200억원)

## 다 정책금융지원의 효율화

◇ 농업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책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운영을 정상화

◦ 농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농업금융시스템 개편 준비

□ 농업경쟁력 강화 및 경영안정을 위해 정책자금 지원 확대

○ 「농업종합자금」의 지원규모 확대(당초 : 11,000억원 → 조정 : 12,300)

\* 농업종합자금 중 운전·농기계자금 수요 급증에 따라 1,300억원을 추가 지원('08.9), '09년 예산안에는 1조 3,000억 반영

○ 중소농 경영안정을 위해 「농축산경영자금」 지속 지원('08 : 3.1조원)

□ 농신보 기본재산 확충 및 기금 안정화 대책 추진

○ 정부 및 금융기관 출연, 구상채권 회수율 제고 등의 노력으로 농신보기금의 정상화 기틀 마련

- '08.9말 현재, 운용배수 16.4배 달성 및 구상채권 상각 총당금 100% 적립 완료

\* 농신보기금 정부출연 : ('08) 6,952억원 → ('09) 6,895

□ 담보는 부족하나 성공가능성이 높은 전문경영체를 대상으로 사업성 평가를 통해 자금을 지원하는 선진 금융시스템 구축 준비

○ 사업성 평가를 통한 신용대출 확대, 외부자본 유입 활성화 등 농업금융 선진화 방안 마련

## 라 기술개발 투자확대 및 지원체계 개편

- ◇ 선진국 수준의 기술력 확보를 위한 농어업 기술개발 확대
  - 효율적·체계적 R&D 지원을 위한 기본법 제정 및 위원회 설치

- 농어업 분야 신성장 동력 창출 및 실용기술 개발을 위해 R&D 투자 확대('07 : 1,496억원 → '08 : 1,944)
  - 수출유망 품목 13개 연구사업단(113억원), 농림바이오기술(80), 인수공통전염병대응기술(30) 신규 지원
  - 첨단양식기술(89억원), 수산자원회복(50), 기타 에너지절감, 대체사료 등 경영비 절감기술 연구개발 지원
- 농림수산식품 분야 R&D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가칭) 「농림수산식품 과학기술 육성법」 제정 추진
  - 「농림수산식품 과학기술 기본계획」 수립, 농림기술관리센터 독립법인화, 기술개발 이전 촉진 등 법적 근거 마련
- 농림수산식품 R&D의 효율화 및 지원체계 개편 추진을 위해 「농림수산식품 과학기술위원회」 설치('08.10)
  - R&D 중장기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R&D 재원배분 등의 총괄 조정역할 수행

### 3

##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 가 산지·소비지간 연계 강화

◇ 생산자는 제값 받고 소비자는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체제 정착

◦ 산지와 소비지를 연결한 농수산물 직거래 활성화

□ 산지-소비지 협력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유통단계 축소 및 국내산 농수산물 소비기반 확대 추진

○ 소비지 유통·식품·외식업체에 산지 농수산물 직구입 자금(용자 250억원)을 지원

○ 유통공사에 「농식품 직거래 및 공정거래 지원센터」를 설치('08.3.24), 직거래 알선 및 불공정거래 사례 접수·처리

\* 대형마트의 납품 불공정행위 45건 접수, 공정위에 조사 의뢰

○ 다양한 형태의 추석맞이 직거래 장터 개설(8.29~9.13, 2,300여 개소)

□ 사이버거래소 도입, 직거래 장터 정례화 등 직거래 채널 다양화

○ 농수산물 B2B 사이버거래소 설립방안을 마련하고('08.12) 표준화·등급화가 용이한 품목부터 시범 운영('09.9)

- 운영주체, 결제방식, 분쟁해소방안 등에 관한 연구('08.5~11)

○ 대도시 권역별 직거래 장터 상설화, 아파트 단지 부녀회-농협간 직거래 장터 개설 협약 체결 등 직거래 장터 정례화 추진

○ 소비지에 생산자조직 직영 브랜드육(肉) 타운 조성('08~'12 : 10개소)

## 나 산지 유통 경영체 육성

- ◇ 규모화 된 산지 경영체가 지역 생산량의 50% 유통 담당('17)
  - 기존 산지유통조직 활성화 및 공동마케팅조직 육성

### □ 운영자금·인센티브 지원 등을 통해 산지유통조직 활성화 유도

- 공동마케팅조직(22개소), 전문조직(292), 일반조직(197)에 마케팅 등에 필요한 운영자금 5,950억원 지원('08.5)
- 산지유통조직 사업 실적에 대한 **종합평가** 실시('08.3~9)
  -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조직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조직별 맞춤형 컨설팅과 교육을 통해 전문성 향상
  - \* '09년 금리(1~3%) 및 인센티브 자금 차등(5~30억원) 지원
- 농협의 산지유통 참여 확대를 위해 농협법 개정 추진
  - 중앙회의 조합공동사업법인 지원·지도 근거 등 마련

### □ 전문 CEO가 경영하고 지역 생산물의 1/3이상 처리가 가능한

「시군 유통회사」 사업 대상자 공모 접수 중('08.9.16~10.15)

- 공모 시군의 사업 계획 평가(10.16~12.15) 후 내년도 지원대상 시군 선정('09계획 : 10개소)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시군 유통회사에는 설립 초기 3년간 **운영자금** 지원(20억원 내외) 및 **농수산물 확보자금** 융자(70억원 이내)



## 다 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및 거래제도 개선

### ◇ 시설 및 경영 혁신으로 물류비 절감과 경영 활성화

- 시설 현대화, 전자거래 활성화 및 경영 효율화

□ 개장 10년 이상 된 도매시장 중 시설노후화 정도가 심한 곳을 대상으로 2015년까지 1단계 시설 현대화 추진

- '09년 예산안에 3개소(서울 노량진, 대전 오정, 광주 각화) 반영

□ 전자거래 활성화, 관리업무 위탁 등으로 경영 효율화 추진

- 대전 오정 등 9개 도매시장에서 전자거래제\* 시행

★ 도매시장에서 인터넷 화상으로 정가 또는 수의매매 후 산지에서 중도매인이 지정하는 장소로 직접 배송하는 거래제도

- 도매시장 관리업무의 전문성 제고 및 경영 효율화를 위해 관리업무 위탁 확대 추진

- 춘천 농산물도매시장을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위탁 관리('08.8.1~)

- '09년도 안전성 검사 실시 및 출하자 신고제 시행 준비

□ 금년 말까지 도매시장 거래제도 개선 등 운영활성화 방안 마련

- 정가·수의 매매 제한규정 및 도매법인·중도매인의 매매의무화 규정을 완화

- 파렛트 출하품을 우대하여 하역기계화 촉진

- 문화·휴식시설 설치, 도·소매가 결합된 복합공간화 등 도매시장 공간의 효율적 활용방안 마련

## 4

## 식품산업 육성

### 가 식품산업 발전 종합대책 수립

- ◇ 농어업과 식품산업의 융복합화를 통한 고부가가치 실현
  - 「식품산업 발전 종합대책」을 수립('08.10), 체계적 추진

#### □ 식품산업 진흥정책 추진체계 구축 및 국민적 공감대 형성

- 식품산업진흥법 시행('08.6.28) 및 '식품산업정책단' 신설(7.2)
- 'KOREA FOOD EXPO'를 개최, 식품산업에 대한 인식제고와 도약계기로 활용
  - \* '08.10.13 ~ 19간 서울 양재동 일원에서 국민 참여형 행사로 추진

#### □ 식품산업이 국내 농어업과 연계·발전할 수 있는 토대 마련

- 식재료산업 육성으로 우리 농수산물의 신 수요 창출 및 판로 확대
  - \* 신선편이 농산물 가공시설 현대화('08 : 100억원) 및 공동조리·식재료 가공 시설 확충('09 : 3개소 → '12 : 18)
- 농어업인이 출자하는 융복합형 농식품기업\* 육성으로 지역 농식품산업을 활성화
  - \* 전북 고창의 국순당 명주(농어가가 70%의 지분 보유)처럼 농어업인이 일정지분을 보유하는 가공회사
  - 융복합형 농식품기업 조성 : ('09) 2개소(100억원) → ('12) 50

- 식품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 강화
  - 식품 관련 통계·정보 체계 구축, 전문인력 양성 등 인프라 확충
    - 시장동향, 식재료 조달실태 등 식품관련 정보를 조사·제공
    -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 지정,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 지원
  - 미래 수요에 맞는 기술 개발 등 식품산업 분야 R&D 투자 확대
    - \* 식품산업의 R&D 중장기 로드맵 마련을 위한 연구 추진 중('08.9~'09.3)
  - 한식의 세계 5대 음식화를 통해 저변 확대 및 국가 이미지 제고
    - 한식 세계화 포럼 개최('08.4·6·9), 한식 메뉴 영문명 표준화(100가지, '08.9 발표), 한식 아카데미 지원, 해외 한식당 인증('09 이후) 등 추진
    - \* 한식 세계화 선포식('08.10.16)을 통해 세계 5대 음식화의 비전과 전략 제시
- 우리 농수산물을 활용한 전통식품 산업발전을 적극 뒷받침
  - 전통·발효식품의 우수성을 과학적으로 구명·홍보하고,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소비촉진 유도
    - \* 전통·발효식품의 효능 임상시험('08.4~9) 결과 홍보(TV 다큐)
  - 김치('07 : 매운맛 3등급화)에 이어 고추장도 맛의 등급화 지원
- 국민건강상 바람직한 식생활 문화 정착을 위한 표준모델 개발과 교육·홍보 및 제도 정비 추진
  - 식생활 지침 개발·보급, 언론 등을 통한 홍보 및 식생활 교육 관련 법령 제정 등 추진
    - \* 식문화 교육 지원 관련 예산 반영('09 : 45억원)

## 나 식품클러스터 활성화

### ◇ R&D·상품화·마케팅·수출이 집적된 식품클러스터 조성

- 농어업과 식품산업의 연계로 경쟁력 제고 및 수출 산업화

### □ 식품관련 기업, 연구소, 대학 등 연관산업 주체들의 집적화와 네트워킹을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

- 국가 식품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중심·배후 형태의 식품산업 발전 추진체계를 구축, 지역 클러스터와 연계 발전

### □ 대단지 식품클러스터를 동북아 식품시장의 허브로 육성

- R&D 중심의 국가식품클러스터를 '12년까지 전라북도에 조성

- 금년내 조성계획 수립, '10년부터 단지 조성 착수

\* 국가 식품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연구용역 추진 중('08.5~10)

- 새만금 개발사업과 연계, 새만금의 농업생산단지·항만 등을 활용하여 농어업과 식품산업의 수출산업화 기반으로 활용

### □ 지역 핵심 품목의 2·3차 산업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치즈 등 20개 사업단 시범운영('05~'07 : 549억원) 결과를 토대로

22개 신규 사업단을 선정, 3년간('08~'10) 본사업 추진 중

- 사업단별 5개년간 평균 36억원 지원(사업특성에 따라 차등 지원)

※ 안성시 안성맞춤 클러스터 사업단(3년간 34억원 지원)은 쌀과자 등 8개 신상품을 개발하여 매출액 증가 : ('05) 472억원 → ('07) 632

## 다 농림수산물 수출확대

◇ 수출상품의 국제 경쟁력 제고, 새로운 해외 수요 창출 등을 통해  
2013년 농림수산물 수출 100억불 실현

□ '08. 8월까지 농림수산물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5.9% 증가(2,717백만불)

○ 과실·채소류·김치·참치 등 주력 수출품목 대부분이 증가 추세,  
러시아·아세안 등 신규 시장으로의 수출 확대

\* 부류별 증가율 : 과실류(21.0%), 채소류(18.2), 참치(18.3), 버섯류(172.9), 가공식품(12.8)

\* 국별 증가율 : 러시아(26.8%), 아세안(37.5), 일본(20.8), 중국(8.5), 미국(7.4)

□ 영세 소규모 수출구조 극복을 위한 조직화 지원, 자원부국 등으로  
수출국 다변화를 위한 시장개척 등 추진

○ 주요 수출 품목별 수출협의회 구성 완료(7개 품목), 생산자조직·  
수출업체간 조직화 된 수출선도조직 시범 선정(6개 품목)

※ 새송이버섯 7개 수출업체가 출자하여 해외 공동마케팅, 공동브랜드 사용 등  
경쟁력 제고를 위한 마케팅보드인 '코머쉬' 설립('08.8)

○ 재외공관(30개)과 협력하여 동남아시아, 중동 등 신규시장  
개척을 위한 홍보행사 개최(연중, 15개 공관 완료)

- 중국 김치 시장 공략을 위한 세미나·홍보행사 개최('08.7)

※ 재외공관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홍콩 총영사관에서 개최하는 한국 식문화 및  
농식품 홍보행사에 홍콩 행정수반(도널드 창) 참석 예정('08.10.8)

□ 수출상품의 국제 경쟁력 제고, 새로운 해외 수요 창출 등을 기본방향으로 100억불 수출 실현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 수립('08.10)

○ 조직화규모화R&D 투자 등 생산성 향상을 통한 경쟁력 제고

※ '12년까지 수출선도조직 50개, 품목별 마케팅 보드 10개 육성

- 종자재배·가공·수출에 이르는 전 단계에 R&D 투자 확대

○ 4대 국가(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의 한국 식품 수입 비중 배가(1%→2), 자원부국의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신규 수요 창출

- 700만 해외교민·한상 등과 연계, 약 1만여개 한식당을 통한 국산 식자재 공급 확대(한식세계화와 병행하여 추진)

- 동남아·중동 지역의 고소득층 대상 고부가가치 수출상품 마케팅 전개

※ '07 현재 4대 국가의 수입시장 규모는 2,546억불(최근 5년간 연평균 8% 증)

- 한국산 수입액을 현재보다 2배 이상 증가('07 : 23억불 → '13 : 50)

○ 김치·인삼의 세계화를 통해 국가 대표 수출품목으로 육성하고, 신규 유망품목을 적극 발굴하여 수출 성장 동력 확충

- '13년까지 김치·인삼 수출액 5억불 달성('07 : 1.7억불)

- 가열처리 돼지고기, 우유가공품, 버섯류, 삼계탕, 천일염 등을 수출 유망품목으로 적극 육성, 해외 시장분석을 통해 추가 발굴

\* 돼지고기는 '00년 구제역 발생 전 340백만불 수출한 경험

- 굴, 넙치, 전복 등 수산물은 가공과 수출을 연계한 수출단지 조성

## 5 농어가 소득 및 경영 안정

### 가 농자재값 상승에 대응한 경영안정 지원

◇ 가격 인상분 일부를 재정에서 부담함과 동시에 중장기적으로 사료 등 해외의존도 감소와 고효율 에너지 구조 정착

□ 유류·비료·사료 가격 상승에 따른 경영비 증가 부담 완화를 위해 단기 경영안정 대책 수립·추진

○ (유류) 유가연동 보조금(상승분의 50%) 지급 추진('08.7.1~, 1년간)

-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08.6.25), 유가연동보조금 지급대상에 농어민을 포함하고, 「농어업용 유가연동보조금 지급지침」 마련(6.30)

○ (비료) 2차례('08.1.6) 화학비료 가격인상에 따른 대책 추진

- 1차 가격인상(24% 증)에 대응, 유기질비료 지원 확대(540억원 → 1,160)

- 2차 가격인상(63% 증)에 대응, 정부가 가격 인상분의 40%, 농협 등이 40%를 지원(농가는 가격 상승분의 20% 부담)

○ (사료) 농가특별 사료구매자금(1.5조원) 지원, 사료 수입원료 무관세 적용 품목 확대(3개 → 19)

- 들풀 베기 행사(3회) 및 지역 조합(127개)에 “들풀 이용지원센터” 설치 등 부존자원을 대체사료로 이용 추진('08.7~8)

= 대책 추진에 필요한 6,075억원의 추가 경정 예산 확보 =

□ 안정적 사료곡물 확보를 위해 **국산 조사료 생산역량 확대** 및 해외농업개발 추진

○ '12년까지 청보리 등 **조사료 재배면적 370천ha로 확대**

\* 조사료 재배면적 : ('07) 164천ha → ('08) 191 → ('09) 234 → ('12) 370

- '09년부터 기계·장비 지원 보조율 상향 조정 및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대상 확대(하계 사료작물까지)

\* 기계·장비 보조 : ('08) 130백만원 → ('09) 150(기금 40%, 지방 40, 자담 20)

\* 제조비 보조 : ('08) 50천원/톤 → ('09) 60(기금 60%, 지방비 40)

○ 민간주도 실수요자 중심으로 해외농업개발 추진

- 민간이 대상지역 및 작물을 선택하고, 정부는 기술·정보 제공, 외교적 협조, 자금지원 등 측면 지원('09 : 510억원)

□ 농어업용 **면세유류 실 소요량 조사**('08.9~10)를 실시하고, 부족할 경우 4/4분기에 공급 확대

○ 농·수협, 지자체 등과 면세유 사용량을 협의, 소요량 확정

\* '08년 농어업분야 면세유 공급계획량 : 3,932천kl

□ 농어가 경영안정대책 T/F('08.8.8 구성)를 운영, 여론수렴 등을 거쳐 **농어가 경영안정 종합대책 수립**('08.12)

○ 국제곡물·비료 등 가격 및 수급 안정방안, 에너지 절감기술 개발·보급방안 등 포함

○ 농어가 경영안정을 위해 사료·비료·에너지 절감 시설 지원 등에 소요재원('09 : 3.4조원) 반영



## 나 직접지불제 확충

### ◇ 농가 소득 안정화 위주로 직불제 확대·개편

- 현행 직불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 보완 추진

### □ 농가소득 보전과 운영과정상의 미비점 보완을 위해 쌀 직불제를 합리적으로 개선

- 쌀소득보전직불제 **목표가격**(170,083원/80kg)을 5년간('08~'12) 유지키로 법령 개정('08.3.21 발효)
- 지급면적 상한 설정, 일정액 이상 농외소득자 지급 제한 규정 마련 등을 위한 법개정 추진

### □ 고령농 생활안정, 규모화 촉진을 위해 경영이양직불제도 개편

- 대상농지 확대(진흥지역내 논 → 진흥지역내 논·밭·과수원), 지급 연령 확대(63~70세 → 65~75) 등을 통해 실효성 제고
-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 시행규정」 개정안 입법예고('08.9.18)

### □ 중장기적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해 「농가단위 소득안정 직불제」 기본계획안 마련('08.12)

- 소득(예:조수입)이 기준소득보다 낮을 경우, 그 격차의 일부 보전 방식
- FTA피해보전직불제, 쌀변동직불제 등 **소득안정 직불제**를 정비, 농가단위 소득안정 직불제로 **연차적으로 통합**

- \* '10년 시범사업, '12년 본사업 일정으로 준비

## 다 재해 등에 대비한 경영안정장치 확충

- ◇ 경영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안정장치 강화
  - 농지은행사업 활성화 및 농어업관련 재해보험 제도 개편 추진

### □ 농지은행을 통한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지원 확대

- 경영위기 농가의 농지매입 확대('07 : 953억원 → '08 : 1,195)
  - \* 금년에 1천억원 지원 계획이었으나, 신청이 많아 195억원 추가 지원
- 농업용 시설 등으로 매입대상을 확대하는 방안 검토
  - 내년부터 유리온실, 한우축사 등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실시 계획

### □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의 경영회생을 위한 농업경영 회생자금('08 : 1,000억원) 지원제도 개선('08.10)

- 신청기준을 완화(1년 이상 연체 → 6월 이상)하고, 농신보를 통한 특례보증 한도 확대(5천만원 → 1억원) 추진

### □ 농어업 재해보험 통합 및 활성화

- 재해보험 대상품목을 확대하고('07 : 10개 → '08 : 15), '09년도 벼 보험 시범사업 준비
- 안전 공제 보상금 인상('08 : 최대 4,500만원 → '09 : 6,000), 축사 설해 피해 추가 및 보조율 상향('08 : 30% → '09 : 50)
- 양식수산물재해보험법('08.7 시행)과 농작물재해보험법을 통합하고, 가축·시설재해를 포함하여 「농어업재해보험법」으로 일원화 추진('08.12 국회제출)

## 라 안전영농기반 구축

- ◇ 호우·태풍 등에 대비한 수리시설의 재해대응 능력 제고
  - 저수지, 양·배수장 등 시설별 취약분야 집중 보수

### □ 노후되어 집중호우 등 재해에 취약한 수리시설 개보수 추진

- 저수지 및 양·배수장 420개소, 수로 400km 개보수('08 : 3,800억원)
  - \* 수리시설 68천개소중 30년 이상 경과 52%(36천 개소), 저수지의 경우 93% (18천 개소 중 16천 개소)
- 저수량 500만톤 이상 대형저수지 35개소는 이상기후에 대비, 제방 높임공사, 물넘이 확장 등 보강(4개소 완료, 18개소 시행중)

※ 안성 고삼저수지 보강('04~'06 : 85억원) : 홍수배제 용량 2.4배 늘려 하류지역 528가구 1,498인의 인명·재산 및 농경지 3천ha 보호

- 상습침수 농지 배수개선 시행('08 : 31천ha 시행, 3천ha 준공)

※ 밀양 하남지구 배수개선('01~'07 : 149억원) : 벼농사 이외 원예작물 재배증가 (80→362ha) 등으로 연간 13억원의 소득증가와 함께 노동력 절감 등에 기여

### □ 이상기후 등에 대비한 종합적인 재해예방 대책 마련

- 개보수 예산을 저수지 등 재해대비 취약시설에 집중 지원
- 침수농지 배수개선을 제고('08 : 75% → '09 : 77 → '13 : 83) 및 국고지원 범위 확대(50ha 이상 → 수해우심지역은 50ha 미만도 포함)
  - 50ha 미만 경지정리 지구도 농지보전 가능성 등을 감안, 국고지원 추진
- 농촌공사 유지관리 조직 광역화 등 물관리개선 종합계획 수립

**6****농어촌 삶의 질 개선****가 농어촌형 선진 복지정책 추진**

◇ 농어촌 선진 복지제도 도입으로 **고령 농어업인들의 생활 안정과 경제적 부담 완화**

□ **건강 및 연금보험료 지원 확대**로 농어업인 사회안전망 확충

○ 농어촌 거주 농어업인 세대에게 **건강보험료의 50%** 지원

- 금년에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취락지구도 지원대상지역에 편입

\* 지원실적 및 계획 : ('07) 504천가구/1,431억원 → ('08) 451/1,356 → ('09) 499/1,707

○ 농어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연금보험료를 50%까지** 지원

- 월소득이 620천원 이하인 농어업인에게는 보험료의 50%, 그 외는 28천원 정액 지원

\* 기준소득금액(월) : ('07) 520천원 → ('08) 620 → ('09) 730

□ **자녀양육비 지원, 영농·가사도우미 지원 등 취약계층인 고령 농어업인과 여성을 위한 복지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범위 확대

\* ('06) 5ha 미만 농어업인 부모, ('07) 부모없는 祖孫가정 추가, ('08) 한부모 祖孫가정 추가

○ **고령·사고농가에 가사도우미와 영농도우미 지원 확대**

\* 영농도우미 : ('07) 8천가구 → ('08) 13 → ('09) 15

\* 가사도우미 : ('07) 15천가구 → ('08) 15 → ('09) 18

□ 농어업인 교육비 부담 경감 및 농어촌 우수 교육환경 조성 추진

○ 농어촌 출신 대학생에게 학자금 전액 무이자 융자

\* 학자금 지원대상 : ('07) 26천명 → ('08) 27 → ('09) 27

○ 우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농어촌 기숙형 공립고 설립 추진

\* '08.8. 82개교 선정(교과부), '10년까지 총 150개교 계획

□ 농어촌 다문화세대 여성을 위한 영농기술 및 직업능력교육 강화

○ 이주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기초영농교육('08 : 540백만원)  
실시 후, 1:1 맞춤형 영농정착지원 교육으로 발전시킬 계획

\* 교육대상자 : ('08) 270명 → ('09) 700

○ 이주 여성농업인의 직업능력 개발 및 농산업(Agribusiness)  
창업 지원방안도 강구

※ 한국 출신 이주여성들이 한식음식점인 '고려관'을 창업할 수 있도록  
일본 야마가타현에서 지원한 사례 등을 참조

□ 초고령화된 농어촌에 선진 복지정책이 우선 도입·시행될 수  
있도록 중장기 농어촌 복지정책 추진전략 마련

○ 노령 농어업인들을 위한 예방적 건강관리, 사회적 일자리 창출  
및 생활안정을 위한 연금지원 등 농어촌 고령화 현상에 대처

○ 도농간 공공서비스 형평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농어촌 공동체 복원으로 능동적 복지 실현

## 나 농어촌 적합형 산업육성

- ◇ 농어촌의 경제적 활력 증진을 위하여 지역단위의 유·무형 향토자원을 개발하고 2·3차 산업과의 융·복합화 유도
  - 농어촌관광 인프라 확대 및 시·군 단위 특화산업 육성

### □ 다양한 형태의 체험·관광·휴양 인프라 확충 및 도농교류의 체계화

- 녹색농촌체험마을 364개소, 어촌체험마을 95개소, 농어촌테마공원 12개소 조성('08까지 누계)

\* '09 계획 : 녹색농촌체험마을 78개소, 어촌체험마을 8, 농어촌테마공원 10

- 저변확대를 위해 다양한 도농교류 프로그램 지원

- 웰촌포털([www.welchon.com](http://www.welchon.com)), 바다여행([www.seantour.com](http://www.seantour.com)) 운영
- '농산어촌에서 휴가보내기 캠페인'('08.6~7), '도농교류엑스포'('08.10), '나의 농어촌이야기 공모'('08.10), '농어촌축제'('08.3~12) 등 저변확대
- 농어촌 유희시설(폐교·창고 등) 활용 등을 통한 도·농간 문화교류 활성화 지원('09 : 20억원)

- 「도농교류촉진법」의 원활한 운용을 위한 세부지침 마련 및 도농교류 활성화 중장기 계획 수립('08.12)

\* 도농교류촉진법 시행령('08.6.20), 시행규칙(6.27) 시행

- 농촌 향토자원 등을 활용한 복합산업화 촉진을 위하여 시·군 단위 상향식 「농어촌활력증진계획」(’08~’10) 수립
- 신활력지원·향토산업육성·특화품목육성 사업을 통합(3,474억원), 142개 시·군 자율 계획 수립·추진
- 농어촌활력증진계획에 대한 평가를 실시, 우수 시·군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188억원)

**<’08 ~ ’10년 농어촌활력증진계획(고창군 사례)>**

- 복분자 등의 생산기반 확충(특화품목육성사업 : 116억원), 복분자 제조·가공산업 등 지원(신활력사업 : 72억원), 향토자원을 주제로 한 테마관광 등 활성화(향토산업육성사업 : 10억원)
- 성과목표 : 복분자 등 관련 산업 매출액 5,300억원

- 한국농촌공사에 「**농촌활력사업본부**」를 설치(’08.1), 지원체계 구축
  - 지역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지도, 성과평가, 상시적 컨설팅, 지역농특산물 홍보마케팅 등 효율적 지원체계 마련
- 「**농어촌산업 발전방안**」(’08.12)을 수립, 지역단위 농어촌산업 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체계화**
  - 농어촌관광, 농공단지, 농촌활력증진사업 등 농어촌산업 발전 관련 사업 정비 및 체계화
  - 시·군 ‘농어촌활력증진계획’ 이행 지원 및 성과관리시스템 구축

## 다 농어촌 지역개발 촉진

◇ 농어촌 面지역 기초생활환경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面소재지 및 배후중심마을을 선도거점으로 육성

□ 주택, 도로, 상·하수도 등 기초생활환경 개선 지속 추진

- 주택 신축·개량자금 융자(6,000동), 빈집 정비(7,938동) 추진
- 551개 면(정주면 307, 오지면 244)을 대상으로 도로, 상·하수도 등 기초생활환경 정비 추진('13 : 1,157개면 목표)
- 상수도 공급이 어려운 7,060개 마을(20호 이상)의 식수난 해소를 위해 암반관정 개발('08까지 5,842개소 개발 완료 예정)

□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통해 지역 선도거점 형성

- 현재 176권역(시행 136, 계획수립 40) 추진 중('17까지 1,000권역 목표)
- '05년 착수 36개 권역에 대한 중간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한 5개 권역에 인센티브 자금(21억원) 지원

□ 도시민 유치를 위한 전원마을조성사업 제도개선 추진

- 관련법령상 인·허가 사항 의제처리 확대, 권한위임 등 행정 절차 간소화 및 규제완화(농어촌정비법 개정)

※ '08년까지 97개소(기시행 62, '08착수 35) 시행, '09년 20개소 신규 추진

□ 균형위 주관 지역발전정책과 연계,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지자체 자율성 확대 등 지역개발사업 추진체계 개편



## 7

## 지속가능한 자원관리

### 가 저탄소 녹색성장 지원

#### ◇ 탄소 배출원 감축 및 흡수원 확충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견인

- 메탄가스 감축, 바이오에너지 활용 및 조림 확대

#### □ 축산분뇨로 인한 메탄가스 감축과 에너지 절감 농어업 확산을 적극 지원

- 가축분뇨 자원화 시설 설치('08~'12 : 액비저장소 7,000개소, 공동자원화시설 70개소) 확대로 메탄가스 배출 저감
- 우수 난방기·농기계, 유류절감형 어선엔진 보급 등을 통해 시설원예·농기계·어선 등의 에너지 절감 지원

#### □ 바이오에너지 활용 확대, 국내외 산림 확충 등 저탄소 녹색 성장을 위한 인프라 확충

- 바이오매스\* 연구 활성화, 유채재배 확대, 바다숲 조성 등 추진
  - \* 화석원료를 제외한 생물유래 유기성 자원(축분, 산림, 바이오작물, 볏짚, 음식물 등)
  - \* 유채재배 : ('07~'09) 1,500ha 시범재배 및 평가 → ('10~'12) 45천ha
  - \* 바다숲조성 : ('09~'12) 7천ha 조성(바다사막화 방지 및 온실가스 흡수)

#### ○ 탄소 흡수원인 산림의 관리 및 국내외 조림 확대

- 2012년까지 1만ha 신규 조림 및 240만ha 숲가꾸기 추진

#### □ 재배적지 등 변동 예측, 대응품종 개발, 병해충 방제시스템 강화

등 농림수산분야 중장기 기후변화 적응계획 수립('08.12)

## 나 수산자원 회복

◇ 과학에 기초한 자원조사·평가, 자원관리 등 체계적인 수산자원 회복 정책을 통해 지속가능한 어업생산기반 마련

□ 자원회복 대상어종 확대('07 : 7개종 → '08 : 10) 등 어획량 관리 강화

○ '15년까지 자원회복 대상어종은 20종, 총 허용어획량(TAC)\* 관리어종은 15종으로 확대

★ 개별 어종에 대해 연간 잡을 수 있는 어획량을 설정, 그 한도 내에서만 어획을 허용하여 자원을 관리하는 제도

□ 바다목장·인공어초 조성 등 어족자원조성 사업 확대

○ 금년까지 바다목장 5개소(1개소 준공)와 소규모 바다목장 9개소를 조성하고, 인공어초(202천ha) 설치 및 종묘방류(11억미) 추진

○ '09년부터 어류산란에서 성어까지 종합적인 어족자원 육성을 위해 바다숲 조성사업 추진('09 : 3.3천ha)

□ 자원량과 채산성에 맞도록 어선 감척 지속 추진

○ 금년에 약 4천여척(연안 3,500, 근해 484)을 감척

○ '10년까지 근해어업 1,280여척 추가 감축, '06 대비 35% 수준 감축

\* 감척 후 어선규모('11) : 55,480척(연안 53,191, 근해 2,289)

□ 수산자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수산자원관리법」 제정 추진

○ 자원회복계획, 휴어제 도입, 총허용어획량 등 기존제도 보완

## 다 농어촌 경관 및 환경 개선

◇ 농어촌지역의 경관개선, 토양오염 방지 등을 통한 쾌적한 농어촌환경 조성

◦ 경관작물 재배와 연계한 마을주민 참여형 경관보전활동 추진

□ 농촌 경관개선과 농가지원을 연계한 경관보전직불제 확대 추진

○ 지역특성에 맞는 경관직불제 시행을 위해 대상지 선정기준 완화

- 기준 완화 : ('07) 최소면적 1ha, 8개 작목 → ('08) 0.5ha, 작목제한 폐지

- 지원규모 : ('07) 800ha/10억원 → ('08) 3,252/26 → ('09) 10,000/96

□ 경관작물 재배이외에 마을단위의 경관보전관리 활동이 가능하도록 경관협약 대상 범위 확대('09)

○ 주민참여 유도를 위해 경관계획 수립 및 마을경관보전활동비 지원

\* 활동내용 : 진입로·마을안길·공터 꽃가꾸기, 농로·수로변 환경 정비 등

○ 철도 및 도로변 농지를 활용한 겨울철 경관작물 재배 촉진 유도

□ 친환경농업 기반 마련을 위한 토양개량제 지속 공급

○ 살포가 편리한 입상(알갱이)화 된 토양 개량제 확대 공급('07 : 337천톤 → '08 : 440)으로 농경지의 유효규산 함량 증진 및 산성화 방지

○ 규산함량이 낮은 논에는 규산질 비료를, 산성도가 높은 밭에는 석회질 비료를 지속 공급하여 지력 증진 추진

### Ⅲ. 당면 현안 업무

1. 수확기 쌀 시장 안정 대책 .....	753
2. 멜라민 검출 현황 및 대책 .....	755
3. 미국산 쇠고기 안전 관리 .....	759
4.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 .....	761
5. 새만금 사업 추진 .....	763
6. WTO/DDA 농어업 협상동향 및 대책 .....	765
7. FTA 추진동향 및 대책 .....	766

# 1 수확기 쌀 시장안정 대책

## 가 수급 및 가격동향

- 벼 재배면적은 감소하였으나, 작황이 양호하여 쌀 생산량은 전년보다 약 20만톤 정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
  - 수확량이 많았던 '06년에 비해서는 다소 낮은 수준 전망
    - 「9·15 예상수확량 조사」 결과는 10.10일 발표 예정
    - \* 재배면적 : ('06) 955천ha → ('07) 950 → ('08) 936
    - \* 생산량/10a당 단수 : ('06) 468만톤/493kg → ('07) 441/466 → ('08p) 461/490 ~ 500
  - 생산증가, 소비감소 추세 완화, 재고수준을 감안할 때, 내년도 수급은 안정적인 전망
    - \* 공급 556만톤(이월 66, 생산 461, 수입 29) / 수요 487만톤(식량 365, 가공 35, 기타 87)
- 산지 쌀값은 지난해 생산량 감소 등으로 수확기부터 8월 중순까지 상승세가 지속되어 오다가, 이후 소폭 하락세로 전환
  - '08.9 기준으로 전년대비 7.7%, 수확기대비 7.3% 높은 수준
    - \* ('07.9) 149,672원/80kg → ('07.10~12, 수확기) 150,196 → ('08.8) 162,028 → ('08.9.25) 161,188
  - 단경기 시장안정을 위해 지난 4월부터 공공비축미와 농협곡 공매를 통해 시장공급량 확대(6만톤)
  - 금년 생산량 증대가 예상됨에 따라 수확기 쌀값은 다소 하락할 전망

## 나 대책

◇ 산지 가격·작황(예상수확량) 등을 고려한 시장안정대책을 마련하여 수확기 수급 및 쌀값 안정화 도모

□ 생산량 증가에 대비, 미곡종합처리장(RPC) 등 민간매입 확대 추진

○ RPC 자체 매입량을 전년(175만톤) 대비 20만톤 이상 확대하여 생산량의 50% 이상을 수확기에 매입

\* 수확기매입량 : ('06) 228만톤(수확량의 48.7%) → ('07) 215(49.0) → ('08) 242(52.5)  
(민간매입량) (178만톤) → (175) → (202)

○ 정부·농협의 수확기 벼 매입자금 용자 지원을 확대

\* 매입자금 규모 : 22,184억원(정부 9,184, 농협 13,000)

□ 금년산 공공비축 매입을 차질 없이 추진

○ '08.9.22일부터 연말까지 농가로부터 40만톤 매입

○ 매입시 50,050원(벼·특등40kg기준)을 우선 지급하고, 수확기('08.10~12) 산지쌀값조사 결과에 따라 '09.1월중에 정산

□ 수확기에 민간의 원활한 매입을 유도하기 위해 내년도 정부 공매계획을 11월에 확정

○ 예상생산량 및 단경기 수급여건을 감안, 공매물량시기 등 결정

= 민관합동 「쌀 수급점검회의」를 개최, 수급 및 가격동향 점검 =



## 2

## 멜라민 검출 현황 및 조치사항

### 가 수입 중국산 유제품

#### (1) 현 황

- '07.1월 이후 중국산 유제품 수입현황 조사결과, '08.2~8월 중 가공버터 182톤 이외에는 분유 등 유제품 수입실적이 없음
- 수입 회사는 롯데삼강 등 7개사(중국가공회사 3개사)이며, 중국측이 발표한 멜라민 함유제품 제조 22개사와는 무관

#### (2) 단계별 조치 사항

- '08.2~8월간 수입된 중국산 가공버터 판매재고 물량(8건 32톤)에 대하여 멜라민 검사결과 모두 불검출(9.19~24)
- 유제품에 대한 전반적인 우려해소를 위해 수입산을 포함하여 국내 유통 중인 유제품 740점에 대해 멜라민 검사결과 불검출
  - 멜라민이 검출된 것으로 보도된 뉴질랜드 폰테라사(27점) 및 타투아사(6점) 유제품 등도 불검출
- 수입되는 중국산 및 중국산 원료가 포함된 모든 유제품에 대해서는 검역과정에서 전량 멜라민 검사 실시(9.26~)
  - 기타 국가산 모든 유제품에 대해서는 정밀검사 항목에 멜라민을 추가하여 무작위 추출 검사 실시

## (1) 멜라민 검출 상황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료기술연구소(사료협회)의 검사 결과, 2개 업체(이조은사료, 코스프)의 양어용사료 7점에서 멜라민 검출

\* 이조은 : 매기배합사료(25 ppm), 어린잉어 배합사료(38 ppm)

\* 코스프 : 메기배합사료(16.5, 30ppm,) 어분(2 ppm)

○ 멜라민이 함유된 양어용사료에 대한 유통경로 조사 결과, 동 사료가 76개 양식장에 공급된 것으로 확인

\* 이조은사료 사용 양식장 15개소, 코스프사료 사용 양식장 61개소

□ 9.23일 사료유통업체(비팻)가 사료기술연구소에 의뢰한 개사료 (이조은사료) 3점에서 멜라민 검출(9.29)

○ 동 사료에 대한 유통경로 조사 결과, 비팻을 통해 경기지역 29개 농가에 공급된 것으로 확인

○ 이조은사료는 금년 1월 이후 비팻을 포함하여 17개 업체에 총 720톤('08.7~8 : 125톤)의 사료를 공급한 것으로 확인

- 비팻을 제외한 16개 업체의 개사료 유통경로 파악 중(지자체)

## (2) 단계별 조치사항

### 1단계 조치사항

- 멜라민이 검출된 양어용사료와 개사료 회수 및 사용금지 조치
  - 이조은사료 생산 118.2톤(양어용사료 117, 개사료 1.2), 코스프 생산 양어용사료 12톤 회수 및 사용금지
  - 이조은사료의 양어용사료 원료로 사용된 동우산업의 오징어 내장분말 263톤을 사료원료로 사용 금지(9.24)
  
- 멜라민이 검출된 양어용사료를 사용한 76개 양식장에 대해 어류 출하통제 및 안전성 조사 결과 불검출
  - 해당 양식장에 대하여 어류 출하통제 해제
  
- 지자체에 비팻을 통해 멜라민이 함유된 개사료를 섭취한 29개 농가의 개에 대해 이동제한조치 지시
  - 29개 농가중 규모가 가장 큰 2개 농가에서 10두를 구입하여 내장, 혈액, 근육에 대해 멜라민 잔류검사 실시(9.30~)
  - 비팻을 제외한 16개 업체의 개사료를 사용한 농가를 확인 후 사육중인 개에 대해서도 이동제한 조치
  
- 각 시·도에 이조은사료에서 개사료를 공급받은 17개 업체의 사료 사용금지 조치토록 지시(9.30)

## 2단계 조치사항

- 모든 배합·단미사료 업체의 시료 886점 멜라민 검사 실시(9.25~)
  - \* 우선, 양어용 사료업체·오징어내장분말 생산업체(32개소)의 시료 56점을 채취하여 분석한 결과, **멜라민 불검출**(9. 26)
- 중국산 및 국내산 양식 수산물에 대해서도 멜라민 검사 실시
  - 중국산 양식 수산물 전반으로 검사를 확대(9.29~)하고, 국내산 양식수산물 13종 130점도 채취·검사(10.1~31)
- 소비자 불안해소 등을 위해 국내산 축산물(500점) 및 국내 유통 중인 중국산 축산물(열가공품)을 수거, **멜라민 검사**(9.28~10.17)

## 3단계 조치사항

- 멜라민을 사료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유해사료의 범위와 기준」 고시 개정 추진('08.10 중순 시행)
  - 고시 시행시까지 멜라민이 검출된 사료원료 및 사료 사용을 금지하고, 해당 업체가 자율적으로 폐기토록 행정조치
- 소비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식 어업인의 경영안정 대책 마련 및 안전수산물의 소비촉진 홍보 추진
  - 양식장의 물고기 출하·유통 동향 및 어업인 피해상황 등 파악
- 상시 식품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해 제도·조직 등 재편

- 축산물, 농산물, 수산물 등으로 분리된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안전관리 업무의 통합 추진

### 3 미국산 쇠고기 안전관리

#### 가 현황

- BSE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시행**(9.11)
  - BSE 발생국가의 30개월령 이상 쇠고기는 5년간 수입금지, BSE 발생시 일시적으로 쇠고기 수입중단 조치 가능
  - 최초 BSE 발생 또는 BSE 추가발생으로 수입 중단된 국가의 쇠고기를 수입할 경우, 국회 심의를 거쳐 위생조건 확정
- 미국이 승인 요청한 육류 수출작업장 22개소(신규 18, 재승인 4) 및 O-157 오염 작업장 1개소에 대한 **현지점검 실시**(9.7~21)
  - 조사대상 22개소 중 18개소는 30개월령 구분 도축, SRM 제거, 한국 QSA 프로그램 운용 등에 문제가 없어 승인 예정
    - 자진취소 1개소, 작업장 위생관리가 미흡한 3개소는 승인 유보
  - O-157이 검출되었던 작업장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
- 美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6.26) 이후 총 19,986톤의 美 쇠고기 검역을 완료, **5,539톤이 시중에 유통**(9.30 기준)
  - 국내검역대기 물량 및 미국내 선적대기 물량 외에, 새로운 수입위생조건에 따라 생산된 뼈 있는 쇠고기 등 12,283톤 수입
    - \* 수입위생조건 위반 사례(1건, 16톤, 검역증 미첨부)는 반송 조치
  - 원산지표시 특별 단속 결과(7.8~9.30) 미국산 쇠고기를 국내산

이나 호주산으로 허위 표시한 업체 32개소 적발·처벌

## 나 | 향후 계획

- 국내 검역관을 주미 대사관 및 주요 영사관에 파견근무 실시
  - 검역관(4명)을 미국대사관, 시카고·휴스턴·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에 파견
  - 미국 수출작업장의 위생조건 준수여부 현지점검 실시
  - 미국의 동물 위생 및 식품안전 문제에 관한 정보 수집 병행
- 美 쇠고기에 대해 단계별 검역절차에 따라 철저한 검사 실시
  - O-157 오염작업장(네브라스카비프사)의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에 대해 병원성 대장균 검사 실시

### 〈 미국산 쇠고기 단계별 검역 절차 〉

- 현장검사(공항만, 검역관)
  - 컨테이너 봉인번호, 온도 유지상태, 해동흔적 등 검사
- 역학조사(사무실, 검역관)
  - 수입위생조건 준수, QSA 프로그램 검증 작업장 생산표기 여부 등 확인
- 관능검사(검역시행장, 검역관 및 관리수의사)
  - 외부검사 → 절단검사 → 해동검사
  - 혀 및 내장(소장)은 모든 로트를 대상으로 로트별로 3개 상자 이상 해동검사 및 조직검사 실시, 특정위험물질의 유입을 철저히 차단
- 정밀검사(실험실, 검역관)
  - 최초수입 물량 및 무작위 표본검사방법을 통해 선정된 물량 대상
- 적부 판정(검역관) 이후 시중에 유통



## 4 |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

### 가 | 현 황

- 「농기계 임대사업」은 '03년부터 발작물 중심으로 추진 중
  - '07년 말 현재 53개소 설치('08 : 40개소)
    - \* 지역실정에 맞는 임대용 농기계를 구입, 농가에게 1~3일 동안 단기 임대
  -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활성화를 위해 지원 확대
    - 사업단가 : ('06) 3억원/개소 → ('07) 5 → ('08) 8
  - 임대농기계 보관창고 설치가 용이하도록 농지법시행령 개정('08.6.5)
    - 국가·지방자치단체·생산자단체도 농업진흥구역 내에 창고 설치 가능
- 농협은 「벼농사용 농기계임대 은행사업」 계획을 마련('08.6.30)
  - 전담조직인 「농기계 은행사업본부」 설치('08.8) 및 「영농관리 센터」 732개소 선정(목표 : 800개소)
    - \* 10.1부터 영농관리센터에서 중고농기계 매입 시작
  - 지역농협 대상으로 순회교육 및 농업인 홍보용 리플렛 제작·배포

### 나 | 향후 계획

- ◇ 금년 수확기부터 벼농사용 농기계 임대 추진
  - 농협에서 농가보유 중고농기계를 매입 후 임대사업에 활용
- ◇ 발작물용 농기계는 지금까지처럼 지자체(시·군) 중심으로 사업 확대
  - 재배작목의 다양성, 지역적 특성 등을 감안하여 추진

□ **논농업 분야는 금년 벼 수확기부터 임대사업 본격 실시**

○ 농협이 「**농기계은행 사업기금**」(1조원)을 조성·투자

- 「경제사업 활성화 자금」 투융자 금액 조정, 연차적 조성('12년까지)

\* 조성 계획 : ('08) 3,000억원 → ('09) 6,000 → ('10) 7,500 → ('11) 9,000 → ('12) 10,000

\* 1조원 용도 : 농기계 구입자금 5천억원, 운영자금 5천억원

- 농기계 은행사업 비중을 벼 재배면적의 10%까지 향상('13)

○ 트랙터(축산용 포함), 이앙기, 콤바인 중심으로 매입

- 중고 농기계 매입 후 여유자금으로 신규 농기계 공급

○ 사업방식은 임대, 농작업 대행, 혼합형(임대 + 농작업 대행)등 지역여건에 따라 운영

- 임대료는 중고농기계 구입금액의 80% 범위내에서, 농작업 대행료는 지역관행 수수료 수준에서 책정

○ 농기계 은행사업 홍보 및 사업지도 강화로 사업의 실효성 제고

□ **밭농업 분야는 수요확대 등을 감안, 사업량 확대 추진**

○ 콩, 인삼 등 기계화가 미흡한 품목의 농기계 임대사업 확대

\* 총 사업량 : ('08까지) 92개소 → ('12) 350 (시·군당 2~3개소 목표)

○ 농가수요에 맞춰 충분한 수량의 농기계 확보를 위해 사업비 상향조정 추진(현재 개소당 8억원 지원)

## 가 현황

- '86~'91기간중 「농지조성 주목적」으로 환경영향평가, 관계기관 협의 및 공유수면 매립면허 등을 거쳐 '91년 방조제 착공
  - \* 사업규모 : 40,100ha (토지 28,300ha, 담수호 11,800ha) ⇒ 서울면적의 2/3
  - \* 방 조 제 : 28,082억원 ('91~'07 : 23,285, '08 : 1,800, '09 : 3,336)
- '96년 시화호 오염을 계기로 '99년부터 2년동안 물막이공사를 중단하고, 「민관공동조사」를 거쳐 '01년 「친환경 순차개발」 방침 결정
- '06.4월 방조제 연결공사 완료후, 내년 완공목표로 마무리 중
  - 내부개발(방수제 등)은 내년말 착공목표로 기본설계 중
- 농지위주(농지 72%)의 「내부토지개발 기본구상」 수립('07.4) 및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공포('08.12.28발효)
- 「새만금 동북아 경제중심지로의 개발계획」에 따라 토지이용 계획 조정(농지72%→30) 타당성 연구용역 중('08.4~11)
  - 연구기관 주관으로 중간 연구내용에 대한 공청회 개최('08.9.5)
    - \* 제시의견 : 식량위기 등을 감안시 농지면적 확대, 수질보전 등 환경대책 보완검토 요구, 산업·관광용지 수요 적극 추정, 규제완화 및 핵심기업 유치 등

## 나 | 향후 계획

- 토지이용구상안 변경은 타당성연구(국토연구원) 결과 및 공청회 의견 반영, 관계부처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확정('08 하반기)
  - 기본구상 변경(안)에 대한 토지용도별 세부실천계획 수립
  
- 방조제는 '09년 완공 목표로 다기능부지 성토, 도로포장 및 안전시설 등 마무리 추진
  - 내부개발은 토지경계 형성을 위해 방수제 착공을 최우선 추진
    - \* 방조제 준공 ('09까지) → 내부방수제 공사 ('09말~'15) → 단지조성 ('10~'20)
  - 사업기간 단축, 토지이용계획 변경 등 변화된 여건에 맞게 새만금 환경대책 보완·추진
    - 침전지, 저류지, 인공습지 등 호내 수질개선대책은 내부개발 시기에 맞춰 추진('10~'15)
  
- 「새만금특별법」 발효에 맞춰 사업추진체계 정립 등 사전준비 및 미비점 보완
  - 환경대책 등 중요사항 심의 및 정책조정을 위해 총리실 소속으로 「새만금위원회」 신설(위원장 : 국무총리)
    - 농식품부내 (가칭)「새만금사업관리단」 설치 등 조직 체계 정립
  -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특례 조항 등을 반영한 「새만금 특별법」 개정 및 하위법령 마무리('08.12)

## 가 현황

- WTO/DDA 각료회의('08.7)에서 세부원칙\* 합의안 도출에 실패 후  
주요국(G7)\*\* 중심으로 협상 재개를 위한 비공식 협의 전개
  - 개도국 특별긴급관세(SSM), 관세단순화, TRQ신설, 면화  
보조금 등 잔여쟁점에 대해 논의
    - \* 관세·보조금 감축률 등 각 국별 이행계획서 작성의 기본지침
    - \*\* 미국, EU, 브라질, 인도, 일본, 호주, 중국
- 농업협상그룹 의장 주재 전체회의('08.10.1)를 시작으로 소규모  
고위급 협의 및 주요국 심층회의 등 협상이 전개될 예정
  - 수산물 관세 감축이 논의되는 비농산물 시장접근 협상그룹도  
협상 재개(수산보조금도 이후 논의가 재개될 전망)
    - ※ 미국 대선, 내년 인도 총선, EU 집행위원 교체 및 Lamy WTO 사무총장 임기  
종료 등 여건 감안 시 조기 타결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있음

## 나 향후 계획

- 잔여쟁점 논의에 대해 G10(수입국그룹) 및 G33(개도국 특별품목  
그룹)과 공조하여 적극 대응하고, 체계적인 협상동향 홍보 추진
  - 관세상한·특별품목·민감품목 등 우리측 관심사항 반영 노력
  - 수산분야에서는 EU·일본 등과 함께 금지보조금 범위 및  
수산물 관세인하폭 최소화 추진
- DDA협상 타결에 대비, 농어업분야 구체적 영향분석 작업 추진

## 가 추진 현황

- 교역확대를 통한 국가 성장전략에 따라 주요국들과 FTA 추진
  - 칠레('04), 싱가포르·EFTA\*( '06), 아세안('07)과는 협정 발효
    - \*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 한미 FTA는 '07.4.2 타결, 국회 비준동의안 제출 준비 중
- 캐나다('05.7 개시), 인도('06.3), EU('07.5)와는 연내 타결 목표로 협상 중
  - 캐나다, EU와는 쇠고기, 돼지고기, 고등어 등 주요 관심품목에 한미 FTA와 동일한 대우 허용 여부가 쟁점
  - 인도와는 제12차 협상(9.22~25, 서울)에서 실질적 타결
    - 양국 모두 농수산업의 민감성을 반영한 관세양허 계획 마련
    - \* 양국은 협정문과 양허안 내용 확정 후 최종 협상결과를 발표하기로 합의
  - 멕시코('07.12 개시), 걸프협력회의(GCC)\*('08.7)와는 협상 초기 단계
    - \* 사우디, 아랍에미레이트, 카타르, 쿠웨이트, 오만, 바레인 관세동맹
- 호주·뉴질랜드와는 예비협의를, 중국과는 산관학 공동연구 진행 중
  - 한·뉴(9.29~30, 서울), 한·호(10.13~15, 서울) 예비협의에서는 양측의 FTA 정책, FTA 체결 현황 및 협상 추진방안 등 논의
    - \* 뉴질랜드는 농산물을 포함한 모든 상품의 관세조기철폐에 관심 표명
  - 중국과의 산관학 공동연구('07.3 개시, 8차례 개최)에서는 농수 산업분야 보고서 문안정리에서 상호 입장차를 보임

- 우리는 농수산업 등 민감분야 보호방안에 관한 언급 포함 노력 중

## 나 향후 계획

- 정부차원의 FTA 추진전략을 기초로 국가별로 농업경쟁력, 교역현황 등을 감안해 면밀한 전략을 세워 대응
  - 캐나다·EU와는 금년내 협상 타결에 대비, 민감품목의 예외적 취급을 최대한 확보토록 적극 대응
    - 타결 시기보다는 내용에 중점을 두고 최종단계까지 노력 집중
  - 멕시코, 걸프협력회의(GCC)와는 농산물 교역이 많지는 않으나, 향후 FTA 대상국 확대에 대비해 신중하게 대응
  - 협상 개시를 검토하고 있는 호주·뉴질랜드·중국 등에 대해서는 사전에 농수산업의 민감성을 충분히 강조
- 주요 교역 농수산물에 대한 치밀한 협상전략을 마련
  - 쌀, 육류, 과일류, 일부 수산물 등 주요 민감품목은 양허제외, 장기관세철폐, 저율관세수입물량(TRQ), 농산물세이프가드(ASG) 등 다양한 예외적 취급 유형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
  - 농수산물 수출가능성이 있는 국가의 시장 진출 전략도 검토
- 소비자·농어업인 등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와의 공감대 형성 노력
  - 품목별 생산자단체, 학계, 전문가 등에 협상 추진상황을 설명하고, 양허 협상전략에 관한 활발한 의견교환 추진



## **IV. 2009 예산 및 기금 운용계획(안)**

**1****2009년도 예산(기금)안 개요**

---

□ 내년도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예산(안) 총지출(예산+기금) 규모는 14조 5,159억원으로 '08년 대비 4.0%(5,610억원) 증가

○ 예산 일반지출 : 9조 2,918억원('08대비 증 4.3%, 3,835억원)

○ 기금 일반지출 : 5조 2,241억원('08대비 증 3.5%, 1,775억원)

□ 신규사업(39개) 발굴, 사업폐지(6) 및 사업간 통합(75 → 30)

(단위 : 억원)

구 분	'08예산	'09예산(안)	증감	%
◆ 총지출(예산+ 기금)	139,549 (8,391)	145,159	5,610	4.0
◇ 예산 일반지출	89,083 (6,075)	92,918	3,835	4.3
◇ 기금 일반지출	50,466 (2,316)	52,241	1,775	3.5
I. 농림수산	135,237 (8,391)	140,772	5,535	4.1
□ 농업농촌	116,670 (6,028)	120,921	4,251	3.6
○ 농가소득 경영안정	31,306 (112)	30,101	△1,205	△3.8
○ 농촌개발 복지증진	13,121	14,169	1,048	8.0
- 농촌개발	9,541	10,102	561	5.9
- 복지증진	3,580	4,067	487	13.6
○ 양곡관리	13,763 (2,380)	14,684	921	6.7
○ 농산물유통	16,361 (2,316)	17,534	1,173	7.2
○ 농업체질강화	22,628 (1,220)	24,740	2,112	9.3
○ 농업생산기반	19,491	19,694	203	1.0
□ 수산업어촌	14,139 (2,363)	14,336	197	1.4
□ 식품업	3,757	4,813	1,056	28.1
□ 기타사업비	672	701	29	4.3
II. 기본적 경비	4,312	4,388	76	1.8

※ ( )외서는 '08추경시 추가 반영된 사업비임(추경 147,940억원), '08추경 대비 1.9% 감

## 2

## 2009년도 예산(기금)안의 주요 특징

- 산업체가 참여하는 산업화실용화 중심의 기술개발 및 농산업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림수산물 R&D 지원 강화**(1,944억원→2,183)
  - 수출농산물 및 식품기술 개발 등을 위해 R&D 지원(735억원→ 885)
  - 수산자원회복 및 수산생명공학기술 등 수산분야 투자 확대(830억원→922)
- 농수산물 유통구조개선 및 **소비지시장 확대**를 위한 신규사업 적극 반영(2,196억원)
  - 산지 유통조직 육성을 위해 농수산물 전문 **시·군 단위 유통 회사 설립 지원**(66억원)
  - 농수산물 **사이버 거래시스템 구축·운영** 신규 지원(30억원)
  - 소비지 직거래체계 구축 및 유통활성화를 위해 **산지·소비지 상생협력 지원**(2,077억원)
    - 대형유통업체 724억원, 유통센터 운영자금 200, 구매지원(가공) 592, 직거래매취지원 531
- **한미FTA 보완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뒷받침(14,897억원)
  - FTA 시행에 따른 소득피해보전, 폐업지원 소요예산 반영(1,905억원)
  - 유리온실 및 축사시설현대화, 브랜드육성 등 **품목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 확대(7,202억원)
  - 맞춤형농정 추진 및 첨단지식기술산업 육성 등 신성장 동력 확충을 통한 **체질개선 분야**에 5,790억원을 투입

□ 수입쇠고기 후속 조치로서 「축산업발전대책」추진에 필요한  
재원 확보(3,622억원→5,587)

○ 가축분뇨 자원화 또는 정화처리 시설 지원(651억원→671)

○ 사료가격 상승에 따른 경영비 부담 경감을 위해 2.5조원의 사료  
구매자금 지원을 위한 이차보전 소요 반영(954억원, 용자 1%)

□ 농수산물 수출 100억불 달성을 위한 기반확충 및 해외시장개척  
활동 적극 지원(5,134억원→5,470)

○ 수출 및 가공업체에 시설현대화 지원(807억원 → 1,036)

- 농식품(550억원 → 740), 수산물 가공(257억원→296)

○ 농수산물 수출증대를 위해 운영자금, 수출보험, 안전성 등 수출  
인프라 강화 위주로 지원 확대(5,334억원 → 5,368)

- 우수수산물 수출(1,366 → 1,400), 시설원예(522), 수출촉진(3,446)

□ 식품산업을 국가 주요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반조성에 집  
중투자(4,659억원→5,815)

○ 한식 세계화 지원, 국내산 식재료 사용 촉진을 위해 식재료  
가공처리 및 공동조리 시설비 지원(272억원)

○ 농어업인이 일정지분을 보유하는 식품제조기업(5개소)에 대한  
경영안정자금 용자 지원(100억원)

○ 한국산 천일염의 세계적인 명품화를 위한 시설 지원 신설(33억원)

\* 해주 : 110개소, 소금창고 : 15개소, 산지종합처리장 : 2개소

## V. 입법 추진 계획

□ 정기국회 제출계획 법률안 : 제·개정 18건

법 률 명	주 요 제·개 정 내 용
1.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 * 국회제출예정('08.10)	○ 농업경영체 맞춤형 지원을 위한 '농업경영정보등록제' 및 '농업소득안정직불제도' 시행 근거 마련 ○ 후계 농업 인력의 육성 및 경영규모화 지원
2. 쌀소득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개정) * 국회제출예정('08.10)	○ 직불금 지급상한 설정, 부당신청 제재 강화 등 부당지급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07년 감사원 지적사항)
3. 임업 및 신촌진흥추진에 관한 법률(개정) * 국회제출예정('08.10)	○ 임업진흥권역 지정변경 또는 해제요건의 구체화 ○ 임업진흥권역 대체지정제도의 폐지
4.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제정) * 국회제출예정('08.10)	○ 농림수산식품분야 과학기술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 농림수산식품 연구관리기관 출연근거 마련
5. 수산업협동조합법(개정) * 국회제출예정('08.10)	○ 수협중앙회장 비상임 명예직화 및 전문경영인 도입 ○ 수협중앙회 지도·경제사업 부문 통합
6. 수산자원관리법(제정) * 국회제출예정('08.10)	○ 수산자원 회복계획 수립, 수산동식물 포획·채취 금지 등 수산자원의 종합적·체계적인 관리제도 마련
7. 산림보호법(제정) * 국회제출예정('08.10)	○ 산불방지계획 수립, 피해복구 등 산불방지체계화 ○ 산림병해충 예방 및 방제 체제 강화
8.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 * 국회제출예정('08.11)	○ 보안림 지정·해제 요건 완화 ○ 녹색자금의 기금전환에 따른 기금 신설
9.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개정) * 국회제출예정('08.11)	○ 농촌형 역모기지 도입, 해외농업개발 투자 등 농지관리기금의 사용범위 확대

법 률 명	주 요 제·개 정 내 용
10. 친환경농업육성법(개정) * 국회제출예정('08.11)	○ 친환경농산물 인증유형(유기, 무농약, 저농약) 중 '저농약농산물' 인증 폐지(단, 기존 저농약 인증 농가는 '15년까지 유예기간 부여)
11. 한국농업대학설치법 (개정) * 국회제출예정('08.11)	○ 학사학위가 수여되는 전공심화과정 운영 ○ 대학 소속을 농촌진흥청에서 농림수산식품부로 변경
12.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들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개정) * 정기국회제출예정	○ 한미FTA에 대응하여 축사시설현대화 등 농어업 경쟁력제고 지원대상 추가 ○ 'FTA이행지원기금'의 지원범위를 한칠레FTA에서 한미FTA 등 모든 FTA로 확대
13. 농수산물유통공사법 (개정) * 국회제출예정('08.11)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감독 규정을 구체화
14.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개정) * 국회제출예정('08.11)	○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관측위원회와 도매 시장제도 개선심의회 폐지 ○ 경매사자격시험의 자격검정을 전문기관에 위탁
15.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개정) * 국회제출예정('08.11)	○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백두대간보호위원회」 폐지 ○ 백두대간보호지역의 토지매수시에 그 정착물을 포함하여 매수할 수 있도록 개선
16.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에 관한 특별법(개정) * 국회제출예정('08.11)	○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 실무위원회」 폐지
17. 여성농어업인육성법 (개정) * 국회제출예정('08.11)	○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여성농어업인육성 정책자문회의」 폐지
18. 원양산업발전법(개정) * 국회제출예정('08.11)	○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원양산업발전심의회」 폐지

※ 농지법, 농업협동조합법, 농업기계화촉진법, 농작물재해보험법 등 12월 국회제출 예정



## 2007년 국정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1. 농촌 이주여성의 사회·문화적 동질성 형성을 위해 농촌특성에 맞는 교육과 이주여성을 농촌 인력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강구</p>	<p><input type="checkbox"/> 농촌결혼여성이민자의 영농활동 지원을 위해 각 도별 기초 영농교육(9개도, 540백만원) 진행 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내용 : 농업일반, 지역농업, 농기계사용법, 현장체험, 소양교육 등</li> <li>◦ 각 도별 30명, 연간 60 ~ 80시간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7년에는 300명의 교육도우미가 1,800 농가를 개별 방문, 한국어 지도 등 농촌 정착 지원</li> </ul> </li> </ul> <p><input type="checkbox"/> 미래 농업인력 육성을 위한 '이주 여성 농업인 육성 지원사업' 도입('09)</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의 우수여성농업인을 활용, 영농기술 교육 및 농촌적응을 지원하는 1:1 맞춤형 영농정착 지원</li> </ul> <p><input type="checkbox"/> 농촌다문화 후계세대 중장기 육성방안 마련('08.1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촌다문화가정의 실태조사를 통해 단계별 맞춤형 교육 실시 방안 등</li> </ul>

<p>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p>	<p>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p>
<p>2. 유휴농지 발생실태를 파악하고, 유휴농지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작여건이 어려운 농지가 휴경 또는 유휴화 (매년 약 4천ha 내외)되고 있어, '08.3월부터 한계농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사기간 : '08.3 ~ '09.6</li> <li>◦ 농업진흥지역밖 농지 중 영농조건이 불리하여 생산성이 낮은 농지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균경사율이 15% 이상인 농지</li> <li>- 집단화된 농지의 규모가 2ha 미만인 농지</li> </ul> </li> </ul> </li> <li>□ 유휴농지 중 개발용으로 적절한 토지는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관련법령 개정 등 완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개정('08.1.30), 한계농지 정비 상한면적을 10ha에서 20ha 확대</li> <li>* 관련조항 :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71조</li> </ul> </li> <li>□ 일부 유휴농지는 경관보전지역으로 활용하기 위한 제도개선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관보전직불제 지원 확대 및 최소지원면적 기준 완화('07.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관보전직불제 시행면적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7)800ha → ('08)3,252ha</li> </ul> </li> <li>- 종전 : (최소)1ha, (마을단위)3ha 이상 →</li> <li>개선 : (최소) 0.5ha, (마을단위)2ha 이상</li> </ul> </li> </ul> </li> <li>□ 향후, 한계농지의 소유제한 폐지 및 전용 절차 완화(농지법 개정)를 통해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li> </ul>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3. 동절기 작물과 하계작물 지원단가 인상 등 경관 보전직불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p>	<p><input type="checkbox"/> 경관보전직불제 개선방안 마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관작물 적용범위 확대 ('08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전) : 메밀, 유채, 코스모스, 해바라기, 목화, 연, 자운영, 야생화</li> <li>- (개선) : 초화류 전반으로 확대</li> </ul> </li> <li>◦ 최소면적기준 완화 ('08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전) : 최소 1ha이상, 마을 3ha이상</li> <li>- (개선) : 최소0.5ha이상, 마을 2ha이상</li> </ul> </li> <li>◦ 경관작물재배관리기준 강화 ('08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필지별 배수로설치 및 필지규모 0.5ha이상은 탐방로 설치 의무화</li> </ul> </li> </ul> <p><input type="checkbox"/> '09년부터 마을내 경관개선 활동에 대한 지원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관작물 재배 외에 마을주민 참여를 통한 경관보전 활동비 추가지원</li> <li>※ 꽃길조성, 마을주변 공터가꾸기 등</li> </ul>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4. 농업재해의 효율적 지원을 위해 농작물재해보험, 가축공제, 농업시설 보험을 통합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업관련 재해보험 및 공제제도의 통합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보험개발원, '07.12월)</li> <li>□ 농작물재해보험, 가축공제,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농어업용 시설관련 보험을 「농어업재해보험법」으로 통합 법제화 추진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정안 작성, 관계부처 협의('08.6월), 입법 예고('08.9월),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08.9월~)</li> <li>◦ 농어업시설보험 중 온실, 축사는 소방방재청과 업무조정 협의 중</li> </ul> </li> <li>□ 농작물재해보험법 전부개정안 국회제출 ('08.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제·개정 공포 시행('09.7월)</li> </ul> </li> </ul>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5. 농약의 용기와 상표디자인, 용기뚜껑 등에 관한 규정이 미비 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약 용기 등의 안전사용에 관한 규정 미비 등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07.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약의 포장지 표기관련 규정 운영 문제 ⇒ (현행)민간자율→(개선)국가 고시로 개정</li> <li>◦ 농약라벨의 독성 표기 필요 ⇒ 보통독성 등 독성이 낮은 농약의 경우에도 주의사항 표기 강구</li> <li>◦ 농약 용기의 안전뚜껑 사용 규정 미비 ⇒ 농약 용기 안전 병마개 사용 방안 강구</li> </ul> </li> <li>□ 농약안전관리 강화 관련 농약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련기관단체 의견수렴, 협의회 개최(1.11)</li> <li>◦ 시행규칙 개정('08.7.28) 후 시행령 개정 추진('08.9, 법제처 심사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포장지 표기에 관한사항 국가기관 관장</li> <li>- 농약의 취급제한기준에 안전용기를 추가</li> </ul> </li> </ul> </li> <li>□ 시행령 개정에 따른 농약 용기 안전 병마개 규정(농진청) 고시('08.10월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약의 포장지 표기형식 권장기준□□(농진청) 개정('08.10월중)으로 독성이 약한 농약에도 주의사항 표기</li> </ul> </li> </ul>

<p>시정·처리 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p>	<p>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p>
<p>6. 유기질비료 지원방식을 종전의 화학비료 지원사업처럼 농민이 사용한 물량 전체를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p>	<p><input type="checkbox"/>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비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8년도 화학비료가격인상에 대응, 유기질비료 사업비를 540억원에서 1,160억원으로 620억원 확대</li> <li>- 물량 (당초) 154만톤 → (확대) 200</li> <li>- 단가 (당초) 700원/20kg → (확대) 1,160</li> <li>* 추경으로 사업비 확보</li> <li>◦ 내년 예산도 농가수요와 사업 내실화를 감안하여 200만톤 1,160억원 확보 추진</li> </ul> <p><input type="checkbox"/> 유기질비료 지원예산 공급체계 개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8년부터 자금관리주체를 농협중앙회에서 지자체로 변경하여 사업 내실화 도모</li> </ul> <p><input type="checkbox"/> 유기질비료 지원 효율성 제고 방안 마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문가 및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T/F 구성·운영중 ('08.8~)</li> </ul> <p><input type="checkbox"/>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지속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업인 등 정책고객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개선사항은 익년도 지침에 반영</li> </ul>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7. 우리밀 지원 확대를 포함한 식량자급률 확대방안 마련 등 국제 곡물가격 급등에 대응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 곡물가격 상승 대응 TF」 구성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량대책반, 사료대책반, 해외농업 개발반 등 3개의 실무작업반 운영</li> <li>- 회의 개최(4회)</li> </ul> </li> <li>□ 농가 특별 사료구매자금 지원 확대 : 1조원 → 1.5조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리인하(3%→1%), 상환기간연장, 지원 대상 축종 확대 등 개선</li> </ul> </li> <li>□ 긴급할당관세(무관세) 적용품목 확대 (4.1, 8.7, 2차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관세 품목 : 옥수수, 밀, 비료 등 39개 품목</li> <li>* 무관세 적용시 연간 지원효과 : (당초) 1,008억원 → (개선) 2,442</li> </ul> </li> <li>□ 국산우리밀에 대한 생산소비확대를 위해 계약재배 면적 확대 및 수매지원 예산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약면적 : ('07) 1,928ha → ('08) 2,500 (30% 증)</li> <li>◦ '08년도 국산밀 민간업체 수매자금 예산 증액 : (당초) 9억원 → (조정) 40억원(31억원 증)</li> </ul> </li> <li>□ 국제곡물 가격의 사전예측력 강화를위해 국제곡물분야 조기경보시스템(EWS : Early Warning System) 구축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8.6 ~ 연구용역 추진, '08.11월부터 지수 산출 예정</li> </ul> </li> </ul>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제2녹색혁명(겨울철 유희농지 활용)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겨울철 노는 논을 활용한 식량·사료작물 자급률 제고 및 농가소득 향상</li> <li>* '12년까지 겨울철 작물재배면적(현재 34만 ha)을 66만ha로 확대</li> </ul> <p>□ 쌀 산업 경쟁력 향상 및 경영개선대책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들녘단위 고품질 쌀 최적경영체 200개소 육성 : '09년 10개소, 14년까지 200개소</li> <li>◦ 전국 쌀 생산재배 틀을 들녘별로 개편 (이용의 규모화 추진)</li> <li>◦ 들녘별 쌀 생산·유통협의체를 구성 (조직화를 추진)</li> <li>* 규모화 되고 RPC와 연계된 들녘에 개소당 2~3억원 지원('09년 예산 확보)</li> </ul> <p>□ 수입 곡물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세제 개선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입 곡물 및 사료용 원료 할당관세(무 관세화) 계속 추진</li> <li>◦ 사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 연장('08년말→'11년말)</li> <li>◦ 사료 의제매입세액공제율 확대 : (현행) 2/102 → (확대) 5/105</li> </ul> <p>□ 식량 수급위기에 대응하여 콩의 상시비축 규모 확대</p> <p>□ 해외농장 개척 지원 등 국제시장에서 안정적 곡물확보 능력 제고</p>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8.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태풍, 집중호우로 인한 품질 이하 벼에 대한 정부차원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p>	<p><input type="checkbox"/> '07년산 품질 이하벼 매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연재해로 인한 품질 이하벼 특별 매입 요구에 따라 매입요구량 파악 및 매입지침 시달('07.11.27)</li> <li>- 품질 이하벼 시도 조사량 : 1,785톤(조곡)</li> <li>◦ 품질 이하벼 매입 완료('07.12월)</li> <li>- 매입실적 : 313톤(조곡, 계획대비 17.5%)</li> <li>※ 매입실적이 저조한 사유 : 당초 피해 예상량을 지자체에서 과다요구</li> </ul> <p><input type="checkbox"/> 벼 재해보험 도입을 위한 공청회 개최 (농업금융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8.9.3 ~ 4일 실시, 광주·충남, 200여명</li> </ul> <p><input type="checkbox"/> 피해벼 발생시 조제·정선 지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품질 이하벼에 대하여 철저한 조제·정선 지도를 통하여 규격품 이상이 출하될 수 있도록 지도</li> </ul> <p><input type="checkbox"/> 품질 이하벼 발생시 매입방안 마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규격 미달품 발생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추가매입 등 대책 마련 추진</li> </ul> <p><input type="checkbox"/> 벼에 대한 농작물 재해보험 시범사업 도입(중장기 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9년부터 주산지 시군을 대상으로 추진</li> </ul>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9. 수입쌀 부정유통을 근절시키기 위한 대책과 단속 방안을 마련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입쌀 국산 둔갑판매 방지를 위한 부정유통방지 대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8 수입쌀 부정유통 방지대책 조기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입쌀 원산지표시 관리 특별대책 수립(1월)</li> <li>- 단속상황실 설치(2월) 및 단속 추진</li> <li>- 명예감시원 역량증진 교육 조기실시(2~3월)</li> <li>- 특별사법경찰관리 소집 교육 : 400명(2월)</li> </ul> </li> <li>◦ 농관원에 원산지표시 특별 단속반 219개반, 명예감시원 25천명을 편성, 연중 가동 판매 완료시까지 집중단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 적발건수 : ('07) 24건 → ('08.9) 25</li> </ul> </li> <li>◦ 수입쌀 「유통관리시스템」 구축·운영(농관원 본원 및 각 지원 11개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낙찰정보, 지도·단속과정에서 조사된 판매 상황을 입력, 낙찰부터 최종 소비자까지 유통 정보를 파악 단속업무에 활용</li> </ul> </li> </ul> </li> <li>□ 수입쌀 유전자분석법 개발 확대 등 원산지 식별 과학화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산 등 벼 품종 DNA마커 개발 완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6년) 14점 → ('07) 84(중국산) → ('08) 111(중국 94, 미국 11, 호주 6)</li> <li>- 국산쌀 전품종(125개)에도 DNA 식별 가능</li> </ul> </li> <li>◦ 쌀 품종 식별 유전자분석법(SNP법)을 개발하여 특허 등록(농관원)</li> </ul> </li> <li>□ 양곡관리법 위반사범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권 수사 권한 부여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별사법경찰관리법 개정('08.6) 시행('08.9)</li> </ul> </li> <li>□ 음식점 쌀 원산지표시제 조기 정착도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입쌀의 대량소비처인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허위표시 적발건수 : ('08.9) 3건</li> </ul> </li> </ul> </li> </ul>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10. 친환경농산물인증 사후 관리에 관한 대책을 마련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산유통에 대한 단속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기 1회이상 생산과정 조사실시 및 특별조사 실시</li> <li>- 상시조사 실적 : 16,053건('07.10 ~ '08.8)</li> <li>- 특별조사 실시 : 2회('07.12, '08.5)</li> </ul> </li> <li>※ 부정행위자에 대한 처벌 및 제재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친환경농업육성법을 개정하여 처벌규정 강화</li> <li>- 허위표시뿐만 아니라 허위광고행위도 처벌 대상에 포함</li> <li>- 부정행위 등으로 인증처분을 받은 경우 1년간 인증신청을 제한</li> </ul> </li> <li>□ 인증자에 대한 교육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증농가 준수사항 배부 : 10만부</li> <li>◦ 인증농가교육 : 1,328회('07.10 ~ '08.8)</li> </ul> </li> <li>□ 친환경농산물 안전성 조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석성분 및 조사건수 확대</li> <li>- 분석성분 확대 : 84성분 → 102</li> <li>- 조사건수 확대 : 9천건 → 12</li> </ul> </li> <li>□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과정 단속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증품 부정유통차단을 위한 기획단속실시</li> <li>◦ 소비자단체합동으로 안전성관리실태조사</li> <li>◦ 수입 유기농산물 일제점검</li> </ul> </li> </ul>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11. 쌀 목표가격을 현행 대로 유지하고 적용기간을 연장하는 등 쌀소득보전직불제의 개선을 통해 안정적인 농가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것.</p>	<p><input type="checkbox"/> 쌀소득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개정('08.3.21)하여 현행 목표가격(170,073원/80kg)을 2012년까지 5년 연장함</p>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12.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 및 보상대책, 피해농가의 재해인정 및 관련법 개정 등의 피해 보상방안 강구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 대책』 수립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 농림부, 환경부, 경찰청 합동</li> </ul> </li> <li>□ 유해 야생조수 구제대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확기 야생동물피해방지단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간 및 : ('07) 3(8~10월) → ('08P) 3(8~10월)</li> </ul> </li> <li>◦ 포획허가제도 운영(연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허가현황 : ('06)12,075 → ('07)10,081</li> </ul> </li> <li>◦ 순환 수렵장 확대 설정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7) 25개 시·군 → ('08P) 18개</li> </ul> </li> </ul> </li> <li>□ 피해 예방시설 설치 및 피해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해예방 시설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FTA기금 과수분야 지원(농림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07) 59억원→('08P) 114</li> </ul> </li> <li>- 피해예방 시설비 지원(환경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06) 4.5억→('07) 5→('08) 10</li> </ul> </li> </ul> </li> <li>◦ 피해보상 지원 조례 제정(지자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5) 15개 시·군→('06) 49→('07) 49</li> </ul> </li> </ul> </li> <li>□ 농식품부, 환경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수립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 대책』 지속 추진</li> <li>□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 등 예산지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 확대 및 수렵장 운영수입금을 피해예방시설설치에 사용(환경부)</li> <li>◦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방지 지원을 위해 '09년 신규사업 추진(농식품부)</li> </ul> </li> <li>□ 대상재해에 조수해(鳥獸害)를 포함하는 농작물 재해보험법 전문개정 추진 중</li> </ul>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13. 농기계 지원 및 사후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8년 농림사업시행지침에 사후관리 개선 방안을 반영, 시달('07.12월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중용자 방지를 위해 제조번호 전산입력 대상 농기계 추가(2개 기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추가 기종 : 조사료용 결속기 및 베일러</li> </ul> </li> <li>※ 입력대상 : (종전) 11개 기종 → (보완) 13</li> </ul> </li> <li>◦ 유통질서를 문란시 제재조항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의로 규격·구조를 변경하여 농가 피해 발생 시 3년간 용자지원 제외</li> <li>※ 임의로 구조 등을 변경한 전기식 농산물 건조기를 용자대상에서 제외('08.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9개 업체, 12개 모델</li> </ul> </li> </ul> </li> <li>□ 지역농협 대출자에게 사후관리 개선 내용 지도, 교육('08.2 ~ 5월, 2.2천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조업체, 농기계대리점 및 지자체 공무원 교육(('08.1 ~ 2월, 3회)</li> </ul> </li> <li>□ 전기식 농산물건조기, 전기식 농용난방기의 용자지원 자격 강화('08부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업공학연구소의 형식검사 합격품만 지원</li> </ul> </li> <li>□ 농기계 부정대출 실태조사 지속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6 ~ '07년도 대출실태를 조사, 12명 부당사용자 등록 등 제재 중</li> </ul> </li> <li>□ 농기계 유통실태 지속 조사(전기식 농산물 건조기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필요시 용자대상 제외 등 제재</li> </ul> </li> </ul>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향후 추진계획
<p>14. 국민건강을 위해 후대 교배종 검사 등 바이오 안전성 대책을 강구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LMO법)시행('08.1.1 ) 대비, 후대교배종에 대한 환경위해성 심사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경위해성 심사기관인 농진청으로하여금 후대교배종에 대한 환경위해성평가 추진 시달('07.10.30)</li> <li>- 후대교배종 옥수수·면화 17종 심사완료 (사료용 전체 44건 심사, '08. 9월 현재)</li> </ul> </li> <li>□ 농업용LMO 안전관리를 위한 'LMO관리 시뮬레이션' 실시('07.11.20-12.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8개 LMO수입업체 참여</li> </ul> </li> <li>□ 농업용LMO 안전관리제도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업용 LMO의 수입·생산승인 및 취급 관리 고시·예규 제정('07.12월)</li> </ul> </li> <li>□ LMO 안전관리 정보연계 시스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업용LMO 관리기관간 연계시스템 구축 ('08.8월)</li> </ul> </li> <li>□ 수입통관물량에 대한 LMO 검사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17건 수입검사 실시('08. 7월 현재)</li> </ul> </li> <li>□ 농림수산물용LMO 안전관리 세부추진계획 수립·추진('08.10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LMO개발에서 유통까지 유형별 세부관리 계획 수립·추진</li> </ul> </li> <li>□ LMO 검정기술 개발(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 수입가능한 LMO에 대한 검정기술 개발 추진</li> </ul> </li> </ul>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15. 유채시범단지 등 바이오 에너지 개발에 대한 확대 방안을 강구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바이오디젤용 유채재배 확대 가능성 점검을 위해 '1년차 시범재배('07)'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7.10 ~ '08. 6, 1,500ha(전남·북, 제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남 500ha(보성 250, 장흥 250)</li> <li>- 전북 500ha(부안 500)</li> <li>- 제주 500ha(제주시 310, 서귀포 190)</li> </ul> </li> </ul> </li>   <li>□ 경제성 확보를 위한 품종,재배기술,기계화 연구개발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료용 품종(고올레인산, 다수성 등) 개발</li> <li>◦ 유채전용 파종기, 수확기 등 개발 등</li> </ul> </li>   <li>□ 바이오디젤용 유채의 국내 생산·공급 체계 구축을 위해 2년차('08) 시범사업 추진 중('08.10~'09.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범재배 면적 : 1,500ha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북 500ha, 전남 500, 제주 500</li> </ul> </li> <li>◦ 시범사업 기간중 유채의 경제성, 환경성 농가소득효과 등 계측 및 생산기반 마련</li> <li>◦ 국산원료 공급 확대를 위한 자원 확보 방안 등 관계부처 협의</li> </ul> </li>   <li>□ 바이오디젤 산업화 촉진을 위한 실용화 연구·개발 지속 추진('09~'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올레인산·조숙·다수성 유채품종 및 농기계 최적 작부체계 등 생력화 시스템 개발</li> </ul> </li> </ul>



<b>시정·처리요구사항</b> (건의사항 포함)	<b>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b>
<b>16. 농식품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한 외신보도에 대한 모니터링 및 대응책을 마련할 것</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농식품 효능 관련 외신보도에 대한 대응 시스템 구축을 위해 관계기관 회의 개최('08.1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신보도에 대한 모니터링 및 대응을 위한 계획 수립(08.1월)</li> <li>◦ 농산물 수출 및 유통을 담당하고 있는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외신보도에 대한 모니터링 및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월별 지역별 외신보도 모니터링 결과를 농식품부 등 관계기관에 송부</li> <li>- 농수산물유통공사의 해외지사, 정보 서비스 본부 등을 적극 활용</li> </ul> </li> </ul> </li> <li>□ <b>관계부처 합동 협력팀 구성('08년1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청, 농산물 품질관리원, 수의과학검역원, 농촌진흥청, 농산물유통공사 구성</li> </ul> </li> <li>□ <b>모니터링 실적</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8.2월~7월 기간 동안 미국, 일본, 중국, 유럽 등에서 보도된 기사 중 농식품 효능 관련 외신 보도 85건 모니터링</li> </ul> </li> <li>□ <b>농식품 효능 관련 외신보도 대응을 위한 협의회 개최('08.11)</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9년 농식품 효능관련 외신보도에 대한 모니터링 계획 협의</li> </ul> </li> <li>□ <b>농식품안전정보시스템을 통해 국민들에게 정보 제공 추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니터링 결과를 취합하여 농식품안전정보 시스템(agros)를 통한 홍보 추진</li> </ul> </li> </ul>

<p>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p>	<p>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p>
<p>17. 고속도로 휴게소 등을 활용한 농산물직판장 확충방안을 마련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본의 미찌노에키(道の驛) 실태조사 ('07.11월, 주일농무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본 미찌노에키는 중앙정부가 아닌 지자체 및 지역농협 중심으로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7.10월 현재 전국 868개소 설치</li> </ul> </li> <li>◦ 일본도 운영이 잘 되는 곳은 소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농산물판매장 외에 체험시설, 편의시설 등을 갖춰야 함</li> </ul> </li> <li>◦ 우리나라도 기존 고속도로 및 국도의 휴게소를 활용, 지역특성에 맞는 운영방식 개발 필요</li> </ul> </li> <li>□ 관계자협의회 개최('07.12.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참석 : 직판장운영자, 지자체담당, 농협, 농림부 등 14명</li> <li>◦ 국도 및 지방도 휴게소 농산물직판장 설치 방안 협의</li> </ul> </li> <li>□ 관계기관(건교부 및 한국도로공사)에 운영 개선안 협조 요청('07.12.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고장으뜸산품 판매점 설치 운영기준 및 내고장으뜸산품 판매점 운영표준협약서 개정의견 송부</li> </ul> </li> <li>□ 휴게소내 내고장 으뜸산품 판매점 운영 제도 개선방안 마련(한국도로공사, '08.1.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판매점 설치 기준 완화, 가설대·홍보물 등 임시시설 설치허용, 판매가능 품목 확대 등</li> </ul> </li> </ul>

<p>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p>	<p>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고속도로 농산물 직판장 홍보 계획 수립 (4.28) 및 홍보예산 배정(5.15)</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산물 직판장 입간판 설치 및 다양한 특판 행사 등</li> <li>◦ 농협중앙회에 80백만원 배정</li> </ul> </li> <li>□ <b>직판장 39개소에 표준형 유도간판 일괄 제작하여 설치(9.12 완료)</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속도로 휴게소 직판장(78개소)의 50%에 해당하며, '06년도 매출액 순으로 선정 (크기 : 1m×2m)</li> </ul> </li> <li>□ <b>고속도로 휴게소 농산물 직판장 TV홍보 실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BS “뉴스와 생활경제”를 통해 9회 방송</li> </ul> </li> <li>□ <b>고속도로 휴게소 농특산물 특판행사 실시 (10월중)</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별 3개소(강원, 전남, 경북)에서 해당 지역 농특산물 판매</li> </ul> </li> </ul>

<p>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p>	<p>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p>
<p>18. 농식품 저온유통 시스템 구축을 통한 농식품의 안전성과 품질향상 방안을 강구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8년부터 원예농산물 저온유통 체계 구축을 위한 기본방침 확정('07.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8년 예산 : 30억원(보조 23, 융자 7)</li> <li>◦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지 조직에 예냉시설, 저온저장고, 저온 선별장 설치 등 지원</li> <li>- 운송차량(냉장탑차) 지원</li> <li>- 소비지 도매시장 저온경매장 등 지원</li> </ul> </li> </ul> </li> <li>□ 세부사업 추진계획 수립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시행계획 공고 및 사업대상자 선정 (1 ~ 5월)</li> <li>* '08년 사업확정 내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지시설 : 1,565백만원(22대)</li> <li>- 냉장탑차 : 180백만원(18대)</li> <li>- 소비지 시설 : 948백만원(2개소)</li> <li>- 기술자문·D/B구축·홍보 : 307백만원</li> </ul> </li> </ul> </li> <li>□ 사업시행 지침 및 추진절차에 따라 사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미 FTA 국회 비준 즉시 예산 집행</li> </ul> </li> </ul>

<p>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p>	<p>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p>
<p>19. 마늘산업 경쟁력 제고 대책의 후속대책을 강구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늘 주산지에 “원예 브랜드 육성 사업” 선정, 3년간 지원('08~'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8선정 : 2개소(서산·태안, 신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소당 사업비 : 200억원(국고보조 19%, 용자 53%, 지방비 21, 자부담 7%)</li> </ul> </li> <li>* 생산자조직체(브랜드 경영체) 주도로 품질 고급화, 물량의 규모화를 통해 시장교섭력이 큰 파워브랜드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조직화, 브랜드관리, 생산·유통 기반시설 등 포괄 지원</li> </ul> </li>   <li>□ 수매사업 확대로 수급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협 계약재배 사업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7) 36.7천톤 → ('08) 48.4 [32% 증]</li> </ul> </li> <li>◦ 민간수매자금 지원(용자)으로 성출하기 수급 및 가격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8예산 200억원 전액 집행</li> <li>* 수매물량 21천톤(53개업체)</li> </ul> </li> </ul> </li>   <li>□ 수입정보분석 시스템 운영(유통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간도입 기준가격조사, 수입정보검증회의 운영 등 불·편법수입방지</li> </ul> </li>   <li>□ 원예브랜드육성 지원, 계약재배, 수매지원 등 경쟁력 제고대책 지속 추진</li>   <li>□ 현 마늘전국협의회(73개지역농협)를 조직화(법인화)하여, 자조금사업 등 생산자단체의 수급조절 역량 강화</li>   <li>□ 산지가격이 최저보장가격 이하로 하락시 정부수매 제도는 유지 방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저보장가격 : 1,280원/kg(한지형 2,050원)</li> </ul> </li> </ul>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20. 수입육의 부정유통 방지를 위하여 수입 소·돼지·닭의 원산지 표시 의무화 방안을 강구할 것</p>	<p>□ <b>음식산물품질관리법 개정('08.5.22)</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업소 : (현행)300㎡이상 → (개정) 모든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및 집단급식소</li> <li>◦ 대상품목 : (현행)쇠고기 → (개정)돼지고기·닭고기, 배추김치</li> <li>◦ 대상업소 확대는 '08.6월, 대상품목 확대는 '08.12월부터 시행</li> </ul> <p>□ <b>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조기정착을 위한 음식점·소비자 홍보 및 단속 강화</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음식점 원산지표시제에 대한 홍보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리후렛, 안내책자, 포스터 배부 등</li> </ul> </li> <li>◦ 농관원·지자체·명예감시원과 공동으로 특별단속반을 편성·운영</li> <li>◦ 소비자생산자 단체 회원 등으로 구성된 명예감시원 운영 및 신고포상제 활성화로 민간 감시기능 제고</li> </ul>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21. 국민건강 안전과 축산 농가 보호를 위해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중단 여부에 대해 신중히 검토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안 합의 ('08.4.18) 후 국내 여론을 반영, 미국과 추가협상(6.9 ~ 19) 등을 통해 수입위생 조건 보완·고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 소비자들의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 중단(한국 QSA 프로그램 운영 : 민간 자율규제 + 정부 보증 방식) 등</li> </ul> </li> <li>□ 새로운 수입위생조건 및 검역절차에 따라 철저한 검사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장검사 → 역학조사 → 관능검사 → 정밀검사</li> <li>○ 개봉검사 비율 확대(1→3%), 허·내장은 매 로트별 해동검사 및 조직검사 실시</li> </ul> </li> <li>□ 국내 검역관 미국 파견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 현지에서 식품안전 문제 등에 관한 정보 수집과 미국 정부기관과의 협조</li> </ul> </li> <li>□ 대장균 오염 등 미국내 리콜정보 입수 및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향후 리콜사태 등 발생시 식품안전 위해 정도와 미국측 조치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 실시</li> <li>* 최근 문제시된 네브라스카 비프사에서 수입되는 쇠고기(제품)에 대해서는 전량 병원성 대장균 검사 실시중</li> </ul> </li> </ul>

<p>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p>	<p>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p>
<p>22. 소 브루셀라병 예방 접종, 환경문제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p>	<p>□ 지속적인 방역대책의 추진으로 브루셀라병 발생 및 감염율이 크게 감소함에 따라 예방접종 도입 시기는 아니라고 판단</p> <p>◦다만, 상황 악화시 예방접종이 가능하도록 예방약의 안전성 등 검증시험 추진 ('06.11 ~ '09.4)</p> <p>※발생동향 및 감염율: ('07)2,333건 12,547두, 1.07% →('08.8)1,264건 5,934두, 0.67%</p> <p>□ 감염소의 살처분 매몰에 따른 환경오염 해소를 위해 전용 랜더링시설 설치 운영</p> <p>◦'07년 2개소(충북), '08년 2개소(경기1, 전북1)</p> <p>□ 브루셀라병을 근절하기 위한 2단계 방역 보완대책 시행('08.1.1부터)</p> <p>◦사육중인 1세이상 암소는 전두수 개체별 정기검사 의무화 : 연1회</p> <p>◦거래·도축되는 모든 소(거세 수소 제외)는 검사증명서 휴대 의무화</p> <p>◦검사증명서 유효기간을 3→2개월로 단축</p> <p>◦검사증명서 서식을 보완, "매매인"란을 신설하여 매매인 표시 등</p> <p>※살처분 보상금 상향조정('08.7.1부터) : 시세 60% → 80%</p> <p>□ '13년 브루셀라병 근절을 목표로 방역상황을 수시로 점검, 문제점 보완 등 조치계획</p>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23. 한·미 FTA로 인한 소·돼지 등의 산지가격 하락에 대비하여 축산소득보전직불제 도입 등 축산산업 발전대책을 마련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미 FTA체결에 따른 농업부문 국내 보완대책 마련('07.1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축종별 경쟁력 강화대책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브랜드 육성, 이력제 도입, 조사료 재배 확대, 가축분뇨 자원화, 가축개량 등 축종별 대책 마련</li> <li>- FTA대책 관련 '17년까지 투융자계획 마련</li> </ul> </li> <li>◦ 피해보전, 폐업보상 직불제 도입</li> </ul> </li> <li>□ 국내 축산물 안전관리 및 축산업 발전 대책 수립·발표('08.5.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산 쇠고기 수입재개에 대응, 국내 축산물 안전관리 대책 및 축산업 발전대책 수립</li> </ul> </li> <li>□ 대책마련에 따른 세부사업 추진 및 예산 확보 등을 차질 없이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도개선 및 기존사업 확대, 신규사업 시행계획 수립 등</li> <li>◦ 소득보전 직불제, 폐업지원 시행을 위한 세부지침 마련 등</li> </ul> </li> </ul>

<p>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p>	<p>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p>
<p>24. 우유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학교급식 확대 등 소비확대 대책을 마련할 것</p>	<p>□ 우유급식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지 실태조사('07.9, 합동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초중고 12개교 및 우유급식 대리점 4개소</li> </ul> </li> <li>○ 관계자 회의 개최 및 의견 수렴(4/4, 3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청, 지자체, 생산자 및 유업체 참여</li> </ul> </li> <li>○ 학교우유급식 개선방안 마련('08.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우유급식 개선방안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유급식 품목 다양화, 보조급식 대상 확대 추진(차상위·도서벽지학생까지)</li> <li>· 품질 및 우수성 교육·정보제공으로 학교우유급식 인식개선</li> <li>· 우유급식 연찬회 개최, 낙농체험 및 자조금 활용 소비홍보 강화</li> </ul> </li> </ul> </li> <li>○ 학교우유급식시행지침 개선('08.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유급식품목 다양화</li> </ul> </li> <li>○ '08낙농체험관광사업 대상자 선정('08.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개소(개소당 100백만원)</li> </ul> </li> <li>○ 단가인상 및 보조급식대상 확대를 위해 '09년도 소요예산 확보 추진</li> <li>○ 학교우유급식 교육·홍보 실시(연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국 순회 학교우유급식 특별 교육</li> <li>- 학교방문 우유급식 교육 개최</li> </ul> </li> <li>○ 학교우유급식 담당 공무원 연찬회('08.11)</li> <li>○ 낙농체험현장학습 실시(연중)</li> <li>○ 낙농자조금 등을 활용한 우유 소비·홍보 지속 추진(연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TV·라디오 광고 및 PPL 광고 등</li> </ul> </li> </ul>

<p>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p>	<p>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p>
<p>25. 축산농가의 홍보비용 지출 등 축산물 자조금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을 강구할 것</p>	<p>□ 축산물 소비촉진을 위해 홍보효과가 높은 TV광고 실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축산농가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농가교육 및 정보제공, 조사·연구 사업의 확대 추진</li> <li>※ '08년도 축산자조금 지원액 : 156억원</li> <li>· 한우 50억원, 낙농 42, 양돈 50, 양계(산란계, 육계) 13, 오리 0.5, 양록 0.5</li> </ul> <p>□ 축산 자조금 감사 실시('08.1.21 ~ 2.2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축산자조금사업 계약규정 부적정 등 20건 지적(개선3, 시정6, 권고1, 통보10)</li> <li>◦ 지적에 대한 조치 및 개선(안) 도출을 위해 협의회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우·양돈·낙농 협회참석(축산경영팀장 주재, '08.7.18)</li> </ul> </li> <li>◦ 예산집행 등 즉시조치 가능한 사항은 기 조치(9.30일까지)</li> </ul> <p>□ '08년 상반기 자조금 감사 결과에 따라 제도 개선방안 강구·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률개정 적정여부 등을 고려해야할 사항 등은 개선(안) 검토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조금 관련 단체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수요자의견 적극 반영예정</li> </ul> </li> </ul>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26. 감귤류 관세수입을 재원으로 하는 감귤경쟁력 강화기금 설치 등 감귤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강구할 것.</p>	<p>□ '04년 한칠레 FTA 체결이후 과수농가에 대한 피해대책마련과 과수산업발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을 조성하여 운영 중</p> <p>* 기금관리 운영 측면에서 별도의 기금설치 보다는 기존 FTA기금과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p> <p>□ '08년 감귤산업 경쟁력 제고 사업 추진</p> <p>○ 시설현대화 및 유통지원사업 확대</p> <p>- 사업비 : ('07) 118억원 → ('08) 206</p> <p>* '08사업비 : 생산시설 현대화 147억원, 기반 정비 6, 거점APC 49, 우량묘목 생산 1, 과실브랜드 3</p> <p>○ 한·미 FTA대비 경쟁력 확보를 위한 신규 사업 추진</p> <p>- 사업비 : 48억원(고당도 생산자재 지원 23억원, 감귤부산물 처리시설 25)</p> <p>□ 감귤 수급 및 가격안정 사업 실시</p> <p>○ 유통협약 자조금 및 계약출하 지원</p> <p>- 유통협약자조금 : ('07) 8억원 → ('08) 26</p> <p>- 계약출하 : 802억원('07년과 동일)</p> <p>□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확대 조성</p> <p>- 정부출연금 : ('08) 4,900억원 → ('09P) 5,300</p>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27. 동물 항생제 감축방안이 축산농가에게 부담을 주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축산용 항생제 사용량 절감을 위해 사육 환경 개선 등 여건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신설('08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8년 계획 : 515농가 지원</li> </ul> </li> <li>◦ 사육단계 HACCP 확대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HACCP 컨설팅 사업 확대('07년 80개소 → '08년 140)</li> </ul> </li> </ul> </li>   <li>□ 불필요한 항생제 사용 등 오남용 방지를 위한 농가 교육·홍보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물용 의약품 안전사용 기준 등 홍보물 배포(10만부, 6월)</li> </ul> </li>   <li>□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및 HACCP 컨설팅 사업 추진('08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8년 사업 대상자 및 컨설팅 업체간 계약 체결 후 사업진행 중</li> </ul> </li>   <li>□ 항생제 오남용 및 유해잔류물질 방지를 위한 전국 순회교육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국 4개 전역별 순회교육(11 ~ 12월)</li> </ul> </li> </ul>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28. 조사료 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조사료생산기반 확충방안을 강구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질 조사료 생산확대 대책('07.11) 및 청보리 등 조사료 생산·이용 활성화 대책('08.8)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보리 등 동계작물 재배면적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7)12천ha→('08)24천ha→('09.P)40천ha</li> </ul> </li> <li>◦ 사일리지 제조비 및 기계장비 지원단가 및 보조율 상향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일리지 제조비 : ('08)50천원/톤→('09)60</li> <li>* 기계·장비 : ('08)130백만원/set→('09)150</li> <li>·기계장비 국고보조율 : ('08)30%→('09)40</li> </ul> </li> </ul> </li> <li>□ 국내산 조사료 생산 확대에 따른 수입 조사료 할당관세 물량 축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7) 840천톤→('08) 797천톤(△5.1%)</li> </ul> </li> <li>□ 양질 조사료 생산기반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사료 재배면적 확대('12년, 370천ha)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간척지 등 대규모 조사료 생산단지 조성</li> </ul> </li> <li>◦ 청보리 정선시설 설치 등 종자공급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보리 전용품종 지속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보리 전용품종 : ('07)7종→('15)15종</li> </ul> </li> <li>- 청보리 정선시설 : 2개소 추가 설치</li> </ul> </li> </ul> </li> <li>□ 국내산 조사료 생산·이용확대를 위한 교육·홍보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가, 생산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청보리의 우수성과 필요성 교육·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사료생산 시연회, 워크숍, 연찬회 등 개최</li> </ul> </li> </ul> </li> <li>□ 수입조사료 할당관세 물량 감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7) 840천톤→('12) 630천톤(△25%)</li> </ul> </li> </ul>

<p>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p>	<p>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p>
<p>29. 세부설계를 마친 중규모 용수개발사업을 시급히 추진할 것</p>	<p>□ '08년 신규착수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7신규 3지구 ⇒ '08신규 5지구</li> <li>* 세부설계 : 33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설계 중 22 , 설계완료 11</li> </ul> </li> </ul> <p>□ 연차별 사업추진확대 계획을 수립하여 관계부처와 협의, 조기 추진되도록 노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미 설계된 지구가 많으므로 새로운 설계는 억제</li> <li>* 지역 개발계획 발표 등 지역여건 변화로 주민들이 사업추진을 반대하는 등 장애요 인이 있는 지구는 신규착수 대상에서 제외 예정(7지구 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설계지구 : 33지구 → 26지구</li> </ul> </li> <li>◦ 세부설계완료지구의 수혜면적 중 천수답 면적비율이 낮은 지구(보강개발 면적 50%이상)는 지표수보강개발사업으로 전환하여 착수되도록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규모 용수개발사업이 조속히 완공되어 조기에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준공 위주로 사업비 지원</li> </ul> </li> </ul>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30. 새만금 사업의 최대 문제인 수질관리를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리대책을 강구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의 친환경 개발방침에 따라 새만금 수질환경대책('01 ~ '11년, 1조 4,568억원) 수립·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7까지 8,465억원(58%) 지원 완료</li> </ul> </li> <li>□ 새만금 상류유역 수질대책, 호내 수질관리, 해양환경보전 등을 위해 농림·환경·국토부, 전북도로 업무를 분담하여 차질없이 추진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류유역 수질대책 시행(환경부·전북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수처리시설 23개소('07까지 17개소 추진)</li> <li>- 하수고도처리 6개소('07까지 3개소 추진)</li> <li>- 하수관거 2,820km 확충('07까지 894km 추진)</li> </ul> </li> <li>◦ 새만금호내 오염방지대책으로 저층수배제 시설 공사 시행(농식품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8.2월 가력·신시갑문 2개소 완료</li> </ul> </li> <li>◦ 새만금 수질조사 및 관리 지속 추진(농식품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새만금호 수질측정망 조사(20지점, 매월), 수질자동측정기 설치 완료(4개소)</li> <li>- 적·녹조 대책, 거품띠 관리대책 등 호내 수질오염 긴급대책 시행</li> </ul> </li> <li>◦ 해양환경 모니터링 구축 및 해양환경변화 영향최소화 대책 추진(국토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시 감시시설 설치 등 외해 모니터링, 적조방제, 해양환경 D/B 및 GIS 구축 등</li> </ul> </li> </ul> </li> <li>□ 새만금 내부토지이용계획 변경 등 변화되는 여건에 맞게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환경보완대책을 마련·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경용지의 충분한 확보(당초 3,000ha → 변경 5,950ha), 하폐수 화학고도처리방안 등 보완 대책 추진계획</li> </ul> </li> </ul>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31. 실경작자에게 직불금이 지급되지 아니하거나 경지정리 등 불가피한 사유로 1998~2000년 기간에 논농업에 이용되지 못한 농지와 시군 지자체와 대부계약을 맺고 농사지은 하천부지에 대한 직불금 미지급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8년부터 실경작 확인을 강화하기 위해 신청자가 매년 '농지이용 및 경작현황확인서'를 제출토록 시행지침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재지주 등 관외경작자는 실경작 사실을 소명하는 경우만 인정하고 직불금 신청도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하도록(현재는 주소지에 신청) 법률 개정 추진(금년 정기 국회 제출 예정)</li> </ul> </li> <li>□ '97.12.31일 이전 논농업에 1년이상 이용된 농지 중 경지정리사업, 자연재해로 불가피하게 논농업이 중단된 경우는 직불금 지급 대상 농지에 포함 (법률 개정 '08.3.21)</li> <li>□ 하천구역 안의 토지에 대해서는 다음의 사항들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할 예정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공익(수해방지, 물공급 등)에 이용되는 '공용물'인 점</li> <li>② 홍수시 물에 잠기는 등 상시 농지가 되지 못하는 점</li> <li>③ 농약·비료 사용으로 인한 수질·토양 오염 가능성 등 농지로 활용하기에 적당하지 않은 점</li> <li>④ 침수해 등 재해발생 시 보상요구 등 분쟁을 야기할 소지가 있는 점</li> </ul> </li> </ul>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32. 농지이용실태조사 및 처분제도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불법적인 농지 소유 방지 대책을 강구할 것</p>	<p><input type="checkbox"/> 농지이용실태조사를 보다 강화하기 위하여 인력, 장비 등의 보강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자체 조사인력 부족을 감안, 지자체와 한국농촌공사의 합동조사 실시</li> <li>◦'07년도에 지자체에 모바일PC(PDA 140대) 공급 완료</li> <li>◦'08현재 추가로 1,548대(시·구·읍·면당 1대 공급) 공급 및 관계자 교육 실시중 ('08.9.24 ~ 10.17)</li> </ul> <p><input type="checkbox"/> '96년에 도입된 농지처분명령제도를 처분 명령유예가 가능하도록 개선('06년)하여 추진하고 있으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유농지를 농업경영에 활용토록 하는 처분 명령제도 본래의 취지를 감안, 향후 제도시행 결과를 분석하여 개선해 나가겠음</li> </ul> <p><input type="checkbox"/> 불법 농지소유를 방지하기 위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보다 엄격히 하고, 보강된 인력, 장비를 적극 활용한 사후 관리 강화해 나가겠음</p>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33. 사료가격 급등에 따른 대책을 마련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료제조업체에 대한 사료원료구매 자금 지원 확대 및 상환조건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료원료구매자금(억원) : ('07) 517 → ('08) 829(증 312억원)</li> <li>◦ 상환조건 : ('07) 1년 상환 → ('08) 2년 상환(1년 연장)</li> </ul> </li> <li>□ 농가특별사료구매자금지원확대(1조원 → 1.5조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료구매자금 대출지원현황(9.17기준) 61천호, 1조 4천억원</li> </ul> </li> <li>□ '08년도 상반기 할당관세 적용 품목을 3개에서 19개 품목으로 확대(8.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관세 지원시 연간지원효과 : (당초) 841억원 → (확대) 1,188억원(증 347)</li> </ul> </li> <li>□ 농가특별사료구매자금 추가지원 ('09 : 1조원)</li> <li>□ 청보리 등 국내산 조사료 생산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배면적(천ha) : ('07) 164천ha → ('12) 5,335(증 1,717)</li> </ul> </li> <li>□ 민간업체 해외사료자원 개발시 장기 저리 융자 지원</li> <li>□ 사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 연장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용기한 : (현행) '08.12말 → (연장) '11.12말 (3년 연장)</li> </ul> </li> </ul>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34. 제주지역 다목적 용수 개발 대책을 강구할 것</p>	<p>□ 종합적인 개발계획 수립·시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강우량 변화 등 기상조건 변화와 용수 수요변화 등을 감안한 개발계획수립·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규모 용수개발사업 성읍, 옹포지구도 발용수 등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용수 개발을 추진중</li> <li>※성읍50%, 옹포20% 추진</li> </ul> </li> <li>◦ 세부설계중인 함덕지구는 발용수·생활용수 등을 포함한 다목적 용수로 개발 계획 수립</li> </ul> <p>□ 발용수 공급 등 특성화된 용수개발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밭 및 축산, 원예용수 공급 등 다양한 용수 수요를 고려한 개발계획을 수립</li> <li>◦ 과잉개발로 고갈이 우려되는 지하수 개발에 대체할 수 있는 지표수 개발을 적극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함덕지구 용수개발사업도 세부설계가 완료되면, 예산형편을 고려하여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li> </ul> </li> </ul>

<p>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p>	<p>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p>
<p>35. 조건불리직불금 단가를 쌀과의 현격한 차이를 줄이는 대책을 마련할 것.</p>	<p><input type="checkbox"/>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단가는 일반지역과의 농업소득 차이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므로 쌀직불제와 단순비교는 곤란한 점이 있음</p> <p>* WTO 농업협정문 부속서 2의 제13항 (f)</p> <p><input type="checkbox"/> 아울러, '07년 지원실적 저조 및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의 “밭직불제”화에 대한 우려 등에 따라 '09년 단가인상을 위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음</p> <p>&lt; 참고 &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지원단가('04 ~ '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밭 400천원/ha, 초지 200천원/ha</li> </ul> </li> </ul> <p><input type="checkbox"/> 앞으로,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지원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급단가 인상, 지원대상 지역 선정기준 완화 등</li> </ul>

<p>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p>	<p>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p>
<p>36. 마육소비 강화 대책을 마련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육소비 강화를 위한 제주 마산업 클러스터 사업 지원('08.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금액 : 18억원(국고 9.2억원)</li> <li>- 주관기관 : 제주도, 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 (제주대 등 9개기관 참여)</li> <li>- 수행사업 : 마육품질 고도화, 마육의 메뉴상품 개발, 마육소비 시식회, 제주마육 저온보관소 설립 등</li> </ul> </li> <li>□ 제주마 3차산업 연계 종합발전계획 학술 연구비 지원('07.12.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금액 : 50백만원</li> <li>- 주관기관 : 제주도</li> <li>- 말을 이용한 1차산업과 3차산업을 연계 방안 마련(마육, 승마트레킹 등 말 관광 상품 개발)</li> </ul> </li> <li>□ 제주도민 및 관광객 대상 마육소비 촉진 활동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마축제 : '08. 9. 27 ~ 9. 28</li> <li>◦ 제주청정말고기시식행사 등</li> </ul> </li> <li>□ 마육 소비촉진 홍보('08 농업인의 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금액 : 20백만원</li> <li>◦ 주관단체 : 제주마생산자협회</li> </ul> </li> </ul>

<p>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p>	<p>향후 추진계획</p>
<p>37. 불량종자 민원해결을 위한 현장 조사위원회 설립 등 민원 해소 방안을 강구할 것.</p>	<p>□ 불량종자로 인한 농업인 피해구제를 위한 관계 기관간 협의체 구성 합의('07.12.2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자민원의 경우 피해의 입증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검증체계를 확립하여 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기관별 협의체 구성</li> <li>◦ 농림부, 농촌진흥청, 국립종자원 및 한국소비자원이 공동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불량종자 관련 농민 피해 접수시 피해구제 초기 단계에서 협의체를 통하여 원인 규명 협의</li> <li>- 협의기구를 거쳐 기관별 역할분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립종자원 : 종자전염병, 순도 및 발아율 검정 등</li> <li>·농진청 : 재배환경 관련 원인 규명</li> <li>·한국소비자원 : 피해배상 조정 담당</li> </ul> </li> <li>- 초기단계부터 협의체를 통한 피해구제를 진행함으로써 대농민 신뢰확보 가능</li> </ul> </li> </ul>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38. 10년 후 농협중앙회의 신경분리 약속이 이행될 수 있도록 감독기능을 강화할 것</p>	<p>□ 신경분리 추진상황 점검·평가를 위한 경제사업활성화위원회 구성·운영('08년 3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련된 과제(38개)의 이행을 반기별로 점검하고, 추진결과를 평가보완하는 것을 제도화함으로써 <b>경제사업 활성화 실효성 담보</b></li> <li>* 농림부(1), 농민단체(3), 학계(3), 농협중앙회(5), 일선조합(3) 대표로 구성</li> <li>* 연 2회 평가위원회 개최, 3년 단위 연구용역을 통한 종합평가</li> <li>◦ 위원회 개최 전·후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여 경제사업활성화 추진과제 진도분석 및 중점 논의과제 등 검토</li> </ul> <p>□ 경제사업활성화위원회를 통해 신경분리 추진상황 점검(계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4차위원회 개최 : '08. 10월말</li> </ul> <p>□ 판매중심농협 실현 등 경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농협법 개정 등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입법예고 중(12월 국회제출 목표)</li> </ul>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39. 한·일 입어협상에서 연승 어업과 관련한 쿼터 변경 신청 절차 등에 대한 행정 절차의 간소화를 추진할 것</p>	<p><input type="checkbox"/> 어획할당량 변경증명서 발급 처리기간 단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처리기간이 없던 것을 2주 이내에 처리하도록 일본국의 입어절차규칙 개정</li> </ul> <p><input type="checkbox"/> 어획할당량 변경신청시 신속히 처리되도록 적극 추진</p>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40. 어선원보험료 체납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채무승인서 징구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 ('07.8.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채무승인서 제출자에 한하여 분할납부, 체납처분 유예 및 압류해제 조치 등을 통한 자진납부 유도</li> </ul> </li> <li>□ 결손처분 실시('07.12.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체납자 중 무재산자이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채무승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 및 행방이 묘연하여 체납보험료를 회수할 가능성이 없는 자 대상</li> <li>※ 규모 : 65백만원(149건)</li> </ul> </li> <li>□ 20톤미만 소형선박에 대한 저당권 설정 제도 도입(08.7.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형선박저당법」 및 「어선법」 개정. 시행으로 소형선박에 대한 압류가능</li> </ul> </li> <li>□ 보험료 국고지원 확대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08.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가인상 등에 따른 어업인의 보험료 부담 경감을 위해 보험료의 국고지원을 상향(순보험료 10%) 지원 협의</li> <li>※ ('08)최고62% → ('09)70%</li> </ul> </li> <li>□ 체납처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체납 처분전산시스템”구축('08.12)</li> </ul>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41. 인공어초 수의계약조건 변경 등을 통하여 지자체와 토호간의 결탁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공어초사업은 특성상 해양환경에 대한 효과와 책임 있는 관리를 위해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이 있는 권리어초의 경우 국가계약법에 따라 조달청에 의뢰하여 계약을 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타 권리가 만료된 비특허 어초의 경우 공개 입찰을 통해 사업 추진</li> </ul> </li> <li>□ 시행주체인 지자체가 전문기관의 적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교수, 어초 전문가 등 20여명이 참여하는 ‘시도 어초 협의회’에서 사업을 결정하여 투명성을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업인 의견수렴, 대상 동식물의 서식환경, 갯녹음 발생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li> </ul> </li> <li>□ 다양한 어초를 시설하기 위한 재질별 시설제한(콘크리트 60%이상 시설제한) 규정을 폐지하여 권리가 만료된 다수의 어초가 공개 입찰을 통해 시설될 수 있도록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8년도 인공어초시설사업 시행지침 개정</li> </ul> </li> <li>□ 해역별 특성에 적합한 여러 어초가 시설될 수 있도록 어초개발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6) 32종 → (‘07) 41종 → (‘10) 50종</li> </ul> </li> </ul>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42. 내수면 어종보호와 내수면 어업에 대한 지원 대책을 강구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수면자원조성을 위한 인공산란장 설치사업 확대·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7년(13개소, 4억원)→'08년(16개소, 5억원)</li> </ul> </li> <li>□ 내수면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불법어업 단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수면 불법어업 지도·단속계획 수립 및 합동지도단속 실시('08.10)</li> </ul> </li> <li>□ 내수면 소비관련 연구용역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수면 수산물 소비확대방안 마련을 위해 「내수면 소비동향 분석 및 소비자선호도 연구」 용역 실시('07.12~'08.7)</li> </ul> </li> <li>□ 내수면양식어업 육성을 위한 토종종묘보급사업 '09년 신규 반영(10억원)</li> <li>□ 내수면발전 종합대책을 수정·보완하여 내수면어업기본계획('08~'12) 수립</li> <li>□ 내수면 수산물 소비확대 방안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송어훈제품 생산을 위한 가공공장 건립 마무리('08.12)</li> <li>◦ 내수면수산물 홍보추진(Korea Food Expo 참여)</li> </ul> </li> <li>□ 관상어 등 고부가가치 양식어종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외 관상어시장 현황 파악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08.10~'09.3)</li> <li>◦ 관상어 보급사업을 통한 저변확대</li> </ul> </li> </ul>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43. 수협을 해양수산 부문에 특화된 전문 금융기관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양부문의 전문 금융기관 기반 마련을 위한 해양금융 대출 확대 ('08.9) : 8,767억원</li> <li>□ 해양투자금융 해외사업 활성화 기반 마련 ('07.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물류펀드 설립 투자 약정 체결</li> </ul> </li> <li>□ 수산펀드 자체 조성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펀드규모 : 100억</li> <li>◦ 투자대상 : 유통기업, 수산 벤처, 여항현대화 등</li> </ul> </li> <li>□ 해양금융 마케팅 및 업무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양항만분야 마케팅 강화</li> <li>◦ 물류펀드 설립, 항만건설 참여 등 해양물류산업 역량 강화</li> <li>◦ 중소형선사 마케팅 등 선박금융 업무 강화</li> </ul> </li> <li>□ 해양금융 전문인력 집중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박금융, 투자금융 등 분야별 전문가 양성</li> </ul> </li> <li>□ 중장기 해양수산은행 특화를 위한 자본 구조 개선 및 자본확충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출자, 해양관련단체 출자 등 지속적인 자본 확충</li> <li>◦ 항만물류선박금융 확대로 수산금융과 해양금융의 균형발전 도모</li> </ul> </li> </ul>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44. 수입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강화하고, 그 단속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p>	<p><input type="checkbox"/> 수입수산물 원산지 표시 관리강화를 위한 계획 수립 시행('07.1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명절 전후 제수용품으로 수입급증 품목에 대한 특별단속 실시('08.1, 8월)</li> <li>◦ 국산과 수입산의 가격차이가 커 허위표시가 빈발한 12개 품목 특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기, 갈치, 고등어, 옥돔 등</li> </ul> </li> <li>◦ 원산지표시 전담 기동단속반 운영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입량 급증 품목의 유통과정에 대한 추적조사로 국산 허위표시 적발률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발건수 : ('06) 66건 → ('07) 148 → ('08.6) 81</li> </ul> </li> </ul> </li> </ul> <p><input type="checkbox"/> 수입수산물 원산지표시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벌칙 강화를 위한 「수산물품질관리법」 개정·시행('08.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허위표시의 경우) 5년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 7년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li> </ul> </li> <li>◦ 수산물이력제 본격 시행으로 수입수산물의 국산둔갑 차단 강화('08.8)</li> </ul> <p><input type="checkbox"/> 이식용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기준 제정 시행</p> <p><input type="checkbox"/> 민간 자율감시 활성화를 통한 원산지표시 제 정착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명예감시원 증원, 신고포상금 지급확대, 원산지표시 자율이행 MOU 체결 등</li> </ul>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45. 어업용 면세유 불법유통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강구할 것.</p>	<p>□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시행 '08.1.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정유통 어업인에 대한 처벌 규정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면세유 공급 중단 기간 연장(1년→2년) 및 가산세 증액(감면세액의 10→40%)</li> </ul> </li> <li>◦ 선박·시설 보유현황 및 영어사실 등 신고 의무 강화</li> <li>◦ 관리기관인 조합에 대한 가산세 추징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세유류구입카드 등을 교부하는 경우(감면세액의 10→40%)</li> </ul> </li> </ul> <p>□ 부정행위에 대한 신고처 및 신고방법 확대 및 신고보상금제도 현실화('08.7)</p> <p>* 보상금 : 어업용 면세유 부정유통량에 따라 50만원 ~ 200만원</p> <p>□ 조합별·어업인별 면세유 공급량 산정 방법 개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선등록명부 및 실제 면세유 공급선박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면세유 공급량을 실소요량 위주로 개선</li> </ul> <p>□ 부정유통 다발 및 예상지역 집중관리 및 어업인들의 의식 개혁 지속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정유통 다발·예상지역에 대한 집중관리를 통해 어업인들의 부정유통에 대한 경각심 제고</li> </ul>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46. 싱싱회사업의 부실 원인을 규명하고, 이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싱싱회 사업추진 개선방안 마련('07.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식문화 개선을 위한 선어회 홍보 지속 추진</li> <li>◦ 경제성 있는 소규모 판매장을 확충, 싱싱회 확산 도모 등</li> </ul> </li> <li>□ 싱싱회 소비촉진을 위한 시식회 개최 등 홍보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산물전시회 개최시 수산물유통 및 요식업 홍보관 운영('08.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싱싱회, 활어회 등과 연계된 프랜차이즈 업계 및 운영 소개와 싱싱회 시식회 개최 및 홍보</li> </ul> </li> </ul> </li> <li>□ 싱싱회 판매장 시설 지원('08) : 5개소 (3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 등 대도시 위주로 판매장 시설</li> </ul> </li> <li>□ 싱싱회에 대한 대국민 홍보 지속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홍보효과가 높은 TV 등 대중매체 광고 등 기존 수산물소비촉진 홍보사업과 병행하여 홍보 추진</li> <li>◦ 수산물전시회 등 각종 행사시 싱싱회 홍보관 설치 및 시식회 개최 등</li> </ul> </li> <li>□ 싱싱회 판매장 지원은 수협을 활용, 프랜차이즈 형태로 추진하여 경영안정 및 싱싱회 확산 도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도권 중심으로 소형 판매장 개설로 소비자 인식 제고 후 경영추이 등 감안, 지방까지 확대 추진</li> </ul> </li> <li>□ 기존 지원업체에 대한 강력한 사후관리 체계를 구축, 관리 철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 방침을 이행하지 않는 업체는 관련 법 등에 따라 보조금 회수 등 강력 대처</li> </ul> </li> </ul>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47. 수산계 고교의 교육여건을 해사고 수준으로 높이는 등 그 활성화 방안을 강구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산계 전문고교 특성화 지원 추진 ('07.8 ~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방안에 대한 학교 측 의견수렴 간담회 개최(2회)</li> <li>◦ '08년 지원사업비 확보(23억원)</li> </ul> </li> <li>□ 수산계 전문고교 특성화 지원계획 수립 ('08.1)</li> <li>□ 교육부 및 시·도 교육청과의 협력을 위한 MOU 체결('08.1)</li> <li>□ 수산계고교 특성화 지원사업 추진 ('08.7 ~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잠수기능사 자격취득 교육과정(4개교, 27명)</li> <li>◦ 해기사 자격 취득을 위한 승선실습 프로그램 실시(5개교, 80명)</li> <li>◦ 양식,가공, 냉동 등 현장실습교육 프로그램 실시(80명)</li> </ul> </li> <li>□ 9개 수산계고교 특성화 지원사업 추진 ('08.7 ~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기사 자격 취득을 위한 승선실습 프로그램 실시</li> <li>◦ 교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선진지 현장연수</li> <li>◦ 학교별 자체 특성화 프로그램 실시</li> </ul> </li> <li>□ '08년 사업평가 및 특성화 지원 프로그램개발('08.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모니터링 및 성과 평가</li> <li>◦ 특성화 지원 프로그램 개발</li> <li>◦ 수산계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 개최</li> </ul> </li> </ul>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48. 전국 낚시터에 노출되어 있는 중금속 오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nput type="checkbox"/> 환경오염 등의 방지를 위한 (가칭)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정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정법안에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낚시도구 등의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을 포함(현재, 제정안 마련 중)</li> </ul> </li> <li><input type="checkbox"/> 낚시터에 퇴적된 납추 등 쓰레기 수거를 위한 '09예산안 1,500백만원 반영</li> <li><input type="checkbox"/> (가칭)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정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낚시터 환경오염 방지 등과 더불어, 수산자원의 보호, 낚시인의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09초 국회 제출)</li> </ul> </li> <li><input type="checkbox"/> 낚시터 환경정화사업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국 낚시터 100개소 납추등 침적 폐기물 수거(국고보조 100%)</li> </ul> </li> <li><input type="checkbox"/>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홍보용 전단지 제작·배부</li> </ul> </li> </ul>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49. 연근해 어선 감척사업으로 인한 실업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p>	<p><input type="checkbox"/> 선원법에 의거 20톤이상 어선에 승선한 선원은 선주가 통상임금 2개월분의 실업수당을 지급</p> <p>* 국제감척시 통상임금의 6개월분의 실업수당 699억원을 지원하였으나, 현 일반감척사업은 실업수당 지급의 법적근거가 없음</p> <p><input type="checkbox"/> 어업인전업지원센터를 활용, 취업알선, 정보제공 등 체계적인 지원방안 마련 ('08. 11월중 운영예정)</p> <p>* '08년 수협에 전업지원센터 설립 예정(3억원/인건바우영비)</p> <p><input type="checkbox"/> 지역 실업자 훈련 실시규정에 의한 취업·전직 훈련실시(노동부 13억원)</p> <p>*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따른 농어업인등으로서 농림어업이외 직업에 취업하고자 하는 자와 그 가족</p> <p><input type="checkbox"/> 감척 참여 어업인이 어촌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기반 조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촌체험마을, 낚시·유어장 조성 등 어업 외 소득창출로 어촌에 계속 정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li> </ul> <p><input type="checkbox"/> 실직 어업인 및 어선원의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직 어선원에 대해 지자체 공공근로 사업에 최우선적 채용 등 간접지원 방안 추진</li> <li>◦ 향후 어선원법 제정시 특별 실업급여 지급 필요성 검토 등 관련부처와 협의</li> </ul> <p>※ '07년말 근해 어선원 : 16,502명(해기사 4,359, 부원 12,143)</p>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50. 수협이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할 경우 예상되는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p>	<p><input type="checkbox"/>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11)시 문제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보공사 출자금(공적자금)이 부채로 분류되어 BIS비율 급락(11.4→△3.9%)으로 영업 곤란</li> <li>* BIS비율 급락시 신용평가 등급 하락(투자적격 → 투자부적격) 예상</li> </ul> <p><input type="checkbox"/> 국제회계기준 도입 대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협중앙회 자체 대책팀 구성·운영</li> <li>◦ 국제회계기준 적용시기 유예(3년) 요청 및 협의 추진('07.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감독기관에 유예사유 검토보고서 제출</li> </ul> </li> <li>◦ 국제회계기준 대응을 위한 연구용역('07.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적자금 상환, 자본구조개선 및 자본 확충 방안 등</li> </ul> </li> </ul> <p><input type="checkbox"/> 공적자금 대체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적자금(1조1,581억원)을 현재 가치로 환산·재평가하여 정부재정으로 일시 상환 방안 등 검토</li> <li>* 현재가치 환산 재평가금액을 재정으로 출연 및 출자하고 출자 배당금으로 일선수협 지원 등 역할 증대</li> </ul> <p><input type="checkbox"/> 중장기 자본구조 개선 및 자본확충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용사업부문에 대한 출자범위 확대 등</li> </ul>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51. 수협중앙회의 신용경제 지도부문 분리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점을 검토하고 그 대책을 마련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용경제·지도부문 분리에 따른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독립사업부제 실시 이후 책임경영으로 건전성은 확보되었으나,</li> <li>◦ 신용부문의 방화벽 설치로 타 부문과 일선 조합에 대한 우대지원 및 지도사업비 지원 금지 등으로 지도기능 위축 및 부문간 갈등 초래</li> </ul> </li> <li>□ 문제점 해소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개 사업부문 갈등해소 및 협력대책 시달 ('07.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책자금 수수료 인하, 신용부문의 지도사업비 부담을 위한 MOU 개정 등</li> </ul> </li> <li>◦ 수협 지배구조 개편을 위한 연구용역('07.10)</li> <li>◦ 수협 지배구조 개편방안 마련('07.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도·경제사업부문 통합 및 회장 비상임화 등</li> </ul> </li> <li>◦ 수협법 개정 추진('08.4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계부처 협의('08.4), 입법예고('08.5) 및 법제처 심사('08.8~)</li> </ul> </li> </ul> </li> <li>* 법제처 심사 완료 후 국회 제출예정(10월)</li> <li>□ 수협법 개정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회 심의를 거쳐 금년내 개정안 공포</li> </ul> </li> <li>□ 중앙회 조직 및 인력감축 등 구조조정 으로 일선수협 지원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 통폐합 등 업무조정으로 인력 감축 및 경비 절감</li> <li>◦ 일선수협과 경쟁사업장은 일선수협으로 이관</li> </ul> </li> <li>□ 중장기 중앙회 발전방안 모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도부문의 지원 강화를 위한 신용사업 부문의 특화</li> </ul> </li> </ul>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52. 수산물의 수출물류비 지원대책을 강구할 것</p>	<p><input type="checkbox"/> 수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 실시('07년12월 완료)</p> <p>* 연구용역기관 : 한국해양수산개발원(주문배 박사)</p> <p>◦ 연구용역 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산물은 비농산물로 분류되어 있어 물류비 지원은 "WTO 보조금 및 상계 조치에 관한 협정"에 위배되므로</li> <li>- 수출 업체에 대한 간접 지원 확대를 통한 대처가 바람직</li> </ul> <p><input type="checkbox"/> '08년 수출관련 간접지원 예산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김 이물질 선별기 지원확대(2억 증)</li> <li>* ('07) 380백만원 → ('08) 580백만원</li> <li>- 수산물 수출가공 선진화단지 건립 예산 2억 신규 반영</li> </ul> <p><input type="checkbox"/> 수출관련 업체에 대한 간접지원 예산 반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산물 수출업체 박람회 참가지원 및 해외 홍보사업 강화 : ('09) 1,774백만원</li> <li>- 김이물질 선별기 지원 확대 : ('09) 580백만원</li> <li>- 우수수산물지원 확대</li> <li>* ('08) 136,600백만원 → ('09) 140,000백만원</li> </ul>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53. 고유가로 인한 조업포기 사태가 속출하고 있으므로 어업인 유류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유가 극복 민생 종합대책(6.8)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가연동 보조금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유가격이 1,800원 이상으로 상승시 유가 상승분의 50%를 1년간('07.7~'08.6) 지원</li> <li>* 환급금 상환액 : 183원</li> </ul> </li> <li>◦ 어선 감척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안어선 1,500척(750억+지방비 188억), 근해어선 400척(1,600억) 등 1,900척을 추가 감척 추진</li> </ul> </li> </ul> </li> <li>□ 수협중앙회 면세유 취급 수수료 인하(7.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업용 면세유 공급가격에서 기본수수료(47억) 및 유류 수송업체의 수송비 인상분(10억) 수협중앙회에서 한시적 부담</li> <li>* 유종별 기본수수료(드럼당) : 경유 1,400원, 중질유 1,200원, 휘발유 1,700원</li> </ul> </li> <li>□ 특별영어자금 지원(5.26~8.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류소모가 많은 대형트롤, 대형선망, 어류양식어업에 특별영어자금 지원(183억원)</li> </ul> </li> <li>□ 어업경비 및 어업인 소득보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업경비 부담완화를 위해 배합사료 구매자금 융자(1,000억원), 영어자금운용규모 확대(1,000억원), 어업인 정책보험료 국고지원 10% 확대, 수산세제 감면 확대</li> <li>◦ 감척사업 지원방법 현실화 및 자격조건 완화 등</li> </ul> </li> <li>□ 어선유류비 절감장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류비 절감시스템 설치비 지원(42억원), 어선 집어등 교체비용 지원(13억원)</li> </ul> </li> </ul>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54. 수산물이력추적시스템이 홍보 부족으로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으므로 홍보 강화, 예산 확대 등 활성화 대책을 마련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산물이력제 홍보 관련 예산 집행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차 시범사업(89백만원) → 3차 시범사업(620백만원)</li> </ul> </li> <li>□ 수산물이력제 활성화를 위한 홍보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포스터, 리플렛 등 홍보물품 등을 활용한 정책 홍보 추진('08. 7~8월)</li> <li>◦ 인터넷포탈사이트, 라디오, 지역 케이블 방송, 전광판, 지하철 PDP 등을 활용한 이력제 홍보('08. 8~9월)</li> </ul> </li> <li>□ 수산물이력제 '09예산안 반영 : 18억원</li> <li>□ 시범사업 종합 평가 및 미비점 등을 보완하여 '09년도 수산물이력제 사업 추진 계획 수립('08.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산물이력제 품목 확대, 지원방식, 지원 내용, 사업추진체계 등 점검</li> </ul> </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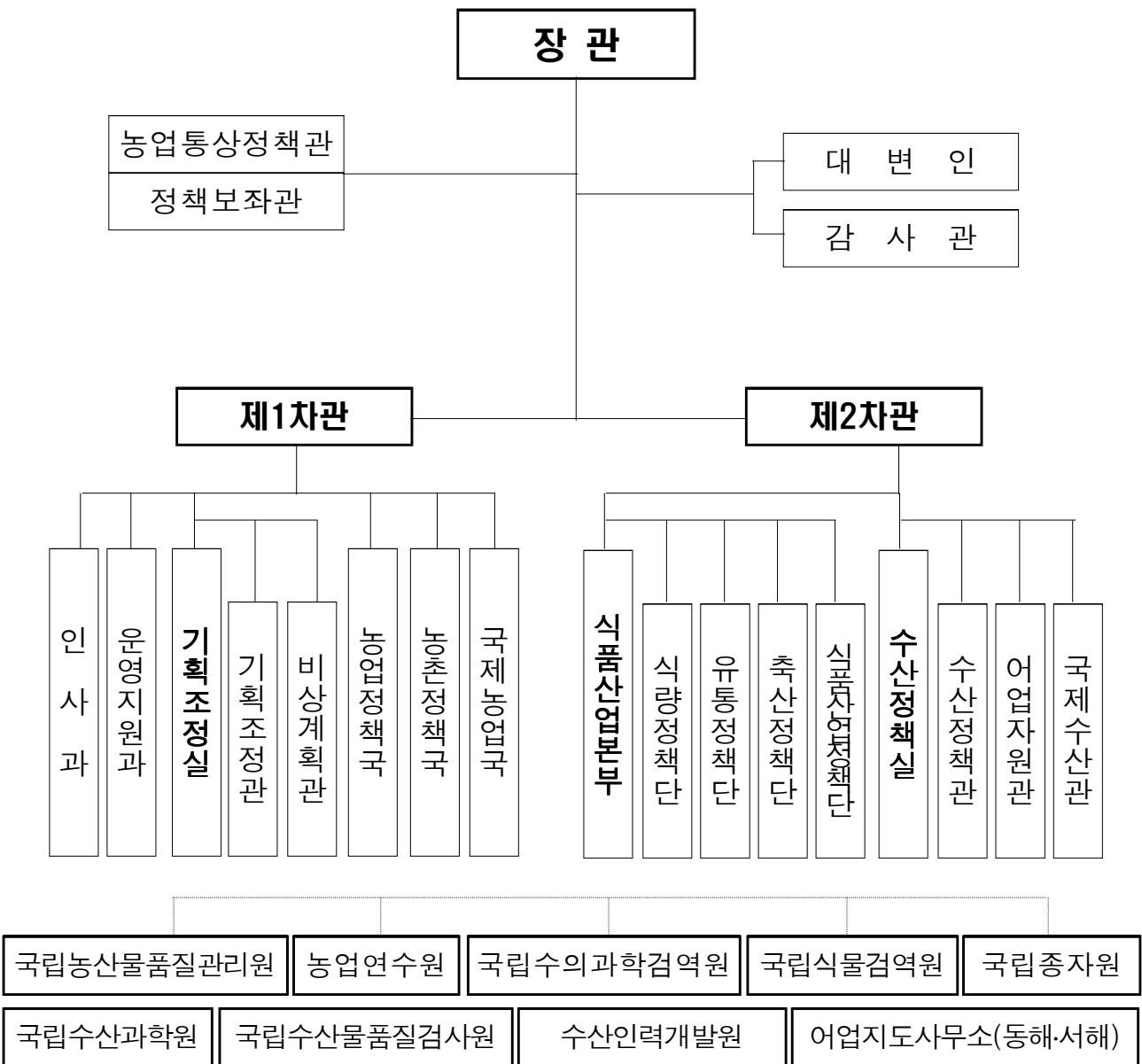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55. 학교급식에 우리 수산물 우선공급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nput type="checkbox"/> 수산물이력추적제 시행을 위한 「수산물 품질관리법」 개정·시행('08.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산물의 안전성강화 및 품질·위생정보 제공으로 국산수산물 소비확대</li> </ul> </li> <li><input type="checkbox"/> 학교급식 관계자에 대한 우수수산물 소비 촉진 교육('08년 603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양사, 식재료 납품업자 및 학부모검수단 대상, 수산물 안전성 및 우수성 홍보</li> </ul> </li> <li><input type="checkbox"/> 학교급식 관계자에 대한 우수수산물 소비 촉진 교육('08년 5회 603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양사, 식재료 납품업자 및 학부모검수단 대상</li> </ul> </li> <li><input type="checkbox"/> 청소년 대상 우리수산물 소비촉진 홍보 및 원산지표시 교육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 수산물의 우수성 홍보강좌 실시 ('07년 1회 412명, '08년 2회 2,000명)</li> <li>◦ 청소년 수산물원산지표시 체험 프로그램 운영('08. 16회 230명)</li> </ul> </li> <li><input type="checkbox"/> 국산수산물의 초등학교 급식 확대를 위한 연구용역 추진('07.12/ KMI)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급식의 수산물 이용실태 및 국산 수산물 대체비용 분석 등</li> </ul> </li> <li><input type="checkbox"/> 국산수산물 선호도 제고를 위한 급식 관계자·청소년 대상 홍보 지속</li> <li><input type="checkbox"/> 우수수산물 대체비용 지원을 위한 관계 기관 협의 및 예산확보 추진</li> </ul>

# 일 반 현 황

## 1 조직

**가 기구 : 2실 1본부 3국 7관 4단 55과(팀담당관) 10소속기관**



## 나 주요 기능

### < 본 부 >

실 국 별	주 요 기 능	
대 변 인	농수산정책 및 주요현안 홍보, 대언론 관련 업무	
감 사 관	본부·소속기관 및 관련 단체 감사, 재산등록	
인 사 과	공무원 임용 및 교육	
운 영 지 원 과	서무·문서·경리·용도 및 국유재산 관리, 민원 총괄	
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관	농정시책조정, 예산 및 기금총괄, 국회업무, 혁신 및 조직관리, 성과관리계획, 투융자심사 평가, 법무행정, 농업통계, 정보화
	비상계획관	비상대비 계획 수립 및 비상훈련
농업정책국	중장기 투융자계획 및 농업구조정책, 농지관리, 농업인력 육성, 기술정책, 협동조합 감독, 농업자금, 농가소득정책	
농촌정책국	중장기 농촌정책 수립, 농촌개발 및 농업인·농촌복지, 농업생산기반 정비·관리, 한해 및 수해대책, 농촌여성정책	
국제농업국	국제 통상협력 및 농업협상, 농산물 수입 및 관세제도	
식품산업본부	식량정책단	중장기 식량정책 및 식량 수급, 식량생산, 농생명산업 및 친환경농업 육성, 농업기자재 관리, 재해대책 총괄
	유통정책단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원예 및 특작산업 진흥
	축산정책단	중장기 축산정책 수립, 축산물 및 사료수급, 축산물위생·안전성 관리, 가축방역 및 축산물 검역
	식품산업정책단	식품산업 육성·진흥, 외식·전통·한식산업 육성, 식품클러스터, 농산물 품질, 안전성 관리, 인증제도
수산정책실	수산정책관	수산정책 종합·조정, 수산물 유통·수급, 어촌·어항발전 기본계획 수립, 어업인 삶의 질 향상 관련 업무
	어업자원관	수산물 생산 종합계획 수립, 연근해 어업제도, 내수면 어업제도, 양식어장 정비·지도
	국제수산관	어업협정, 수산물 수출입 정책, 수산물 관세제도, 원양어업, 수산분야 대외경제협력

### < 소속기관 >

기 관 별	주 요 업 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산물 품질·원산지관리, 관련시험연구, 통계조사
농업연수원	농업공무원, 농업인 및 농업관련 종사자 교육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축산물 및 동물 검사검역, 가축방역 및 수의과학 연구
국립식물검역원	수출·입 식물 검역·검사, 관련 시험·조사 및 연구
국립종자원	주요 농작물 종자관리 및 품종보호, 우량종자 보급
국립수산과학원	수산에 관한 조사·시험 및 연구(※ 정부출연연구기관 전환 예정)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수산물 품질관리·위생관리·검사, 시험·조사·연구
수산인력개발원	해양수산분야 공무원의 교육훈련, 어업인 후계자 특별교육
어업지도사무소	어업지도선 운항관리, 어업지도·단속

# 다 세부 정원

(단위 : 명)

구분	계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계약직(정책보좌관)	일반직						별정직	연구직	지도직·교육직	기능직
			일반직			별정직	연구직	계약직(책임)	소계		34급	4급	45급	5급	6~9급					
			소계	일반	일반별정											일반연구지도				
<b>농림수산식품부</b>	<b>5,094</b>	<b>3</b>	<b>35</b>	<b>13</b>	<b>1</b>	<b>14</b>	<b>1</b>	<b>4</b>	<b>2</b>	<b>2</b>	<b>3,497</b>	<b>17</b>	<b>113</b>	<b>70</b>	<b>524</b>	<b>2,773</b>	<b>28</b>	<b>459</b>		<b>1,070</b>
본부	672	3	17	9	1	6	1			2	557	14	38	57	211	237	7	2		84
<b>관서계</b>	<b>4,422</b>		<b>18</b>	<b>4</b>		<b>8</b>		<b>4</b>	<b>2</b>		<b>2,940</b>	<b>3</b>	<b>75</b>	<b>13</b>	<b>313</b>	<b>2,536</b>	<b>21</b>	<b>457</b>		<b>986</b>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1,427		1	1							1,237	1	13	1	123	1,099		2		187
농업연수원	41		1	1							28		3	1	8	16				12
국립수의과학검역원	585		4			4					371	1	23	1	45	301	16	113		81
국립식물검역원	426		1	1							376	1	8	2	32	333		6		43
국립종자원	168		1						1		72		11	1	10	50	5	28		62
국립수산과학원	944		7			3		4	1		361		10	3	39	309		305		270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233		1	1							199		4	1	19	175		3		30
수산인력개발원	26		1			1					14		1		5	8				11
동해어업지도사무소	323										154		1	2	17	134				169
서해어업지도사무소	249										128		1	1	15	111				121

## 『Korea Food Expo 2008』 계획(요약)

### I. 행사개요

#### □ 행사목적

- 농수산물과 식품이 어우러진 국민 참여형 행사를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생하는 계기를 마련
  - 우리 농식품의 건강 기능적 우수성을 홍보하고 식품안전관리 및 식품산업육성정책 방향도 제시

#### □ 행사명 : KOREA FOOD EXPO 2008(코리아푸드엑스포 2008)

- 주 제 : 건강한 식품, 아름다운 음식
- 슬로건 : 맛있는 대한민국

#### □ 행사 기간 및 장소

- 기 간 : '08. 10. 13(월) ~ 10. 19(일)
- 장 소 : aT센터(주 행사장) 및 시민의 숲, 서울광장 등(부대 행사장)

#### □ 행사추진주체

- 주최 / 주관 : 농림수산식품부/ KFE 추진위원회
-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가족부, 서울시, 농협, 수협 등
  - \* 참여단체 및 기관 : 농진청, 산림청, 식품공업협회, 외식산업협회, 농협, 수협, 농식품 관련 단체·기관 등 98개 기관

#### □ 주요 참석자

- 주한외교사절, 해외바이어, 유치원생, 초·중·고 학생, 주부 및 농식품 관련 종사자 등 20만여명

## II. 주요 내용

### 1. 주요 공식 행사

□ 전 야 제(10.12, 18:30 ~ 20:30 / 서울시청 광장)

- 농식품 테마송 발표, 10 ~ 30세대에게 우리 음식의 자긍심 고취 및 KFE 참여 유도

□ 개막 퍼포먼스(10.13, 10:30 ~ 11:30 / aT센터)

- 기존의 개막식 행사를 탈피한 개막 퍼포먼스를 연출하여 관람객 집객을 위한 이슈화 프로그램으로 구성

□ 한식세계화 선포식 (10.16, 11:00 ~ 13:00 / aT 대회의실)

- ‘한식의 세계 5대 음식화’를 위한 목표 및 전략 발표 등을 통해 정부의 한식세계화 정책의지를 대내외에 표명

### 2. 주 행사장

① aT센터 제1전시장 : 참여와 체험이 가능한 정책 홍보의 장

- 쌀 가공식품 전시·홍보 및 판매관(Business Zone)
- 수산업 변천사와 수산식품의 부가가치 등 산업적 미래비전 제시
- 쇠고기 원산지 식별법, 희귀 농산물, 미래농업기술 등 전시
- 식품제조업의 역사와 히트상품, HACCP, 식품소비 트렌드 등 전시
- 한식 표준화 사업결과, 세계화 성공가능 한식 및 세계화 정책 소개
- 식품산업 육성정책, 안전성제도, 전통식품명인제도 등 정책 홍보

## ② aT센터 제2전시장 : 농식품 등을 테마(色, 香, 美, 感, 樂)가 있도록 전시

- 色(Fresh Products) : 농수산물의 색깔별 영양학적 분석과 음식 전시 등
- 香(Wine, Tea) : 향을 더함으로써 풍부해지는 식품 소개 등
- 美(Cake & Cookie) : 아름다운 한과, 떡, 제과·제빵 전시 등
- 感(Health Food) : 천일염, 장류, 발효식품의 우수성 소개·전시 등
- 樂(Food Court) : 해외진출 프랜차이즈의 세계 공략 마케팅 전략 소개 등

## 3. 부대 행사장

- 시민의 숲, 양재천 등을 활용, 자연 친화적인 다양한 체험 및 이벤트 장 운영
  - 전원생활 소개, GAP 인증 농산물 판촉, 우수품종 전시 등
  - 농협, 한수연, 한여농, 전통식품협회 등이 참여하는 판매행사
  - 목장 체험, 어린이 푸드스쿨, 음악회 등 시민참여 이벤트 등
- 시민과 함께하는 생활속 홍보 및 참여행사 추진
  - 녹차축제(10.15~19/ 양재 하나로마트), 국산한약재 전시회(10.18~19/ 인사동)
  - 러브 米 국제 마라톤 대회(10.19/ 상암월드컵 공원)
  - 양재동 하나로마트(10.13 ~ 19), 노량진수산시장(10.18 ~ 19) 할인행사

## 4. 학술 세미나

장 소	일 시	주 제	주 관
aT센터 (대회의실)	10.13(월)	◦ 식품안전의 현실과 미래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10.14(화)	◦ 식품제조업 육성 전략	식품공업협회
	10.15(수)	◦ GAP 국제세미나	농촌진흥청
	10.16(목)	◦ 한식세계화 학술 세미나	농수산물유통공사
	10.17(금)	◦ 쌀가공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토론회	한국식품연구원
	10.17(금)	◦ 쌀 재해보험 국제세미나	농협중앙회
	10.18(토)	◦ 수산기능성제품 산업화 방안	한국수산학회
aT센터 (중회의실)	10.13(월)	◦ 한국형 식생활 교육전략	식품영양재단/한국음식문화전략연구원
	10.14(화)	◦ 여성농업인이 열어가는 농식품의 미래	한국여성농업인연합회
	10.14(화)	◦ 떡 제조산업 활성화	한국식품기술사협회
	10.15(수)	◦ 전통주의 명품화 및 세계화 전략	한국전통주진흥협회
	10.16(목)	◦ 전통발효식품 발전방안	한국식품관련학회연합회
	10.17(금)	◦ 쌀 가공산업 발전	한국식품연구원/한국식품영양학회
10.18(토)	◦ 동물보호정책 세미나	농림수산식품부	